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아이(I)러브(LOVE)플러스건강보험2607

약관 이용 가이드

1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한눈에 보는 약관의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약관의 구성 , 쉽게 찾는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지침서
 약관 요약서	약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등을 시각적 방법을 이용하여 약관을 간단 요약
 보험약관	보통약관 :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한 기본약관 특별약관 : 보통약관에 정한 사항 외 선택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
 인용법규 및 색인 등	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어려운 법률·보험용어 의 해설 , 가나다 順 특약 색인 , 관련 법규 등을 소비자에게 안내

3 QR코드를 통한 편리한 정보이용

QR(Quick Response)코드란?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4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찾기(보통약관기준)

보험약관 핵심사항 등과 관련된 **해당 조문, 쪽수 및 영상자료** 등을 안내드리오니, 회사로부터 약관을 수령한 후, 해당 내용을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금 지급 및 지급제한 사항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 보험금 지급	p58 p59
*가입한 특약을 확인하여 특약별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				
2	청약철회	(청약의 철회)	 2. 청약철회	p66
3	계약 취소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3. 계약취소	p66
4	계약 무효	(계약의 무효)	 4. 계약무효	p67
5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계약 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5. 계약전알림의무	p62 p64

6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 효과	(계약 후 알릴 의무),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6. 계약후알림의무	p62 p64
7	보험료 연체 및 해지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7. 보험료연체해지	p75
8	부활(효력회복)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	 8. 부활	p76
9	해약환급금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해약환급금)	 9. 해약환급금	p77 p78
10	보험계약대출	(보험계약대출)	 10. 보험계약대출	p80

5 약관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아래 7가지 방법을 활용하시면 약관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활용하시면 계약 일반사항, 가입시 유의사항, 민원 사례 등 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p31
2. **‘약관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를 이용하시면 약관내용 중 핵심적인 권리 및 의무관계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4
3. **‘가나다 順 색인’**을 활용하시면 본인이 실제 가입한 특별약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p22
4. 약관 내용 중 어려운 보험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약관 본문 Box안 예시** 등을 참고하시면 약관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p49
5.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약관해설 동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등을 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p3
6.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를 활용하시면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p1469
7. 약관조항 등이 **음영·컬러화** 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약관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기 바랍니다.

6 기타문의 사항

- ※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idbins.com)**, 고객 콜센터(**1588-0100**)로 문의 가능
-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FINE,fine.fss.or.kr](http://FINE.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

목차

2종, 4종, 8종, 10종, 11종 : 해약환급금 지급형

9종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

보통약관

제 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56
1. 목적	56
2. 용어의 정의	56
제 2관 보험금의 지급	58
3. 보험금의 지급사유	58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58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9
6.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59
7. 보험금의 청구	59
8. 보험금의 지급절차	59
9. 만기환급금의 지급	60
9-1. (태아기간 적립환급금 지급) (2종, 4종, 8종, 10종, 11종만 적용)	61
10.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61
11. 주소변경통지	61
12. 보험수익자의 지정	61
13. 대표자의 지정	61
제 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62
14. 계약 전 알릴 의무	62
15. 계약 후 알릴 의무	62
1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64
17. 사기에 의한 계약	64

약관 요약서	31
I.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32
II. 계약의 일반사항	36
III. 보험금 청구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	39
IV.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45
V.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47
VI.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49
VII. 프로미라이프 지식백과	52

※ 해당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제 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65	제 7관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등(4종 限)	80
18. 보험계약의 성립	65	40. 제7관(보험계약의 자동갱신 등) 적용범위	80
19. 청약의 철회	66	41.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80
20.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66	42.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80
21. 계약의 무효	67	43. 자동갱신 적용	81
22. 계약내용의 변경 등	68		
23. 보험나이 등	68	제 8관 보험계약의 연장 등(10종, 11종限)	81
24. 계약의 소멸	69	44. 제8관(보험계약의 연장 등) 적용범위	81
제 5관 보험료의 납입	70	45. “연장전계약” 및 “연장계약”의 정의	81
25.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70	46. 연장의 적용	81
26.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70	47. 연장계약의 보험료 납입	81
26-1. (보험료 납입면제)	70	48. 연장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81
26-1-1. (“납입면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71		
26-1-2. (“납입면제 질병” 진단에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	73	제 9관 분쟁조정 등	82
26-1-3. (“50%이상후유장해”에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	73	49. 분쟁의 조정	82
26-1-4. (“3대장애(선천성포함)” 및 “장애인” 정의)	74	50. 관할법원	82
26-1-5. (“3대장애(선천성포함)”에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	74	51. 소멸시효	82
27.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74	52. 약관의 해석	82
2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75	53.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82
2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75	54.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83
30.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76	55. 개인정보보호	83
제 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77	56. 준거법	83
31.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77	57.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83
32.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77		
33.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77		
34. 위법계약의 해지	77		
35. 해약환급금	78		
36.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79		
37. 중도인출금	79		
38. 보험계약대출	80		
39. 배당금의 지급	80		

특별약관

제 1장 상해관련 특별약관

1. 상해후유장해(20~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6	32.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9
2.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7	33.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31
3. 상해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8	34. 상해수술비Q(10년후2배체증)(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 특별약관 ..	133
4. 상해수술비Q(특정경증상해제외)(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9	35. 상해1~5중수술비II Q(10년후2배체증)(동일사고당 1회지급) (비갱신형) 특별약관	135
5.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91	36.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37
6. 팔 및 손가락 후유장해(3~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2	37. 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40
7. 상해수술비Q(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4	38.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42
8.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5	39.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43
9.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6	40.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46
10. 골절진단비(치아포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8	4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48
11. 5대골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9	42.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및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 (181일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49
12. 상해수술비Q(특정경증상해제외)(10년후2배체증)(동일사고당 1회지급) (비갱신형) 특별약관	99	43.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비갱신형) 특별약관	152
13. 화상치료비Q(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1	44. 통합상해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54
14. 골절수술비Q(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3	45.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 (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55
15. 골절수술비Q(치아파절제외)(동일사고당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5	46.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59
16.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6	47.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61
17. 뇌·내장손상수술비(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8	48.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Q(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63
18. 상해흉터복원수술비II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9	49. 상급종합병원2,3인실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65
19. 탈구염좌,과긴장수술비(치아탈구제외)(동일사고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1	50. 종합병원2,3인실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68
20. 스쿨존 교통사고보험금(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2	51. 소아청소년과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특별약관	170
21. 척추골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4	52. 소아청소년과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비갱신형) 특별약관	171
22. 골절진단비(치아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4	53. 골다공증성 골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73
23.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5		
24. 상해1~5중수술비II Q(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6		
25. 성상판손상골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8		
26. 주요상해 뇌출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9		
27.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0		
28.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1		
29.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	123		
30.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	125		
31. 골절철심제거수술비Q(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8		

54. 자동차부상치료비Ⅱ(비운전자)(비갱신형) 특별약관	173
55.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75
55-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175
55-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178
56.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82
57. 상해특정치료비(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85
57-1. 상해특정치료비(상해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85
57-2. 상해특정치료비(중대한특정상해수술)(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87
57-3. 상해특정치료비(창상봉합술)(1일1회한,연간3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89
57-4. 상해특정치료비(창상봉합술)(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90
58. 골절통합치료비(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91
58-1. 골절통합치료비(골절진단비)(치아포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91
58-2. 골절통합치료비(골절수술비Q)(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92
58-3. 골절통합치료비(골절척삭제거수술비Q)(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94
58-4. 골절통합치료비(신경손상치료비)(상해 및 질병)(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95
58-5. 골절통합치료비(골절부목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96
59.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97
59-1.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CT,MRI및골밀도검사)(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97
59-2.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1-5중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99
59-3.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종합병원)(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02
60. 상해통합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04

제 2장 질병관련 특별약관

1. 질병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20
2. 질병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21
3. 질병수술비Q(동일질병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22
4.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24
5.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25
6.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27
7.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예약) 특별약관	229
8. 유사암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31
9. 유사암진단비Ⅱ(예약) 특별약관	233
10. 계속받는암진단비(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34
11. 11대특정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40
12. 고액치료비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42
13. 자녀7대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43
14. 소아백혈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45
15.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포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46
16. 암직접치료입원일당Ⅱ(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49
17. 암입원일당Ⅱ(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53
18. 뇌졸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56
19.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57
20. 뇌졸중진단비(예약) 특별약관	258
21. 뇌출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59
22. 뇌출혈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60
23. 뇌출혈진단비(예약) 특별약관	261
24. 뇌혈관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62
25.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63
26. 뇌혈관질환진단비(예약) 특별약관	264
27. 뇌혈관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65
28. 뇌혈관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67
29.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68
3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예약) 특별약관	269
31. 허혈심장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70
32. 허혈심장질환진단비(예약) 특별약관	271
33. 허혈심장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272

34. 허혈심장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73
35. 양성뇌종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75
36. 말기신부전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75
37. ADHD진단비(비갱신형) 특별약관	276
38. 아토피성피부염진단비(중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77
39.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78
40. 1형 당뇨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79
41. 회귀난치성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80
42. 어린이생활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81
43. 자녀10대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82
44. 자녀10대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83
45.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특별약관	285
46. 당뇨병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86
47.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1회지급) 특별약관	287
48. 충수염(맹장염)수술비(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89
49. 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90
50. 수주구진단비Ⅱ(10일면책,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91
51. 선천이상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92
52. 선천이상수술비(허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94
53.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95
54. 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전기납) 특별약관	297
55. 신생아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전기납) 특별약관	298
56. 저체중아입원일당(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299
57. 극소저체중아입원일당(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300
58. 저체중아출생보장(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301
59. 장해출생보장(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302
60. 결핵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03
61.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04
62. 심장판막협착증진단비(대동맥판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05
63. 성조숙증진단비(비갱신형) 특별약관	306
64.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07
65. 사시수술비(비갱신형) 특별약관	308
66. 척추측만증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10
67.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11
68. 질병후유장해(3-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13
69. 다빈치로봇암수술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14

70.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318
71.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321
72.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323
73.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325
74. 5대난치성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27
75.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28
76. 암수술비(유사암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29
77. 유사암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32
78.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35
79.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36
80.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예약) 특별약관	337
81. 주요허혈심장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38
82. 주요허혈심장질환진단비(예약) 특별약관	339
83. 질병후유장해(20-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40
84.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41
84-1.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MRI검사)(급여)(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41
84-2.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PET검사)(급여)(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43
84-3.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CT검사)(급여)(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44
84-4.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1-5중수술Q)(동일질병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45
84-5.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전신마취수술)(6시간이상)(급여) (종합병원)(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48
85. 주요장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51
86. 계속받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포함)(급여)(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52
87. 뇌전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55
88. 심근병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56
89.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신생물진단비(용종포함)(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57
90.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수술비(급여)(용종포함)(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58
91.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60
92. 대상포진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62

93. 대상포진논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62	127. 주요2대호흡계질환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27
94. 녹내장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63	128. 2대양성신생물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28
95. 특정망막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64	129. 편마비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29
96.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65	130. 급성신우신염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30
97.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69	131. 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31
98.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75	132. 특정귀어지림증 및 돌발성난청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32
99.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제기조절방사선)(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77	133.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33
100. 질병수술비Q(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79	134.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37
101. 급성간염(A,B,C형)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82	135. 혈전용해치료비Ⅲ(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43
102. 120대질병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83	136. 혈전용해치료비Ⅲ(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44
103. 7대기관수술비(연간1회한,관혈/비관혈)(갱신형) 특별약관	386	137.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46
104. 다빈치로봇특정수술비(연간1회한)(비갱신형) 특별약관	389	138.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49
105.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90	139. 회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52
106. 암환자실입원일당Ⅱ(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91	140.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54
107.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94	141.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56
108. 중증질환자 중보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97	142.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 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58
109. 기흉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0	143.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62
110. 기흉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1	144.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66
111. 수도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2	145. 질병수술비Q(상급종합병원)(동일질병당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70
112.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3	146.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1회한)(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72
113.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4	147. 질병1-5종수술비ⅢQ(매회지급)(비갱신형) 특별약관	477
114. 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405	148. 암진단비Ⅱ(소액암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80
115. 뇌동맥류진단비(비파열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6	149. 유사암진단비Ⅱ(1년감액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82
116.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7	150. 보험료납입지원보장Ⅱ(유사암진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85
117. 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8	151. 체증형 암수술비(유사암포함)(30%체증형)(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88
118. 항암방사선치료비(유사암포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10	152. 체증형 뇌혈관질환수술비(30%체증형)(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91
119. 항암약물치료비(유사암포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12		
120. 통합형 뇌관련진단비Ⅰ(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15		
121. 통합형 뇌관련진단비Ⅰ(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17		
122.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Ⅰ(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18		
123.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20		
124. 10대소화계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22		
125. 4대신경계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24		
126. 4대순환계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25		

153. 체증형 허혈심장질환수술비(30%체증형)(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93	175.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3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67
154. 암직접치료통원비Ⅱ(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95	176. 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3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70
155. 암직접치료통원비Ⅱ(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98	177. 질병수술비Q(상급종합병원)(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73
156. 암직접치료통원비Ⅱ(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02	178.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상급 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77
157.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연간30회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06	179.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종합병원)(연간2천만원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84
158.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09	180.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종합병원)(연간3천만원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92
159.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12	181.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종합병원)(연간4천만원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00
160. 뇌혈관질환통원비Ⅱ(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15	182.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2천만원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07
161. 뇌혈관질환통원비Ⅱ(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17	183.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3천만원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16
162. 뇌혈관질환통원비Ⅱ(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19	184.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4천만원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24
163. 허혈심장질환통원비Ⅱ(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21	185.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32
164. 허혈심장질환통원비Ⅱ(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22	186.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 (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33
165. 허혈심장질환통원비Ⅱ(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24	187.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37
166. 질병수술비Q(10년후2배체증)(매회지급)(비갱신형) 특별약관	526	188.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39
167. 질병수술비Q(10년후2배체증)(동일질병당 1회지급)(비갱신형) 특별약관	529	189.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및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 (181일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42
168.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31	190.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비갱신형) 특별약관	645
169.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38	191. 어린이생활질환치료및특정진단비(실속형)(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48
170.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Ⅱ(10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549	192. 어린이생활질환치료및특정진단비(고급형)(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56
171.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550	19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약물종류개수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64
172.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비 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51		
173.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59		
174. 천식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66		

194.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약물종류개수별)(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71	213. 계속받는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45
195.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677	214. 상급종합병원2,3인실질병입원일당Q(1일이상3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51
196. 수도진단비Ⅱ(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79	215. 종합병원2,3인실질병입원일당Q(1일이상3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54
197.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소액암1년감액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80	216. 골다공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57
198. 어린이생활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83	217. 어린이심장시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58
199. 암통합케어지원비(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84	218.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59
199-1. 암통합케어지원비(MRI검사비)(암(유사암포함))(급여)(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84	219.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61
199-2. 암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암(유사암포함))(요양병원제외) (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87	220. 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64
199-3. 암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암(유사암포함))(요양병원) (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92	221. 특정선천성대사이상및특수식이필요질병진단비(전기납) 특별약관	765
199-4. 암통합케어지원비(주요재활치료비)(암(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포함)) (급여)(1일1회한,연간20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97	222. 소아청소년과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특별약관	766
199-5. 암통합케어지원비(주요통증완화치료비)(암(유사암제외))(급여)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99	223. 소아청소년과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0일한도)(비갱신형) 특별약관	768
200.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 (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02	224. 중증퇴장재진단비(비갱신형) 특별약관	770
201.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06	225.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 특별약관	771
20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08	226. 체증형3대질병진단비(암(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특별약관	772
203. 폐렴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11	227.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75
204. 폐렴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12	228.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79
205.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13	229. 패혈증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84
206. 통합전이암진단비(비갱신형) 특별약관	716	230. 패혈증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85
207.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20	231. 주요폐질환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86
208.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25	232. 주요폐질환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87
209.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29	233. 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88
210. 항암방사선치료비(유사암포함)(치료당)(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33	234. 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89
211. 항암약물치료비(유사암포함)(치료당)(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36	23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Ⅲ(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90
212.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40	235-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제외) (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790
		235-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 (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793
		236. 통합유사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97
		237. 백반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99

238.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00	247.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세부보장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67
238-1.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수술시)(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00	247-1. 유사암주요치료비Ⅱ(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수술시)(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67
238-2.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혈전용해치료시)(뇌혈관질환)(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03	247-2. 유사암주요치료비Ⅱ(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73
238-3.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혈전용해치료시)(심혈관, 기타)(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06	247-3. 유사암주요치료비Ⅱ(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78
238-4.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08	247-4. 유사암주요치료비Ⅱ(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84
239. 질병수술비Q(특정경증질환, 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동일질병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12	248.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종합병원)(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91
240. 질병수술비Q(특정경증질환, 특정다빈도9대질병제외)(동일질병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15	249.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세부보장별)(유사암제외)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96
241.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17	250.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세부보장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11
242.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 (연간주요치료2회, 3회및4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22	251. 순환계질환(3-5종)치료비지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31
243.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30	252.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32
244.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주요치료2회, 3회및4회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35	252-1.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CT, MRI, 초음파, 뇌파및뇌척수액검사지원비) (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932
245.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42	252-2.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 (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934
246.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세부보장별)(유사암제외)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47	252-3.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935
246-1. 암주요치료비Ⅱ(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수술시) (유사암제외)(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47	252-4.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939
246-2. 암주요치료비Ⅱ(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방사선치료시) (유사암제외)(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52	252-5.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주요재활치료비)(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급여) (1일1회한, 연간20회한)(비갱신형/갱신형)	943
246-3. 암주요치료비Ⅱ(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약물치료시) (유사암제외)(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57	253.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유사암제외)(연간 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45
246-4. 암주요치료비Ⅱ(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 (유사암제외)(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61	254.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유사암제외)(연간 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52
		255.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유사암제외)(연간 주요치료2회, 3회및4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61

256.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71
257.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Ⅱ(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76
258. 정신질환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80
259. 정신질환입원일당(연간2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83
260.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연간12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86
261.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87
262.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89
263.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96
264.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06
265.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15
266.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20
267.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26
268.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029
269. 유사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33
270. 비급여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2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36
271. 비급여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5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47
272. 비급여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8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59
273. 슬림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5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70
274. 슬림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7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78
275. 슬림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1.2억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85
276.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92

277.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99
277-1.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뇌혈관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99
277-2.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연간체증형)(특정혈전치료)(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00
278.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태아가입)(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03
278-1.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태아가입)(뇌혈관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03
278-2.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태아가입)(연간체증형)(특정혈전치료)(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04
279. 허혈심장질환진단및2종치료비(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06
279-1. 허혈심장질환진단및2종치료비(허혈심장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06
279-2. 허혈심장질환진단및2종치료비(연간체증형)(특정혈전치료)(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07

제 3장 질병 및 상해관련 특별약관

1. 뇌성마비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12
2. 뇌성마비진단자금(매월3년간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13
3. 5대장기이식수술비(1회지급)(비갱신형) 특별약관	1114
4. 각막이식수술비(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15
5. 갑스치료비(상해및질병)(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16
6. 추간판탈출증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1116
7. 시력치료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118
8. 시력교정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119
9. 부정교합치료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120
10. 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121
11. 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124
12.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127
13.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129
14. 뇌심장장애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31
15. 뇌심장장애진단비(중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32
16. X-Ray 및 파노라마 치아촬영비(갱신형) 특별약관	1134

17. X-Ray 및 파노라마 치아촬영비(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136
18. 신김치치료비(상해및질병)(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37
19.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39
20. 장루(인공항문)조성수술비(급여)(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43
21. 기관절개수술비(급여)(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44
22. 인공와우이식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1146
23.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48
24.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연간12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49
25. 4대안과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51
26.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55
27.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57
28. 십자인대 수술비(급여,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59
29.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60
30.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 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 특별약관	1162
31. 특정내시경 검사 및 치료비(급여,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63
32. 치아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유치,영구치)(갱신형) 특별약관	1165
33. 치아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유치,영구치)(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167
34. 치아보존치료비Ⅱ(상해및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갱신형) 특별약관	1168
35. 치아보존치료비Ⅱ(상해및질병)(유치,영구치)(크라운 무제한)(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172
36. 통합형 뇌관련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75
37.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1176
38. 전신마취수술비(4시간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78
39. 전신마취수술비(6시간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80
40.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82
4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84

제 4장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1.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190
2. 학교폭력피해위로금(사이버폭력포함)(비갱신형) 특별약관	1191

제 5장 배상책임관련 특별약관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V(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196

제 6장 산모관련 특별약관

1. 엄마 상해사망(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06
2. 모성사망(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07
3. 임신·출산질환치료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07
4. 유산치료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09
5. 임신·출산질환치료비Ⅱ(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11
6. 임신·출산질환(유산제외)통원비(10회한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13
7. 특정임신중당뇨병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15
8.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16
9. 태반조기박리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17
10. 여성산과관련 자궁적출수술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18
11. 다운중후군양육자금(매년10년간지급)(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19
12. 분만전후출혈수혈치료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20
13. 양수과다증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21
14. 양수과소증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22
15. 출산전선별검사이상소견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23
16. 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관리(임신부)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24
17. 연속혈당측정기 제공 특정임신중당뇨병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25

제 7장 부양자관련 특별약관

1. 부양자 상해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28
2. 부양자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29
3. 부양자 질병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30
4. 부양자 질병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31
5. 부양자 보험료납입지원Ⅱ(3대질병진단, 80%이상후유장해)(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32
6. 부양자 골다공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35
7. 부양자 골다공증성 골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36

제도성 특별약관

1.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1238	【별표1】 장해분류표	1257
2.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239	【별표2】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1273
3. 선지급 서비스 특별약관	1240	【별표3】 화상 분류표	1274
4.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1241	【별표4】 5대골절 분류표	1274
5.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1243	【별표5】 골절 분류표	1275
6. 피보험자추가 특별약관	1245	【별표6】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1276
7.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특별약관	1246	【별표7】 특정3대심장질환 분류표	1276
8. 전자서명 특별약관	1248	【별표8】 자녀10대질환 분류표	1277
9. 특별조건부(표준하체 인수) 특별약관	1249	【별표9】 자녀7대암 분류표	1278
10. 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1250	【별표10-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279
11.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251	【별표10-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1280
12.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	1254	【별표10-3】 소액암 분류표	1281
		【별표11】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1281
		【별표11-1】 제자리신생물(피부및유방) 분류표	1282
		【별표11-2】 제자리신생물(자궁경부및생식기관) 분류표	1282
		【별표11-3】 제자리신생물(기타) 분류표	1283
		【별표12】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283
		【별표13】 1형 당뇨병 분류표	1284
		【별표14】 충수염(맹장염) 분류표	1284
		【별표15】 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Ⅱ 분류표	1285
		【별표16】 호흡기관련질환 분류표	1286
		【별표18】 법정감염병 중 대상이 되는 특정법정감염병 분류표	1286
		【별표18.1】 감염병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	1287
		【별표18.2】 감염병환자 진단기준	1287
		【별표19】 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1288
		【별표20】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	1290
		【별표21】 뇌졸중 분류표	1290
		【별표22】 뇌출혈 분류표	1291
		【별표2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1291
		【별표24】 11대특정암 분류표	1292
		【별표25】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1293
		【별표26】 주산기질환 분류표	1294

【별표27】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1294
【별표28】 장애의 대상 분류표	1295
【별표29】 심한 장애의 대상 분류표	1296
【별표30】 임신·출산관련질환 분류표	1296
【별표31】 유산 분류표	1297
【별표32】 뇌·내장손상 분류표	1297
【별표33】 당뇨병 분류표	1299
【별표34】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허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 분류표	1299
【별표35】 추간판탈출증 분류표	1300
【별표36】 특정허혈심장질환 분류표	1300
【별표37】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치아탈구제외) 분류표	1301
【별표38】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301
【별표39】 어린이생활질환 분류표	1306
【별표40】 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	1308
【별표41】 소아백혈병 대상질환 분류표	1311
【별표42】 다온증후군 분류표	1311
【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1312
【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1312
【별표45】 특정급여치료 대상 수가코드	1313
【별표46】 결핵 분류표	1315
【별표47】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 분류표	1315
【별표48】 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 분류표	1316
【별표49】 성조숙증 분류표	1317
【별표50】 편마비 분류표	1317
【별표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분류표	1318
【별표52】 십자인대질환 분류표	1318
【별표53】 급여 십자인대수술 대상 수가코드	1319
【별표54】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분류표	1319
【별표55】 아토피성 피부염 분류표	1319
【별표56】 모야모야병 분류표	1320
【별표57】 임신중독증(자간포함) 분류표	1320
【별표58】 태반조기박리 분류표	1321
【별표59】 자궁적출수술 분류표	1321

【별표60-1】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1321
【별표60-2】 독감 항바이러스제 성분명	1322
【별표61】 척추골절 분류표	1322
【별표62】 주요이비인후과질환 분류표	1323
【별표63】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 대상 수가코드	1323
【별표64】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표	1324
【별표65】 X-ray촬영 및 파노라마촬영 진료행위코드 분류표	1324
【별표66】 사시 분류표	1324
【별표67】 척추측만증 분류표	1325
【별표68】 뇌심질환 분류표	1325
【별표69】 급여 뇌심질환 검사 분류표	1327
【별표70】 특정부위·질환 분류표	1329
【별표71】 5대난치성질환 분류표	1330
【별표72】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광상동맥조영술 분류표	1331
【별표73】 아나필락시스쇼크 분류표	1331
【별표74】 주요뇌혈관질환 분류표	1332
【별표75】 주요허혈심장질환 분류표	1332
【별표76】 특정경증상해 분류표	1333
【별표7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1333
【별표78】 1~5중수술(동일) 분류표	1334
【별표79】 특정백내장 및 수정체질환 분류표	1338
【별표80】 뇌전증 분류표	1339
【별표81】 심근병증 분류표	1339
【별표82】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	1340
【별표83】 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	1340
【별표84】 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1341
【별표85】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342
【별표86】 대상포진 분류표	1344
【별표87】 대상포진눈병 분류표	1345
【별표88】 녹내장 분류표	1345
【별표89】 특정망막질환 분류표	1346
【별표90】 특정다빈도 9대질환 분류표	1346

【별표92】 골절철심제거술 대상 수가코드	1348	【별표125】 통합형 뇌관련질환Ⅱ 분류표	1377
【별표93】 급성간염(A,B,C형) 분류표	1348	【별표126】 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Ⅰ 분류표	1377
【별표94】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 분류표	1349	【별표127】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	1378
【별표95】 120대질환 분류표	1349	【별표128】 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	1379
【별표96】 7대기관질환 분류표	1356	【별표129】 백내장/대장종양 분류표	1380
【별표97】 장루(인공항문)조성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1357	【별표130】 10대소화계질환 분류표	1381
【별표98】 기관절개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1358	【별표131】 4대신경계질환 분류표	1382
【별표99】 정신질환 1~5군 분류표	1358	【별표132】 4대순환계질환 분류표	1382
【별표100】 급여 암주요재활치료 대상 수가코드	1360	【별표133】 주요2대호흡계질환 분류표	1383
【별표101】 주요바이러스질환 분류표	1361	【별표134】 2대양성신생물 분류표	1383
【별표102】 성장판부위골절 분류표	1361	【별표135】 급성신우신염 분류표	1384
【별표103】 천식지속상태 분류표	1362	【별표136】 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	1384
【별표104】 기흉 분류표	1362	【별표137】 특정귀어지럼증 및 돌발성난청 분류표	1385
【별표105】 수두 분류표	1363	【별표138】 특정눈염증 분류표	1385
【별표106】 수족구 분류표	1363	【별표139】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386
【별표107】 특정정신질환 분류표	1364	【별표139-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1386
【별표108】 분만전후출혈 분류표	1364	【별표139-2】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명	1387
【별표109】 양수과다증 분류표	1365	【별표140】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388
【별표110】 양수과소증 분류표	1365	【별표140-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1389
【별표111】 특정임신중당뇨병 분류표	1366	【별표140-2】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명	1390
【별표112】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366	【별표140-3】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명	1392
【별표113】 주요상해뇌출혈 분류표	1367	【별표141】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393
【별표114】 안구특정상해 분류표	1368	【별표141-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	1393
【별표115】 부목치료 대상 수가코드	1368	【별표142】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394
【별표116】 정신질환 1~3그룹 분류표	1369	【별표143】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395
【별표117】 뇌동맥류(비파열성) 분류표	1370	【별표144】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407
【별표118】 주요심장염증질환 분류표	1371	【별표145】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411
【별표119】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분류표	1371	【별표146】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 대상 수가코드	1412
【별표120】 장애인의 기준 분류표	1372	【별표147】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Ⅰ 대상 수가코드	1412
【별표12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류표	1373	【별표148】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Ⅱ 대상 수가코드	1412
【별표122】 주요 장질환 분류표	1375	【별표149】 특정경증질환 분류표	1414
【별표123】 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관리 분류표	1376	【별표150】 특정경증질환Ⅱ 분류표	1415
【별표124】 통합형 뇌관련질환Ⅰ 분류표	1376	【별표151-1】 전립선암 분류표	1415

【별표151-2】유방암 분류표	1416
【별표152】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 분류표	1416
【별표153】1~5중수술(매회) 분류표	1417
【별표154】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1421
【별표155】통합전이암 분류표	1423
【별표156】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425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426
【별표158】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1427
【별표159】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1434
【별표160】중증정신질환 분류표	1435
【별표161】특정선천성 대사이상 및 특수식이 필요질환 분류표	1436
【별표162】중증틱장애 분류표	1437
【별표163】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급여) 분류표	1437
【별표164】출산전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 분류표	1437
【별표165】골다공증 분류표	1438
【별표166】골다공증성 골절분류표	1438
【별표167】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1439
【별표168】11대중대질환 분류표	1439
【별표169】순환계질환 분류표	1440
【별표170】천식 분류표	1441
【별표171】폐렴 분류표	1442
【별표172】폐혈증 분류표	1442
【별표173】주요폐질환 분류표	1443
【별표174】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 분류표	1443
【별표175】백반증 분류표	1444
【별표176-1】순환계질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	1444
【별표176-2】순환계질환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	1445
【별표177】상해특정시술치료(급여) 분류표	1446
【별표178】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 분류표	1449
【별표179】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 분류표	1450
【별표180】인공호흡기치료(12시간 초과)(급여) 분류표	1450

【별표181】저체온요법치료(급여) 분류표	1450
【별표182】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 분류표	1451
【별표183】급여 상해 CT검사 분류표	1451
【별표184】골밀도검사(급여) 분류표	1453
【별표185】통합상해사고 분류표	1454
【별표186】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여) 세부내용	1456
【별표187】중이염 분류표	1457
【별표188】악물종류별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457
【별표189】1~5중수술Ⅳ 분류표	1462
【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1466
【별표191】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분류표	1467

참고.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1469

급성간염(A,B,C형)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82
급성심우심염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30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68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예약) 특별약관	269
기관절개수술비(급여)(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44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79
기흉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0
기흉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1
킵스치료비(상해및질병)(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16
(L)	
녹내장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63
뇌·내장손상수술비(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8
뇌동맥류진단비(비파열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6
뇌성마비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12
뇌성마비진단자금(매월3년간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13
뇌심장장애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31
뇌심장장애진단비(중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32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32
뇌전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55
뇌졸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56
뇌졸중진단비(예약) 특별약관	258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57
뇌출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59
뇌출혈진단비(예약) 특별약관	261
뇌출혈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60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94
뇌혈관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67
뇌혈관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65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99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태아가입)(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03

뇌혈관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62
뇌혈관질환진단비(예약) 특별약관	264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63
뇌혈관질환통원비Ⅱ(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19
뇌혈관질환통원비Ⅱ(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15
뇌혈관질환통원비Ⅱ(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17
(C)	
다빈치로봇암수술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14
다빈치로봇특정수술비(연간1회한)(비갱신형) 특별약관	389
다운증후군양육자금(매년10년간지급)(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19
당뇨병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86
대상포진눈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62
대상포진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62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특별약관	1246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550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Ⅱ(10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549
(D)	
말기신부전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75
모성사망(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07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07

(나)		(스)	
백반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99	사시수술비(비갱신형) 특별약관	308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 특별약관	771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종합병원)(연간2천만원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37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84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포함)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30일한도)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종합병원)(연간3천만원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67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92	상급종합병원2,3인실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종합병원)(연간4천만원한도)		특별약관	165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00	상급종합병원2,3인실질병입원일당Q(1일이상3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2천만원한도)		특별약관	751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07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3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3천만원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Q(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63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16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46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4천만원한도)		상해1-5종수술비Ⅱ Q(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6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24	상해1-5종수술비Ⅱ Q(10년후2배체증)(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239	특별약관	135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39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7
보험료납입지원보장Ⅱ (유사암진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85	상해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8
부양자 골다공증성 골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36	상해수술비Q(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4
부양자 골다공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35	상해수술비Q(특정경증상해제외)(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부양자 보험료납입지원Ⅱ (3대질병진단, 80%이상후유장해)(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9
특별약관	1232	상해수술비Q(특정경증상해제외)(10년후2배체증)(동일사고당 1회지급)	
부양자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29	특별약관	99
부양자 상해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28	상해수술비Q(10년후2배체증)(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 특별약관	133
부양자 질병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31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5
부양자 질병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30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5
부정교합치료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120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분만전후출혈수혈치료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20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42
비급여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2천만원한도)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6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36	상해통합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04
비급여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5천만원한도)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97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47	상해특정치료비(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85
비급여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8천만원한도)		상해후유장해(20-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6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59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9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약물종류개수별)(연간1회한)		선지급 서비스 특별약관	1240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71	선천이상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92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40	선천이상수술비(허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94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95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8
성조숙증진단비(비갱신형) 특별약관	306
소아백혈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45
소아청소년과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특별약관	170
소아청소년과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비갱신형) 특별약관	171
소아청소년과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특별약관	766
소아청소년과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0일한도)(비갱신형) 특별약관	768
수두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2
수두진단비Ⅱ(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79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3
수족구진단비Ⅱ(10일면책,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91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42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종합병원)(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91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1회한) (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72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31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 (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77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33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37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20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00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92
순환계질환(3-5종)치료비지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31
슬림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5천만원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70

슬림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7천만원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78
슬림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1.2억원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85
스쿨존 교통사고보험금(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2
시력교정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119
시력치료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118
신김치치료비(상해및질병)(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37
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전기납) 특별약관	297
신생아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전기납) 특별약관	298
심근병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56
심장판막협착증진단비(대동맥판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05
십자인대 수술비(급여,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59

(o)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677
아토피성피부염진단비(중증)(비갱신형) 특별약관	277
암수술비(유사암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29
암입원일당Ⅱ(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53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75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세부보장별) (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47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세부보장별)(유사암제외)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96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유사암제외)(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45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61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52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17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 (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22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51
암중환자실입원일당 II (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91
암직접치료입원일당 II (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49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12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06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09
암직접치료통원비 II (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	502
암직접치료통원비 II (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95
암직접치료통원비 II (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	498
암진단비 II (소액암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80
암진단비 II (유사암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27
암진단비 II (유사암 제외)(소액암1년감액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	680
암진단비 II (유사암 제외)(예약) 특별약관	229
암통합케어지원비(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84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04
양성뇌종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75
양수과다증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21
양수과소증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22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1176
어린이생활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81
어린이생활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83
어린이생활질환치료및특정진단비(고급형)(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56
어린이생활질환치료및특정진단비(실속형)(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48
어린이심장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58
엄마 상해사망(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06
여성산과관련 자궁적출수술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18
연속혈당측정기 제공 특정임신중당뇨병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	1225
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121
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124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127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129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신생물진단비(용종포함)(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57
유사암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32
유사암주요치료비 III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세부보장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67
유사암주요치료비 III (종합병원)(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11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89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06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96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	830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835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59
유사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33
유사암진단비 II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31
유사암진단비 II (예약) 특별약관	233
유사암진단비 II (1년감액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82
유산치료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09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48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연간12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49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190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1238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11
인공와우이식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1146
임신·출산질환(유산제외)통원비(10회한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13
임신·출산질환치료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07
임신·출산질환치료비 II (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11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16
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88
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89

27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32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28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24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25
질병후유장해(20-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40
질병후유장해(3-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13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41
(ㄷ)	
창상봉합술치료비(안면부, 1일1회한, 연간3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0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 연간3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21
척추골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4
척추측만증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10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04
천식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66
체증형 뇌혈관질환수술비(30% 체증형)(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91
체증형 암수술비(유사암포함)(30% 체증형)(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88
체증형 허혈심장질환수술비(30% 체증형)(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93
체증형3대질환진단비(암(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특별약관	772
추간판탈출증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1116
출산전선별검사이상소견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23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1243
충수염(맹장염)수술비(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89
치아보존치료비Ⅱ(상해및질병)(유치, 영구치)(크라운 무제한)(갱신형) 특별약관	1168
치아보존치료비Ⅲ(상해및질병)(유치, 영구치)(크라운 무제한)(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172
치아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유치, 영구치)(갱신형) 특별약관	1165
치아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유치, 영구치)(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167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318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321

(ㄹ)	
탈구염좌, 과긴장수술비(치아탈구제외)(동일사고당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1
태반조기박리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17
통합상해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54
통합암 항암방사선약품치료비(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26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13
통합유사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97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품치료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029
통합전이암진단비(비갱신형) 특별약관	716
통합형 뇌관련진단비Ⅰ(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15
통합형 뇌관련진단비Ⅰ(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17
통합형 뇌관련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75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Ⅰ(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18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20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59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61
특별조건부(표준하체 인수) 특별약관	1249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1241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수술비(급여)(용종포함)(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58
특정귀여지름증 및 돌발성난청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32
특정내시경 검사 및 치료비(급여,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63
특정망막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64
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90
특정선천성대사이상및특수식이필요질환진단비(전기납) 특별약관	765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 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 특별약관	1162
특정임신중당뇨병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15
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405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323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325
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임신부)관리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224
특정항암호르몬약품허가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25
특정항암호르몬약품허가치료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20

(㉒)		허혈심장질환통원비Ⅱ(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21
	팔 및 손가락 후유장애(3-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2	
	편마비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29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77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약물종류개수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6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65	
	피보험자추가 특별약관	1245	
	폐렴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11	
	폐렴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12	
	폐혈증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84	
	폐혈증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85	
(㉓)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71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38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Ⅱ(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76	
	학교폭력피해위로금(사이버폭력포함)(비갱신형) 특별약관	1191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포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46	
	항암방사선치료비(유사암포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10	
	항암방사선치료비(유사암포함)(치료당)(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33	
	항암약물치료비(유사암포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12	
	항암약물치료비(유사암포함)(치료당)(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736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75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87	
	허혈심장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73	
	허혈심장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272	
	허혈심장질환진단비2종치료비(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06	
	허혈심장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70	
	허혈심장질환진단비(예약) 특별약관	271	
	허혈심장질환통원비Ⅱ(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24	
	허혈심장질환통원비Ⅱ(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21	
	허혈심장질환통원비Ⅱ(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522	
	혈전용해치료비Ⅲ(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44	
	혈전용해치료비Ⅲ(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43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특별약관	285	
	화상치료비Q(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01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80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52	
(A-Z)			
	ADHD진단비(비갱신형) 특별약관	276	
	X-Ray 및 파노라마 치아촬영비(갱신형) 특별약관	1134	
	X-Ray 및 파노라마 치아촬영비(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136	
(숫자)			
	10대소화계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22	
	120대질병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83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82	
	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	764	
	11대특정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40	
	1형 당뇨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279	
	2대양성성생물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28	
	4대순환계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25	
	4대신경계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24	
	4대안과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51	
	5대골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99	
	5대난치성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327	
	5대장기이식수술비(1회지급)(비갱신형) 특별약관	1114	
	7대기관수술비(연간1회한,관혈/비관혈)(갱신형) 특별약관	386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160	

약관 요약서

이 요약서는 그림·도표·아이콘·삽화 등 시각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보험상품 및 약관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요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시고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소비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기간

면책기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책기간 적용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면책기간
암진단특약	암 진단비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치매진단특약	경증이상 치매 진단비	가입 후 1년간 보장 제외

사례

A씨는 암보험 가입 후 2개월이 지나서 위암을 판정받아 보험회사에 암진단비를 청구

▶ 회사는 보험가입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감액지급

감액지급

50%
[1년 이내]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지급 적용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감액 기간 및 비율
급성심근경색 진단특약	급성심근경색 증 진단비	가입 후 1년간 보험금 50% 지급

■ 보장한도

보장한도

최초
1회한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장한도 적용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보장한도
뇌출혈진단특약	뇌출혈 진단비	최초 1회에 한해 보장
질병입원특약	질병입원일당	1일 이상 180일 한도로 보장 (퇴원없이 계속 입원시 180일간 보장 제외)

보장한도

보험금
지급한도
적용

■ 자기부담금 차감

자기부담금

차감 후
지급

보장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담보 예시]

구분	담보명	자기부담금 차감 금액
실손 의료 보험	상해급여 질병급여	통원 1회당 병원별 공제금액(1~2만원),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특별약관1)상해비급여 (특별약관1)질병비급여	통원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특별약관1)3대비급여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특별약관2)상해비급여 (특별약관2)질병비급여	통원 1일당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특별약관2) 비급여자기공명영상진단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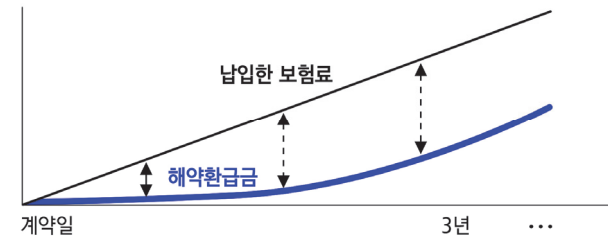
없음
[납입기간
중 해지시]

해약환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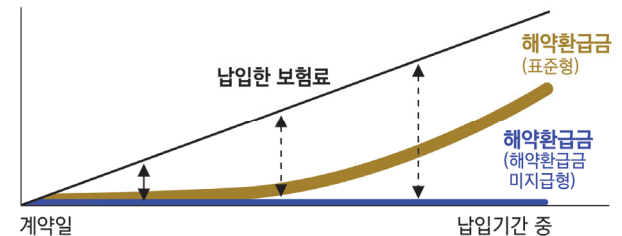
적음
[납입기간
중 해지시]

- ①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약환급금: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경과된 기간의 위험 보장애 사용된 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
- ②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 ③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표준형 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 (해약환급금 저지급형)

(표준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3. 갱신 시 보험료인상 가능성

갱신 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 **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손보상형 담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①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중복 가입 시 비례보상)
- ②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여러 개의 실손보상형 담보 가입하여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손보상형 담보]

자동차사고 벌금, 자동차사고 벌금(대물),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등

5.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 보장성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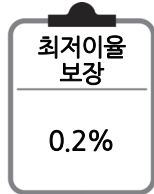
- ① 상해, 질병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② 만기 또는 중도해지 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저축성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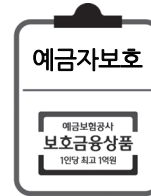
- ①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 및 펀드 등과 다른 상품입니다.**
- ② 중도에 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리연동형 보험



- ① 만기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변동**됩니다.
- ② 동 이율은 납입한 적립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③ 보장성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 보험가입후 경과기간이 5년 이하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하는 1.0%, 10년 초과는 0.2%로 합니다)
*공시이율이 하락하는 경우 회사가 보증하는 적용이율의 최저한도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유병력자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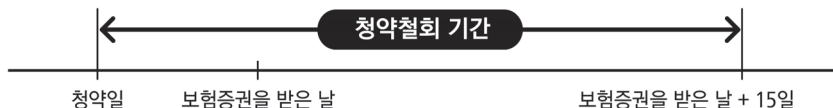


- ①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병력이 있는 고객**이 간단한 심사절차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② 일반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싸므로 **건강한 일반인이 가입**하는 경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II. 계약의 일반사항

1.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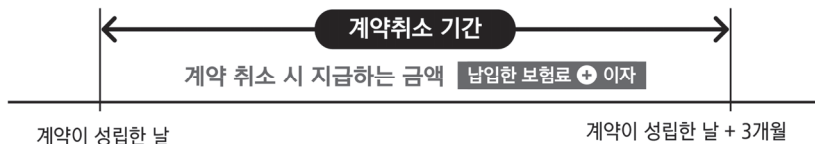


[청약철회가 불가한 경우]

- 청약일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 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계약의 취소

- 계약자는 다음의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한 경우
 - 보험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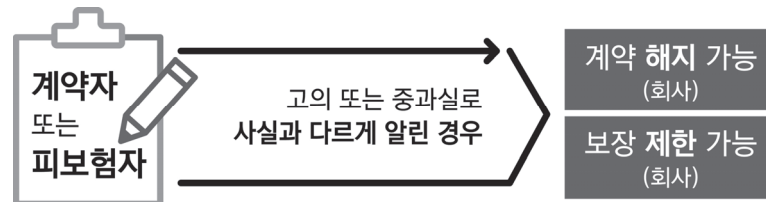
3. 계약의 무효

-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포함)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지정)로 한 경우
 -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4. 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효과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회사 상담원의 질문이 청약서의 질문사항을 대신**하므로 상담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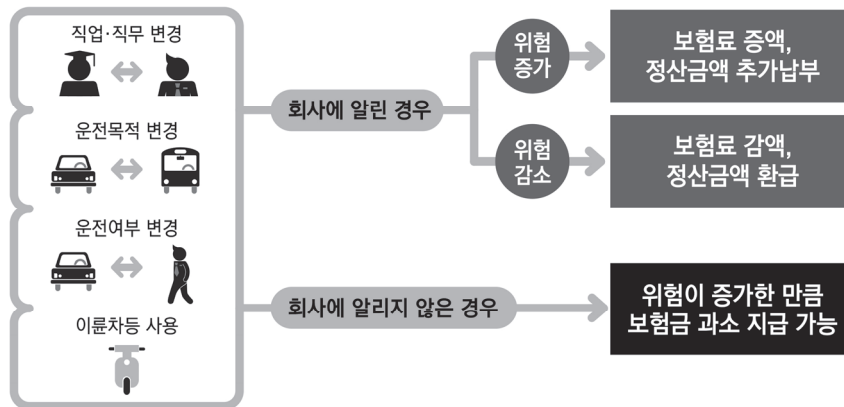
-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계약 후 알릴 의무 및 위반시효과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직업·직무변경이 발생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또는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③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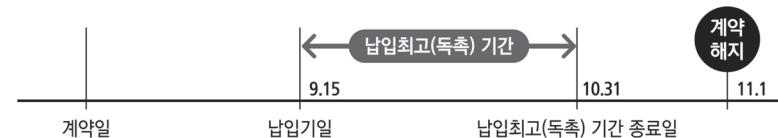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

■ 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납입을 독촉하는 안내를 하며,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됩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 : 14일 이상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7. 해지된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8. 보험계약대출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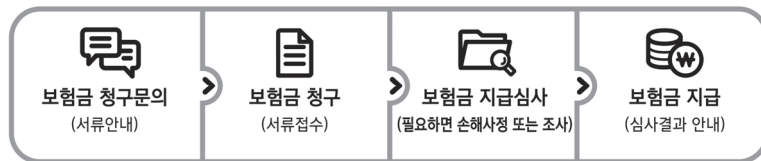
- ①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 ②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는 대출신청 전에 **보험계약대출이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9. 보험금청구절차

■ 보험금 청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액 보험금 청구시 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는 등 청구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으니, 보험금청구 전에 보험회사에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II. 보험금 청구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



1. 보험계약관련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배우자, 자녀 등을 보장하는 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사본 등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적 수단 등 포함),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상해사고 청구시 - 사고 입증서류(별표 참조)	- 보험사 - 관공서
입원	실손 의료비 - 진단서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병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입원 일당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상세)내역서(비급여 존재시)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입원기간이 포함된 서류 (예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 병원
통원	10만원 초과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진단명(질병분류코드)이 포함된 서류 (예시) 진단서·통원확인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 등 - 처방전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 병원 - 약국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된) 처방전 [단,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향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처방전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3만원 이하 - 진료비계산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가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단, 특정 진료과목(산부인과, 향문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 및 짧은 기간내 보험금 청구횟수가	

구분	필요서류	비고
	- 과다한 경우 등 추가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처방전 - 약제비계산서(영수증)	
골절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시) 통원확인서·입퇴원확인서·X-ray 결과지,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 치아 골절시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필요시 추가요청)	- 병원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예시) 수술확인서, 수술기록지, (진단명,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진단서 등	- 병원
진단	- 진단서 - 조직검사 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 못할 경우) 및 혈액검사 결과지	- 병원
	- 진단서 - 각종 검사결과지 (예시) 관상동맥 조영술, 심전도, 심초음파	- 병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진단	검사결과지, 심장효소 혈액검사결과지 등	
	- 뇌질환 - 진단서 - CT,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 기타 - 진단서 - 진단사실 확인서류	- 병원
장해	- 후유장애진단서 ※ 발급 전 보험회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애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비장, 신장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명시) : 수술기록지	- 병원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원본 또는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가 첨부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본(원본대조필 포함)	- 병원
	※ 수익자 미지정시 - 상속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1인의 상속인이 전액 수령을 원하는 경우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인감도장(또는 위임장에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는 사례별로 다르므로 사전 문의바랍니다.
태아	- 신생아 입원비 -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	- 주민센터 - 병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단, 청구금액 50만원 이하시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 입퇴원확인서(인큐베이터 사용시 해당기간 명시)* * 진단서에 입원기간(인큐베이터 사용기간)이 포함된 경우는 제외	- 병원
유산 /사산	- 진단서(유산), 사산증명서(사산)	- 병원
응급비용	- 119 또는 129 구급구조증명서	- 소방서/ 구급대

※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표> 상해사고 입증서류 예시

구분	필요서류	비고
교통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손해보험사, 공제조합(버스, 화물, 택시 등)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 - 보험사/공제조합
산재사고	- 요양급여신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근로복지공단
군복무중 사고	- 공무상병인증서	- 군부대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 법원판결문	- 법원
기타 상해사고	-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 공공기관
사고확인서류 발급불가시	- 병원초진차트 등 상해사고 증명서류 및 보험금 청구서상 사고내용 기재(6하원칙에 따라 상세기재)	- 병원

2. 자동차운행관련 사고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동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사고입증서류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적 수단 등 포함),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보험사 - 관공서
긴급비용	- 견인비 영수증 - 수리비 견적서	- 수리업체
벌금	- 벌금영수증 - 법원 판결문 또는 약식 명령문	- 법원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판결문, 구속영장(재소·출소증명서) - 공소장(교통사고처리지원금 담보의 경우 약식기소 제외) -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법원 - 법원
면허정지 /취소	- 운전경력증명서 -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통지서(교육수료 후) 또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확인서 -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서 또는 면허취소 확인원	- 경찰서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 피해자진단서, 공소장 - 경찰서에 제출된 형사합의서(합의금액 명시) - 피해자 공탁금 출금 확인서(미합의시) 및 공탁서 - 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 경찰서/법원 - 법원 - 법원 - 해당 금융기관

구분	필요서류	비고
자동차보험 할증지원금	- 자동차보험 보험금지급결의서	- 보험사
자동차 부상치료비	- 사고증명서 1.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은 경우 :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2.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1)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차량피해 견적서, 차량피해사진 등) (2)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 보험사 - 병원 - 경찰서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 진단서 또는 소견서(진단명, 성형수술 부위와 크기, 수술내용 포함)	- 병원

3. 치아건강보험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보험사 - 관공서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적 수단 등 포함),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영구치 발거치료비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병원

구분	필요서류	비고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영구치 보존치료비	- 치과치료 진료확인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병원
영구치 보철치료비	- 치과치료 진단서(아래 내용 반드시 포함)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치과진료기록 사본 ·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병원

4. 소득보장보험

※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심사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비고
공통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 사본	- 보험사 - 관공서
상해·질병 구직급여 지원금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적 수단 등 포함),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구직급여일당 /장기구직급여 지원금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 실업급여지급결정통지서(직업안정기관의 長 발행) - 병가신청서 - 의사소견서(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고용업체에 서의 업무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소견서)	

5. 재물·배상책임 보험

가. 재물보험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공통	- 화재증명원(화재사고인 경우) - 도난신고접수확인원(도난사고인 경우) - 사고증명서(기타 사고) -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포함)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청구인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건물	※ 대리인 청구시 - 위임장,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적 수단 등 포함),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기계비품	- 건물등기부등본(등기소) - 건축물관리대장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동산	- 기계기구 명세서 - 구입영수증 - 신품가격 견적서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 감정평가서 - 리스계약서(리스물건)

구분	필요서류
가재도구	- 가재도구명세서(구입연월일 명기) - 신품가격 견적서(구입처) - 수리비 견적서, 영수증

나. 배상책임보험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피보험자(고객)가 준비하는 서류	- 피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 사고현장의 사진 - 사고보증서(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 합의서,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 청구서(송금요청서)
손해액을 평가하는 서류	- 손해품목 명세서 - 견적서, 영수증(세금계산서) - 피해품 사진 - 차량등록증 사본 - 치료비 영수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후유장애진단서(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 임금대장, 소득세 납세증명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피해자의 신분증(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등기부등본(피해목적물이 건물인 경우) - 차량등록증 사본(피해목적물이 차량인 경우)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피해목적물이 중기인 경우)



6. 홀인원비용, 알바트로스비용 보험

※ 사고에 따라 담당자가 추가서류 또는 원본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필요서류
피보험자(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서류	- 보험금청구서(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청구인 신분증 사본
피보험자(고객)가 준비하는 서류	- 보험금 청구서(송금요청서) - 사고경위서(6하 원칙에 의거하여 작성) - 스코어 카드 - 동반자 확인서(홀인원/알바트로스 증명서) (동반 경기자, 동반 캐디, 해당 골프장 책임자 등의 공동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등 비용 지출 명세서(선불카드, 상품권 등의 물품전표 제외)



7. 당부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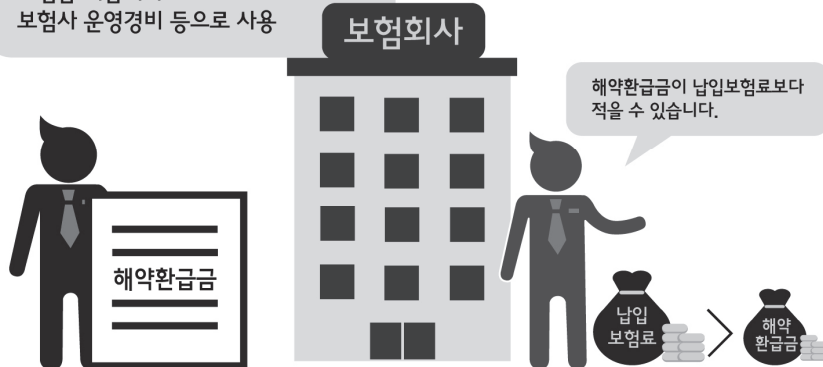
- 경우에 따라 위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담당자와 필요 서류에 대하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보상상담 1588-0100으로 문의바랍니다.

IV.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사례1. 가입초기 환급률 과소 관련

-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이나
보험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



사례2. 적립부분 환급률 관련

- 사례 : A씨는 보험가입 3년 후 콜센터를 통하여 가입한 상품의 환급률을 확인해 보았으며, 최초 가입시 가입설계서에서 안내받은 3년시점의 환급률보다 낮은 것에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지표금리에 연동되며, 공시이율의 변경에 따라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례3. 실손의료비 공제금액 관련

- 사례 : A씨는 병원 치료후 급여의료비 및 비급여의료비를 실손의료비 보험금으로 청구하였으나, 각각 공제금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는 급여의료비와 비급여의료비로 구분되어 있고, 공제금액을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례4. 실손의료비 한방 비급여 면책관련

- 사례 : A씨는 치료목적으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비급여부분이 보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고객 권리 안내문

가.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고객의 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이용목적만으로 사용되며, 보험관련 금융서비스는 제후회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제후·부가서비스, 신상품서비스 등은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고객 권리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타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주소·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해당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자 제한 : 신규 거래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본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라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본인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CE신용평가정보(주)	02-2122-4000	www.niceinfo.co.kr
서울신용평가정보(주)	1577-1006	www.sci.co.kr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6000	www.koreacb.com

다. 고객불편사항 연락처

• 고객 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 신청

고객은 가입신청 시 동의한 본인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또는 당사의 보험·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제공·활용을 중단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인프라를 해하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업무위탁회사 등에 대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동의철회는 제한됩니다.

본인정보 활용의 제한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 080-323-0100

· 홈페이지 : www.idbins.com

· 우 편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DB금융센터)

DB손해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파트

※ 단, 신규거래 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의 신청과 관련한 불편과 애로가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개인신용정보 고충처리담당자	손해보험협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연락처	(02) 3011-4989	(02) 3702-8500	1332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DB금융센터) DB손해보험주식회사 소비자보호파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15층 (중학동, 케이트원타워 B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VI.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의무라고도 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에 대해서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될 의무를 지는데 이것을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였거나 보험계약자의 책임개시 이후 2년이 경과(건강진단을 받은 경우는 1년 경과, 상법에서는 3년)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위험이 증가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이다. 우리 상법 제652조와 제653조에서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통지를 받은 보험회사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행 손해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위험의 변경사항 발생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보험료가 증액 또는 감액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회사는 변경 전 보험요율의 변경 후 보험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와는 달리 보험계약 안에서 인정되는 의무이다.

만기환급금

장기의 적립형보험에 있어서 보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사고가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중 일정률의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 포함된 적립보험료를 운용한 예정이자와 원리금의 합계액에 상당한다.

미경과보험료 [Unearned Premium]

미경과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영업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나머지 6개월(미경과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미경과보험료라 한다.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보험가액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보험자가 지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시에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함이다. 보험가액의 경우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 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보험계약대출 [Policy Loan]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계약이다. 보험기간 중 사정변경으로 보험료 지급의 계속이 곤란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전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해지 대신 보험계약 해지시 지급하여야 할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대출을 함으로써 보험계약을 유지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

보험계약일

계약자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날,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료 [Premium]

보험계약에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보험자가 위험부담이라는 급부를 제공하는 데 대응해서, 다른 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 보수를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다. 보험료의 액수는 통상 보험금액에 따라,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 1) 보장보험료 :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보험료
- 2) 적립보험료 :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 3) 적립부분 순보험료 :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후의 금액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신체 및 비용관련 손해에 한하며,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는 제외) 또는 만기환급금 지급시기에 만기환급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보험안내자료 [Insurance Guide Materials]

보험상품의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료로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을 하는 자의 명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기타 보험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에 제출한 사항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우 외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의 배당 등 예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수 없다.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부담보기간

부담보(특별조건부 인수특약)기간이란 보험사에서 표준미달체의 보험계약시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가입이 제한되는 피보험자의 계약을 조건부로 승낙하는 경우, 혹은 도덕적 해이 등에 의한 보험사기가 우려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계약 청약시 피보험자가 병력에 대해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보험회사에서는 해당 질병 및 부위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계약을 인수할 때 발생한다. 부담보기간은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 치료기간, 치료부위 등에 따라 상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기간 전기간에 걸쳐 부담보하는 조건으로 인수를 하기도 한다. 암보험에서 계약체결 이후 90일간 암 담보를 하지 않는 것은 대표적인 부담보 사례라 할 수 있다.

자동갱신제도

보험계약기간의 만료시점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갱신하고 싶지 않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동일한 계약내용을 동일 기간동안 연장하는 제도이다. 계약자가 갱신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거나, 보험료 수준 변동내역 등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만료 전에 계약 만료시점과 보험료 변동내역을 유선 혹은 문서로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동 사항을 안내받은 보험계약자가 갱신거절을 보험회사에 통보할 경우 보험계약은 갱신되지 않으며, 총 보험금 지급금액 등 보험회사가 정한 일정한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갱신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동갱신제도의 적용은 1년 만기 일반보험 상품이나 장기보험 의료비 특약 등에서 이루어진다.

계약자적립액

계약자적립액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장래의 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또한 보험계약상의 이익을 받고 일정한 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일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들은 보험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없으나, 다만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동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손해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목적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향유한 자이어야 한다.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재산손해 및 배상책임관련 손해의 경우에는 사고의 발생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해당 보험금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해약 및 해제 등의 경우에 계약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해약환급금은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 국내에서는 해약시점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에서 미상각된 신계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해약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에 기인하게 되는데 첫째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부분에 의해 발생되며, 둘째는 평준보험료방식 때문에 발생된다. 평준보험료방식에서는 계약초기에 피보험자의 위험수준에 비해 다소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 부분이 적립되어 향후에 위험수준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되는 시기에 사용된다.

휴면보험금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만기되어 보험금이나 환급금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계약이 실효된 뒤 3년이 경과된 계약의 환급금, 만기가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휴면보험금은 청구권이 소멸된 금액으로서 상법상으로는 보험회사에 귀속되나, 당연히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휴면보험금이 확인될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환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 등이 자신의 휴면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설치·운영('06.4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험계약자가 생·손보험회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을 포함한 쏘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0.7월)하였다. 한편, 보험회사는 휴면보험금을 휴면예금관리재단(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16.9.23))에 출연하고 동 재단에서 휴면보험금 관리·환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VII. 프로미라이프 지식백과

아래의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발간한 「보험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 핸드북 내용을 요약한 자료로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험상품 내용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듣기

1. 반드시 설명을 들어야 할 사항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638조의3, 보험업법 제95조의 2)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료와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제한 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 통념상 그 사항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해석되는 사유를 말합니다.

2. 설명의무 위반의 입증책임 및 효과

보험약관의 교부와 중요한 내용을 설명했다는 증명은 보험회사가 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의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등의 사유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경우, 그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도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보험회사가 약관 교부·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약관 조항을 보험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며(약관규제법 제3조), 상법상 보험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8조의3 제2항)

2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이행하기

1. 고지의무의 내용

보험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도 일정한 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고지의무 이행 방법

‘중요한 사항’의 내용은 대부분 보험사가 동일하며, 주로 현재 및 과거의 질병이나 장애, 직업 등에 대한 사항으로서,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발생 개연성을 측정하여 보험계약 체결여부와 보험료 등을 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상법은 청약서에 기재된 사항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이내의 진단·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많은 다툼의 여지가 되는 항목이므로, 청약서에 있는 (병력사항)질문표에 기재함으로써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 한가지 주의할 점은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회사 등 고지수령권이 있는 자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나 계약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이 있지만,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따라서 청약서에 서면으로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대하여 고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겠습니다.

3. 고지의무 위반시 불이익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그 위반을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보험약관에는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날부터 1개월,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난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권리행사기간을 더욱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청약철회제도

1. 청약철회의 개념 및 대상

보험을 계약한 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거나 변심에 의한 경우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위약금이나 손해 없이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상품인 보험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가입여부를 다시 한 번 신중히 재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 보험종목은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중 가입기간 1년 이상 가계성 보험(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보험)으로, 자동차보험·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은 제외됩니다.

2. 청약철회 방법 및 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 문금융소비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기납입 보험료를 반환하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경우 일정한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에 기간별 가산이율을 더한 이율로 연단위 복리로 계산)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4 계약취소와 품질보증제도

1. 계약취소의 개념과 요건

보험 계약취소 제도는 보험 품질보증제도라고도 하며, 청약철회와 달리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사유라 함은 ①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주지 않거나, ②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③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를 의미하며, 이를 '3대 기본지킴기'라고도 합니다.

'3대 기본지킴기'를 위반한 계약에 대하여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자는 취소사유와 내용을 기재한 계약취소 청구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회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2. 계약취소의 효과

보험 계약취소 요청이 접수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보통약관

(2종, 4종, 8종,
9종, 10종, 11종)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49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1469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어	정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장해	【별표1】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해상태를 말합니다.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별표】에서 사용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검표(+) :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 :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③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어	정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	보장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말합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과 노동절을 제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애분류표(별표1)장애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통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애(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애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장애분류표 참조)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애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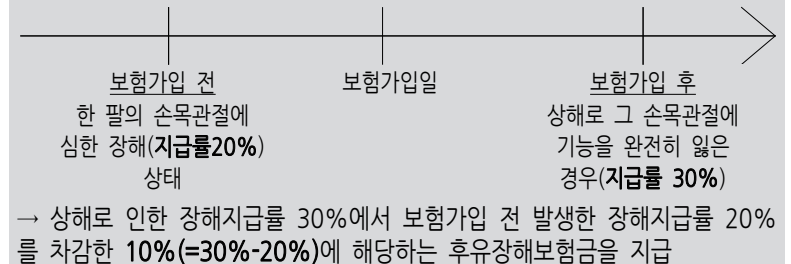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애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애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는 위의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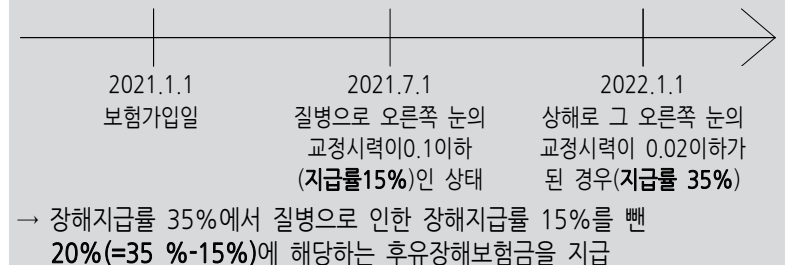
예시

보험금 지급 예시

①



②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손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26-1.(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흥행

각종 예능이나 스포츠를 입장권을 받고 관객에게 관람시키는 일 또는 준비 일체를 포함한 사업을 말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 (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7.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8.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7.(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위 ①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7.(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① 소송제기
 - ② 분쟁조정 신청
 - ③ 수사기관의 조사
 - ④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⑤ 아래 ⑥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⑥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분쟁조정 신청

용어
풀이

분쟁조정 신청은 보통약관 49.(분쟁의 조정)에 따르며 분쟁조정 신청 대상기관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말합니다.

- ③ 위 ②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합니다.
- ④ 위 ②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가지급보험금

용어
풀이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⑤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위 ②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7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위 ②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위 ⑥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정당한 사유

용어
풀이

사회통념상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책임을 물을 만한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9. (만기환급금의 지급)

(2종, 4종, 8종, 10종, 11종)

-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36.(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①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⑤ 위 ①에서 적립하는 적립부분 순보험료에는 9-1.(태아기간 적립환급금 지급)에서 정한 태아보장기간 동안 적립한 적립부분 순보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시이율

용어
풀이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2%일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2%)로 적립됩니다.

(9중)

이 계약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은 9중으로 가입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구분**

유의 사항

2중, 4중, 8중, 10중, 11중 : 해약환급금 지급형
9중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9-1. (태아기간 적립환급금 지급)(2중, 4중, 8중, 10중, 11중만 적용)

- ① 회사는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1.(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태아보장기간이 끝난 때에 태아보장기간 동안 적립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회사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태아기간 적립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36.(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 ①에 의한 태아기간 적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의한 적립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적립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10.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11.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12.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그 밖의 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13.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예시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 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4.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용
문구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예시

보험청약시 보험회사의 요구에 의하여 보험계약자가 작성하는 질문표에 기재된 질문사항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문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보험자는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용어
풀이

직업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② 위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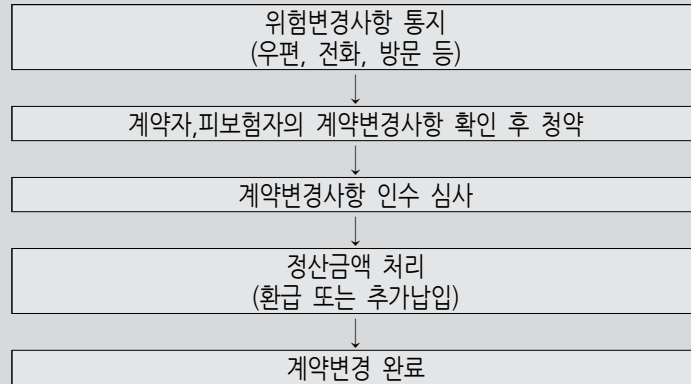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 ②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 ③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 ④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22.(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보험
지식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 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④ 위 ①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보험요율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등의 비율을 말하며, 보험료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기초로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을 준수하여 산출 됩니다.



예시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 → 3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3급 0.6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6) = 5천만원

-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 ①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위 ④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1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②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15.(계약 후 알릴 의무) ①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위 ①.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을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35.(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위 ①.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⑤ 위 ①.②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15.(계약 후 알릴 의무) ④ 또는 ⑤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④ 및 ⑤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⑧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②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17. (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18.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우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특별보험료를 추가로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 ⑤ 회사가 위 ②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⑥ 위 ⑤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②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⑦ 위 ⑤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⑧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위 ⑤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19.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용어
풀이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⑥ 위 ①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20.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① 서면교부
 - ② 우편 또는 전자우편
 - ③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위 ①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①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
지식

약관의 중요한 내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 2(설명 의무의 중요사항 등)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35조의2 (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에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용어
풀이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인용
문구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용어
풀이

자필서명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②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⑤ 위 ③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1.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용어
풀이

심신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정신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

심신박약자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 ③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위 ②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2.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합니다. 다만 해약환급금 미지급형(9종)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의 증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① 보험종목
- ② 보험기간
- ③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 ④ 계약자, 피보험자
- ⑤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보험계약 구분

유의 사항

2종, 4종, 8종, 10종, 11종 : 해약환급금 지급형
9종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시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합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위 ①⑥의 규정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5.(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감액

보험료, 보험금, 계약자적립액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약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⑤ 계약자가 위 ②의 규정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위 ①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 ⑦ 위 ①에 따라 계약의 위험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의 변경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의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위 ①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는 등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만기(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23.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21.(계약의 무효) ②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청약서류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
지식**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계약해당일 계산 예시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24. (계약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풀이**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 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모든 법적 관계를 확정시키는 법원의 결정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실종의 선고(민법 제27조)**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 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제1항과 같습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미경과보험료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영업보험료 중에서 아직 당해 보험료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를 말한다. 가령 보험자가 1년치 보험료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받은 보험료의 1/2은 나머지 6개월(미경과기간)에 대응하는 것으로 미경과보험료라 합니다.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 ④ 위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8.(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라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8.(보험금의 지급절차)에 따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을 따릅니다.
- ⑤ 위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가지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를 따릅니다.
 - ①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5.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2종, 4종, 8종, 10종, 11종에 한하여 위 ①의 보험료는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손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보장보험료”라 합니다)와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이하 “적립보험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를 합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보험
지식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위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① 14.(계약 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②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③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할 때 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26.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용어
풀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26-1. (보험료 납입면제)

납입면제적용 : 4종, 8종, 9종, 10종, 11종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4종, 8종, 9종, 11종 가입시,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② 보험료 납입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③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26-1-1.(“납입면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11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 또는 보험나이 0세인 경우, 최초계약 또는 연장전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26-1-4.(“3대장애(선천성포함)” 및 “장애인” 정의)에서 정한 3대장애(선천성포함)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때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10종 가입시,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연장계약의 납입기간을 포함합니다)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① 연장전계약의 보험기간 또는 연장계약의 납입기간(이하 “납입면제대상기간”이라 합니다)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② 납입면제대상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③ 납입면제대상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26-1-1.(“납입면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11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 또는 보험나이 0세인 경우, 연장전계약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26-1-4.(“3대장애(선천성포함)” 및 “장애인” 정의)에서 정한 3대장애(선천성포함)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때

- ③ 회사는 위 ① 또는 ②에 따라 피보험자의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합니다.
- ④ 위 ① 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위 ①.① 및 ② 또는 ②.① 및 ②에서 정한 장애상태가 된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⑤ 위 ① 또는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①.④ 또는 ②.④에서 정한 3대장애(선천성포함)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①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에 해당하는 사유
 - ②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⑥ 위 ①.① 및 ② 또는 ②.① 및 ②에서 정한 장애상태에 대한 판정기준은 각각 26-1-3.(“50%이상후유장애”에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을 따릅니다.
- ⑦ 위 ①.④ 또는 ②.④의 3대장애(선천성포함)에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은 26-1-5.(“3대장애(선천성포함)에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을 따릅니다.
- ⑧ 위 ①.③ 또는 ②.③의 11대질병 진단에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은 26-1-2.(“납입면제 질병” 진단에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을 따릅니다.
- ⑨ 위 ① 내지 ⑧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별약관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⑩ 이 계약을 4종으로 가입한 경우, 위 ① 및 ③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었다 라도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자동 갱신되는 경우 갱신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⑪ 이 계약을 10종으로 가입한 경우, 위 ② 및 ③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가 된 때에는 회사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연장보험기간까지 계속 보장합니다.
- ⑫ 이 계약을 11종으로 가입한 경우, 위 ① 및 ③에 따라 보험료 납입면제가 되었다 라도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연장계약으로 연장되는 경우 연장 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아 연장계약의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⑬ 이 계약을 4종으로 가입한 경우, ①.④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에서 3대장애(선천성포함)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⑭ 이 계약을 10종 또는 11종으로 가입한 경우, ①.④ 또는 ②.④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에서 3대장애(선천성포함)로 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26-1-1. (“납입면제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11대질병”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5대난치성질환” 및 “특정3대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②에서 정한 “암”에서 ④에서 정한 “기타 피부암” 및 ⑤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보험 지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⑥ 위 ③의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⑦ 위 ⑥에 따른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⑧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은 25.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내지 ③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⑨ 이 계약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을 말합니다. 단, “신생아 뇌출혈”(뇌혈관질환 분류표, (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 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⑩ 위 ⑨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⑪ 이 계약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⑫ 위 ⑪의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⑬ 이 계약에 있어서 “5대난치성질환”이라 함은 「5대난치성질환 분류표」(별표71)5대난치성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재생불량성 빈혈”, “운동신경세포병”, “심근질환(I42.4(심내막탄력섬유증) 제외)”, “전신홍반루프스”, “만성 공팔병(5기)”을 말합니다.
- ⑭ 위 ⑬의 “5대난치성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임상적 증상과 함께 골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근전도검사 및 혈액검사 등 각 질환의 진단적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⑮ 위 ⑬의 “만성 공팔병(5기)”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N18.5(만성 공팔병(5기))」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신대체요법(복막투석, 혈액투석 및 신장이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일시적 투석치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신대체요법

- 복막투석: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뱃속으로 통하는 관을 삽입하여 투석액을 교환하는 시술
- 혈액투석: 인공 신장기를 이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 제거, 신체 내 전해질 균형 유지, 과잉 수분을 제거하는 시술
- 신장이식: 정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신장을 대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신장을 심어주는 수술

- ⑯ 이 계약에 있어서 “특정3대심장질환”이라 함은 「특정3대심장질환 분류표」(별표71)특정3대심장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및 심부전을 말합니다.

⑰ 위 ⑯의 “특정3대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 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에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26-1-2. (“납입면제 질병” 진단에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

- ①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해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26-1.(보험료 납입면제)의 ①.③ 또는 ②.③의 질병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질병은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그 질병이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가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③ 위 ②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②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④ 26-1.(보험료 납입면제)의 ①.③ 또는 ②.③에도 불구하고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사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26-1.(보험료 납입면제)의 ①.③ 또는 ②.③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로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가는 동안 그 “암(유사암제외)”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26-1.(보험료 납입면제)의 ①.③ 또는 ②.③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⑤ 위 ②의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가는 동안’ 및 ④의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가는 동안’이라 함은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⑥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위 ② 및 ④의 보험계약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⑦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6-1-3. (“50%이상후유장해”에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

- ①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26-1-4. (“3대장애(선천성포함)” 및 “장애인” 정의)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3대장애(선천성포함)”라 함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별표120】 장애인의 기준 분류표 참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26-1-5. (“3대장애(선천성포함)”에 관한 납입면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에게 3대장애(선천성포함) 중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봅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10종 가입시, 상해 또는 질병이 연장전계약의 보험기간 중 발생 또는 진단확정되었으나,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전계약의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따라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연장계약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연장전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의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연장전계약의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연장계약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③ 이 계약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보장보험료의 납입면제 여부를 판정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장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7.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8.(보험계약대출) ①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계약자는 아래 ①의 금액이 ②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① 위 ①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
- ②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 ③ 위 ① 및 ②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①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35.(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용어
풀이**자동대출납입**

보험료를 제때에 납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계약자가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해당 보험 상품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납입할 보험료를 자동적으로 대출하여 이를 보험료 납입에 충당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용
문구**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 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2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용어
풀이**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재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위 ①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③ 회사가 위 ①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위 ①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 ②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 ③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위 ①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 ④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 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⑤ 위 ③ 및 ④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 ④ 위 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35.(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용어
풀이**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 ② 위 ①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14.(계약 전 알릴 의무),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7.(사기에 의한 계약), 18.(보험계약의 성립) 및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을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합니다.)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용어
풀이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업무자료」 내 「보험상품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원금 100원, 이자율 연 10%를 가정할 때

- 1년 후 : 100원 + (100원 × 10%) = 110원

- 2년 후 : 110원 + (110원 × 10%) = 121원



용어
풀이

강제집행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30.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합니다. 22.(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위 ①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위 ①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31.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5.(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가 태아(胎兒)이며 피보험자가 출생하기 전에 계약자가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출생예정일'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태아의 부양자인 「제6장 산모관련 특별약관 및 제7장 부양자관련 특별약관」은 제외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는 경우 계약자는 의사소견서 등 ②의 태아가 출생하기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④ 21.(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35.(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2.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위 ①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35.(해약환급금) ①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33.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위 ①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위 ②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35.(해약환급금) ①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4.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①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위 ① 및 ③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35. (해약환급금)의 아래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① (2중, 4중, 8중, 10중, 11중 - 해약환급금 지급형) ⑤
 - ② (9중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 ⑦
- ⑤ 계약자는 위 ①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용어
풀이

제척기간

권리관계를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을 말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권리는 소멸됩니다.

35. (해약환급금)

(2종, 4종, 8종, 10종, 11종 - 해약환급금 지급형)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기인출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액을 빼고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공시이율이 보험기간 중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36.(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따라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0.2%로 합니다.
-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 ⑤ 34.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용어
풀이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 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외부지표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적립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0.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0.2%일 경우),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2%)로 적립됩니다.

(9종 -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단,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지될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없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이후 해지될 경우의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은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산출한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갱신형 특별약관 및 아래 대상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해지시점과 무관하게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대상 특별약관

엄마 상해사망, 모성사망, 유산치료비, 임신·출산질환치료비
 임신·출산질환치료비Ⅱ,
 특정임신중당뇨병진단비, 연속혈당측정기 제공 특정임신중당뇨병진단비
 임신·출산질환(유산제외)통원비(10회한도)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 태반조기박리진단비
 여성산과관련 자궁적출수술비
 다운증후군양육자금(매년10년간지급)
 분만전후출혈수술치료비
 양수과다증진단비, 양수과소증진단비
 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 신생아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저체중아입원일당, 극소저체중아입원일당
 저체중아출생보장, 장해출생보장,
 특정선천성대사이상및특수식이필요질환진단비, 출산전선별검사이상소견진단비
 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임신부)관리진단비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 또는 “보험나이 0세”인 경우,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해약환급금은 해지시점과 무관하게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해약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1.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9종)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 내용의 상품(이하, “표준형 해약환급금 상품”이라 한다.)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 해약환급금 상품”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2. 위 1.에서 “표준형 해약환급금 상품” 계약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9종)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동일 보장내용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은 상품과 비교·안내해 드립니다.
4. 보험료 납입기간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을 말합니다.



보험지식

해약환급금 예시(해약환급금 미지급형B : 9종)

- ① 납입기간 중 해지시 : 0원(해약환급금 미지급)
- ② 납입완료 후 해지시
(표준형 해약환급금 상품의 해약환급금이 100만원일 경우)
해약환급금 미지급형B의 해약환급금 : 100만원 × 50% = 50만원

- ④ 26-1.(보험료 납입면제)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계약 체결시 설정한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위 ①의 규정을 따릅니다.
- ⑤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7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 ⑦ 34. (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절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36.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2종, 4종, 8종, 10종, 11종에 한하여 적용

- ① 이 계약에서 적용부분 순보험료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여기서 공시이율은 「보장성 공시이율1701」(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율과 외부지표금리(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등의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계산)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가중평균

용어
풀이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증이율은 0.2%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②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37. (중도인출금)

- 2종, 4종, 8종, 10종, 11종에 한하여 적용

- ①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보험계약이 유효한 경우에 보험계약 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계약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매 보험년도마다 4회에 한하여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시점의 보통약관 해약환급금과 보통약관 적용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의 80%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년도

용어
풀이

보험계약일로부터 다음 해의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17년 2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2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14일까지의 1년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중도인출금의 한도 예시

중도인출을 요청하는 시점에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한 보통약관 해약환급금과 보통약관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30만원인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30만원) × 80% = 56만원

- ② 중도인출시 만기(해약)환급금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약)환급금이 감소합니다.

38.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위 ①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②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39.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관 보험계약의 자동갱신 등

40. (제7관(보험계약의 자동갱신 등) 적용범위)

이 관에서 정한 내용은 이 계약을 4종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1.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 ①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계약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종전의 계약」(이하 “갱신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갱신된 계약」(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③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위 ①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② 및 ③에 의하여 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42.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43. (자동갱신 적용)

- ① 회사는 보험가입 후 갱신계약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할 경우 이 계약에 대해서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 ③ ①의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어 보장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③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이 계약은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이 계약은 만료됩니다.
- ⑤ 회사가 ③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에 이 계약은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갱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해당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8관 보험계약의 연장 등

44. (제8관(보험계약의 연장 등) 적용범위)

이 관에서 정한 내용은 이 계약을 10종 또는 11종으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5. (“연장전계약” 및 “연장계약”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연장전계약”이라 함은 최초가입시 30세만기로 체결되어 있는 유효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연장계약”이라 함은 연장전계약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연장일”이라 합니다)에 보험기간을 연장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46. (연장의 적용)

- ① 연장전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 완료되고, 연장전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연장전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연장계약으로 연장합니다.
- ② 연장 대상 보장은 연장전계약에 유효한 보장으로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대상에 한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①에 의하여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연장전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연장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47. (연장계약의 보험료 납입)

연장계약의 보험료는 연장전계약의 보험료 등에 관계없이 연장시 선택한 연장계약의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등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48. (연장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연장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연장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28.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장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연장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연장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9관 분쟁조정 등

49. (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

용어
풀이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50.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51. (소멸시효)

- ①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적립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② 제 ①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예시

예시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2.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용어
풀이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2조(신의성실) 제1항

-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53.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용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

용어
풀이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54.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용어
풀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 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55.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56.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57.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2종, 4종, 8종,
9종, 10종, 11종)

제1장 상해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49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1469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90세/100세 만기 또는 10/15/20년 만기

1 | 상해후유장해(20-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후유장해(20-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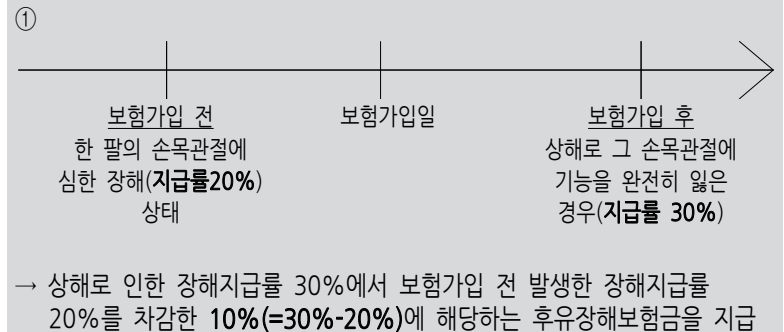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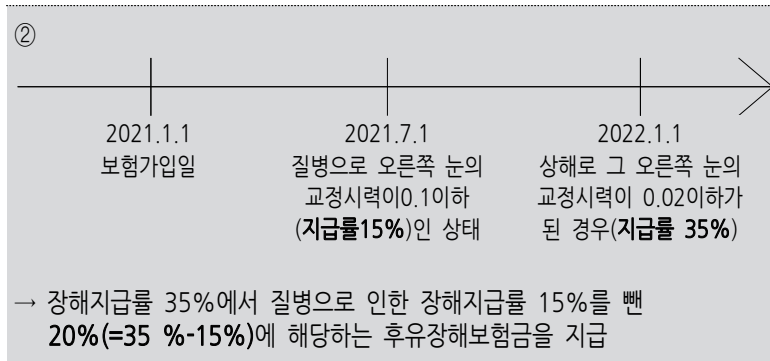
-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될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될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 상해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 상해수술비Q(특정경증상해제외)(동일사고당 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특정경증상해제외)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특정경증상해」란 치아의 파절, 치아의 탈구를 말합니다.〔별표76〕 특정경증상해 분류표 참조)
- ③ 위 ①의 상해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옹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보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치아의 파절 (S02.5), 치아의 탈구(S03.2)【별표76】 특정경증상해 분류표 참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자전거탑승중”이라 함은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거나, 운행중의 자전거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②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전거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에서 자전거라 함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호 및 제1호의 2 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며, 그 부속품(적재물 포함)도 포함합니다. 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7호 가목 3)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레일에 의해 운전하는 차, 신체장애자용 휠체어 및 유아용 3륜 이상의 차는 제외합니다.
- 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자전거탑승중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전거탑승중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자전거탑승중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자전거탑승중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자전거탑승중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여 산악지대를 오르내리는 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 ①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자전거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
 - ② 자전거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 ③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전거탑승중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6 | 팔 및 손가락 후유장해(3-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어깨 부위 이하가 절단되었거나 어깨부위, 팔꿈치, 손목 및 손가락에 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팔 및 손가락 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될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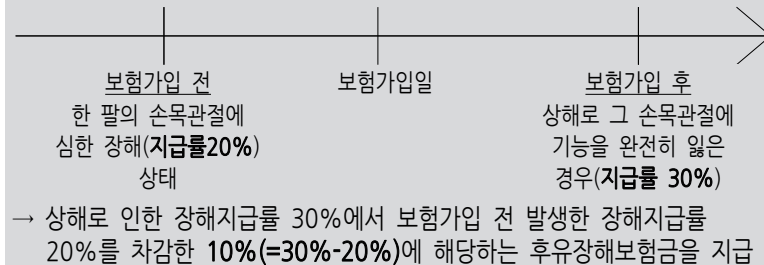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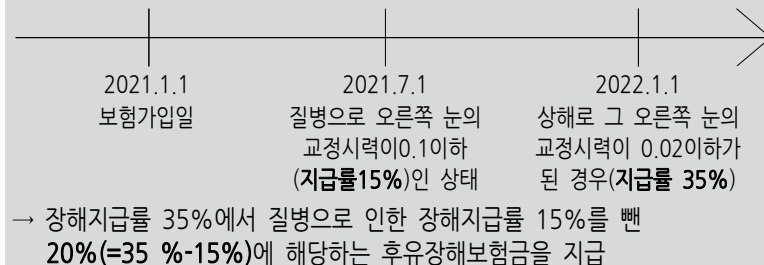
예시

보험금 지급 예시

①



②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 상해수술비Q(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상해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 |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 골절진단비(치아포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분류표【별표5】골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포함)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포함)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⑤ 치과치료관련 증명서(치아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가.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식)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나. 회사는 상기 “가”의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 5대골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5대골절분류표(별표4)5대골절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5대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5대골절진단비로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5대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2 위 1)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 상해수술비Q(특정경증상해제외)(10년후2배체증)(동일사고당 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특정경증상해제외)의 직접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해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상해수술비 (특정경증상해제외) (10년후2배체증) (동일사고당 1회지급)	기준일로부터 1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준일로부터 10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0%

- 2 위 1)의 「특정경증상해」란 치아의 파절, 치아의 탈구를 말합니다.〔별표76〕 특정경증상해 분류표 참조)
- 3 위 1)의 상해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4 위 1)의 기준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기준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또한 태아보장기간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10년미만에 해당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으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치아의 파절 (S02.5), 치아의 탈구(S03.2)〔별표76〕 특정경증상해 분류표 참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3 | 화상치료비Q(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3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화상치료비Q(화상진단)
2. 화상치료비Q(화상수술)(동일사고당1회지급)
3. 화상치료비Q(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

2. (보험금의 지급사유)

2-1. (보험금의 지급사유(화상치료비Q(화상진단)))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분류표(별표3)화상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동일한 상해사고(화상)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2. (보험금의 지급사유(화상치료비Q(화상수술)(동일사고당1회지급)))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화상분류표(별표3)화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화상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화상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화상)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3. (보험금의 지급사유(화상치료비Q(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이하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라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 화상 및 부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2-1. (보험금의 지급사유(화상치료비Q(화상진단))) 및 2-2. (보험금의 지급사유(화상치료비Q(화상수술)(동일사고당1회지급)))의 화상이라 함은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고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2-2. (보험금의 지급사유(화상치료비Q(화상수술)(동일사고당1회지급)))보장의 경우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라 함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 이상의 3도 화상 또는 부식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법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 ②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3. (보험금의 지급사유(화상치료비Q(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에서 정한 세부보장 “화상치료비Q(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를 지급한 경우 “화상치료비Q(중대한화상및부식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 골절수술비Q(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골절분류표(별표5)골절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골절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골절)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 골절수술비Q(치아파절제외)(동일사고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별표2)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수술비(치아파절제외)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골절수술비(치아파절제외)는 동일한 상해사고(골절(치아파절제외))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비(치아파절제외)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치아의 파절 (S02.5)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 지급사유가 두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손상(별표6)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6)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 ①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써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격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써,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요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요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③ 위 ②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④ 위 ②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중대한 특정상해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 뇌·내장손상수술비(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 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내장손상수술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뇌·내장손상수술비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뇌·내장손상수술비만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 손상(별표32) 뇌·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32) 뇌·내장손상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 ①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써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격막, 중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써,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요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요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③ 위 ②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④ 위 ②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내장손상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등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상해흉터복원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② 위 ①의 상해흉터복원수술이란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15만원]

구 분	안면부	상지 · 하지
지급액	수술 1cm당 30만원	수술 1cm당 15만원 (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단, 길이측정이 불가능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
 - ③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 탈구염좌, 과긴장수술비(치아탈구제외) (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탈구, 염좌 및 과긴장(치아탈구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에 대한 직접적 치료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탈구, 염좌, 과긴장수술비(치아탈구제외)로 지급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탈구, 염좌 및 과긴장(치아탈구제외)”이라 함은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치아탈구제외) 분류표(별표37)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치아탈구제외)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의 탈구, 염좌, 과긴장수술비(치아탈구제외)는 동일한 상해사고(탈구, 염좌 및 과긴장(치아탈구제외))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탈구, 염좌, 과긴장수술비(치아탈구제외)만 지급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 스쿨존 교통사고보험금(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만 12세 이하인 피보험자, 이하 「피보험자」라 합니다)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아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사고당 스쿨존교통사고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용어
풀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항」에 의하여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 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③ 위 ①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 ②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③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②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어린이보호구역내교통사고는 관할경찰에 교통사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사건에 한하며,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 | 척추골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척추골절 분류표(별표61)척추골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척추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척추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척추골절진단비로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척추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 | 골절진단비(치아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별표2)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진단비(치아제외)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진단비(치아제외)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직·간접 원인을 묻지 않고 치아골절(파절)손해 또는 치아골절(파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고로 골절(치아제외)이 치아골절(파절)과 동시에 발생한 경우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라 보장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 |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 | 상해1-5종수술비ⅡQ(동일사고당 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상해1-5종수술비ⅡQ(1종, 동일사고당 1회지급)
2. 상해1-5종수술비ⅡQ(2종, 동일사고당 1회지급)
3. 상해1-5종수술비ⅡQ(3종, 동일사고당 1회지급)
4. 상해1-5종수술비ⅡQ(4종, 동일사고당 1회지급)
5. 상해1-5종수술비ⅡQ(5종, 동일사고당 1회지급)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5종수술(동일) 분류표”(별표78) 1~5종수술(동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해 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1종	상해1-5종수술비ⅡQ(1종, 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2종	상해1-5종수술비ⅡQ(2종, 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3종	상해1-5종수술비ⅡQ(3종, 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4종	상해1-5종수술비ⅡQ(4종, 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5종	상해1-5종수술비ⅡQ(5종, 동일사고당 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 ② 위 ①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동일) 분류표”【별표78】 1~5종수술(동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 |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성장판부위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성장판 손상’에 대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성장판손상골절진단비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성장판부위골절이 발생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성장판부위골절” 및 “성장판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성장판손상골절’ 이라 함은 「성장판부위골절 분류표」(별표102) 성장판부위골절 분류표)에서 정한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어깨 및 위팔의 골절, 아래팔의 골절,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대퇴골의 출산손상,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의 골절을 말합니다.
- ② “성장판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X-ray, CT, MRI 등 영상검사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 주요상해 뇌출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3. (“주요상해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주요상해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주요상해뇌출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중환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주요상해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주요상해뇌출혈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주요상해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주요상해뇌출혈”이라 함은 주요상해뇌출혈 분류표【별표113】주요상해뇌출혈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 ② 주요상해뇌출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컴퓨터단층촬영(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주요상해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주요상해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상해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 | 창상붕합술치료비(안면부, 1일1회한, 연간3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를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 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 치료비는 연간 3회한도로 보장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안면부

용어
풀이

이마를 포함하여 경부(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이라 함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창상붕합술”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창상붕합술”이라 함은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별표127)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 | 창상봉합술치료비(1일1회한,연간3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창상봉합술 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창상봉합술 치료비는 연간 3회한도로 보장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구 분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창상봉합술 (안면과 경부 이외)
지급기준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안면부

용어
풀이

이마를 포함하여 경부(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 창상봉합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여 창상봉합술”이라 함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창상봉합술”이라 함은 「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별표128) 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급여 창상봉합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급여 창상봉합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9 |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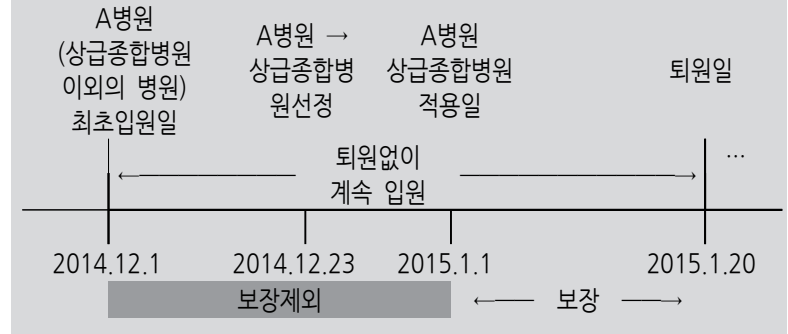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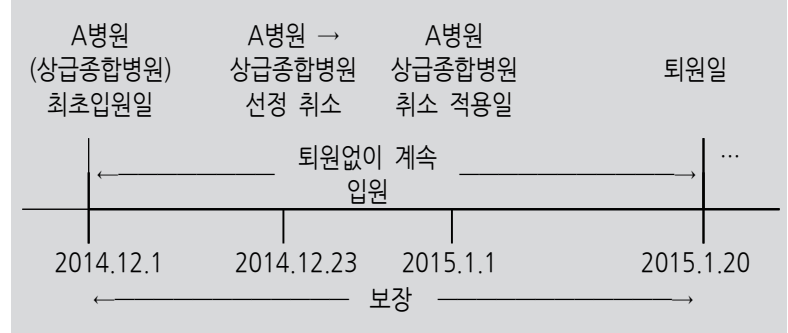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예시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4.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4.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0 |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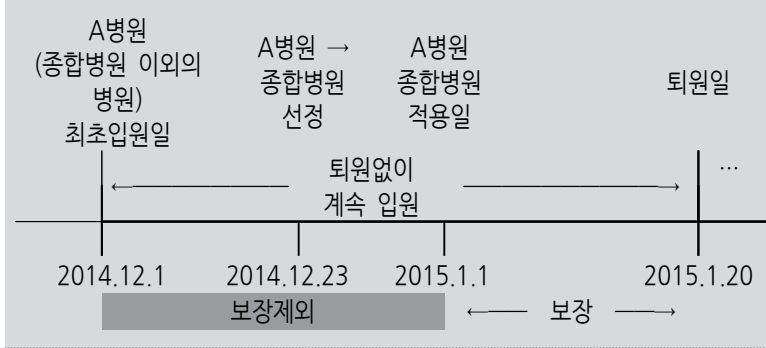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180일 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180일 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180일 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 이상180일 한도)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험
지식**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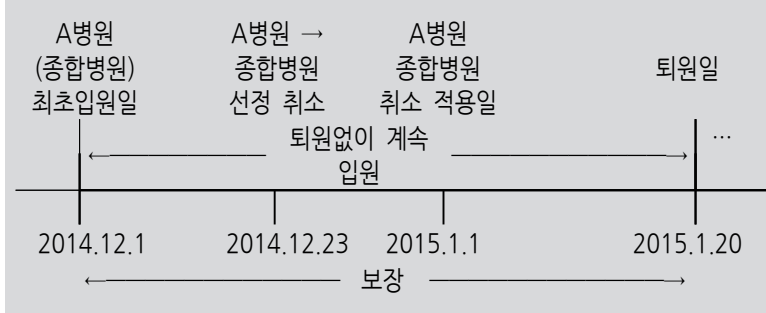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종합병원 입원 중에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예시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1 | 골절철심제거수술비Q(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별표2)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참조)에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철심제거수술비(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골절철심제거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골절철심제거술”이라 함은 「골절철심제거술 대상 수가코드」(별표92)골절철심제거술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골절철심제거술”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골절철심제거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골절철심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2 |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진단비 (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3.("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신규등록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상해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으나, 허위 또는 부당 등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중증화상 산정특례 재등록

법령에서 정한 중증화상 산정특례기간(1년) 종료 후 2년이내에 <중증화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V306 제외)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41)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중증화상으로 진료를 받아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판단하는 시점의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치매가 외래 또는 입원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보험
지식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중증화상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중증화상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4.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에 따른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예시)

**보험
지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제도의 변경으로 산정특례대상의 구분이 세분화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등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며, 해당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위 ②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된 위 ⑥ 및 ⑦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⑨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⑩ 위 ② 내지 ⑦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용 영수증)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3 |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3.("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등록된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상해로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보험금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④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상해로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한 입원 첫날을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으나, 허위 또는 부당 적용사실이 등록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42)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진료를 받아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판단하는 시점의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치매가 외래 또는 입원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보험
지식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증외상환자는 손상중증도점수가 측정된 진료기간의 최초 내원일로부터 최대 30일간 산정특례를 적용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기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권역외상센터에서 대하여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를 적용

4.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에 따른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예시)

보험 지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제도의 변경으로 산정특례대상의 구분이 세분화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등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며, 해당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위 ②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된 위 ⑥ 및 ⑦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⑨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⑩ 위 ② 내지 ⑦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용 영수증)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4 | 상해수술비Q(10년후2배체증)(동일사고당 1회지급) (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상해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상해수술비 (10년후2배체증) (동일사고당 1회지급)	기준일로부터 1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준일로부터 10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0%

- ② 위 ①의 상해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의 기준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 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기준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또한 태아보장기간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10년미만에 해당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5 | 상해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 (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상해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1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 상해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2종,동일사고당1회지급)
3. 상해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3종,동일사고당1회지급)
4. 상해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4종,동일사고당1회지급)
5. 상해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5종,동일사고당1회지급)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5종수술(동일) 분류표”(별표78) 1~5종수술(동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해 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상해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 (1종,동일사고당1회지급)	기준일로부터 10년미만	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해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 (2종,동일사고당1회지급)		
상해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 (3종,동일사고당1회지급)	기준일로부터 10년이상	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0%
상해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 (4종,동일사고당1회지급)		
상해1-5종수술비ⅡQ(10년후2배체증) (5종,동일사고당1회지급)		

- ② 위 ①에서 정한 상해1-5종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의 기준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 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기준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또한 태아보장기간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10년미만에 해당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동일) 분류표”【별표78】1~5종수술(동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6 |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종합병원 1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1인실'은 '특실' 병실도 포함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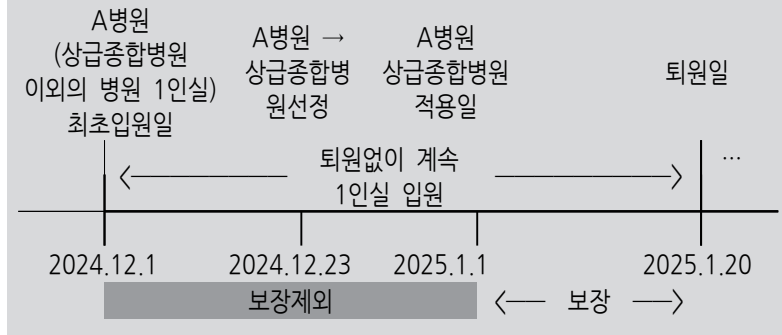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1인실에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1인실에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1인실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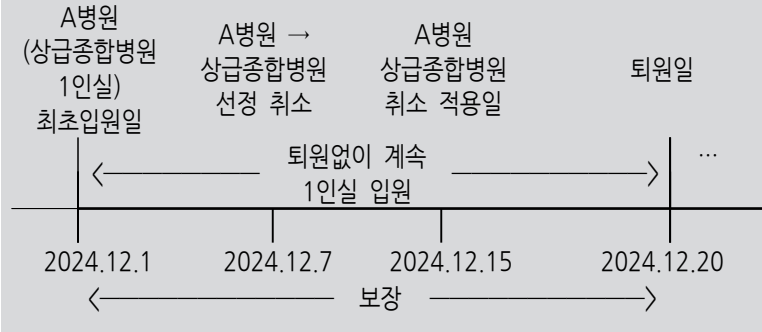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1인실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예시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7 | 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1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종합병원 1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위 ①의 '1인실'은 '특실' 병실도 포함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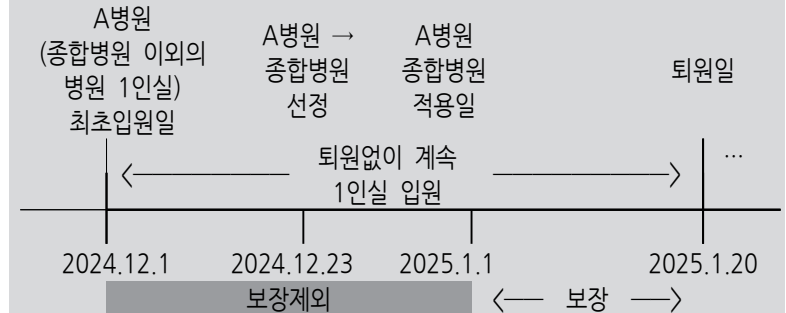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1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1인실에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1인실에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1인실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1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1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4.(“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의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1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4.(“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1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예시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1인실 입원 중에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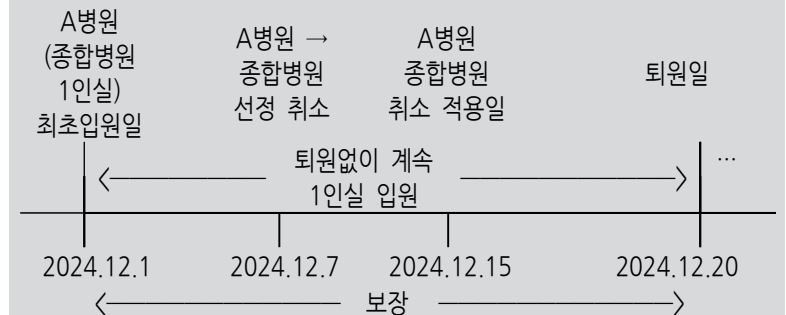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1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예시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중에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예시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4.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4.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8 |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에 18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정신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정신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9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1일당 8시간 이상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 위 ①의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시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 지급예시1)(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10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11월 15일 오후 8시 ~ 2025년 11월 18일 오전 11시

1일기준	2025년 11월		
	15일 오후8시~ 16일 오후8시이전	16일 오후8시~ 17일 오후8시이전	17일 오후8시~ 18일 오후8시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5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0	0	0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3일 = 15만원

지급예시2)(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10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11월 15일 오전 9시 ~ 2025년 11월 17일 오후 3시

1일기준	2025년 11월		
	15일 오전9시~ 16일 오전9시이전	16일 오전9시~ 17일 오전9시이전	17일 오전9시~ 18일 오전9시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6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0	0	X

- 11월 17일 오전9시부터 18일 오전9시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6시간으로 8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지급예시3)(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4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5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10월 26일 오후 9시 ~ 2025년 10월 29일 오전 8시

1일기준	2025년 10월		
	26일 오후9시~ 27일 오후9시이전	27일 오후9시~ 28일 오후9시이전	28일 오후9시~ 29일 오후9시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1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10월 27일이 180일째 입원일,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
→ 10월28일부터 180일한도 초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월 27일은 180일째 입원일로 27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이내
8시간 이상 간병인 사용시 → 보험금을 지급함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6.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용어 풀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0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6.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 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6.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단, 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위의 사고증명서는 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합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2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1일당 8시간 이상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 ③ 위 ①의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 181일째 입원일에 이전에 간병인을 사용하여 181일째 입원일 이후 까지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을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으로 봅니다.



예시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및한방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
(181일이상)

지급예시1)(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4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5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5월 1일 오후 8시 ~ 2025년 10월 31일 오전 7시

1일기준	2025년 10월			
	28일	29일	30일	31일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7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0	0	0	X

-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이므로 10월 28일이후부터 보장
- 10월 31일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7시간으로 8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및한방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
(181일이상)
: 5만원 × 3일 = 15만원

지급예시2)(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4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5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11월 15일 오전 9시 ~ 2025년 11월 17일 오후 3시

1일기준	2025년 11월		
	15일 오전9시~ 16일 오전9시이전	16일 오전9시~ 17일 오전9시이전	17일 오전9시~ 18일 오전9시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6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0	0	X

-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이므로 10월 28일이후부터 보장가능
- 11월 17일 오전9시부터 18일 오전9시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6시간으로 8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및한방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
(181일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하던 중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정신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정신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6.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용어 풀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3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 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 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던 중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정신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정신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6.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단, 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위의 사고증명서는 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4 | 통합상해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3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상해진단비(경증상해)(부위별 연간1회한)
2. 통합상해진단비(중등증상해)(부위별 연간1회한)
3. 통합상해진단비(중증상해)(부위별 연간1회한)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통합상해사고」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세부보장에 따라 각각 부위별로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통합상해진단비를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부위	지급금액
경증	머리 및 목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복부 및 등	
	어깨 및 팔	
	손목 및 손	
	엉덩이 및 다리	
	발목 및 발	
	기타	
중등증	머리 및 목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복부 및 등	
	어깨 및 팔	
	손목 및 손	
	엉덩이 및 다리	
	발목 및 발	
	기타	

세부보장	부위	지급금액
중증	머리 및 목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
	복부 및 등	
	어깨 및 팔	
	손목 및 손	
	엉덩이 및 다리	
	발목 및 발	
	기타	

- ② 위 ①의 “연간”이라 함은 보험기간 시작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통합상해사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상해사고”이라 함은 「통합상해사고 분류표」(별표185)통합상해사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상해사고를 말합니다.
- ② 「통합상해사고」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전산화단층촬영(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방사선 촬영(X-ray), 기타 정밀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통합상해사고」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5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 (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1일당 8시간 이상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①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지급기준	경과기간	지급금액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요양병원제외) (체증형) (1일당8시간이상) (1일이상180일한도)	기준일로부터 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준일로부터 5년이상 1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20%
	기준일로부터 10년이상 1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0%
	기준일로부터 15년이상 2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80%
	기준일로부터 20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0%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지급기준	지급금액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 (요양병원제외)(체증형) (1일당8시간이상) (1일이상180일한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0%

- ② 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 ③ 위 ①의 기준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 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기준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시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 8시간이상) 지급예시1)(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10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11월 15일 오후 8시 ~ 2025년 11월 18일 오전 11시

1일기준	2025년 11월		
	15일 오후8시~ 16일 오후8시이전	16일 오후8시~ 17일 오후8시이전	17일 오후8시~ 18일 오후8시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5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O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3일 = 15만원

지급예시2)(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10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11월 15일 오전 9시 ~ 2025년 11월 17일 오후 3시

1일기준	2025년 11월		
	15일 오전9시~ 16일 오전9시이전	16일 오전9시~ 17일 오전9시이전	17일 오전9시~ 18일 오전9시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6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11월 17일 오전9시부터 18일 오전9시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6시간으로 8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지급예시3)(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4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5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10월 26일 오후 9시 ~ 2025년 10월 29일 오전 8시

1일기준	2025년 10월		
	26일 오후9시~ 27일 오후9시이전	27일 오후9시~ 28일 오후9시이전	28일 오후9시~ 29일 오후9시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1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10월 27일이 180일째 입원일,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
→ 10월28일부터 180일한도 초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월 27일은 180일째 입원일로 27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이내 8시간 이상 간병인 사용시→ 보험금을 지급함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6.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6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체증형) (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①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 (요양병원)(체증형) (1일이상180일한도)	기준일로부터 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준일로부터 5년이상 1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20%
	기준일로부터 10년이상 1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0%
	기준일로부터 15년이상 2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80%
	기준일로부터 20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0%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체증형) (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가입금액의 200%

- ② 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 ③ 위 ①의 기준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 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기준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병원)(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6.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용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7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체증형) (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 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①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 (체증형) (1일이상180일한도)	기준일로부터 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준일로부터 5년이상 1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20%
	기준일로부터 10년이상 1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0%
	기준일로부터 15년이상 2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80%
	기준일로부터 20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0%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 (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가입금액의 200%

- ② ①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 ③ 위 ①의 기준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 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기준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6.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단, 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위의 사고증명서는 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8 |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비Q(동일사고당 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상해수술비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수술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수술”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9 | 상급종합병원2,3인실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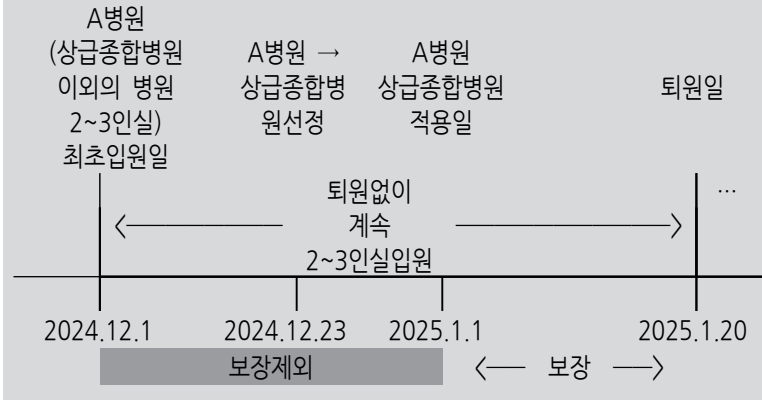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2~3인실에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 전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2~3인실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4.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예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2~3인실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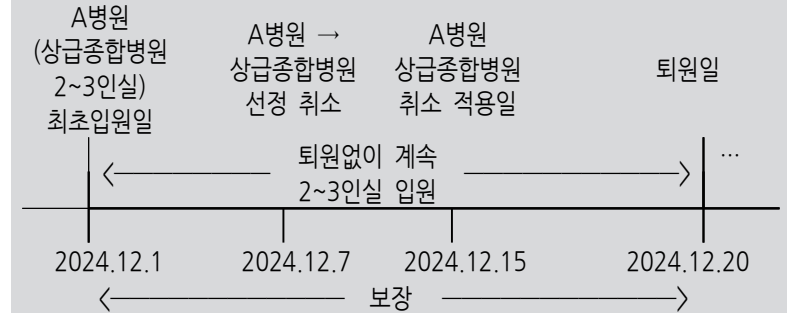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예시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예시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4.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4.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④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⑤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층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0 | 종합병원 2~3인실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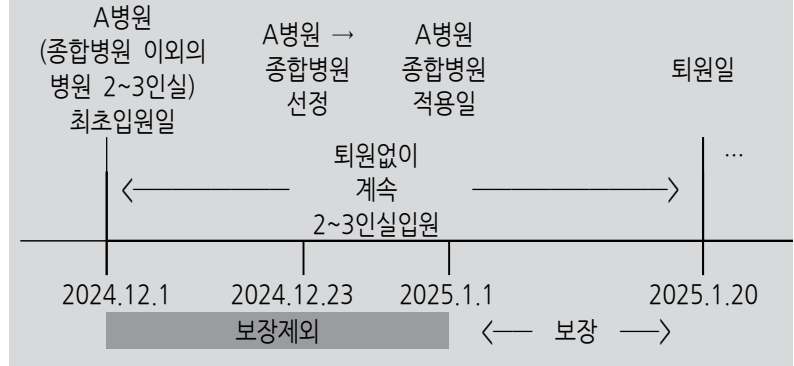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의 2~3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2~3인실에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2~3인실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4.(“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의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4.(“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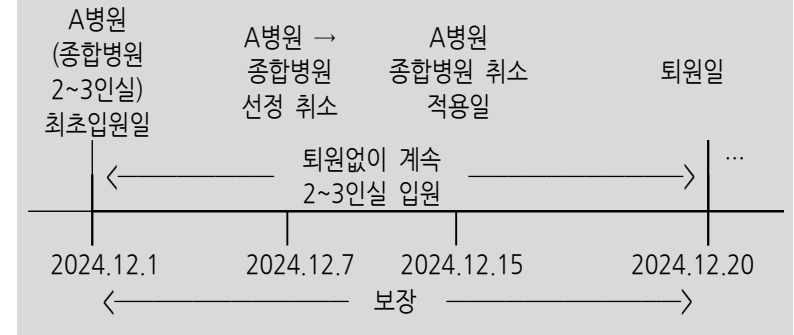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2~3인실 입원 중에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종합병원 2~3인실 입원 중에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예시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4.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4.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1 | 소아청소년과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소아청소년과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소아청소년과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의 소아청소년과를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소아청소년과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소아청소년과”의 정의)

“소아청소년과”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의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소아청소년과를 말합니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4. (“소아청소년과”의 정의)의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이 의료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 내용에 상응하는 “소아청소년과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 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아청소년과”가 진료과목이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변경으로 4. (“소아청소년과”의 정의)의 “소아청소년과”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 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 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2 | 소아청소년과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소아청소년과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소아청소년과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의 소아청소년과를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소아청소년과 상해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소아청소년과”의 정의)

“소아청소년과”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의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소아청소년과를 말합니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4.(“소아청소년과”의 정의)의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이 의료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 내용에 상응하는 “소아청소년과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 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아청소년과”가 진료과목이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변경으로 4.(“소아청소년과”의 정의)의 “소아청소년과”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 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 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3 | 골다공증성 골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다공증성 골절분류표(별표166)골다공증성 골절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다공증성 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다공증성 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다공증성 골절진단비로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다공증성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4 | 자동차부상치료비II(비운전자)(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별표158)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참조)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 ①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②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발생한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부상등급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400만원 기준]
1급	보험가입금액 지급	400만
2급	보험가입금액의 1/2 지급	200만
3-4급	보험가입금액의 3/8 지급	150만
5급	보험가입금액의 3/16 지급	75만
6급	보험가입금액의 1/10 지급	40만
7급	보험가입금액의 1/20 지급	20만
8-11급	보험가입금액의 1/40 지급	10만
12-14급	보험가입금액의 1/80 지급	5만

- ② 위 ①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인용
문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 ※ 관련 법규가 변경되어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그 항목도 포함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③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④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 ⑤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5 |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5-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제외)
(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 55-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
(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55-1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제외) (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7.(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제외)를 지급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지급금액
연간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연간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
연간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연간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35%
연간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75%
연간 2,000만원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제외)를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상해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의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15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과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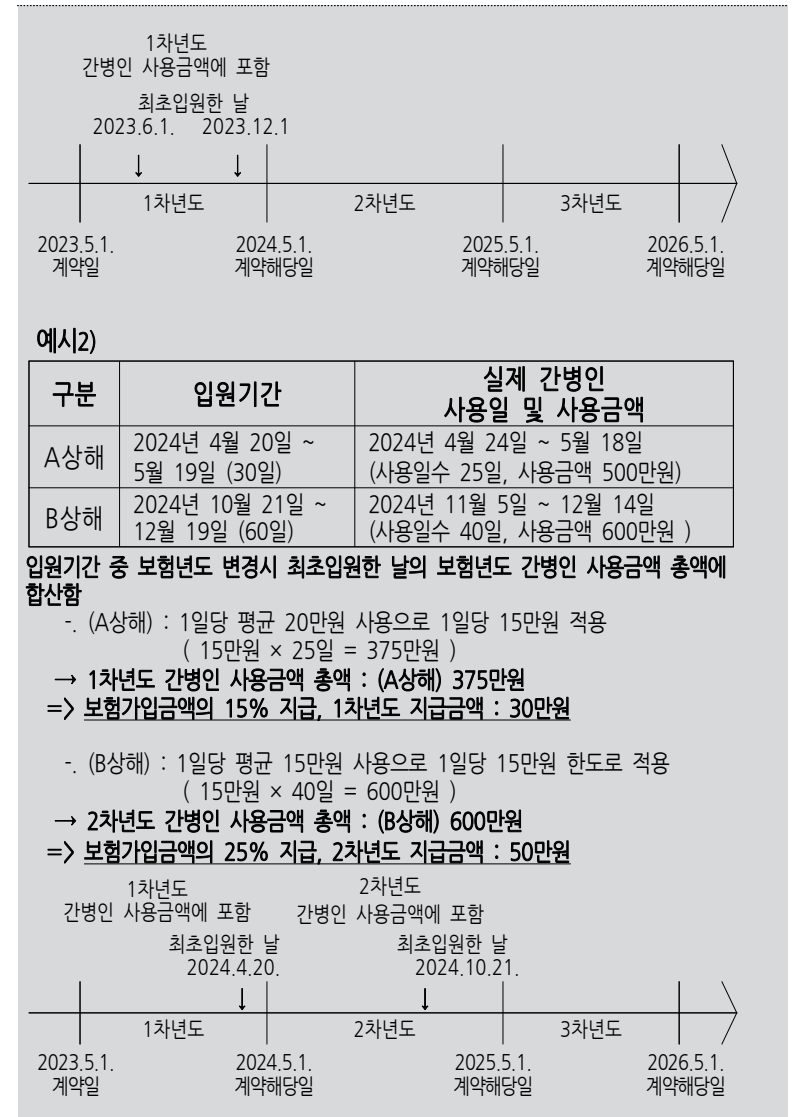


예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가입시 예시1)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A상해	2023년 6월 1일 ~ 6월30일 (30일)	2023년 6월 11일 ~ 6월 17일 (사용일수 7일, 사용금액 70만원)
B상해	2023년 12월 1일 ~ 12월 30일 (30일)	2023년 12월 4일 ~ 12월 23일 (사용일수 20일, 사용금액 600만원)

- (A상해) : 1일당 평균 1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10만원 × 7일 = 70만원)
- (B상해)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20일 = 30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상해) 70만원 + (B상해) 300만원
= 37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제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7.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거거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8.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7.(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5-2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

(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7.(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를 지급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를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상해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의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15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과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예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가입시

예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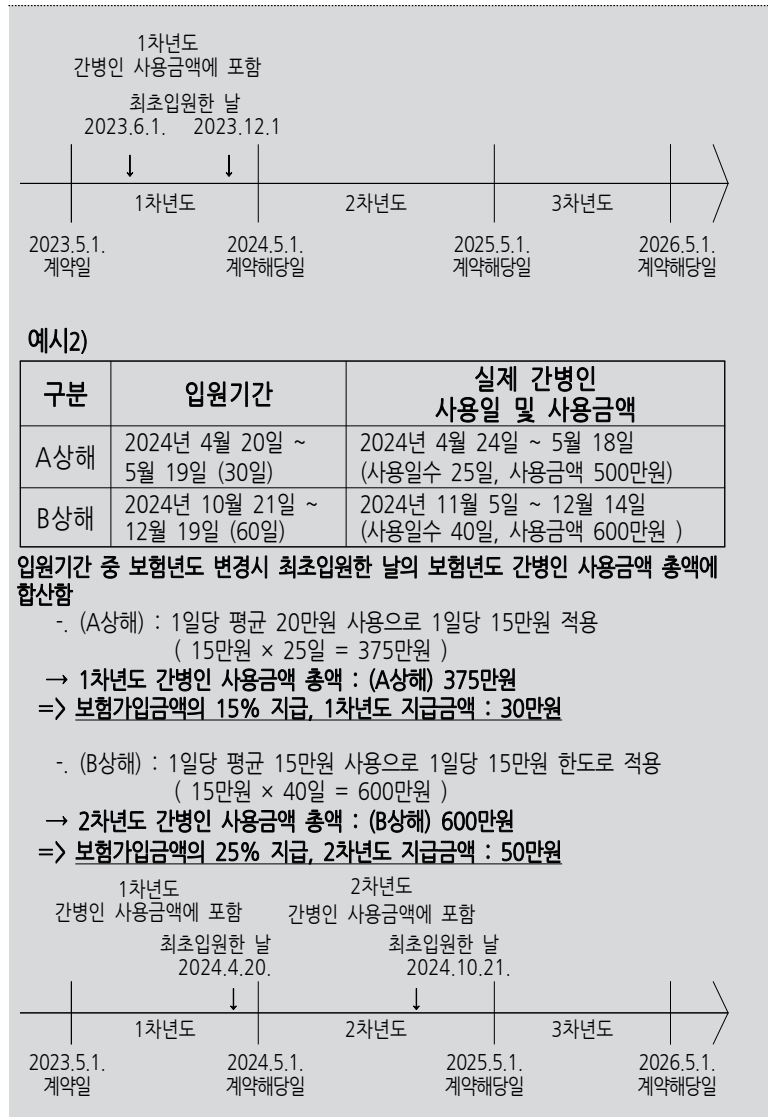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A상해	2023년 6월 1일 ~ 6월30일 (30일)	2023년 6월 11일 ~ 6월 17일 (사용일수 7일, 사용금액 70만원)
B상해	2023년 12월 1일 ~ 12월 30일 (30일)	2023년 12월 4일 ~ 12월 23일 (사용일수 20일, 사용금액 600만원)

- (A상해) : 1일당 평균 1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10만원 × 7일 = 70만원)

- (B상해)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20일 = 30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상해) 70만원 + (B상해) 300만원
= 37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7.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8.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7.(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6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5.(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기준	지급금액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② 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과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 지식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 보장사례 (가입금액 2만원 기준)

- 입원기간 : 2021년 10월 1일 ~ 10월 30일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2021년 10월 11일 ~ 10월 17일 (사용일수 7일), 총77만원
(1일당 평균 11만원 사용, 7만원 이상에 해당)
→ 가입금액(2만원) × 7일 = 14만원 지급
 - 2021년 10월 21일 ~ 10월 24일 오전, 10월 24일 오후,
10월 25일 오후 ~ 10월 27일 (사용일수 7일), 총42만원
(1일당 평균 6만원 사용, 7만원 미만에 해당)
→ 가입금액(2만원) × 50% × 7일 = 7만원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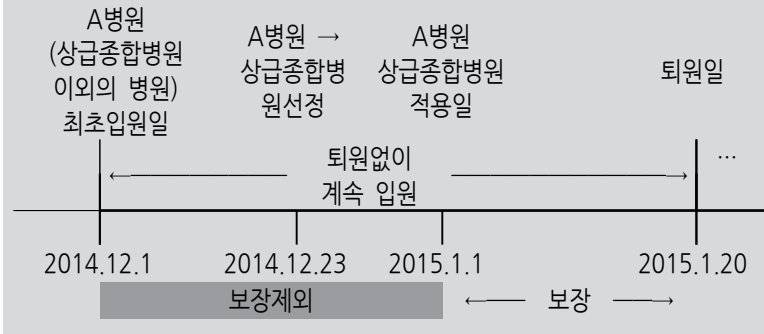
=> 총 지급 보장금액 : 14만원 + 7만원 = 21만원

- ②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6.(“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6.(“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6.(“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험
지식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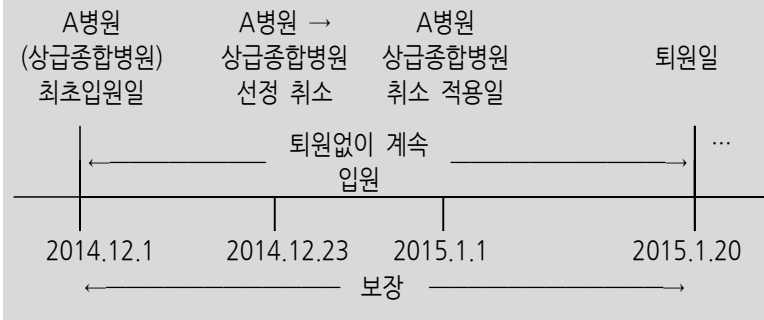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6.("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예시



- ⑨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⑪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6.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6.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6.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5.(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7 | 상해특정치료비(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7-1. 상해특정치료비(상해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 57-2. 상해특정치료비(중대한특정상해수술)(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 57-3. 상해특정치료비(창상봉합술)(1일1회한,연간3회한)(비갱신형/갱신형)
- 57-4. 상해특정치료비(창상봉합술)(안면부)(1일1회한,연간3회한)(비갱신형/갱신형)

57-1 상해특정치료비(상해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특정치료비(상해수술Q)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상해특정치료비(상해수술)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특정치료비(상해수술Q)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7-2

상해특정치료비(중대한특정상해수술)(최초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특정치료비(중대한특정상해수술)로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특정치료비(중대한특정상해수술) 지급사유가 두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가지 사유에 의한 상해특정치료비(중대한특정상해수술)만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손상(별표6)중 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별표6)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참조)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 ①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써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격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써,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요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노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③ 위 ②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④ 위 ②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상해특정치료비(중대한특정상해수술)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7-3 상해특정치료비(창상봉합술)(1일1회한,연간3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특정치료비(창상봉합술)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상해특정치료비(창상봉합술)는 연간 3회한도로 보장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구 분	창상봉합술(안면 또는 경부)	창상봉합술 (안면과 경부 이외)
지급기준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안면부
용어 풀이 이마를 포함하여 경부(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 창상봉합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여 창상봉합술”이라 함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창상봉합술”이라 함은 「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 《별표128》 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창상봉합술”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급여 창상봉합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급여 창상봉합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7-4

상해특정치료비(창상붕합술)(안면부)
(1일1회한,연간3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를 받은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특정치료비(창상붕합술)(안면부)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상해특정치료비(창상붕합술)(안면부)는 연간 3회한도로 보장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안면부

용어
풀이

이마를 포함하여 경부(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이라 함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창상붕합술”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창상붕합술”이라 함은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별표127)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급여 안면부창상붕합술(3cm이상)”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8 | 골절통합치료비(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8-1. 골절통합치료비(골절진단비)(치아포함)(비갱신형/갱신형)
- 58-2. 골절통합치료비(골절수술비Q)(동일사고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 58-3. 골절통합치료비(골절철심제거수술비Q)(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 58-4. 골절통합치료비(신김스치료비)(상해 및 질병)(비갱신형/갱신형)
- 58-5. 골절통합치료비(골절부목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58-1 골절통합치료비(골절진단비)(치아포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분류표(별표5)골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통합치료비(골절진단비)(치아포함)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통합치료비(골절진단비)(치아포함)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⑤ 치과치료관련 증명서(치아골절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가.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식)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나. 회사는 상기 “가”의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8-2

골절통합치료비(골절수술비Q)(동일사고당 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로 골절분류표 (별표5)골절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통합치료비(골절수술비Q) (동일사고당 1회지급)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통합치료비(골절수술비Q)(동일사고당 1회지급)는 동일한 상해사고(골절)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 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 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 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별표2)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참조에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골절철심제거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통합치료비(골절철심제거수술비Q)(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골절철심제거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골절철심제거술”이라 함은 「골절철심제거술 대상 수가코드」(별표92)골절철심제거술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골절철심제거술”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골절철심제거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골절철심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보장합니다.)
 - ②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8-4 골절통합치료비(신김스치료비)(상해 및 질병)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3. (신김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에서 정한 “신김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3. (신김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에서 정한 진료행위별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골절통합치료비(신김스치료비)(상해 및 질병)의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두가지 이상의 “신김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신체 동일부위에 두가지 이상의 “신김스치료”를 받은 경우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신김스치료비의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김스치료비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신김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있어 “신김스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진료행위명칭	진료행위코드	지급률
손가락캐스트	T6090	5%
단상지[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T6030	10%
장상지[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8자형 석고	T6020 T6120	20%
단하지[하퇴로부터족부까지]-Without Walker 단하지[하퇴로부터족부까지]-With Walker 슬개건 부하캐스트 견수상[흉부로부터 수부까지] 벨포캐스트	T6060 T6061 T6063 T6010 T6110	30%
대퇴에서 족부에 미치는 캐스트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Without Walker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With Walker	T6050 T6051 T6052	40%
Risser형 체간캐스트 Minerva형 체간캐스트 고수상[요부로부터 족부까지, 척추cast포함]	T6080 T6070 T6040	100%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신김스치료 급여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김스치료 급여인정기준」을 따릅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8-5

골절통합치료비(골절부목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별표2)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 참조)에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을 받고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절통합치료비(골절부목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통합치료비(골절부목치료비)는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 진단 후 다수의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Splint 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부목(Splint Cast)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부목(Splint Cast)치료”라 함은 「부목치료 대상 수가코드」(별표115)부목치료 대상 수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부목(Splint Cast)치료”에 대해 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의 “부목(Splint Cast)치료”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9 |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세부보장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3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59-1.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CT,MRI및골밀도검사)(급여)(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 59-2.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 59-3.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종합병원)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59-1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CT,MRI및골밀도검사)(급여)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상해 MRI검사(급여)”, “상해 CT검사(급여)” 또는 “상해 골밀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각각 연간 1회한으로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CT,MRI및골밀도검사)(급여)(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횟수
상해 MRI검사(급여)	연간1회한
상해 CT검사(급여)	연간1회한
상해 골밀도검사(급여)	연간1회한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의료행위를 받은 연, 월, 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상해 MRI검사(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MRI검사(급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상해 MRI검사(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상해 MRI검사(급여)”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분류번호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 및 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촬영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상해 CT검사(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CT검사(급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급여 상해 CT검사 분류표」(별표183) 급여 상해 CT검사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X-ray를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 진단하는 검사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상해 CT검사(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 (“상해 골밀도검사(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골밀도검사(급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골밀도검사(급여) 분류표【별표184】 골밀도검사(급여)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상해 골밀도검사(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비계산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9-2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1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2.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2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3.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3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4.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4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5.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5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1~5종수술(동일) 분류표”【별표78】 1~5종수술(동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를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1종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1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2종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2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3종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3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4종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4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5종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5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② 위 ①에서 정한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는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또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동일) 분류표”【별표78】 1~5종수술(동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9-3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
(종합병원)(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한도로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통합치료비(실속형)(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종합병원)(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의 마취시간은 「전신마취치료(급여)」 1회의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치료(급여)」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라 함은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 (“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치료(급여)」를 6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전신마취치료(급여)」라 함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의 관리 하에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을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진료비세부내역서상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별표 167)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단순 정맥마취,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 ③ 위 ②의 「전신마취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분류번호 및 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시

【보험금 지급예시】

-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 2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20회 = 360분 → **지급**
-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 15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15회 = 285분 → **지급하지 않음**
- ③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 1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10회 = 210분 → **지급하지 않음**

주) 마취유지 : 1시간을 이상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4.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4.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4.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위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전신마취 종류/마취시간/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취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포함)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0 | 상해통합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갑상선암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해 통합치료(경증치료)」를 받은 경우 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아래의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상해통합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중증외상치료(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해 통합치료(중증치료)」를 받은 경우 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아래의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상해통합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를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으로 「상해 통합치료(수술(1-5종)Ⅱ)」를 받은 경우 아래의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상해통합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상해 통합치료(검사)」를 받은 경우 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아래의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상해통합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아래의 통합치료항목별 지급금액을 상해통합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통합치료항목		지급횟수	지급금액	
경중치료	특정시술치료(흡인, 천자, 절개, 배액, 배농)(급여)		연간 1회한 20만원	
	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연간 1회한 20만원	
	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		연간 1회한 20만원	
	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연간 1회한 20만원	
	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연간 1회한 2만원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		연간 1회한 30만원	
	창상봉합술 (급여)	안면 또는 경부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연간 3회한 (1일 1회한)	10만원
		안면과 경부 이외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상해흉터복원 수술Ⅱ	안면부	-	수술 1cm당 30만원
		상·하지		수술 1cm당 15만원 (3cm 이상에 한함)
깁스치료		사고 1회당	50만원	
중증치료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		연간 1회한 100만원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급여)		연간 1회한 200만원	
	저체온요법치료(급여)		연간 1회한 100만원	
	부분체온순환치료(급여)		연간 1회한 2,000만원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		연간 1회한 500만원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연간 1회한 500만원	
	중증외상치료(권역외상센터)		- 1,000만원	

수술 (1-5 종) II	1종수술	동일사고 1회당	20만원
	2종수술		50만원
	3종수술		100만원
	4종수술		500만원
	5종수술		1,000만원
검사	상해 MRI검사(급여)	연간 1회한	5만원
	상해 CT검사(급여)	연간 1회한	5만원
	상해 골밀도검사(급여)	연간 1회한	5만원
재활 치료	재활치료(급여)	연간 15회한 (1일 1회한)	2만원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통합치료항목		지급횟수	지급금액
경증 치료	특정시술치료(흡인, 천자, 절개, 배액, 배농)(급여)	연간 1회한	10만원
	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연간 1회한	10만원
	특정시술치료(화상치치)(급여)	연간 1회한	10만원
	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연간 1회한	10만원
	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연간 1회한	2만원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	연간 1회한	20만원
	창상봉합술 (급여)	연간 3회한 (1일 1회한)	10만원
	상해흉터복원 수술 II	-	수술 1cm당 30만원 수술 1cm당

			15만원 (3cm 이상에 한함)
	깁스치료		사고 1회당 50만원
중증 치료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	연간 1회한	50만원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급여)	연간 1회한	150만원
	저체온요법치료(급여)	연간 1회한	75만원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	연간 1회한	1,500만원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	연간 1회한	400만원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연간 1회한	300만원
	중증외상치료(권역외상센터)	-	700만원
수술 (1-5 종) Ⅱ	1종수술	동일사고 1회당	10만원
	2종수술		30만원
	3종수술		50만원
	4종수술		300만원
	5종수술		500만원
검사	상해 MRI검사(급여)	연간 1회한	5만원
	상해 CT검사(급여)	연간 1회한	5만원
	상해 골밀도검사(급여)	연간 1회한	5만원
재활 치료	재활치료(급여)	연간 15회한 (1일 1회한)	2만원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

통합치료항목		지급횟수	지급금액
경증 치료	특정시술치료(흡인, 천자, 절개, 배액, 배농)(급여)	연간 1회한	5만원

	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연간 1회한	5만원
	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		연간 1회한	5만원
	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연간 1회한	5만원
	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연간 1회한	1만원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		연간 1회한	10만원
	창상봉합술 (급여)	안면 또는 경부 (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연간 3회한 (1일 1회한)	10만원
		안면과 경부 이외 (5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상해흉터복원 수술Ⅱ	안면부	-	수술 1cm당 30만원
		상·하지		수술 1cm당 15만원 (3cm 이상에 한함)
갑수치료		사고 1회당	20만원	
중증 치료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		연간 1회한	50만원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급여)		연간 1회한	100만원
	저체온요법치료(급여)		연간 1회한	50만원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		연간 1회한	1,000만원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		연간 1회한	300만원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연간 1회한	100만원
	중증외상치료(권역외상센터)		-	500만원
수술 (1-5 종) Ⅱ	1종수술		동일사고 1회당	10만원
	2종수술			20만원
	3종수술			30만원

	4종수술		200만원
	5종수술		300만원
검사	상해 MRI검사(급여)	연간 1회한	5만원
	상해 CT검사(급여)	연간 1회한	5만원
	상해 골밀도검사(급여)	연간 1회한	5만원
재활 치료	재활치료(급여)	연간 15회한 (1일 1회한)	1만원

⑥ 위 ① 내지 ⑤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단,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의 경우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창상봉합술(급여)」을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창상봉합술(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횡수와 관계없이 1일 1회에 한하여 연간 3회한도로 보장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을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횡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횡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⑪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저체온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저체온요법치료(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횡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⑫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횡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⑬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횡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⑭ 위 ⑬의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의 마취시간은 「전신마취치료(급여)」 1회의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치료(급여)」를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⑮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리에 한하여 부위 및 횡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⑯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⑰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는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종합병원) 이외의 병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중환자실(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실(병원)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상해통합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⑱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는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해통합치료비를 지급합니다.
- ⑲ 「중증외상치료(권역외상센터)」의 경우 “권역외상센터” 도착 전 사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⑳ 「중증외상치료(권역외상센터)」의 경우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외상치료(권역외상센터)의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㉑ 「상해 통합치료(수술(1-5종)Ⅱ)」의 경우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통합치료비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㉒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상해 MRI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상해 MRI검사(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횡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㉓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상해 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상해 CT검사(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횡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㉔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상해 골밀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상해 골밀도검사(급여)에 한하여 부위 및 횡수와 관계없이 1회의 상해통합치료비만 지급합니다.
- 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 중에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이하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라 합니다)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의료기관에서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의료기관에서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 ㉖ 「재활치료(급여)」의 경우 연간 발생한 ㉕의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와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 횡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5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㉗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상해 통합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통합치료」라 함은 ②의 「상해 통합치료(경증치료)」, ③의 「상해 통합치료(중증치료)」, ④의 「상해 통합치료(수술(1~5종Ⅱ))」, ⑤의 「상해 통합치료(검사)」 및 ⑥의 「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를 총칭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통합치료(경증치료)」라 함은 상해(갑스치료의 경우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통합치료 항목	
경증치료	특정시술치료(흡인, 천자, 절개, 배액, 배농)(급여)
	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
	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
	창상봉합술(급여)
	상해흉터복원수술Ⅱ
	갑스치료

- ① 4. (“특정시술치료(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시술치료(흡인, 천자, 절개, 배액, 배농)(급여)」를 받은 경우
- ② 4. (“특정시술치료(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를 받은 경우
- ③ 4. (“특정시술치료(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를 받은 경우
- ④ 4. (“특정시술치료(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를 받은 경우
- ⑤ 4. (“특정시술치료(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를 받은 경우
- ⑥ 5.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 ⑦ 6. (“창상봉합술(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을 받은 경우
- ⑧ 7. (“상해흉터복원수술Ⅱ”의 정의)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Ⅱ」을 받은 경우
- ⑨ 8. (“갑스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갑스치료」를 받은 경우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통합치료(중증치료)」라 함은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통합치료 항목	
중증치료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급여)
	저체온요법치료(급여)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중증외상치료(권역외상센터)

- ① 9.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를 받은 경우
- ② 10.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급여)」를 받은 경우
- ③ 11. (“저체온요법치료(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저체온요법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 ④ 12.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 ⑤ 13.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를 받은 경우
- ⑥ 14.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 ⑦ 16. (“권역외상센터” 및 “중증외상환자”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외상치료(권역외상센터)」를 받은 경우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통합치료(수술(1~5종Ⅱ))」라 함은 상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동일) 분류표」, 「별표78】 1~5종수술(동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통합치료 항목	
수술(1-5종) II	1종수술
	2종수술
	3종수술
	4종수술
	5종수술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통합치료(검사)」라 함은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필요조건을 토대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통합치료 항목	
검사	상해 MRI검사(급여)
	상해 CT검사(급여)
	상해 골밀도검사(급여)

- ① 19.("상해 MRI검사(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상해 MRI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② 20.("상해 CT검사(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상해 CT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③ 21.("상해 골밀도검사(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상해 골밀도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⑥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통합치료(재활치료)」라 함은 상해로 22.("상해 재활치료(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 또는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통합치료 항목	
재활치료	입원 상해 재활치료(급여)
	통원 상해 재활치료(급여)

4. ("특정시술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시술치료(급여)」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상해 통합치료(경증치료)」의 통합치료항목 중 「특정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급여)」, 「특정시술치료(신경차단술)(급여)」, 「특정시술치료(화상처치)(급여)」, 「특정시술치료(도수정복술)(급여)」 및 「특정시술치료(기타시술)(급여)」를 총칭합니다.
- ② 위 ①의 「특정시술치료(급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상해특정시술치료(급여) 분류표【별표177】 상해특정시술치료(급여)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특정시술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분류번호 및 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시술치료(급여)」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시술치료(급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진료비세부내역서상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 분류표(별표178)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치과마취,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의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분류번호 및 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6. (“창상봉합술(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창상봉합술(급여)” 이라 함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창상봉합술”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창상봉합술”이라 함은 「창상봉합술(급여) 대상 수가코드」(별표128) 급여 창상봉합술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창상봉합술(급여)”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창상봉합술(급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창상봉합술(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7. (“상해흉터복원수술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흉터복원수술Ⅱ”이라 함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등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상해흉터복원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점 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위의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② 위 ①의 상해흉터복원수술이란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서 정한 상해흉터복원수술비Ⅱ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최고 5,0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④ 위 ②에서 정한 안면부, 상지, 하지란 다음을 말합니다.
 - ① 안면부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
 - ② 상지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
 - ③ 하지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의미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

8. (“깁스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9.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진료비세부내역서상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 분류표【별표179】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분류번호 및 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10.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 초과)(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 초과)(급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진료비세부내역서상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 초과)(급여) 분류표【별표180】인공호흡기치료(12시간 초과)(급여)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 초과)(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분류번호 및 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 초과)(급여)」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 초과)(급여)」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11. (“저체온요법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저체온요법치료(급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진료비세부내역서상 저체온요법치료(급여) 분류표【별표181】저체온요법치료(급여)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저체온요법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분류번호 및 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저체온요법치료(급여)」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저체온요법치료(급여)」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12.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 분류표(별표182)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분류번호 및 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13.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라 함은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5. (“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치료(급여)」를 6시간 이상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전신마취치료(급여)」라 함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의 관리 하에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을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진료비세부내역서상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별표167)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단순 정맥마취,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취 방법은 제외합니다.
- ③ 위 ②의 「전신마취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또한, 분류번호 및 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시

【보험금 지급예시】

-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 2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20회 = 360분 → **지급**
 -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 15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15회 = 285분 → **지급하지 않음**
 - ③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 1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10회 = 210분 → **지급하지 않음**
- 주) 마취유지 : 1시간을 이상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14.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5. (“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5.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16. ("권역외상센터" 및 "중증외상환자"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권역외상센터"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권역외상센터의 지정)」에 근거하여 선정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 ②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 ③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증외상환자”라 함은 위 ①에서 정한 권역외상센터의 외상센터(외상소생구역) 또는 응급의료센터(응급실)를 통하여 내원한 외상환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따른 최종 손상중증도 점수(ISS)가 15점 초과인 환자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손상중증도점수(ISS)

신체를 6개의 부위(두경부, 안면부, 흉부, 복부, 사지, 신체표면)로 나누어서 각 신체 부위의 손상별 중증도를 Abbreviate InjuryScale(AIS)로 점수화하고, 6개 부위 중 중증도가 심한 상위 3개 부위의 AIS점수의 제곱 합

Abbreviate InjuryScale(AIS)

외상환자의 중증도 평가도구로서, 신체를 6개 부위로 나누어 손상정도를 최소 1점(경증)에서 최대 6점(중증)까지 수치화한 점수

1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1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16. (“권역외상센터” 및 “중증외상환자”의 정의)의 ①의 권역외상센터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⑤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1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위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권역외상센터 내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⑤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권역외상센터”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권역외상센터”제도의 변경으로 16. (“권역외상센터” 및 “중증외상환자”의 정의)의 권역외상센터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중증외상환자”의 분류가 폐지되는 경우
 - ④ 위 ①, ② 및 ③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⑤ 회사는 위 ③ 내지 ④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⑥ 위 ⑤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⑦ 위 ⑤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⑧ 위 ⑤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⑨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손상중증도 점수(ISS) 산정 방식 또는 “중증외상환자”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⑩ 위 ⑨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 당시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18.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19. (“상해 MRI검사(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MRI검사(급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상해 MRI검사(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상해 MRI검사(급여)”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분류번호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 및 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촬영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20. (“상해 CT검사(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CT검사(급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급여 상해 CT검사 분류표」(별표183) 급여 상해 CT검사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X-ray를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 진단하는 검사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상해 CT검사(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21. (“상해 골밀도검사(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골밀도검사(급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골밀도검사(급여) 분류표(별표184) 골밀도검사(급여)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골밀도검사(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22. (“상해 재활치료(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 재활치료(급여)”라 함은 상해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7장(이학요법료)에서 정한 급여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상해 재활치료(급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의 “상해 재활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상해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상해 재활치료(급여)를 받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23. (“입원” 및 “통원”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의 경우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정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1~IV(진료행위코드 EA001~EA004)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받는 경우
 - ②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마취항목 중 급여항목으로 발생한 마취는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③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④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⑤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 ③ 「상해 통합치료(수술(1-5종)II)」의 경우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④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다만,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 ⑤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25.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상해 통합치료(수술(1-5종Ⅱ))」의 경우 사고증명서(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 ③ 「특정시술치료(급여)」, 「창상봉합술(급여)」, 「상해 통합치료(검사)」,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 「저체온요법치료」 및 「부분체외순환치료」의 경우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 ④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 「종합병원 전신마취치료(6시간이상)(급여)」의 경우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전신마취 종류/마취시간/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취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포함) 등)
 - ⑤ 「재활치료(급여)」의 경우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 원인”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⑥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 내지 ①.⑤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
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2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2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2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2종, 4종, 8종,
9종, 10종, 11종)

제2장 질병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49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1469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90세/100세 만기 또는 10/15/20년 만기

1 | 질병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 질병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 질병수술비Q(동일질병당 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질병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질병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
 - ④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비만(E66)
- ⑥ 요실금(N39.3, N39.4, R32)
- ⑦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 ⑧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⑨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
- ⑩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고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등의 조치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 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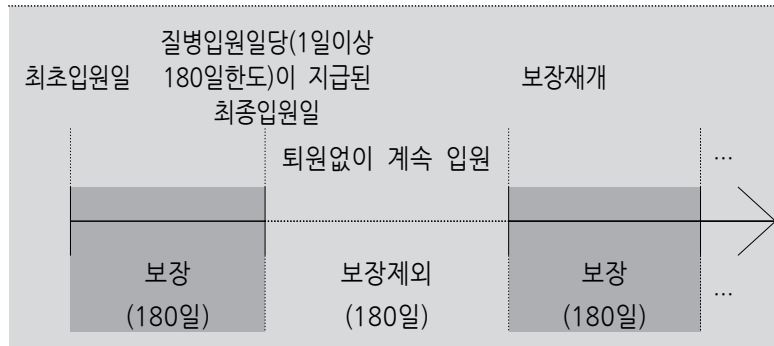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및 ②를 적용하여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성병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의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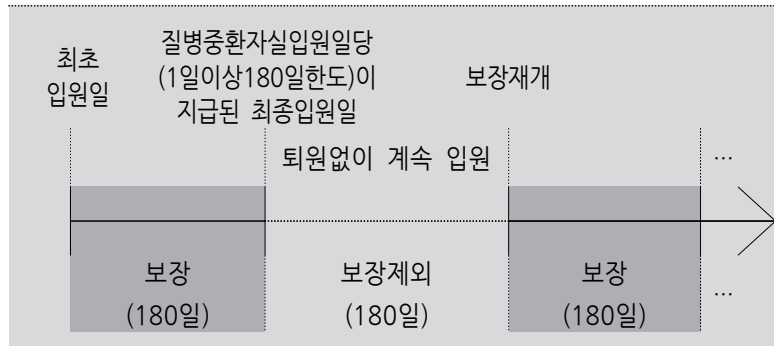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 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및 ②를 적용하여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180일 한도)을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1일 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성병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 암진단비II(유사암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진단비II(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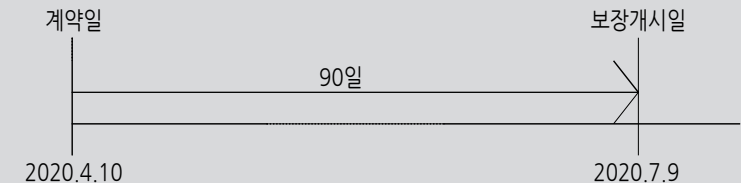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예약)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진단비Ⅱ(유사암제외)(예약)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특별약관의 무효) 또는 6.(특별약관의 소멸)에 따라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이 무효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 | 유사암진단비II(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암진단비Ⅱ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 | 유사암진단비(예약)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진단비(예약) 경계성종양진단비(예약) 기타피부암진단비(예약) 갑상선암진단비(예약) (각각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 보험계약일 이전에 “유사암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6.(특별약관의 소멸)에 따라 “유사암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암진단비Ⅱ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 계속받는암진단비(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제외)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계속받는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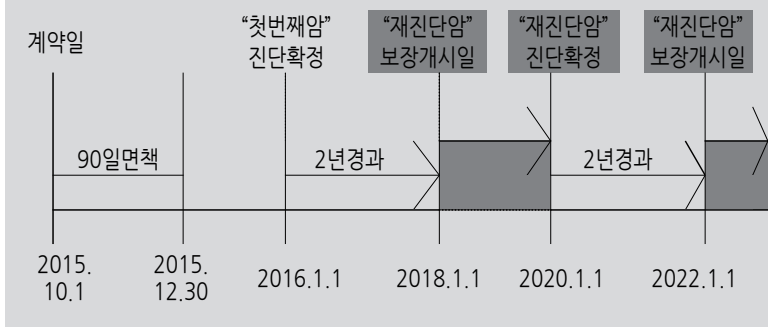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첫 번째 재진단암 (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제외)	첫 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제외)	직전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제외)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15세 이상인 경우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나기 전에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8.(특별약관의 무효)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
지식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⑤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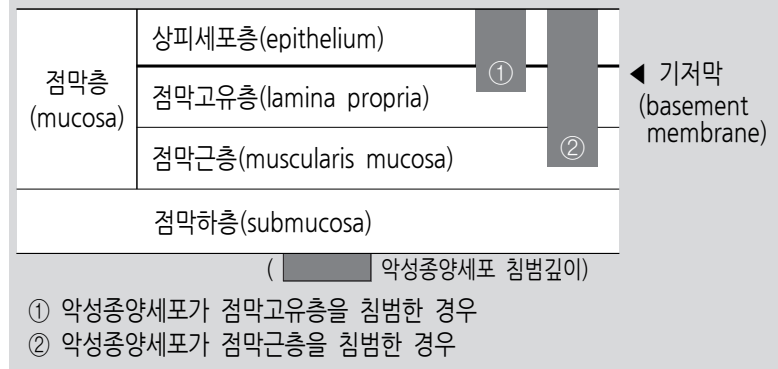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대장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대장점막내암 예시



- ⑥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에 해당하는 경우로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 ⑤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및 ⑥에서 정한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① 새로운 원발암
② 전이암
③ 재발암
④ 잔여암
- ⑧ 위 ⑦의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암으로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과 다른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을 말합니다.
- ⑨ 위 ⑦의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계속적인 분열과 성장과정을 거쳐 증식하는 암을 말합니다.
- ⑩ 위 ⑦의 “재발암”이란,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암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인하여 새롭게 암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암을 말합니다.
- ⑪ 위 ⑦의 “잔여암”이란,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진단부위에 암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전립선암” 인 경우 2년 후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보장을 개시하되, “전립선암”에 대한 계속받는암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첫번째암”이 “전립선암” 인 경우 보장예시

“첫번째암” (전립선암) 진단	“재진단암” 보장개시
	보장제외 (2년)
	전립선암 진단시 면책

- ⑫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⑬ 위 ⑫에 따른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⑭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⑮ 위 ⑭에 따른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암치료)는 제외 합니다.



예시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예시1) 7의 ①~③ 예시

새로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보험
지식

예시2) 7의 ④ 예시

잔여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특별약관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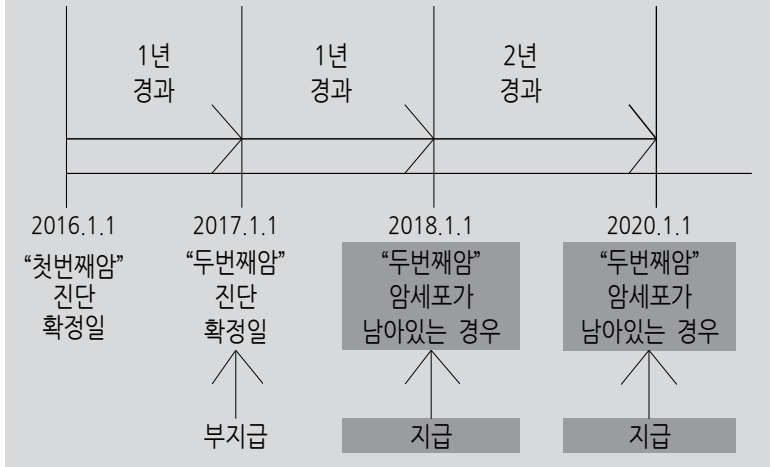
산모



보험
지식

예시3) ⑦의 ④ 예시

잔여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및 전립선암 제외)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포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 제외)”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내에 진단확정된 3.“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⑦의 “재진단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 제외)”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3.“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⑦의 ④에 해당하는 “암”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첫번째 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해지된 특별약관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합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지 않았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최초 보험계약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② 및 ③을 적용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기 전에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재진단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던 경우 :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직전 암의 진단확정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②를 적용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잔여보험기간-2년]이 위 ①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잔여보험기간-2년]을 기준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97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단위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이상 갱신하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갱신 예시 (갱신주기 : 10년)

기준 : 7세에 최초로 가입한 피보험자가 10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1 : 17세, 27세, 37세, 47세 시점 등 10년마다 10년만기로 갱신
- 2 : 97세 시점에서의 잔여보험기간은 3년이므로 “잔여보험기간-2년”이 3년 미만이 되어 “잔여보험기간-2년”인 1년만기로 갱신
- 3 : 98세 시점 이전에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제외)”로 진단확정되었던 경우,
98세, 99세 시점에 각각 1년만기로 갱신 후 100세에 보장 종료
- 4 : 98세 시점 이전에 “첫번째암(유사암,대장점막내암 제외)”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98세 시점에 보장 종료

11. (특별약관의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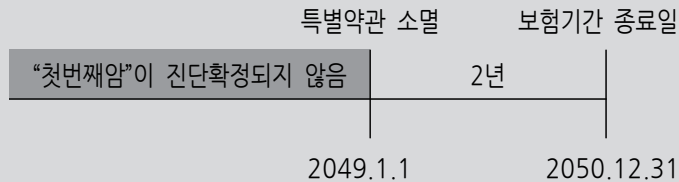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① “첫번째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잔여 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 ② “재진단암(유사암, 대장점막내암, 전립선암 제외)”이 진단확정되어 계속받는암진단비가 지급되고, 잔여 보험기간이 진단확정일을 포함하여 2년 이하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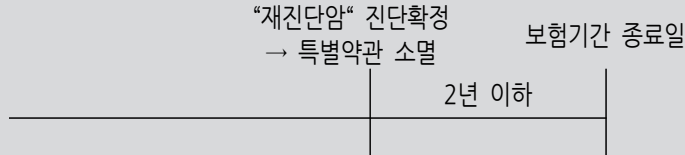
보험
지식

계속받는암진단비 소멸 예시

1. “첫번째암”이 진단확정되지 않고, 잔여보험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



2. “재진단암” 진단확정 시점에 잔여기간이 2년이하인 경우



- ③ 위 ① 및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 11대특정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11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1대특정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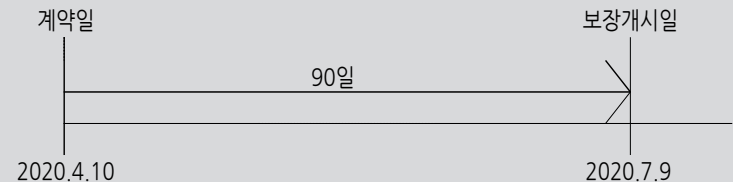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11대특정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11대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11대특정암”이라 함은 「11대특정암 분류표」(별표24)11대특정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 췌장의 악성신생물(암)/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소장(小腸)의 악성신생물(암) 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11대특정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11대특정암진단비 보장 예시

보험
지식

특정암(원발부위가 11대특정암이 아닌 암)으로 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특정암이 11대특정암으로 전이되었다면 11대특정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11대특정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11대특정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 ③ “11대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1대특정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위 ③에 따른 “11대특정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11대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1대특정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11대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1대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11대특정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 고액치료비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고액치료비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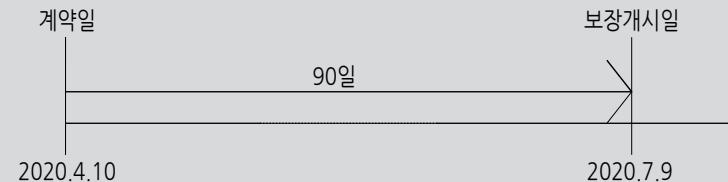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고액치료비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고액치료비암”이라 함은 「고액치료비암분류표」(별표25)고액치료비암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식도의 악성신생물(암)/체장의 악성신생물(암)/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보험
지식

고액치료비암진단비 보장 예시

특정암(원발부위가 고액치료비암이 아닌 암)으로 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특정암이 고액치료비암으로 전이되었다면 고액치료비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고액치료비암으로 고액치료비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고액치료비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 ③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액치료비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위 ③에 따른 “고액치료비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고액치료비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고액치료비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고액치료비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 자녀7대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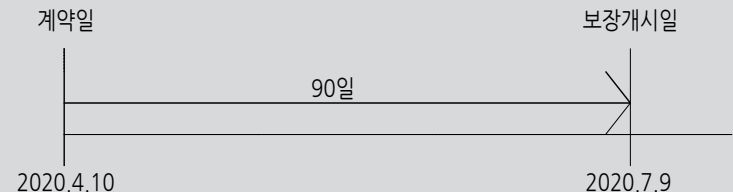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자녀7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녀7대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자녀7대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자녀7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자녀7대암”이라 함은 골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 림프, 조혈관련조직, 부신, 남자의 경우 간 및 고환, 여자의 경우 신장 및 난소의 악성신생물(암)로서 자녀7대암분류표(별표9)자녀7대암 분류표 참조)에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자녀7대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보험
지식

자녀7대암진단비 보장 예시

특정암(원발부위가 자녀7대암이 아닌 암)으로 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특정암이 자녀7대암으로 전이되었다면 자녀7대암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자녀7대암으로 자녀7대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자녀7대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 ③ “자녀7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7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위 ③에 따른 “자녀7대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자녀7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자녀7대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자녀7대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자녀7대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자녀7대암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 소아백혈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소아백혈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소아백혈병진단비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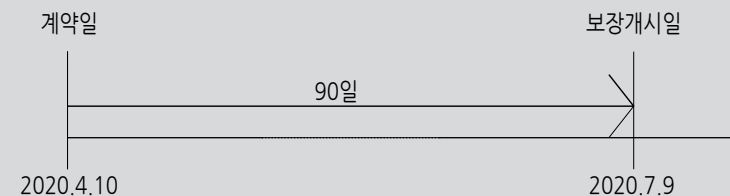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소아백혈병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소아백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소아백혈병”이라 함은 악성으로 변형된 조혈세포가 골수 및 림프조직에서 증식한 후 말초혈액으로 출현하고 다른 조직으로 침윤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질병으로 「소아백혈병 대상질환 분류표」(별표41)소아백혈병 대상질환 분류표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위 ①의 “소아백혈병”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보험
지식

소아백혈병진단비 보장 예시

특정암(원발부위가 소아백혈병이 아닌 암)으로 암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특정암이 소아백혈병으로 전이되었다면 소아백혈병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소아백혈병으로 소아백혈병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소아백혈병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 ③ “소아백혈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아백혈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위 ③에 따른 “소아백혈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소아백혈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소아백혈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소아백혈병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소아백혈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소아백혈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포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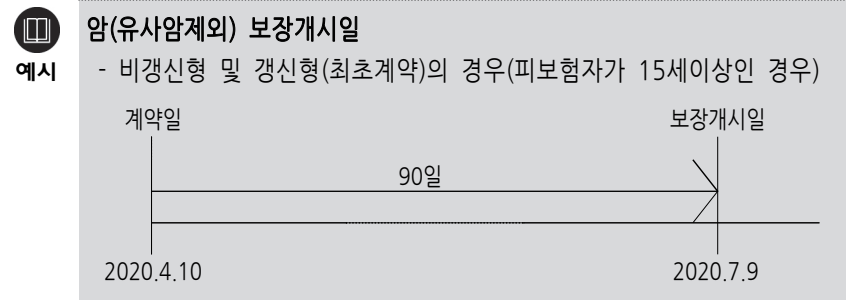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최초로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③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보험지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단,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는 제외합니다)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 암직접치료입원일당II(요양병원제외) (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①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②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⑤ ①에서 ④까지 정한 내용은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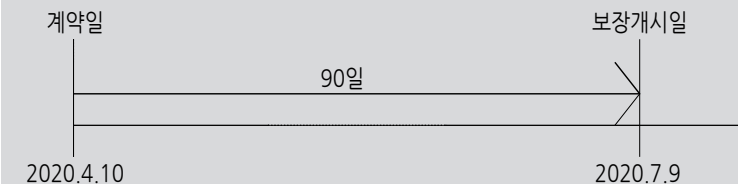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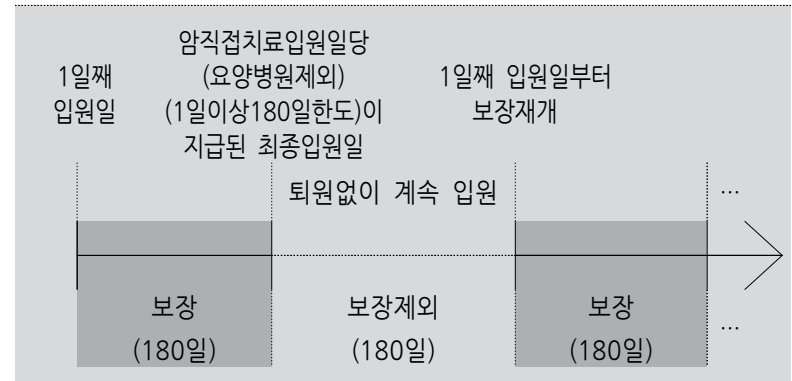
- ③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3.(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단 요양병원 제외)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 ④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및 ②를 적용하여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를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직접치료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7.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8.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은 제외)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9.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 암입원일당II(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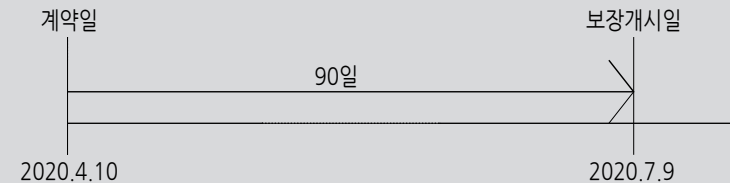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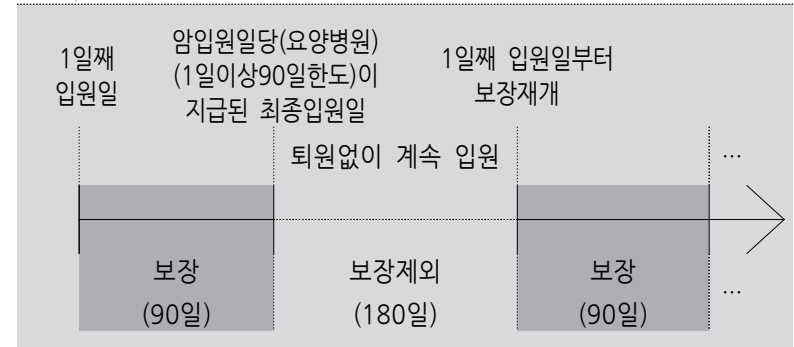
- ③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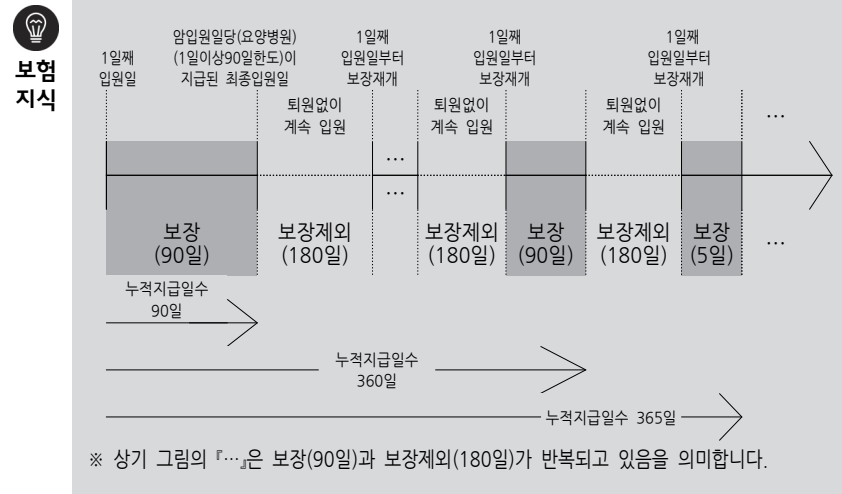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⑤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및 ②를 적용하여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9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보험 지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7.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 | 뇌졸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뇌졸중진단비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졸중”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 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21)뇌졸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졸중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뇌졸중진단비 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뇌졸중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신생아 뇌출혈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회사가 위 ①의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뇌졸중진단비 및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3.(“뇌졸중”, “신생아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③에서 정한 사망 후 “뇌졸중” 또는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 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뇌졸중”, “신생아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 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21) 뇌졸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생아 뇌출혈” 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21) 뇌졸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을 말합니다.
- ③ 뇌졸중 및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졸중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단,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 뇌졸중진단비(예약)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뇌졸중진단비(예약)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뇌졸중진단비(예약)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3.(“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졸중”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5.(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21)뇌졸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 보험계약일 이전에 “뇌졸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또는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특별약관의 소멸)에 따라 “뇌졸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또는 “뇌졸중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 | 뇌출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뇌출혈진단비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출혈”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뇌출혈 분류표」(별표22)뇌출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을 말합니다.
-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 | 뇌출혈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출혈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뇌출혈진단비 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뇌출혈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신생아 뇌출혈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회사가 위 ①의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뇌출혈진단비 및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3.(“뇌출혈”, “신생아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③에서 정한 사망 후 “뇌출혈” 또는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 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뇌출혈”, “신생아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출혈” 이라 함은 「뇌출혈 분류표」(별표22)뇌출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생아 뇌출혈” 이라 함은 「뇌출혈 분류표」(별표22)뇌출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을 말합니다.
- ③ 뇌출혈 및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출혈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단,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 | 뇌출혈진단비(예약)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뇌출혈진단비(예약)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뇌출혈진단비(예약)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3.(“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출혈”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5.(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뇌출혈 분류표」(별표22) 뇌출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을 말합니다.
-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 보험계약일 이전에 “뇌출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또는 “뇌출혈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특별약관의 소멸)에 따라 “뇌출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또는 “뇌출혈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 | 뇌혈관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 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 |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뇌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신생아 뇌출혈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회사가 위 ①의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및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3. (“뇌혈관질환”, “신생아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③에서 정한 사망 후 “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뇌혈관질환”, “신생아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생아 뇌출혈”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을 말합니다.
- ③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단,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 뇌혈관질환진단비(예약)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뇌혈관질환진단비(예약)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예약)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5.(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 보험계약일 이전에 “뇌혈관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또는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특별약관의 소멸)에 따라 “뇌혈관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또는 “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 | 뇌혈관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뇌혈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뇌혈관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뇌혈관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뇌혈관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최초 입원일	뇌혈관질환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장 (18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80일)
		...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및 ②를 적용하여 뇌혈관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를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뇌혈관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 | 뇌혈관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다음과 같이 뇌혈관질환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흡인(吸引)
 - 천자(穿刺) 등의 조치
 -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작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9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 23)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0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예약)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예약)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예약)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3.(“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급성 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5.(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 23)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 보험계약일 이전에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특별약관의 소멸)에 따라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1 | 허혈심장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허혈심장질환진단비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2 | 허혈심장질환진단비(예약)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허혈심장질환진단비(예약)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허혈심장질환진단비(예약)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3.(“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5.(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 보험계약일 이전에 “허혈심장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특별약관의 소멸)에 따라 “허혈심장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3 | 허혈심장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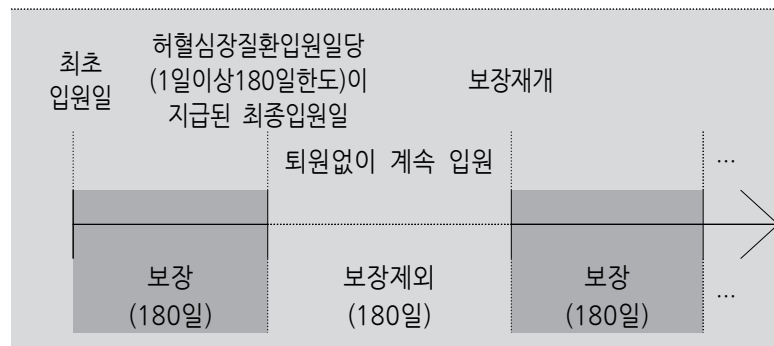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심장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심장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허혈심장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허혈심장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허혈심장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허혈심장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및 ②를 적용하여 허혈심장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 한도)를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허혈심장질환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허혈심장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4 | 허혈심장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다음과 같이 허혈심장질환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허혈심장질환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5 | 양성뇌종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 ② 위 ①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인(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양성뇌종양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의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6 | 말기신부전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말기신부전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말기신부전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말기신부전증진단비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만성 콩팥병(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7 | ADHD진단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여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ADHD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별표54】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분류표 참조)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진단확정은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정신건강의학과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함
 - ②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를 기초로 하여야 함
- ③ 회사가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②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ADHD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15.(계약 후 알릴 의무) 또는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8 | 아토피성피부염진단비(중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중증아토피성피부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아토피성피부염진단비(중증)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중증아토피성피부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중증아토피성피부염」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토피성피부염」(【별표55】아토피성 피부염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 받고, OSI(Object SCORAD Index)점수 4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OSI는 아토피의 대표적인 평가기준인 SCORAD Index중 주관적 증상(가려움과 수면장애 평가)을 제외한 객관적 지표인 병변의 범위(Extent), 병변의 정도(Intensity)만을 이용한 평가방법입니다.)
- ② 위 ①의 「아토피성피부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SCORAD Index 진단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아토피진단서(회사양식의 아토피 OSI증명서 포함),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아토피성피부염진단비(중증)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9 |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고 현재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영구적인 재생불량성 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서 호중구 수가 200/mm3미만 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충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이하이고 동시에 다음중 두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호중구 수가 500/mm3미만
 - ② 혈소판 수가 20,000/mm3미만
 - ③ 망상적혈구 수가 20,000/mm3미만
- ③ 단,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 빈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④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0 | 1형 당뇨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1형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1형 당뇨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1형 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1형 당뇨병”이라 함은 체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감소됨으로써 대사에 장애가 생기고 혈당이 높아지는 질병으로 해당 전문의에 의해 「1형 당뇨병 분류표」(별표13) 1형 당뇨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1형 당뇨병”으로 진단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1형 당뇨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1형 당뇨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1형 당뇨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1 |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다음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희귀난치성질환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희귀난치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함은 「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별표 40)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희귀난치성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2 | 어린이생활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어린이생활질환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어린이생활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어린이생활질환”이라 함은 「어린이생활질환 분류표」(별표 39)어린이생활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어린이생활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3 | 자녀10대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자녀10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녀10대질환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자녀10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자녀10대질환”이라 함은 「자녀10대질환 분류표」(별표8)자녀10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감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뇌전증, 중이염, 급성 상기도염 및 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십이지장궤양 및 염증, 탈장 및 장폐색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자녀10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자녀10대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녀10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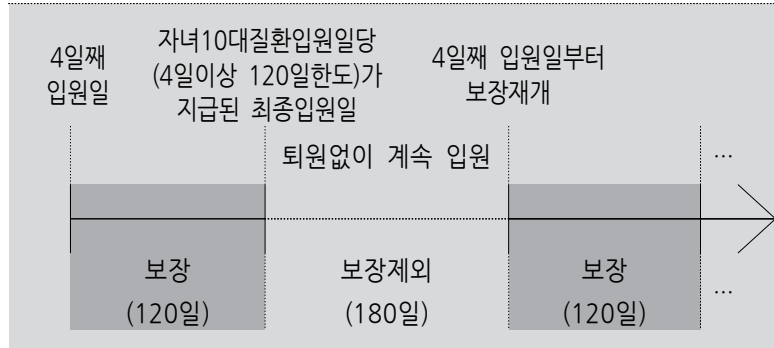
44 | 자녀10대질환입원일당 (4일이상12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자녀10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자녀10대질환 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자녀10대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자녀10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자녀10대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자녀10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자녀10대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자녀10대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자녀10대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및 ②를 적용하여 자녀10대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를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자녀10대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자녀10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자녀10대질환”이라 함은 「자녀10대질환 분류표」(별표8)자녀10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갑염,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수막염, 뇌전증, 중이염, 급성 상기도염 및 하기도염, 폐렴, 천식, 위·십이지장궤양 및 염증, 탈장 및 장폐색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자녀10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자녀10대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5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호흡기관련 질병 분류표」(별표16)호흡기관련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호흡기관련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호흡기관련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6 | 당뇨병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다음과 같이 당뇨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당뇨병수술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당뇨병"이라 함은 「당뇨병 분류표」(별표33)당뇨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당뇨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당뇨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버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7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1회지급)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조혈모 세포이식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 ①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②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③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④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⑤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내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골수이식의료기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이식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등에 따라 골수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8 | 충수염(맹장염)수술비(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충수염(맹장염)분류표」(별표14)충수염(맹장염)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충수염(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충수염(맹장염)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충수염(맹장염)”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충수염(맹장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충수염(맹장염)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9 | 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법정감염병으로 해당 보건소에 신고되어 “특정법정감염병 환자”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1사고당 다음과 같이 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페스트, 황열, 뎅기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아토병, 큐열(Q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일본뇌염, 말라리아,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찰진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정법정감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법정감염병”이라 함은 「법정감염병 중 대상이 되는 특정법정감염병 분류표」(별표18)법정감염병 중 대상이 되는 특정법정감염병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 위 ①의 “특정법정감염병”의 진단확정은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별표18.1) 감염병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 참조)에서 감염병환자 진단기준(별표18.2)감염병환자 진단기준 참조)에 따라 “특정법정감염병 환자”로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법정감염병 환자”라 함은 감염병환자 진단기준(별표18.2)감염병환자 진단기준 참조)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및 “의사환자”를 말하며, “병원체보유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위 ② 및 ③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임상학적으로 해당 병명으로 진단을 받고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법정감염병”에서 제외되는 감염병이 생길 경우, 그 해당 감염병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치과의사 제외)을 가진자에 의한 진단서에 따라 특정법정감염병치료비를 지급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법정감염병 접수사실 확인서(보건소 발행)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 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0 | 수족구진단비Ⅱ(10일면책,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수족구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족구진단비Ⅱ(10일면책,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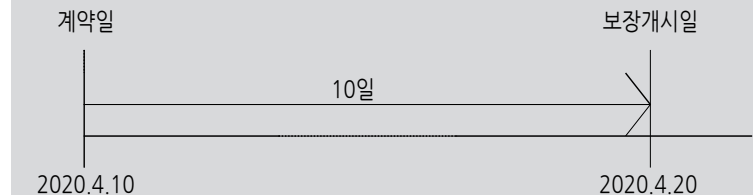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수족구진단비Ⅱ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 ③ 위 ①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수족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족구’라 함은 「수족구 분류표」(별표106)수족구 분류표)에서 정한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구내염(수족구병)을 말합니다.
- ② “수족구”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대소변,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1 | 선천이상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출생시에 시작하며, 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을 더한 날에 끝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별표20)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선천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선천이상수술비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선천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2 | 선천이상수술비(허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출생시에 시작하며, 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을 더한 날에 끝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허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 분류표」(별표34)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허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선천이상수술비(허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선천이상(허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선천이상(허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3 |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출생시에 시작하며, 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을 더한 날에 끝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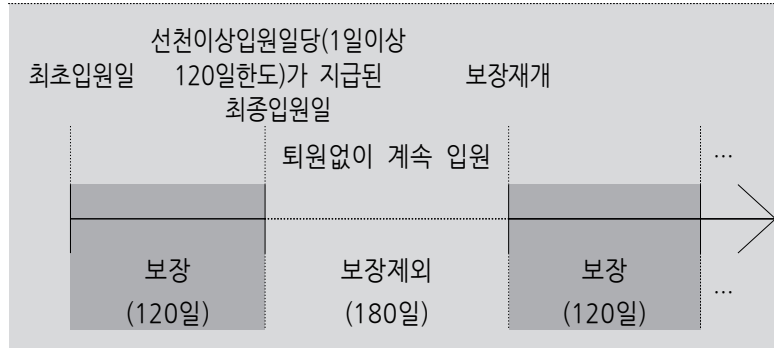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별표20)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선천이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 120일한도)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선천이상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선천이상에 대한 입원이라도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 ④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및 ②를 적용하여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를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선천이상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선천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선천이상”이라 함은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별표20)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선천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선천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4 | 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출생시에 시작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전후기(임신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주산기질환분류표(별표26)주산기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주산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산기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는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신생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신생아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주산기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5 | 신생아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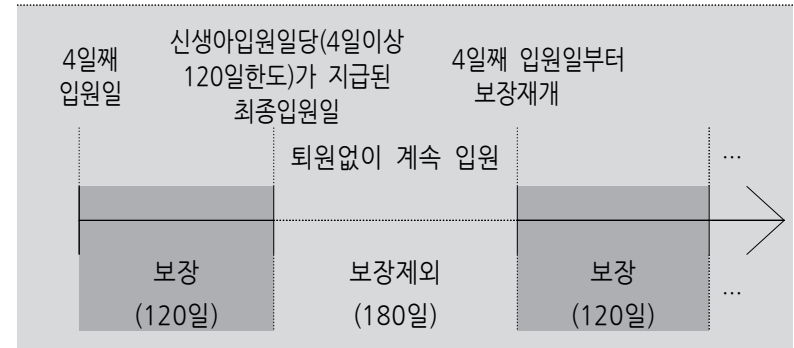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출생시에 시작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신생아)가 출생전후기(임신28주부터 생후 1주 사이의 기간을 말합니다)에 주산기질환분류표(별표26)주산기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주산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에는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신생아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신생아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주산기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산기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신생아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신생아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신생아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의 신생아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는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신생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신생아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주산기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6 | 저체중아입원일당(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출생시에 시작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저체중아(출생시의 체중이 2,500그램 이하인 신생아를 말합니다)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조산아 보육기를 말합니다)를 3일 이상 사용했을 경우, 3일째 사용일부터 사용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저체중아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단, 저체중아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저체중아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7 | 극소저체중아입원일당(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 가능 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출생시에 시작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저체중아(출생시의 체중이 1,500그램 이하인 신생아를 말합니다)로 출생하여 인큐베이터(조산아 보육기를 말합니다)를 3일이상 사용했을 경우, 3일째 사용일부터 사용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극소저체중아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단, 극소저체중아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 가입시 계약자가 태아의 이상 상태를 이미 알고 있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극소저체중아입원일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8 | 저체중아출생보장(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피보험자가 출생한날에 시작하여 사고발견기간이 종료된 때에 끝납니다. 단, 사고발견기간 종료전이라도 사고가 발견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 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② 위 ① 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가 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해지가 피보험자의 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저체중아 출생보험금	출생시 2,000그램 이하인 경우 (이하 “저체중아 출생”이라 합니다)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극소저체중아 출생보험금	출생시 1,500그램 이하인 경우 (이하 “극소저체중아 출생”이라 합니다)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5.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이하 “사고발견기간”이라 합니다)이내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사고가 발견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4.(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4.(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9 | 장해출생보장(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피보험자가 출생한날에 시작하여 사고발견기간이 종료된 때에 끝납니다. 단, 사고발견기간 종료전이라도 사고가 발견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무효 또는 해지인 경우의 환급)

- ①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② 위 ① 이외의 사유로 무효 또는 해지가 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해지가 피보험자의 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장해출생 보험금	장해의 대상 분류표 ([별표28]장해의 대상 분류표 참조)에 해당하는 장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하 “장해 출생”이라 합니다),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심한장해출생 보험금	심한 장해의 대상 분류표 ([별표29]심한장해의 대상 분류표 참조)에 해당하는 심한 장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하 “심한장해 출생”이라 합니다)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5.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4.(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심한장해에서 뇌성마비의 경우에는 2년간으로 합니다. 이하 “사고발견기간”이라 합니다)이내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사고가 발견되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다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4.(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1인의 피보험자에게 4.(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 출생 또는 심한장해 출생 중 두 가지 이상이 발견된 경우(시기가 다르게 발견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회사는 각각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1인의 피보험자에게 4.(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해(별표28)장해의 대상 분류표 참조) 중 두 가지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회사는 먼저 발견된 하나의 장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1인의 피보험자에게 4.(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한장해(별표29)심한장해의 대상 분류표 참조) 중 두 가지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 회사는 먼저 발견된 하나의 심한 장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4.(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0 | 결핵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결핵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결핵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결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약관에 있어서 「결핵」이라 함은 「결핵 분류표」(별표46)결핵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약제감수성검사(신속 내성 검사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 모두에 동시 내성이 있는 약제내성 결핵균이 발견된 경우에도 “결핵”으로 인정합니다.
- ② 위 ①의 「결핵」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다만, 회사가 약제감수성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결핵균 검사 결과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결핵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1 |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약관에 있어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이라 함은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 분류표」(별표47)(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약제감수성검사(신속 내성 검사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이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 모두에 동시 내성이 있는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균이 발견된 경우도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으로 인정합니다.
- ② 위 ①의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다만, 회사가 약제감수성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균 검사 결과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2 | 심장판막협착증진단비(대동맥판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심장판막협착증진단비(대동맥판막)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판막협착증진단비(대동맥판막)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이라 함은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분류표」(별표119)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장판막협착증진단비(대동맥판막)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3 | 성조숙증진단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성조숙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성조숙증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5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성조숙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성조숙증」이라 함은 「성조숙증 분류표」(별표49)(성조숙증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성조숙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증상과 함께 관련검사(호르몬검사, 영상검사 등)에서 기질적 이상이 확인된 때를 말합니다. 또한, 회사가 “성조숙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약물복용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②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성조숙증”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성조숙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15.(계약 후 알릴 의무) 및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4 |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모야모야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모야모야병 개두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모야모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모야모야병」이라 함은 「모야모야병 분류표」(별표56)(모야모야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모야모야병의 진단확정은 임상증상(병력, 신경학적검사 등)과 함께 영상학적 진단(CT, MRI/MRA, Cerebral angiography)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4. ("개두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모야모야병 개두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개두를 동반한 직접혈관문합술(Direct revascularization), 간접 혈관문합술(Indirect revascularization), 병합 혈관문합술(Combined revascularization), 혈종제거술(Hematoma evacuation) 등의 수술을 한 것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5 | 사시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시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사시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시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사시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사시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사시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
 - ④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9)

- ⑤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⑥ 비만(E66)
 - ⑦ 요실금(N39.3, N39.4, R32)
 - ⑧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 ⑨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⑩ 다래끼 및 콩다래끼(H00)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사시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사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사시”라 함은 「사시 분류표」(별표66)사시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마비성 사시, 기타사시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사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사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단, 사시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 포함)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6 | 척추측만증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척추측만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 때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척추측만증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척추측만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척추측만증"이라 함은 「척추측만증 분류표」(별표67)척추측만증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척추측만증, 척추의 선천변형, 선천성 골기형으로 인한 척추측만증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척추측만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척추측만증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7 |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비인후과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
- ④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P00-P99)
- ⑤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⑥ 비만(E66)
- ⑦ 요실금(N39.3, N39.4, R32)
- ⑧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 ⑨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이비인후과질환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이비인후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이비인후과질환”이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① 「주요이비인후과질환 분류표」(별표62)주요이비인후과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
 - ② 이비인후과전문의가 진단 및 수술한 귀,코 및 인후부 기관의 질병
- ② 위 ①.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③ 위 ①.②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전문의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4. (“이비인후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①.②의 경우 귀, 코, 인후부 기관의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수술의 경우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의하여 행해진 수술에 한정합니다.
- ③ 위 ②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④ 위 ②의 수술에는 이비인후과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⑤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8 | 질병후유장해(3~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질병후유장해(3~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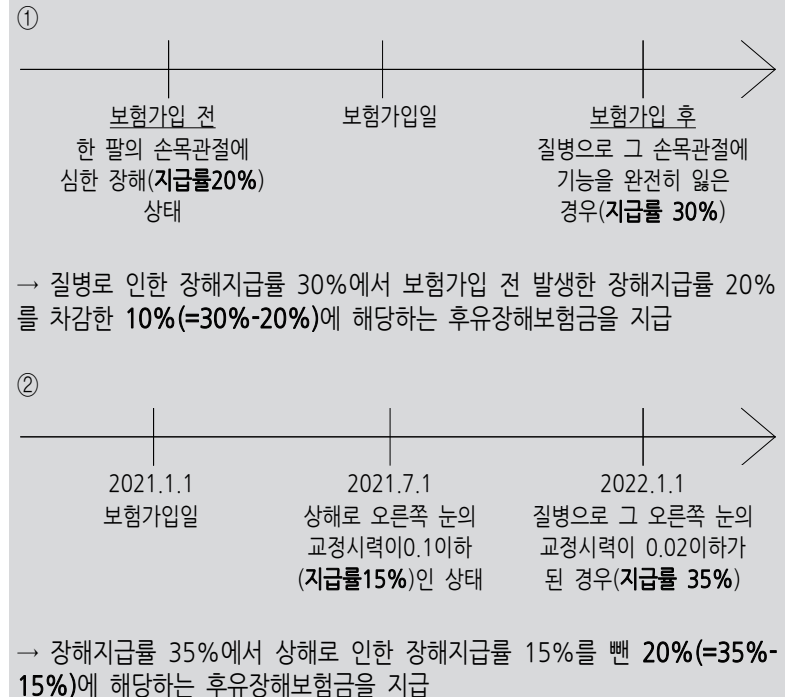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9 | 다빈치로봇암수술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다빈치로봇암수술비(연간1회한,특정암제외)
2. 다빈치로봇암수술비(연간1회한,특정암)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암(특정암제외) 또는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

구분	지급금액
다빈치로봇암수술비 (연간1회한,특정암제외) 다빈치로봇암수술비 (연간1회한,특정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갱신계약 및 연장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다빈치로봇암수술비 (연간1회한,특정암제외) 다빈치로봇암수술비 (연간1회한,특정암)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다빈치로봇암수술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암제외)”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립선암, 갑상선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암”이라 함은 전립선암 및 갑상선암을 말하며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특정암제외)” 또는 “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특정암제외)” 또는 “특정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특정암제외)” 또는 “특정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특정암제외)” 또는 “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특정암제외)”, “특정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다빈치로봇암수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다빈치로봇암수술”이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 중 다빈치(da Vinci) 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수가코드	행위명
QZ966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①



용어
풀이

다빈치로봇암수술

다빈치로봇암수술이란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통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② ①에서 정의하는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 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암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③ 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예 따라 ①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 ④ ①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과 동일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암(특정암제외)” 또는 “특정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특정암제외)” 또는 “특정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특정암제외)” 또는 “특정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특정암제외)” 또는 “특정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9.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0 |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3.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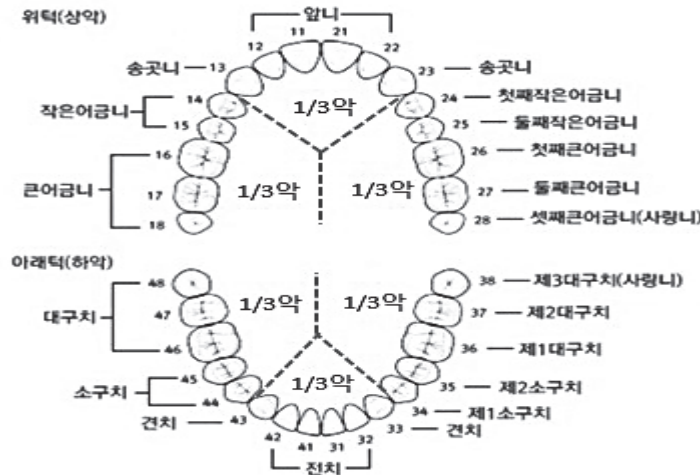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이하「주요치주질환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기준	치료내용	진료행위코드
1/3약당 지급	1. 치주소파술(1/3약당) 2. 치은신부착술(1/3약당) 3. 치은성형술(1/3약당) 4. 치은절제술(1/3약당) 5. 치은박리소파술(1/3약당) 가. 간단 나. 복잡(치조골의 성형, 삭제술 포함) 6. 치근면처치술(1/3약당)	U1010 U1020 U1030 U1040 U1051 U1052 U1060
치료1회당 지급	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의 경우 나. 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 포함) 8. 조직유도재생술 가. 골이식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1)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의 경우 (2) 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 포함) 9.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10.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11. 치은이식술 12. 치관분리술	U1071 U1072 U1081 U1082 U1083 U1090 U1100 U1110 UX102
치료 치아 1개당 지급	13. 치근절제술(1치당) 중 가. 선택적치근절제술 나. 치아반측절제술 14. 치관확장술(1약당) 중 가. 치은절제술 나. 근단변위판막술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U1131 U1132 UY101 UY102 UY103

- ②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치료와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치료로 두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③ 위 ①에서 1/3악이란 치아전체(상악(윗니), 하악(아랫니))를 각 좌측구치부, 우측구치부, 전치부로 3구역으로 나눈 단위로서 1인당 6개의 1/3악을 가집니다. 전치부란 송곳니와 반대 송곳니부분에 해당하는 앞니(송곳니포함)에 해당하며, 구치부는 전치부 이외의 어금니 치아부분에 해당합니다.



용어
풀이



- ④ 위 ①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 ⑤ 위 ① 및 ④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 외에 “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위 ①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 ⑦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식)
 - 진료된 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또는 발거원인)
 - 진료내용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③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영구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유치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자연치를 말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	흔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71 | 치주질환치료비(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진단, 확정 받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2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3.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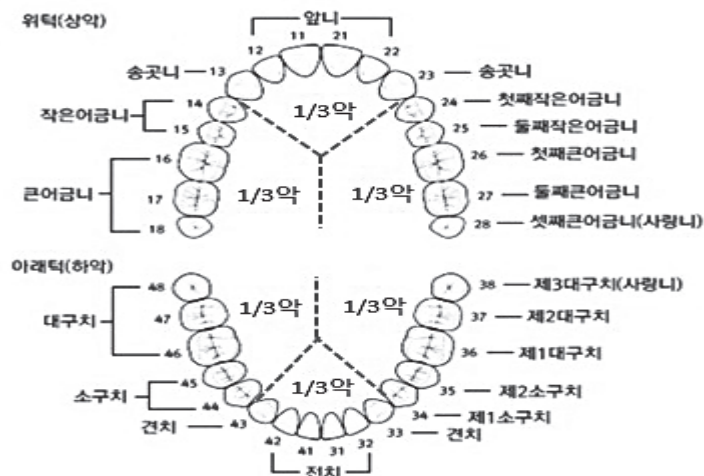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이하「주요치주질환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기준	치료내용	진료행위코드
1/3약당 지급	1. 치주소파술(1/3약당)	U1010
	2. 치은신부착술(1/3약당)	U1020
	3. 치은성형술(1/3약당)	U1030
	4. 치은절제술(1/3약당)	U1040
	5. 치은박리소파술(1/3약당)	
	가. 간단	U1051
치료1회당 지급	나. 복잡(치조골의 성형, 삭제술 포함)	U1052
	6. 치근면치치술(1/3약당)	U1060
	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의 경우	U1071
	나. 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 포함)	U1072
	8. 조직유도재생술	
	가. 골이식을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	U1081
	나. 골이식을 동반한 경우	
	(1)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이식의 경우	U1082
	(2) 자가골이식의 경우(채취 포함)	U1083
	9. 조직유도재생막 제거술	U1090
	10. 치은측방변위판막술, 치관변위판막술	U1100
치료 치아 1개당 지급	11. 치은이식술	U1110
	12. 치관부리술	UX102
	13. 치근절제술(1치당) 중	
	가. 선택적치근절제술	U1131
	나. 치아반측절제술	U1132
	14. 치관확장술(1약당) 중	
	가. 치은절제술	UY101
	나. 근단변위판막술	UY102
	다. 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	UY103

- ②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치료와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치료로 두가지 이상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 ③ 위 ①에서 1/3악이란 치아전체(상악(윗니), 하악(아랫니))를 각 좌측구치부, 우측구치부, 전치부로 3구역으로 나눈 단위로서 1인당 6개의 1/3악을 가집니다. 전치부란 송곳니와 반대 송곳니부분에 해당하는 앞니(송곳니포함)에 해당하며, 구치부는 전치부 이외의 어금니 치아부분에 해당합니다.



용어
풀이



- ④ 위 ①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 ⑤ 위 ① 및 ④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 분류표” 외에 “치주질환치료 급여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치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위 ①의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 ⑦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식)
 - 진료된 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또는 발거원인)
 - 진료내용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③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영구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유치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자연치를 말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	흔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72 |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를 보아 1회에 한하여 위 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로 봅니다.
- 위 ①의「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이하「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표」(별표64)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위 ③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 ⑦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⑧ 치아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식)
 - 진료된 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또는 발거원인)
 - 진료내용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③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영구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유치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자연치를 말합니다.
치아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잇몸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요소중 치면에 부착된 치석(치면 부착 이물질 포함)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핸드 스케일러 혹은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사용하는 술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제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치면의 표면을 마무리 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73 |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진단확정 받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2회 이상의 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를 보아 1회에 한하여 위 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운 치료로 봅니다.
- 위 ①의「치석제거(스케일링) 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치주질환(잇몸질환)치료를 목적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이하「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치과의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표」(별표64)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위 ③ 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급여 인정 기준」을 따릅니다.
-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2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 ⑦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⑧ 치아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동일 치아에 동일 질병을 원인으로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식)
 - 진료된 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또는 발거원인)
 - 진료내용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③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영구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유치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자연치를 말합니다.
치아치료를 위한 치석제거(스케일링)	잇몸질환을 발생시키는 원인요소중 치면에 부착된 치석(치면부착 이물질 포함) 등을 제거하는 과정으로서 핸드 스케일러 혹은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사용하는 술식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마제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치면의 표면을 마무리 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74 | 5대난치성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5대난치성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5대난치성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5대난치성질환진단비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5대난치성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5대난치성질환”이라 함은 「5대난치성질환 분류표」(별표7 1)5대난치성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재생불량성 빈혈, 운동신경세포병, 심근질환(142.4(심내막탄력섬유증) 제외), 전신홍반루프스, 만성 공팔병(5기)을 말합니다.
- 위 ①의 “5대난치성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임상적 증상과 함께 골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근전도검사 및 혈액검사 등 각 질환의 진단적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위 ①의 “만성 공팔병(5기)”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N18.5(만성 공팔병(5기))」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신대체요법(복막투석, 혈액투석 및 신장이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일시적 투석치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를 말합니다.



신대체요법

- 복막투석: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뱃속으로 통하는 관을 삽입하여 투석액을 교환하는 시술
- 혈액투석: 인공 신장기를 이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 제거, 신체 내 전해질 균형 유지, 과잉 수분을 제거하는 시술
- 신장이식: 정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신장을 대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신장을 심어주는 수술

4.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5대난치성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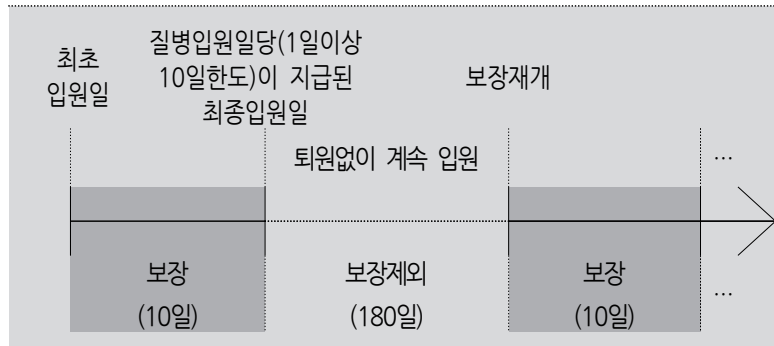
75 |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및 ②를 적용하여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성병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6 | 암수술비(유사암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수술비(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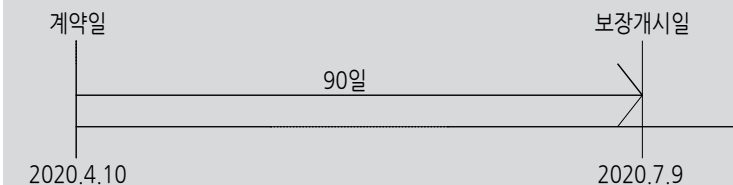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유사암제외)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7 | 유사암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수술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유사암수술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청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8 |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주요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주요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주요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주요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주요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74)주요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주요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주요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주요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절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9 |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신생아 뇌출혈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회사가 위 ①의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 및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3.("주요뇌혈관질환", "신생아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③에서 정한 사망 후 "주요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주요뇌혈관질환", "신생아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주요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주요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74)주요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생아 뇌출혈" 이라 함은 「뇌출혈 분류표」(별표 22)뇌출혈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을 말합니다.
- ③ 주요뇌혈관질환 및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주요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주요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주요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단,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0 |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예약)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주요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예약)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 (예약)(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3.(“주요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주요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5.(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주요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주요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주요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74)주요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주요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주요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주요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 보험계약일 이전에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또는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특별약관의 소멸)에 따라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또는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주요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1 | 주요허혈심장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주요허혈심장질환진단비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주요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주요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주요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75)주요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주요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 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주요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주요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주요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2 | 주요허혈심장질환진단비(예약)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주요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허혈심장질환진단비(예약)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주요허혈심장질환진단비 (예약)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주요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주요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주요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 75)주요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주요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주요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주요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이 특별약관 보험계약일 이전에 “주요허혈심장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4.(특별약관의 소멸)에 따라 “주요허혈심장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은 개시되지 않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주요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3 | 질병후유장해(20-100%)(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20~10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질병후유장해(20-100%)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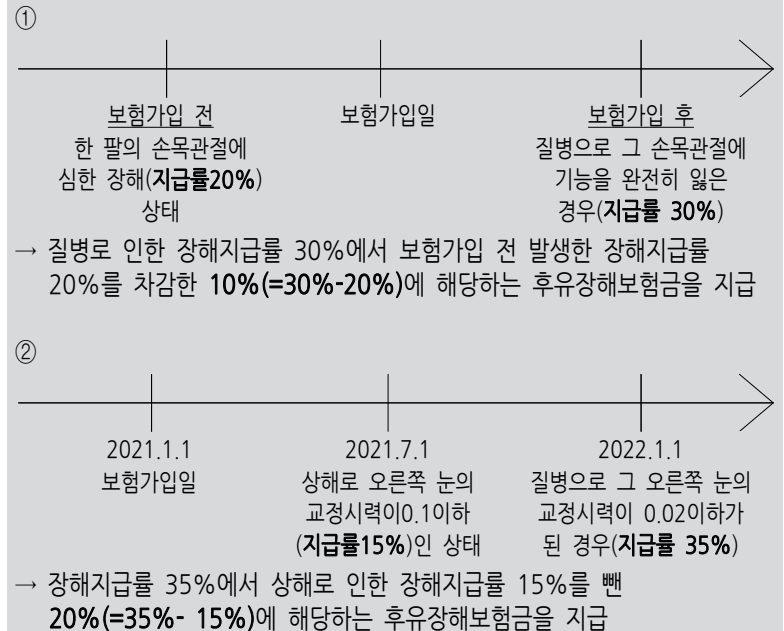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 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보험금 지급 예시



-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질병후유장해(20-100%)보험금은 질병후유장해(20-100%) 담보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4 |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84-1.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MRI검사)(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 84-2.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PET검사)(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 84-3.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CT검사)(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 84-4.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1-5중수술Q)(동일질병당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 84-5.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전신마취수술)(6시간이상)(급여)(종합병원)(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84-1 |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MRI검사)(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3. (“급여 질병 MRI검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MRI검사)(급여)(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3. (“급여 질병 MRI검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급여 질병 MRI검사”를 받은 연, 월, 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 질병 MRI검사”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질병 MRI검사”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 공명영상진단(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용어
풀이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급여 질병 MRI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급여 질병 MRI검사”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여 자기 공명영상진단 분류번호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 및 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자기공명영상(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촬영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비계산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4-2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PET검사)(급여)(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3.("급여 질병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PET검사)(급여)(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3.("급여 질병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촬영을 받은 연, 월, 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 질병 양전자단층촬영(PET)"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질병 양전자단층촬영(PET)"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생리화학적, 기능적 영상을 3차원으로 얻는 핵의학 영상법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급여 질병 양전자단층촬영(PET)"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급여 질병 양전자단층촬영(PET)"은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분류번호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 및 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촬영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비계산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4-3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CT검사)(급여)(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3.("급여 질병 CT검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CT검사)(급여)(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3.("급여 질병 CT검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검사를 받은 연, 월, 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 질병 CT검사"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질병 CT검사"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X-ray를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 진단하는 검사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급여 질병 CT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급여 질병 CT검사"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여 전산화단층영상진단 분류번호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 및 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촬영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 필수 기재), 진료비계산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4-4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질병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1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2.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2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3.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3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4.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4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5.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5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Ⅳ 분류표”〔별표189〕 1~5종수술Ⅳ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 술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질병당1회 지급)를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1종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1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2종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2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3종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3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4종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4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5종		①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 :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5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		
		②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갱신계약 및 연장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5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5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5종수술Q)(동일사고당1회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위 ①의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질병당1회지급)는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질병당1회지급)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를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수술비에서 이미 지급한 수술비를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요실금” 수술시	피보험자 보험나이 18세 계약해당일. 단, 최초계약시 피보험자 보험나이가 18세 이상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그 외 수술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에도 불구하고 “1~5종수술Ⅳ 분류표”【별표189】 1~5종수술Ⅳ 분류표 참조)의 수술종류 중 48항 “요실금수술비(급여)” 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요실금수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연간 1회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③ 위 ①의 “요실금수술비(급여)” 수술은 여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질병당1회지급)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질병당1회지급)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단,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 ④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비만(E66)
 - ⑥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2)
 - ⑦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질병당1회지급)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고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Ⅳ 분류표”【별표189】1~5종수술Ⅳ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4-5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전신마취수술)(6시간이상)(급여)(종합병원)(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6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 한도로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전신마취수술)(6시간이상)(급여)(종합병원)(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질병”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급 감염병
- ③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신마취”는 수술1회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으로 인한 질병
- ②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⑧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 ⑨ 상해사고로 인한 경우(S00~S99, T00~T99)

4. (“전신마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전신마취”라 함은 의사의 관리 하에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을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별표167)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순 정맥마취,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취 방법은 제외하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신마취는 제외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전신마취” 의료행위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전신마취”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시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2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20회 = 360분

→ 마취시간 6시간 이상에 해당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1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10회 = 210분

→ 마취시간 6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1)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6.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수술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수술”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6.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전신마취 종류/ 마취시간/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취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포함)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5 | 주요장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주요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주요장질환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주요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주요장질환"이라 함은 「주요장질환 분류표」(별표122)주요장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크론병(Crohn's Disease) 및 궤양성 대장염을 말합니다.
- ② 주요장질환의 진단 확정은 조직병리학적·방사선학적 검진과 함께 내시경 검사, 전산화단층촬영(CT scan)등에 근거하여 의료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내과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주요장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6 | 계속받는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포함)(급여)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급여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급여 항암방사선 또는 급여 항암약물치료 중 먼저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급여)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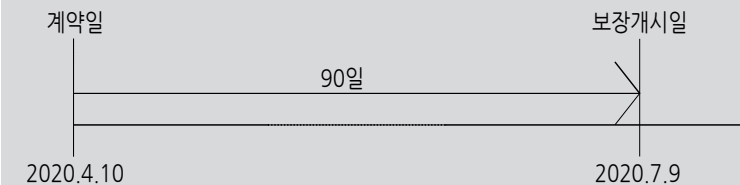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⑤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급여 항암방사선치료” 및 “급여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여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해당하는 치료를 말하며,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여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해당하는 치료를 말하며, 개정에 따라 약제 분류코드가 변경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니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⑤ 위 ① 및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7.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7 | 뇌전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전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전증”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전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전증”이라 함은 「뇌전증 분류표」(별표80) 뇌전증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뇌전증, 뇌전증지속상태를 말합니다.
- ② 뇌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전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전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전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8 | 심근병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심근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심근병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심근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심근병증”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근병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심근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심근병증”이라 함은 「심근병증 분류표」(별표81) 심근병증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심근병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을 말합니다.
- ② 심근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심근병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근병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근병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 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9 |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신생물진단비(용종포함)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위,십이지장및대장양성신생물진단비(용종포함)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이라 함은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별표82)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 및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이 진단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진단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로 정해집니다. 회사는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진단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단서(용종의 경우 내시경검사결과지로 대체 가능),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0 |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수술비(급여)(용종포함)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간, 담관 및 췌장, 갑상선 또는 남성/여성 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5대기관양성신생물수술비(급여)(용종포함)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이라 함은 「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별표83)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양성신생물(용종포함)”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③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급여)”이라 함은 「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별표84)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수술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수술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 하지 않습니다.
- ⑤ 위 ④의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1 |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E05)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절제술"이라 함은 갑상선엽 전체 혹은 일부를 절제하는 "갑상선엽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및 "갑상선엽 아전절제술(Subtotal Thyroidectomy)"을 말합니다.
 - ② 방사선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 ③ 항갑상선제를 6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



방사선요오드 치료 : 주성분이 요오드화 나트륨에 해당하는 치료
항갑상선제 : 주성분이 methimazole, propylthiouracil, carbimazole 에 해당하는 약제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단,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 포함)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2 | 대상포진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대상포진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대상포진”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대상포진”이라 함은 「대상포진 분류표」(별표86)대상포진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대상포진”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대상포진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3 | 대상포진눈병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대상포진눈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대상포진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대상포진눈병”이라 함은 「대상포진눈병 분류표」(별표87)대상포진눈병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대상포진눈병”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대상포진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4 | 녹내장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녹내장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녹내장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녹내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녹내장”이라 함은 「녹내장 분류표」(별표88)녹내장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녹내장,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을 말합니다.
- ② 녹내장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녹내장”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녹내장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5 | 특정망막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특정망막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망막질환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정망막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망막질환”이라 함은 「특정망막질환 분류표」(별표89) 특정망막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망막박리 및 망막열공,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망막층의 분리를 말합니다.
- ② 특정망막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망막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망막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6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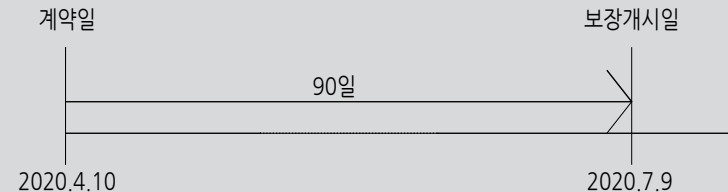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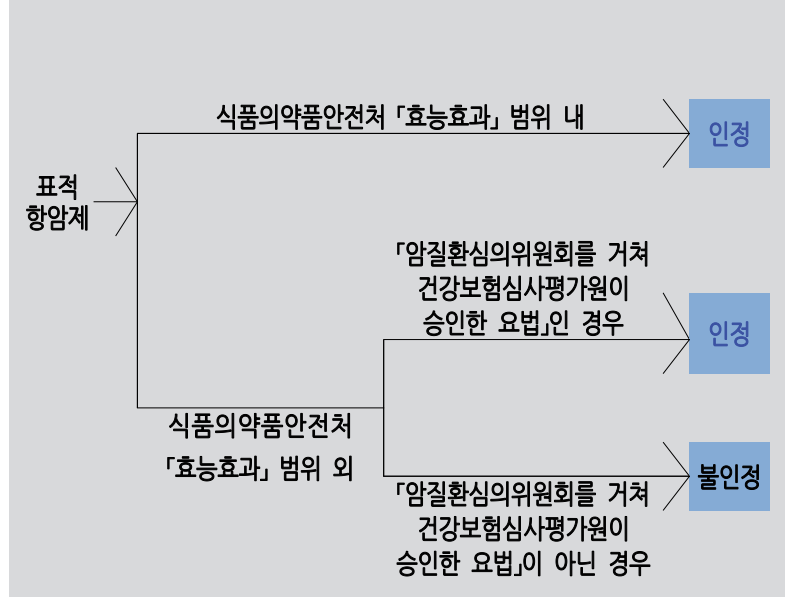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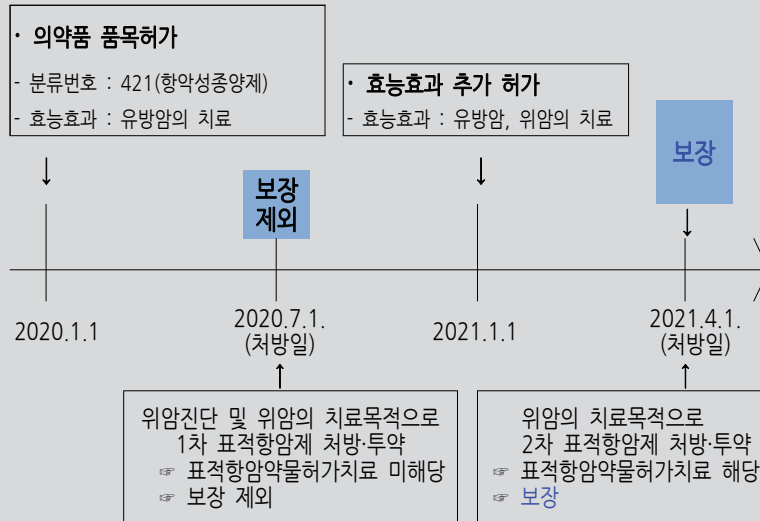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5.(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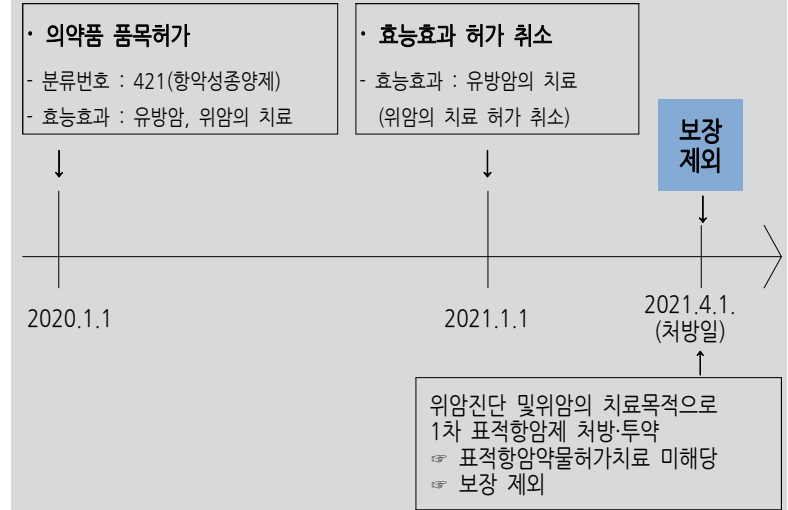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보험지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5.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38】(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4.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위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7 |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는 다음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 (최초1회한)
- ②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 (연간1회한)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구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 (최초1회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 (연간1회한)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Ⅲ	보험가입금액의 80%	보험가입금액의 20%

- ③ 위 ②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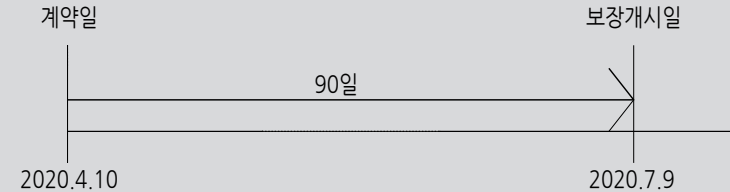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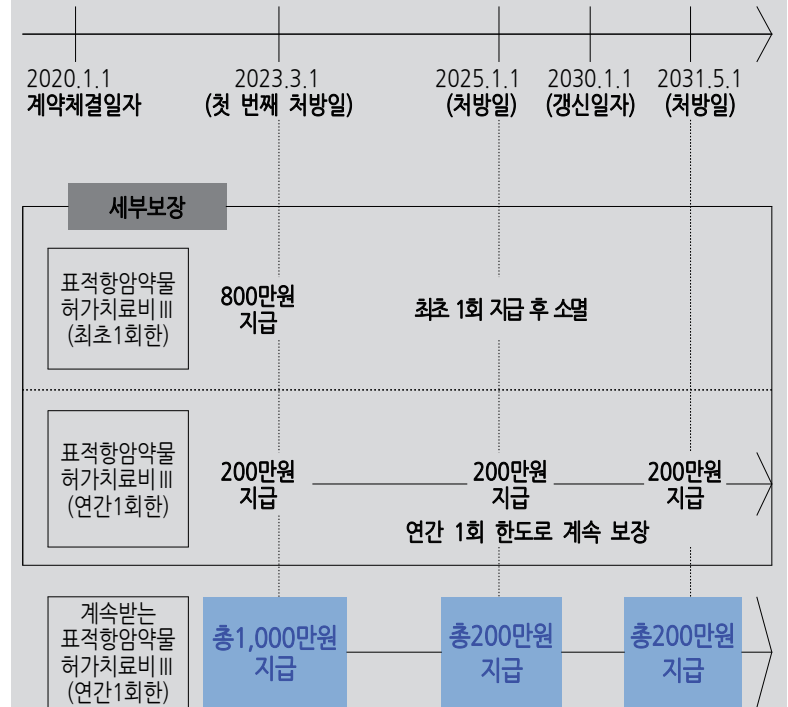


- ④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⑤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②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용어 풀이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 보장예시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계속받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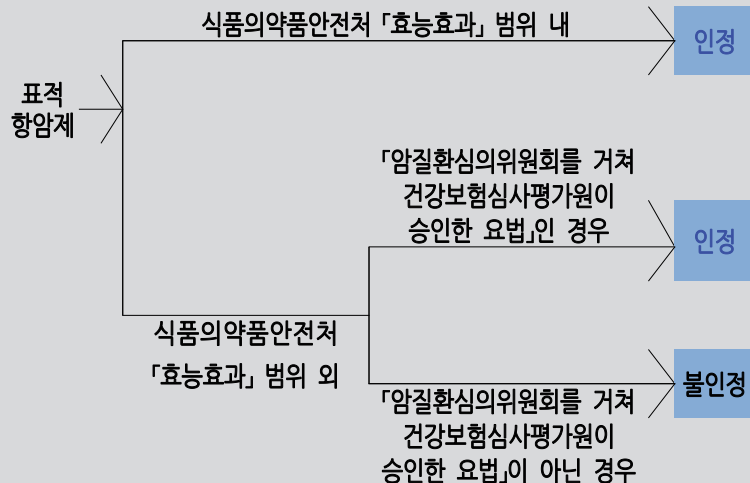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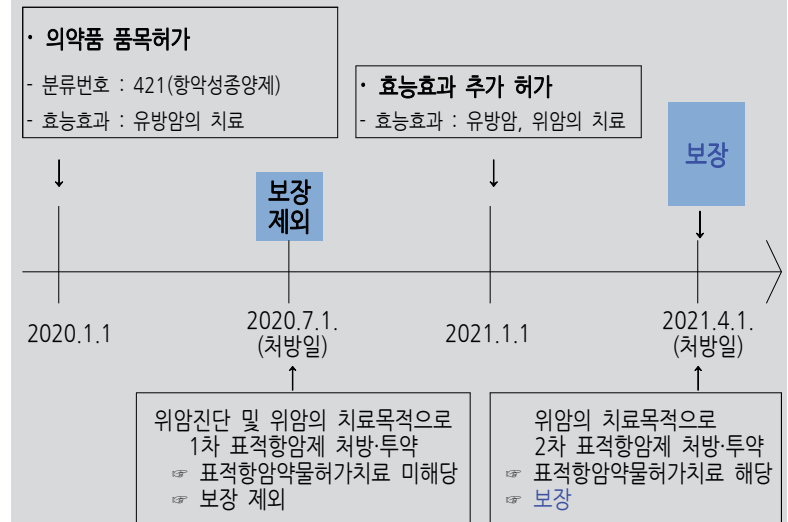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5.(“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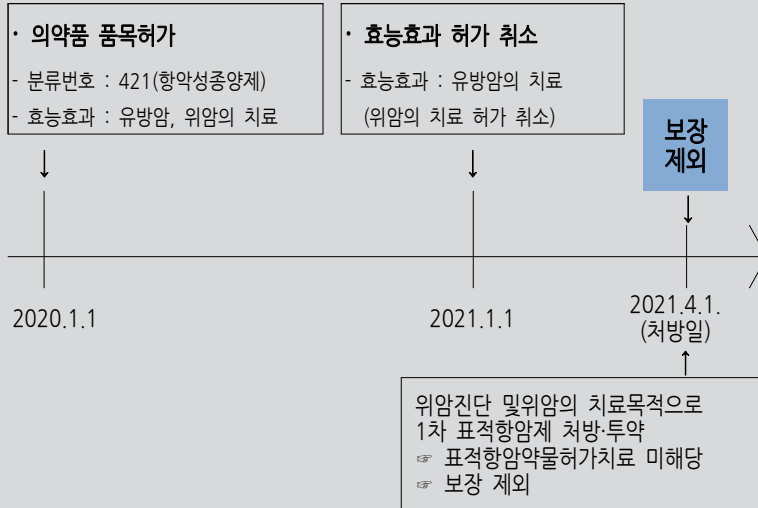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암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5.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암성중양제)' (예규 개정예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암성중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38】(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4.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위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최초 1회한)”를 지급한 경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Ⅲ(최초 1회한)”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8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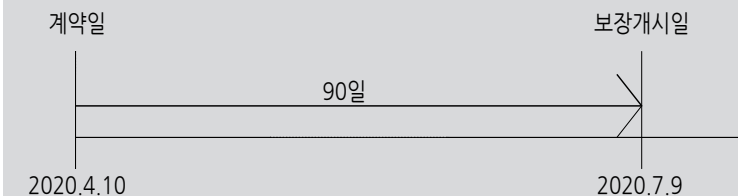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②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 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9 |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 (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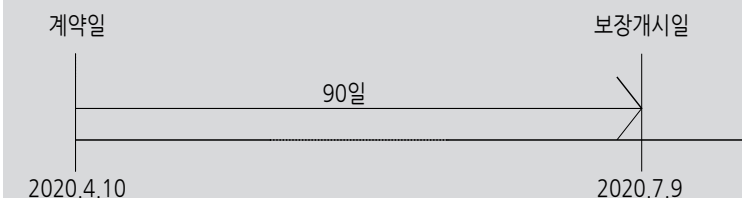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 및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라 함은 ②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방사선치료비(항암세기조절방사선)(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0 | 질병수술비Q(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질병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③ 위 ②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용어 풀이

체간골 :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열거된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일반적인 질병(제자리암·경계성종양 포함) 치료목적의 수술
 - ㉡ 치료목적의 유방절제술(Mamotomy)
 - ㉢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 ㉣ 망막박리 수술
 - ㉤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 ㉥ 냉동응고에 의한 안구 수술
 - ㉦ 중이내 튜브유치술
 -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 ㉨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 ②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 ㉡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 ㉣ 기타 악성신생물수술(단,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및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 제외)
- ③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 ㉡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단, 5,000Rad 이상의 조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 ㉣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④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용어 풀이

관혈수술 :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

근치수술 :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광청술을 함께 실시한 수술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 : 정위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단,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 ④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비만(E66)
 - ⑥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⑦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탈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임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1 | 급성간염(A,B,C형)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급성간염(A,B,C형)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급성간염(A,B,C형)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성간염(A,B,C형)”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간염(A,B,C형)” 이라 함은 「급성간염(A,B,C형) 분류표」(별표93)급성간염(A,B,C형)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급성 A형간염, 급성 B형간염, 급성 C형간염을 말하며 만성간염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급성간염(A,B,C형)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항체검사, 혈액검사, 간 기능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급성간염(A,B,C형)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간염(A,B,C형)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이미 3.(“급성간염(A,B,C형)”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간염(A,B,C형)」의 보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적용하여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급성간염(A,B,C형)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간염(A,B,C형)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2 | 120대질병수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120대질병수술비(20대질병수술보장)
2. 120대질병수술비(5대질병수술보장)
3. 120대질병수술비(68대생활질환수술보장)
4. 120대질병수술비(특정다빈도5대질병수술보장)
5. 120대질병수술비(22대질병수술보장)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20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다음과 같이 120대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20대질병수술비보장 5대질병수술비보장 68대생활질환수술비보장 특정다빈도5대질병수술비보장 22대질병수술비보장	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120대질병수술비를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120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20대질병"이라 함은 「120대질병 분류표」(별표95)120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20대질병」, 「5대질병」, 「68대생활질환」, 「특정다빈도 5대질병」 및 「22대질병」 5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 ② 위 ①의 「20대질병」이라 함은 「120대질병 분류표」(별표95)120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폐렴, 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크로이츠펔트-야콥병, 조로증 및 기타 동맥류 박리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5대질병」이라 함은 「120대질병 분류표」(별표95)120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위십이지장궤양, 녹내장, 뇌전증, 버거씨병, 위공장궤양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68대생활질환」이라 함은 「120대질병 분류표」(별표95)120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아·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주치샘의 양성신생물,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특정 부위의 탈장, 중이의 진주종 및 용종, 후각특정질환, 귀경화증, 인플루엔자,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외부요인 폐질환, 기타 호흡기질환,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섬유종증, 중이 및 유도의 질환, 내이의 질환,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병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 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외이의 질환 및 귀의 기타장애, 장의 특정기타질환, 특정 요도질환, 당뇨병질환, 고혈압질환, 부갑상선기능질환, 뇌하수체기능질환,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비장질환, 전신결합조직장애, 대사장애, 수면무호흡증, 침샘질환, 갑상선질환, 기타 등병증을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특정다빈도5대질병」이라 함은 「120대질병 분류표」(별표95)120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 백내장, 결막장애, 생식기질환 및 특정망막질환을 말합니다.

- ⑥ 위 ①의 「22대질병」이라 함은 「120대질병 분류표」(별표95)120대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치핵, 치열 및 치루, 중증근무력증, 전신결합조직장애Ⅱ,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절병, 연골병증, 눈밑부속기양성신생물,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정맥류,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충수질환, 요도결석증, 방광의결석, 다낭성 난소증후군, 대상포진, 식도정맥류, 안구의 장애, 음낭 정맥류를 말합니다.

120대질병 세부보장	질병
20대질병수술비보장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폐렴, 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크로이츠펔트-야콥병, 조로증, 기타 동맥류 박리
5대질병수술비보장	위십이지장궤양, 녹내장, 뇌전증, 버거씨병, 위공장궤양
68대생활질환수술비보장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염, 축농증,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주치샘의 양성신생물, 손목터널증후군, 어깨병변, 골다공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특정 부위의 탈장, 중이의 진주종 및 용종, 후각특정질환, 귀경화증, 인플루엔자,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외부요인 폐질환, 기타 호흡기질환,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염유종증, 중이 및 유도의 질환, 내이의 질환,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 장애,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안면신경장애, 단일신경 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외이의

120대질병 세부보장	질병
	질환 및 귀의 기타장애, 장의 특정기타질환, 특정 요도질환, 당뇨병질환, 고혈압질환, 부갑상선기능질환, 뇌하수체기능질환,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비장질환, 전신결합조직장애, 대사장애, 수면무호흡증, 침샘질환, 갑상선질환, 기타 등병증
특정다빈도5대질병 수술비보장	관절염, 백내장, 결막장애, 생식기질환, 특정망막질환
22대질병수술비보장	치핵, 치열 및 치루, 중증근무력증, 전신결합조직장애Ⅱ,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골수염, 골괴사증, 뼈의 파절병, 연골병증, 눈밑부속기양성신생물,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하지정맥류,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충수질환, 요도결석증, 방광의결석, 다낭성 난소증후군, 대상포진, 식도정맥류, 안구의 장애, 음낭 정맥류

- ⑦ 위 ① 내지 ⑥의 “120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등의 조치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3 | 7대기관수술비(연간1회한,관혈/비관혈)(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7대기관수술비(연간1회한,관혈/비관혈)(5대기관)(갱신형)
2. 7대기관수술비(연간1회한,관혈/비관혈)(2대기관)(갱신형)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7대기관질환(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소화기관질환 또는 담낭·담도및췌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각각의 뇌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소화기관질환 또는 담낭·담도및췌장질환에 대하여 관혈수술, 비관혈수술을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수술	지급금액
7대기관수술비 (연간1회한, 관혈/비관혈) (5대기관)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시 (각 질환별)	비관혈수술시(연간1회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관혈수술시(연간1회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간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수술시 (각 질환별)	비관혈수술시(연간1회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5%
		관혈수술시(연간1회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7대기관수술비 (연간1회한, 관혈/비관혈) (2대기관)	소화기관질환 수술시	비관혈수술시(연간1회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관혈수술시(연간1회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담낭·담도 및 췌장질환 수술시	비관혈수술시(연간1회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관혈수술시(연간1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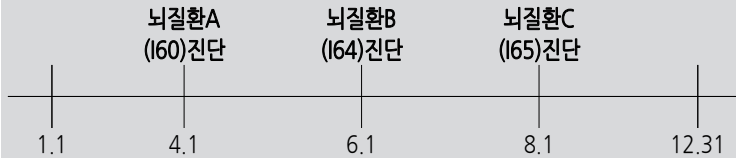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동일한 7대기관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단, 관혈수술이 연간1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관혈수술비를 지급하며, 비관혈수술도 연간1회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7대기관수술비(연간1회환,관혈/비관혈) 보장 예시

가입예시 • 최초계약의 계약일 : 2017년 1월 1일
• 연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례1)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보상 예시

뇌질환A(I60)를 원인으로 관혈수술 4.15일, 비관혈수술 4.30일 시행시
뇌질환B(I64)를 원인으로 관혈수술 6.15일, 비관혈수술 6.30일 시행시
→ 뇌질환A(I60) 관혈수술 4.15일 : 지급, 비관혈수술 4.30일 : 지급
→ 뇌질환A(I64) 관혈수술 6.15일 : 부지급, 비관혈수술 6.30일 : 부지급

(사례2)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의 보상 예시

뇌질환A(I60)를 원인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4.15일 시행시
뇌질환B(I64)를 원인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6.15일 시행시
뇌질환C(I65)를 원인으로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8.15일 시행시
→ 뇌질환A(I60) 관혈수술 4.15일 : 지급, 비관혈수술 4.15일 : 부지급
뇌질환B(I64) 관혈수술 6.15일 : 부지급, 비관혈수술 6.15일 : 지급
뇌질환C(I65) 관혈수술 8.15일 : 부지급, 비관혈수술 8.15일 : 부지급

④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7대기관수술비 (연간1회환, 관혈/비관혈) (2대기관) 중 “담낭·담도 및 췌장질환” 수술시	피보험자 보험나이 13세 계약해당일. 단, 최초계약시 피보험자 보험나이가 13세 이상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그 외 수술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

⑤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
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7대기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7대기관질환”이라 함은 「7대기관질환 분류표」(별표96)7대
기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상병 또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7대기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
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산모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② 2.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수술”, “신의료수술”을 말합니다.
- ①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단,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합니다.
- ② “카테터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로 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③ “신의료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하며, 질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적 방사선 조사”를 포함합니다. 단,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 또는 방사성물질 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 ③ 2.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관혈수술”이라 함은 위 ②의 “비관혈수술” 이외의 수술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등의 조치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4 | 다빈치로봇특정수술비(연간1회한)(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세부수술별(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적출술, 신부분 절제술,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로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다빈치로봇특정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을 받은 날로 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특정수술”이라 함은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 중 아래의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근치적 방광절제술 및 적출술(Radical Cystectomy)
 - ② 신부분절제술(Partial Nephrectomy)
 - ③ 근치적 전립선절제술(Radical Prostatectomy)
- ② 위 ①의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은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 중 다빈치(da Vinci) 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 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가코드 | 행위명

QZ966 |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용어
풀이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이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과정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다빈치로봇이 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로봇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③ 위 ②의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로봇을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다빈치로봇을 이용한 수술”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채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5 |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바이러스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 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 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 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 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주요바이러스 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주요바이러스 질환” 이라 함은 「주요바이러스질환 분류표」 (별표101)주요바이러스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주요바이러스 질환을 말합니다.
- ② 주요바이러스 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주요바이러스 질환”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 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3. (“주요바이러스 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에서 정한 주요바이러스 질환의 보균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14.(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약관에서 정한 16.(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적용하여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주요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바이러스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6 | 암중환자실입원일당II(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중환자실입원일당II(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식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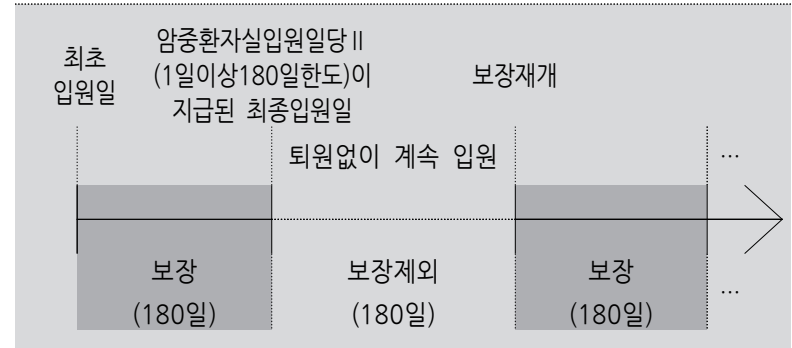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중환자실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중환자실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중환자실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중환자실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지식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①에서 ②를 적용하여 암중환자실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중환자실입원일당Ⅱ(1일이상 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증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증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자리암, 경계성증양 또는 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7 |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중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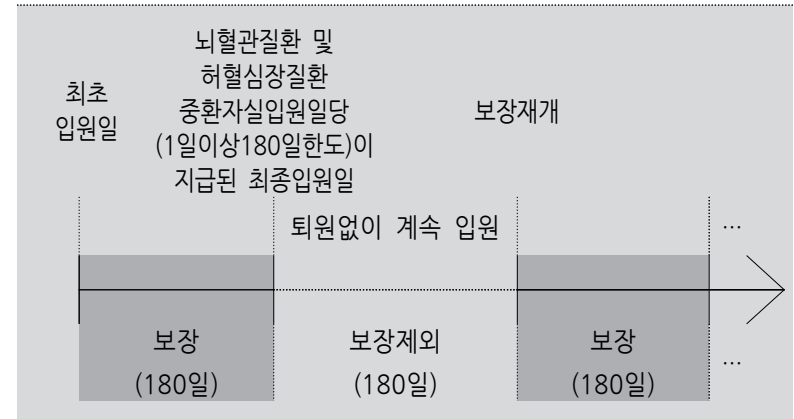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중환자실입원일당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지식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및 ②를 적용하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5.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8 |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이 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및 유사암’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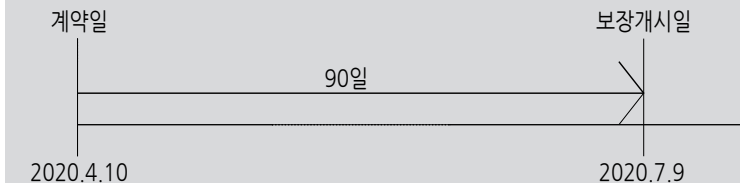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및 유사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②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및 ‘유사암’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일은 이 특별약관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 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함)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함)로 합니다.
- 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으나, 허위 또는 부당 등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이라 함은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 분류표」(별표152)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질환”이라 함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85)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해당 질병으로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④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⑤에서 정한 ‘갑상선암’, ⑥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⑦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7]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8] 이 특별약관에서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이라 함은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중 분류번호 D32(수막의 양성신생물) 및 D33(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9]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10] 위 [9]에 따른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11]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 [12]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3] 위 [1] 및 [2]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및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판단하는 시점의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1. (보험금의 지급사유) [1]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외래 또는 입원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보험
지식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중복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중 암환자로 등록된 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다른 암종(전이암 제외)에 대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암의 진단확진일로부터 적용한다.

4.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의 정의)

- [1] 이 특별약관에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중복암’으로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으로 승인된 상태를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중복암’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4항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중복암’으로 표기·등록된 암을 의미하며,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으로 이미 등록된 자에게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산정특례대상으로 기등록한 암과 다른 암종(전이암 제외)을 말합니다.

5.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4.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의 정의)에서 정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예시)

보험
지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제도의 변경으로 산정특례대상의 구분이 세분화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등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며, 해당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위 ②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된 위 ⑥ 및 위 ⑦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⑨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⑩ 위 ② 내지 ⑦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용 영수증)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및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뇌·수막의 양성신생물’ 및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9 | 기흉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기흉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흉”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기흉’이라 함은 「기흉 분류표」(별표104)기흉 분류표에서 정한 기흉, 외상성 기흉을 말합니다. 단, 「기흉 분류표」(별표104)기흉 분류표에서 정한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기흉”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흉부X선 촬영, 흉부전산화단층촬영(CT) 혹은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기흉의 진단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흉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0 | 기흉진단비(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흉 또는 신생아 기흉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기흉진단비 또는 신생아 기흉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기흉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신생아 기흉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회사가 위 ①의 기흉진단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 기흉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기흉진단비 및 신생아 기흉진단비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기흉”, “신생아 기흉”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기흉’이라 함은 「기흉 분류표」(별표104)기흉 분류표에서 정한 기흉, 외상성 기흉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신생아 기흉’이라 함은 「기흉 분류표」(별표104)기흉 분류표에서 정한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흉을 말합니다.
- ③ “기흉” 및 “신생아 기흉”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흉부X선 촬영, 흉부전산화단층촬영(CT) 혹은 흉부 방사선촬영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기흉의 진단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흉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단, 신생아 기흉진단비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두진단비Ⅱ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1 | 수두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수두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두진단비Ⅱ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수두”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두’라 함은 「수두 분류표」(별표105수두 분류표)에서 정한 수두를 말합니다. 단, 「수두 분류표」(별표105수두 분류표)에서 정한 기타 선천성 바이러스 질환 (선천수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수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자를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대소변,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112 |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수족구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수족구진단비(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수족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족구’라 함은 「수족구 분류표」(별표106)수족구 분류표)에서 정한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구내염(수족구병)을 말합니다.
- ② “수족구”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대소변,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3 |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천식지속상태」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천식지속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천식지속상태」이라 함은 「천식지속상태 분류표」(별표103) 참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천식지속상태」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천식지속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 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천식지속상태 분류표」에서 정한 J46(천식지속상태)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통계청)의 '주요 질환별 분류 지침'에 따라 '급성중증 천식', '불응의(refractory) 천식'으로 분류된 질병을 말합니다. 단, '천식', '중증천식', '급성천식', '만성천식'과 같은 용어로 표현되는 J45(천식)은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천식지속상태(급성중증천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4 | 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정신질환진단비(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특정정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정신질환’이라 함은 「특정정신질환 분류표」(별표107)특정정신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우울증,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합니다.
- ② “특정정신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특정정신질환의 진단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5 | 뇌동맥류진단비(비파열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동맥류(비파열성)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동맥류진단비(비파열성)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뇌동맥류(비파열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동맥류(비파열성)"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동맥류진단비(비파열성)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뇌동맥류(비파열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동맥류(비파열성)"라 함은 【별표 117】뇌동맥류(비파열성)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때, "선천성(비파열성) 대뇌동맥류(Q28.3)"는 보상하지 않으며,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I67.0)"와 "기타 대뇌전 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5)"도 제외됩니다.
- ② 뇌동맥류(비파열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동맥류(비파열성)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동맥류(비파열성)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동맥류진단비(비파열성)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6 |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주요심장염증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주요심장염증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주요심장염증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주요심장염증질환"이라 함은 「주요심장염증질환 분류표」(별표 118)주요심장염증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주요심장염증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심장염증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7 | 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수술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다음과 같이 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 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세부보장	지급금액
주요심·뇌·5대혈관및 양성뇌종양 수술비	심장질환 수술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뇌혈관질환 수술시	
	5대혈관질환 수술시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제외) 수술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제외) 수술시	피보험자 보험나이 15세 계약해당일. 단, 최초계약 또는 연장전계약의 경우 피보험자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그 외 수술시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 분류표」(별표48) 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5대혈관질환,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제외)을 말합니다.
- ① 위 ①에서의 “심장질환”이라 함은 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 분류표 중 심장질환 참조)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 분류표 중 뇌혈관질환 참조)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의 “5대혈관질환”이라 함은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죽상경화증,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식도정맥류, 위정맥류로 분류되는 질병(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 분류표 중 5대혈관질환 참조)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에서의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제외)”이라 함은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 분류표 중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제외) 참조)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③ 위 ①의 “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위 ①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위 ①의 “5대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내시경검사, 대동맥조영술(aortography), 전산화단층촬영(CT) 및 자기공명영상법(MRI)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 ⑤ 위 ①의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 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⑥ ② 내지 ⑤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8 | 항암방사선치료비(유사암포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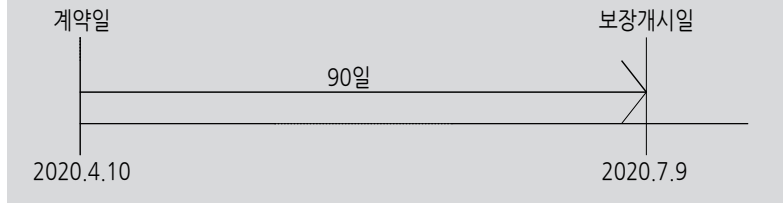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시에는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치료비,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치료비,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치료비,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비(단,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치료비,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치료비,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치료비,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비는 제외합니다)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9 | 항암약물치료비(유사암포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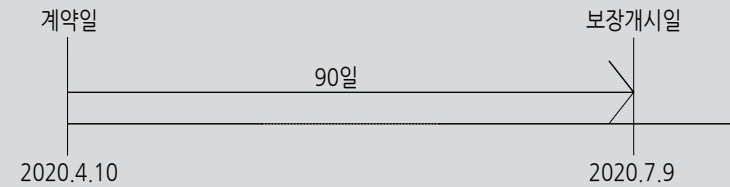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를 지급 받은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비(단,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는 제외합니다)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0 | 통합형 뇌관련진단비 |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형 뇌관련진단비 | (뇌졸중)
2. 통합형 뇌관련진단비 |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

2.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지급사유	지급금액
통합형 뇌관련진단비 (뇌졸중)	뇌졸중 진단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형 뇌관련진단비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 진단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4.("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졸중"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6.(특별약관의 소멸) ④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5.("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6.(특별약관의 소멸) ④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4.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통합형 뇌관련질환 I 분류표」(별표 124)통합형 뇌관련질환 I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단, 「통합형 뇌관련질환 I 분류표」(별표 124)통합형 뇌관련질환 I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5.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이라 함은 「통합형 뇌관련질환 I 분류표」(별표 124)통합형 뇌관련질환 I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

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1 | 통합형 뇌관련진단비 I (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형 뇌관련진단비 I (뇌졸중)(태아가입)
2. 통합형 뇌관련진단비 I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태아가입)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지급사유	지급금액
통합형 뇌관련진단비 I (뇌졸중)	뇌졸중 진단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신생아 뇌출혈 진단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통합형 뇌관련진단비 I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 진단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회사가 위 ①의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 뇌출혈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뇌졸중 및 신생아 뇌출혈은 통합형 뇌관련진단비 I (뇌졸중)(태아가입)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4.("뇌졸중", "신생아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③에서 정한 사망 후 "뇌졸중" 또는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6.(특별약관의 소멸) ④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5.("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6.(특별약관의 소멸) ④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4. ("뇌졸중", "신생아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 이라 함은 「통합형 뇌관련질환 I 분류표」(별표 124)통합형 뇌관련질환 I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생아 뇌출혈"이라 함은 「통합형 뇌관련질환 I 분류표」(별표 124)통합형 뇌관련질환 I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 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을 말합니다.
- ③ 뇌졸중 및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졸중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5.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이라 함은 「통합형 뇌관련질환 I 분류표」(별표124)통합형 뇌관련질환 I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의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2 |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 I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 I (급성심근경색증)
2.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 I (허혈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제외))

2.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지급사유	지급금액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 I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 I (허혈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제외))	허혈심장질환 (급성심근경색증제외) 진단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4.(“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6.(특별약관의 소멸) ④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5.(“허혈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허혈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제외)”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6.(특별약관의 소멸) ④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4.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통합형 심장관련질환」 분류표, ([별표126]통합형 심장관련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5. (“허혈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제외)”이라 함은 「통합형 심장관련질환」 분류표, ([별표126]통합형 심장관련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 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제외)」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3 |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Ⅱ(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Ⅱ(주요심장염증질환)
2.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Ⅱ(심근병증)
3.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Ⅱ(특정3대심장질환)
4.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Ⅱ(심장판막질환)
5.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Ⅱ(류마티스심장질환)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채임개시일) 이후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지급사유	지급금액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Ⅱ (주요심장염증질환)	주요심장염증질환 진단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Ⅱ (심근병증)	심근병증 진단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Ⅱ (특정3대심장질환)	특정3대심장질환 진단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Ⅱ (심장판막질환)	심장판막질환 진단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형 심장관련진단비Ⅱ (류마티스심장질환)	류마티스심장질환 진단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4.(“주요심장염증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주요심장염증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9.(특별약관의 소멸) ④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5.(“심근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심근병증”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9.(특별약관의 소멸) ④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6.(“특정3대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특정3대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9.(특별약관의 소멸) ④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7.(“심장판막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심장판막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9.(특별약관의 소멸) ④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8.(“류마티스심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류마티스심장”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9.(특별약관의 소멸) ④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4. (“주요심장염증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주요심장염증질환”이라 함은 「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Ⅱ 분류표」(별표15)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Ⅱ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급성 심장막염, 심장막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질환을 말합니다.
- ② 주요심장염증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관상동맥조영술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5. (“심근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심근병증”이라 함은 「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Ⅱ 분류표」(별표15)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Ⅱ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심근병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을 말합니다.
- ② 심근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심근병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근병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6. (“특정3대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3대심장질환”이라 함은 「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Ⅱ 분류표」(별표15)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Ⅱ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인공 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및 심부전을 말합니다.
- ② 「특정3대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7. (“심장판막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심장판막질환”이라 함은 「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Ⅱ 분류표」(별표15)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Ⅱ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폐동맥판장애,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를 말합니다.
- ② 심장판막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심장판막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심장판막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장판막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8. (“류마티스심장”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류마티스심장”이라 함은 「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Ⅱ 분류표」(별표15)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Ⅱ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다발판막질환,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② 류마티스심장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류마티스심장”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류마티스심장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류마티스심장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4 | 10대소화계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10대소화계질환진단비(특정6대소화계질환)
2. 10대소화계질환진단비(특정4대소화계질환)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10대소화계질환진단비 (특정6대소화계질환)(1회한)	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10대소화계질환진단비 (특정4대소화계질환)(1회한)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10대소화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0대소화계질환”이라 함은 「10대소화계질환 분류표」(별표130)10대소화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특정6대소화계질환」 및 「특정4대소화계질환」 2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 ② 위 ①의 「특정6대소화계질환」이라 함은 「10대소화계질환 분류표」(별표130)10대소화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특정식도궤양, 특정위궤양, 특정십이지장궤양, 특정소화성궤양, 위공장궤양, 특정위장염 및 결장염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특정4대소화계질환」이라 함은 「10대소화계질환」(별표130)10대소화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특정게실염, 충수질환, 복막질환, 기타장질환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10대소화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X-선 촬영, 내시경검사, 위장조영술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10대소화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CT, X-선 및 내시경 검사결과지 등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의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5 | 4대신경계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3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4대신경계질환진단비(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
2. 4대신경계질환진단비(특정안면마비)
3. 4대신경계질환진단비(수면무호흡증)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4대신경계질환진단비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1회한) 4대신경계질환진단비 (특정안면마비)(1회한) 4대신경계질환진단비(수면무호흡증) (1회한)	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4대신경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4대신경계질환" 이라 함은 「4대신경계질환 분류표」(별표 131)4대신경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 「특정안면마비」 및 「수면무호흡증」 3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 ② 위 ①의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이라 함은 「4대신경계질환 분류표」(별표 131)4대신경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 및 두개·척추내 농양 및육아종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면무호흡증」이라 함은 「4대신경계질환」(별표 131)4대신경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면무호흡증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특정안면마비」이라 함은 「4대신경계질환」(별표 131)4대신경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벨마비, 슬신경절염 및 멜커슨루프슨을 말합니다.
- ⑤ 위 ②의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CT), 뇌척수액검사, 혈관조영술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③의 「수면무호흡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수면다원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수면무호흡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위 ④의 「특정안면마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임상적 증상과 함께 신경흥분도검사(Nerve Excitability Test), 안면신경 전도검사(Facial ENoG(elctroneuronography) 또는 Facial NCS(Facial Nerve Conduction Study)), 순목검사(Blink reflex) 등의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안면마비」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MRI, CT, 혈관조형술 및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6 | 4대순환계질환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4대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하지정맥류질환)
2. 4대순환계질환진단비(특정3대심장질환)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4대순환계질환진단비 (특정하지정맥류질환)(1회한)	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4대순환계질환진단비 (특정3대심장질환)(1회한)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4대순환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4대순환계질환”이라 함은 「4대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132) 4대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특정하지정맥류질환」 및 「특정3대심장질환」 2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 ② 위 ①의 「특정하지정맥류질환」이라 함은 「4대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 132) 4대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규약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및 규약과 증상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특정3대심장질환」이라 함은 「4대순환계질환」(별표 132) 4대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및 심부전을 말합니다.
- ④ 위 ②의 「특정하지정맥류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촬영(CT), 혈관조영술, 혈관초음파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하지정맥류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의 「특정3대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MRI, CT 및 혈관조영술, 초음파 검사결과지, 방사선판독지 등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7 | 주요2대호흡계질환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주요2대호흡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주요2대호흡계질환진단비(최초1회한)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갱신계약 및 연장계약
	보험계약일로 부터 30일이하	보험계약일로 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이상	
주요2대호흡계 질환진단비(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주요2대호흡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주요2대호흡계질환”이라 함은 「주요2대호흡계질환 분류표」(별표133)주요2대호흡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간질영향호흡기질환 및 하기도 화농·괴사성 질환을 말합니다.
- 위 ①의 「주요2대호흡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X-선 촬영,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흉강 천자, 혈액검사, 객담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MRI, CT, 혈관조영술 및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5.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2대호흡계질환진단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8 | 2대양성신생물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대양성신생물진단비(골, 관절연골 양성신생물)
2. 2대양성신생물진단비(중이, 호흡계통, 흉곽내기관 양성신생물)

2.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2대양성신생물진단비(골, 관절연골 양성신생물)(1회한) 2대양성신생물진단비(중이, 호흡계통, 흉곽내기관 양성신생물)(1회한)	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2대양성신생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2대양성신생물”이라 함은 「2대양성신생물 분류표」(별표 134)2대양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및 「중이, 호흡계통 및 흉곽내기관 양성신생물」 2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 ② 위 ①의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이라 함은 「2대양성신생물 분류표」(별표 134)2대양성신생물 분류표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중이, 호흡계통 및 흉곽내기관 양성신생물」이라 함은 「2대양성신생물 분류표」(별표 134)2대양성신생물 분류표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④ 위 ②의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골 및 관절연골 양성신생물”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⑤ 위 ③의 「중이, 호흡계통 및 흉곽내기관 양성신생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 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이, 호흡계통 및 흉곽내기관 양성신생물”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검사결과지 포함)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9 | 편마비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편마비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편마비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편마비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편마비”의 정의 및 진단)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편마비” 이라 함은 「편마비 분류표」(별표50)편마비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편마비”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임상적 증상,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신경흥분도검사(Nerve Excitability Test), 안면신경 전도검사(Facial ENoG(elctroneuronography) 또는 Facial NCS(Facial Nerve Conduction Study)), 순목검사(Blink reflex) 등의 전기생리학적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편마비”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편마비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0 | 급성신우신염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급성신우신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급성신우신염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급성신우신염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성신우신염”의 정의 및 진단)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성신우신염”이라 함은 「급성신우신염 분류표」(별표135)급성신우신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급성신우신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소변검사, 균배양검사, 혈액검사, 요로조영술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급성신우신염”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신우신염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1 | 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정의 및 진단)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기능저하증” 이라 함은 「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별표 136)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 검사, 유리 싸이록신(free T4)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기능저하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2 | 특정귀어지림증 및 돌발성난청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귀어지림증 및 돌발성난청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귀어지림증 및 돌발성난청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특정귀어지림증 및 돌발성난청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정귀어지림증 및 돌발성난청”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귀어지림증 및 돌발성난청” 이라 함은 「특정귀어지림증 및 돌발성난청 분류표」(별표137) 특정귀어지림증 및 돌발성난청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특정귀어지림증 및 돌발성난청을 말합니다.
- ② 특정귀어지림증 및 돌발성난청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청력검사, 전정기능검사, 두위 변환 안진검사(positioning nystagmus)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귀어지림증 및 돌발성난청”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귀여지름증 및 돌발성난청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3 |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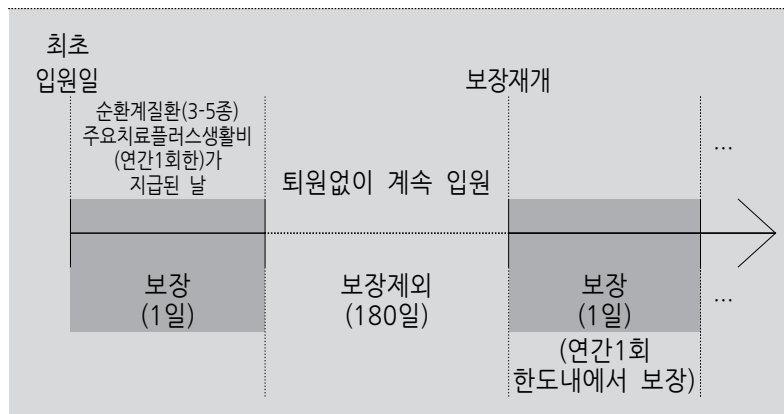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순환계질환주요치료(①수술, ②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③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④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를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함)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주요치료”라 함은 아래의 치료를 말합니다.
 - ①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 ②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 ③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 ④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시행되는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
- ② 위 ①.④의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은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에 대한 입원이라도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1회한)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1회한)가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1회한)가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위 ②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69】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 중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176-1】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 중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별표176-2】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산모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9.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8.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함)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8.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④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⑤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4 |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주요치료 2회,3회및4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순환계질환주요치료(①수술, ②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③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④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의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이상)를 지급합니다.

구분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지급금액
순환계질환(3-5종) 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 (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 이상)	2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0%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3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A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 B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 C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 D :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
- E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 F :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
- G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 A : 보험금미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1회)
 B : 1,000만원 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2회)
 C : 500만원 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3회)
 =>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1,5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1,0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D : 500만원 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4회)
 =>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2,0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1,5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E : 보험금미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1회)
 F : 1,000만원 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2회)
 G : 보험금미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1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주요치료”라 함은 아래의 치료를 말합니다.
- ①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 ②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 ③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 ④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서 시행되는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순환계질환 (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순환계질환주요치료” 의 치료 항목별 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주요치료 항목	산정기준
① 순환계질환(3-5종) 수술	수술1회당
②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연간1회한
③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연간1회한
④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	연간1회한



예시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2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0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1회,
-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 1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 4회
(2회+0회+1회+1회)

예시2)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0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2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2회,
-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 2회 시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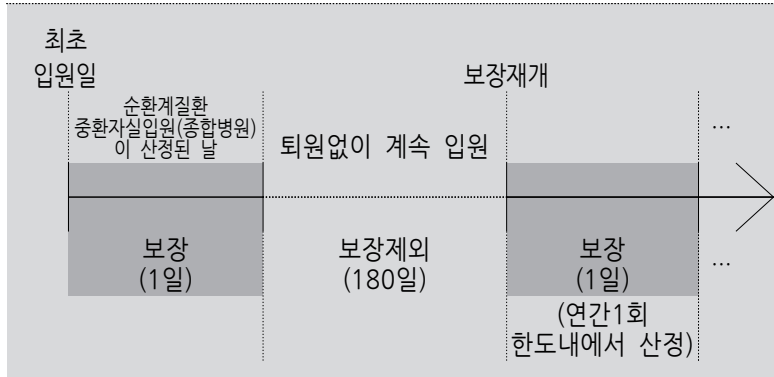
⇒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 3회
(0회+1회+1회+1회) :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의 경우 연간 1회한으로 각각 1회로 적용

- ③ 위 ②의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순환계질환(3-5종)으로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에 한하여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순환계질환(3-5종)으로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에 한하여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순환계질환(3-5종)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에 한하여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⑦ 위 ②의 “중환자실입원(중합병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 기준으로 “연간 순환계질환(3-5종) 주요치료횟수”를 산정합니다. 위 ③에 따라 “연간 순환계질환(3-5종) 주요치료횟수”가 재산정 되더라도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에 대한 입원의 경우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⑧ 위 ⑦의 “중환자실입원(중합병원)”은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에 대한 입원이라도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이 산정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⑨ 위 ⑧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위 ②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보험
지식



예시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횟수산정여부 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횟수산정 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횟수산정여부 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횟수산정 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특별
약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배
상
책
임

산
모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69) 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 중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176-1)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 중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별표176-2)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인용
문구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

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측지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9.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8.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8.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5 | 혈전용해치료비Ⅲ(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1-1. (보험금의 지급사유(혈전용해치료비Ⅲ(뇌졸중)))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뇌졸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혈전용해치료비Ⅲ(뇌졸중)로 지급합니다.

1-2. (보험금의 지급사유(혈전용해치료비Ⅲ(특정허혈심장질환)))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특정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특정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혈전용해치료비Ⅲ(특정허혈심장질환)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21)뇌졸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정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특정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36)특정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특정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5.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뇌졸중” 및 “특정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혈전용해치료비Ⅲ(뇌졸중) 또는 혈전용해치료비Ⅲ(특정허혈심장질환)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혈전용해치료비Ⅲ(뇌졸중), 혈전용해치료비Ⅲ(특정허혈심장질환)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6 | 혈전용해치료비Ⅲ(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1-1. (보험금의 지급사유(혈전용해치료비Ⅲ(뇌졸중)))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뇌졸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혈전용해치료비Ⅲ(뇌졸중)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2. (보험금의 지급사유(혈전용해치료비Ⅲ(특정허혈심장질환)))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특정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특정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혈전용해치료비Ⅲ(특정허혈심장질환)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21)뇌졸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정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특정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36)특정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특정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5.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뇌졸중” 및 “특정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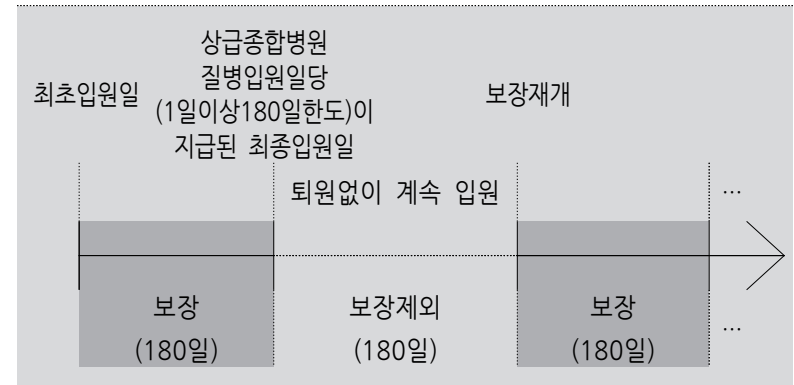
137 |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 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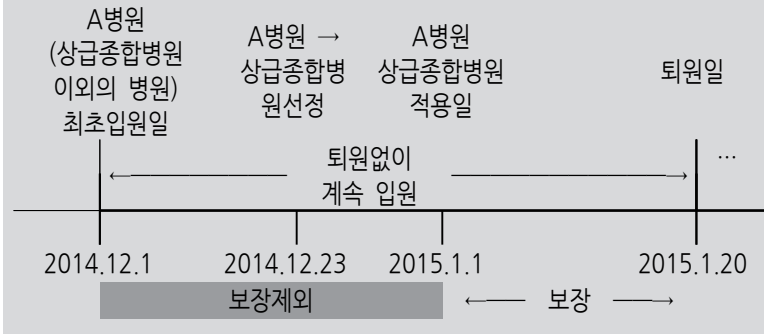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험
지식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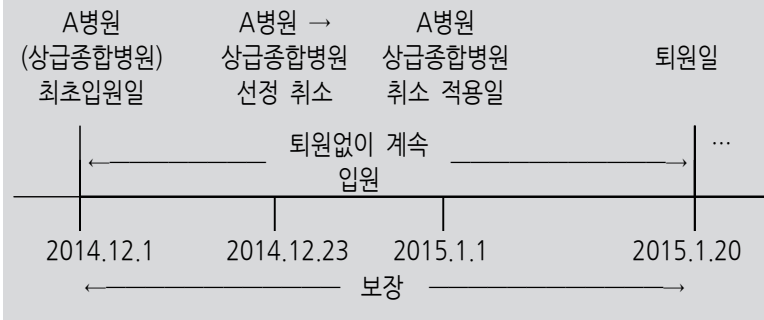


-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예시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성병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⑩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⑪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⑫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8 |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Q(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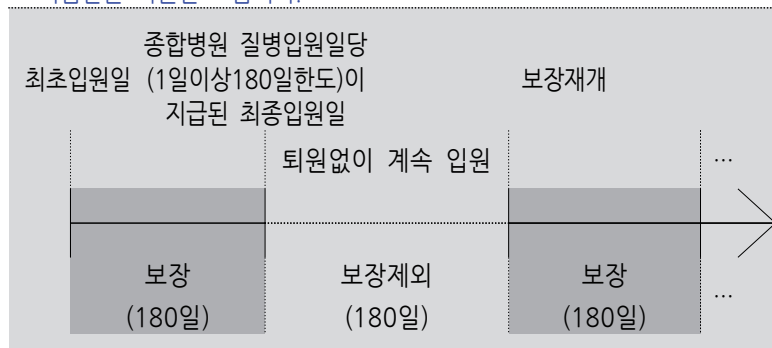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180일을 계산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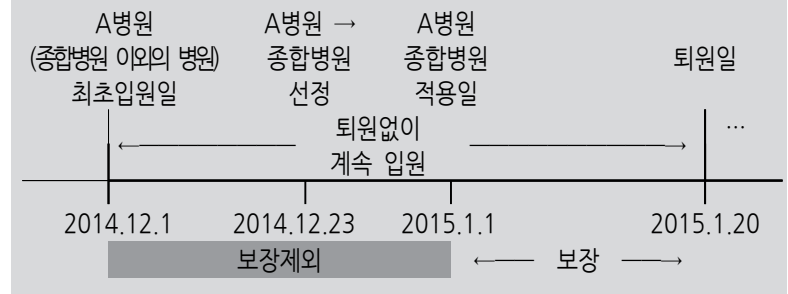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험
지식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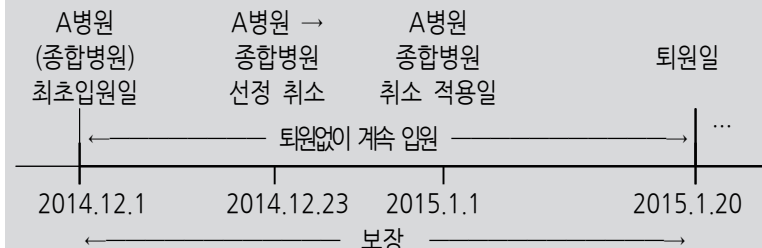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종합병원 입원 중에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에서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성병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⑩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⑪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⑫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9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 (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3.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에서 정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신규등록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으나, 허위 또는 부당 등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중 선천질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 중에 신규등록된 경우 1회에 한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법령에서 정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기간(5년, 상세불명희귀질환은 1년) 종료 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이며, 해당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43)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희귀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중 선천질환”이라 함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43)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희귀질환 중 상병코드Q로 시작하는 질병으로 특정기호 V239, V214, V240, V179, V180, V143, V291, V144, V225, V144, V269, V226, V145, V146, V147, V270, V148, V271, V272, V149, V150, V241, V181, V264, V227, V292, V265, V151, V182, V228, V183, V154, V229, V266, V230, V215, V242, V155, V300, V184, V156, V204, V216, V157, V185, V158, V243, V244, V186, V267, V159, V160, V205, V217, V021, V218, V245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료를 받아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 ③ 위 ① 내지 ②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판단하는 시점의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보험
지식

회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회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회귀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다만, [별표143] 회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의 Ⅲ~Ⅴ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이 사전에 승인한 요양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그 중 Ⅳ~Ⅴ에 해당하는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회귀질환 전문위원회로부터 상세불명 회귀질환 및 기타염색체이상질환군의 질환임을 판정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4.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회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회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회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따른 "회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보험
지식

예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제도의 변경으로 산정특례대상의 구분이 세분화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등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며, 해당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위 ②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된 위 ⑥ 및 위 ⑦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⑨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⑩ 위 ② 내지 ⑦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용 영수증)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0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 (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3.(“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신규등록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으나, 허위 또는 부당 등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재등록

법령에서 정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기간(5년) 종료시점에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이며, 해당질환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44)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중증난치질환으로 진료를 받아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판단하는 시점의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보험
지식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1.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2. 신생아의 호흡곤란(상병코드 P22.0, P22.8, P22.9) 상병은 생후 24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 인체면역바이러스질환(상병코드 B20~B24) 상병은 등록하지 않고 산정특례 적용합니다.

4.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보험
지식

예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제도의 변경으로 산정특례대상의 구분이 세분화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등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며, 해당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위 ②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된 위 ⑥ 및 위 ⑦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⑨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⑩ 위 ② 내지 ⑦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용 영수증)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1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 (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3.(「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에서 정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신규등록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을 확인한 후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으나, 허위 또는 부당 등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45)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결핵으로 진료를 받아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판단하는 시점의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치매가 외래 또는 입원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보험
지식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결핵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4.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따른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보험
지식

예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제도의 변경으로 산정특례대상의 구분이 세분화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등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며, 해당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위 ②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된 위 ⑥ 및 위 ⑦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⑨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⑩ 위 ② 내지 ⑦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용 영수증)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2 |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최초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3.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신규등록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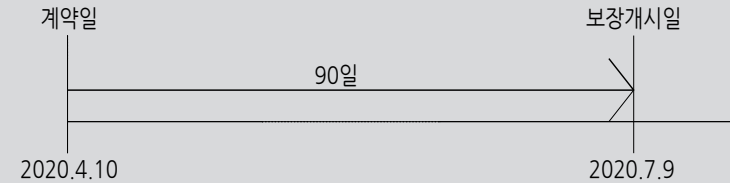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으나, 허위 또는 부당 등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재등록

1. 법령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기간(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암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 가능합니다.

3.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85)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으로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암(16대특정암 및 소액 및 유사암제외)」이라 함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85)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위의 악성 신생물(암)/ 결장의 악성 신생물(암)/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암)/ 직장의 악성 신생물(암)/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암)/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암)/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암)/ 후두의 악성 신생물(암)/ 심장, 중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암)/ 피부의 악성 흑색종/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암)/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암)/ 외음의 악성 신생물(암)/ 질의 악성 신생물(암)/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암)/ 난소의 악성 신생물(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태반의 악성 신생물(암)/ 음경의 악성 신생물(암)/ 고환의 악성 신생물(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암)/ 신우의 악성 신생물(암)/ 요관의 악성 신생물(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암)/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암)/ 부신의 악성 신생물(암)/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암)/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진성 적혈구증가증/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골수섬유증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또한 「암(16대특정암 및 소액 및 유사암제외)」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보험
지식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 진단비(최초1회한) 보장 예시

암(원발부위가 암(16대특정암 및 소액 및 유사암제외)이 아닌 암)으로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 또는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암이 암(16대특정암 및 소액 및 유사암제외)으로 전이되었다면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암(16대특정암 및 소액 및 유사암제외)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암 산정 특례 번호 부여 방식

암으로 산정특례를 여러 개 등록한 경우 암 종별로 각각 산정특례번호 부여

<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예시 >

'23.1.1. 유방암 확진, '23.1.20. 유방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24.8.5. 폐암 확진, '24.9.1.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0118***** C50 '23.01.01. ~ '27.12.31.

▶ 0119***** C34 '24.08.05. ~ '29.08.04.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③ 「암(16대특정암 및 소액 및 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16대특정암 및 소액 및 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④ 위 ③에 따른 「암(16대특정암 및 소액 및 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16대특정암 및 소액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16대특정암 및 소액 및 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판단하는 시점의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보험
지식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인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의 사에게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보험
지식

예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제도의 변경으로 산정특례대상의 구분이 세분화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등

-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며, 해당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위 ④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위 ②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된 위 ⑥ 및 위 ⑦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위 ② 내지 ⑦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에 따른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용 영수증)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16대특정암 및 소액 및 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대해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3 |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 (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3.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신등록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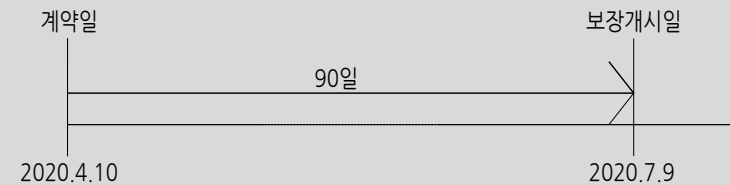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으나, 허위 또는 부당 등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재등록

1. 법령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기간(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암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 가능합니다.

3.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85)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16대특정암으로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16대특정암」이라 함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85)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식도의 악성신생물(암) / 위장의 악성신생물(암)/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암)/ 담낭의 악성신생물(암)/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의 악성신생물(암)/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암)/ 소장외의 악성신생물(암)/ 흉선의 악성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외의 악성 신생물(암)/ 중피종/ 카포시육종/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신생물(암)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또한 「16대특정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보험
지식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최초1회한) 보장 예시

암(원발부위가 16대특정암이 아닌 암)으로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 산정특례대상 진단비 또는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암이 16대특정암으로 전이되었다면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16대특정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암 산정 특례 번호 부여 방식

암으로 산정특례를 여러 개 등록한 경우 암 종별로 각각 산정특례번호 부여



보험
지식

<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예시 >

- '23.1.1. 유방암 확진, '23.1.20. 유방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24.8.5. 폐암 확진, '24.9.1.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 0118***** C50 '23.01.01. ~ '27.12.31.
 - ▶ 0119***** C34 '24.08.05. ~ '29.08.04.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16대특정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6대특정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위 ③에 따른 “16대특정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16대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16대특정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 해당부는 판단하는 시점의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보험
지식**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인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의 사에게 자필서명 확인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4.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에 따른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예시)

보험
지식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제도의 변경으로 산정특례대상의 구분이 세분화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등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며, 해당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위 ②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된 위 ⑥ 및 위 ⑦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⑨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⑩ 위 ② 내지 ⑦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용 영수증)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16대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대해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4 |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 (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3.(“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신규등록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①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

구분	지급금액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진단비(최초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갱신계약 및 연장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진단비 (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지급 산정의 기준일자는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적용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으나, 허위 또는 부당 등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험
지식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재등록

1. 법령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기간(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산정특례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2. 암 재등록 시에도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등록기준 미충족 시에는 등록기준 예외적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등록 가능합니다.

3.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85)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소액 및 유사암으로 산정특례등록신청을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소액 및 유사암」이라 함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85)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제자리암종/ 수막,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을 말합니다. 또한 「소액 및 유사암」에 대한 진단은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보험
지식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최초1회한) 보장 예시
암(원발부위가 소액 및 유사암이 아닌 암)으로 중증질환자 16대특정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 또는 중증질환자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제외)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은 후 암이 소액 및 유사암으로 전이되었다면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에서 보장을 받으려면 소액 및 유사암은 전이암이 아닌 원발암이어야 합니다.

암 산정 특례 번호 부여 방식

암으로 산정특례를 여러 개 등록한 경우 암 종별로 각각 산정특례번호 부여

< 암 산정특례 적용기간 예시 >

- '23.1.1. 유방암 확진, '23.1.20. 유방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24.8.5. 폐암 확진, '24.9.1. 폐암 공단에 산정특례 신청
- ▶ 0118***** C50 '23.01.01. ~ '27.12.31.
- ▶ 0119***** C34 '24.08.05. ~ '29.08.04.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③ 「소액 및 유사암」(“수막,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D32,D33)”제외)의 진단 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액 및 유사암」(“수막,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D32,D33)”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위 ③에 따른 「소액 및 유사암」(“수막,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D32,D33)”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소액 및 유사암」(“수막,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D32,D33)”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소액 및 유사암」(“수막,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D32,D33)”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수막,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D32,D33)”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단, CT 촬영만으로 확진한 경우,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의 ‘CT 소견’란에 담당 의사 소견을 기재해야 합니다.
- ⑥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판단하는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보험
지식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에 해당하여 의사가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으로 확인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의 사에게 자필서명 확인을 받은 후,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4.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에 따른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보험
지식

예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제도의 변경으로 산정특례대상의 구분이 세분화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등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며, 해당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위 ②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된 위 ⑥ 및 위 ⑦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⑨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⑩ 위 ② 내지 ⑦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용 영수증)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소액 및 유사암 산정특례대상 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대해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5 | 질병수술비Q(상급종합병원)(동일질병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질병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발생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

- ④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비만(E66)
- ⑥ 요실금(N39.3, N39.4, R32)
- ⑦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 ⑧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⑨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수술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수술”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6 |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 (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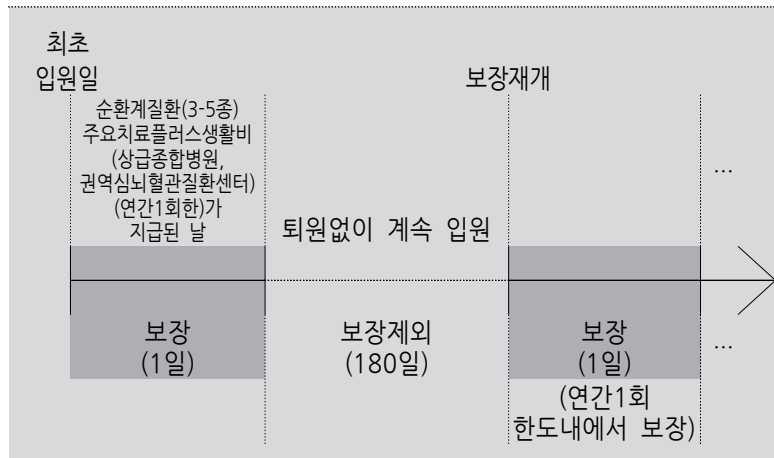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순환계질환주요치료(①수술, ②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③혈전용해치료(심혈관, 기타), ④중환자실입원)”를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주요치료”라 함은 아래의 치료를 말합니다.
 - ①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 ②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 ③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 ④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환자실입원”
- ② 위 ①,④의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에 대한 입원이라도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가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1회한)가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위 ②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69) 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 중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176-1)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 중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별표176-2)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엠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합니다.



인용문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재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8.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9.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 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8.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제도의 변경으로 9.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 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7 | 질병1-5종수술비ⅢQ(매회지급)(비갱신형) 특별약관**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매회) 분류표”【별표153】 1~5종수술(매회)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수술종류	지급금액	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1종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	20만원
2종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	30만원
3종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100만원
4종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1000만원
5종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1000만원

- ② 위 ①의 질병1-5종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1-5종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③ 위 ②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용어
풀이

체간골 :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용어
풀이

관혈수술 :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

근치수술 :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광청술을 함께 실시한 수술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 : 정위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열거된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① 일반적인 질병(제자리암·경계성종양 포함) 치료목적의 수술
- ㉠ 치료목적의 유방절제술(Mammotomy)
 - ㉡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 ㉢ 망막박리 수술
 - ㉣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 ㉤ 냉동응고에 의한 안구 수술
 - ㉥ 중이내 튜브유치술
 -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 ㉧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 ②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 ㉠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 ㉡ 기타 악성신생물수술(단,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및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 제외)
- ③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 ㉠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단, 5,000Rad 이상의 조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 ㉡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④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1-5종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1-5종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단,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 ④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비만(E66)
 - ⑥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1-5종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고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 분류표(매회)”([별표153] 1~5종수술(매회)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8 | 암진단비Ⅱ(소액암 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진단비Ⅱ(소액암 제외)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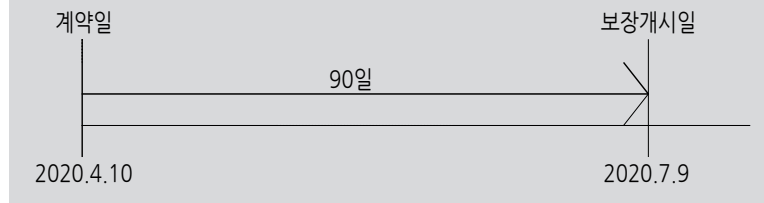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소액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소액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소액암제외)”이라 함은 ②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⑤에서 정한 “소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소액암”이라 함은 「소액암 분류표」(별표10-3)소액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암을 말합니다.
- ⑥ “암(소액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소액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⑦ 위 ⑥에 따른 “암(소액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소액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소액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소액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암진단비Ⅱ(소액암 제외)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9 | 유사암진단비Ⅱ(1년감액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2종, 4종, 8종, 9종]

①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10종, 11종]

① 연장전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연장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각각 진단받아 유사암진단비II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0 | 보험료납입지원보장Ⅱ(유사암진단)(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이 특별약관이 유효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험료납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보험료 납입지원금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

- ② 위 ①의 "보험료 납입지원기간"이라 함은 위 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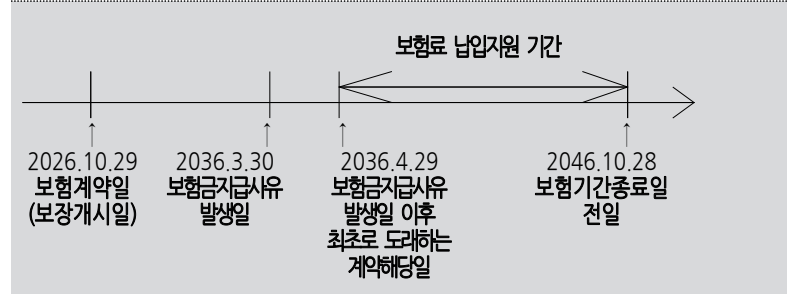
지급 예시1)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10월 29일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 2036년 3월 30일
-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 2036년 4월 29일 ~ 2046년 10월 28일

⇒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29일)에 가입금액 지급

※ 해당월에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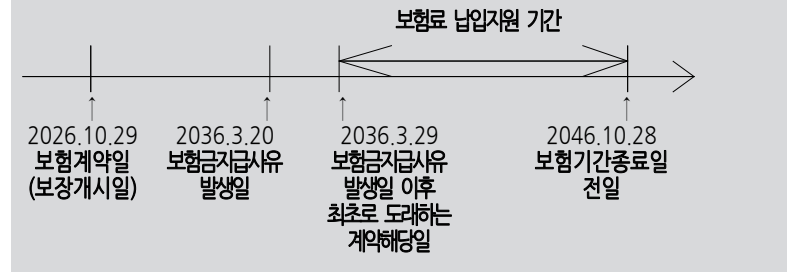
지급 예시2)

보통약관 보험료 납입기간 20년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6년 10월 29일
-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 2036년 3월 20일
-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 2036년 3월 29일 ~ 2046년 10월 28일

⇒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29일)에 가입금액 지급

※ 해당월에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료납입지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일시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③ 위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8.(특별약관의 소멸)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더 이상 보험료납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해지되는 경우 더 이상 보험료납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7.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통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통약관에서 정한 26-1.(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절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26.(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습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1 | 체증형 암수술비(유사암포함)(30%체증형)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암(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회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증형 암수술비(유사암포함)(30%체증형)로 지급합니다.

①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

구분	지급금액
체증형 암수술비(유사암포함)(30%체증형)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②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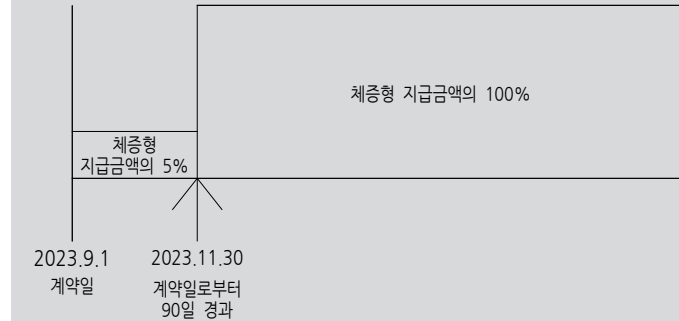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갱신계약 및 연장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체증형 암수술비 (유사암포함) (30%체증형)	체증형 지급금액의 5%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예시

암(유사암포함)(30%체증형) 경과기간별 수술시 보험금

- 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② “체증형 지급금액”은 위 ①에서 정한 체증형 암수술비(유사암포함)(30%체증형)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 수술회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매 회당 30%씩 체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1회차 수술 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적용하며, 2회차 수술부터 6회차 수술까지는 30%씩 체증됩니다. 7회차 이상의 수술은 6회차 수술 시의 체증형 지급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구분	수술회차	체증형 지급금액
체증형 암수술비 (유사암포함) (30%체증형)	1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2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30%
	3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60%
	4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90%
	5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20%
	6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50%
	7회차 이상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50%

- ③ 위 ①의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체증형 지급금액”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이 아닌 최초계약일 기준의 수술회차를 적용합니다.
- ④ 위 ①의 ② 연장계약의 “체증형 지급금액”은 이 특별약관의 연장일이 아닌 최초계약일 기준의 수술회차를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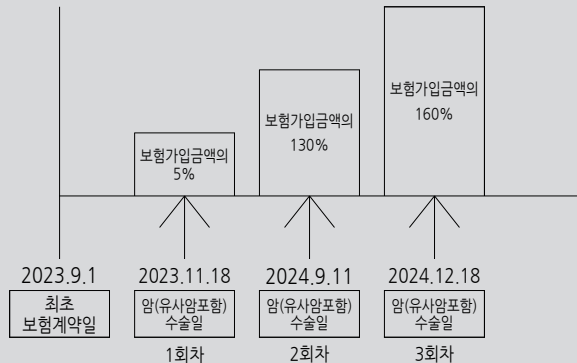


예시

암(유사암포함)(30%체증형) 수술시 회차별 보험금 지급 예시

- 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최초계약일 2023.9.1.
- 암(유사암포함) 1회차 수술일자 2023.11.18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 체증형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 미만, 체증형 지급금액의 5% 지급
- 암(유사암포함) 2회차 수술일자 2024.9.11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체증형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30%
 -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지급
- 암(유사암포함) 3회차 수술일자 2024.12.18 (최초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 체증형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60%
 - 최초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지급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체증형 암수술비(유사암포함)(30%체증형)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포함)”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④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포함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포함)”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포함)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포함)”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유사암포함)”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6.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포함)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2 | 체증형 뇌혈관질환수술비(30%체증형)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회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증형 뇌혈관질환수술비(30%체증형)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체증형 뇌혈관질환수술비 (30%체증형)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 ② “체증형 지급금액”은 위 ①에서 정한 체증형 뇌혈관질환수술비(30%체증형)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 수술회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매 회당 30%씩 체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1회차 수술 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적용하며, 2회차 수술부터 5회차 수술까지는 30%씩 체증됩니다. 6회차 이상의 수술은 5회차 수술 시의 체증형 지급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구분	수술회차	체증형 지급금액
체증형 뇌혈관질환수술비 (30%체증형)	1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2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30%
	3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60%
	4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90%
	5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20%
	6회차 이상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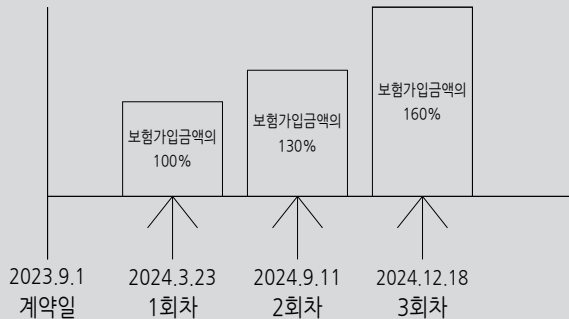
- ③ 위 ①의 갱신형(갱신계약)의 “체증형 지급금액”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이 아닌 최초계약일 기준의 수술회차를 적용합니다.
- ④ 위 ①의 연장계약의 “체증형 지급금액”은 이 특별약관의 연장일이 아닌 최초계약일 기준의 수술회차를 적용합니다.



예시

뇌혈관질환(30%체증형) 수술시 회차별 보험금 지급 예시

- 최초계약일 2023.9.1.
체증형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지급
- 2회차 수술일 2024.9.11
체증형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30%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지급
- 3회차 수술일 2024.12.18
체증형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60%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지급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리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3 | 체증형 허혈심장질환수술비(30%체증형)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회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체증형 허혈심장질환수술비(30%체증형)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체증형 허혈심장질환수술비(30%체증형)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 ② “체증형 지급금액”은 위 ①에서 정한 체증형 허혈심장질환수술비(30%체증형) 지급사유에 해당된 때, 수술회차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매 회당 30%씩 체증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1회차 수술 시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적용하며, 2회차 수술부터 5회차 수술까지는 30%씩 체증됩니다. 6회차 이상의 수술은 5회차 수술 시의 체증형 지급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구분	수술회차	체증형 지급금액
체증형 허혈심장질환수술비 (30%체증형)	1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00%
	2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30%
	3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60%
	4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190%
	5회차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20%
	6회차 이상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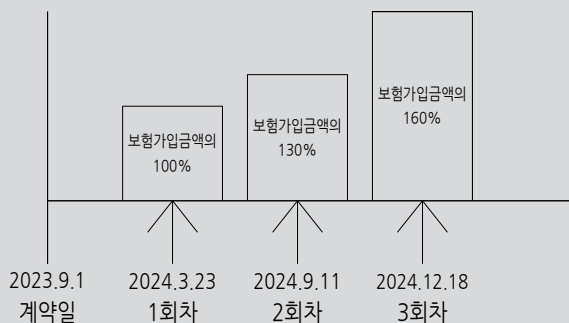
- ③ 위 ①의 갱신형(갱신계약)의 “체증형 지급금액”은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이 아닌 최초계약일 기준의 수술회차를 적용합니다.
- ④ 위 ①의 연장계약의 “체증형 지급금액”은 이 특별약관의 연장일이 아닌 최초계약일 기준의 수술회차를 적용합니다.



예시

허혈심장질환(30%체증형) 수술시 회차별 보험금 지급 예시

- 최초계약일 2023.9.1.
- 1회차 수술일 2024.3.23
체증형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00%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지급
- 2회차 수술일 2024.9.11
체증형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30%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지급
- 3회차 수술일 2024.12.18
체증형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의 160%
체증형 지급금액의 100% 지급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4 | 암직접치료통원비Ⅱ(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비Ⅱ로 지급합니다.
- ② 암직접치료통원비Ⅱ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질병구분별(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각각 연간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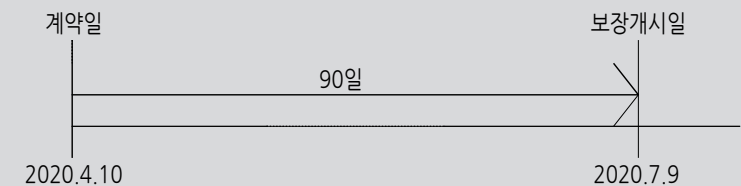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⑤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⑥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⑦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①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②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⑤ ①에서 ④까지 정한 내용은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5 | 암직접치료통원비II(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비II(종합병원)로 지급합니다.
- ② 암직접치료통원비II(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질병구분별(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각각 연간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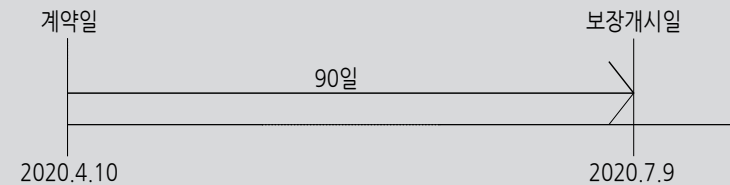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⑤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⑥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⑦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병원 적용일 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Ⅱ(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Ⅱ(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특별약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배
상
책
임

산
모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①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에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②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⑤ ①에서 ④까지 정한 내용은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8.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7.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통원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통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7.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10.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1.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2.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6 | 암직접치료통원비II(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비II(상급종합병원)로 지급합니다.
- ② 암직접치료통원비II(상급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질병구분별(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각각 연간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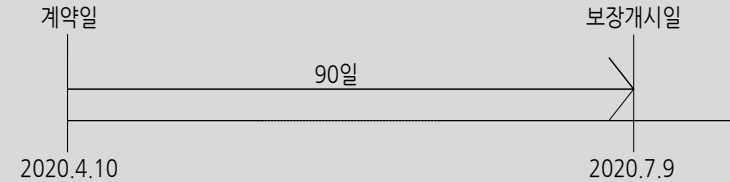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⑤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⑥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⑦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Ⅱ(상급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Ⅱ(상급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특별약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배
상
책
임

산
모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①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에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②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⑤ ①에서 ④까지 정한 내용은 경계성종양 및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는 것
 -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통원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통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또는 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10.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1.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2.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7 |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 ②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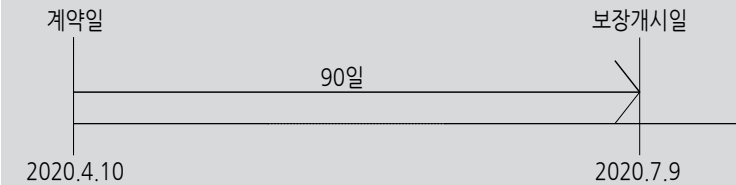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⑤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①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②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5.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유사암제외)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8 |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종합병원) (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종합병원)로 지급합니다.
-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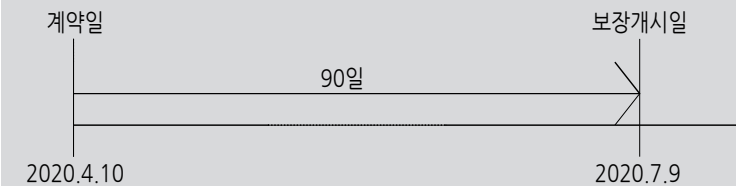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병원 적용일 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①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②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5.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통원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통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유사암제외)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9 |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상급종합병원) (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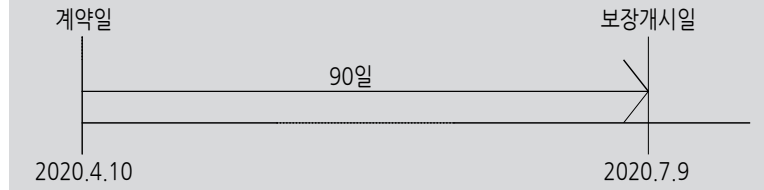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상급종합병원)로 지급합니다.
- ②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상급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⑤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함)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상급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직접치료통원비(유사암제외)(상급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포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포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①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②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통원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통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유사암제외)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0 | 뇌혈관질환통원비II(연간30회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뇌혈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통원비로 지급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통원비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1 | 뇌혈관질환통원비II(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뇌혈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통원비(종합병원)로 지급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통원비(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병원 적용일 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통원비(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통원비(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3.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통원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통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2 | 뇌혈관질환통원비II(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뇌혈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혈관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로 지급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3.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통원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통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3 | 허혈심장질환통원비II(연간30회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허혈심장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심장질환통원비로 지급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통원비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4 | 허혈심장질환통원비II(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허혈심장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심장질환통원비(종합병원)로 지급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통원비(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합병원 적용일 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심장질환통원비(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심장질환통원비(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3.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통원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통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4.("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5 | 허혈심장질환통원비II(상급종합병원)(연간30회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허혈심장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허혈심장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로 지급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적용일 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심장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심장질환통원비(상급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3.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통원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통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4.("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6 | 질병수술비Q(10년후2배체증)(매회지급)(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다음과 같이 질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질병수술비 (10년후2배체증) (매회지급)	기준일로부터 1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준일로부터 10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0%

- ② 위 ①의 질병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③ 위 ②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체간골 :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기준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기준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또한 태아보장기간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10년미만에 해당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열거된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① 일반적인 질병(제자리암·경계성종양 포함) 치료목적의 수술
- ㉠ 치료목적의 유방절제술(Mammotomy)
 - ㉡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 ㉢ 망막박리 수술
 - ㉣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 ㉤ 냉동응고에 의한 안구 수술
 - ㉥ 중이내 튜브유치술
 -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 ㉧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 ②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 ㉨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 ㉩ 기타 악성신생물수술(단,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및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 제외)
- ③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 ㉪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단, 5,000Rad 이상의 조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 ㉫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④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용어
풀이

관혈수술 :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

근치수술 :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광청술을 함께 실시한 수술

용어
풀이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 : 정위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단,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 ④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비만(E66)
- ⑥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⑦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④ 주근깨, 피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특별
약관상
해질
병질
병
및
상
해비
용
손
해배
상
책
임산
모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등의 조치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관을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7 | 질병수술비Q(10년후2배체증)(동일질병당 1회지급) (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질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질병수술비 (10년후2배체증) (동일질병당 1회지급)	기준일로부터 1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준일로부터 10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0%

- ② 위 ①의 질병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의 기준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기준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또한 태아보장기간의 경우 기준일로부터 10년미만에 해당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질병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한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
 - ④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비만(E66)
 - ⑥ 요실금(N39.3, N39.4, R32)
 - ⑦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 ⑧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⑨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한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 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옹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8 |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받은 “순환계질환주요치료(①수술, ②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③혈전용해치료(심혈관, 기타), ④중환자실입원)”의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를 지급합니다.

구분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지급금액
순환계질환(3-5종) 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 (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 관질환센터)	2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 상)	3회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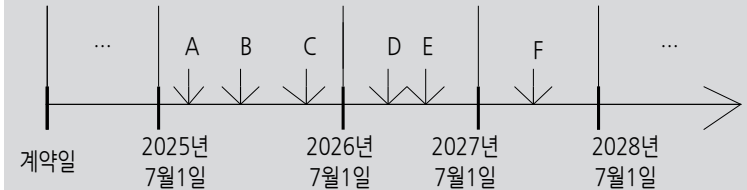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3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A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 B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 C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 기타)
- D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 E :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
- F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 A : 보험금미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1회)
 B : 1,000만원 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2회)
 C : 500만원 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3회)
 =>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1,5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1,0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D : 보험금미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1회)
 E : 1,000만원 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2회)
 F : 보험금미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1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주요치료”라 함은 아래의 치료를 말합니다.
- ①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 ②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 ③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 ④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환자실입원”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순환계질환주요치료”의 치료 항목별 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주요치료 항목	산정기준
① 순환계질환(3-5종) 수술	수술1회당
②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연간1회한
③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연간1회한
④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	연간1회한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2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0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1회,
-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 1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 4회
(2회+0회+1회+1회)

예시2)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0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2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2회,
-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 2회 시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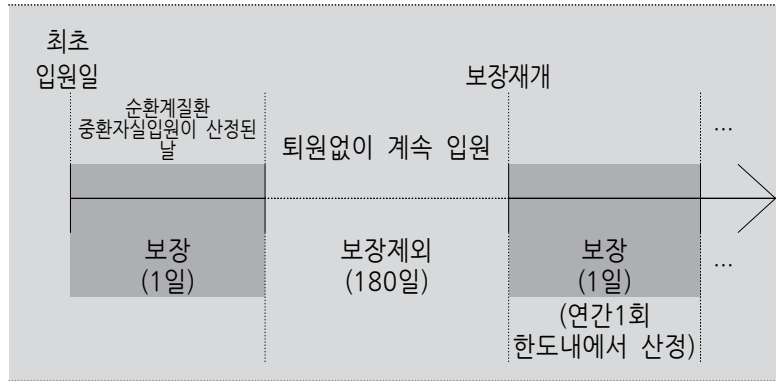
⇒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 3회
(0회+1회+1회+1회) :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중환자실입원의 경우 연간1회한으로 각각 1회로 적용

- ③ 위 ②의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순환계질환(3-5종)으로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에 한하여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순환계질환(3-5종)으로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에 한하여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순환계질환(3-5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에 한하여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⑦ 위 ②의 “중환자실입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 기준으로 “연간 순환계질환(3-5종) 주요치료횟수”를 산정합니다. 위 ③에 따라 “연간 순환계질환(3-5종) 주요치료횟수”가 재산정 되더라도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에 대한 입원의 경우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⑧ 위 ⑦의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에 대한 입원이라도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이 산정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⑨ 위 ⑧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위 ②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보험
지식**



예시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횟수산정여부 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횟수산정 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횟수산정여부 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횟수산정 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69) 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 중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176-1)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 중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별표176-2)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인용
문구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

- 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재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8.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9.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 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8.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제도의 변경으로 9. (“권역심뇌 혈관질환센터”의 정의)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 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 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 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 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 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9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세부보장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69-1.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수술시)(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 169-2.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169-1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수술시)(매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Ⅱ(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매 수술시마다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수술시) (암(유사암제외))(매회지급)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수술시) (유사암)(매회지급)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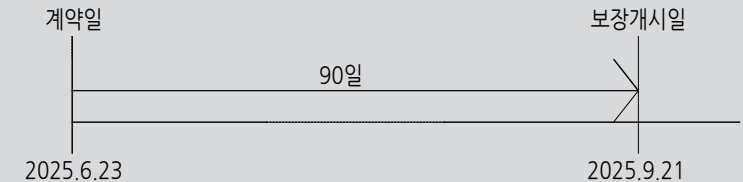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수술시)(매회지급)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수술시)(매회지급)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1. (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Ⅱ(수술)을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2-2.(보험금의 청구) ①.⑤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종합병원으로 해당 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 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⑦ 위 ⑥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⑧ 위 ⑦에 따라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위 ⑤ 및 ⑧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⑤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2-3.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2-4.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2-3.("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함)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2-3.("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위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Ⅱ(수술)”의 정의)

- ①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Ⅱ(수술)”이란 전액본인부담(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Ⅱ(수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① 내지 ③ 이외의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Ⅱ(수술)”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 (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①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④ ①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8.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9.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0.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1.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12.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9-2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Ⅱ(항암방사선약물치료)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구분에 따라 각각 연간1회한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항암방사선치료시) (암(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항암방사선치료시) (유사암)(연간1회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항암약물치료시) (암(유사암제외))(연간1회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항암약물치료시) (유사암)(연간1회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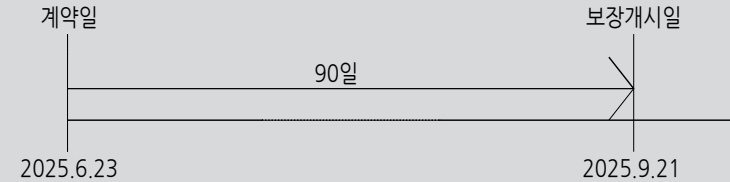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항암방사선약물치료시)(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⑤ 회사가 위 ①에 따라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항암방사선치료시)(유사암)(연간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항암방사선치료시)(유사암)(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항암방사선치료시)(유사암)(연간1회한)를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가 위 ①에 따라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연간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연간1회한)를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항암방사선치료시)(유사암)(연간1회한) 지급예시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	
2025.11.1	경계성종양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제자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연간1회한) 지급예시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지급	
2025.11.1	경계성종양으로 항암약물치료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제자리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1. (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Ⅱ(항암방사선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2-2.(보험금의 청구) ①.⑤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종합병원으로 해당 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 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⑦ 위 ⑥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⑧ 위 ⑦에 따라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위 ⑤ 및 ⑧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⑤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2-3.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2-4.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2-3.(“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2-3.(“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Ⅱ(항암방사선약물치료)”의 정의)

- ①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Ⅱ(항암방사선약물치료)”에는 전액본인부담(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②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Ⅱ(항암방사선약물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① 내지 ③ 이외의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Ⅱ(항암방사선약물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①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④ ①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9.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0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 II (10일면책,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 II (10일면책,연간 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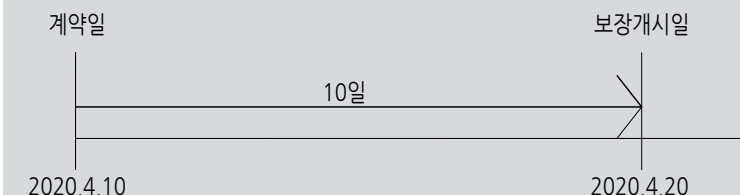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 II 보장개시일

-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 ③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독감(인플루엔자)”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별표 60-1)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및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독감(인플루엔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혈청검사, 신속항원 검사(Rapid Antigen test) 또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독감(인플루엔자)”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 항바이러스제”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 또는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제로써 진단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항목에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제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용어
풀이

“독감 항바이러스제” 성분명 안내

“독감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0년 7월 기준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성분명을 【별표60-2】(독감 항바이러스제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1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비 (연간1회한)(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 치료비(연간 1회한)를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독감(인플루엔자)”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별표 60-1)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및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독감(인플루엔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자를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혈청검사, 신속항원 검사(Rapid Antigen test) 또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독감(인플루엔자)”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독감 항바이러스제”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 또는 소멸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약제로서 진단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항목에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제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용어
풀이

“독감 항바이러스제” 성분명 안내

“독감 항바이러스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0년 7월 기준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성분명을 【별표60-2】(독감 항바이러스제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사망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2 |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받은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①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 ④중환자실입원”의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를 지급합니다.

구분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지급금액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 (종합병원)(유사암제외) (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2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0%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연간 암(유사암제외)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암(유사암제외)주요치료횟수” 3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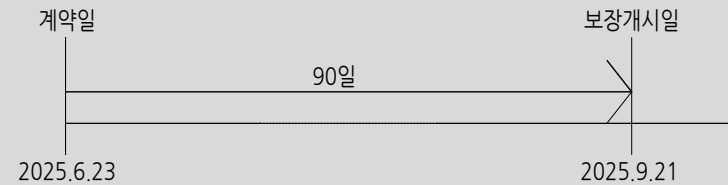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⑤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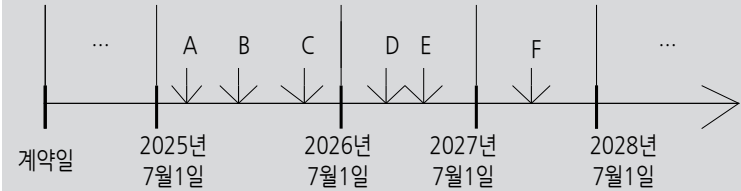
예시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유사암제외)(종합병원)(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A : 암(유사암제외) 수술
- B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 C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 D : 암(유사암제외) 수술
- E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 F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 A : 보험금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1회)
B : 1,0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2회)
C : 5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3회)
=>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1,5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1,0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D : 보험금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1회)
E : 1,0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2회)
F : 보험금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1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입원”의 치료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의 치료 항목별 연간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주요치료 항목	산정기준
① 암(유사암제외) 수술	수술1회당
②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연간1회한
③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연간1회한
④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	연간1회한



예시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암(유사암제외) 수술 2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0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1회,
-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 1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 4회
(2회+0회+1회+1회)

예시2)

- 암(유사암제외) 수술 0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2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2회,
-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 2회 시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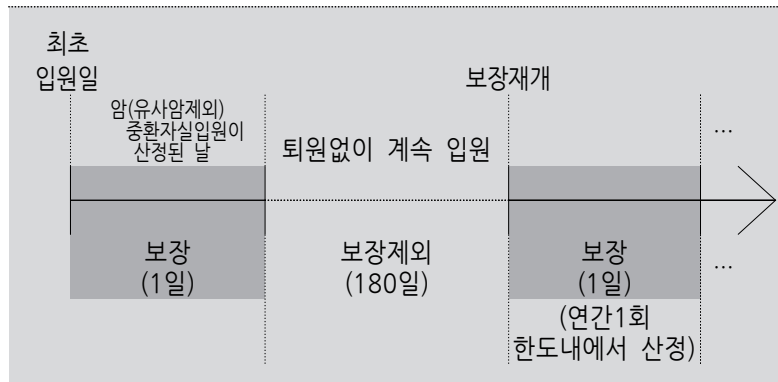
⇒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 3회
(0회+1회+1회+1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환자실입원의 경우 연간1회한으로 각각 1회로 적용

- ③ 위 ②의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④ 위 ②의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에 한하여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에 한하여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에 한하여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⑧ 위 ②의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 기준으로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산정합니다. 위 ③에 따라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가 재산정 되더라도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의 경우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⑨ 위 ⑧의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이 산정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⑩ 위 ⑨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위 ②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보험
지식**



예시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횟수산정여부 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횟수산정 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횟수산정여부 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횟수산정 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⑪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보험지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이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
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
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Ⅰ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
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
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
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
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
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
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
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측지기, 지속
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
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
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
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
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
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2.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
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3 |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이하 “유사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받은 “유사암 주요치료①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 ④중환자실입원”의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를 지급합니다.

구분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지급금액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 생활비(종합병원)(연간 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2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0%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3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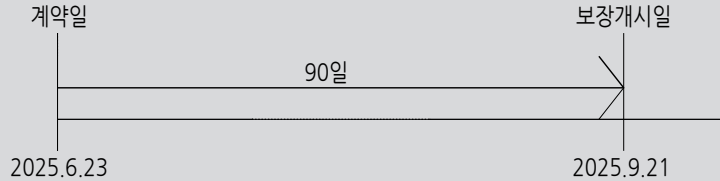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유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⑤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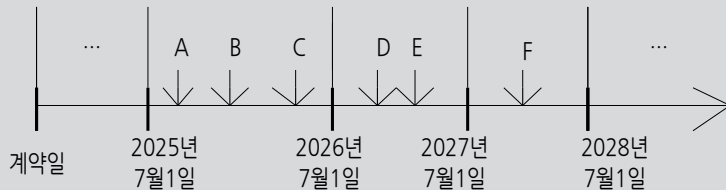
예시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A : 유사암 수술
B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C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D : 유사암 수술
E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F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 A : 보험금미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1회)
B : 1,0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2회)
C : 5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3회)
=>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1,5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1,0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D : 보험금미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1회)
E : 1,0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2회)
F : 보험금미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1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 주요치료”라 함은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입원”의 치료를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유사암 주요치료”의 치료 항목별 연간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주요치료 항목	산정기준
① 유사암 수술	수술1회당
②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연간1회한
③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연간1회한
④ 유사암 중환자실입원	연간1회한



예시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유사암 수술 2회,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0회,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1회,
- 유사암 중환자실입원 1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 4회
(2회+0회+1회+1회)

예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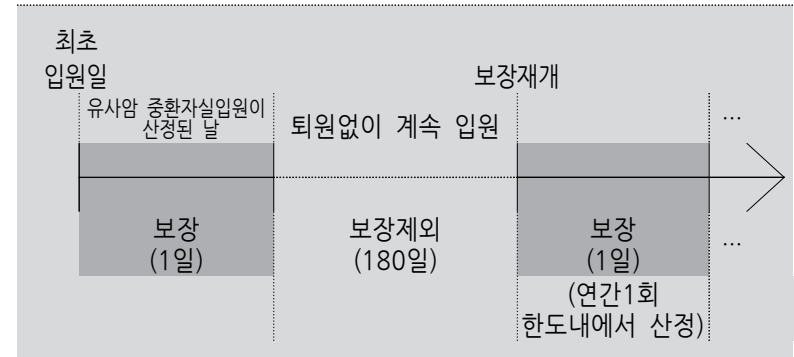
- 유사암 수술 0회,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2회,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2회,
- 유사암 중환자실입원 2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 3회
(0회+1회+1회+1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환자실입원의 경우 연간1회한으로 각각 1회로 적용

- 위 2의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를 한하여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를 한하여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유사암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유사암 중환자실입원에 한하여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위 2의 “유사암 중환자실입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 기준으로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산정합니다. 위 3에 따라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가 재산정 되더라도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의 경우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7의 “유사암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이 산정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위 8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위 2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보험
지식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횡수 산정 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횡수산정 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횡수 산정 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횡수산정 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사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이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8.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7.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7.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0.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니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1.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3.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4.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4 | 천식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천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천식진단비(최초1회한)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갱신계약 및 연장계약
	보험계약일로 부터 30일이하	보험계약일로 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이상	
천식진단비 (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천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천식”이라 함은 「천식 분류표」(별표170)천식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천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X-선 촬영,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흉강 천자, 혈액검사, 객담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MRI, CT, 혈관조영술 및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천식진단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5 |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질병입원일당Q (1일이상3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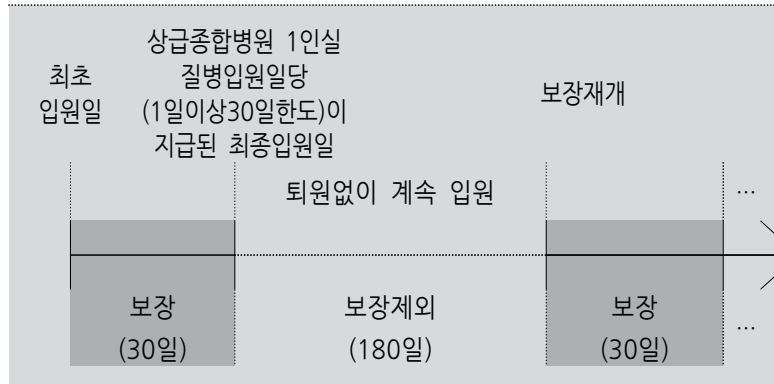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1인실’은 ‘특실’ 병실도 포함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1인실에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1인실에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1인실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급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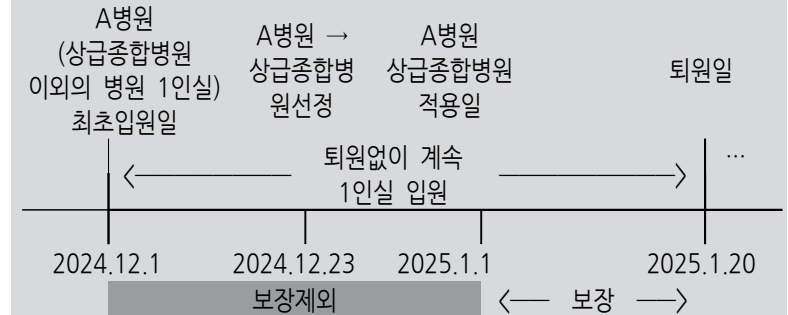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예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1인실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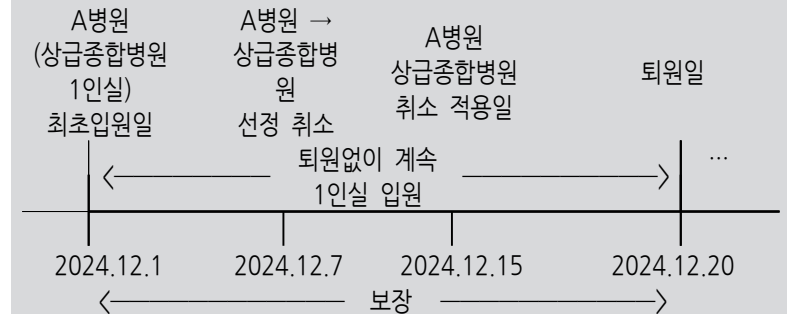


-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예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예시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성병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⑩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⑪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⑫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6 | 종합병원 1인실(특실폐함)질병입원일당Q (1일이상3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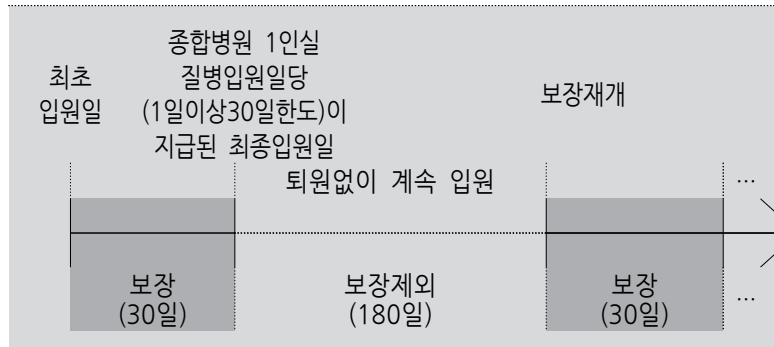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의 1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1인실’은 ‘특실’ 병실도 포함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1인실에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1인실에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1인실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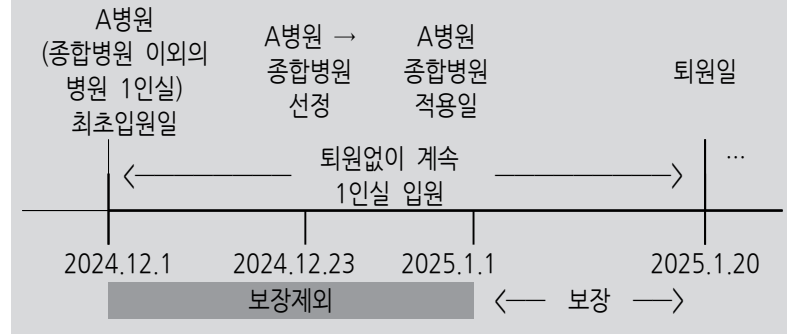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의 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5.(“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예시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1인실 입원 중에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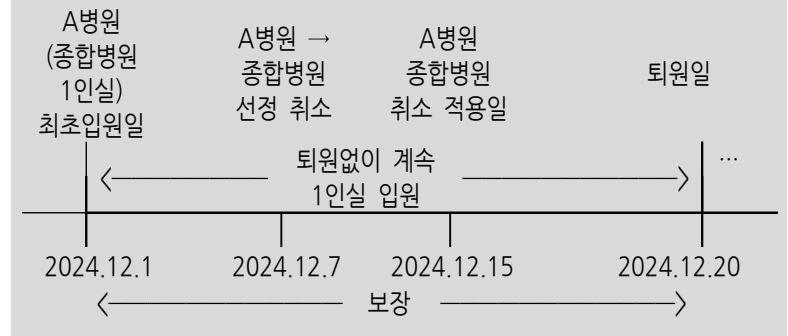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1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예시

종합병원 1인실 입원 중에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예시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성병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⑩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⑪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⑫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7 | 질병수술비Q(상급종합병원)(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질병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비를 지급합니다.
- ③ 위 ②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체간골 :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열거된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① 일반적인 질병(제자리암·경계성종양 포함) 치료목적의 수술
- ㉠ 치료목적의 유방절제술(Mammotomy)
 - ㉡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 ㉢ 망막박리 수술
 - ㉣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 ㉤ 냉동응고에 의한 안구 수술
 - ㉥ 중이내 튜브치술
 - ㉦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 ㉧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 ②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 ㉠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 ㉡ 기타 악성신생물수술(단,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및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 제외)
- ③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 ㉠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단, 5,000Rad 이상의 조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 ㉡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④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용어
풀이

관혈수술 :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

근치수술 :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광절술을 함께 실시한 수술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 :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단,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보상합니다.)
 - ④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비만(E66)
 ⑥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⑦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도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옹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보님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수술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수술”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8 |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주요치료2회, 3회및4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받은 “순환계질환주요치료(①수술, ②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③혈전용해치료(심혈관, 기타), ④중환자실입원)”의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연간주요치료2회, 3회및4회이상)를 지급합니다.

구분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지급금액
순환계질환(3-5종) 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 (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 관질환센터) (연간주요치료2회, 3회및4회 이상)	2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0%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3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회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함)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상급종합병원,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A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B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C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D :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중합병원)
E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F :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
G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A : 보험금미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1회)
B : 1,000만원 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2회)
C : 500만원 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3회)
=>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1,5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1,0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D : 500만원 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4회)
=>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2,0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1,5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E : 보험금미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1회)
F : 1,000만원 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2회)
G : 보험금미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1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주요치료”라 함은 아래의 치료를 말합니다.
 - ①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 ②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 ③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 ④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중환자실입원”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순환계질환주요치료”의 치료 항목별 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주요치료 항목	산정기준
① 순환계질환(3-5종) 수술	수술1회당
②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연간1회한
③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연간1회한
④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	연간1회한



예시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2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0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1회,
-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 1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 4회
(2회+0회+1회+1회)

예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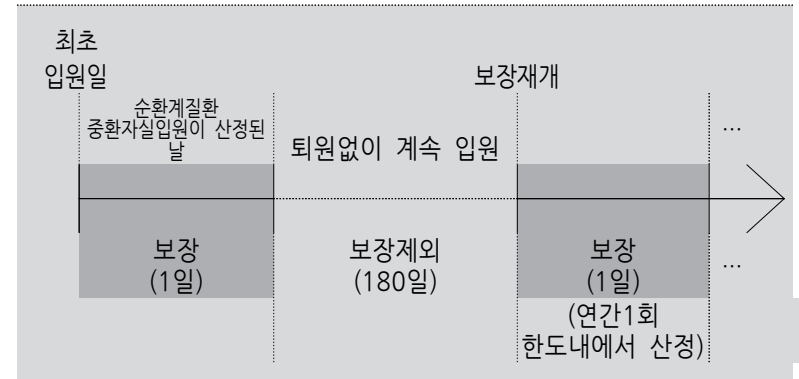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0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2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2회,
-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 2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 3회
(0회+1회+1회+1회) :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중환자실입원의 경우 연간1회한으로 각각 1회로 적용

- 위 2의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순환계질환(3-5종)으로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을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에 한하여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순환계질환(3-5종)으로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에 한하여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순환계질환(3-5종)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에 한하여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위 2의 “중환자실입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 기준으로 “연간 순환계질환(3-5종) 주요치료횟수”를 산정합니다. 위 3에 따라 “연간 순환계질환(3-5종) 주요치료횟수”가 재산정 되더라도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에 대한 입원의 경우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7의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에 대한 입원이라도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이 산정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위 8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위 2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보험
지식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횡수산정여부 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횡수산정 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횡수산정여부 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횡수산정 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69) 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 중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176-1)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 중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별표176-2)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

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한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재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0.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8.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9.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 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8.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제도의 변경으로 9.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 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산모

11.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9 |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종합병원)(연간2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①암수술	암(유사암제외)수술비(수술당)	수술당	1,500만원
②항암방사선 치료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치료당	100만원
③항암약물치 료(특정항암 호르몬약물허 가 치료 제외)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입원당)	입원당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통원당)	통원당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외)(연간1회한)	연간1회한	500만원

구 분 (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 (입원당)(연간3회한)	연간3회한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 (통원당)(연간3회한)	연간3회한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외) (연간1회한)	연간1회한	300만원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유사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⑤유사암수술	기타피부암수술비(수술당) 갑상선암수술비(수술당) 경계성종양수술비(수술당) 제자리암수술비(수술당)	각 수술당	300만원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각 치료당	20만원

구 분 (유사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⑦ 유사암항 암약물치 료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입원당)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각 입원당	20만원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통원당)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각 통원당	20만원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주사제외)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각 연간 1회한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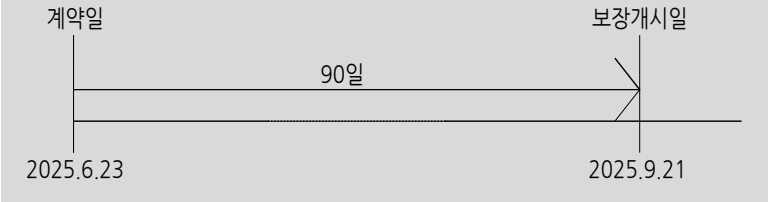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종합병원)(연간2천만원한도)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⑤ ① 및 ②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의 **전체 연간 총 지급액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위 ① 및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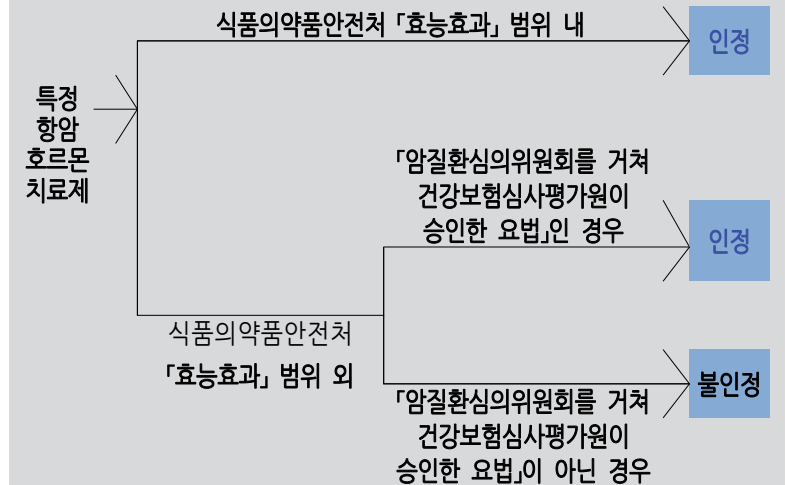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 항목 구분별로 각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항암방사선치료 및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④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주사제)(입원당)”,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입원당)(연간3회한)” 및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입원당)”은 피보험자가 퇴원 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및 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 ⑥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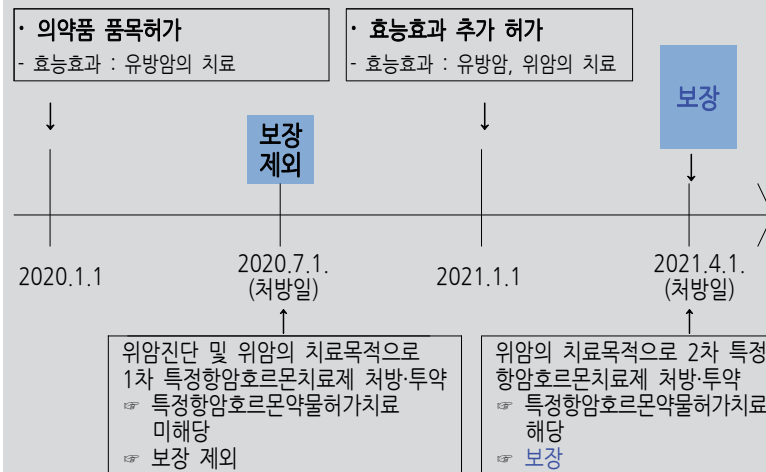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⑦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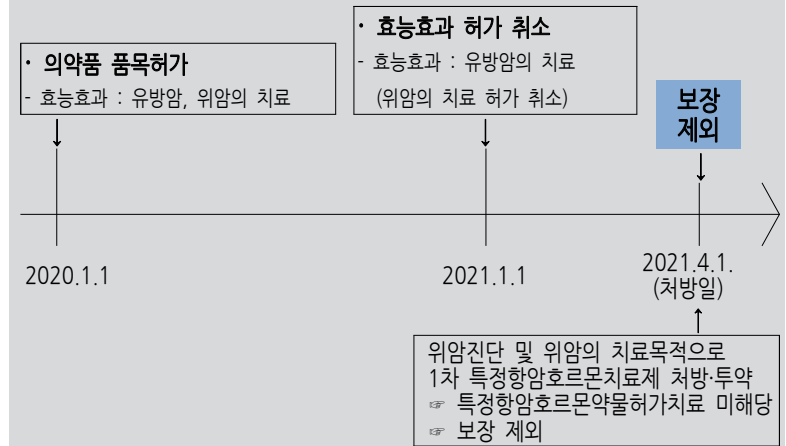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 됩니다.
-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흡인(吸引)
 - 천자(穿刺) 등의 조치
 -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 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사용한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외)”라 함은 ②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의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13.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12.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12.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1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0 |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종합병원)(연간3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①암수술	암(유사암제외)수술비(수술당)	수술당	1,500만원
②항암방사선 치료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치료당	100만원

구 분 (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③항암약물치 료(특정항암 호르몬약물허가 치료 제외)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입원당)	입원당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통원당)	통원당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외)(연간1회한)	연간1회한	500만원
④특정항암호 르몬약물허가 치료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 (입원당)(연간3회한)	연간3회한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 (통원당)(연간3회한)	연간3회한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외) (연간1회한)	연간1회한	300만원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유사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⑤유사암수술	기타피부암수술비(수술당) 갑상선암수술비(수술당) 경계성종양수술비(수술당) 제자리암수술비(수술당)	각 수술당	300만원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각 치료당	20만원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입원당)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각 입원당	20만원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통원당)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각 통원당	20만원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주사제외)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각 연간 1회한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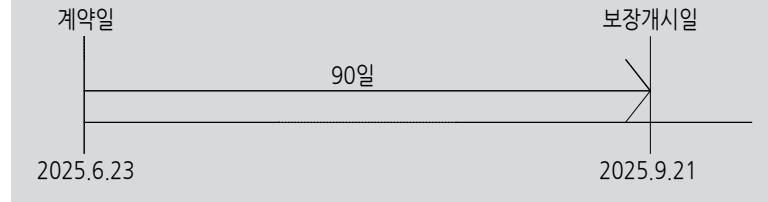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종합병원)(연간3천만원한도)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⑤ ① 및 ②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의 **전체 연간 총 지급액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위 ① 및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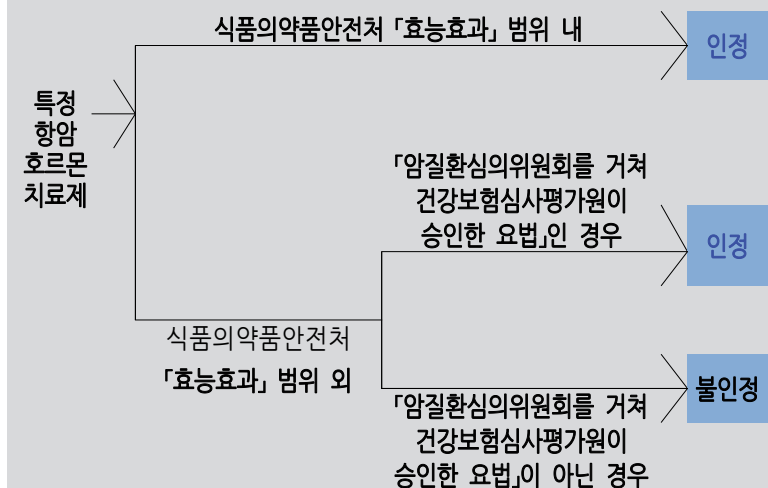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 항목 구분별로 각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항암방사선치료 및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④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주사제)(입원당)”,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입원당)(연간3회한)” 및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입원당)”은 피보험자가 퇴원 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및 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 ⑥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항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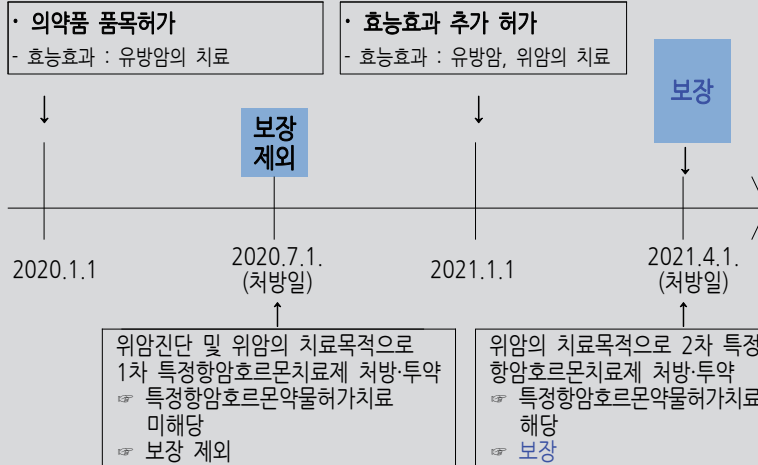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⑦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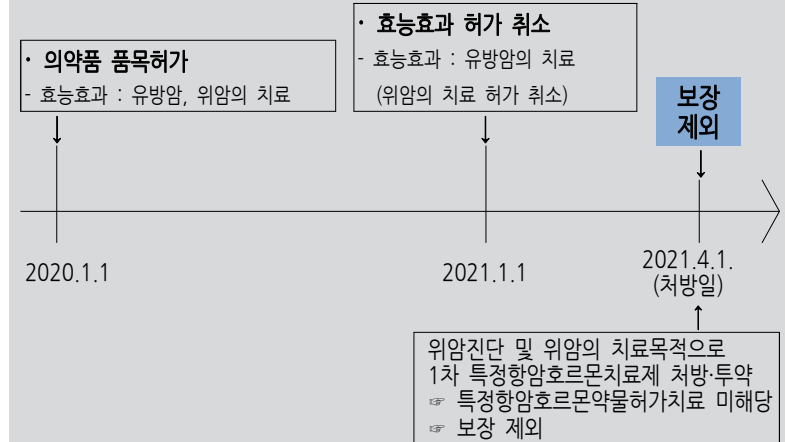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 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사용한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외)”라 함은 ②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의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13.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12.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12.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1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1 |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종합병원)(연간4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①암수술	암(유사암제외)수술비(수술당)	수술당	1,500만원
②항암방사선 치료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치료당	100만원
③항암약물치 료(특정항암 호르몬약물허 가 치료 제외)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입원당)	입원당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통원당)	통원당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외)(연간1회한)	연간1회한	500만원

구 분 (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④특정항암호 르몬약물허가 치료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 (입원당)(연간3회한)	연간3회한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 (통원당)(연간3회한)	연간3회한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외) (연간1회한)	연간1회한	300만원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유사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⑤유사암수술	기타피부암수술비(수술당) 갑상선암수술비(수술당) 경계성종양수술비(수술당) 제자리암수술비(수술당)	각 수술당	300만원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각 치료당	20만원

구 분 (유사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⑦ 유사암항암약물치료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입원당)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각 입원당	20만원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통원당)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각 통원당	20만원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주사제외)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각 연간 1회한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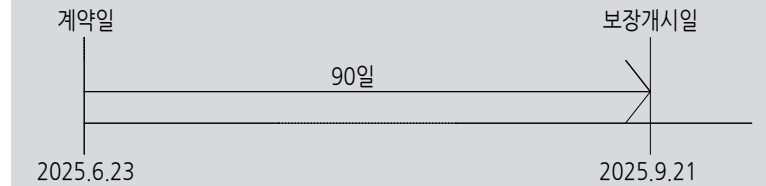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종합병원)(연간4천만원한도)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⑤ ① 및 ②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의 **전체 연간 총 지급액은 4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위 ① 및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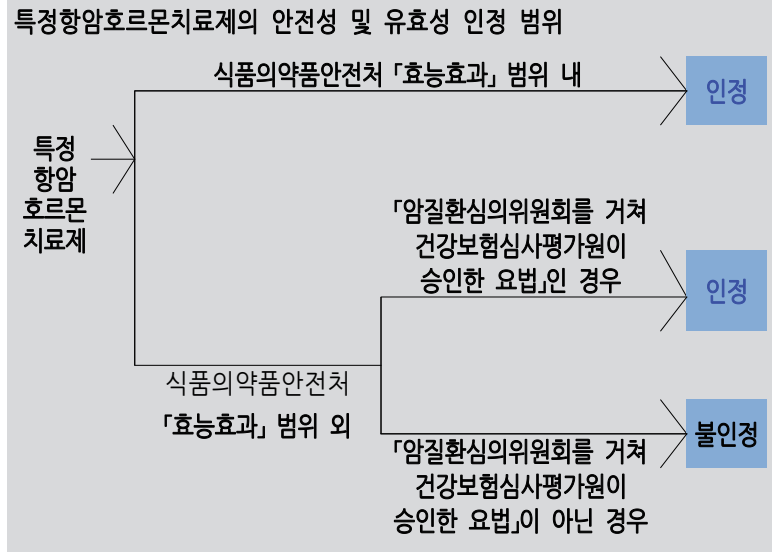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 항목 구분별로 각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항암방사선치료 및 ⑥유사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④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주사제)(입원당)”,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입원당)(연간3회한)” 및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입원당)”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및 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 ⑥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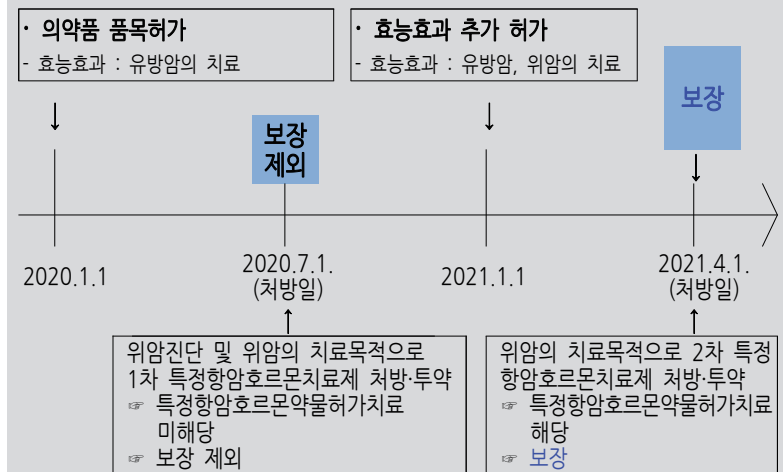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⑦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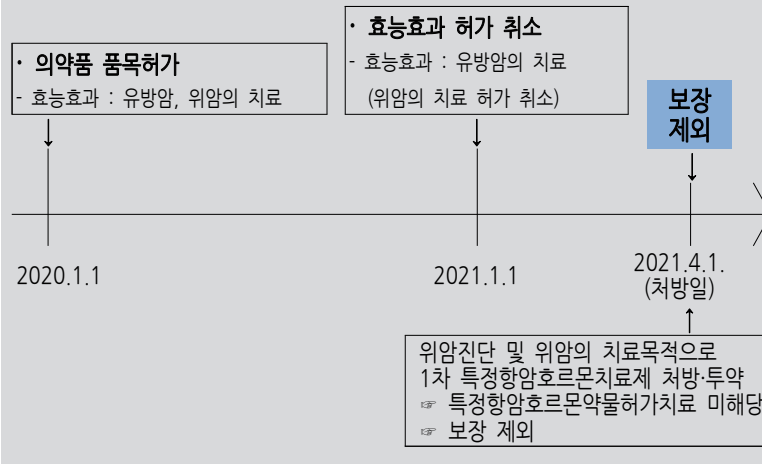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 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 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사용한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외)”라 함은 ②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의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
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
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
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
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
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
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
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13.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12.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
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치료”와 관
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12.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
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
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1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2 |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2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①암수술	암(유사암제외)수술비(수술당)	수술당	1,500만원
②항암방사선 치료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치료당	100만원

구 분 (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입원당)	입원당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통원당)	통원당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외)(연간1회한)	연간1회한	500만원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 (입원당)(연간3회한)	연간3회한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 (통원당)(연간3회한)	연간3회한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외) (연간1회한)	연간1회한	300만원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유사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⑤유사암수술		각 수술당	300만원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각 치료당	20만원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입원당)	각 입원당	20만원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통원당)	각 통원당	20만원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주사제외)	각 연간 1회한	100만원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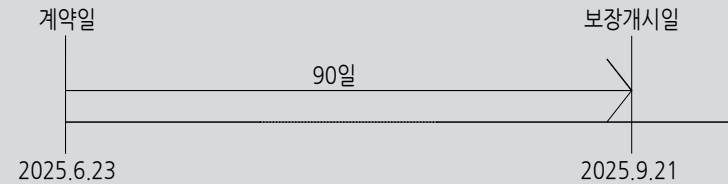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2천만원한도)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⑤ ① 및 ②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의 **전체 연간 총 지급액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위 ① 및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 항목 구분별로 각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항암방사선치료 및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④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주사제)(입원당)”,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입원당)(연간3회한)” 및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입원당)”은 피보험자가 퇴원 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및 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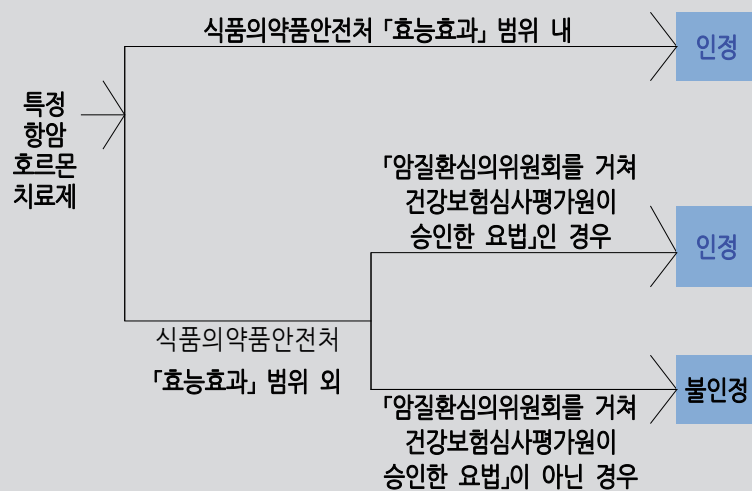
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⑥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항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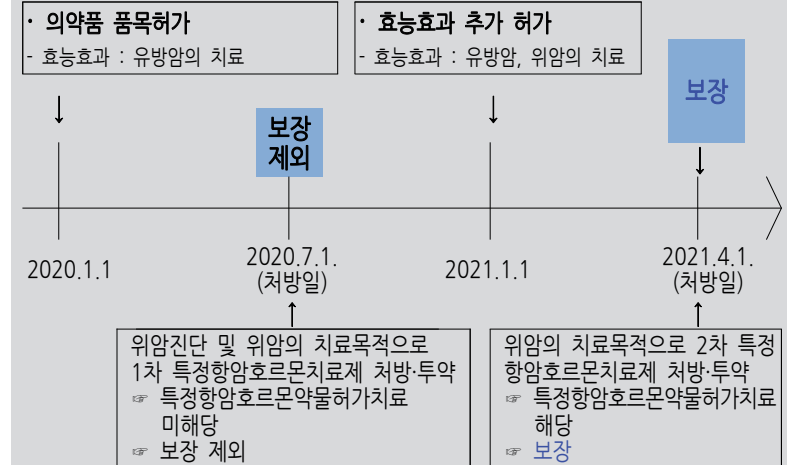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⑦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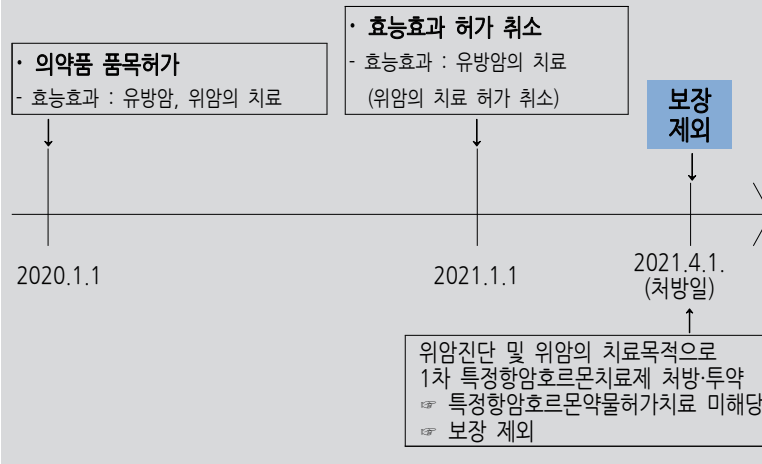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 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 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사용한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외)”라 함은 ②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의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
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
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Ⅰ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
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
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12.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12.(“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1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3 |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3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①암수술	암(유사암제외)수술비(수술당)	수술당	1,500만원
②항암방사선 치료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치료당	100만원
③항암약물치 료(특정항암호 르몬약물허가 치료 제외)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입원당)	입원당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통원당)	통원당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외)(연간1회한)	연간1회한	500만원

구 분 (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④특정항암호 르몬약물허가 치료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 (입원당)(연간3회한)	연간3회한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 (통원당)(연간3회한)	연간3회한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외) (연간1회한)	연간1회한	300만원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유사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⑤유사암수술	기타피부암수술비(수술당) 갑상선암수술비(수술당) 경계성종양수술비(수술당) 제자리암수술비(수술당)	각 수술당	300만원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각 치료당	20만원

구 분 (유사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⑦ 유사암항암약물치료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입원당)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각 입원당	20만원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통원당)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각 통원당	20만원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주사제외)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각 연간 1회한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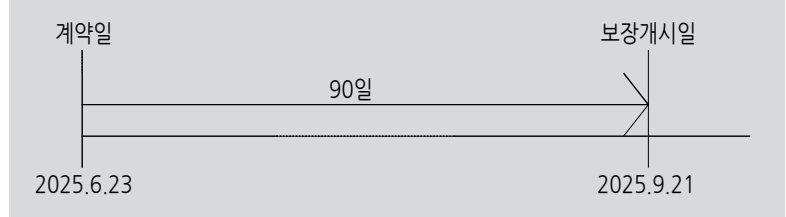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3천만원한도)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⑤ ① 및 ②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의 **전체 연간 총 지급액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위 ① 및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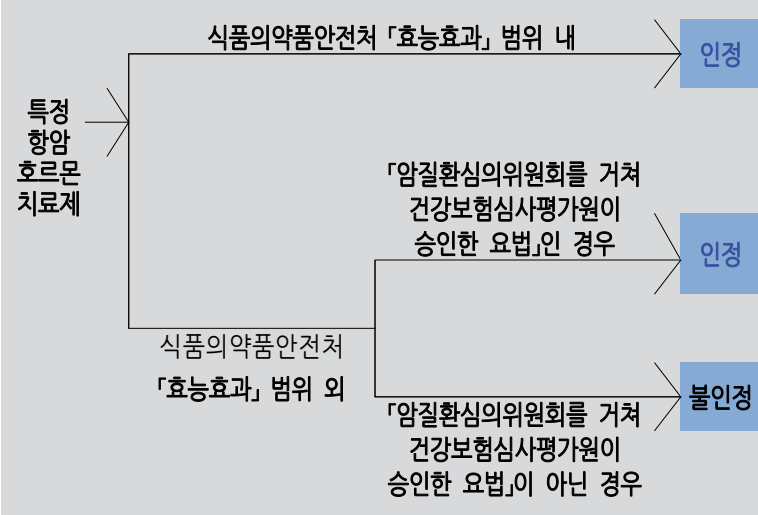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 항목 구분별로 각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항암방사선치료 및 ⑥유사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④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주사제)(입원당)”,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입원당)(연간3회한)” 및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입원당)”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및 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 ⑥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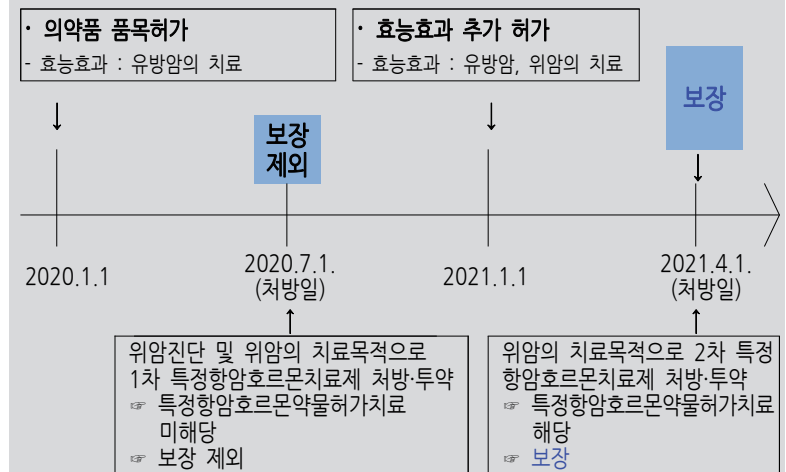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⑦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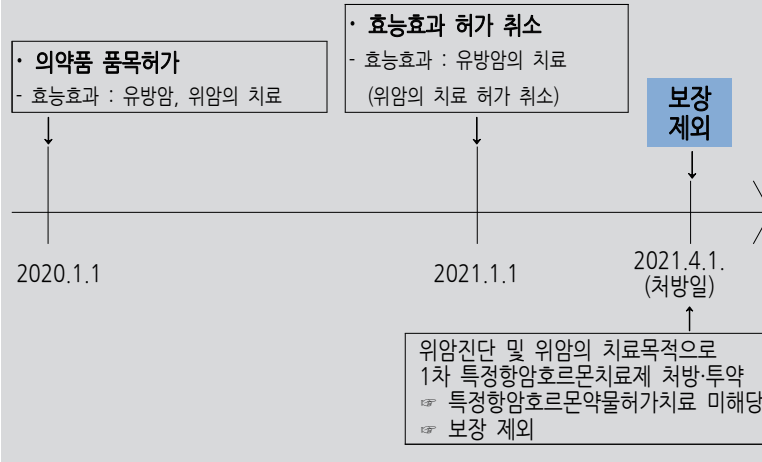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 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 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사용한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외)”라 함은 ②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의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
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
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Ⅰ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
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
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12.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12.(“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1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4 |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4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①암수술	암(유사암제외)수술비(수술당)	수술당	1,500만원
②항암방사선 치료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치료당	100만원
③항암약물치 료(특정항암호 르몬약물허가 치료 제외)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입원당)	입원당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통원당)	통원당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 (주사제외)(연간1회한)	연간1회한	500만원

구 분 (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④특정항암호 르몬약물허가 치료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 (입원당)(연간3회한)	연간3회한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 (통원당)(연간3회한)	연간3회한	100만원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외) (연간1회한)	연간1회한	300만원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유사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⑤유사암수술	기타피부암수술비(수술당) 갑상선암수술비(수술당) 경계성종양수술비(수술당) 제자리암수술비(수술당)	각 수술당	300만원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각 치료당	20만원

구 분 (유사암주요치료)			지급 횟수	지급금액
⑦ 유사암항암약물치료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입원당)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각 입원당	20만원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통원당)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각 통원당	20만원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 (주사제외)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연간1회한)	각 연간 1회한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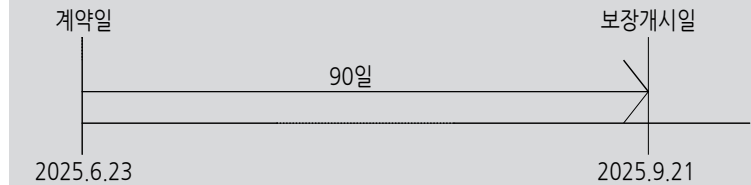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보장강화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4천만원한도)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⑤ ① 및 ②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의 **전체 연간 총 지급액은 4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위 ① 및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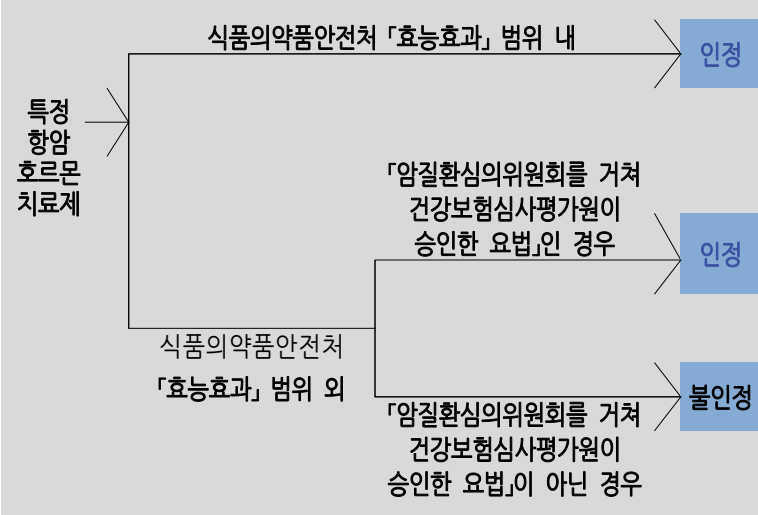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 항목 구분별로 각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항암방사선치료 및 ⑥유사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④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외)(주사제)(입원당)”, “암(유사암제외)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주사제)(입원당)(연간3회한)” 및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비(입원당)”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및 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 ⑥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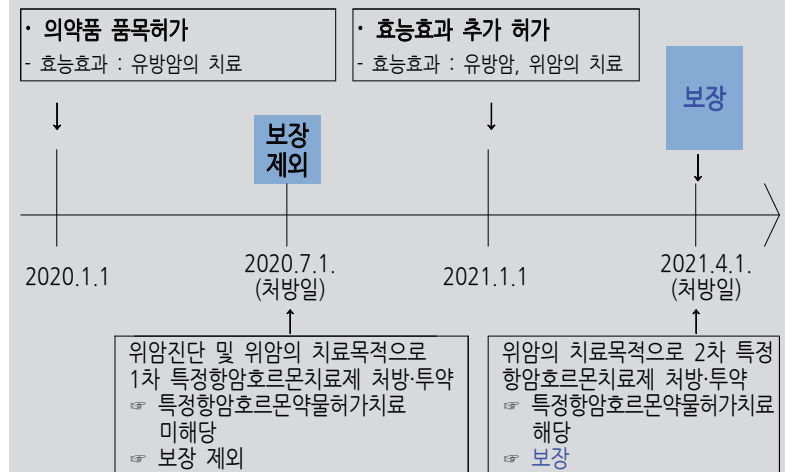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⑦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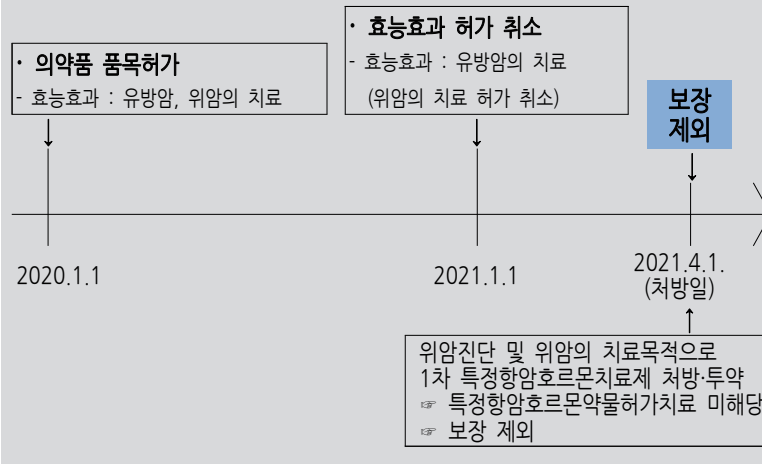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 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 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사용한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외)”라 함은 ②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의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
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
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Ⅰ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
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
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
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
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
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
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
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
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
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
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
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3.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12.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12.(“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건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1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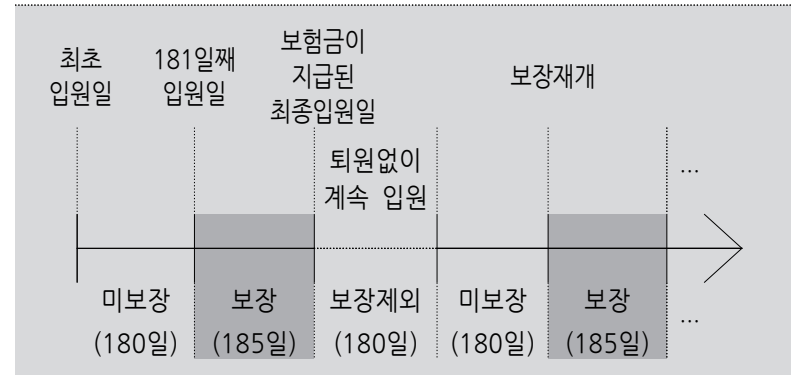
185 |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이외의 병원 또는 의원에 18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성병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약화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정신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정신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6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 (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1일당 8시간 이상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 ③ 위 ①의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시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 지급예시1)(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10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11월 15일 오후 8시 ~ 2025년 11월 18일 오전 11시

1일기준	2025년 11월		
	15일 오후8시~ 16일 오후8시이전	16일 오후8시~ 17일 오후8시이전	17일 오후8시~ 18일 오후8시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5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0	0	0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3일 = 15만원

지급예시2)(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10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11월 15일 오전 9시 ~ 2025년 11월 17일 오후 3시

1일기준	2025년 11월		
	15일 오전9시~ 16일 오전9시이전	16일 오전9시~ 17일 오전9시이전	17일 오전9시~ 18일 오전9시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6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11월 17일 오전9시부터 18일 오전9시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6시간으로 8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지급예시3)(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4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5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10월 26일 오후 9시 ~ 2025년 10월 29일 오전 8시

1일기준	2025년 10월		
	26일 오후9시~ 27일 오후9시이전	27일 오후9시~ 28일 오후9시이전	28일 오후9시~ 29일 오후9시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1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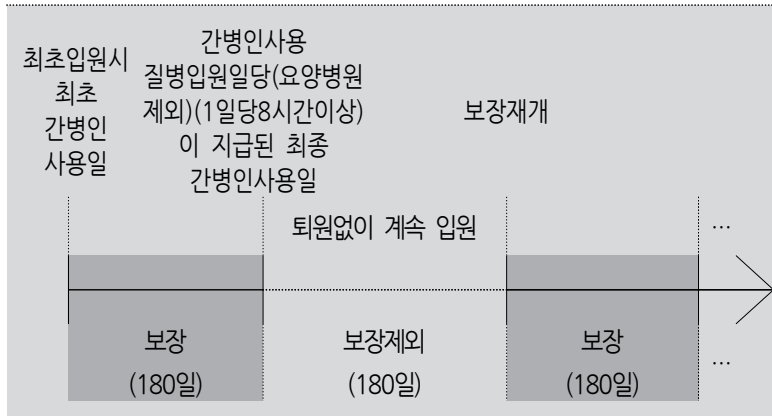
- 10월 27일이 180일째 입원일,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
→ 10월28일부터 180일한도 초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월 27일은 180일째 입원일로 27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이내 8시간 이상 간병인 사용시→ 보험금을 지급함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최종 간병인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성병
 -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6.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용어 풀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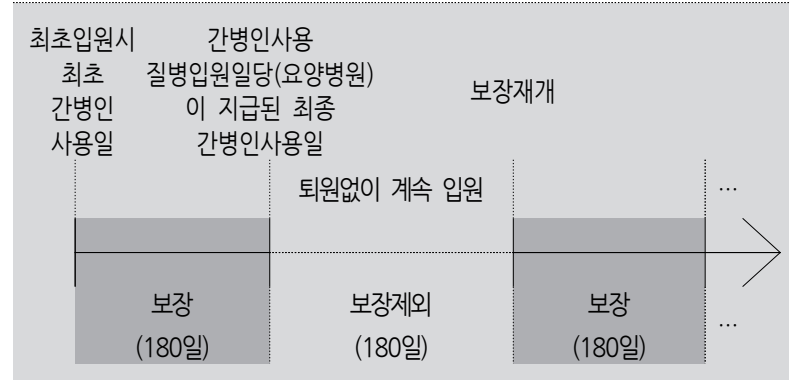
187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 (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최종 간병인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성병
 -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6.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용어
풀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8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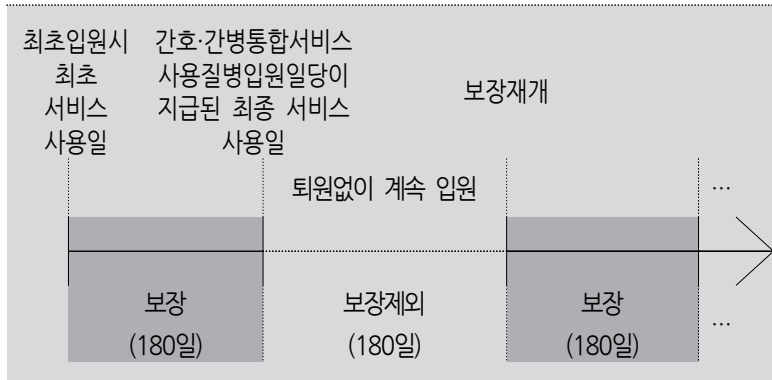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6.(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최종 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서비스 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성병
 -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단, 6.(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위의 사고증명서는 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89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1일당 8시간 이상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및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 ③ 위 ①의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단, 181일째 입원일에 이전에 간병인을 사용하여 181일째 입원일 이후 까지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을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으로 봅니다.



예시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및한방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
(181일이상)

지급예시1)(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4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5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5월 1일 오후 8시 ~ 2025년 10월 31일 오전 7시

1일기준	2025년 10월			
	28일	29일	30일	31일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24시간	7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O	X

-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이므로 10월 28일이후부터 보장
- 10월 31일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7시간으로 8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및한방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
(181일이상)
: 5만원 × 3일 = 15만원

지급예시2)(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4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5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11월 15일 오전 9시 ~ 2025년 11월 17일 오후 3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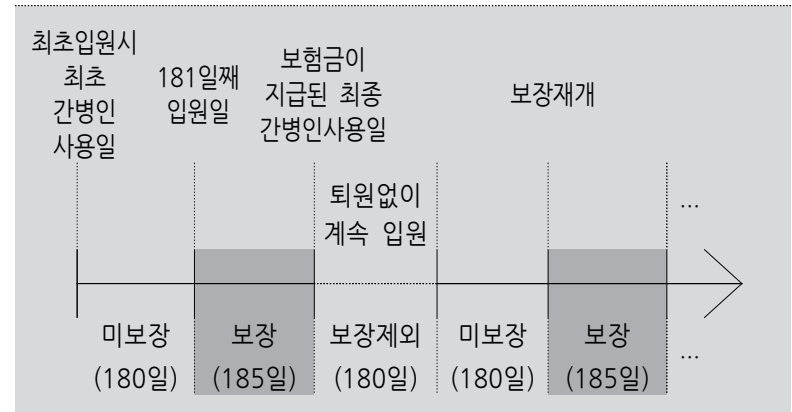
1일기준	2025년 11월		
	15일 오전9시~ 16일 오전9시이전	16일 오전9시~ 17일 오전9시이전	17일 오전9시~ 18일 오전9시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6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이므로 10월 28일이후부터 보장가능
- 11월 17일 오전9시부터 18일 오전9시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6시간으로 8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및한방병원제외)(1일당 8시간이상)(181일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예시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최종 간병인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 또는 의원에 입원하던 중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성병
 -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일당8시간이상)(181일이상)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정신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정신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6.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용어
풀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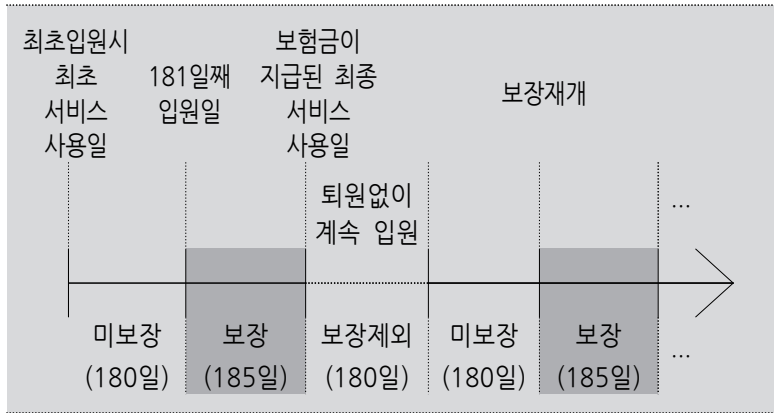
190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6.(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최종 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 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 서비스 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던 중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성병
 -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정신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정신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단, 6.(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위의 사고증명서는 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1 | 어린이생활질환치료및특정진단비(실속형)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세부보장(진단)별 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세부보장(진단)별 지급금액을 어린이생활질환치료및특정진단비(실속형)으로 지급합니다.
 - ①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중이염, 아토피성피부염, 중증아토피성피부염, 결핵,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뇌전증으로 진단확정시
 - ②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 보험나이가 0세이상 3세이하인 경우 중증아토피성피부염, 결핵,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뇌전증으로 진단확정시
 - ③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 보험나이가 4세이상인 경우 결핵,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진단확정시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어린이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아래의 세부보장(수술)의 지급금액을 어린이생활질환치료및특정진단비(실속형)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어린이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첫날부터 입원1일당 아래의 세부보장(입원)의 지급금액을 어린이생활질환치료및특정진단비(실속형)으로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어린이생활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15.(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세부보장(간병인지원(간병인비용100만원이상)의 지급금액을 어린이생활질환치료및특정진단비(실속형)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세부보장		지급횟수	지급금액		
진단	중이염	최초 1회한	1만원		
	아토피성피부염	최초 1회한	10만원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최초 1회한	10만원		
	결핵	최초 1회한	10만원		
	폐렴	연간 1회한	10만원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연간 1회한	20만원		
	뇌전증	최초 1회당	500만원		
수술	어린이생활질환	매 수술당	20만원		
입원	어린이생활질환	입원1일당 (1회입원당 120일한도)	1만원		
간병인지원 (간병인비용 100만원이상)	어린이생활질환	연간 1회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20만원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60만원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100만원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40만원
				1,000만원이상	200만원

-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0세이상 3세이하인 경우

세부보장		지급횟수	지급금액	
진단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최초 1회한	10만원	
	결핵	최초 1회한	10만원	
	폐렴	연간 1회한	①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30일이하	1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5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10만원
			② 갱신계약 및 연장 계약	
		지급금액	10만원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연간 1회한	①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30일이하			2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10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0만원	
② 갱신계약 및 연장 계약				
	지급금액	20만원		
뇌전증	최초 1회당	500만원		

수술	어린이생활질환	매 수술당	20만원		
입원	어린이생활질환	입원1일당 (1회입원당 120일한도)	1만원		
간병인지원 (간병인비용 100만원이상)	어린이생활질환	연간 1회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20만원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60만원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100만원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40만원
				1,000만원이상	200만원

특별약관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산모

-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4세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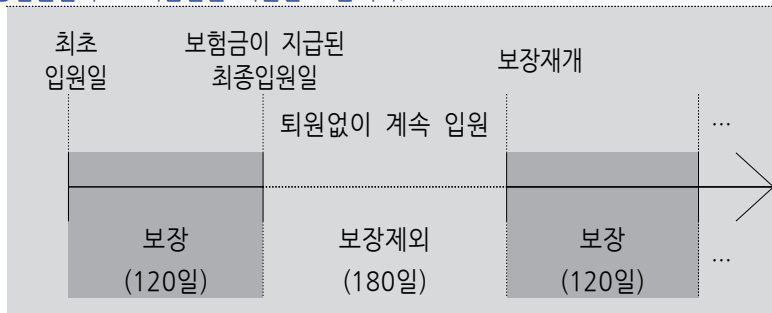
세부보장		지급횟수	지급금액	
진단	결핵	최초 1회한	10만원	
	폐렴	연간 1회한	①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30일이하	1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5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10만원
			② 갱신계약 및 연장 계약	
	지급금액			
	10만원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연간 1회한	①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30일이하			2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10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0만원	
② 갱신계약 및 연장 계약				
지급금액				
20만원				
뇌전증	최초 1회당	500만원		

수술	어린이생활질환	매 수술당	20만원		
입원	어린이생활질환	입원1일당 (1회입원당 120일한도)	1만원		
간병인지원 (간병인비용 100만원이상)	어린이생활질환	연간 1회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20만원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60만원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100만원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140만원
				1,000만원이상	200만원

- ⑤ 위 ① 및 ④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위 ①의 아토피성피부염, 중증아토피성피부염, 결핵, 뇌전증 진단 및 ④의 어린이생활질환 간병인지원 세부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11.("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전증"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뇌전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17.(특별약관의 소명) ⑦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의 경우 동일한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②를 적용합니다.
- ④ 상기 ③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어린이생활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③를 적용하여 보장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에서 정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⑦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의 경우 3.("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⑧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의 경우 동일한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 ⑨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에서 정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어린이생활질환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의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15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과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예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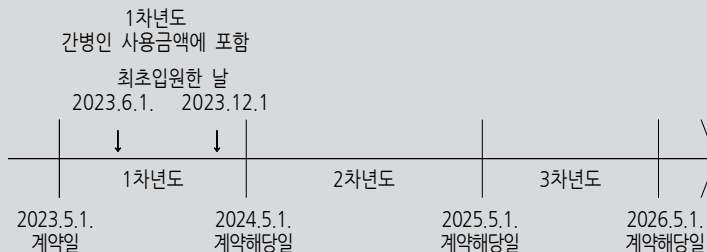
예시1)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천식(J45)	2023년 6월 1일 ~ 6월30일 (30일)	2023년 6월 11일 ~ 6월 17일 (사용일수 7일, 사용금액 70만원)
장폐색(K56)	2023년 12월 1일 ~ 12월 30일 (30일)	2023년 12월 4일 ~ 12월 23일 (사용일수 20일, 사용금액 600만원)

- 천식(J45) : 1일당 평균 1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10만원 × 7일 = 70만원)
- 장폐색(K56)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20일 = 30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천식) 70만원 + (장폐색) 300만원
= 370만원

⇒ 연간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로
1차년도 지급금액 : 60만원



예시2)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천식(J45)	2024년 4월 20일 ~ 5월 19일 (30일)	2024년 4월 24일 ~ 5월 18일 (사용일수 25일, 사용금액 500만원)
장폐색(K56)	2024년 10월 21일 ~ 12월 19일 (60일)	2024년 11월 5일 ~ 12월 14일 (사용일수 40일, 사용금액 6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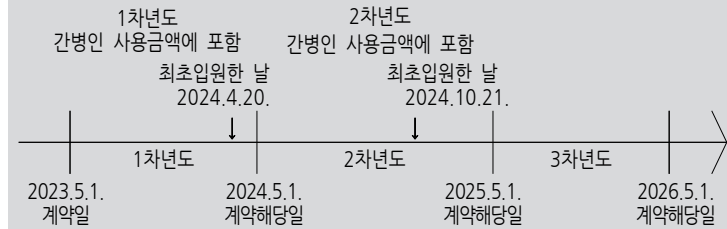
입원기간 중 보험년도 변경시 최초입원한 날의 보험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함

- 천식(J45) : 1일당 평균 2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적용
(15만원 × 25일 = 375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천식) 375만원
⇒ 연간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로
1차년도 지급금액 : 60만원

- 장폐색(K56) : 1일당 평균 15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40일 = 600만원)

→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장폐색) 600만원
⇒ 연간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00만원이상 700만원이하로
2차년도 지급금액 : 100만원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중이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이염”이라 함은 「중이염 분류표」(별표187)중이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중이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아토피성피부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아토피성피부염」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토피성피부염」(별표55)아토피성 피부염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아토피성피부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중증아토피성피부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중증아토피성피부염」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토피성피부염」(별표55)아토피성 피부염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 받고, OSI(Object SCORAD Index)점수 4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OSI는 아토피의 대표적인 평가기준인 SCORAD Index중 주관적 증상(가려움과 수면장애 평가)을 제외한 객관적 지표인 병변의 범위(Extent), 병변의 정도(Intensity)만을 이용한 평가방법입니다.)
- ② 위 ①의 「아토피성피부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SCORAD Index 진단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8. (“결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결핵」이라 함은 「결핵 분류표」(별표46)결핵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약제감수성검사(신속 내성 검사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이 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 모두에 동시 내성이 있는 약제내성결핵균이 발견된 경우에도 “결핵”으로 인정합니다.
- ② 위 ①의 「결핵」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다만, 회사가 약제감수성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결핵균 검사 결과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폐렴”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폐렴”이라 함은 「폐렴 분류표」(별표171)폐렴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폐렴」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X-선 촬영,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흉강 천자, 혈액검사, 객담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이라 함은 「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 분류표」(별표174)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X-선 촬영,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흉강 천자, 혈액검사, 객담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전증”이라 함은 「뇌전증 분류표」(별표80)뇌전증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뇌전증, 뇌전증지속상태를 말합니다.
- ② 뇌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전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전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12. (“어린이생활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어린이생활질환”이라 함은 「어린이생활질환 분류표」(별표 39)어린이생활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어린이생활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13.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1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1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인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가.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진단 세부보장의 경우 : 아토피진단서(회사양식의 아토피 OSI증명서 포함) 포함
 - 나. 폐렴 진단 및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진단 세부보장의 경우 : 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MRI, CT, 혈관조영술 및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포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어린이생활질한 간병인지원(간병인비용100만원이상) 세부보장의 경우 15.(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어린이생활질한 간병인지원(간병인비용100만원이상) 세부보장의 경우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어린이생활질한 간병인지원(간병인비용100만원이상) 세부보장의 경우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중이염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중이염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아토피성피부염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아토피성피부염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결핵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결핵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뇌전증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뇌전증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⑦ 위 ⑥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2 | 어린이생활질환치료및특정진단비(고급형)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래의 세부보장(진단)별 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세부보장(진단)별 지급금액을 어린이생활질환치료및특정진단비(고급형)으로 지급합니다.
 - ①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중이염, 아토피성피부염, 중증아토피성피부염, 결핵,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뇌전증으로 진단확정시
 - ②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 보험나이가 0세이상 3세이하인 경우 중증아토피성피부염, 결핵,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뇌전증으로 진단확정시
 - ③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 보험나이가 4세이상인 경우 결핵, 폐렴,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또는 뇌전증으로 진단확정시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어린이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아래의 세부보장(수술)의 지급금액을 어린이생활질환치료및특정진단비(고급형)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어린이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첫날부터 입원1일당 아래의 세부보장(입원)의 지급금액을 어린이생활질환치료및특정진단비(고급형)으로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어린이생활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15.(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세부보장(간병인지원(간병인비용100만원이상)의 지급금액을 어린이생활질환치료및특정진단비(고급형)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인 경우

세부보장		지급횟수	지급금액
진단	중이염	최초 1회한	3만원
	아토피성피부염	최초 1회한	10만원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최초 1회한	30만원
	결핵	최초 1회한	30만원
	폐렴	연간 1회한	10만원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연간 1회한	20만원
	뇌전증	최초 1회당	1,000만원
수술	어린이생활질환	매 수술당	50만원
입원	어린이생활질환	입원1일당 (1회입원당 120일한도)	1만원
간병인지원 (간병인비용 100만원이상)	어린이생활질환	연간 1회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40만원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120만원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200만원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280만원
			1,000만원이상
			400만원

-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0세이상 3세이하인 경우

세부보장		지급횟수	지급금액
진단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최초 1회한	30만원
	결핵	최초 1회한	30만원
	폐렴	연간 1회한	①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30일이하
			1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5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10만원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연간 1회한	② 갱신계약 및 연장 계약
			지급금액
			10만원
			①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30일이하
			2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10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0만원
			② 갱신계약 및 연장 계약
			지급금액
			20만원
	뇌전증	최초 1회당	1,000만원
수술	어린이생활질환	매 수술당	50만원

특별약관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산모

입원	어린이생활질환	입원1일당 (1회입원당 120일한도)	1만원		
간병인지원 (간병인비용 100만원이상)	어린이생활질환	연간 1회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40만원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120만원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200만원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280만원
				1,000만원이상	400만원

-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4세이상인 경우

세부보장		지급횟수	지급금액
진단	결핵	최초 1회한	30만원
	폐렴	연간 1회한	①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30일이하
			보험계약일로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지급금액
			10만원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연간 1회한	①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30일이하	2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10만원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20만원
			② 갱신계약 및 연장 계약	
			지급금액	
			20만원	
뇌전증	최초 1회당	1,000만원		

수술	어린이생활질환	매 수술당	50만원

입원	어린이생활질환	입원1일당 (1회입원당 120일한도)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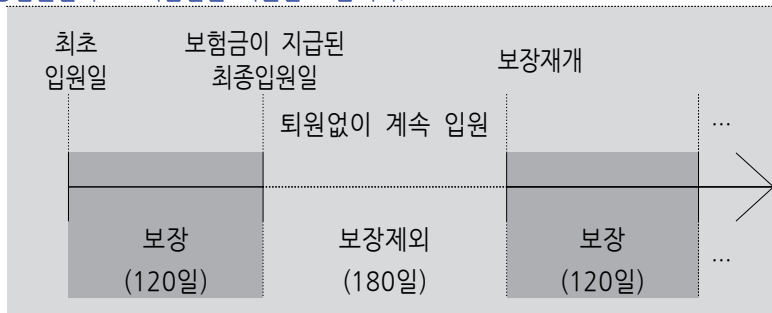
간병인지원 (간병인비용 100만원이상)	어린이생활질환	연간 1회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40만원
				300만원이상 500만원미만	120만원
				500만원이상 700만원미만	200만원
				700만원이상 1,000만원미만	280만원
				1,000만원이상	400만원

⑤ 위 ① 및 ④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위 ①의 아토피성피부염, 중증아토피성피부염, 결핵, 뇌전증 진단 및 ④의 어린이생활질환 간병인지원 세부보장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11.("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전증"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뇌전증 진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17.(특별약관의 소멸) ⑦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③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의 경우 동일한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②을 적용합니다.
- ④ 상기 ③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어린이생활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③를 적용하여 보장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③에서 정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⑦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의 경우 3.("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⑧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의 경우 동일한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 ⑨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에서 정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어린이생활질환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의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15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과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예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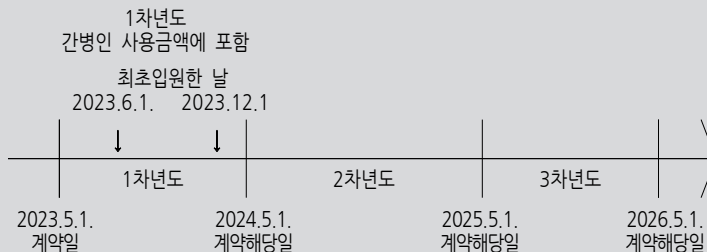
예시1)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천식(J45)	2023년 6월 1일 ~ 6월30일 (30일)	2023년 6월 11일 ~ 6월 17일 (사용일수 7일, 사용금액 70만원)
장폐색 (K56)	2023년 12월 1일 ~ 12월 30일 (30일)	2023년 12월 4일 ~ 12월 23일 (사용일수 20일, 사용금액 600만원)

- 천식(J45) : 1일당 평균 1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10만원 × 7일 = 70만원)
- 장폐색(K56)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20일 = 30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천식) 70만원 + (장폐색) 300만원
= 370만원

⇒ 연간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로
1차년도 지급금액 : 120만원



예시2)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천식(J45)	2024년 4월 20일 ~ 5월 19일 (30일)	2024년 4월 24일 ~ 5월 18일 (사용일수 25일, 사용금액 500만원)
장폐색 (K56)	2024년 10월 21일 ~ 12월 19일 (60일)	2024년 11월 5일 ~ 12월 14일 (사용일수 40일, 사용금액 6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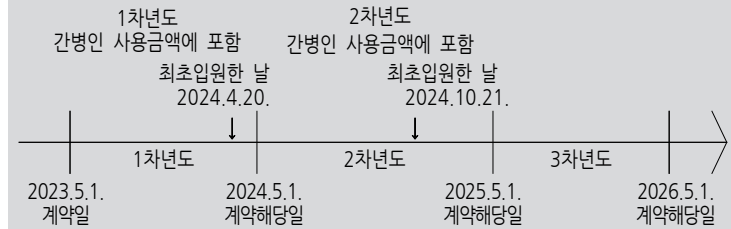
입원기간 중 보험년도 변경시 최초입원한 날의 보험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함

- 천식(J45) : 1일당 평균 2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적용
(15만원 × 25일 = 375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천식) 375만원
⇒ 연간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로
1차년도 지급금액 : 120만원

- 장폐색(K56) : 1일당 평균 15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40일 = 600만원)

→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장폐색) 600만원
⇒ 연간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500만원이상 700만원이하로
2차년도 지급금액 : 200만원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
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
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④의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중이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이염”이라 함은 「중이염 분류표」(별표187)중이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중이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아토피성피부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아토피성피부염」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토피성피부염」(별표55)아토피성 피부염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아토피성피부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 (“중증아토피성피부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중증아토피성피부염」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토피성피부염」(별표55)아토피성 피부염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 받고, OSI(Object SCORAD Index)점수 4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OSI는 아토피의 대표적인 평가기준인 SCORAD Index중 주관적 증상(가려움과 수면장애 평가)을 제외한 객관적 지표인 병변의 범위(Extent), 병변의 정도(Intensity)만을 이용한 평가방법입니다.)
- ② 위 ①의 「아토피성피부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SCORAD Index 진단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8. (“결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결핵」이라 함은 「결핵 분류표」(별표46)결핵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하며 약제감수성검사(신속 내성 검사를 포함합니다)에 의하여 이 소니아지드(Isoniazid) 및 리팜피신(Rifampicin) 모두에 동시 내성이 있는 약제내성결핵균이 발견된 경우에도 “결핵”으로 인정합니다.
- ② 위 ①의 「결핵」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다만, 회사가 약제감수성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결핵균 검사 결과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폐렴”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폐렴”이라 함은 「폐렴 분류표」(별표171)폐렴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폐렴」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X-선 촬영,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흉강 천자, 혈액검사, 객담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0. (“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이라 함은 「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 분류표」(별표174)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X-선 촬영,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흉강 천자, 혈액검사, 객담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 (“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전증”이라 함은 「뇌전증 분류표」(별표80)뇌전증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뇌전증, 뇌전증지속상태를 말합니다.
- ② 뇌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전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전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12. (“어린이생활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어린이생활질환”이라 함은 「어린이생활질환 분류표」(별표 39)어린이생활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어린이생활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13.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1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제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1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인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가.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진단 세부보장의 경우 : 아토피진단서(회사양식의 아토피 OSI증명서 포함) 포함
 - 나. 폐렴 진단 및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진단 세부보장의 경우 : 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MRI, CT, 혈관조영술 및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포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어린이생활질향 간병인지원(간병인비용100만원이상) 세부보장의 경우 15.(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어린이생활질향 간병인지원(간병인비용100만원이상) 세부보장의 경우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어린이생활질향 간병인지원(간병인비용100만원이상) 세부보장의 경우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중이염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중이염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아토피성피부염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아토피성피부염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결핵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결핵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뇌전증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뇌전증 진단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⑦ 위 ⑥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3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약물종류개수별)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 약물종류 개수별)는 다음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종류이상)(최초1회한)
- ②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종류이상)(연간1회한)
- ③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2종류이상)(연간1회한)
- ④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3종류이상)(연간1회한)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약물종류 개수”에 따라 연간1회에 한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 약물종류 개수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구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종류이상)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연간1종류이상) (최초1회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연간1종류이상) (연간1회한)
지급금액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80%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구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연간2종류이상)(연간1회한)
지급금액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구분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연간3종류이상)(연간1회한)
지급금액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③ 위 ②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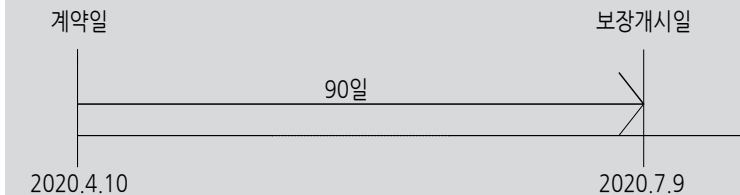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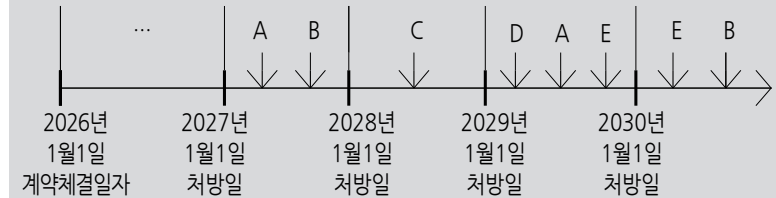
- ④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⑤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②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용어 풀이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 약물종류 개수별) 보장예시 (각 세부보장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A : 소분자 항암치료제
B : 단일클론 항체 항암치료제
C : 면역관문억제제
D : 항체약물중합체 항암치료제
E : 카티 항암치료제



세부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연간1종류이상) (최초1회한)	800만원	최초1 회 지급 후 소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연간1종류이상) (연간1회한)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연간2종류이상) (연간1회한)	1,000만원	-	1,000만원	1,000만원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연간3종류이상) (연간1회한)	-	-	1,000만원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약물종류개수별) (연간1회한)	총2,000만원 지급	총200만원 지급	총2,200만원 지급	총1,200만원 지급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 약물종류 개수별)”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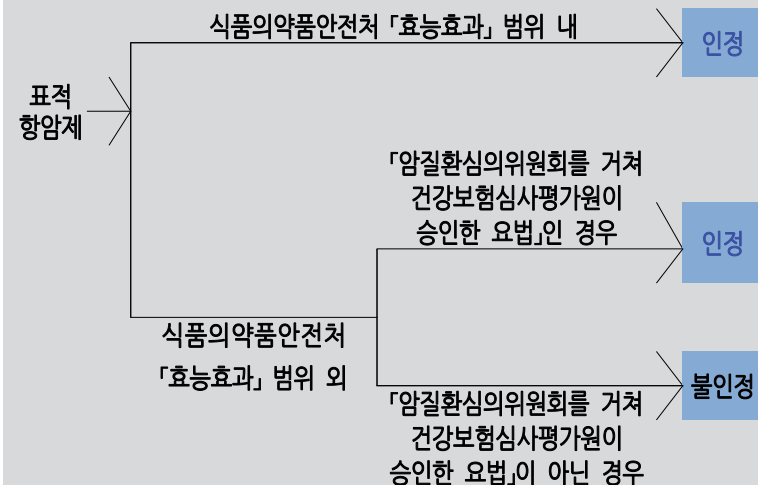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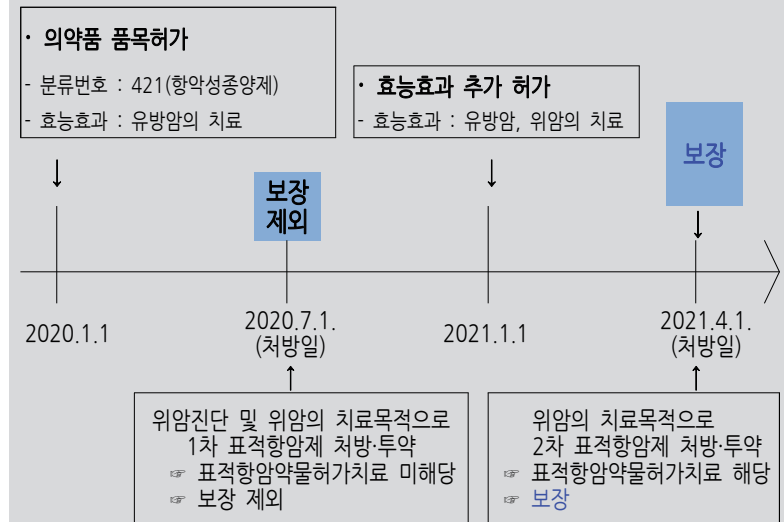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5.(“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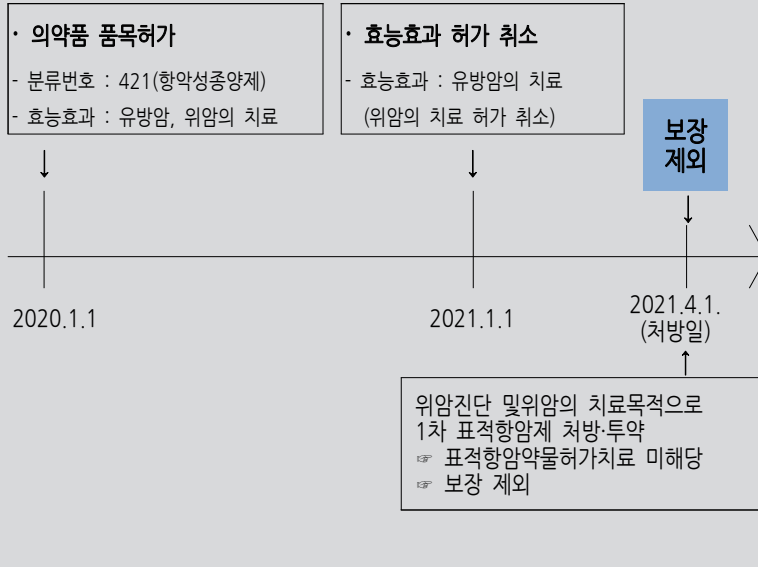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5. (“표적항암제”,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연간 약물종류 개수”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예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아래의 6가지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 ① 소분자(Small-Molecule) 항암치료제
- ② 단일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 항암치료제
- ③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 ④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 ⑤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 ⑥ 기타 표적항암제



용어 풀이

소분자(Small-Molecule) 항암치료제

소분자(Small-Molecule) 항암치료제란 암세포의 성장, 분열, 이동 및 전이 등에 관여하는 단백질, 종양미세환경의 조성, 유지 및 강화 등에 관여하는 단백질 또는 암세포의 기능 변화나 사멸 등을 유도하는 단백질 등, 즉 표적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암을 직접 치료하는 항암치료제로서, 분자량이 충분히 작아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용이해 세포 안에 있는 표적 단백질의 표현이나 작용을 조절하는 방식의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단일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 항암치료제

단일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 항암치료제란 암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암세포, 암미세환경, 또는 전신에 존재하는 항원을 선택적으로 인식하도록 인공적으로 설계되고 생산된 단일클론 항체, 즉 단일클론 B림프구 세포주에서 유래한 면역글로불린 또는 면역글로불린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암 치료제를 말합니다(면역세포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항체 형태를 포함합니다). 단, 단일클론 항체 중 면역관문억제제와 항체약물중합체 항암치료제는 단일클론 항체 항암치료제에서 제외합니다.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란 암세포 또는 T세포의 표면에 발현되어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는데 이용하는 면역세포의 표면 단백질인 PD-1, PD-L1, CTLA-4 등의 면역관문(immune checkpoint)을 차단함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란 항암제에 특정 암세포의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링커(Linker)로 접합하여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 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백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에 반응하는 특이적인 키메라항원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기타 표적항암제

기타 표적항암제란 소분자(Small-Molecule) 항암치료제, 단일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 항암치료제,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및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로 분류할 수 없는 표적항암제를 말합니다. 소분자 항암치료제, 단일클론 항체 항암치료제, 면역관문억제제, 항체약물중합체 항암치료제 및 카티 항암치료제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표적항암제를 포함합니다.



용어
풀이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88】(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4.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로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④ ③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위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⑥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연간 약물종류 개수”라 함은 ②에서 정한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의 분류 중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에 연간 사용된 “표적항암제”의 약물종류 분류 개수를 말합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산모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 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종류이상)(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종류이상)(최초1회한)”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4 |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 약물종류 개수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 약물종류 개수별)는 다음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종류이상)(최초1회한)
- ②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종류이상)(연간1회한)
- ③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2종류이상)(연간1회한)
- ④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3종류이상)(연간1회한)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약물종류 개수”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계속받는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구분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종류이상)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종류이상) (최초1회한)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1종류이상) (연간1회한)
지급금액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80%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구분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2종류이상)(연간1회한)
지급금액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구분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3종류이상)(연간1회한)
지급금액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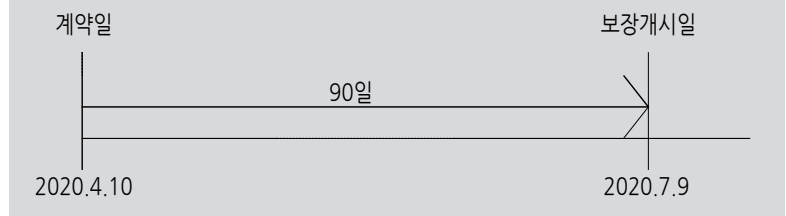
③ 위 ②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④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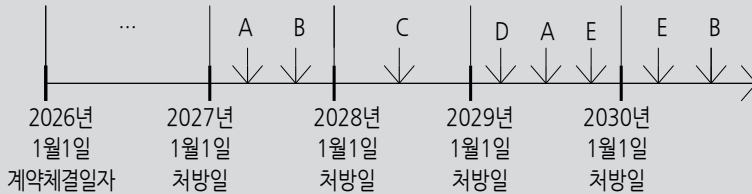
⑤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②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⑥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 약물종류 개수별) 보장예시 (각 세부보장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A : 소분자 항암치료제
B : 단일클론 항체 항암치료제
C : 면역관문억제제
D : 항체약물중합체 항암치료제
E : 카티 항암치료제



세부보장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 함)(연간1종류이상) (최초1회한)	800만원	최초1 회 지급 후 소멸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 함)(연간1종류이상) (연간1회한)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 함)(연간2종류이상) (연간1회한)	1,000만원	-	1,000만원	1,000만원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 함)(연간3종류이상) (연간1회한)	-	-	1,000만원	-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 함)(연간약물종류개수별) (연간1회한)	총2,000만원 지급	총200만원 지급	총2,200만원 지급	총1,200만원 지급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 약물종류 개수별)”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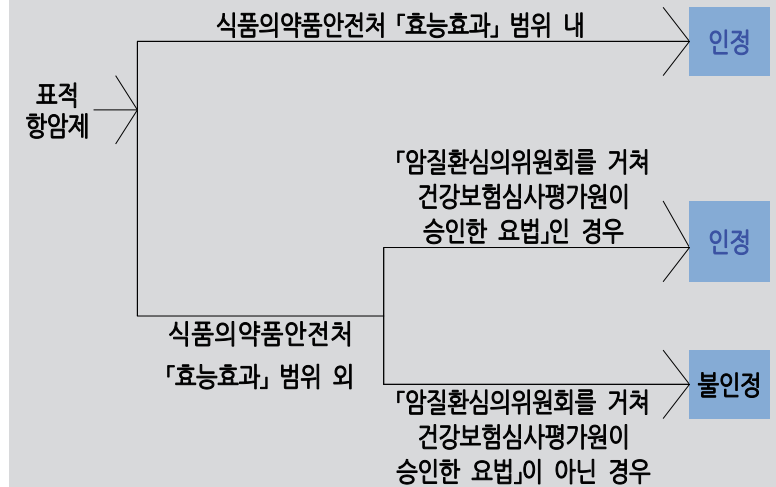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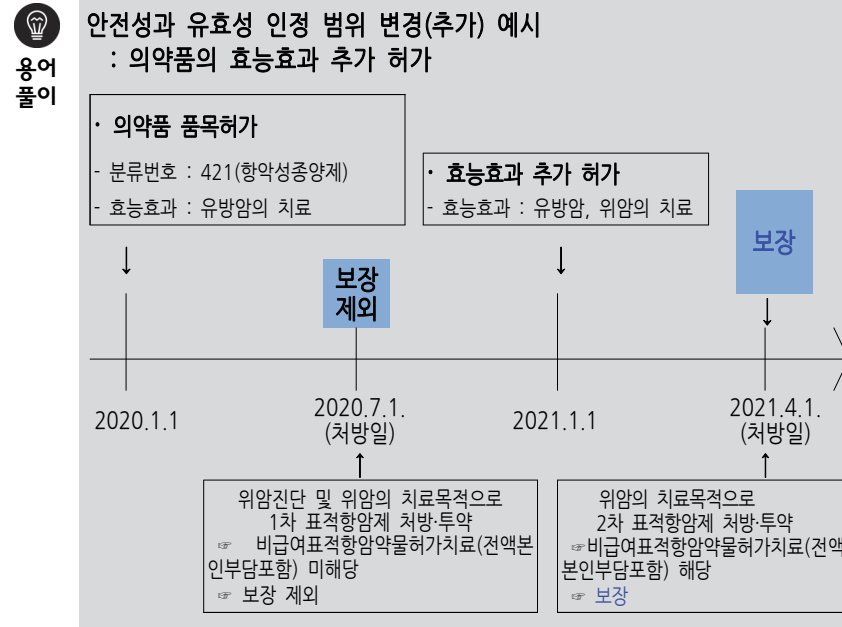


용어 풀이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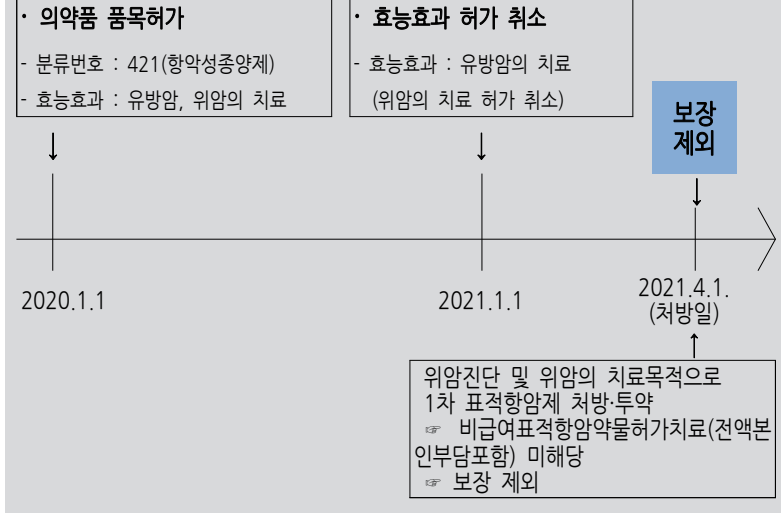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를 받은 경우”는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되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5. (“표적항암제”,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 및 “연간 약물종류 개수”의 정의)의 ④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포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5. (“표적항암제”,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 및 “연간 약물종류 개수”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아래의 6가지로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 ① 소분자(Small-Molecule) 항암치료제
- ② 단일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 항암치료제
- ③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 ④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 ⑤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 ⑥ 기타 표적항암제



용어
풀이

소분자(Small-Molecule) 항암치료제

소분자(Small-Molecule) 항암치료제란 암세포의 성장, 분열, 이동 및 전이 등에 관여하는 단백질, 종양미세환경의 조성, 유지 및 강화 등에 관여하는 단백질 또는 암세포의 기능 변화나 사멸 등을 유도하는 단백질 등, 즉 표적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암을 직접 치료하는 항암치료제로서, 분자량이 충분히 작아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용이해 세포 안에 있는 표적 단백질의 표현이나 작용을 조절하는 방식의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단일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 항암치료제

단일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 항암치료제란 암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암세포, 암미세환경, 또는 전신에 존재하는 항원을 선택적으로 인식하도록 인공적으로 설계되고 생산된 단일클론 항체, 즉 단일클론 B림프구 세포주에서 유래한 면역글로불린 또는 면역글로불린 유도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항암 치료제를 말합니다(면역세포에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항체 형태를 포함합니다). 단, 단일클론 항체 중 면역관문억제제와 항체약물중합체 항암치료제는 단일클론 항체 항암치료제에서 제외합니다.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란 암세포 또는 T세포의 표면에 발현되어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는데 이용하는 면역세포의 표면 단백질인 PD-1, PD-L1, CTLA-4 등의 면역관문(immune checkpoint)을 차단함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란 항암제에 특정 암세포의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링커(Linker)로 접합하여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 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벡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에 반응하는 특이적인 키메라항원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기타 표적항암제

기타 표적항암제란 소분자(Small-Molecule) 항암치료제, 단일클론 항체(Monoclonal Antibody) 항암치료제,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및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로 분류할 수 없는 표적항암제를 말합니다. 소분자 항암치료제, 단일클론 항체 항암치료제, 면역관문억제제, 항체약물중합체 항암치료제 및 카티 항암치료제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표적항암제를 포함합니다.



용어
풀이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88】(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4.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④ ③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위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라 함은 ③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중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⑦ ⑥의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⑧ ⑥의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⑨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연간 약물종류 개수”라 함은 ②에서 정한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의 분류 중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에 연간 사용된 “표적항암제”의 약물종류 분류 개수를 말합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ㅁ. 급여적용여부
ㅂ. 비급여 약제 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 이내 사용근거 및 소견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종류이상)(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연간1종류이상)(최초1회한)”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5 |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최초1회한)
- ②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연간1회한)

2.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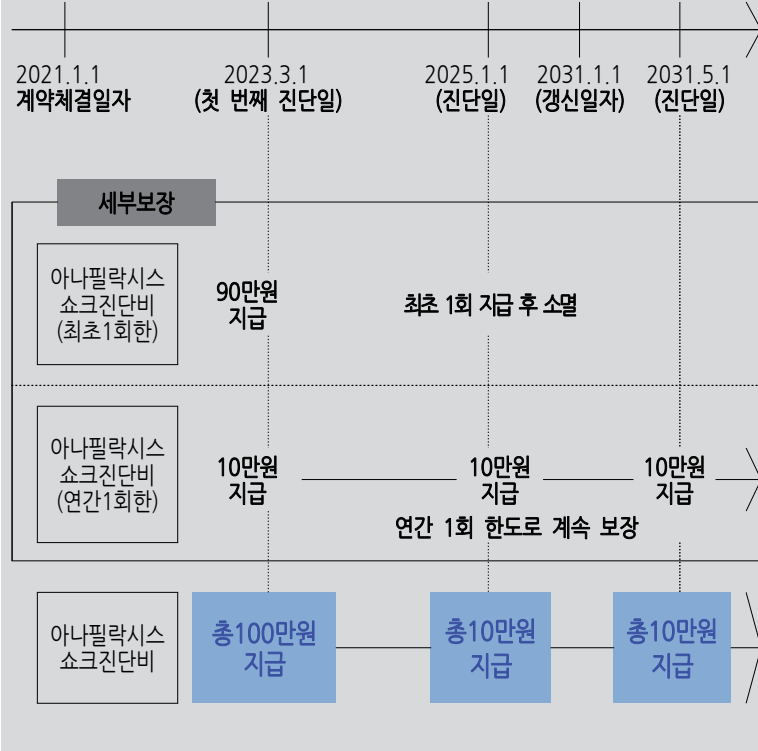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구분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 (최초1회한)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 (연간1회한)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	보험가입금액의 90%	보험가입금액의 1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 보장예시 (가입금액 100만원 기준)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4. (“아나필락시스쇼크”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아나필락시스쇼크”의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항원검사, 유발검사 및 피부시험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그 후 아나필락시스쇼크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아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를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아나필락시스쇼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아나필락시스쇼크” 라 함은 「아나필락시스쇼크 분류표」(별표73)아나필락시스쇼크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아나필락시스쇼크”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또한 회사가 ‘아나필락시스쇼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 시행된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확인서,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료기록부 사본(단, 필요시에 한함), 사망진단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비(최초1회한)”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6 | 수두진단비Ⅱ(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수두 또는 신생아 수두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수두진단비 또는 신생아 수두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수두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신생아 수두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회사가 위 ①의 수두진단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 수두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수두” 및 “신생아 수두”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두’라 함은 「수두 분류표」(별표105)수두 분류표)에서 정한 수두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신생아 수두’라 함은 「수두 분류표」(별표105)수두 분류표)에서 정한 기타 선천성 바이러스질환(선천수두)을 말합니다.
- ③ “수두” 및 “신생아 수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특징 또는 혈액, 대소변, 뇌척수액, 타액, 뇌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수두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단, 신생아 수두진단비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7 | 암진단비II(유사암제외)(소액암1년감액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2종, 4종, 8종, 9종]

①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암(유사암제외)	경과기간	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소액암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암(유사암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10종, 11종]

① 연장전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암(유사암제외)	경과기간	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	소액암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연장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암(유사암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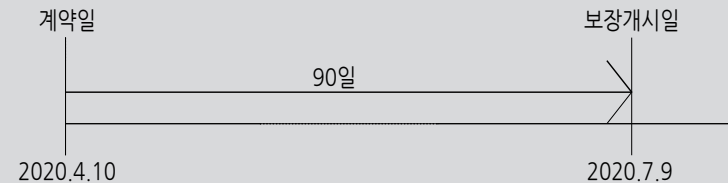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④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⑤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소액암 및 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④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⑤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⑥에서 정한 “소액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소액암”이라 함은 「소액암 분류표」(별표10-3)소액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암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⑦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위 ⑦에 따른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암진단비Ⅱ(유사암 제외)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8 | 어린이생활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어린이생활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어린이생활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어린이생활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동일한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상기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어린이생활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어린이생활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어린이생활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어린이생활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어린이생활질환입원일당 (1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일			보장재개
최초 입원일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장 (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20일)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및 ②를 적용하여 어린이생활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를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어린이생활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어린이생활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어린이생활질환”이라 함은 「어린이생활질환 분류표」(별표 39)어린이생활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어린이생활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어린이생활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9 | 암통합케어지원비(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99-1. 암통합케어지원비(MRI검사비)(암(유사암포함))(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 199-2. 암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암(유사암포함))(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 199-3. 암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암(유사암포함))(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 199-4. 암통합케어지원비(주요재활치료비)(암(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포함))(급여)(1일1회한,연간20회한)(비갱신형/갱신형)
- 199-5. 암통합케어지원비(주요통증완화치료비)(암(유사암제외))(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199-1 암통합케어지원비(MRI검사비)(암(유사암포함))(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포함)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3.("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급여촬영을 받은 경우 연간 1회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통합케어지원비(MRI검사비)(암(유사암포함))(급여)(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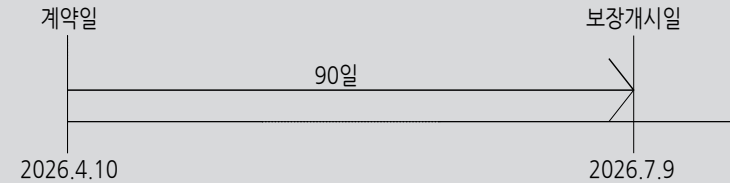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포함)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3.(“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촬영을 받은 연, 월, 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촬영”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급여촬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급여촬영은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분류번호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 및 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촬영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포함)”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④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포함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포함)”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포함)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으로부터 암(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9-2 암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암(유사암포함))(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9.(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암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암(유사암포함))(요양병원제외)로 지급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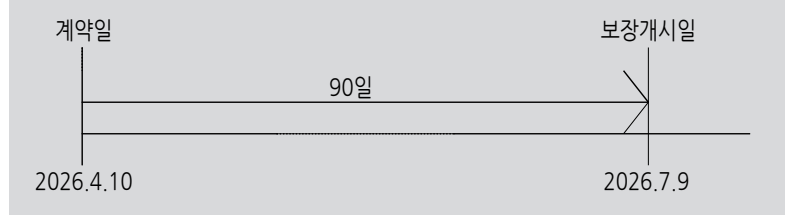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암(유사암포함)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 사용입원지원비Ⅲ)(암(유사암포함))(요양병원제외)를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암(유사암포함))(요양병원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의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15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과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예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가입시 예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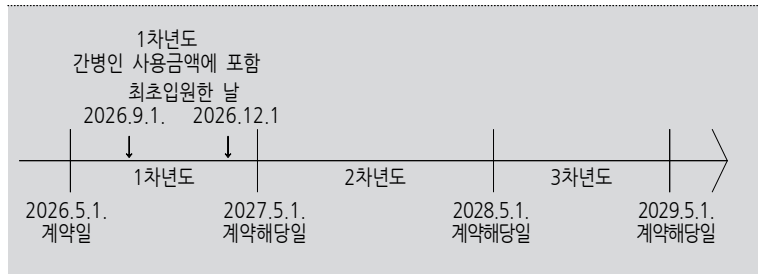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위암(C16)	2026년 9월 1일 ~ 9월30일 (30일)	2026년 9월 11일 ~ 9월 17일 (사용일수 7일, 사용금액 70만원)
기타피부암 (C44)	2026년 12월 1일 ~ 12월 30일 (30일)	2026년 12월 4일 ~ 12월 13일 (사용일수 10일, 사용금액 300만원)

- 위암(C16) : 1일당 평균 1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10만원 × 7일 = 70만원)

- 기타피부암(C44)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10일 = 15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위암) 70만원 + (기타피부암) 150만원
= 22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10만원



예시2)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식도암(C15)	2027년 4월 20일 ~ 5월 19일 (30일)	2027년 4월 25일 ~ 5월 14일 (사용일수 20일, 사용금액 400만원)
후두암(C32)	2027년 11월 20일 ~ 12월 19일 (30일)	2027년 11월 25일 ~ 12월 14일 (사용일수 20일, 사용금액 600만원)

입원기간 중 보험년도 변경시 최초입원한 날의 보험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함

- 식도암(C15) : 1일당 평균 2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적용
(15만원 × 20일 =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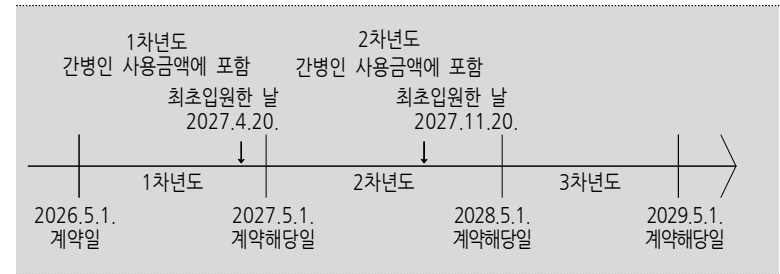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식도암) 3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 후두암(C32)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20일 = 300만원)

→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후두암) 3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2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암(유사암포함))(요양병원제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포함)”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④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포함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암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포함)”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포함)”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암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암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 ③ “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③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①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②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⑤ ①에서 ④까지 정한 내용은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7.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포함)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9.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용어 풀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10.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9.(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1.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2.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9-3 **암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암(유사암포함))(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포함)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8.(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암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암(유사암포함))(요양병원)로 지급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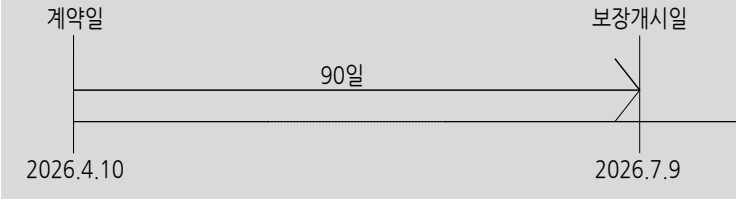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포함)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 사용입원지원비Ⅲ)(암(유사암포함))(요양병원)를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동일한 암(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을 포함합니다)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암(유사암포함))(요양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암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의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15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예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가입시 예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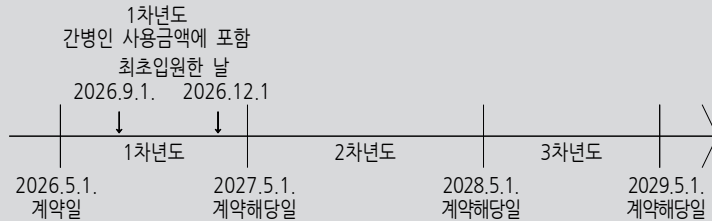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위암(C16)	2026년 9월 1일 ~ 9월30일 (30일)	2026년 9월 11일 ~ 9월 17일 (사용일수 7일, 사용금액 70만원)
기타피부암(C44)	2026년 12월 1일 ~ 12월 30일 (30일)	2026년 12월 4일 ~ 12월 13일 (사용일수 10일, 사용금액 300만원)

- 위암(C16) : 1일당 평균 1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10만원 × 7일 = 70만원)

- 기타피부암(C44)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10일 = 15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위암) 70만원 + (기타피부암) 150만원
= 22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10만원



예시2)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식도암(C15)	2027년 4월 20일 ~ 5월 19일 (30일)	2027년 4월 25일 ~ 5월 14일 (사용일수 20일, 사용금액 400만원)
후두암(C32)	2027년 11월 20일 ~ 12월 19일 (30일)	2027년 11월 25일 ~ 12월 14일 (사용일수 20일, 사용금액 600만원)

입원기간 중 보험년도 변경시 최초입원한 날의 보험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함

- 식도암(C15) : 1일당 평균 2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적용
(15만원 × 20일 =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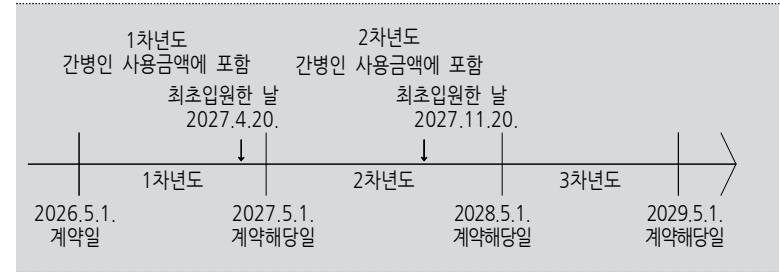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식도암) 3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 후두암(C32)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20일 = 300만원)

→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후두암) 3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2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암(유사암포함))(요양병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포함)”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④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포함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포함)”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포함)”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포함)”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포함)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8.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하여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9.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8.(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0.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포함)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1.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2.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9-4 암통합케어지원비(주요재활치료비)(암(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포함))(급여)(1일1회한,연간20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입원 중에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를 받은 경우(이하 “입원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를 받은 경우(이하 “통원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라 합니다)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암통합케어지원비(주요재활치료비)(암(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포함))(급여)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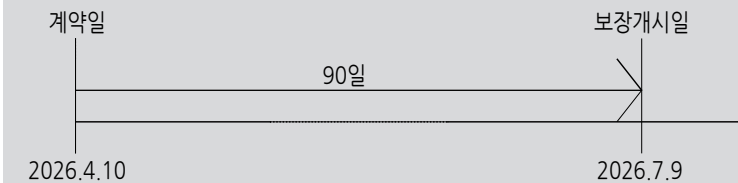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에도 불구하고 “입원 급여 암주요재활치료”와 “통원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를 합산하여 연간 20회한도로 보장합니다.
- ⑤ 위 ④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일자로 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입원” 및 “통원”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급여 암주요재활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라 함은 암 자체 또는 암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급여 암주요재활치료 대상 수가코드」(별표100) 급여 암주요재활치료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여 암주요재활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의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암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암 진단과 관련이 없는 질병, 상해로 급여 암주요재활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 원인”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9-5

암통합케어지원비(주요통증완화치료비)(암(유사암제외))
(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이로 인한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암통합케어지원비(주요통증완화치료비)(암(유사암제외))(급여)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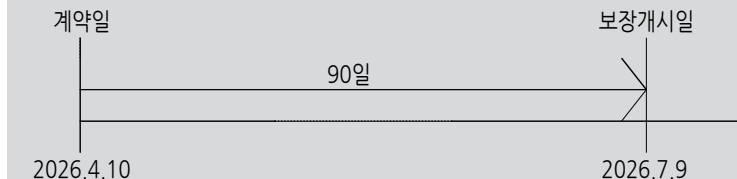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함)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일자로 합니다.
- 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라 함은 피보험자의 진단확정 된 “암(유사암제외)”의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① “급여 신경차단술” 또는 “급여 신경파괴술”을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여 신경차단술” 및 “급여 신경파괴술”이라 함은 「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 대상 수가코드」(별표19) 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해당 진료행위의 기준일자(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②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여 마약성 진통제”라 함은 아래의 약효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연간 30일 이상 처방”이라 함은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연간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처방일수 합산시 기준일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은 날로 합니다.

용어
풀이**급여 마약성 진통제**

- 약효분류번호 800, 810, 811, 812, 820, 821, 829, 890에 해당하는 약제
- 상기 약효분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서 정한 마약성 진통제 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 신경차단술”, “급여 신경파괴술” 또는 “급여 마약성 진통제”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암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암 진단과 관련이 없는 질병, 상해로 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 가. “신경차단술”이나 “신경파괴술”을 받은 경우 : 진료확인서(“통증의 원인”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나. “마약성 진통제”를 “연간 3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 : 진료확인서(“통증의 원인” 필수 기재), 진단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병명” 및 “총 투약일수”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0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 (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1일당 8시간 이상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일당 8시간 이상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①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지급기준	경과기간	지급금액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 (요양병원제외) (체증형) (1일당8시간이상) (1일이상180일한도)	기준일로부터 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준일로부터 5년이상 1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20%
	기준일로부터 10년이상 1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0%
	기준일로부터 15년이상 2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80%
	기준일로부터 20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0%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지급기준	지급금액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 (요양병원제외)(체증형) (1일당8시간이상) (1일이상180일한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0%

- ② ①의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 ③ 위 ①의 기준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 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기준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간병인의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사용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8시간이상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나, 8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 8시간이상) 지급예시1)(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10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11월 15일 오후 8시 ~ 2025년 11월 18일 오전 11시

1일기준	2025년 11월		
	15일 오후8시~ 16일 오후8시이전	16일 오후8시~ 17일 오후8시이전	17일 오후8시~ 18일 오후8시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5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0	0	0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3일 = 15만원

지급예시2)(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10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11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11월 15일 오전 9시 ~ 2025년 11월 17일 오후 3시

1일기준	2025년 11월		
	15일 오전9시~ 16일 오전9시이전	16일 오전9시~ 17일 오전9시이전	17일 오전9시~ 18일 오전9시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6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11월 17일 오전9시부터 18일 오전9시이전 기준의 경우 간병인 사용시간이 6시간으로 8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않음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지급예시3)(가입금액 5만원 기준)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 2025년 4월 1일
- 입원기간 : 2025년 5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간병인 사용기간 :
2025년 10월 26일 오후 9시 ~ 2025년 10월 29일 오전 8시

1일기준	2025년 10월		
	26일 오후9시~ 27일 오후9시이전	27일 오후9시~ 28일 오후9시이전	28일 오후9시~ 29일 오후9시이전
간병인 사용시간	24시간	24시간	11시간
1일 8시간이상 사용여부	O	O	X

- 10월 27일이 180일째 입원일, 10월 28일이 181일째 입원일
→ 10월28일부터 180일한도 초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월 27일은 180일째 입원일로 27일 오후 9시부터 24시간이내 8시간 이상 간병인 사용시→ 보험금을 지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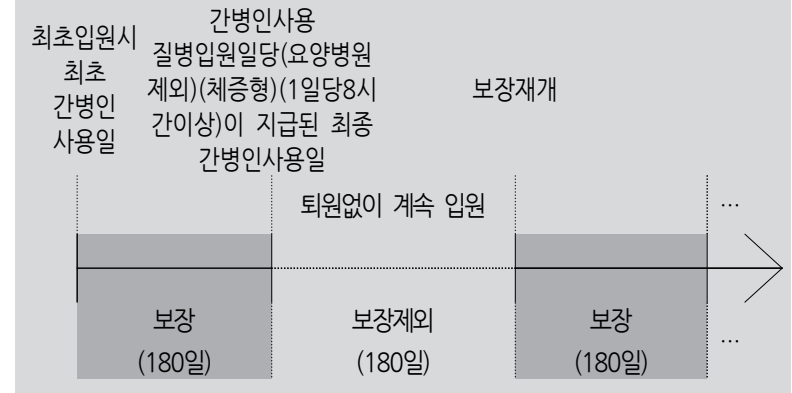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 8시간이상)
: 5만원 × 2일 = 10만원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최종 간병인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의 그 다음 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성병
 -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제외)(체증형)(1일당8시간이상)(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1일당 8시간 미만으로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6.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용어
풀이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체증형) (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①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 (요양병원)(체증형) (1일이상180일한도)	기준일로부터 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준일로부터 5년이상 1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20%
	기준일로부터 10년이상 1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0%
	기준일로부터 15년이상 2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80%
	기준일로부터 20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0%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 (요양병원)(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가입금액의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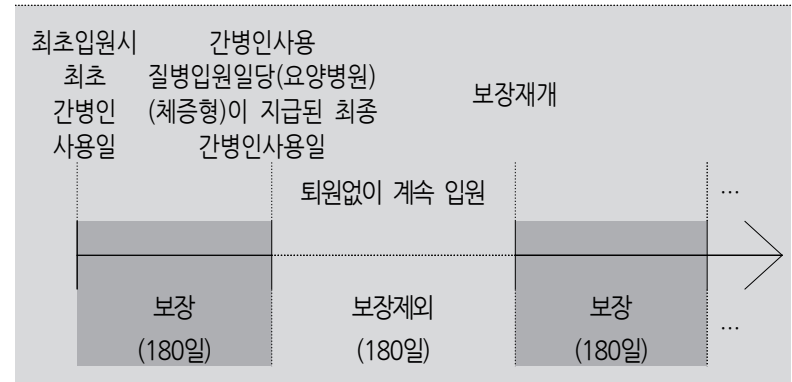
- ② ①의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 ③ 위 ①의 기준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기준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최종 간병인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성병
 -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병원)(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6.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용어
풀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거거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6.(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체증형) (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6.(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①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체증형) (1일이상180일한도)	기준일로부터 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준일로부터 5년이상 1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20%
	기준일로부터 10년이상 15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0%
	기준일로부터 15년이상 20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80%
	기준일로부터 20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0%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 (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	보험가입금액의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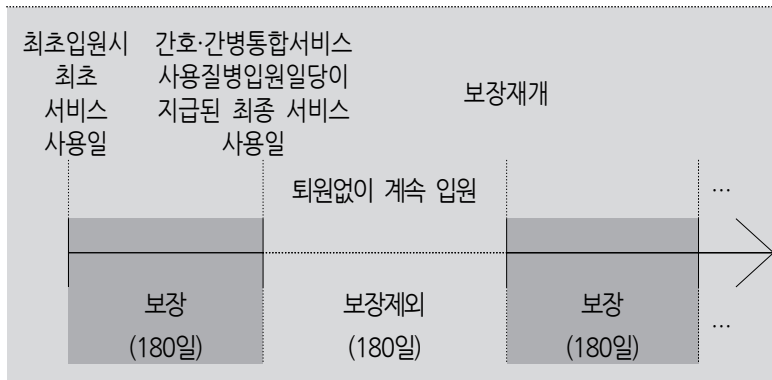
- ② ①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 ③ 위 ①의 기준일은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 전자년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기준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최종 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서비스 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체증형)(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성병
 -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단, 6.(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위의 사고증명서는 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3 | 폐렴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폐렴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폐렴진단비(최초1회한)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갱신계약 및 연장계약
	보험계약일로 부터 30일이하	보험계약일로 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이상	
폐렴진단비 (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폐렴”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폐렴”이라 함은 「폐렴 분류표」(별표171)폐렴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①의 「폐렴」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X-선 촬영,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흉강 천자, 혈액검사, 객담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MRI, CT, 혈관조영술 및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5.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폐렴진단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4 | 폐렴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폐렴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폐렴진단비(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갱신계약 및 연장계약
	보험계약일로 부터 30일이하	보험계약일로 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이상	
폐렴진단비 (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폐렴”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폐렴”이라 함은 「폐렴 분류표」(별표171)폐렴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폐렴”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X-선 촬영,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흉강 천자, 혈액검사, 객담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MRI, CT, 혈관조영술 및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5 |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10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두경부암)
2.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위,식도암)
3.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
4.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담낭,담도및췌장암)
5.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6.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골,피부등전신부위암)
7.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8. (남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남성생식기암)
(여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여성생식기암)
9.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뇌,중추신경계통암)
1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혈액암)

2.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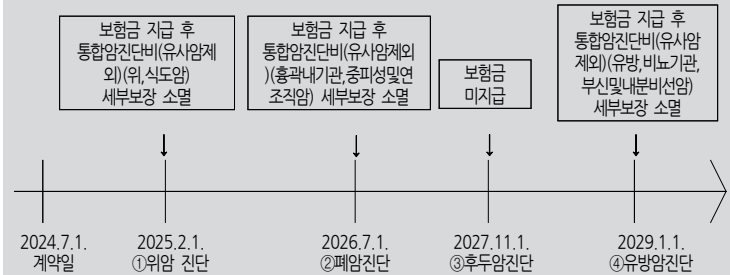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두경부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위,식도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간,담낭,담도및췌장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골,피부등전신부위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남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남성생식기암) (여성의 경우)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여성생식기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뇌,중추신경계통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혈액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예시

보험금 지급 예시



- ① 2025.2.1. 진단확정된 위암(C16)의 경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위·식도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 ② 2026.7.1. 진단확정된 폐암(C34)의 경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 중피성및연조직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 ③ 2027.11.1. 진단확정된 후두암(C32)의 경우, 이미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 중피성및연조직암) 세부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 ④ 2029.1.1. 진단확정된 유방암(C50)의 경우, **통합암진단비(유사암제외)(유방, 비뇨기관, 부신및내분비선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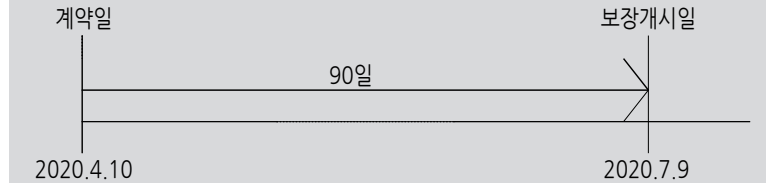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통합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두경부암, 「위·식도암, 「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 「간·담낭·담도및췌장암,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 「골·피부등전신부위암, 「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암,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 「뇌·중추신경계통암 및 「혈액암」 10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위 ①의 「두경부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1> “두경부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위·식도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2> “위·식도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3> “소장·대장·항문 및 기타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간·담낭·담도및췌장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4> “간·담낭·담도 및 췌장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6] 위 ①의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5> “흉곽내기관-중피성 및 연조직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7] 위 ①의 「골,피부등전신부위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6>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8] 위 ①의 「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7> “유방·비뇨기관·부신 및 내분비선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9] 위 ①의 「남성생식기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8>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10] 위 ①의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8>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11] 위 ①의 「뇌,중추신경계통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9> “뇌 및 중추신경계통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12] 위 ①의 「혈액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10> “혈액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13]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14] 위 [13]에 따른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6 | 통합전이암진단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8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전이암진단비(위,식도 전이암)
2. 통합전이암진단비(소장,대장,항문및기타 전이암)
3. 통합전이암진단비(간,담낭,담도및췌장 전이암)
4. 통합전이암진단비(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 전이암)
5. 통합전이암진단비(골,피부등전신부위 전이암)
6. 통합전이암진단비(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 전이암)
7. (남성의 경우)통합전이암진단비(남성생식기 전이암)
(여성의 경우)통합전이암진단비(여성생식기 전이암)
8. 통합전이암진단비(뇌,중추신경계통 전이암)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전이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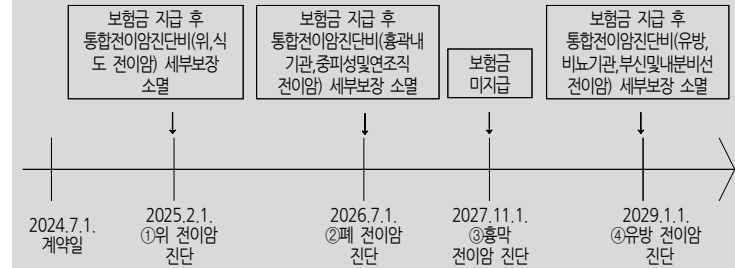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통합전이암진단비(위,식도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전이암진단비(소장,대장,항문및기타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전이암진단비(간,담낭,담도및췌장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전이암진단비(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전이암진단비(골,피부등전신부위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전이암진단비(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남성의 경우)통합전이암진단비(남성생식기 전이암) (여성의 경우)통합전이암진단비(여성생식기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전이암진단비(뇌,중추신경계통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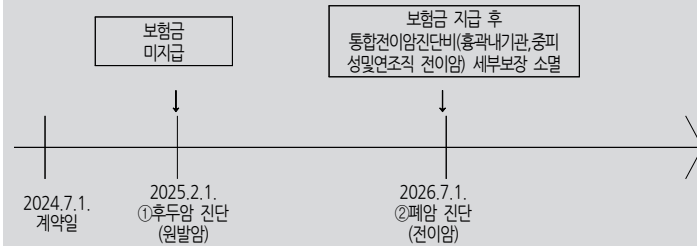
보험금 지급 예시

예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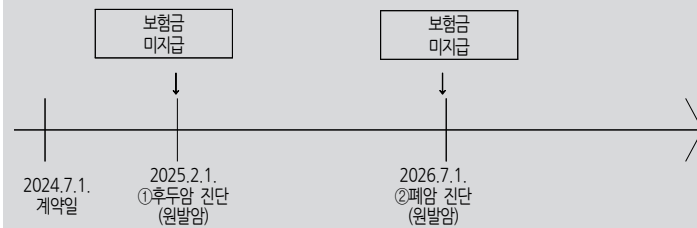
- ① 2025.2.1. 진단확정된 위 전이암(C78.80)의 경우, **통합전이암진단비(위,식도 전이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 ② 2026.7.1. 진단확정된 폐 전이암(C78.0)의 경우, **통합전이암진단비(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 전이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 ③ 2027.11.1. 진단확정된 흉막 전이암(C78.2)의 경우, 이미 통합전이암진단비(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 전이암) 세부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 ④ 2029.1.1. 진단확정된 유방 전이암(C79.80)의 경우, **통합전이암진단비(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 전이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예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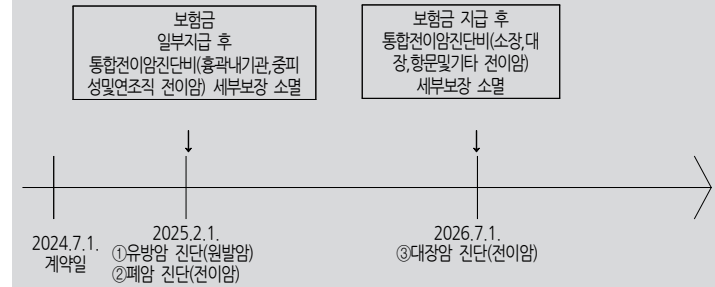
- ① 2025.2.1. 진단확정된 후두암(C32)(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의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 ② 2026.7.1. 진단확정된 폐암(C78.0)(전이암)의 경우, **통합전이암진단비(흉곽내기관, 중피성및연조직 전이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예시3)



- ① 2025.2.1. 진단확정된 후두암(C32)(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의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 ② 2026.7.1. 진단확정된 폐암(C34)(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외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예시4)



- ① 2025.2.1. 진단확정된 유방암(C50)(원발암)의 경우, 보장제의 질병으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 미지급**
- ② 2025.2.1. 동시 진단확정된 폐암(C78.0)(전이암)의 경우, **통합전이암진단비(흉곽내기관, 중피성및연조직 전이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 ③ 2026.7.1. 진단확정된 대장암(C78.5)(전이암)의 경우, **통합전이암진단비(소장, 대장, 항문및기타 전이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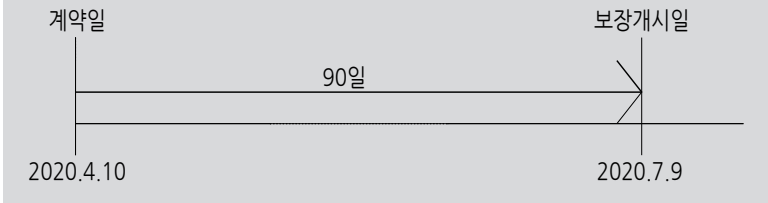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예시

통합전이암 보장개시일

- 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4.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기간 동안 『제도성 특별약관 [4.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의 2.(특별 면책조건의 내용) ①.①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체부위”이외에서 발생한 암이 “특정 신체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제도성 특별약관 [4.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위 ②를 적용합니다.

4. (“통합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위,식도 전이암」, 「소장·대장·항문및기타 전이암」, 「간·담낭·담도및췌장 전이암」,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 전이암」, 「골·피부등전신부위 전이암」, 「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 전이암」,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암 전이암」,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 전이암」 및 「뇌·중추신경계통 전이암」, 8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위 ①의 「위,식도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1> “위암 및 식도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소장·대장·항문및기타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2>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간·담낭·담도및췌장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3>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4> “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위 ①의 「골·피부등전신부위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5>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위 ①의 「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6> “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위 ①의 「남성생식기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7>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⑨ 위 ①의 「여성생식기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7>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⑩ 위 ①의 「뇌·중추신경계통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8>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⑪ “통합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⑫ 위 ⑪에 따른 “통합전이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통합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산모



예시

통합전이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합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7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유사암제외)(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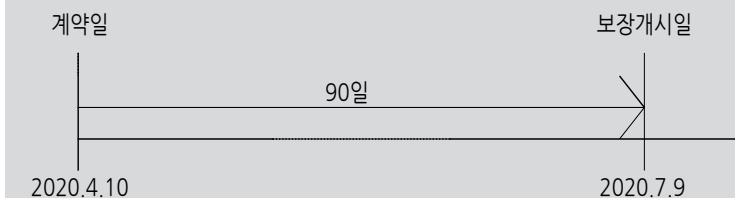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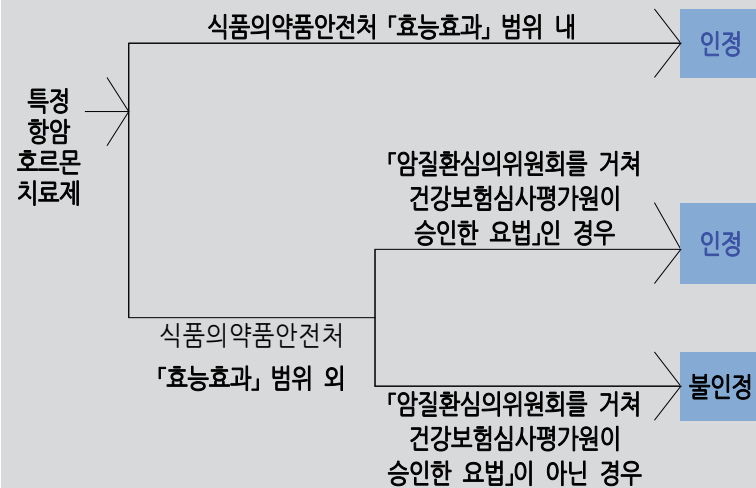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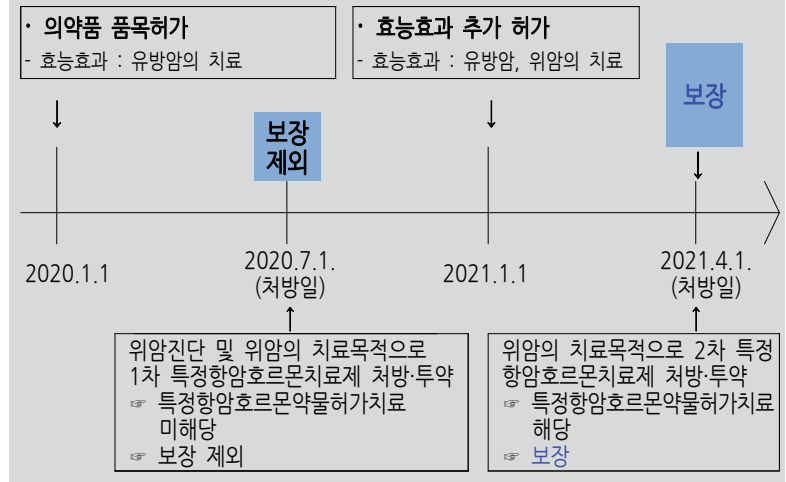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4.(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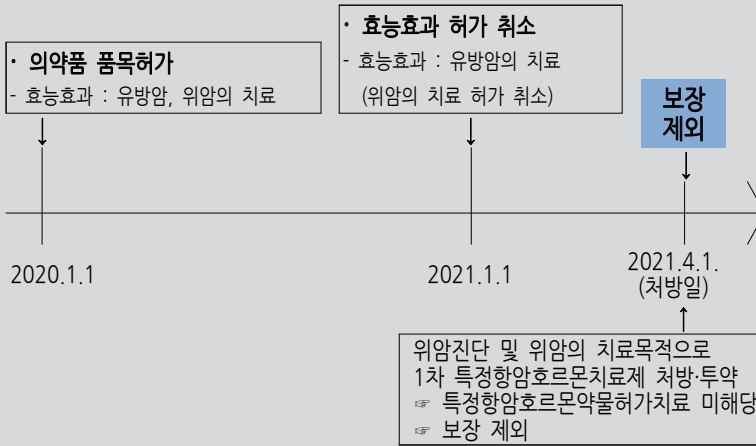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5.(“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5.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 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유사암 제외)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8 |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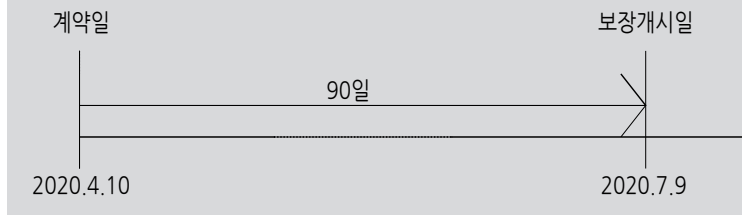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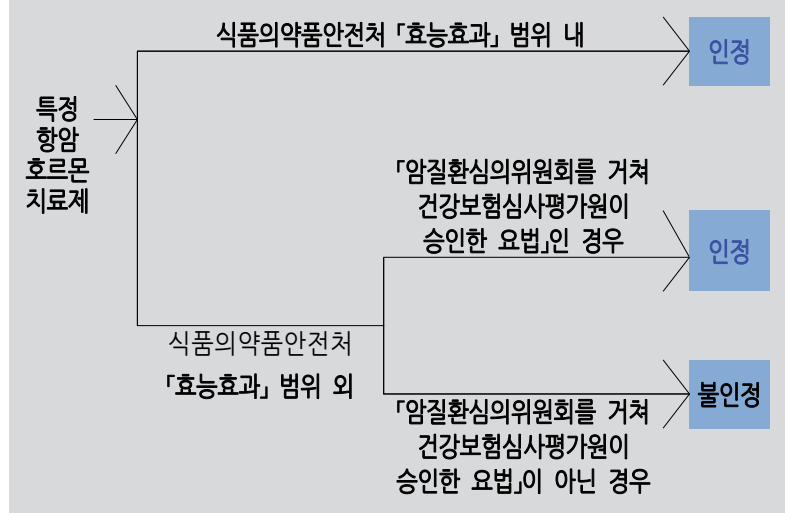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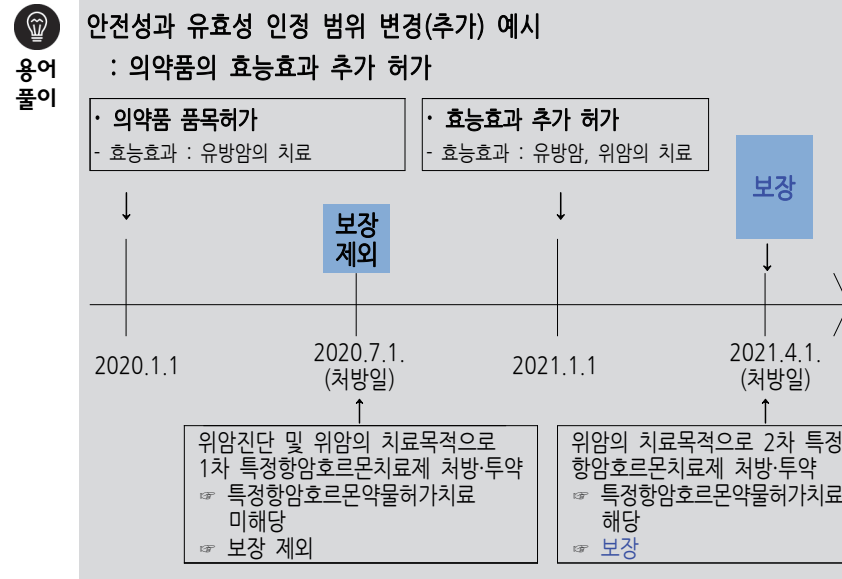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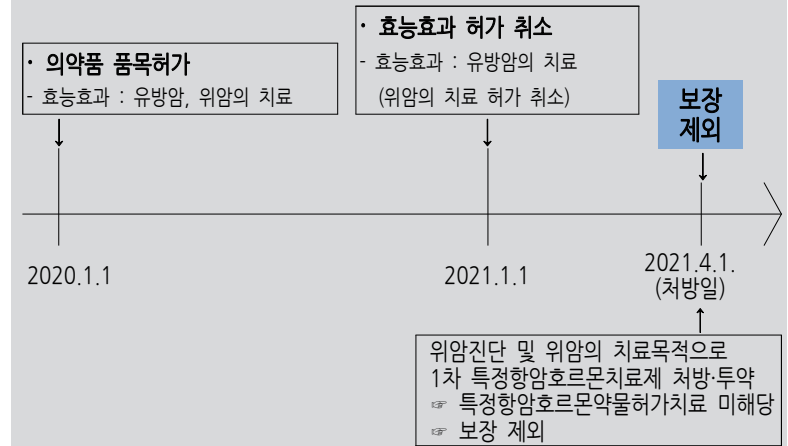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4.(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암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위 ⑤에 따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5.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5.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나. 진단명
다.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9 |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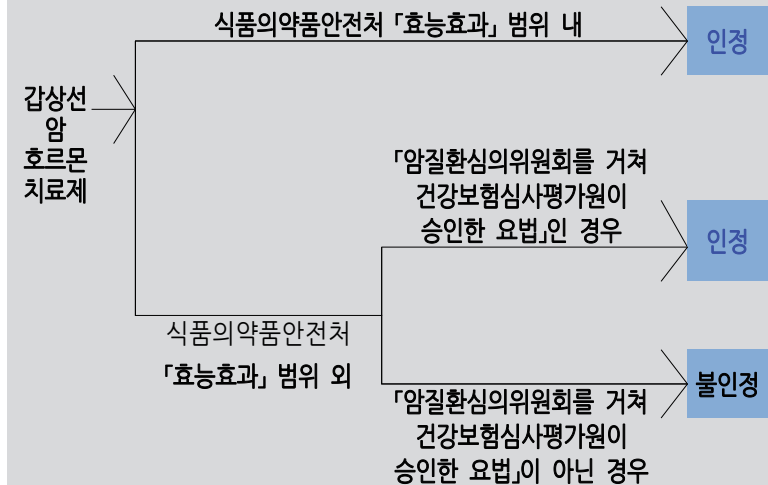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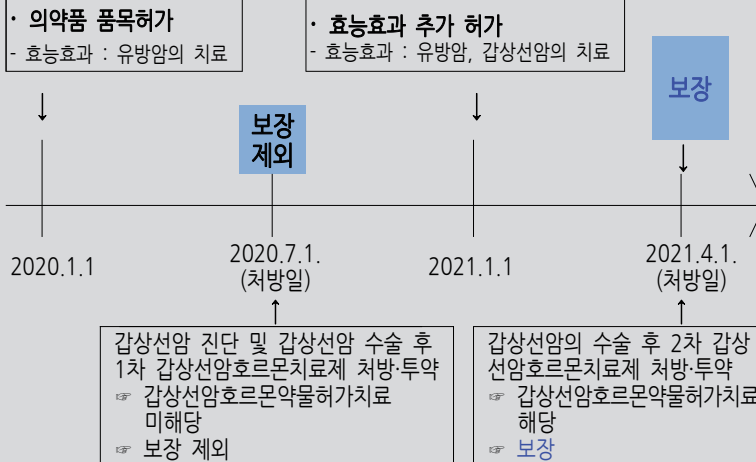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4.(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및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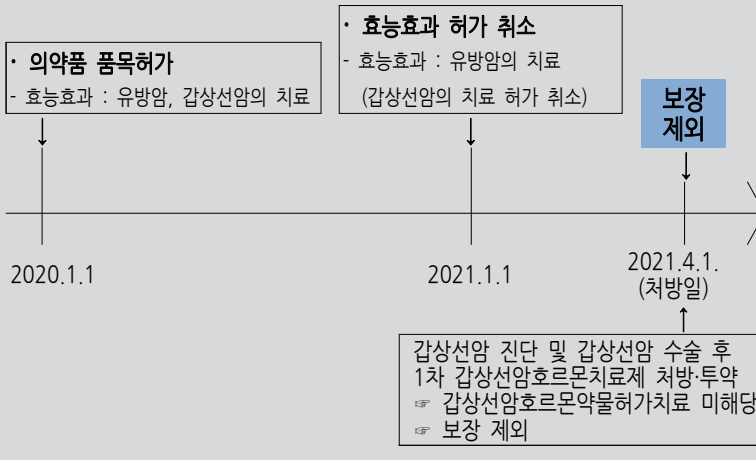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③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및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라 함은 갑상선암수술 후 갑상선자극호르몬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속도를 늦추기 위한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보험
지식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 156】(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호르몬약물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갑상선암” 수술 후 치료 또는 재발 방지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위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위 ①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갑상선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 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정한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회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0 | 항암방사선치료비(유사암포함)(치료당)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치료 1회당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비(치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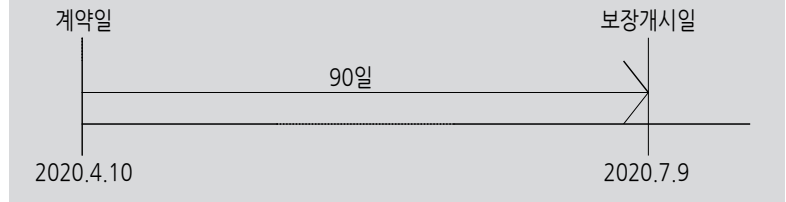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③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1 | 항암약물치료비(유사암포함)(치료당)(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3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항암약물치료비(유사암포함)(주사제)(입원당)
2. 항암약물치료비(유사암포함)(주사제)(통원당)
3. 항암약물치료비(유사암포함)(주사제외)(연간1회한)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입원하여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입원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명	구분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비 (유사암포함) (주사제)(입원당)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입원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통원하여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통원 1회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명	구분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비 (유사암포함) (주사제)(통원당)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통원당)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세부보장명	구분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비 (유사암포함) (주사제외)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비(주사제외)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③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외)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④ 위 ① 내지 ③ 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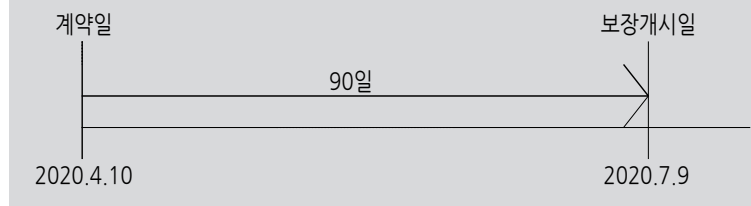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⑤ 단,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⑥ 위 ③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해당 상병의 진료를 위하여 최초로 내원(입원)을 포함합니다.)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 ⑦ 위 ④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4.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7.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 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사용한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외)”라 함은 ②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의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8. (“입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9.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1.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2.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2 |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장가입금액을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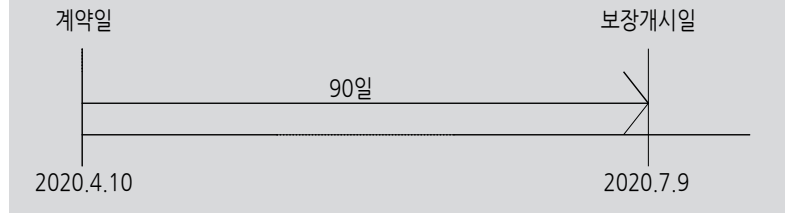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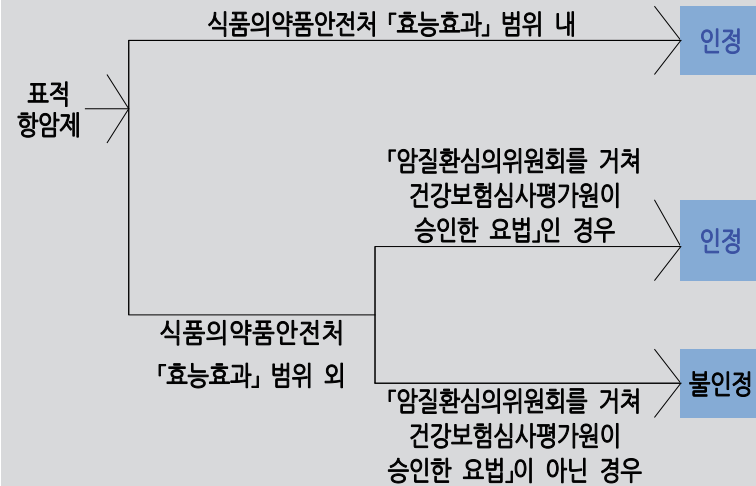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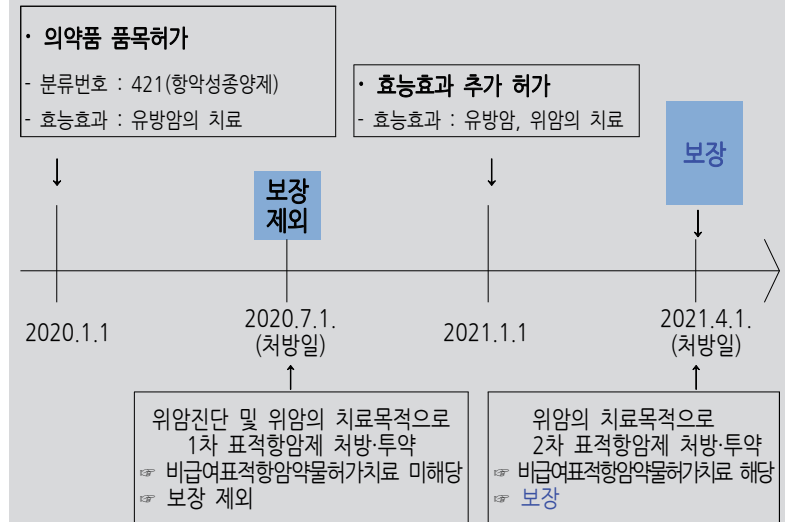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③ 5.(“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를 적용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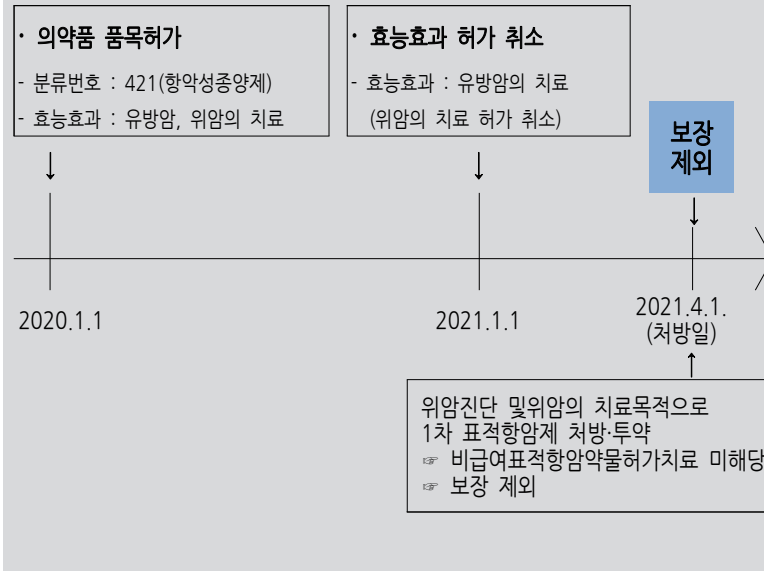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중환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5.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38】(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②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중,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⑥ ⑤의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⑦ 전액본인부담(100/100)(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 ㄴ. 급여적용여부
 - ㄷ. 비급여 약제 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 이내 사용근거 및 소견
 - 다.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경우) 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3 | 계속받는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계속받는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다음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 ②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계속받는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구분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최초1회한)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 (연간1회한)
계속받는비급여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비	보험가입금액의 80%	보험가입금액의 20%

- ③ 위 ②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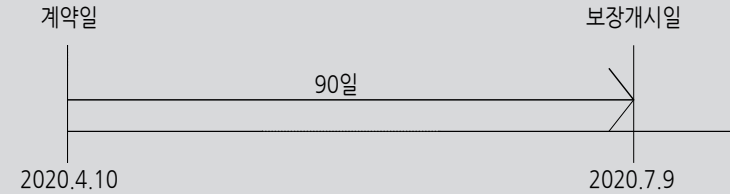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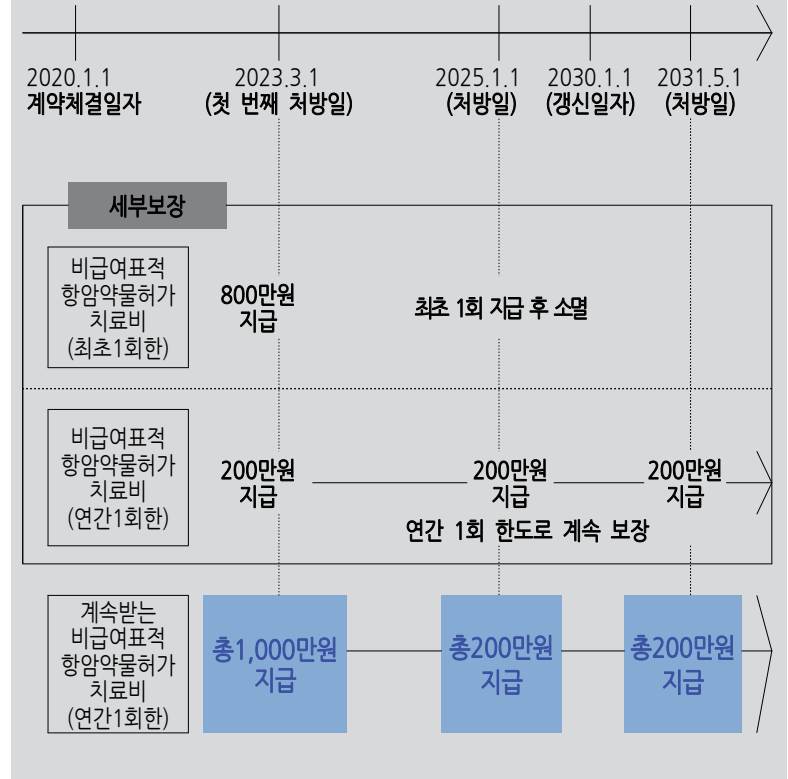


- ④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⑤ 위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②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용어 풀이

계속받는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 보장예시 (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계속받는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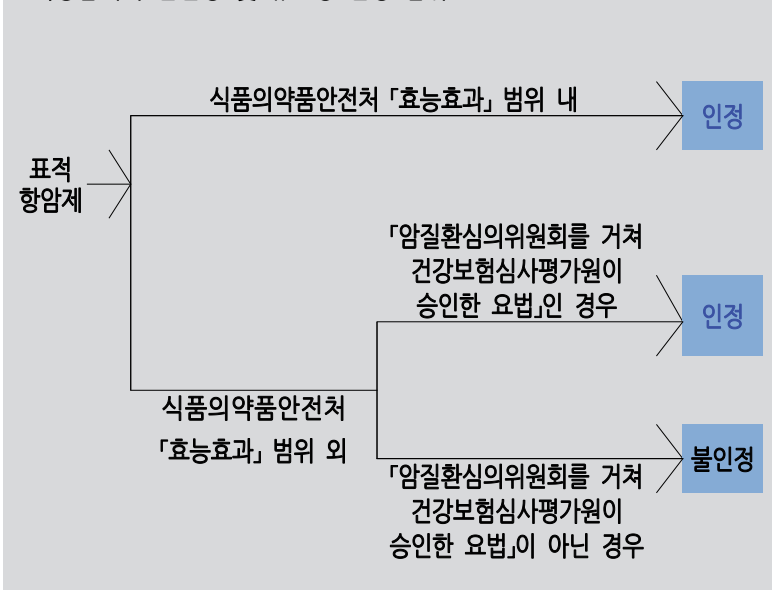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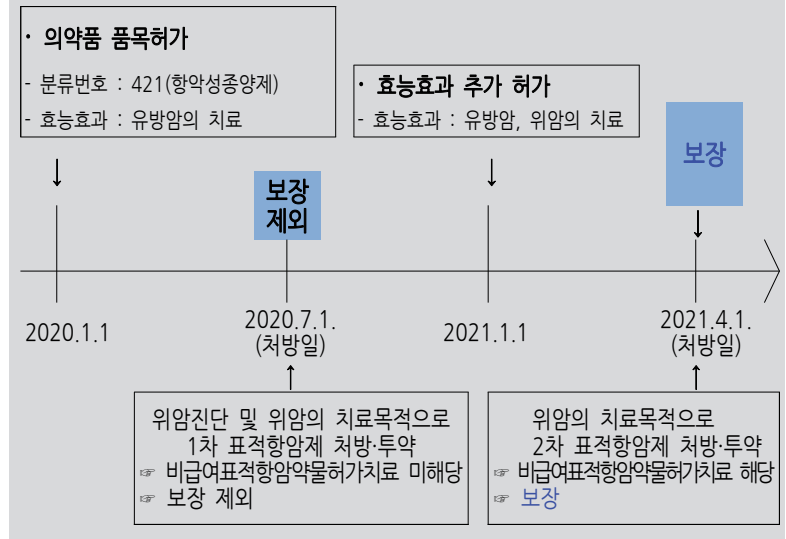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중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③ 5.(“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범위”를 적용합니다.



용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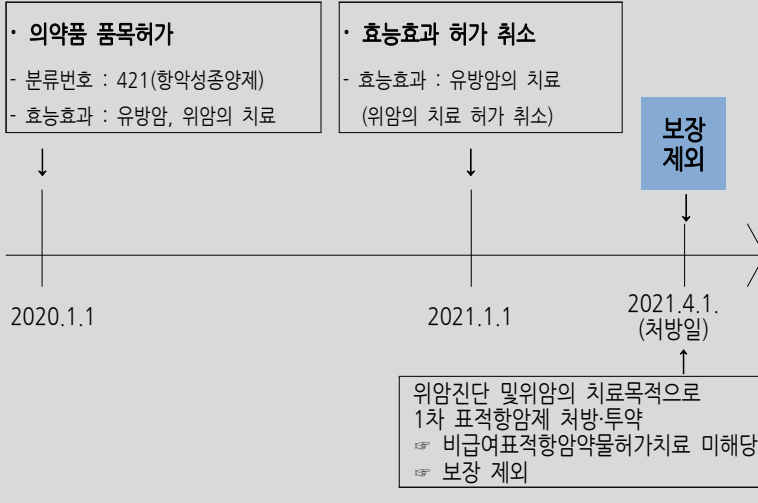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5.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38】(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②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중,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⑥ ⑤의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⑦ 전액본인부담(100/100)(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급여”로 보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 ㅁ. 급여적용여부
 - ㅂ. 비급여 약제 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 이내 사용근거 및 소견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 “비급여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4 | 상급종합병원2,3인실질병입원일당Q(1일이상3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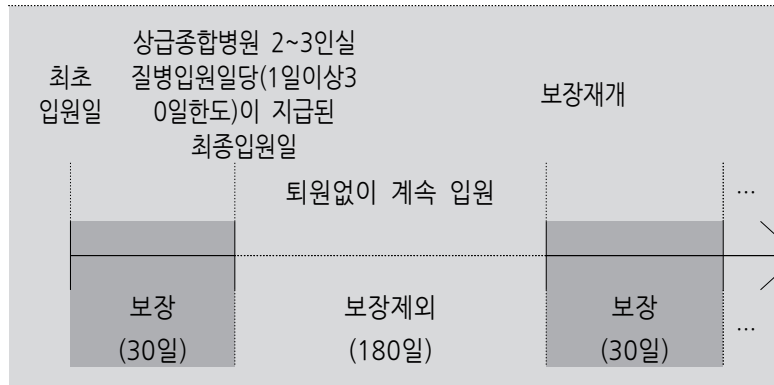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상급종합병원 2~3인실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2~3인실에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2~3인실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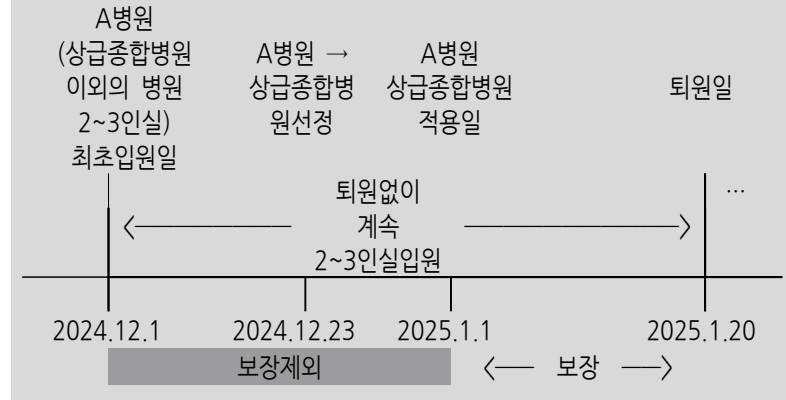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예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2~3인실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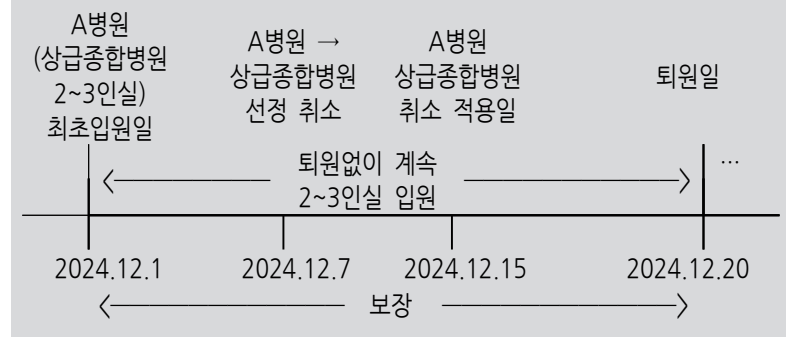


-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예시

상급종합병원 입원 2~3인실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예시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성병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⑩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⑪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⑫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5 | 종합병원2,3인실질병입원일당Q(1일이상30일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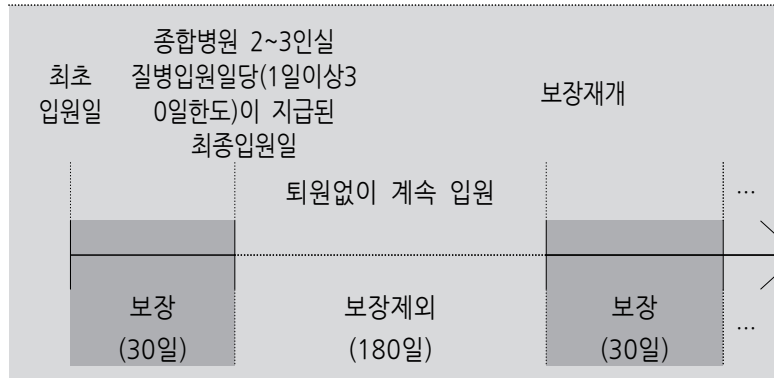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종합병원의 2~3인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이 경우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30일을 계산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2~3인실에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2~3인실에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2~3인실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위 ①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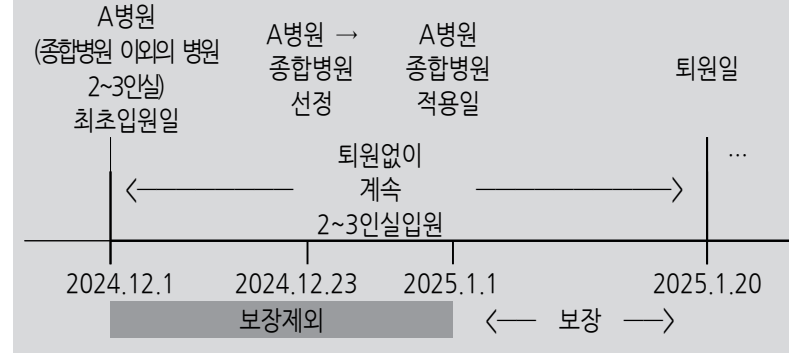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5.(“종합병원”의 정의)에 해당하는 종합병원의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예시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2~3인실 입원 중에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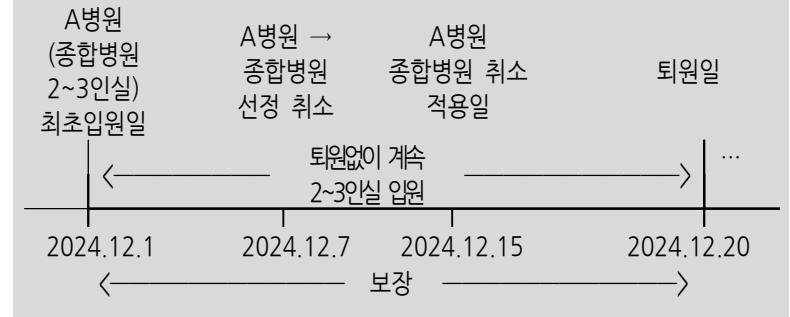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5.(“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일당(1일이상3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예시

종합병원 2~3인실 입원 중에 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예시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성병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⑩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⑪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⑫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 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6 | 골다공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T-score가 -2.5 이하인 골다공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골다공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골다공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골다공증”이라 함은 「골다공증 분류표」(별표165)골다공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골다공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표준적인 의학적 골다공증진단방법(요추, 대퇴골 경부, 대퇴골 전체를 측정하고 가장 낮은 T-score로 진단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문서화된 진료 기록 또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DXA)으로 측정하는 골밀도 기기의 결과지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이 더 이상 골다공증진단방법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한골대사학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골다공증 진료지침 또는 그에 준하는 지침에서 권장하는 골다공증진단방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지침을 따릅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골다공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 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7 | 어린이심장시술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장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어린이심장시술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심장시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심장시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심장병’의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의 관리 하에 ‘심장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아래에서 정한 심장시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시술

1. 동맥관개존폐쇄술(PDA Closure)
2. 심방중격결손폐쇄술(ASD Closure)
3. 풍선판막성형술(Balloon Valvuloplasty)
4. 풍선혈관성형술(Balloon Angioplasty)
5. 풍선심방중격조성술(Balloon Atrial Septostomy)
6. 전극도자절제술(Catheter Ablation)
7. 심박동기삽입술(Pacemaker Insertion)
8. 코일색전술(Coil Embolization)
9. 경피(피부를 통한)적 관상동맥 성형술(PTCA, PTCA with stent, PTA & PTA with stent, Stent-graft insertion)

다만, 심막천자술(Pericardiocentesis) 등 상기 이외의 심장시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린이심장시술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8 |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는 다음 11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연간1회한)
- ②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로티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 ③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 ④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 ⑤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백일해)(연간1회한)
- ⑥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성홍열)(연간1회한)
- ⑦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수두 및 신생아 수두)(최초1회한)
- ⑧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수족구병)(연간1회한)
- ⑨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유행성이하선염)(최초1회한)
- ⑩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 ⑪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위 ①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아래의 지급금액을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지급횟수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 (백일해)(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 (성홍열)(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 (수두 및 신생아수두) (최초1회한)	수두	보험가입금액의 100%	최초 1회한
	신생아 수두	보험가입금액의 20%	최초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 (수족구병)(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 (유행성이하선염)(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0%	최초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

③ 위 ②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④ 회사가 위 ②의 수두로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 수두로 인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통합11대특정감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합11대특정감염병”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백일해”, “성홍열”, “수두”, “신생아 수두”,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위 ①의 “백일해”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백일해”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위 ①의 “성홍열”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성홍열”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위 ①의 “수두”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수두”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⑨ 위 ①의 “신생아 수두”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신생아 수두”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⑩ 위 ①의 “수족구병”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수족구병”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⑪ 위 ①의 “유행성이하선염”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유행성이하선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⑫ 위 ①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⑬ 위 ①의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의 세부보장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⑭ “통합11대특정감염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문서화된 진료 기록 또는 임상적 특징, 혈액, 대소변, 뇌척수액, 타액, 빈이두 흡입액 및 도찰물, 직장도말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두를 진단받아 세부보장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수두 및 신생아수두)(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수두 및 신생아수두)(최초1회한)”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신생아 수두를 진단받아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세부보장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유행성이하선염)(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유행성이하선염)(최초1회한)”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④ 위 ③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 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9 |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는 다음 11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연간1회한)
- ②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 ③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 ④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 ⑤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백일해)(연간1회한)
- ⑥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성홍열)(연간1회한)
- ⑦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수두)(최초1회한)
- ⑧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수족구병)(연간1회한)
- ⑨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유행성이하선염)(최초1회한)
- ⑩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 ⑪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위 ①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로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횟수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 (10일면책)(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연간1회한)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 (10일면책)(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 (10일면책)(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연간1회한)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 (10일면책)(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연간1회한)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 (10일면책)(백일해)(연간1회한)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 (10일면책)(성홍열)(연간1회한)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 (10일면책)(수두)(최초1회한)	최초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 (10일면책)(수족구병)(연간1회한)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 (10일면책)(유행성이하선염)(최초1회한)	최초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 (10일면책)(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연간1회한)	연간 1회한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 (10일면책)(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연간1회한)	연간 1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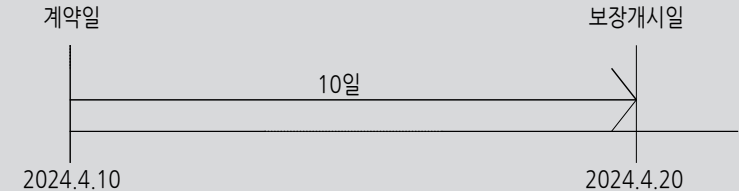
③ 위 ②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④ 위 ②에서 “연간” 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11대특정감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통합11대특정감염병”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백일해”, “성홍열”, “수두”, “신생아 수두”,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위 ①의 “백일해”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백일해”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위 ①의 “성홍열”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성홍열”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위 ①의 “수두”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수두”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단,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신생아 수두”에 해당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⑨ 위 ①의 “수족구병”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수족구병”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⑩ 위 ①의 “유행성이하선염”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유행성이하선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⑪ 위 ①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중 세부보장 구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⑫ 위 ①의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이라 함은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90】(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의 세부보장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⑬ “통합11대특정감염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문서화된 진료 기록 또는 임상적 특징, 혈액, 대소변, 뇌척수액, 타액, 빈이두 흡입액 및 도찰물, 직장도말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수두)(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수두)(최초1회한)”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유행성이하선염)(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 “통합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유행성이하선염)(최초1회한)”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④ 위 ③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0 | 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11대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10일면책,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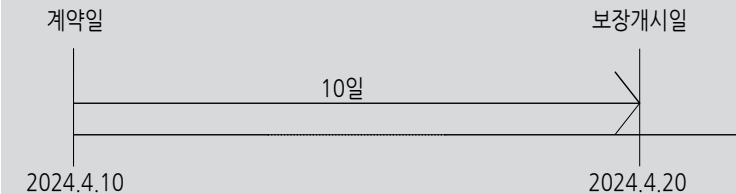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11대특정감염병진단비Ⅱ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 ③ 위 ①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질병에 의해 11대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도 1회의 11대특정감염병진단비(연간1회한)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11대특정감염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1대특정감염병”이라 함은 「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별표159】(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백일해”, “성홍열”, “수두”, “수족구병”, “유행성이하선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을 말합니다.
- ② “11대특정감염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문서화된 진료 기록 또는 임상적 특징, 혈액, 대소변, 뇌척수액, 타액, 빈이두 흡입액 및 도찰물, 직장도말물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항원 및 항체 검출검사, 유전자검출검사 등의 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1 | 특정선천성대사이상및특수식이필요질병진단비(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출생시에 시작하며, 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선천성 대사이상 및 특수식이 필요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태아로 출생한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에 대하여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특정선천성 대사이상 및 특수식이 필요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선천성 대사이상 및 특수식이 필요질병”이라 함은 「특정선천성 대사이상 및 특수식이 필요질병 분류표」(별표161) 특정선천성 대사이상 및 특수식이 필요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특정선천성대사이상및특수식이필요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유전자 검사, 효소 검사, 조직 검사, 혈액 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다만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선별검사 결과 소견이 발생하여 확진검사를 받고 이를 통해 확진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선천성 대사이상 및 특수식이 필요질병진단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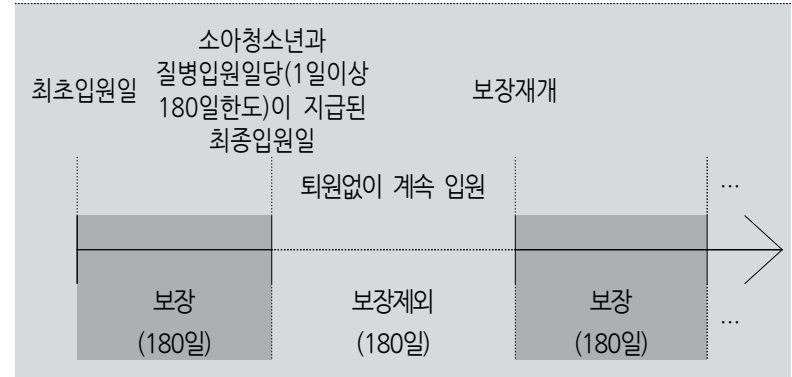
222 | 소아청소년과질병입원일당Q (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소아청소년과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소아청소년과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의 소아청소년과를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③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소아청소년과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소아청소년과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소아청소년과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성병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소아청소년과”의 정의)

“소아청소년과”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의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소아청소년과를 말합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소아청소년과”의 정의)의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이 의료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 내용에 상응하는 “소아청소년과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 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아청소년과”가 진료과목이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변경으로 5. (“소아청소년과”의 정의)의 “소아청소년과”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 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 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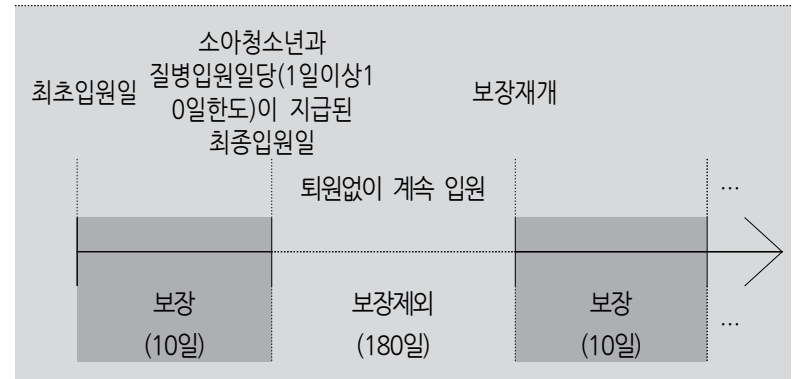
223 | 소아청소년과질병입원일당Q (1일이상10일한도)(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의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소아청소년과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소아청소년과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으로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의 소아청소년과를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③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소아청소년과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1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소아청소년과 질병입원일당(1일 이상1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①,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소아청소년과 질병입원일당(1일이상1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성 뇌질환(Q00-Q04)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성병
- ④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⑦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⑧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⑨ 정상분만, 치과질환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소아청소년과”의 정의)

“소아청소년과”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의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소아청소년과를 말합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소아청소년과”의 정의)의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이 의료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특별약관 내용에 상응하는 “소아청소년과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 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아청소년과”가 진료과목이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진료과목변경으로 5. (“소아청소년과”의 정의)의 “소아청소년과”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 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 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4 | 중증틱장애진단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틱장애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중증틱장애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단,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3세 이상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중증틱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중증틱장애”라 함은 운동틱장애 및 음성틱장애를 모두 나타내고(단, 반드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님)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며, 「중증틱장애 분류표」(별표162) 중증틱장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말하는 “운동틱장애”라 함은 얼굴 찡그리기, 눈 깜빡임, 어깨 으쓱댐, 코 킁킁거림, 기침하기 등 행동의 반복을 보이거나, 몸 냄새 맡기, 손을 흔들거나 발로 차는 동작 등 통합적이며 목적을 가진 행동과 같은 증상을 말하며, “음성틱장애”라 함은 저속한 언어를 말하는 외설증, 말을 따라하는 방향 언어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위 ②의 “중증틱장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문서화된 진료 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②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틱장애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틱장애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거나 피보험자의 나이가 2세이하인 경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5 |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4.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급여)”의 정의)에서 정한 검사를 받은 연, 월, 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급여)”라 함은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급여) 분류표」(별표163)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급여) 분류표에서 정한 정한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 대상 “수가코드”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 의사, 한의사는 제외합니다)에 의하여 “베일리영유아발달검사(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 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6 | 체중형3대질병진단비(암(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1-1. (첫 번째 질병 진단시)

- ①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미만인 경우

구분	지급금액
첫 번째 질병 진단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 ②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첫 번째 질병 진단시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1-2. (첫 번째 질병 진단 후 두 번째 질병 진단시)

구분	지급금액
첫 번째 질병 진단 후 두 번째 질병 진단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00%

1-3. (두 번째 질병 진단 후 세 번째 질병 진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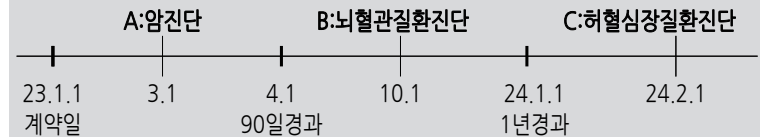
구분	지급금액
두 번째 질병 진단 후 세 번째 질병 진단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0%



예시

체중형3대질병진단비 지급예시-1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
가입예시 • 최초계약의 계약일 : 2023년 1월 1일



※ 경과기간별 보험금 지급(보험계약일로부터)

<첫 번째 질병 진단시>

- 암(유사암제외) 진단(90일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인 50만원 지급

<첫 번째 질병 진단 후 두 번째 질병 진단시>

- 뇌혈관질환 진단 :
보험가입금액의 300%인 3,000만원 지급

<두 번째 질병 진단 후 세 번째 질병 진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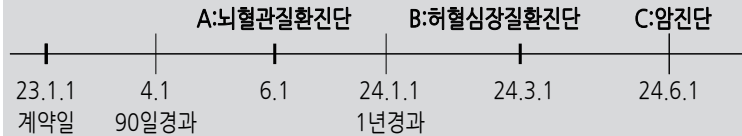
- 허혈심장질환 진단 :
보험가입금액의 500%인 5,000만원 지급
- => 총 지급 보험금 : 8,050만원 지급



예시

체증형3대질병진단비 지급예시-2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계약 체결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이상인 경우
가입예시 • 최초계약의 계약일 : 2023년 1월 1일



※ 경과기간별 보험금 지급(보험계약일로부터)

<첫 번째 질병 진단시>

- 뇌혈관질환 진단(90일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인 1,000만원 지급

<첫 번째 질병 진단 후 두 번째 질병 진단시>

- 허혈심장질환 진단 :

보험가입금액의 300%인 3,000만원 지급

<두 번째 질병 진단 후 세 번째 질병 진단시>

- 암(유사암제외) 진단 :

보험가입금액의 500%인 5,000만원 지급

=> 총 지급 보험금 : 9,000만원 지급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4.(“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6.(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5.(“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6.(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산모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암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5.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1-3.(두번째 질병 진단 후 세 번째 질병 진단 시)에서 정한 두 번째 질병 진단 후 세 번째 질병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의 이외의 원인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26.(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1-1.(첫 번째 질병 진단시)에서 정한 첫 번째 질병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8.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35.(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중 1-1.(첫 번째 질병 진단시)에서 정한 첫 번째 질병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이 특별약관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7 |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암주요치료비Ⅱ(유사암제외)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암주요치료비Ⅱ (유사암제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로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동안 연간1회한 지급(최대10회지급)

- ② 위 ①의 암주요치료는 “암(유사암제외)”(최초 진단과 상이한 “암(유사암제외)”도 포함합니다)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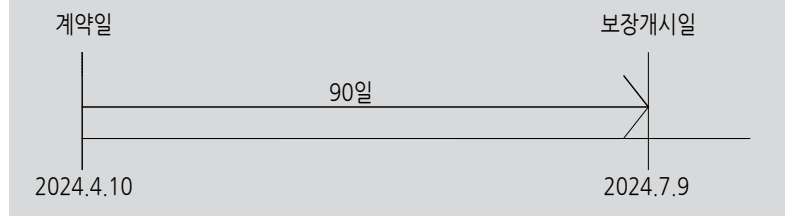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①의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해당일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월의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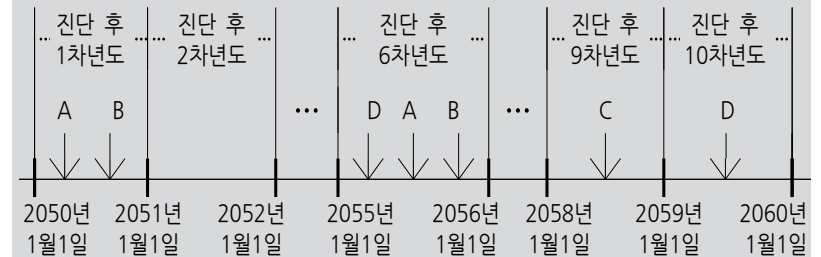


예시

암주요치료비 II (유사암 제외)(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30년 만기)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3년 7월 1일
-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최초진단 확정일 : 2050년 1월 1일
- C32(후두의 악성신생물)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1월 1일

A : 암수술(C15)
B : 항암방사선치료(C15)
C : 항암약물치료(C15)
D : 항암약물치료(C32)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	진단 후 6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1,000만원	-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2050년 1월1일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최초 진단 이후 C15(식도의 악성 신생물) 이외의 암(유사암제외)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50년1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의 최초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암 주요치료”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가 포함됩니다.
- ②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르몬 관련 치료제
 - ⑤ ① 내지 ④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②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 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포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26.(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2.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35.(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8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요치료비Ⅱ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로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동안 연간1회한 지급(최대10회지급)

- ② 위 ①의 암주요치료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최초 진단과 상이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도 포함합니다)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담보의 갱신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예시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계약일: 2024.4.10
보장개시일: 2024.7.9
90일

- ④ 위 ①의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해당일("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요치료비 II (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200만원기준, 30년 만기)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3년 7월 1일
-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최초진단 확정일 : 2050년 1월 1일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1월 1일

A : 암수술(C44)
B : 항암방사선치료(C44)
C : 항암약물치료(C44)
D : 항암약물치료(C73)

... 진단 후 1차년도 ...	... 진단 후 2차년도 ...	...	... 진단 후 6차년도 ...	... 진단 후 9차년도 ...	... 진단 후 10차년도 ...
A B			D A B	C	D
2050년 1월1일	2051년 1월1일	2052년 1월1일	2055년 1월1일	2056년 1월1일	2058년 1월1일
2059년 1월1일	2060년 1월1일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	진단 후 6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200만원	-		200만원		200만원

※ 2050년 1월1일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최초 진단 이후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이외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50년1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암 주요치료”에는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가 포함됩니다.
- ②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르몬 관련 치료제
 - ⑤ ① 내지 ④ 이외의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②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26.(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2.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35.(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9 | 패혈증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패혈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패혈증진단비(최초1회한)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갱신계약 및 연장계약
	보험계약일로 부터 30일이하	보험계약일로 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이상	
패혈증진단비(최초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패혈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패혈증”이라 함은 「패혈증 분류표」(별표172)패혈증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①의 「패혈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패혈증진단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0 | 패혈증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패혈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패혈증진단비(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갱신계약 및 연장계약
	보험계약일로 부터 30일이하	보험계약일로 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이상	
패혈증진단비(연간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패혈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패혈증”이라 함은 「패혈증 분류표」(별표172)패혈증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패혈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1 | 주요폐질환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주요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주요폐질환진단비(최초1회한)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갱신계약 및 연장계약
	보험계약일로 부터 30일이하	보험계약일로 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이상	
주요폐질환진 단비(최초1회 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주요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주요폐질환”이라 함은 「주요폐질환 분류표」(별표173)주요 폐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①의 「주요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X-선 촬영,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흉강 전자, 혈액검사, 객담검사 등 의학적으

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MRI, CT, 혈관조영술 및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5.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주요폐질환진단비(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2 | 주요폐질환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주요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주요폐질환진단비(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갱신계약 및 연장계약
	보험계약일로 부터 30일이하	보험계약일로 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이상	
주요폐질환진 단비(연간1회 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주요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주요폐질환”이라 함은 「주요폐질환 분류표」(별표173)주요 폐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주요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X-선 촬영,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흉강 천자, 혈액검사, 객담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MRI, CT, 혈관조영술 및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3 |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 진단비(최초 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 진단비(최초 1회한)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갱신계약 및 연장계약
	보험계약일로 부터 30일 이하	보험계약일로 부터 31일 이상 1년 미만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 이상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 진단비(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이라 함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 분류표」(별표 174)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①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

층촬영(CT), X-선 촬영,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흉강 천자, 혈액검사, 객담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MRI, CT, 혈관조영술 및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5.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 진단비(최초 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4 |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 진단비(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 진단비(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최초계약 및 연장전 계약			갱신계약 및 연장계약
	보험계약일로 부터 30일이하	보험계약일로 부터 31일이상 1년미만	보험계약일로 부터 1년이상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진 단비(연간1회 한)	보험가입금액의 10%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이라 함은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 분류표」(별표174)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외부요인으로 인한 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X-선 촬영, 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흉강 천자, 혈액검사, 객담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질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MRI, CT, 혈관조영술 및 기타 검사결과지 포함)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5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Ⅲ (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35-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
(비갱신형/갱신형)

235-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
(비갱신형/갱신형)

235-1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제외) (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7.(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제외)를 지급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 지원비(요양병원제외)를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의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15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예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가입시

예시1)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A질병	2023년 6월 1일 ~ 6월30일 (30일)	2023년 6월 11일 ~ 6월 17일 (사용일수 7일, 사용금액 70만원)
B질병	2023년 12월 1일 ~ 12월 30일 (30일)	2023년 12월 4일 ~ 12월 23일 (사용일수 20일, 사용금액 600만원)

- (A질병) : 1일당 평균 1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10만원 × 7일 = 70만원)
- (B질병)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20일 = 30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질병) 70만원 + (B질병) 300만원
= 370만원
-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에 포함 최초입원한 날 2023.6.1. 2023.12.1				
	↓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23.5.1. 계약일		2024.5.1. 계약해당일	2025.5.1. 계약해당일	2026.5.1. 계약해당일

예시2)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A질병	2024년 4월 20일 ~ 5월 19일 (30일)	2024년 4월 24일 ~ 5월 18일 (사용일수 25일, 사용금액 500만원)
B질병	2024년 10월 21일 ~ 12월 19일 (60일)	2024년 11월 5일 ~ 12월 14일 (사용일수 40일, 사용금액 600만원)

입원기간 중 보험년도 변경시 최초입원한 날의 보험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합산함

- (A질병) : 1일당 평균 2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적용
(15만원 × 25일 = 375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질병) 375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 (B질병) : 1일당 평균 15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40일 = 600만원)

→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B질병) 6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2차년도 지급금액 : 50만원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에 포함 최초입원한 날 2024.4.20.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에 포함 최초입원한 날 2024.10.21.	
	↓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23.5.1. 계약일	2024.5.1. 계약해당일	2025.5.1. 계약해당일	2026.5.1. 계약해당일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성병
 -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제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7.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용어
풀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8.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7.(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5-2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 (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7.(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를 지급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 지원비(요양병원)를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질병의 진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의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15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예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가입시

예시1)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A질병	2023년 6월 1일 ~ 6월30일 (30일)	2023년 6월 11일 ~ 6월 17일 (사용일수 7일, 사용금액 70만원)
B질병	2023년 12월 1일 ~ 12월 30일 (30일)	2023년 12월 4일 ~ 12월 23일 (사용일수 20일, 사용금액 600만원)

- (A질병) : 1일당 평균 1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10만원 × 7일 = 70만원)

- (B질병)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20일 = 30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질병) 70만원 + (B질병) 300만원
= 37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에 포함 최초입원한 날 2023.6.1. 2023.12.1			
	↓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2023.5.1. 계약일		2024.5.1. 계약해당일	2025.5.1. 계약해당일
			2026.5.1. 계약해당일

예시2)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A질병	2024년 4월 20일 ~ 5월 19일 (30일)	2024년 4월 24일 ~ 5월 18일 (사용일수 25일, 사용금액 500만원)
B질병	2024년 10월 21일 ~ 12월 19일 (60일)	2024년 11월 5일 ~ 12월 14일 (사용일수 40일, 사용금액 600만원)

입원기간 중 보험년도 변경시 최초입원한 날의 보험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함

- (A질병) : 1일당 평균 2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적용
(15만원 × 25일 = 37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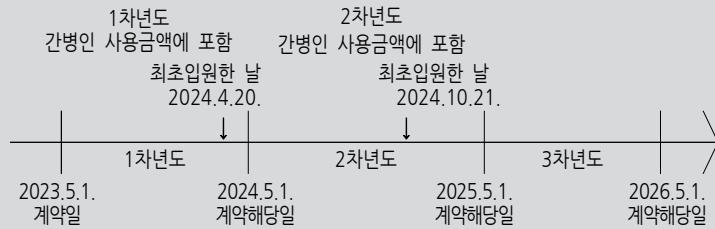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A질병) 375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 (B질병) : 1일당 평균 15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40일 = 600만원)

→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B질병) 6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25% 지급, 2차년도 지급금액 : 50만원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성병
-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지원비Ⅲ(요양병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7.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용어 풀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8.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7.(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 통합유사암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피부암및유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제자리암(기타),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진단비(피부암및유방) 제자리암진단비(자궁경부및생식기관) 제자리암진단비(기타)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각각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및 “제자리암(기타)”)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피부및유방)”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피부및유방) 분류표」(별표11-1)제자리신생물(피부및유방)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자궁경부및생식기관) 분류표」(별표11-2)제자리신생물(자궁경부및생식기관)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기타)”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기타) 분류표」(별표11-3)제자리신생물(기타)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및 “제자리암(기타)”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및 “제자리암(기타)”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위 ④에 따른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및 “제자리암(기타)”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및 “제자리암(기타)”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및 제자리암(기타)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자리암(피부및유방),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 제자리암(기타),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각각 진단받아 통합유사암진단비를 각 1회씩 총 6회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7 | 백반증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백반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백반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백반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백반증”이라 함은 「백반증 분류표」(별표175) 백반증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백반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진단, 우드등 검사, 현미경 검사 등을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백반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8 |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세부보장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38-1.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수술시)(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 238-2.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혈전용해치료시)(뇌혈관질환)(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 238-3.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혈전용해치료시)(심혈관, 기타)(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 238-4.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중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238-1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수술시)(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수술시)(매회지급)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69) 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재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 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제도의 변경으로 6. (“권역심뇌 혈관질환센터”의 정의)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 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 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 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 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8-2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II(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혈전용해치료시)(뇌혈관질환)(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II(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혈전용해치료시)(뇌혈관질환)(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176-1)순환계질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

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구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문구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 3.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재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 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제도의 변경으로 6. (“권역심뇌 혈관질환센터”의 정의)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 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 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 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 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 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8-3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혈전용해치료시)(심혈관, 기타)(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혈전용해치료시)(심혈관, 기타)(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별표176-2)순환계질환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심혈관 및 기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심혈관 및 기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재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
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제도의 변경으로 6. (“권역심뇌
혈관질환센터”의 정의)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
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
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
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 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
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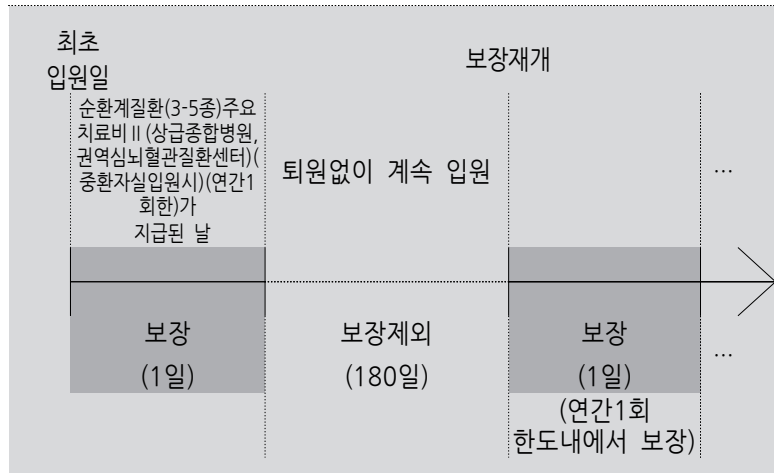
**238-4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
질환센터)(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순환계질환
(3-5종)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중환자실입원시)(연간1
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
간을 말합니다.
- ③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중환자실에 입원
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에 대한 입원이라도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② 단, 위 ①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예시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69) 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함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2.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연구
 3.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및 제공
 4.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 ⑥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재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6.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7.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정의)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
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
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
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6.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의 상급종합병원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제도의 변경으로 7. (“권역심뇌
혈관질환센터”의 정의)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
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
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
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
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 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
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
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39 | 질병수술비Q(특정경증질환, 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 (동일질병당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
병(특정경증질환,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특정경증질환,백내장및대장용
종제외)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특정경증질환」이란 다래끼, 결막염, 외이의 질환, 티눈을 말합니다.【별표
149】 특정경증질환 분류표 참조)
- ③ 위 ①의 「백내장및대장용종」이란 백내장, 대장종양을 말합니다.【별표129】 백내장/
대장종양 분류표 참조)
- ④ 위 ①의 질병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
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질병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O99)
 - ④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혀, 입 및 인두의 기타 선천기형(Q38) 제외)(Q00-Q37, Q39-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비만(E66)
 - ⑥ 요실금(N39.3, N39.4, R32)
 - ⑦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I84, K60~K62, K64)
 - ⑧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⑨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
 - ⑩ 다래끼, 결막염, 외이의 질환, 티눈(별표149) 특정경증질환 분류표 참조)
 - ⑪ 백내장, 대장종양(별표129) 백내장/대장종양 분류표 참조)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여성형 유방증’을 수술하면서 그 일련의 과정으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합니다), 주름살 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0 | 질병수술비Q(특정경증질환, 특정다빈도9대질환제외) (동일질병당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특정경증질환, 특정다빈도9대질환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질병수술비(특정경증질환, 특정다빈도9대질환제외)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특정경증질환」이란 다래끼, 결막염, 외이의 질환을 말합니다. (별표150) 특정경증질환Ⅱ 분류표 참조)
- ③ 위 ①의 「특정다빈도 9대질환」이란 백내장, 향문질환, 대장종양, 후각특정질환, 피부종양, 특정피부질환, 생식기질환, 하지정맥류 및 유방의장애를 말합니다. (별표90) 특정다빈도 9대질환 분류표 참조)
- ④ 위 ①의 질병수술비는 동일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질병수술비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②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이 보장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
 - ③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O99)
 - ④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
 - 단,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체결시 출생 전 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는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허, 입 및 인두의 기타 선천기형(Q38) 제외)(Q00-Q37, Q39-Q99)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비만(E66)
 - ⑥ 요실금(N39.3, N39.4, R32)
 - ⑦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K08)
 - ⑧ 과잉포피, 포경 및 감돈포경, 음경의 기타 장애(N47~N48)
 - ⑨ 다래끼, 결막염, 외이의 질환(별표150) 특정경증질환Ⅱ 분류표 참조)
 - ⑩ 백내장, 향문질환, 대장종양, 후각특정질환, 피부종양, 특정피부질환, 생식기질환, 하지정맥류 및 유방의장애(별표90) 특정다빈도 9대질환 분류표 참조)
- ③ 회사는 아래 목적의 치료를 위한 질병수술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 ②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강축진과 관련된 수술
 - ③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④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탈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⑥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외각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는 녹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 눈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레이저(Laser) 수술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용어
풀이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예시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1 |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①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 ④중환자실입원”을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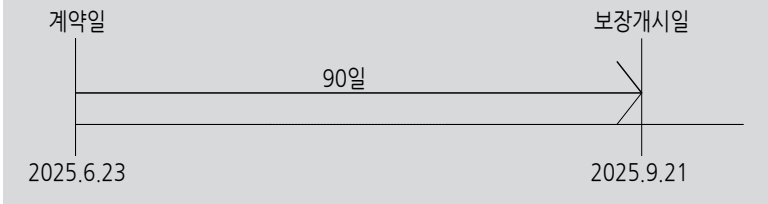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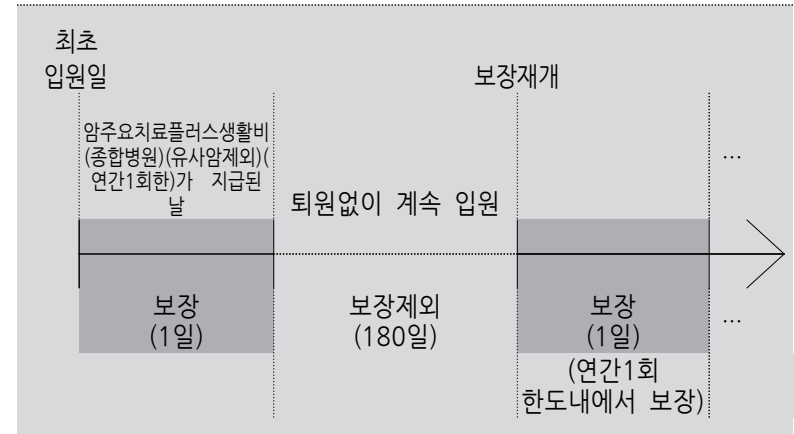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입원”의 치료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항암약물치료”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 ③ 위 ①의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연간1회한)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연간1회한)가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연간1회한)가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위 ③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엠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2.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2 |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받은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①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 ④중환자실입원)”의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를 지급합니다.

구분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지급금액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	2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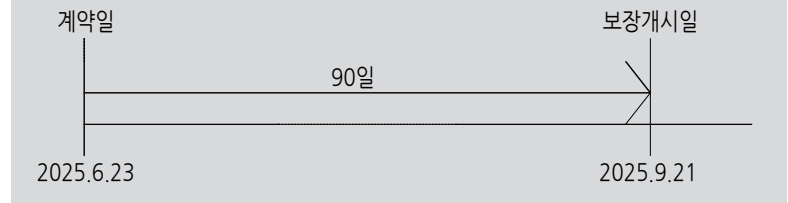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연간 암(유사암제외)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암(유사암제외)주요치료횟수”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연간 암(유사암제외)주요치료횟수” 3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암(유사암제외)주요치료횟수”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④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⑥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유사암제외)(종합병원)(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 이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A : 암(유사암제외) 수술
- B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 C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 D :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치료
- E : 암(유사암제외) 수술
- F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 G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 A : 보험금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1회)
- B : 1,0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2회)
- C : 5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3회)
=>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1,5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1,0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 D : 5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4회)
=>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2,0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1,5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 E : 보험금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1회)
- F : 1,0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2회)
- G : 보험금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1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입원”의 치료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의 치료 항목별 연간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주요치료 항목	산정기준
① 암(유사암제외) 수술	수술1회당
②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연간1회한
③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연간1회한
④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	연간1회한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암(유사암제외) 수술 2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0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1회,
-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 1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 4회
(2회+0회+1회+1회)

예시2)

- 암(유사암제외) 수술 0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2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2회,
-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 2회 시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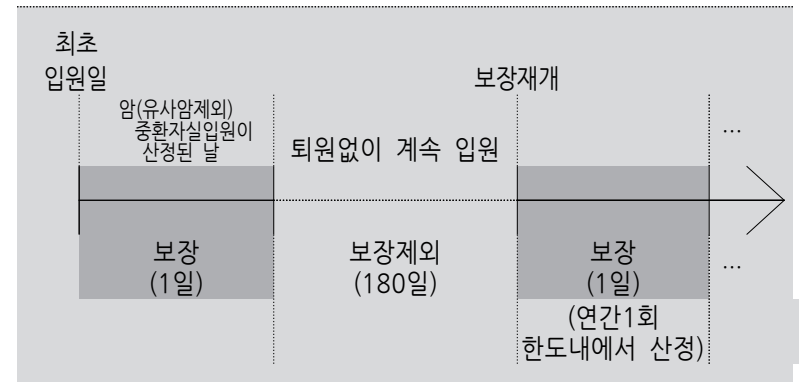
⇒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 3회
(0회+1회+1회+1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환자실입원의 경우 연간1회한으로 각각 1회로 적용

- ③ 위 ②의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④ 위 ②의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를 한하여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를 한하여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에 한하여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⑧ 위 ②의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 기준으로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산정합니다. 위 ③에 따라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가 재산정 되더라도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의 경우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⑨ 위 ⑧의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이 산정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⑩ 위 ⑨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위 ②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보험
지식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횡수산정여부 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횡수산정 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횡수산정여부 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횡수산정 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중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엠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2.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3 |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이하 “유사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유사암 주요치료(①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 ④중환자실입원)”를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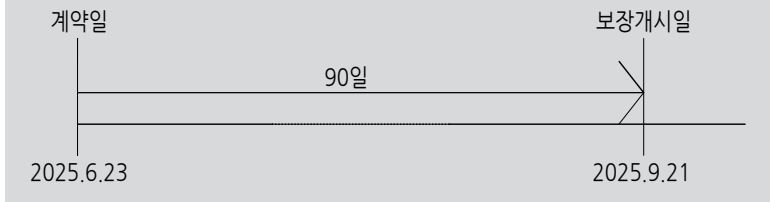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유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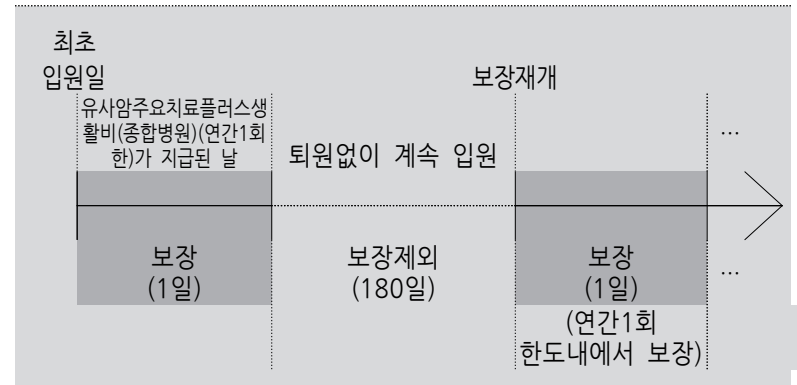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 주요치료”라 함은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입원”의 치료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유사암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1회한)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1회한)가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1회한)가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위 ②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사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8.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7.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7.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0.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포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1.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인용
문구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3.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4.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4 |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 (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이하 “유사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받은 “유사암 주요치료(①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 ④중환자실입원)”의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를 지급합니다.

구분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지급금액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 생활비(종합병원) (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 회이상)	2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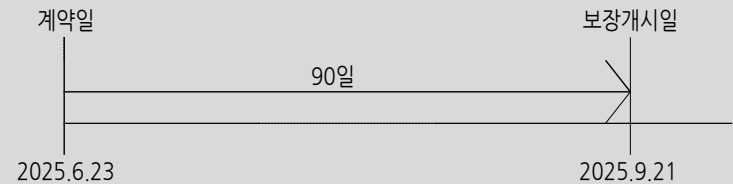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3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④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유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⑥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종합병원)(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A : 유사암 수술
B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C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D : 유사암 중환자실치료
E : 유사암 수술
F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G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A : 보험금미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1회)
B : 1,0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2회)
C : 5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3회)
=>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1,5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1,0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D : 5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4회)
=>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2,0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1,5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E : 보험금미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1회)
F : 1,0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2회)
G : 보험금미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1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 주요치료”라 함은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입원”의 치료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유사암 주요치료”의 치료 항목별 연간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주요치료 항목	산정기준
① 유사암 수술	수술1회당
②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연간1회한
③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연간1회한
④ 유사암 중환자실입원	연간1회한



예시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유사암 수술 2회,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0회,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1회,
- 유사암 중환자실입원 1회 시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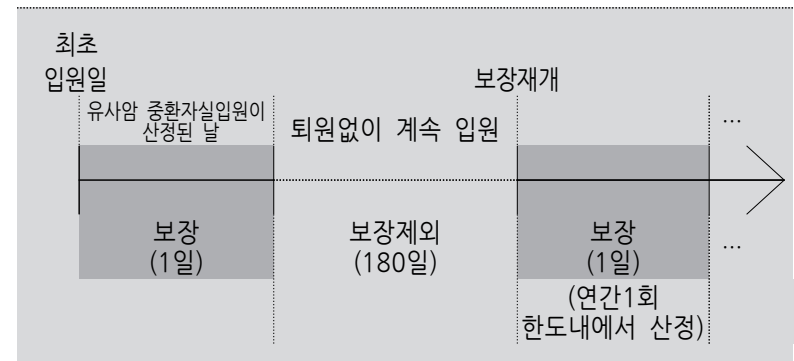
⇒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 4회
(2회+0회+1회+1회)

예시2)

- 유사암 수술 0회,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2회,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2회,
- 유사암 중환자실입원 2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 3회
(0회+1회+1회+1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환자실입원의 경우 연간1회한으로 각각
1회로 적용

- ⑦ 위 ②의 “유사암 중환자실입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 기준으로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산정합니다. 위 ③에 따라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가 재산정 되더라도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의 경우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⑧ 위 ⑦의 “유사암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이 산정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⑨ 위 ⑧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위 ②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보험
지식

- ③ 위 ②의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에 한하여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유사암 항암약물치료에 한하여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유사암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유사암 중환자실입원에 한하여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특별
약관상
해질
병질
병
및
상
해비
응
손
해배
상
책
임상
모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횡수 산정 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횡수산정 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횡수 산정 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횡수산정 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사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이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8.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7.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7.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0.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니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1.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3.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4.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5 |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요양병원제외)(연간1회 한)(10년지급대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에서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 치료, 특정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순환계질환(3-5종)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로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동안 연간1회한 지급 (최대10회지급)

- ② 위 ①의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3-5종)”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연간”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3-5종)”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해당일 (“순환계질환(3-5종)”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의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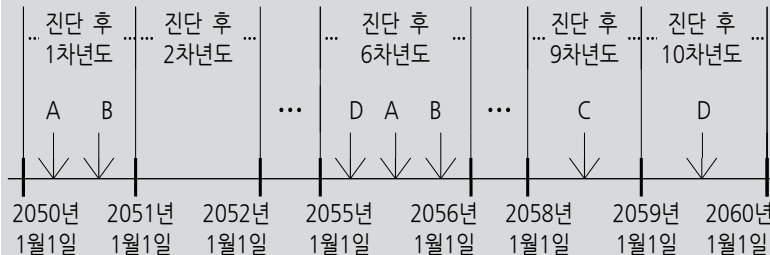


예시

순환계질환(3-5종)치료비(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30년만기)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3년 7월 1일
- I21(급성심근경색증) 최초진단 확정일 : 2050년 1월 1일
- I63(뇌경색증)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1월 1일

A : 수술(I21)
B :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I21)
C : 혈전용해치료(I63)
D : 혈전용해치료(I21)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	진단 후 6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1,000만원	-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 2050년 1월1일 I21(급성심근경색증) 최초 진단 이후 I21(급성심근경색증) 이외의 “순환계질환(3-5종)”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50년1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로 최초 진단확정된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69) 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인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특별약관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산모

4. (“순환계질환 주요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라 함은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 ①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②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 ③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 ④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4-1.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4-2.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4-3.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6. (“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4. ("특정급여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급여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특정급여치료 대상 수가코드」(별표45)특정급여치료 대상 수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급여치료"에 대해 치료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의 "특정급여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특정급여치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용어
풀이

급여수가코드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5.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산모

6.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6.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6.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 수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등(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급여수가코드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순환계질환(3-5종)”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26.(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보험기간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순환계질환(3-5종)”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1.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35.(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단, 보험기간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순환계질환(3-5종)”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 |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세부보장별)(유사암제외)(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46-1.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수술시)(유사암제외)(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 246-2.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방사선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 246-3.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 246-4.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246-1 |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수술시)(유사암제외)(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수술시)(유사암제외)(매회지급)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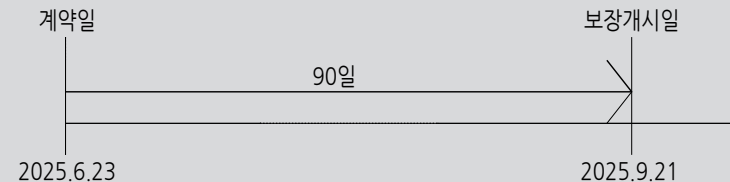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수술시)(유사암제외)(매회지급)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7. (“지역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04 기준 15개 시도 13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아주학교대병원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

- ① “서울원자력병원”이라 함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부산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9.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6.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7.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③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④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6.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7.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⑤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⑥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⑦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⑧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⑨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1.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2.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2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항암방사선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방사선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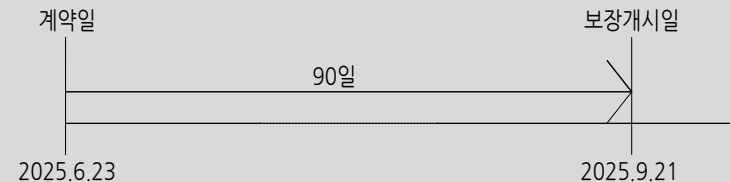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7. (“지역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04 기준 15개 시도 13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아주학교대병원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

- ① “서울원자력병원”이라 함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부산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9.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6.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7.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6.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7.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1.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2.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3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보험지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보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7. (“지역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04 기준 15개 시도 13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아주학교대병원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

- ① “서울원자력병원”이라 함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부산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9.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6.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7.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6.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7.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1.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2.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6-4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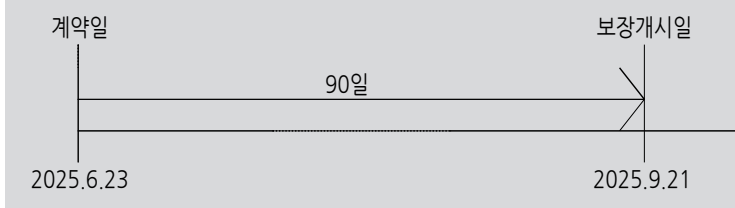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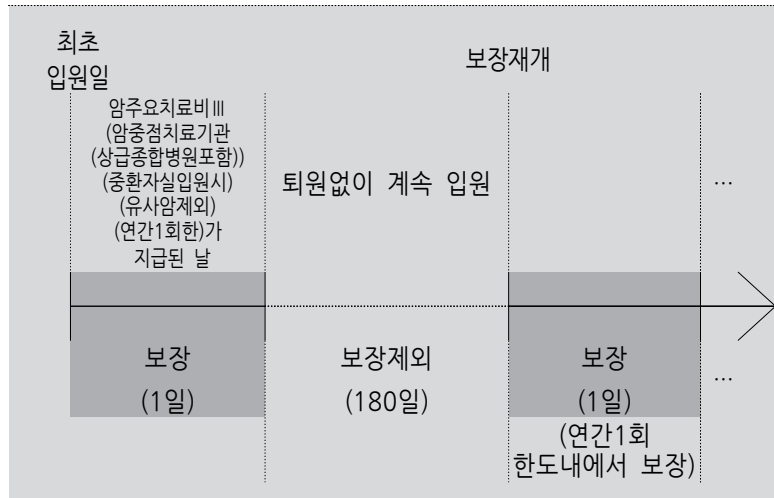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⑤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② 단, 위 ①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8. (“지역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04 기준 15개 시도 13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아주학교대병원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9.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

- ① “서울원자력병원”이라 함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부산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0.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6.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7.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8.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9.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6.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7.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8.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9.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1.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2.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7 |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세부보장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47-1.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수술시)(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 247-2.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 247-3.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 247-4.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247-1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수술시)(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수술시)(매회지급)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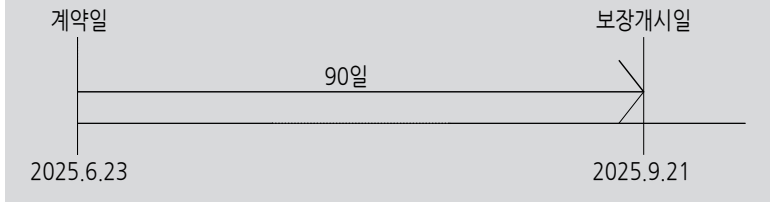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수술시)(매회지급)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9. (“지역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04 기준 15개 시도 13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아주학교대병원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

- ① “서울원자력병원”이라 함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부산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1.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8.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9.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8.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9.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3.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4.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7-2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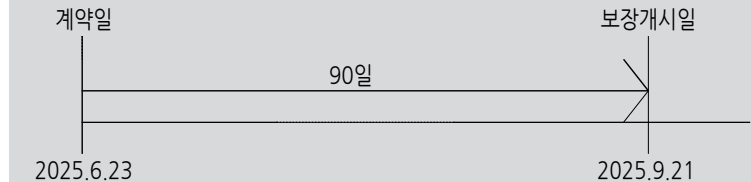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⑤ 회사가 위 ①에 따라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과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를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 지급예시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	
2025.11.1	경계성종양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제자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이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공고의 방법

9. (“지역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04 기준 15개 시도 13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아주학교대병원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

- ① “서울원자력병원”이라 함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부산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1.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8.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9.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8.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9.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7-3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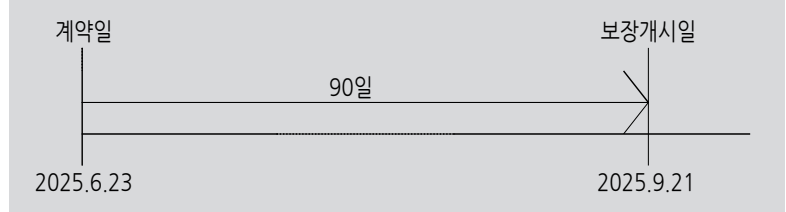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⑤ 회사가 위 ①에 따라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를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항암약물치료시)

(연간1회한) 지급예시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지급	
2025.11.1	경계성종양으로 항암약물치료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제자리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9. (“지역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04 기준 15개 시도 13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아주학교대병원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

- ① “서울원자력병원”이라 함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부산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1.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8.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9.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8.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9.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7-4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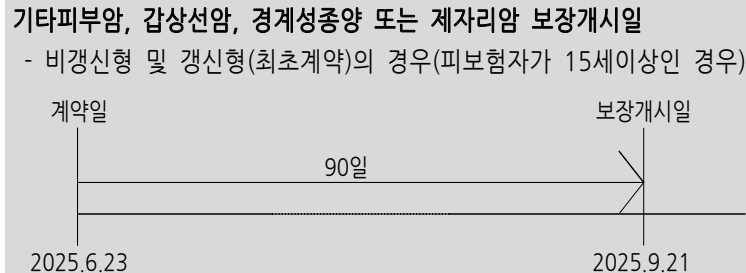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⑤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⑥ 회사가 위 ①에 따라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을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 (연간1회한) 지급예시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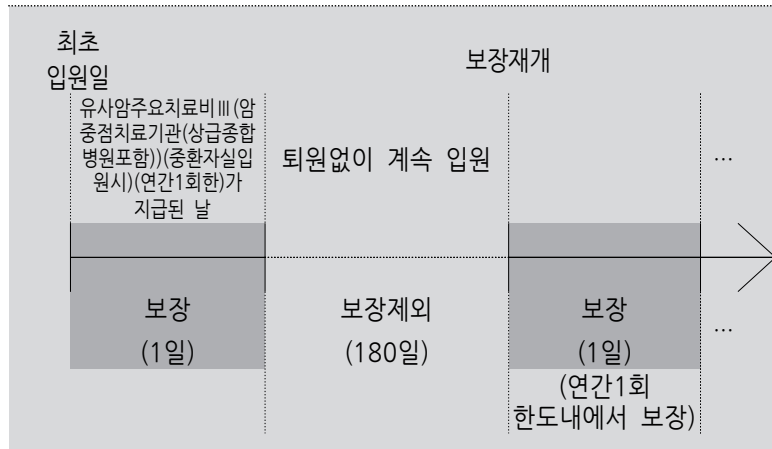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2025.10.3	기타피부암으로 중환자실입원시	지급	
2025.11.1~ 2025.11.3	경계성종양으로 중환자실입원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2026.7.3	제자리암으로 중환자실입원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② 단, 위 ①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만하여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예시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유사암주요치료비Ⅲ(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암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9.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10. (“지역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04 기준 15개 시도 13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아주학교대병원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11.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

- ① “서울원자력병원”이라 함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부산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2.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8.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9.(“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10.(“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11.(“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8.(“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9.(“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10.(“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11.(“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4.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8 |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종합병원)(연간1회한) (10년지급대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종합병원에서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순환계질환 주요치료(수술, 혈전용해치료,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특정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받은 부위 및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순환계질환(3-5종)치료비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로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동안 연간1회한 지급 (최대10회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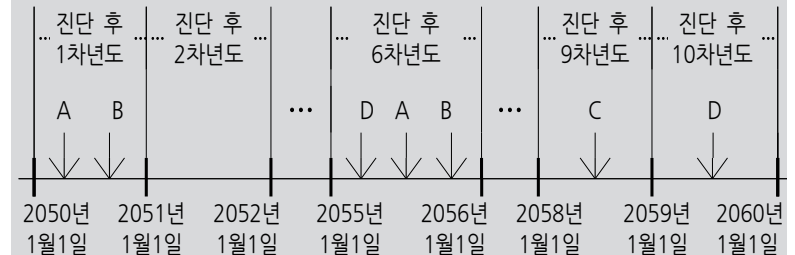
- ② 위 ①의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3-5종)”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연간”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 “순환계질환(3-5종)”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해당일(“순환계질환(3-5종)”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의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순환계질환(3-5종)치료비(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30년만기)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3년 7월 1일
- I21(급성심근경색증) 최초진단 확정일 : 2050년 1월 1일
- I63(뇌경색증)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1월 1일

A : 수술(I21)
B :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I21)
C : 혈전용해치료(I63)
D : 혈전용해치료(I21)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	진단 후 6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1,000만원	-	...	1,000만원	...	1,000만원	1,000만원

※ 2050년 1월1일 I21(급성심근경색증) 최초 진단 이후 I21(급성심근경색증) 이외의 “순환계질환(3-5종)”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50년1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로 최초 진단확정된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69) 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순환계질환 주요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라 함은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합니다.

- ①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②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 ③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은 경우
- ④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급여치료”를 받은 경우

4-1.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인용
문구**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4-2.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됩니다.

4-3.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5. (“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위 ①의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4-4. (“특정급여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급여치료”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특정급여치료 대상 수가코드」(별표45)특정급여치료 대상 수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특정급여치료”에 대해 치료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치료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의 “특정급여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특정급여치료”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용어
풀이

급여수가코드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5.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진단명, 진단코드, 수술명, 수술일자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 수술증명서, 진료비계산서, 진료기록부 등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에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급여수가코드(EDI코드 포함)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급여수가코드

급여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순환계질환(3-5종)”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26.(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보험기간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순환계질환(3-5종)”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0.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35.(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단, 보험기간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순환계질환(3-5종)”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9 |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세부보장별)(유사암제외)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49-1.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수술시)(유사암제외)(매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 249-2.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 249-3.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 249-4.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249-1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수술시)(유사암제외) (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수술시)(유사암제외)(매회지급)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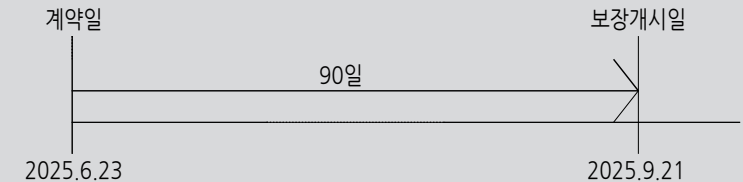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수술시)(유사암제외)(매회지급)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1. (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2-2.(보험금의 청구) ①.⑥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종합병원으로 해당 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 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⑦ 위 ⑥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⑧ 위 ⑦에 따라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위 ⑤ 및 ⑧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⑤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포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9.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9-2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 (유사암제외)(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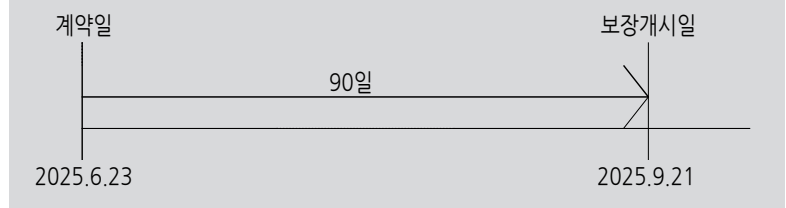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1. (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2-2.(보험금의 청구) ①.⑥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종합병원으로 해당 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 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⑦ 위 ⑥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⑧ 위 ⑦에 따라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위 ⑤ 및 ⑧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사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⑤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5.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9-3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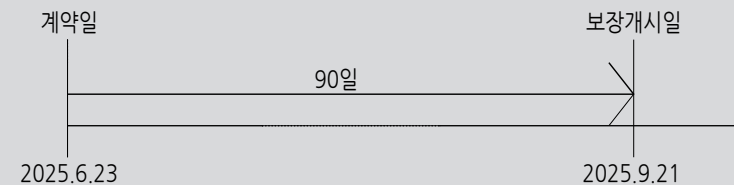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1. (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2-2.(보험금의 청구) ①.⑥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종합병원으로 해당 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 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⑦ 위 ⑥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⑧ 위 ⑦에 따라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위 ⑤ 및 ⑧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⑤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포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5.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인용
문구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6.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5.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9-4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 (유사암제외)(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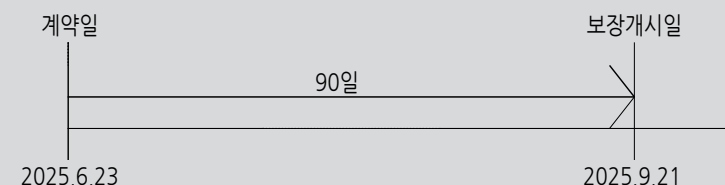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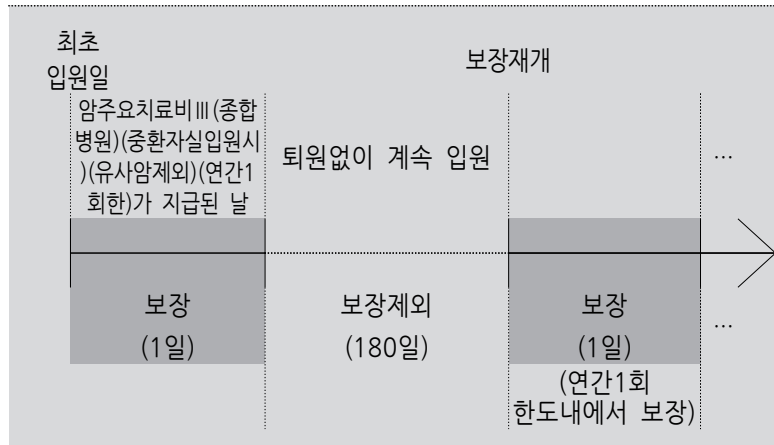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⑤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② 단, 위 ①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예시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유사암제외)(연간1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6.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6.("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0 |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세부보장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50-1.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수술시)(매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 250-2.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 250-3.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 250-4.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250-1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수술시) (매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수술시)(매회지급)로 지급합니다.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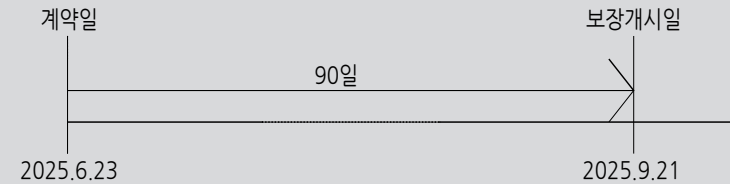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수술시)(매회 지급)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1. (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2-2.(보험금의 청구) ①,⑤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종합병원으로 해당 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 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⑦ 위 ⑥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⑧ 위 ⑦에 따라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위 ⑤ 및 ⑧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⑤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
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이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8.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7.(“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7.(“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0.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니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1.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2.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0-2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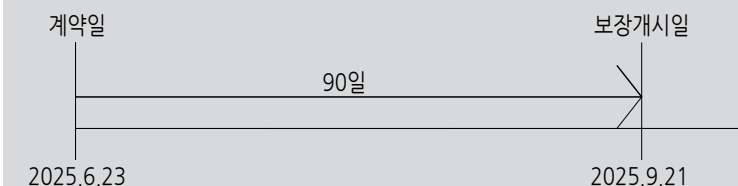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⑤ 회사가 위 ①에 따라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을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방사선치료시)(연간1회한) 지급예시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	
2025.11.1	경계성종양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제자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1. (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2-2.(보험금의 청구) ①. ⑤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종합병원으로 해당 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 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⑦ 위 ⑥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⑧ 위 ⑦에 따라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위 ⑤ 및 ⑧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⑤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8.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7.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7.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0-3 유사암주요치료비III(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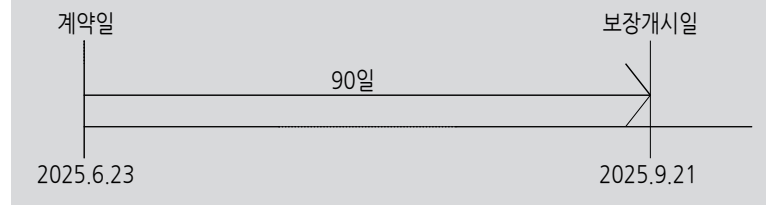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비III(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⑤ 회사가 위 ①에 따라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를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항암약물치료시)(연간1회한) 지급예시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기타피부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지급	
2025.11.1	경계성종양으로 항암약물치료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제자리암으로 항암약물치료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2-1. (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일자 예약 후, 2-2.(보험금의 청구) ①.⑤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의 「선지급 보험금」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5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은 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종합병원으로 해당 치료를 예약한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의 차액을 정산 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에 해당하는 경우
- ②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⑦ 위 ⑥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⑧ 위 ⑦에 따라 회사는 ⑤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위 ⑤ 및 ⑧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2.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⑤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 진단서, 치료 예약 확인서, 진료기록부 등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
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함)을 말합니다.

7.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8.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7.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7.(“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0-4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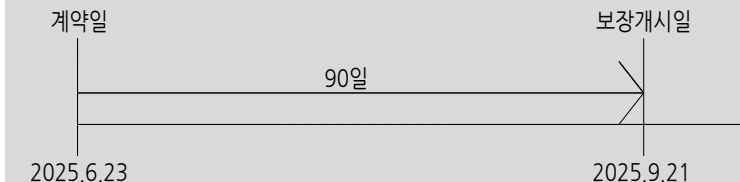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⑤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⑥ 회사가 위 ①에 따라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를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 지급예시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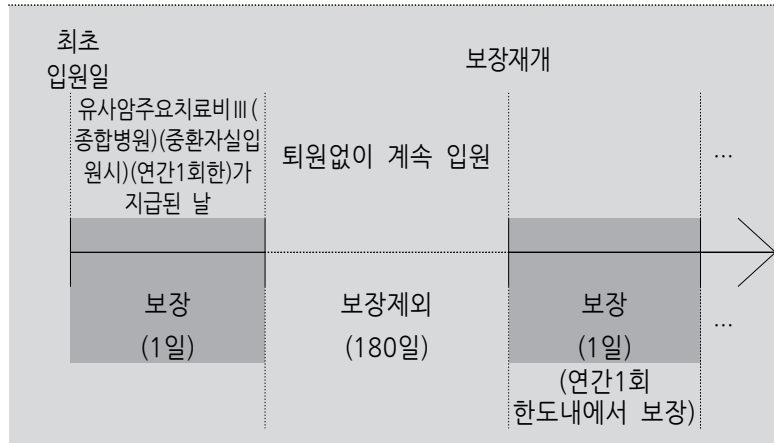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2025.10.3	기타피부암으로 중환자실입원시	지급	
2025.11.1~ 2025.11.3	경계성종양으로 중환자실입원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2026.7.3	제자리암으로 중환자실입원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② 단, 위 ①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예시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유사암주요치료비Ⅲ(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암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9.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8.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8.(“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1.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2.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3.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1 | 순환계질환(3-5종)치료비지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순환계질환(3-5종)치료비지원으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치료비지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69) 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치료비지원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2 |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세부보장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52-1.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CT,MRI,초음파,뇌파및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 252-2.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 252-3.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 252-4.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 252-5.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주요재활치료비)(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급여)(1일1회한,연간20회한)(비갱신형/갱신형)

252-1 |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CT,MRI,초음파,뇌파및뇌척수액 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거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심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4.(“급여 뇌심장질환 검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CT,MRI,초음파,뇌파및뇌척수액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4.(“급여 뇌심장질환 검사”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연, 월, 일로 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뇌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심질환”이라 함은 「뇌심질환 분류표」(별표68)뇌심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심질환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급여 뇌심질환 검사”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뇌심질환 검사”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여 ‘뇌심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급여 뇌심질환 검사 분류표」(별표69) 급여 뇌심질환 검사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뇌CT, 심장CT, 뇌MRI, 심장MRI, 심장초음파, 뇌파검사, 뇌척수액검사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행위

용어 풀이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급여 뇌심질환 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급여 뇌심질환 검사”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급여 뇌심질환 검사 분류표」(별표69) 급여 뇌심질환 검사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 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2-2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심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4.(「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연간 1회 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혈관조영술검사지원비)(뇌심장질환)(급여)(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4.(「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연, 월, 일로 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뇌심질환"의 정의 및 진단)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심질환"이라 함은 「뇌심질환 분류표」(별표68)뇌심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심질환의 진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여 "뇌심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분류표(별표72)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행위

용어
풀이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은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분류표(별표72)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 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빙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
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2-3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요양병원제외)(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 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8.(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요양병원제외)로 지급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요양병원제외)를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동일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요양병원제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의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15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예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가입시 예시1)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협심증 (I20)	2026년 9월 1일 ~ 9월30일 (30일)	2026년 9월 11일 ~ 9월 17일 (사용일수 7일, 사용금액 70만원)
뇌내출혈 (I61)	2026년 12월 1일 ~ 12월 30일 (30일)	2026년 12월 4일 ~ 12월 13일 (사용일수 10일, 사용금액 300만원)

- 협심증(I20) : 1일당 평균 1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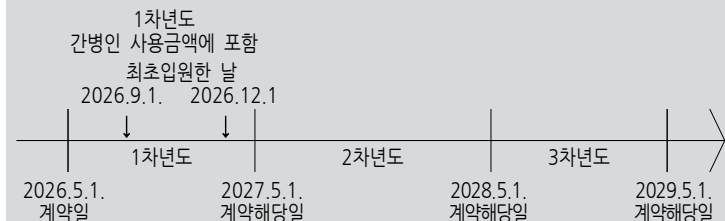
(10만원 × 7일 = 70만원)

- 뇌내출혈(I61)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10일 = 15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협심증) 70만원 + (뇌내출혈) 150만원
= 22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10만원



예시2)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급성 심근경색증 (I21)	2027년 4월 20일 ~ 5월 19일 (30일)	2027년 4월 25일 ~ 5월 14일 (사용일수 20일, 사용금액 400만원)
뇌경색증 (I63)	2027년 11월 20일 ~ 12월 19일 (30일)	2027년 11월 25일 ~ 12월 14일 (사용일수 20일, 사용금액 600만원)

입원기간 중 보험년도 변경시 최초입원한 날의 보험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함

- 급성 심근경색증(I21) : 1일당 평균 2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적용
(15만원 × 20일 =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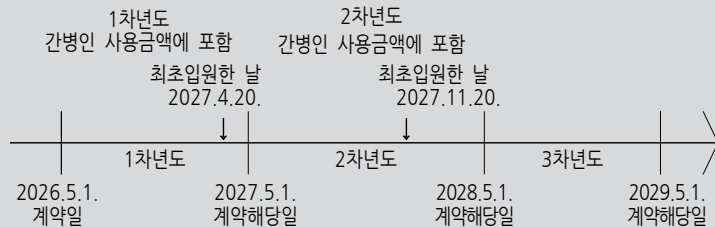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급성 심근경색증) 3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 뇌경색증(I63)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20일 = 300만원)

→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뇌경색증) 3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2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임원지원비)(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요양병원제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②에서 정한 “뇌혈관질환”과 ④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⑤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8.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용어 풀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거구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9.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8.(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2-4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요양병원)(간병인비용연간100만원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8.(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요양병원)로 지급합니다.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지급금액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5%
5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25%
7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35%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50%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보험가입금액의 75%
2,000만원 이상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요양병원)를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합니다. 한편,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동일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동일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입원지원비Ⅲ)(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요양병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라 함은 해당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최초입원한 날이 이 특별약관의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간병인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간병인 이용에 사용된 금액 외에 간병에 쓰인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의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15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 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예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 예시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가입시 예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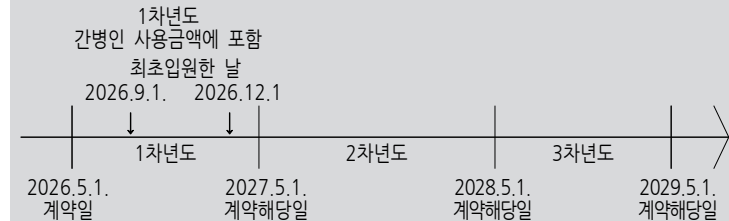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협심증 (I20)	2026년 9월 1일 ~ 9월30일 (30일)	2026년 9월 11일 ~ 9월 17일 (사용일수 7일, 사용금액 70만원)
뇌내출혈 (I61)	2026년 12월 1일 ~ 12월 30일 (30일)	2026년 12월 4일 ~ 12월 13일 (사용일수 10일, 사용금액 300만원)

- 협심증(I20) : 1일당 평균 1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0만원 적용
(10만원 × 7일 = 70만원)

- 뇌내출혈(I61)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10일 = 150만원)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협심증) 70만원 + (뇌내출혈) 150만원
= 22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10만원



예시2)

구분	입원기간	실제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급성 심근경색증 (I21)	2027년 4월 20일 ~ 5월 19일 (30일)	2027년 4월 25일 ~ 5월 14일 (사용일수 20일, 사용금액 400만원)
뇌경색증 (I63)	2027년 11월 20일 ~ 12월 19일 (30일)	2027년 11월 25일 ~ 12월 14일 (사용일수 20일, 사용금액 600만원)

입원기간 중 보험년도 변경시 최초입원한 날의 보험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에
합산함

- 급성 심근경색증(I21) : 1일당 평균 2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적용
(15만원 × 20일 = 3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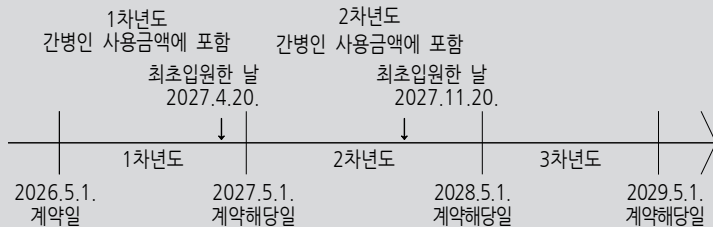
→ 1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급성 심근경색증) 3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1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 뇌경색증(I63) : 1일당 평균 30만원 사용으로 1일당 15만원 한도로 적용
(15만원 × 20일 = 300만원)

→ 2차년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 (뇌경색증) 300만원

⇒ 보험가입금액의 15% 지급, 2차년도 지급금액 : 30만원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간병인사용임원지원비)(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요양병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5.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②에서 정한 “뇌혈관질환”과 ④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⑤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요양병원”의 정의)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3호 라목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8.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용어 풀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거구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9.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하여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8.(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 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2-5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주요재활치료비)(뇌혈관질환, 허혈 심장질환)(급여)(1일1회한, 연간20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중에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이하 “입원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이하 “통원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뇌심장질환통합케어지원비(주요재활치료비)(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급여)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입원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와 “통원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를 합산하여 연간 20회한도로 보장합니다.
- ③ 위 ②의 “연간”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일자로 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②에서 정한 “뇌혈관질환”과 ④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 ③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⑤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입원” 및 “통원”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라 함은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자체 또는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 대상 수가코드」(별표63)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의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 심장질환 진단과 관련이 없는 질병, 상해로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를 받은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료확인서(“재활치료의 원인”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3 |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유사암제외)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①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 ④중환자실입원)”를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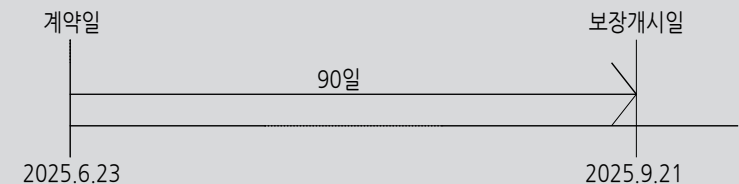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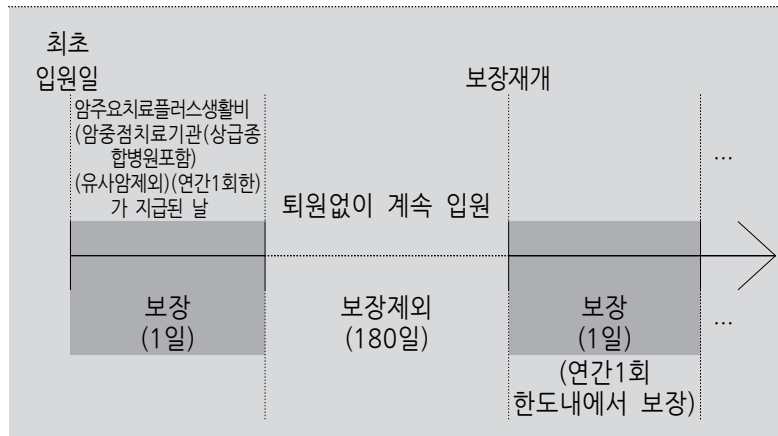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입원”의 치료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항암약물치료”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 ③ 위 ①의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가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가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위 ③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공고의 방법

7. (“지역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04 기준 15개 시도 13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아주학교대병원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

- ① “서울원자력병원”이라 함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부산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9.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6.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7.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③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④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6.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7.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⑤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⑥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⑦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⑧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⑨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1.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2.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 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엠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5.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4 |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 포함))(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받은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①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 ④중환자실입원)”의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를 지급합니다.

구분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지급금액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2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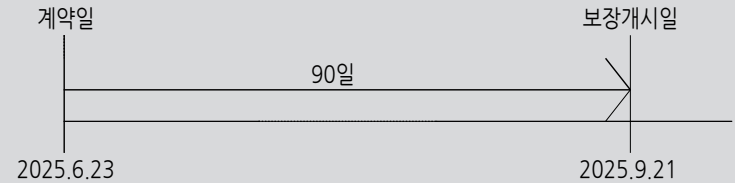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연간 암(유사암제외)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암(유사암제외)주요치료횟수” 3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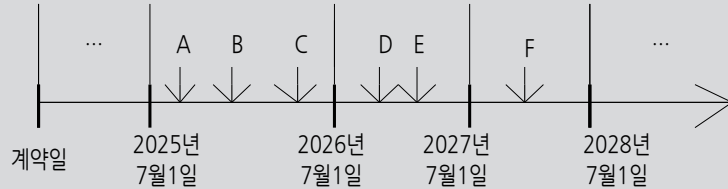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⑤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유사암제외)(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A : 암(유사암제외) 수술
B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C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D : 암(유사암제외) 수술
E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F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A : 보험금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1회)
B : 1,0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2회)
C : 5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3회)
=>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1,5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1,0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D : 보험금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1회)
E : 1,0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2회)
F : 보험금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1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입원”의 치료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의 치료 항목별 연간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주요치료 항목	산정기준
① 암(유사암제외) 수술	수술1회당
②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연간1회한
③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연간1회한
④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	연간1회한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암(유사암제외) 수술 2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0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1회,
-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 1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 4회
(2회+0회+1회+1회)

예시2)

- 암(유사암제외) 수술 0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2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2회,
-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 2회 시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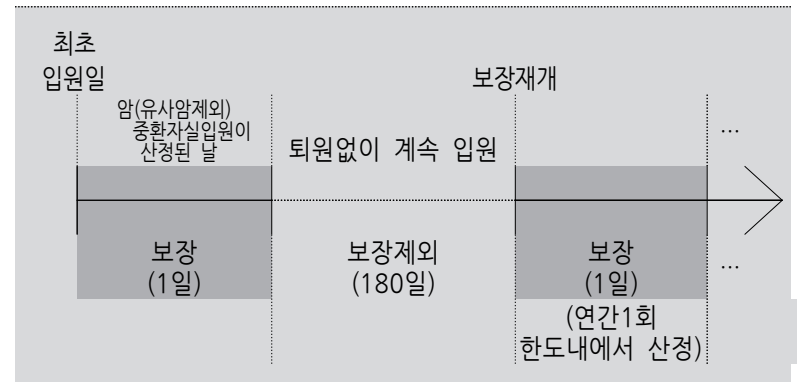
⇒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 3회
(0회+1회+1회+1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환자실입원의 경우 연간1회한으로 각각 1회로 적용

- ③ 위 ②의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④ 위 ②의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에 한하여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에 한하여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에 한하여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⑧ 위 ②의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 기준으로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산정합니다. 위 ③에 따라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가 재산정 되더라도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의 경우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⑨ 위 ⑧의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이 산정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⑩ 위 ⑨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위 ②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보험
지식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횡수산정여부 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횡수산정 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횡수산정여부 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횡수산정 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중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7. (“지역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04 기준 15개 시도 13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아주학교대병원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

- ① “서울원자력병원”이라 함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부산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9.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6.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7.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6.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7.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1.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포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2.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5.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5 |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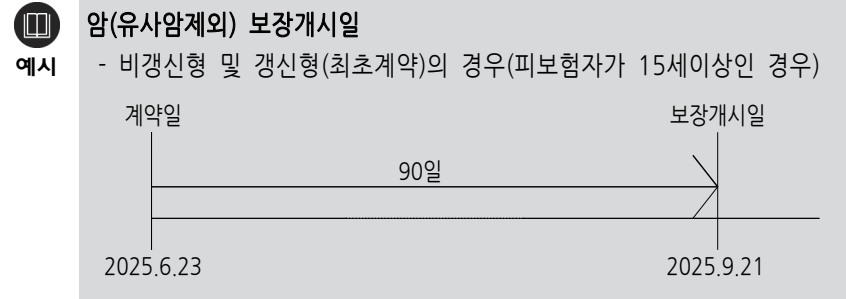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받은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①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 ④중환자실입원”의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를 지급합니다.

구분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지급금액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유사암제외)(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	2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0%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연간 암(유사암제외)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암(유사암제외)주요치료횟수”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연간 암(유사암제외)주요치료횟수” 3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암(유사암제외)주요치료횟수”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④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⑥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예시

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유사암제외)(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A : 암(유사암제외) 수술
- B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 C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 D :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치료
- E : 암(유사암제외) 수술
- F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 G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 A : 보험금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1회)
B : 1,0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2회)
C : 5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3회)
=>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1,5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1,0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D : 5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4회)
=>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2,0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 (1,5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E : 보험금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1회)
F : 1,000만원 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2회)
G : 보험금미지급(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1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라 함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입원”의 치료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의 치료 항목별 연간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주요치료 항목	산정기준
① 암(유사암제외) 수술	수술1회당
②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연간1회한
③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연간1회한
④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	연간1회한



예시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암(유사암제외) 수술 2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0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1회,
-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 1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 4회
(2회+0회+1회+1회)

예시2)

- 암(유사암제외) 수술 0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 2회,
-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 2회,
-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 2회 시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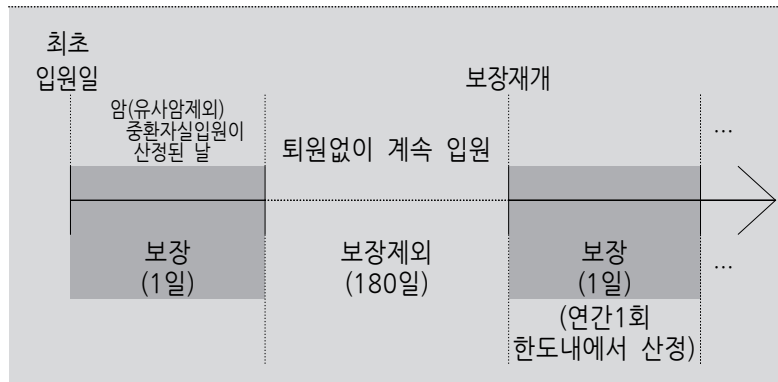
=>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 : 3회
(0회+1회+1회+1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환자실입원의 경우 연간1회한으로 각각 1회로 적용

- ③ 위 ②의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④ 위 ②의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암(유사암제외) 항암방사선치료에 한하여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암(유사암제외) 항암약물치료에 한하여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암(유사암제외)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에 한하여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⑧ 위 ②의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 기준으로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를 산정합니다. 위 ③에 따라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가 재산정 되더라도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의 경우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⑨ 위 ⑧의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연간 암(유사암제외) 주요치료횟수”이 산정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⑩ 위 ⑨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위 ②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보험
지식**



예시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횟수산정여부 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횟수산정 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횟수산정여부 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횟수산정 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보험지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암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7. (“지역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04 기준 15개 시도 13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아주학교대병원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

- ① “서울원자력병원”이라 함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부산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9.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6.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7.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5.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6.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7.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8.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1.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보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2.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 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사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엠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5.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6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하이클래스 암주요치료비Ⅱ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로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동안 연간1회한 지급 (최대10회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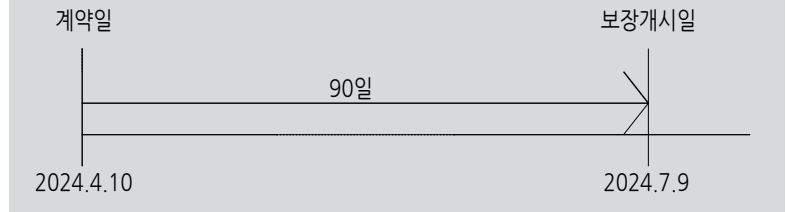
- ② 위 ①의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는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최초 진단과 상이한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도 포함합니다)를 치료하기 위한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①의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해당일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의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30년 만기)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3년 7월 1일
-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최초진단 확정일 : 2050년 1월 1일
- C32(후두의 악성신생물)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1월 1일

A : 비급여 암수술(C15)
B : 비급여 항암방사선치료(C15)
C : 전액본인부담 항암약물치료(C15)
D : 급여 일부본인부담 항암약물치료(C32)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	진단 후 6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A	B	...	D A B	...	C	D
2050년 1월1일	2051년 1월1일	2052년 1월1일	2055년 1월1일	2056년 1월1일	2058년 1월1일	2059년 1월1일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	진단 후 6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1,000만원	-	...	1,000만원	...	1,000만원	-

※ 2050년 1월1일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최초 진단 이후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이외의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50년1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보험
지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5.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에는 전액본인부담(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가 포함됩니다.
- ②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르몬 관련 치료제
 - ⑤ ① 내지 ④ 이외의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③ ①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④ ①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하여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9.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0.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1.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26.(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3.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35.(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4.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1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7 |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II(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II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비II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로 보험금 지급대상기간 동안 연간1회한 지급 (최대10회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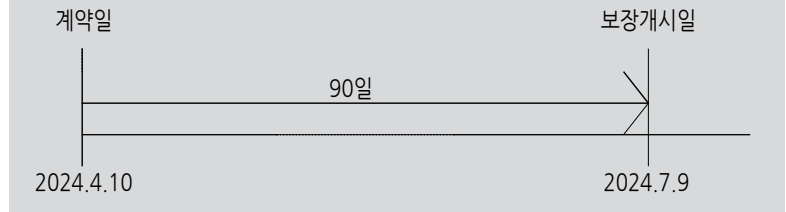
- ② 위 ①의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는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최초 진단과 상이한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도 포함합니다)을 치료하기 위한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①의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합니다.
- ⑤ 위 ①의 “연간”이라 함은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해당일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월의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진단해당일로 합니다.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비Ⅱ(연간1회한)(10년지급대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30년 만기)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3년 7월 1일
-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최초진단 확정일 : 2050년 1월 1일
- C32(후두의 악성신생물) 최초진단 확정일 : 2051년 1월 1일

A : 비급여 항암약물치료(C15)
B : 전액본인부담 항암약물치료(C15)
C : 급여 일부본인부담 항암약물치료(C15)
D : 비급여 항암약물치료(C32)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	진단 후 6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A	B	...	D A B	...	C	D
2050년 1월1일	2051년 1월1일	2052년 1월1일	2055년 1월1일	2056년 1월1일	2058년 1월1일	2059년 1월1일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차년도	...	진단 후 6차년도	...	진단 후 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1,000만원	-	...	1,000만원	...	-	1,000만원

※ 2050년 1월1일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최초 진단 이후 C15(식도의 악성신생물) 이외의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대상은 2050년1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5.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에는 전액본인부담(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비급여에 해당되는 항암약물치료가 포함됩니다.
- ②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르몬 관련 치료제
 - ⑤ ① 내지 ④ 이외의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호르몬 관련 치료제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③ ①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④ ①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6.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이 특별약관의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26.(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이 특별약관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1.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은 보통약관 35.(해약환급금)을 따릅니다. 단,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고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2.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 중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유사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1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8 | 정신질환진단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5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정신질환진단비(1군)(최초1회한)
2. 정신질환진단비(1~2군)(최초1회한)
3. 정신질환진단비(1~3군)(최초1회한)
4. 정신질환진단비(1~4군)(최초1회한)
5. 정신질환진단비(1~5군)(최초1회한)

2.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세부보장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정신질환진단비(1군)(최초1회한) 정신질환진단비(1~2군)(최초1회한) 정신질환진단비(1~3군)(최초1회한) 정신질환진단비(1~4군)(최초1회한) 정신질환진단비(1~5군)(최초1회한)	각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가입
예시

(가입 예시) 정신질환진단비(최초1회한) 가입 예시

- 최초계약의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보장별 가입금액

세부보장	예시 가입금액
정신질환진단비(1군)(최초1회한)	500만원
정신질환진단비(1~2군)(최초1회한)	400만원
정신질환진단비(1~3군)(최초1회한)	50만원
정신질환진단비(1~4군)(최초1회한)	30만원
정신질환진단비(1~5군)(최초1회한)	20만원



예시

(보장사례1) 보험금 1회 지급(첫 번째 질병 3군)인 경우

- * 1군 및 2군의 진단확정일 : "정신질환치료제" 처방 요건을 충족한 해당일
3군, 4군 및 5군의 진단확정일 : 최초 진단일과 동일

질병 최초 진단일 (진단확정일) : 3군	
24.1.1 계약일	25.6.1

- 세부보장별 지급 대상 보험금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의 100%) :
(1~3군) 50만원, (1~4군) 30만원, (1~5군) 20만원

=> 총 지급 보험금(1~3군, 1~4군, 1~5군 보험금의 합) : 100만원

- 보험금이 지급된 대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
(1~3군, 1~4군, 1~5군 세부보장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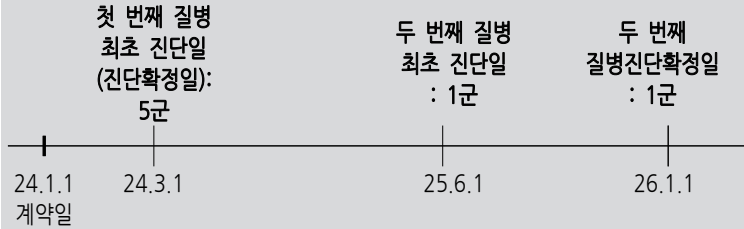
** (1군), (1~2군) 세부보장의 경우 보장책임 미소멸



예시

(보장사례2) 보험금 2회 지급(첫 번째 질병 5군, 두 번째 질병 1군)인 경우

* 1군 및 2군의 진단확정일 : "정신질환치료제" 처방 요건을 충족한 해당일
3군, 4군 및 5군의 진단확정일 : 최초 진단일과 동일



※ 질병별 보험금 지급

1) 첫 번째 질병(5군) : 20만원 지급

[(1~5군) 20만원]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

* (1군), (1~2군), (1~3군), (1~4군) 세부보장의 경우 보장책임 미소멸

2) 두 번째 질병(1군) : 980만원 지급

[(1군) 500만원, (1~2군) 400만원, (1~3군) 50만원, (1~4군) 30만원]

-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

=> 총 지급 보험금(1군,1~2군,1~3군,1~4군,1~5군 보험금의 합) : 1,000만원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4.("정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②.①을 충족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이후에 4.("정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②.②를 충족한 경우에도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정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질환'이라 함은 「정신질환 1~5군 분류표」(별표99)정신질환 1~5군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질환'의 '진단확정'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정신질환'으로 최초 진단된 경우
 - ② 위 ①의 최초진단일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받은 경우
- ③ "정신질환"의 진단은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 등의 진단기준을 근거로 정신과적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정신질환의 진단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3군 내지 5군의 정신질환의 진단확정은 위 ②.②를 적용하지 않고, 위 ②.①만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확정합니다.
- ⑤ 위 ②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최초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의 90일이상 처방이 우선적인 치료로 고려되지 않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제출 시, 위 ②.①만으로 1군 및 2군의 '정신질환'을 '진단확정'합니다.
 - ① 소아, 청소년 및 임신부
 - ② 다른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약물간 상호작용 고려해야하는 경우
 - ③ 비약물 치료가 우선적 치료로 판단되는 경우
 - ④ 약물치료 이득 대비 위험이 높은 경우(약물 부작용 등)

- ⑥ 이 계약에서 ‘정신질환치료제’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정신질환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약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의약품 분류번호 ‘100(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 중 항우울제, 항정신병약물, 항조증약물, 항불안제를 말합니다. 이때,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준하는 의약품 분류번호를 따릅니다.
- ⑦ 이 특별약관에서 ‘90일 이상 처방 받은 경우’라 함은 ‘정신질환’ 진단 후 정신질환 치료제의 총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정신질환 치료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9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경우 전문의에 의하여 작성된 소견서를 기초로 하여 인정된 효능기간을 처방일수로 합산합니다.
- ⑧ 위 ⑦의 처방일수 합산 시 「정신질환 1~5군 분류표」의 분류번호별로 합산하며, 기준일자는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은 날로 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의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9 | 정신질환입원일당(연간2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3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정신질환입원일당(1그룹)(연간20일한도)
- 정신질환입원일당(1~2그룹)(연간20일한도)
- 정신질환입원일당(1~3그룹)(연간20일한도)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에는 입원 첫날부터 입원1일당 세부보장별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입원 보장의 시작은 정신질환의 진단 확정일이 아닌 최초진단일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위 ①의 각 세부보장의 지급일수는 연간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④ 위 ③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가입 예시

(가입 예시) 정신질환입원일당(연간20일한도) 가입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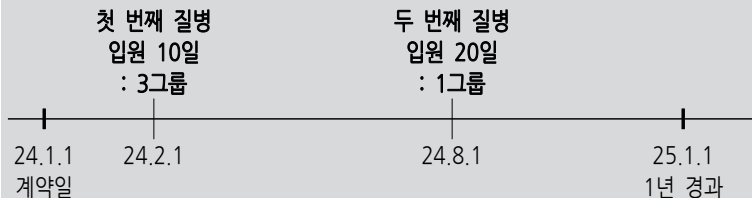
- 최초계약의 계약일 : 2024년 1월 1일
- 세부보장별 가입금액

세부보장	예시 가입금액
정신질환입원일당(1그룹)(연간20일한도)	5만원
정신질환입원일당(1~2그룹)(연간20일한도)	3만원
정신질환입원일당(1~3그룹)(연간20일한도)	2만원

예시

(사례)

- 첫 번째 질병입원 : 3그룹 입원기간(24.2.1~24.2.10), 20만원 지급
- 두 번째 질병입원 : 1그룹 입원기간(24.4.1~24.4.20), 180만원 지급



- 1차입원 20만원
20만원 = (1~3그룹) 보험가입금액(2만원) X 보장 입원일수(10일)
- 2차입원 180만원
100만원 = (1그룹) 보험가입금액(5만원) X 보장 입원일수(20일)
60만원 = (1~2그룹) 보험가입금액(3만원) X 보장 입원일수(20일)
20만원 = (1~3그룹) 보험가입금액(2만원) X 보장 입원일수(10일*)
- * 1차입원 (1~3그룹) 연간 입원일수 10일 보장하여, 잔여한도 10일 보장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4.("정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②.①을 충족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이후에 4.("정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②.②를 충족한 경우에도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정신건강의학과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2.(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세부보장 구분에 따라 각각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신건강의학과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2.(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세부보장 구분에 따라 각각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정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질환'이라 함은 「정신질환 1~3그룹 분류표」(별표116)정신질환 1~3그룹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질환'의 '진단확정'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정신질환'으로 최초 진단된 경우
 - ② 위 ①의 최초진단일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이상 처방받은 경우
- ③ "정신질환"의 진단은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 등의 진단기준을 근거로 정신과적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정신질환의 진단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2그룹 내지 3그룹의 정신질환의 진단확정은 위 ②.②를 적용하지 않고, 위 ②.①만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확정합니다.

- ⑤ 위 ②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최초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의 90일이상 처방이 우선적인 치료로 고려되지 않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제출 시, 위 ②.①만으로 1그룹의 '정신질환'을 '진단확정'합니다.
- ① 소아, 청소년 및 임신부
 - ② 다른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약물간 상호작용 고려해야하는 경우
 - ③ 비약물 치료가 우선적 치료로 판단되는 경우
 - ④ 약물치료 이득 대비 위험이 높은 경우(약물 부작용 등)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질환치료제'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정신질환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약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의약품 분류번호 '100(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 중 항우울제, 항정신병약물, 항조증약물, 항불안제를 말합니다. 이때,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준하는 의약품 분류번호를 따릅니다.
- ⑦ 이 특별약관에서 '90일이상 처방 받은 경우'라 함은 '정신질환' 진단 후 정신질환 치료제의 총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정신질환 치료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9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경우 전문의에 의하여 작성된 소견서를 기초로 하여 인정된 효능기간을 처방일수로 합산합니다.
- ⑧ 위 ⑦의 처방일수 합산 시 「정신질환 1~3그룹 분류표」의 분류번호별로 합산하며, 기준일자는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은 날로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5.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정신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풀이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외의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포함)에 의해 진단이 확정된 경우
- ⑦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진료과에 입원한 경우
- ⑧ 정신과 낮병동에 입원한 경우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0 |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연간12회한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통원 보장의 시작은 중증정신질환의 진단 확정일이 아닌 최초진단일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의 지급횟수는 통원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12회를 한도로 합니다.
- ④ 위 ③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3. (“중증정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②. ①을 충족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이후에 3. (“중증정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②. ②를 충족한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중증정신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정신질환’이라 함은 「중증정신질환 분류표」(별표160)중증정신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정신질환’의 ‘진단확정’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① ‘중증정신질환’으로 최초 진단된 경우
 - ② 위 ①의 최초진단일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를 90일 이상 처방받은 경우
- ③ “중증정신질환”의 진단은 의료법 제 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DSM-5(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5) 등의 진단기준을 근거로 정신과적 진단도구를 이용하여 내려져야 하

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중증정신질환의 진단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최초진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신질환치료제의 90일 이상 처방이 우선적인 치료로 고려되지 않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 제출 시, 위 ②. ①만으로 ‘중증정신질환’을 ‘진단확정’합니다.
 - ① 소아, 청소년 및 임신부
 - ② 다른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어 약물간 상호작용 고려해야하는 경우
 - ③ 비약물 치료가 우선적 치료로 판단되는 경우
 - ④ 약물치료 이득 대비 위험이 높은 경우(약물 부작용 등)
- ⑤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질환치료제’라 함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정신질환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약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하는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의 의약품 분류번호 ‘100(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 중 항우울제, 항정신병약물, 항조증약물, 항불안제를 말합니다. 이때,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경계 감각기관용 의약품’에 준하는 의약품 분류번호를 따릅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90일 이상 처방 받은 경우’라 함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정신질환치료제의 총 처방일수(주사 등 내복 외의 방법으로 동일한 날 2회 이상 정신질환치료제를 투여한 경우에도 처방일수 1일로 적용합니다)를 합산하여 90일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경우 전문의에 의하여 작성된 소견서를 기초로 하여 인정된 효능기간을 처방일수로 합산합니다.
- ⑦ 위 ⑥의 처방일수 합산 시 「중증정신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별로 합산하며, 기준일자는 정신질환치료제를 처방받은 날로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
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한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진다.

4.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정신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중증정신질환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정신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정신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1 |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최초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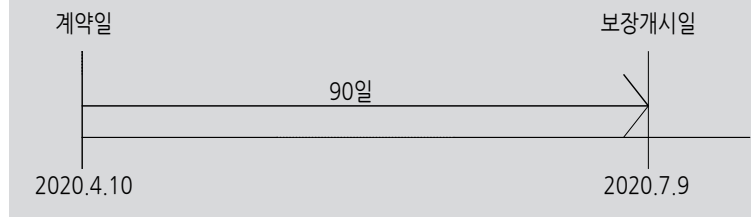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암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라 함은 ②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중입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이온을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이온은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작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심부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②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분리하여 얻은 양성자를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치료기록지 포함), 치료확인서, 항암방사선치료증명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2 |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 (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이하 “유사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유사암 주요 치료①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 ④중환자실입원”를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연간1회한)를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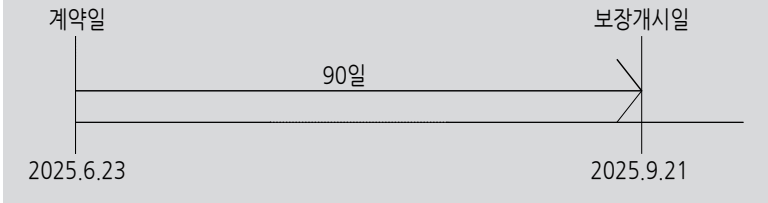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유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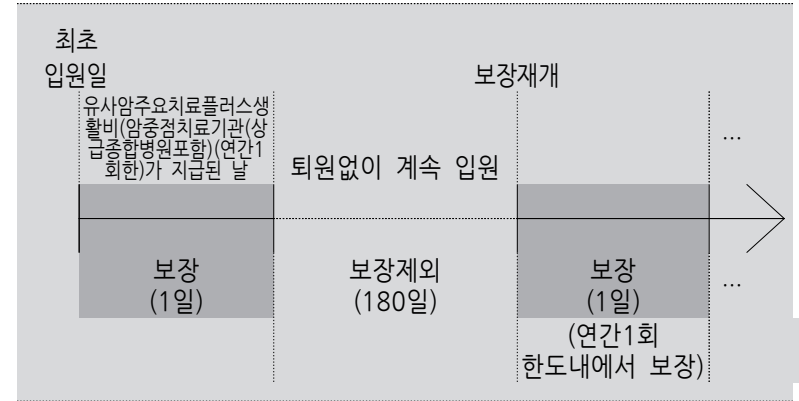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 주요치료”라 함은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입원”의 치료를 말합니다.
② 위 ①의 “유사암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연간1회한)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연간1회한)가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연간1회한)가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③ 위 ②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증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증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사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흡인(吸引)
 - 천자(穿刺) 등의 조치
 -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이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9. (“지역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04 기준 15개 시도 13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아주학교대병원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

- ① “서울원자력병원”이라 함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부산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1.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8.(“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9.(“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10.(“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7.(“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8.(“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9.(“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10.(“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3.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2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3 |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이하 “유사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받은 “유사암 주요치료(①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 ④중환자실입원)”의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를 지급합니다.

구분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지급금액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 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 급종합병원포함))(연간 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2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0%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3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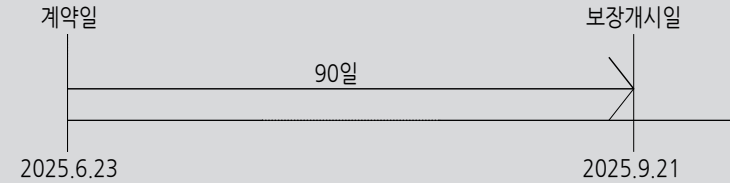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유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⑤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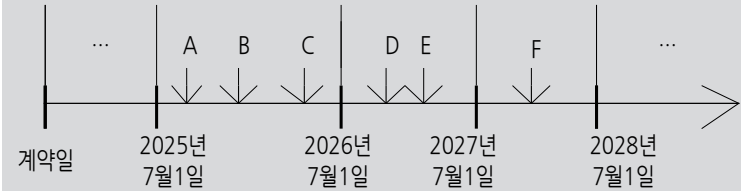


예시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A : 유사암 수술
- B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 C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 D : 유사암 수술
- E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 F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 A : 보험금미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1회)
B : 1,0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2회)
C : 5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3회)
=>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1,5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1,0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D : 보험금미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1회)
E : 1,0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2회)
F : 보험금미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1회)

특별약관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산모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 주요치료”라 함은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입원”의 치료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유사암 주요치료”의 치료 항목별 연간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주요치료 항목	산정기준
① 유사암 수술	수술1회당
②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연간1회한
③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연간1회한
④ 유사암 중환자실입원	연간1회한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유사암 수술 2회,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0회,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1회,
- 유사암 중환자실입원 1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 4회
(2회+0회+1회+1회)

예시2)

- 유사암 수술 0회,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2회,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2회,
- 유사암 중환자실입원 2회 시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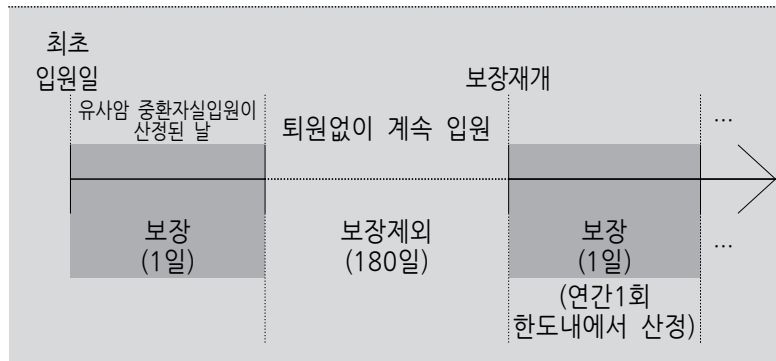
⇒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 3회
(0회+1회+1회+1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환자실입원의 경우 연간1회한으로 각각
1회로 적용

- ③ 위 ②의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를 한하여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유사암 항암약물치료를 한하여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유사암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유사암 중환자실입원에 한하여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⑦ 위 ②의 “유사암 중환자실입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 기준으로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산정합니다. 위 ③에 따라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가 재산정 되더라도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의 경우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⑧ 위 ⑦의 “유사암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이 산정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⑨ 위 ⑧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위 ②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보험
지식



예시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횟수 산정 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횟수산정 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횟수 산정 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횟수산정 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특별약관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산모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사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9. (“지역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04 기준 15개 시도 13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아주학교대병원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

- ① “서울원자력병원”이라 함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부산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1.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8.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9.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8.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9.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3.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엠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2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4 |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또는 제자리암(이하 “유사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 지역암센터, 서울원자력병원 또는 부산원자력병원에서 받은 “유사암 주요치료①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 ④중환자실입원”의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를 지급합니다.

구분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지급금액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 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 급종합병원포함))	2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 회이상)	3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0%
	4회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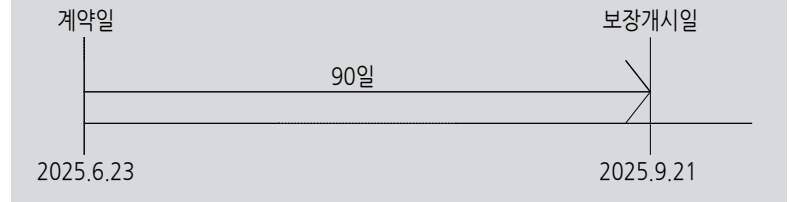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 또는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3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 받은 후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4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④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유사암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⑥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유사암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암중점치료기관(상급종합병원포함))
(연간주요치료2회,3회및4회이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A : 유사암 수술
B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C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D : 유사암 중환자실치료
E : 유사암 수술
F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G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A : 보험금미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1회)
B : 1,0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2회)
C : 5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3회)
=>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1,5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1,0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D : 5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4회)
=> 4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2,0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1,5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E : 보험금미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1회)
F : 1,000만원 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2회)
G : 보험금미지급(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1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이 특별약관에서 “유사암 주요치료”라 함은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중환자실입원”의 치료를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유사암 주요치료”의 치료 항목별 연간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주요치료 항목	산정기준
① 유사암 수술	수술1회당
②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연간1회한
③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연간1회한
④ 유사암 중환자실입원	연간1회한



예시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유사암 수술 2회,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0회,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1회,
- 유사암 중환자실입원 1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 4회
(2회+0회+1회+1회)

예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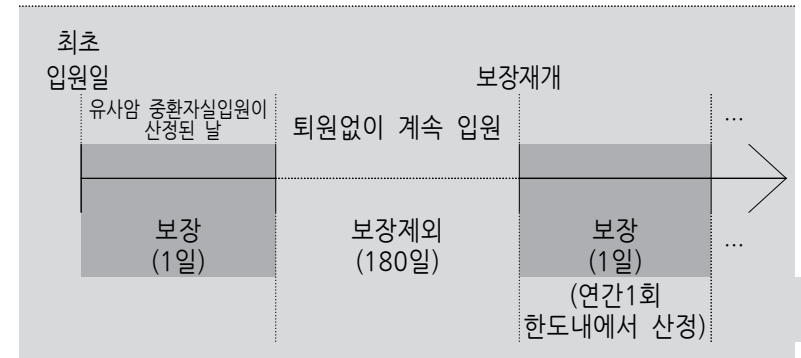
- 유사암 수술 0회,
-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 2회,
- 유사암 항암약물치료 2회,
- 유사암 중환자실입원 2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 : 3회
(0회+1회+1회+1회) :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중환자실입원의 경우 연간1회한으로 각각 1회로 적용

- 위 ②의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유사암 항암방사선치료에 한하여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유사암 항암약물치료에 한하여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유사암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유사암 중환자실입원에 한하여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위 ②의 “유사암 중환자실입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 기준으로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를 산정합니다. 위 ③에 따라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가 재산정 되더라도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의 경우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 ⑦의 “유사암 중환자실입원”은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연간 유사암 주요치료횟수”이 산정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위 ⑧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위 ②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보험
지식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횡수 산정 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횡수산정 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횡수 산정 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횡수산정 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사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8.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 따라 설립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①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한다.
- ② 국립암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국립암센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9. (“지역암센터”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지역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에서 정한 지역암센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암관리법 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지역암센터 지정 현황

2026.04 기준 15개 시도 13개 지역암센터

지역암센터(병원)			
전북	전북대학교병원	강원	강원대학교병원
광주 전남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충북	충북대학교병원
경남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부산	부산대학교병원	인천	가천대학교길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경기	아주학교대병원
대구 경북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충남	단국대학교병원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

- ① “서울원자력병원”이라 함은 서울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말합니다. 단,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부산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부산에 위치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만을 의미하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이라 함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에 따라 정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 ①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하 “의학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의학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의학원은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의학원은 그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의학원에는 이사장과 원장 1명씩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의학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학원에 이사회를 둔다.
- ⑦ 원장은 의학원을 대표하고, 의학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⑧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의3(분원 또는 부설기관)

의학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 또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11.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8.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9.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 “국립암센터”제도, “지역암센터”제도, “서울원자력병원”제도 또는 “부산원자력병원” 제도의 변경으로 7.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8. (“국립암센터”의 정의)의 “국립암센터”, 9. (“지역암센터”의 정의)의 “지역암센터” 또는 10.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의 정의)의 “서울원자력병원” 및 “부산원자력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3.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1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신생아중환자실”이라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2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5 |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5.(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에 정한 금액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지급기준	지급금액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 ② 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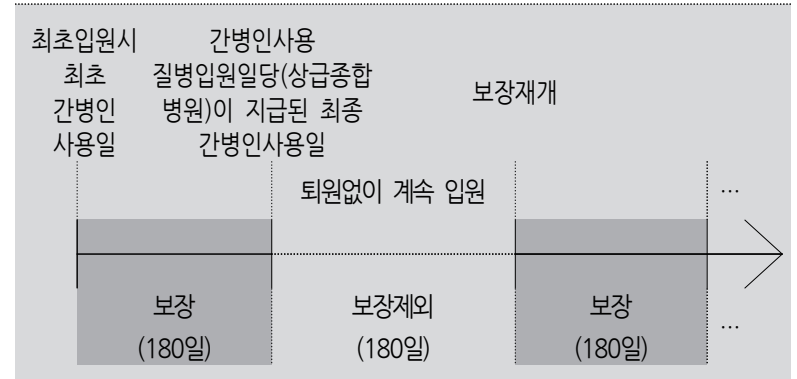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 보장사례 (가입금액 2만원 기준)

- 입원기간 : 2021년 10월 1일 ~ 10월 30일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2021년 10월 11일 ~ 10월 17일 (사용일수 7일), 총77만원
(1일당 평균 11만원 사용, 7만원 이상에 해당)
→ 가입금액(2만원) × 7일 = **14만원 지급**
 - 2021년 10월 21일 ~ 10월 24일 오전, 10월 24일 오후,
10월 25일 오후 ~ 10월 27일 (사용일수 7일), 총42만원
(1일당 평균 6만원 사용, 7만원 미만에 해당)
→ 가입금액(2만원) × 50% × 7일 = **7만원 지급**
- => 총 지급 보장금액 : 14만원 + 7만원 = 21만원**

- ②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③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최종 간병인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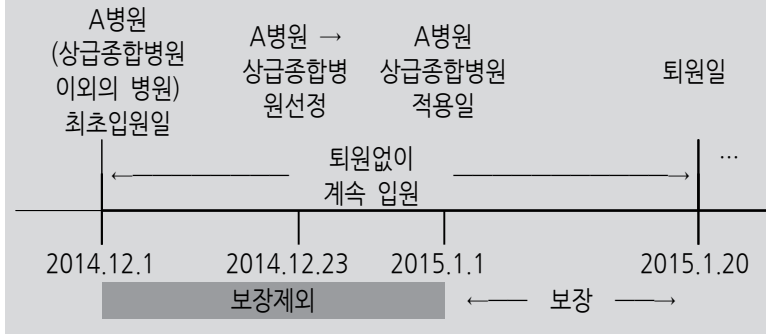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6.(“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6.(“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6.(“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보험
지식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경우 보장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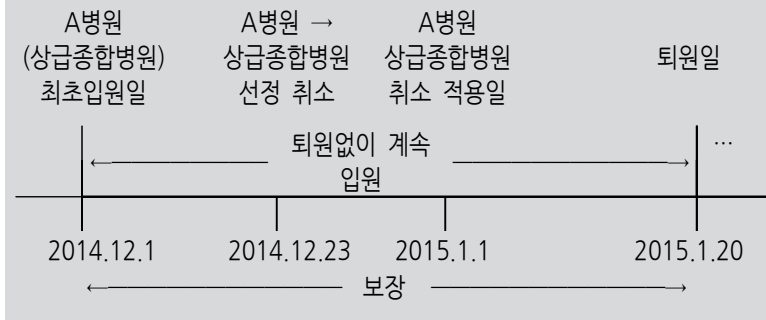


-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6.("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위 ② 및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을 보장합니다.



보험
지식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보장예시



- ⑩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⑫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성병
 -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⑦ 정상분만, 초과질환
- ③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상급종합병원)(1일이상180일한도)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
약관

상
해

질
병

질
병
및
상
해

비
용
손
해

배
상
책
임

산
모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①의 사업자는 간병 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위 ①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간병인의 주요업무 예시

용어
풀이

침대 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 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6.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6.("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입원개시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6.("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5.(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가. 간병인 사용 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나.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 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⑥ 회사는 간병인과 피보험자와의 관계 및 간병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6 |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주요치료 2회및3회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순환계질환주요치료①수술, ②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③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④중환자실입원(중환병원)”의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가 2회이상인 경우 연간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를 지급합니다.

구분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지급금액
순환계질환(3-5종) 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 (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2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3회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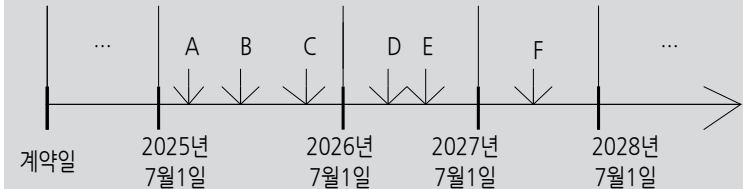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2회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3회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플러스생활비(연간주요치료2회및3회이상) 지급예시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기준)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A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B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C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D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E :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중환병원)
F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 A : 보험금미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1회)
B : 1,000만원 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2회)
C : 500만원 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3회)
=> 3회이상에 해당하는 보험금(1,500만원) 중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1,000만원)을 차감하고 지급
D : 보험금미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1회)
E : 1,000만원 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2회)
F : 보험금미지급(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1회)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순환계질환주요치료”라 함은 아래의 치료를 말합니다.
 - ①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수술”
 - ②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 ③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 ④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서 시행되는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순환계질환(3-5종)”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순환계질환주요치료”의 치료 항목별 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주요치료 항목	산정기준
① 순환계질환(3-5종) 수술	수술1회당
②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연간1회한
③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연간1회한
④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	연간1회한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2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0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1회,
-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 1회 시행한 경우

⇒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 4회
(2회+0회+1회+1회)

예시2)

- 순환계질환(3-5종) 수술 0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2회,
-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2회,
-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 2회 시행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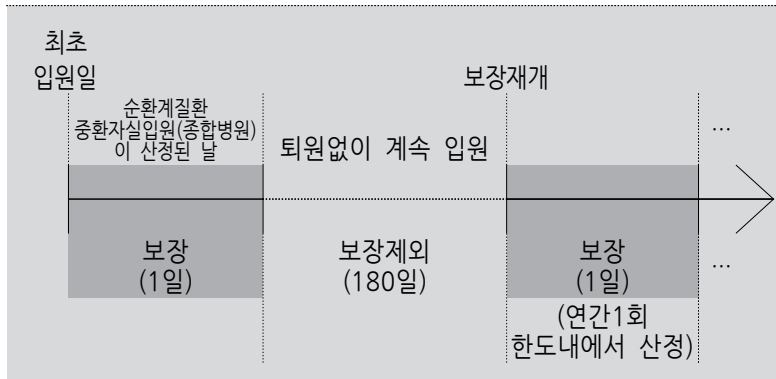
⇒ 연간 순환계질환주요치료횟수 : 3회
(0회+1회+1회+1회) :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의 경우 연간 1회한으로 각각 1회로 적용

- ③ 위 ②의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순환계질환(3-5종)으로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을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뇌혈관질환)에 한하여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순환계질환(3-5종)으로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를 받은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순환계질환(3-5종) 혈전용해치료(심혈관,기타)에 한하여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순환계질환(3-5종)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에도 주요치료 항목 중 순환계질환(3-5종) 중환자실입원(종합병원)에 한하여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⑦ 위 ②의 “중환자실입원(중합병원)”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 기준으로 “연간 순환계질환(3-5종) 주요치료횟수”를 산정합니다. 위 ③에 따라 “연간 순환계질환(3-5종) 주요치료횟수”가 재산정 되더라도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에 대한 입원의 경우 재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⑧ 위 ⑦의 “중환자실입원(중합병원)”은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에 대한 입원이라도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에 산정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연간 순환계질환 주요치료횟수”이 산정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⑨ 위 ⑧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위 ②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보험
지식



예시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횟수산정여부 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횟수산정 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횟수산정여부 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횟수산정 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인정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불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인정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보
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69)
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순
환계질환(3-5종)” 중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176-1)순환계
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순환계질환(3-5종)” 중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
(별표176-2)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 ④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
게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
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
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
(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
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
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
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
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
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
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
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8.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는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9.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8.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8.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7 |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10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두경부암)
2.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위, 식도암)
3.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소장, 대장, 항문및기타암)
4.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간, 담낭, 담도및췌장암)
5.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 중피성및연조직암)
6.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골, 피부등전신부위암)
7.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유방, 비뇨기관, 부신및내분비선암)
8. (남성의 경우)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남성생식기암)
(여성의 경우)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여성생식기암)
9.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뇌, 중추신경계통암)
10.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혈액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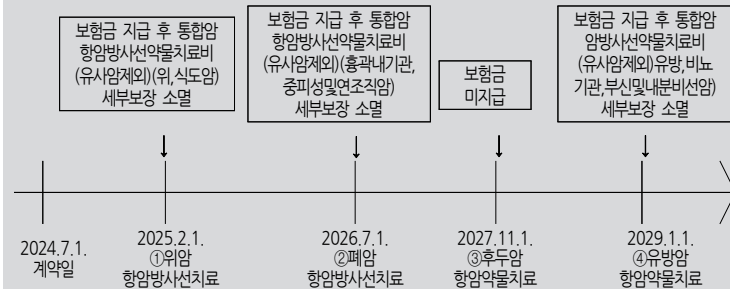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각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최초로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로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두경부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위, 식도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 (소장, 대장, 항문및기타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 (간, 담낭, 담도및췌장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 (흉곽내기관, 중피성및연조직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 (골, 피부등전신부위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 (유방, 비뇨기관, 부신및내분비선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남성의 경우)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 (남성생식기암) (여성의 경우)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 (여성생식기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 (뇌, 중추신경계통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사암제외)(혈액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보험금 지급 예시



- 2025.2.1. 진단확정된 위암(C16)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유사암제외)(위·식도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 2026.7.1. 진단확정된 폐암(C34)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종피성및연조직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 2027.11.1. 진단확정된 후두암(C32)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미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 치료비(유사암제외)(흉곽내기관,종피성및연조직암) 세부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 2029.1.1. 진단확정된 유방암(C50)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유사암제외)(유방·비노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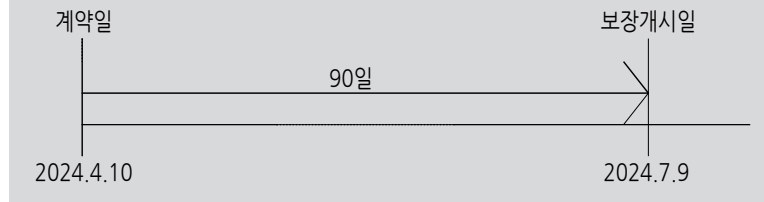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통합암(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두경부암」, 「위·식도암」, 「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 「간·담낭·담도및췌장암」, 「흉곽내기관,종피성및연조직암」, 「골·피부등전신부위암」, 「유방·비노기관,부신및내분비선암」,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암」,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 「뇌·중추신경계통암」 및 「혈액암」 10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위 ①의 「두경부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1> “두경부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①의 「위·식도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2> “위·식도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①의 「소장·대장·항문및기타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3> “소장·대장·항문 및 기타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위 ①의 「간·담낭·담도및췌장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4> “간·담낭·담도 및 췌장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6] 위 1의 「흉곽내기관, 중피성및연조직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5> “흉곽내기관·중피성 및 연조직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7] 위 1의 「골·피부등전신부위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6>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8] 위 1의 「유방·비뇨기관, 부신및내분비선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7> “유방·비뇨기관·부신 및 내분비선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9] 위 1의 「남성생식기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8>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10] 위 1의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8>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11] 위 1의 「뇌, 중추신경계통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9> “뇌 및 중추신경계통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12] 위 1의 「혈액암」이라 함은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별표154) 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10> “혈액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보험지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13]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14] 위 [13]에 따른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1]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2]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통합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보노, 헬릭스, 셀레니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8 |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7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소화기관 전이암)
2.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간,담낭,담도및췌장 전이암)
3.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 전이암)
4.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골,피부등전신부위 전이암)
5.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 전이암)
6. (남성의 경우)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남성생식기 전이암)
(여성의 경우)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여성생식기 전이암)
7.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뇌,중추신경계통 전이암)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1.(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세부보장별 각각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최초로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로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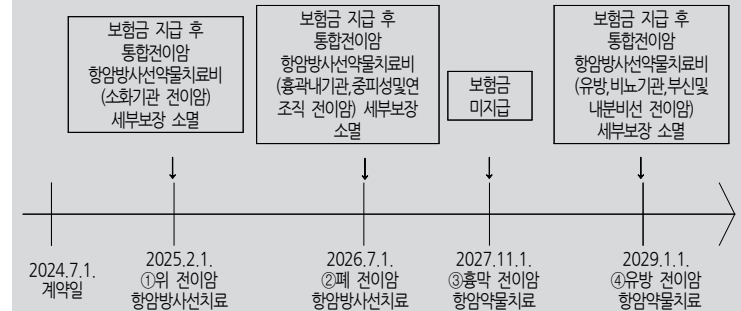
세부보장 구분	지급금액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소화기관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간,담낭,담도및췌장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골,피부등전신부위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남성의 경우)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남성생식기 전이암) (여성의 경우)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여성생식기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뇌,중추신경계통 전이암)	해당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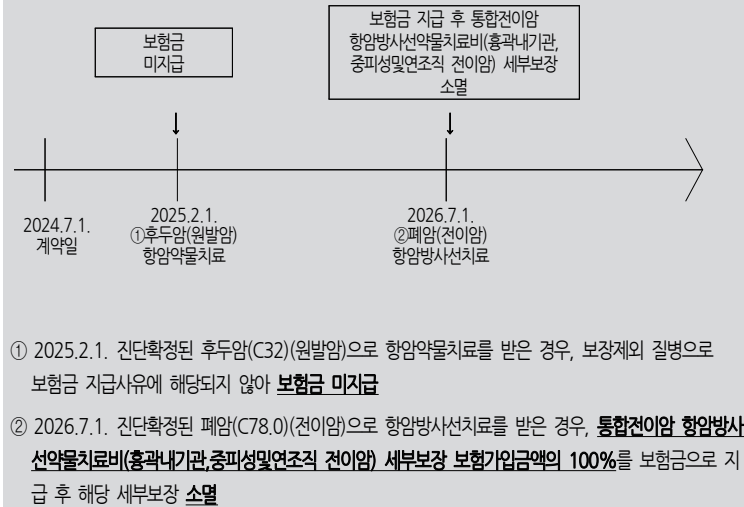
보험금 지급 예시

예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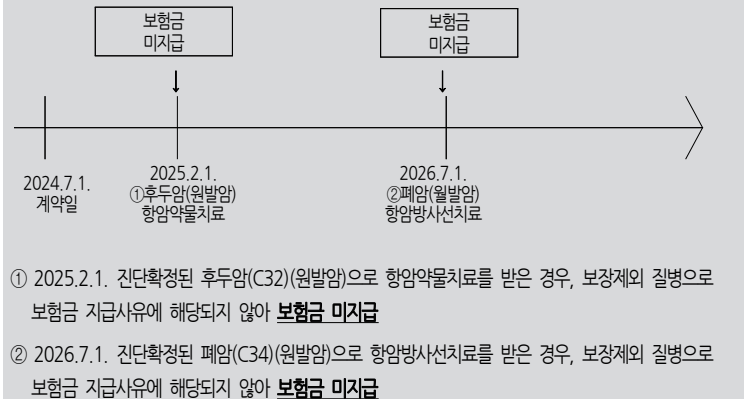


- ① 2025.2.1. 진단확정된 위 전이암(C78.80)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소화기관 전이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 ② 2026.7.1. 진단확정된 폐 전이암(C78.0)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 전이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 ③ 2027.11.1. 진단확정된 흉막 전이암(C78.2)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미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 전이암) 세부보장이 소멸되었으므로 **보험금 미지급**
- ④ 2029.1.1. 진단확정된 유방 전이암(C79.80)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의 경우, **통합전이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 전이암)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보험금으로 지급 후 해당 세부보장 소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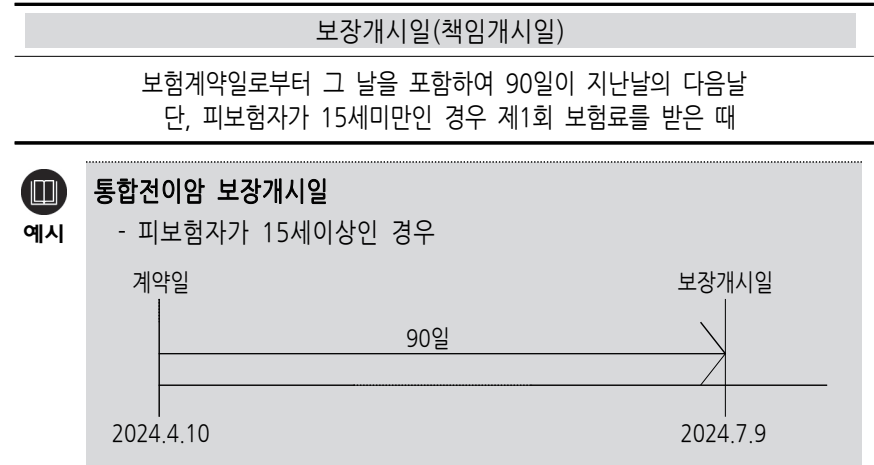
예시2)



예시3)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4.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기간 동안 『제도성 특별약관 [4.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의 2.(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①에도 불구하고 “특정 신체부위”이외에서 발생한 암이 “특정 신체부위”로 전이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제도성 특별약관 [4.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위 ②를 적용합니다.

4. (“통합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합전이암”이라 함은 ② 내지 ⑨에서 정한 「소화기관 전이암」, 「간·담낭·담도및췌장 전이암」,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 전이암」, 「골·피부등전신부위 전이암」, 「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 전이암」,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암 전이암」,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 전이암」 및 「뇌·중추신경계통 전이암」, 7개의 세부보장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소화기관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1> “위암 및 식도암의 전이암”과 <세부보장 - 2>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간·담낭·담도및췌장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3>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흉곽내기관·중피성및연조직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4> “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골·피부등전신부위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5>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유방·비뇨기관·부신및내분비선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6> “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별약관에서 「남성생식기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7>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이 특별약관에서 「여성생식기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7>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⑨ 이 특별약관에서 「뇌·중추신경계통 전이암」이라 함은 「통합전이암 분류표」(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참조)의 <세부보장 - 8>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의 전이암”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⑩ “통합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합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⑪ 위 ⑩에 따른 “통합전이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통합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통합전이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통합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통합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6.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통합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7.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9 | 유사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 중 최초로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각각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④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위 ③ 및 ④에 따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암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각각 진단받고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아 유사암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를 각 1회씩 총 4회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0 | 비급여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2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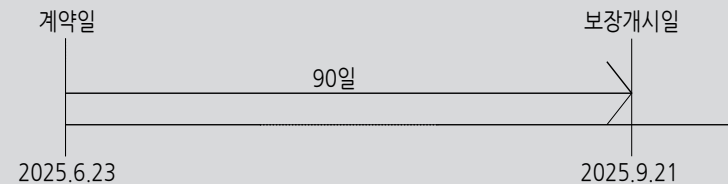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 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에서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 항목별 대상질병” 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⑤ 위 ①에서 정한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의 연간 총 지급액은 2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지급횟수	지급금액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제외)	수술당	5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	수술당	1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연간1회한	1,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연간1회한	2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연간1회한	1,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연간1회한	2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연간1회한	1,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연간1회한	200만원

비급여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 ⑥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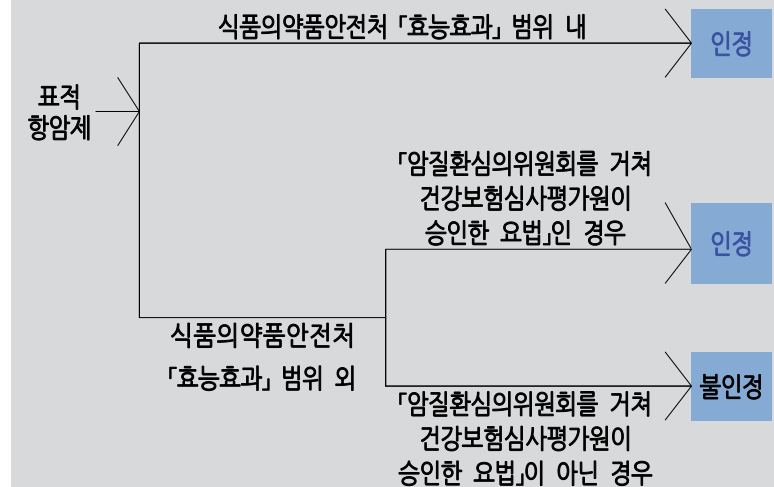
구 분		대상질병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전액본인부담포함) (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제외)	암(특정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	특정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비급여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는 치료 항목 구분별로 각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③ 4.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의 정의)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라 함은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되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9.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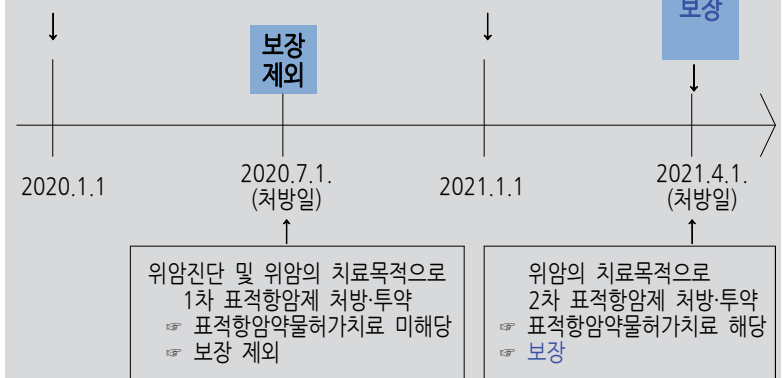
· 의약품 품목허가

-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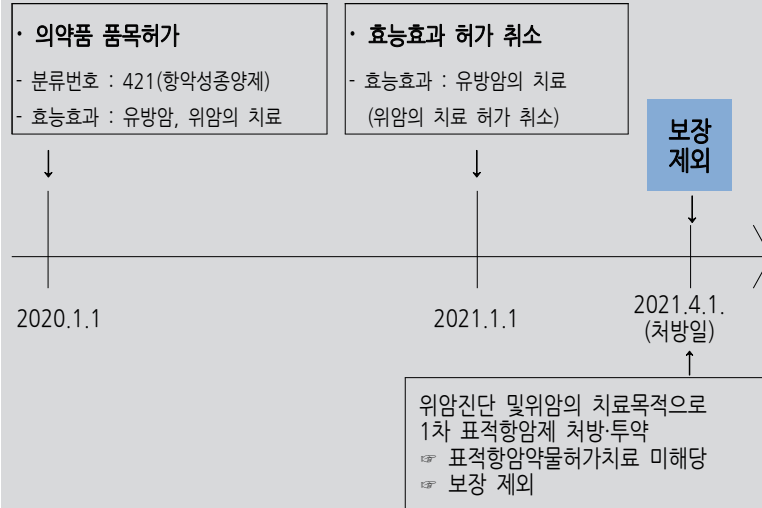
· 효능효과 추가 허가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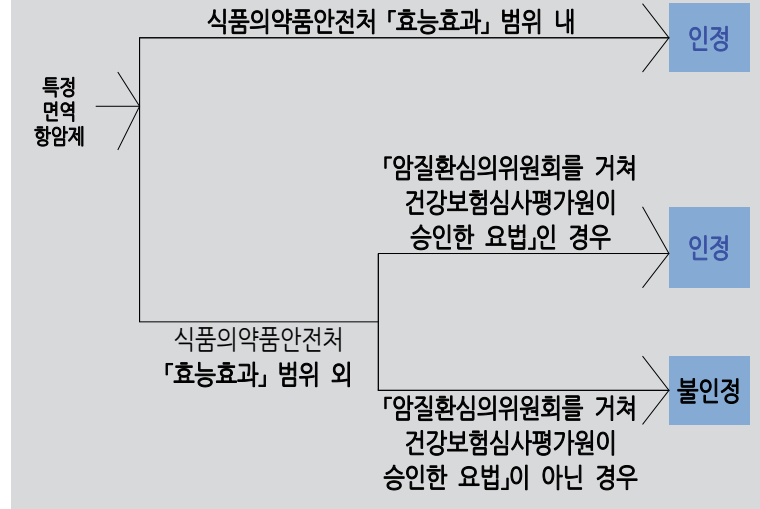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는 특정면역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특정면역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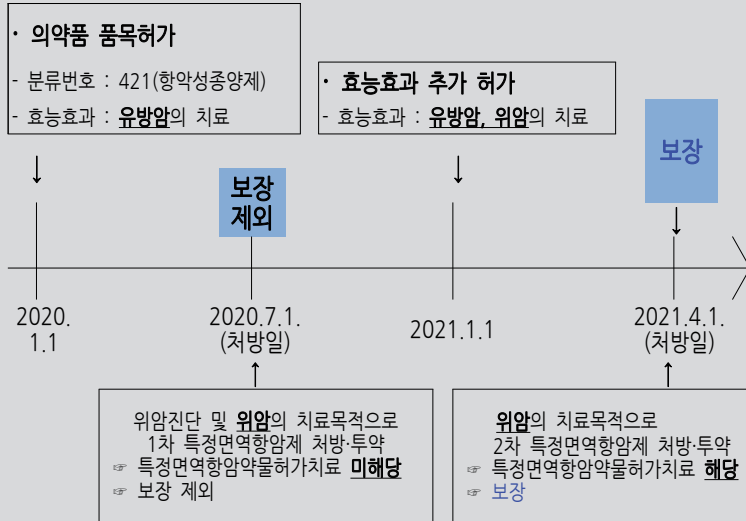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⑤ 4.("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의 정의)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라 함은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되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0. ("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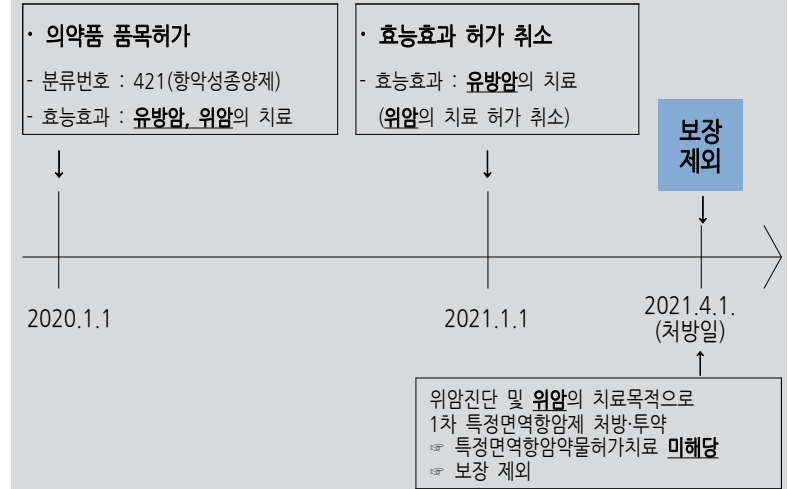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암”이라 함은 ③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④에서 정한 “전립선암”을 말하며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암제외)”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④에서 정한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⑦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②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③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⑧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위 ⑧에 따른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이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과 같습니다.

- ① “암(특정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제외)”을 받은 경우
- ②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을 받은 경우
- ③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 ④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
- 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 ⑥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
- ⑦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 ⑧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

- ②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에는 아래에서 정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르몬 관련 치료제
 - ⑤ ① 내지 ④ 이외의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①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④ ①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⑤ ①.①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제외)” 및 ①.②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은 7. (“다빈치로봇 암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암수술 중 ③ 및 ④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①.③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①.④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8.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중 ③ 및 ④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⑦ ①.⑤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①.⑥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9.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중 ③ 및 ④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⑧ ①.⑦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①.⑧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10. (“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중 ③ 및 ④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아노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다빈치로봇 암수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다빈치로봇암수술”이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 중 다빈치(da Vinci) 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수가코드	행위명
QZ966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①



용어
풀이

다빈치로봇암수술

다빈치로봇암수술이란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통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② ①에서 정의하는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③ 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 ④ ①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과 동일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8.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6.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9.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38】(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6.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②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위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면역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예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중 아래의 3가지에 해당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특정면역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①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 ②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 ③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용어
풀이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란 암세포 또는 T세포의 표면에 발현되어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는데 이용하는 면역세포의 표면 단백질인 PD-1, PD-L1, CTLA-4 등의 면역관문(immune checkpoint)을 차단함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란 항암제에 특정 암세포의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링커(Linker)로 접합하여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 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백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에 반응하는 특이적인 키메라항원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면역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특정면역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12】(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6.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②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면역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위①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1.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가.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의 경우 :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포함

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경우 : 항암방사선치료기록지, 진료비세부내역서 포함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에서 수가코드(EDI코드 포함) 및 질병분류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수가코드(EDI코드 포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수가코드

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 ③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경우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 ㅁ. 급여적용여부
 - ㅂ. 비급여 약제 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 이내 사용근거 및 소견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④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경우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 ㅁ. 급여적용여부
 - ㅂ. 비급여 약제 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 이내 사용근거 및 소견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⑤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 내지 ⑥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2.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1 | 비급여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5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 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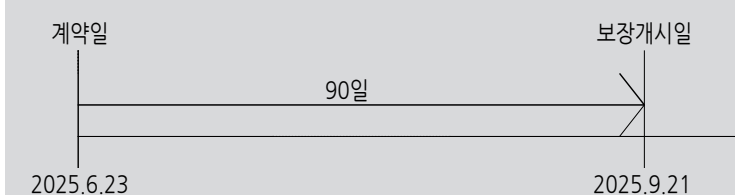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④ 위 ①에서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 항목별 대상질병”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지급횟수	지급금액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건강보험공단 부담)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제외)	수술당	75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	수술당	15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연간1회한	2,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연간1회한	4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연간1회한	2,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연간1회한	4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연간1회한	2,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연간1회한	400만원

구 분	대상질병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제외)	암(특정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	특정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⑤ 위 ①에서 정한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의 연간 총 지급액은 5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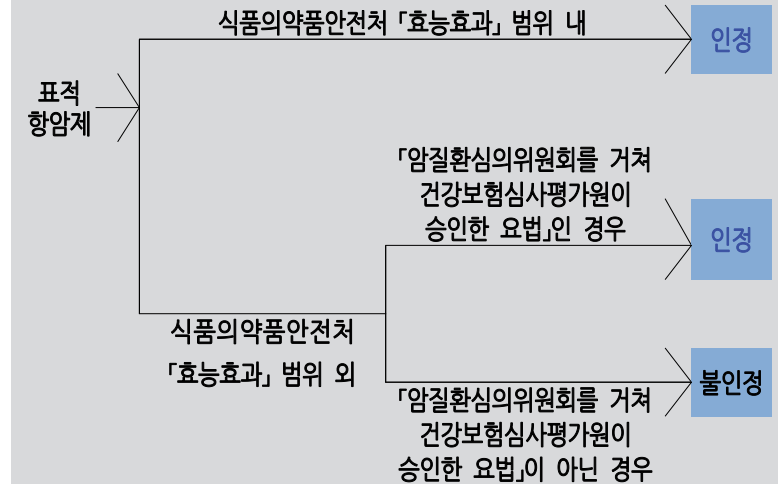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비급여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는 치료 항목 구분별로 각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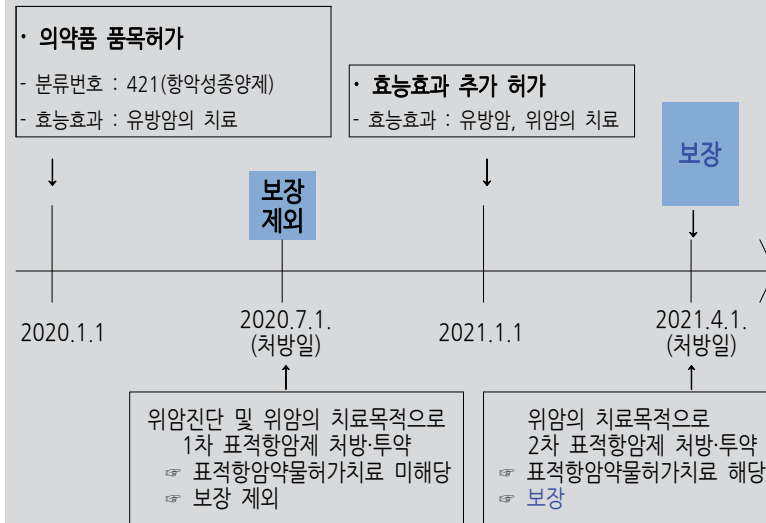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③ 4.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의 정의)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라 함은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되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9.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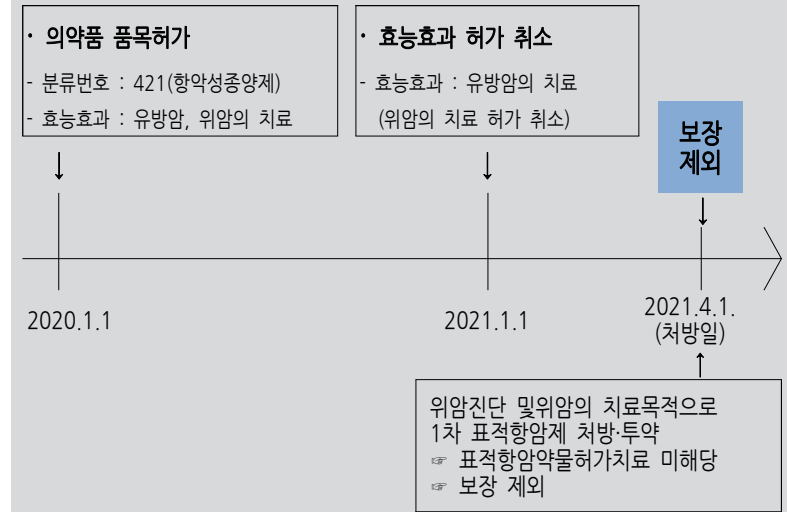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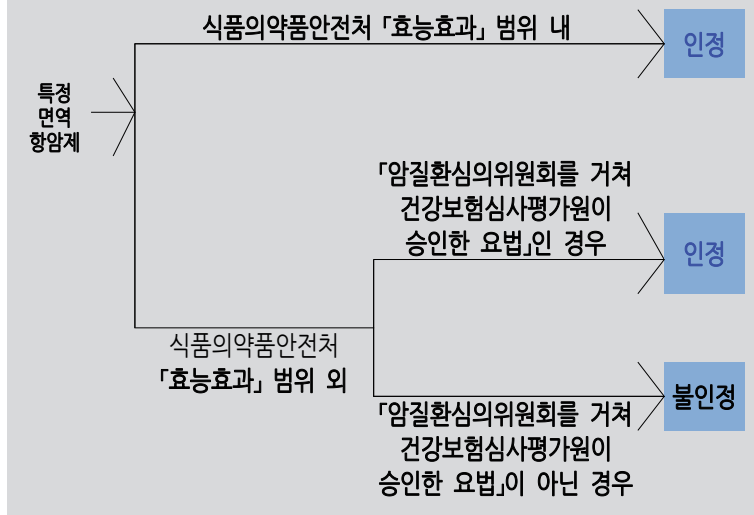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는 특정면역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 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면역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용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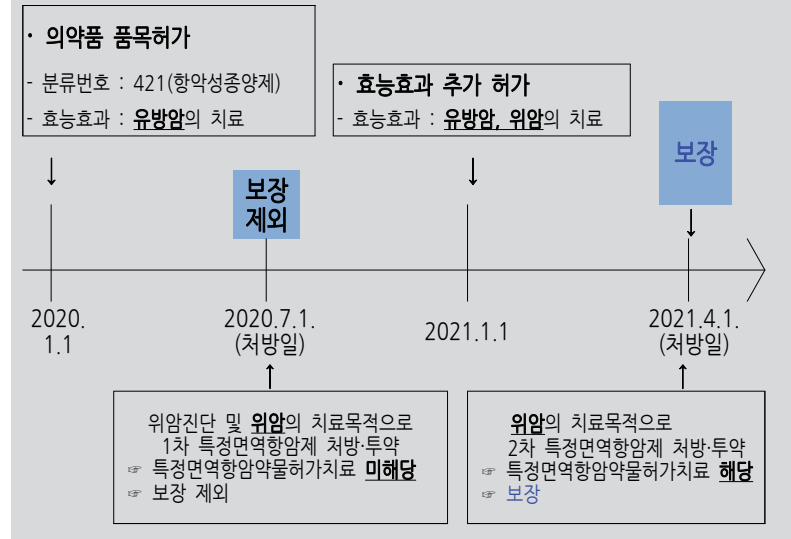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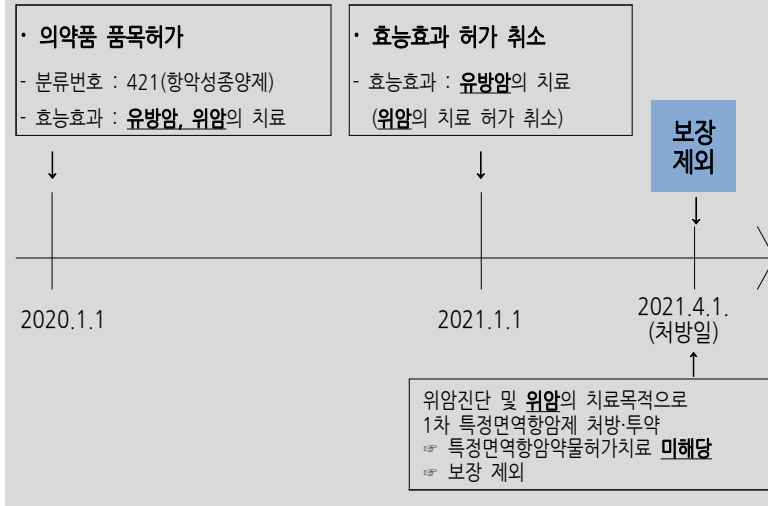


- ⑤ 4.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의 정의)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라 함은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되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0. (“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암”이라 함은 ③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④에서 정한 “전립선암”을 말하며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암제외)”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④에서 정한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⑦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②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③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⑧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위 ⑧에 따른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 이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과 같습니다.
- ① “암(특정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제외)”을 받은 경우
 - ②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을 받은 경우
 - ③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 ④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
 - 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 ⑥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
 - ⑦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 ⑧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

- ②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에는 아래에서 정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르몬 관련 치료제
 - ⑤ ① 내지 ④ 이외의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①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④ ①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⑤ ①.①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제외)” 및 ①.②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제외)”은 7. (“다빈치로봇 암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암수술 중 ③ 및 ④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①.③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①.④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8.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중 ③ 및 ④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⑦ ①.⑤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①.⑥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9.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중 ③ 및 ④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⑧ ①.⑦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①.⑧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10. (“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중 ③ 및 ④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스,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다빈치로봇 암수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다빈치로봇 암수술”이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 중 다빈치(da Vinci) 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수가코드	행위명
QZ966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

	다빈치로봇암수술
용어 풀이	다빈치로봇암수술이란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통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② ①에서 정의하는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 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③ 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 ④ ①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과 동일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8.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6.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9.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38】(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6.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②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위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면역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예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중 아래의 3가지에 해당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특정면역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①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 ②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 ③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용어
풀이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란 암세포 또는 T세포의 표면에 발현되어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는데 이용하는 면역세포의 표면 단백질인 PD-1, PD-L1, CTLA-4 등의 면역관문(immune checkpoint)을 차단함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란 항암제에 특정 암세포의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링커(Linker)로 접합하여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 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벡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에 반응하는 특이적인 키메라항원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면역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특정면역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12】(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6.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②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약품 제 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로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면역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위①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1.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가.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의 경우 :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포함
 - 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경우 : 항암방사선치료기록지, 진료비세부내역서 포함
-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에서 수가코드(EDI코드 포함) 및 질병분류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수가코드(EDI코드 포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수가코드

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 ③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경우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ㅁ. 급여적용여부
ㅂ. 비급여 약제 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 이내 사용근거 및 소견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④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경우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ㄱ. 진단명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 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ㅁ. 급여적용여부
ㅂ. 비급여 약제 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 이내 사용근거 및 소견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⑤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 내지 ⑥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2.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2 | 비급여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 (연간8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 항목별 대상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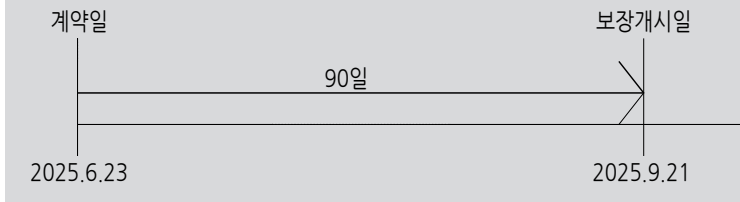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비급여암주요치료 (전액본인부담포함)	구 분	지급횟수	지급금액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제외)	수술당	1,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	수술당	2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연간1회한	3,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연간1회한	6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연간1회한	3,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연간1회한	6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연간1회한	3,000만원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연간1회한	600만원

④ 위 ①에서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 항목별 대상질병” 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질병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제외)	암(특정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 (특정암)	특정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⑤ 위 ①에서 정한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의 연간 총 지급액은 8천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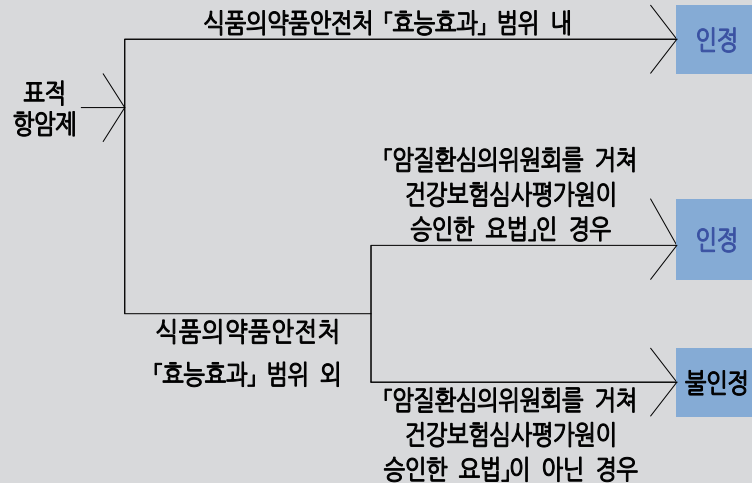
① 비급여암주요치료비(전액본인부담포함)는 치료 항목 구분별로 각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는 표적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표적항암제가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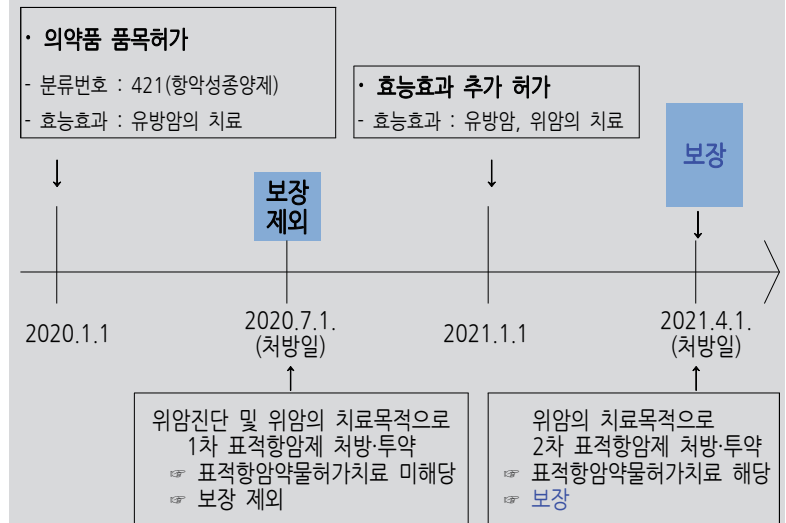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③ 4.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의 정의)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라 함은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되는 “표적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9.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용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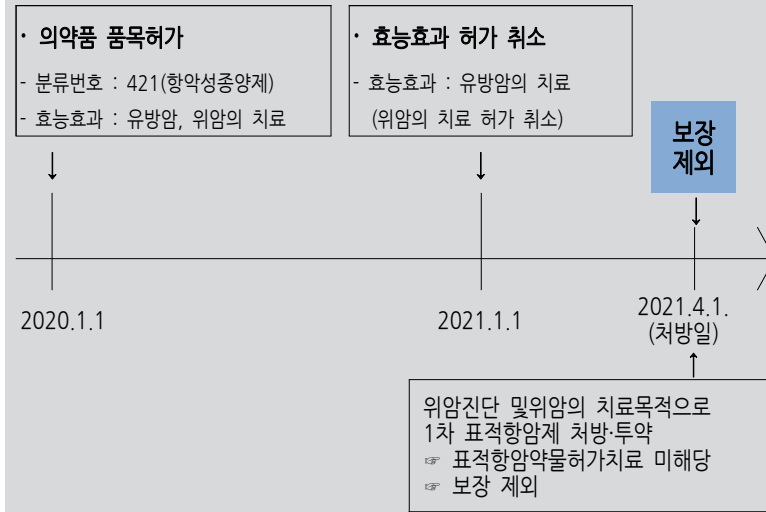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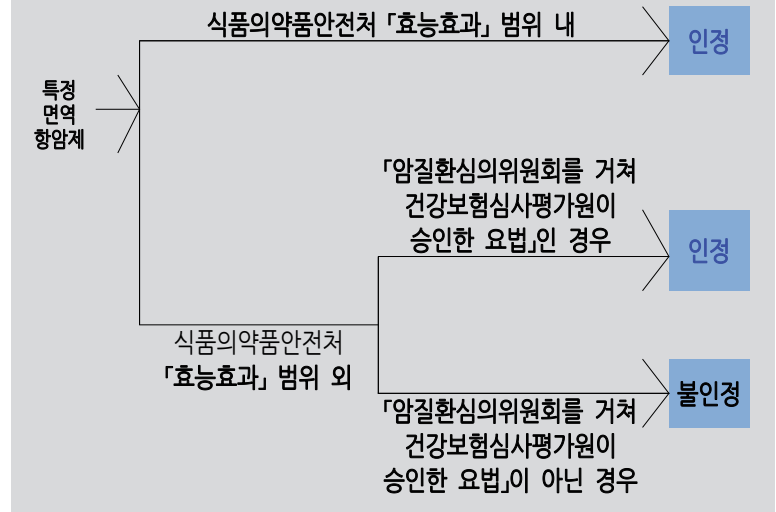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는 특정면역항암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면역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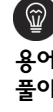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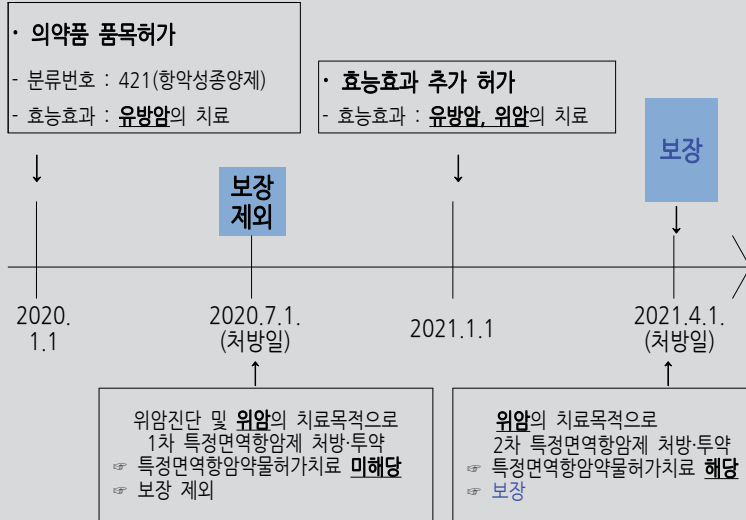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⑤ 4.("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의 정의)에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라 함은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되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10. ("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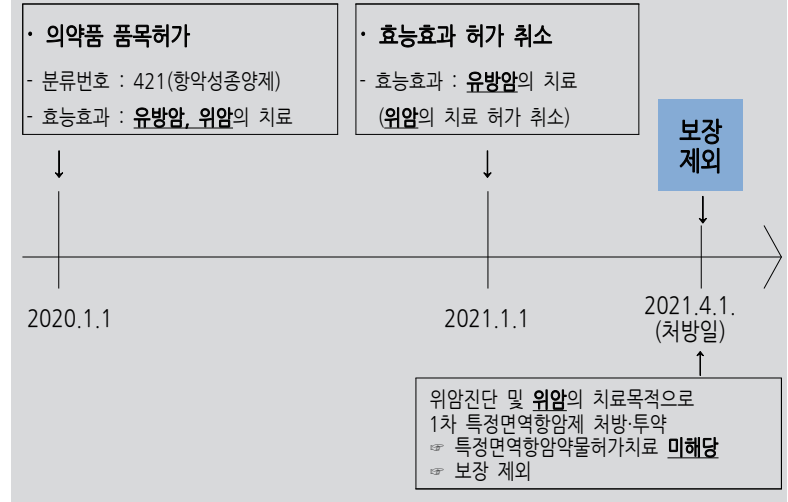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산모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암”이라 함은 ③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④에서 정한 “전립선암”을 말하며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에서 “암(특정암제외)”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갑상선암” 및 ④에서 정한 “전립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⑦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②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③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또한,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⑧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위 ⑧에 따른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4.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이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과 같습니다.
- ① “암(특정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제외)”을 받은 경우
 - ②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을 받은 경우
 - ③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 ④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
 - 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 ⑥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
 - ⑦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를 받은 경우
 - ⑧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를 받은 경우

- ②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에는 아래에서 정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면역력 강화 치료
 - ③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호르몬 관련 치료제
 - ⑤ ① 내지 ④ 이외의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와 관련이 없는 각종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①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④ ①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⑤ ①.①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제외)” 및 ①.②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은 7. (“다빈치로봇 암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암수술 중 ③ 및 ④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①.③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①.④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8.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 중 ③ 및 ④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⑦ ①.⑤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①.⑥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9.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중 ③ 및 ④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⑧ ①.⑦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①.⑧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10. (“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중 ③ 및 ④의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질병및상해

비용손해

배상책임

산모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7. (“다빈치로봇 암수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다빈치로봇암수술”이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 중 다빈치(da Vinci) 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수가코드	행위명
QZ966	로봇 보조 수술[시술시 소요재료 포함] - 다빈치 기기 da Vinci①



용어
풀이

다빈치로봇암수술

다빈치로봇암수술이란 암(특정암제외) 및 특정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통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② ①에서 정의하는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 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③ 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제1항의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릅니다.
- ④ ①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다빈치로봇 암수술”과 동일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8.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6.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9.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표적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38】(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6.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②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위 ①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면역항암제”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중 아래의 3가지에 해당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특정면역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①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 ②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 ③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용어
풀이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란 암세포 또는 T세포의 표면에 발현되어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는데 이용하는 면역세포의 표면 단백질인 PD-1, PD-L1, CTLA-4 등의 면역관문(immune checkpoint)을 차단함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란 항암제에 특정 암세포의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링커(Linker)로 접합하여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 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백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에 반응하는 특이적인 키메라항원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호르몬 관련 치료제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면역항암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2년 5월 기준 특정면역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12】(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6.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②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면역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위①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1.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가.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다빈치로봇암수술(특정암)의 경우 :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포함
 - 나.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경우 : 항암방사선치료기록지, 진료비세부내역서 포함
- 단,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에서 수가코드(EDI코드 포함) 및 질병분류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험금 청구시 수가코드(EDI코드 포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용어
풀이

수가코드

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 ③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경우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 ㅁ. 급여적용여부
 - ㅂ. 비급여 약제 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 이내 사용근거 및 소견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④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및 비급여(전액본인부담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경우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ㄱ. 진단명
 - ㄴ.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ㄷ.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ㄹ.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사용 여부
 - ㅁ. 급여적용여부
 - ㅂ. 비급여 약제 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 이내 사용근거 및 소견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⑤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⑥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 내지 ⑥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2.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비급여암주요치료(전액본인부담포함)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특정암제외)”, “특정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3 | 슬림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5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슬림형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슬림형암주요치료)		지급횟수	지급금액
①암수술	암(유사암제외)수술비	수술당	1,000만원
②항암방사선치료	암(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연간1회한	1,000만원
③항암약물치료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암(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연간1회한)	연간1회한	1,000만원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암(유사암제외)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 (연간1회한)	연간1회한	100만원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이하 ‘유사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슬림형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슬림형유사암주요치료)		지급횟수	지급금액
⑤유사암수술	유사암수술비	수술당	200만원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연간1회한	200만원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	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	연간1회한	200만원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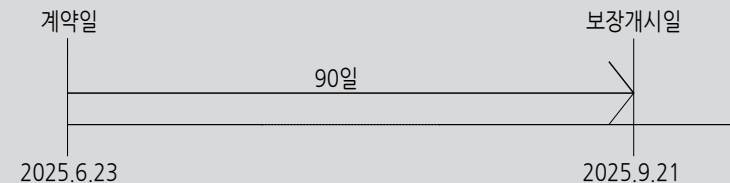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예시

슬림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5천만원한도)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⑤ ① 및 ②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슬림형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슬림형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의 **전체 연간 총 지급액은 5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위 ① 및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⑦ 회사가 위 ② “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보험금을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회사가 위 ② “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보험금을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지급예시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	
2025.11.1	경계성종양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제자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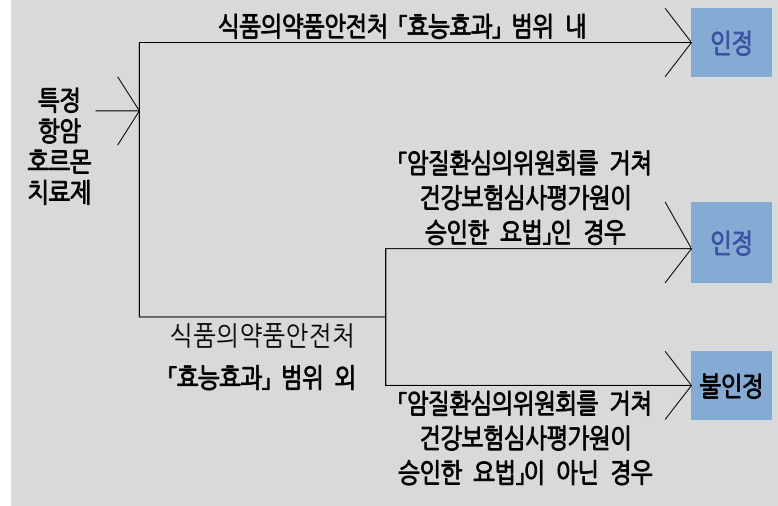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슬림형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슬림형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 항목 구분별로 각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중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 ④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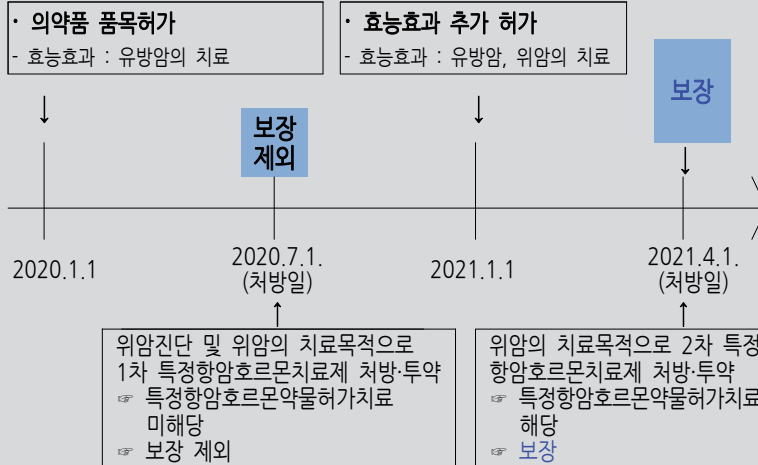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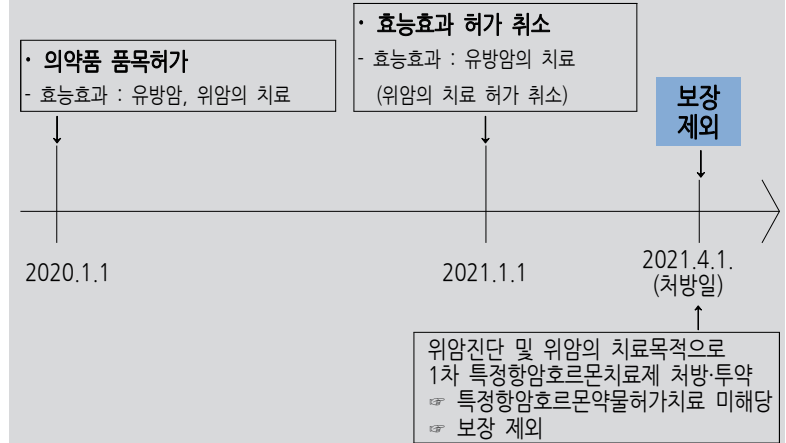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 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10.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10.(“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4 | 슬림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7천만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슬림형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슬림형암주요치료)		지급횟수	지급금액
①암수술	암(유사암제외)수술비	수술당	2,000만원
②항암방사선치료	암(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연간1회한	2,000만원
③항암약물치료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암(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연간1회한)	연간1회한	2,000만원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암(유사암제외)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연간1회한	200만원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이하 ‘유사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슬림형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슬림형유사암주요치료)		지급횟수	지급금액
⑤유사암수술	유사암수술비	수술당	400만원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연간1회한	400만원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	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	연간1회한	4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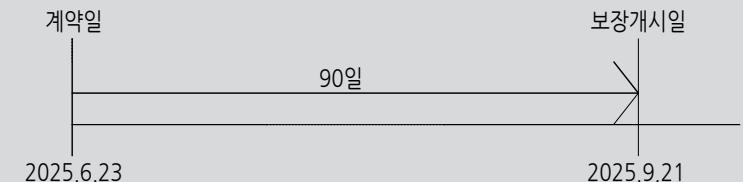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슬림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7천만원한도)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 ⑤ ① 및 ②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슬림형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슬림형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의 **전체 연간 총 지급액은 7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위 ① 및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⑦ 회사가 위 ② “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보험금을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회사가 위 ② “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보험금을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지급예시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	
2025.11.1	경계성종양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제자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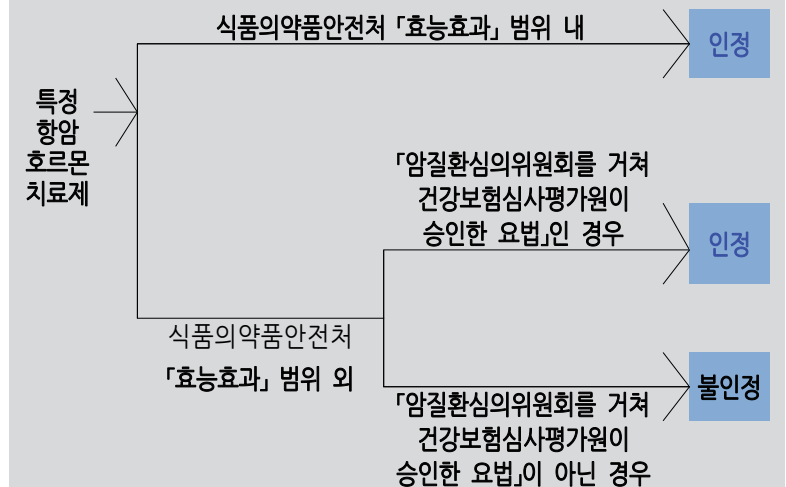
- ①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슬림형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슬림형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 항목 구분별로 각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 ④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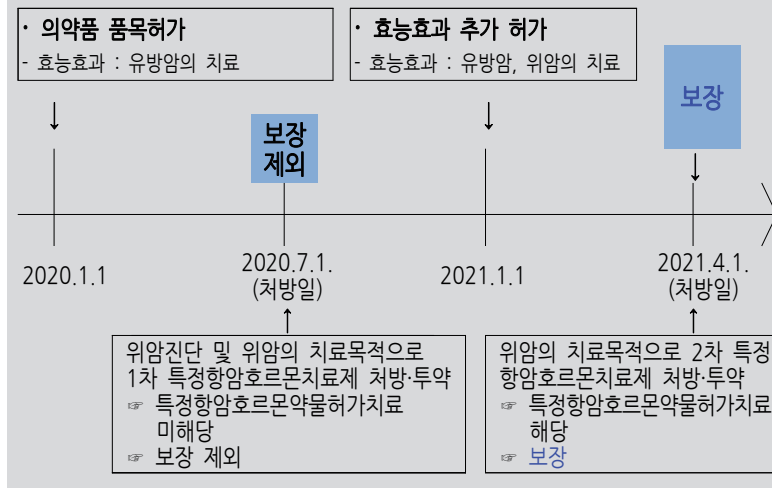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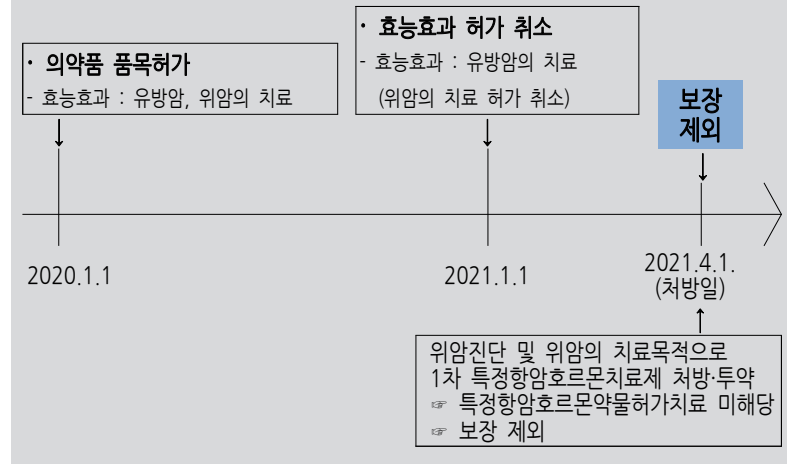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포암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암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 됩니다.
-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흡인(吸引)
 - 천자(穿刺) 등의 조치
 -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암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료제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이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10.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함이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 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10.(“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5 | 슬림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1.2억원한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슬림형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슬림형암주요치료)		지급횟수	지급금액
①암수술	암(유사암제외)수술비	수술당	3,000만원
②항암방사선치료	암(유사암제외)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연간1회한	3,000만원
③항암약물치료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암(유사암제외)항암약물치료비(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연간1회한)	연간1회한	3,000만원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암(유사암제외)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연간1회한	300만원

- ②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이하 ‘유사암’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슬림형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각각의 구분에 따라 **연간 총 지급액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슬림형유사암주요치료)		지급횟수	지급금액
⑤유사암수술	유사암수술비	수술당	600만원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연간1회한	600만원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	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	연간1회한	6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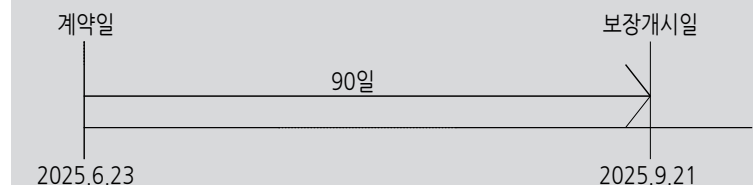
- ③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슬림형암주요치료비(유사암포함)(상급종합병원)(연간1.2억원한도) 보장개시일

- 비갱신형 및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피보험자가 15세이상인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연장계약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연장일로 합니다.
⑤ ① 및 ②에서 정한 암(유사암제외)”으로 “슬림형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슬림형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의 **전체 연간 총 지급액은 1억 2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위 ① 및 ②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⑦ 회사가 위 ② “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보험금을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회사가 위 ② “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일한 보험연도 내에서 이미 지급한 “유사암항암약물치료비(연간1회한)”와 다른 유사암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라도 보험금을 중복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비(연간1회한) 지급예시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	
2025.11.1	경계성종양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부지급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제자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시	지급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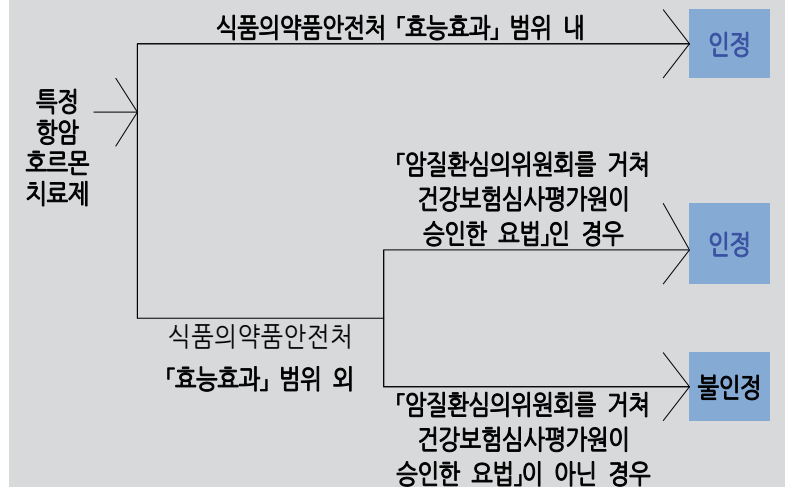
- ①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유사암제외)”으로 “슬림형암주요치료(①암수술, ②항암방사선치료,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및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으로 “슬림형유사암주요치료(⑤유사암수술, ⑥유사암항암방사선치료, ⑦유사암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 치료 항목 구분별로 각각 지급횟수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③항암약물치료(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제외)는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제외한 치료를 보장합니다.
- ④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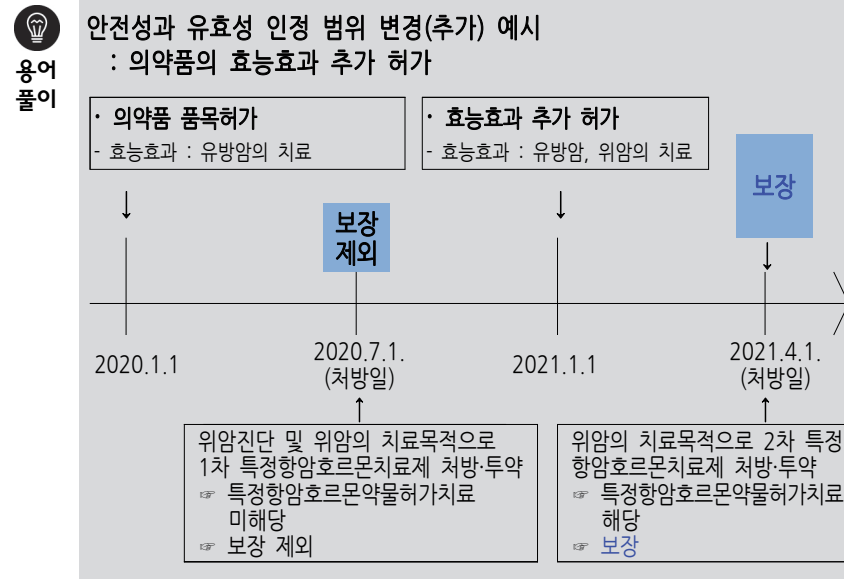


용어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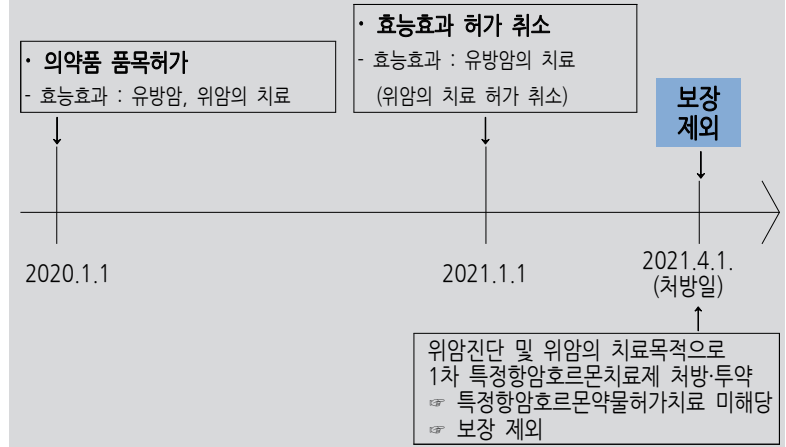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⑤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④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③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 예시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3.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단, “갑상선암”의 경우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4.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자리신생물 분류표」(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제자리암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5.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12)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 따른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경계성종양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방사선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화학요법 또는 항암면역요법(면역기전을 이용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를 말하며,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이하 “항암약물치료”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9.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23년 7월 기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을 【별표157】(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에 기재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8. (“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 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②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용어
풀이

암질환심의위원회(중증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①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1.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10. (“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치료”와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10.(“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특별약관의 무효)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3.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또는 암(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1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6 |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세부보장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276-1.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수술시)(매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 276-2.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혈전용해치료시)(뇌혈관질환)(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 276-3.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혈전용해치료시)(심혈관,기타)(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 276-4.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276-1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수술시)(매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수술시)(매회지급)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69) 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순환계질환(3-5종)”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6-2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혈전용해치료시) (뇌혈관질환)(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혈전용해치료시)(뇌혈관질환)(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176-1)순환계질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로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6-3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혈전용해치료시) (심혈관, 기타)(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혈전용해치료시)(심혈관, 기타)(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별표176-2)순환계질환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

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심혈관 및 기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심혈관 및 기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6-4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 (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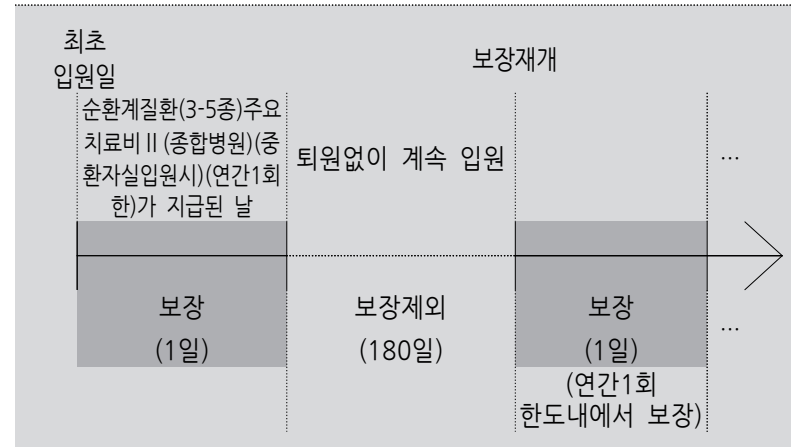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보험금 지급기준일은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시작한 일자(이하 “입원시작일”이라 합니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에 대한 입원이라도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종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 ② 단, 위 ①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1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5.10.1 ~ 2025.10.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미충족)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동일한 순환계질환(3-5종)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예시-2

• 특별약관의 계약일 : 2025년 6월 23일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 유
2026.5.1 ~ 2026.5.5	중환자실 입원(1차)	지급	
2026.7.1 ~ 2026.7.5	중환자실 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미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2026.12.1 ~ 2026.12.5	중환자실 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충족) 연간 1회한 한도 (충족)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순환계질환(3-5종)주요치료비Ⅱ(중합병원)(중환자실입원시)(연간1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중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순환계질환(3-5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순환계질환(3-5종)”이라 함은 「순환계질환 분류표」(별표169) 순환계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3 내지 5종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순환계질환(3-5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순환계질환(3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 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며, 순환계질환(4종 및 5종)의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 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 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순환계질환(3-5종)”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순환계질환(3-5종)”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의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 모니터, 병상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 호흡기, 병상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기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연평균 1일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6. ("종합병원"의 정의)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6. ("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치료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아래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6.("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7 |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세부보장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7-1.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 (뇌혈관질환진단비)

277-2.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 (연간체증형)(특정혈전치료)

277-1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 (뇌혈관질환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7-2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연간체증형)(특정혈전치료)(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혈전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에 따라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연간체증형)(특정혈전치료)로 지급합니다.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지급금액 (단,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1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2회이상 (1회 지급금액에 추가 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혈전치료”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과 같습니다.
 - ①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 용해치료”를 받은 경우[(1)혈전용해치료]
 - ②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을 받은 경우[(2)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혈전치료”의 치료 항목별 연간 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특정혈전치료 항목	산정기준
(1) 혈전용해치료	연간1회한
(2)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연간1회한



예시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1) 혈전용해치료 0회,
- (2)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2회 시행한 경우

=>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 1회
(0회+1회)

예시2)

- (1) 혈전용해치료 1회,
- (2)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2회 시행한 경우

=>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 2회
(1회+1회)

- ③ 위 ②의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뇌혈관질환으로 “(1)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특정혈전치료항목 중 (1)혈전용해치료에 한하여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뇌혈관질환으로 “(2)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을 받은 경우에도 특정혈전치료항목 중 (2)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에 한하여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1)혈전용해치료” 및 “(2)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을 연간 처음으로 받은 경우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를 2회로 산정하며,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가 1회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2회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5.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분류표」(별표191)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행위

용어 풀이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비계산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수가코드

용어 풀이

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8 |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태아가입)(세부보장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8-1.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태아가입)(뇌혈관질환진단비)

278-2.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태아가입)(연간체증형)(특정혈전치료)

278-1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뇌혈관질환진단비)(태아가입)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뇌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신생아 뇌출혈진단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 ② 회사가 위 ①의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이후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및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는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3.("뇌혈관질환", "신생아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③에서 정한 사망 후 "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 또는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뇌혈관질환", "신생아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신생아 뇌출혈" 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을 말합니다.
- ③ 뇌혈관질환 및 신생아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 또는 신생아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단, 신생아 뇌출혈진단비만 지급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8-2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II(연간체증형)(특정혈전치료) (태아가입)(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혈전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에 따라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혈관질환진단및2종치료비II(연간체증형)(특정혈전치료)로 지급합니다.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지급금액 (단,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1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2회이상 (1회 지급금액에 추가 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혈전치료”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과 같습니다.
- ①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1)혈전용해치료]
 - ②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를 받은 경우[(2)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혈전치료”의 치료 항목별 연간 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특정혈전치료 항목	산정기준
(1) 혈전용해치료	연간1회한
(2)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연간1회한



예시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1) 혈전용해치료 0회,
- (2)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2회 시행한 경우

⇒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 1회
(0회+1회)

예시2)

- (1) 혈전용해치료 1회,
- (2)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2회 시행한 경우

⇒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 2회
(1회+1회)

- ③ 위 ②의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뇌혈관질환으로 “(1)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특정혈전치료항목 중 (1)혈전용해치료에 한하여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뇌혈관질환으로 “(2)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을 받은 경우에도 특정혈전치료항목 중 (2)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에 한하여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1)혈전용해치료” 및 “(2)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을 연간 처음으로 받은 경우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를 2회로 산정하며,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가 1회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2회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을 말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 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뇌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5.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분류표」(별표191)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행위

용어
풀이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 필수 기재), 진료비계산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 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수가코드

용어
풀이

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9 | 허혈심장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세부보장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9-1. 허혈심장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허혈심장질환진단비)

279-2. 허혈심장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연간체증형)(특정혈전치료)

279-1 허혈심장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허혈심장질환진단비)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허혈심장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허혈심장질환진단비 (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3.("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4.(특별약관의 소멸) ③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3.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허혈심장질환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9-2 허혈심장질환진단및2종치료비Ⅱ(연간체증형)(특정혈전치료)(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특정혈전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에 따라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허혈심장질환진단및2종치료비(연간체증형)(특정혈전치료)로 지급합니다.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지급금액 (단,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
1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2회이상 (1회 지급금액에 추가 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의 20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혈전치료” 라 함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과 같습니다.
 - ①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1)혈전용해치료]
 - ②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시행되는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를 받은 경우[(2)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라 함은 피보험자가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받은 “특정혈전치료”의 치료 항목별 연간치료횟수를 아래의 산정기준에 따라 합산한 횟수를 말합니다.

특정혈전치료 항목	산정기준
(1) 혈전용해치료	연간1회한
(2)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연간1회한



예시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산정 예시

예시1)

- (1) 혈전용해치료 0회,
- (2)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2회 시행한 경우

=>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 1회
(0회+1회)

예시2)

- (1) 혈전용해치료 1회,
- (2)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2회 시행한 경우

=>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 2회
(1회+1회)

- 위 ②의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는 계약해당일을 기준으로 매년 재산정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허혈심장질환으로 “(1)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특정혈전치료항목 중 (1)혈전용해치료에 한하여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허혈심장질환으로 “(2)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을 받은 경우에도 특정혈전치료항목 중 (2)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에 한하여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를 1회로 산정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1)혈전용해치료” 및 “(2)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을 연간 처음으로 받은 경우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를 2회로 산정하며,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가 1회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금과 「연간 특정혈전치료 횟수」 2회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4.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허혈심장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위 ①에서 “혈전용해제”라 함은 허혈심장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위 ②에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5.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허혈심장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분류표”【별표191】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행위

용어 풀이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비계산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수가코드

용어 풀이

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처치 및수술료, 검사료, 방사선 치료료 등을 포함한 코드를 말합니다.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2종, 4종, 8종,
9종, 10종, 11종)

제3장 질병 및
상해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49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1469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90세/100세 만기 또는 10/15/20년 만기

1 | 뇌성마비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임신 22주 이내에 한합니다.)(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출생시에 시작하며, 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을 더한 날에 끝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성마비로 진단확정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성마비진단비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뇌성마비”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성마비”라 함은 산전(産前), 출산(出産) 및 주산기(周産期)에 발생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그 결과 비진행성(非進行性)으로 영구적인 운동과 체위(體位)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병변(腦病變)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의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가, 특수아동교사 등)들의 종합적인 진단, 평가, 치료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위 ①의 “뇌성마비”의 진단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뇌성마비”의 전형적인 병력의 존재, 이학적 검사, 그리고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파검사(EEG)를 기초로 해야합니다.
- 뇌성마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뇌병변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예: 교통사고, 선천성 뇌기형, 뇌종양에 의한 뇌병변)

6. (특별약관의 소멸)

-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성마비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 뇌성마비진단자금(매월3년간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임신 22주 이내에 한합니다.)(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회사의 보장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도 불구하고 출생시에 시작하며, 출생일로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을 더한 날에 끝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성마비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3년동안 매월 진단확정일에 뇌성마비진단자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다만, 진단확정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구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뇌성마비진단자금 (매월3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3년동안 매월 진단확정일에 확정지급(총36회)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성마비진단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5. (“뇌성마비”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성마비”라 함은 산전(産前), 출산(出産) 및 주산기(周産期)에 발생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그 결과 비진행성(非進行性)으로 영구적인 운동과 체위(體位)에 장애를 초래하는 뇌병변(腦病變)으로 해당분야 전문가(의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사회사업가, 특수아동교사 등)들의 종합적인 진단, 평가, 치료를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뇌성마비”의 진단확정은 해당분야의 전문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상 “뇌성마비”의 전형적인 병력의 존재, 이학적 검사, 그리고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파검사(EEG)를 기초로 해야합니다.
- ③ 뇌성마비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뇌병변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예: 교통사고, 선천성 뇌기형, 뇌종양에 의한 뇌병변)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성마비진단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 5대장기이식수술비(1회지급)(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5대장기이식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5대장기이식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랑게르한스 소도세포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5대장기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을 말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5대장기이식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 각막이식수술비(1회지급)(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각막이식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각막이식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 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 깁스치료비(상해및질병)(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매 사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깁스치료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서 “깁스(Cast)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고 대주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깁스(Cast)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 추간판탈출증수술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추간판탈출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매 수술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추간판탈출증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추간판탈출증”이라 함은 「추간판탈출증분류표」(별표35)추간판탈출증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보험계약일에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3세 미만일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13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추간판탈출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 시력치료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이 안구의 굴절도가 -6.25디옵터(Diopter) 이상인 고도근시 또는 +4.25디옵터(Diopter) 이상인 고도원시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시력치료비로 지급합니다. 단, 난시의 굴절도는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②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시력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 | 시력교정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안과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한쪽 눈 이상의 굴절도가 ± 2 디옵터(Diopter) 이상의 굴절이상(Anomalies of Refraction)으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시력교정비로 지급합니다. 단, 난시의 굴절도는 제외합니다.



나안시력

용어
풀이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등을 사용하지 않고 측정한 시력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②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시력교정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 | 부정교합치료비(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일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Angle씨 부정교합(不正咬合)분류법의 Ⅱ급 또는 Ⅲ급으로 치과의사에 의해 판정받고 그로 인하여 교정치료를 요한다는 치과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부정교합 치료비로 지급합니다.

구분	분류
Ⅱ급	하악대구치(아래 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 어금니)에 비해 원심(안면에서 후방)쪽으로 치우쳐있는 경우
Ⅲ급	하악대구치(아래 어금니)가 상악대구치(윗 어금니)에 비해 근심(안면에서 전방)쪽으로 치우쳐있는 경우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단순치열교정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4.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②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부정교합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 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3. (“영구치발거”,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아래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①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치아보철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임플란트 치료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없음
브릿지 치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한도없음
틀니 치료	보철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②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는 경우 가. 최초계약의 경우

치아보철 치료항목	보험계약일* 로부터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장한도
임플란트 치료	2년미만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한도없음
	2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브릿지 치료	2년미만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한도없음
	2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틀니 치료	2년미만	보철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1회한
	2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위 ②의 ‘보험계약일로부터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영구치를 발거한 날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의 경우

치아보철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임플란트 치료	영구치발거 1개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없음
브릿지 치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한도없음
틀니 치료	보철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최초계약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③ 위 ①의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질병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① 치아우식증(충치)(K02)
- ②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K04)
- ③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K05)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이하“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예시

보험 지식

피보험자의 상악에 총의치(전체틀니)와 임플란트를 복합적으로 치료받는 경우(Implant Overdenture), 해당 치료 종료시 틀니치료와 임플란트치료 중 보험금이 더 큰 한가지의 치료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위 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⑦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영구치를 발거한 해당 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영구치발거”,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영구치발거”라 함은 치과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임플란트(Implant)”라 함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Bridge)”라 함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되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틀니(가철성의치, Denture)”라 함은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한 영구치와 주위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 ⑤ “영구치발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매복치,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의 치료
 - ② 치열교정준비
 - ③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 ④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⑤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⑥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이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상병으로 인하여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동) 장애(K00)
 - ② 매몰치 및 매복치(K01)
 - ③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 ④ 치은 및 무치성 치조 융선의 기타 장애(K06)
 - ⑤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K07)
 - ⑥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5. (보험금의 청구)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 가.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식)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나.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다.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위 ①의 ②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붙임_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영구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유치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자연치를 말합니다.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했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치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치아보철물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11 | 영구치보철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3. (“영구치발거”,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대하여 아래의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치아보철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임플란트 치료	영구치발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한도없음
브릿지 치료	1개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한도없음
틀니 치료	보철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 ②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위 ①의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질병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④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의 첫날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이하“계약해당일”이라 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복합형태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보험
지식**

예시

피보험자의 상악에 총의치(전체틀니)와 임플란트를 복합적으로 치료받는 경우(Implant Overdenture), 해당 치료 종료시 틀니치료와 임플란트치료 중 보험금이 더 큰 한가지의 치료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위 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⑦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후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영구치를 발거한 날부터 2년 이내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 이내에 영구치를 발거한 해당 부위에 치아보철치료를 할 경우 효력이 없어진 날의 전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연간 보장한도 내에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영구치발거”,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영구치발거”라 함은 치과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임플란트(Implant)”라 함은 점막 또는 골막층 하방, 그리고 골조직 내부 등의 구강 조직에 이물 성형재료를 매식한 후 고정성 또는 가철성 보철물을 삽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브릿지(고정성가공의치, Bridge)”라 함은 치아와 치아 사이를 다리처럼 연결하여 보철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치아가 결손이 되어 있을 때 결손이 된 부분에 대해 인접한 영구치를 지대치로 하고, 가공치를 지대치와 연결하여 구강 내에 영구접착되는 보철물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틀니(가철성의치, Denture)”라 함은 영구치와 그와 연관된 조직이 결손이 되었을 때,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을 장착하는 시술로서 국소의치와 총의치를 포함합니다. 국소의치(부분틀니, Partial Denture)는 전체 치아가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와 그 관련조직의 결손을 수복해주는 보철물을 말하며, 금관, 지대치 혹은 다른 고정성 가공의치(Bridge) 및 점막에서 지지를 받습니다. 총의치(Complete Denture)는 영구치가 하나도 없는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의치를 말하며, 영구치 또는 인공치의 치열 전체, 보통 상실한 영구치와 주위조직을 대신하는 인공 보철물입니다.
- ⑤ “영구치발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자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매복치,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의 치료
 - ② 치열교정준비
 - ③ 치과치료를 위한 임시 치과치료
 - ④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 ⑤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⑥ 치아우식증 및 치주질환이 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상병으로 인하여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동) 장애(K00)
 - ② 매몰치 및 매복치(K01)
 - ③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 ④ 치은 및 무치성 치조 융선의 기타 장애(K06)
 - ⑤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K07)
 - ⑥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5. (보험금의 청구)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 가. 치과치료 진단서(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나.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다.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 위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위 ①의 ②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 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붙임_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영구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 (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유치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자연치를 말합니다.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齒牙 修復物)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 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 을 말합니다.
치주질환 (잇몸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 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 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 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치아수복물 (齒牙修復物)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료용 충전물 또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치아보철물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치(틀니, Denture), 고정성 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12 |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3. (“영구치발거”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발거한 영구치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영구치상실치료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드립니다.
-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최초계약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③ 위 ①의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질병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① 치아우식증(충치)(K02)
 - ②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K04)
 - ③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K05)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영구치발거”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영구치발거”라 함은 치과 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② “영구치발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②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③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 ④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 ⑤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상병으로 인하여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동) 장애(K00)
 - ② 매몰치 및 매복치(K01)
 - ③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 ④ 치은 및 무치성 치조 융선의 기타 장애(K06)
 - ⑤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K07)
 - ⑥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5. (보험금의 청구)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등
 - 가. 치과 치료관련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나.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다.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 위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위 ①의 ②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 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 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 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 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영구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유치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자연치를 말합니다.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치아우식증 (충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치주질환 (잇몸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치아수복물 (齒牙修復物)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치아보철물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13 | 영구치상실치료비(상해및질병)(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치과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서 3. (“영구치발거”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영구치발거를 진단확정 받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 발거한 영구치 1개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영구치상실치료비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드립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6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위 ①의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질병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① 치아우식증(충치)(K02)
 - ②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K04)
 - ③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K05)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영구치발거”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영구치발거”라 함은 치과의사가 어떠한 치료를 하더라도 치아의 전부 또는 일부라도 보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영구치를 뽑거나 제거하는 시술을 말합니다.
- ② “영구치발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②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③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 ④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 ⑤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상병으로 인하여 영구치를 발거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동) 장애(K00)
 - ② 매몰치 및 매복치(K01)
 - ③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 ④ 치은 및 무치성 치조 융선의 기타 장애(K06)
 - ⑤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K07)
 - ⑥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5. (보험금의 청구)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등
 - 가. 치과 치료관련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영구치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 직접적인 영구치 발거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나.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다.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위 ①의 ②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영구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叢)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유치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자연치를 말합니다.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치아보철물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14 | 뇌심장장애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뇌심장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심장장애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뇌심장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이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뇌심장장애진단비만을 지급합니다.

1-1. (“뇌심장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심장장애”라 함은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뇌전증장애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뇌전증장애인(별표120) 장애인의 기준 분류표 참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인용문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재활·치료·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 발생 또는 진단확정되었으나,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따라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의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이 계약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③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 해당하는 장애정도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
- ⑥ 피보험자의 출생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장애발생
- ⑦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장애인등록증
 - ③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③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위 ①, ②의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에 의해 발급한 것으로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심장장애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 뇌심장장애진단비(중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뇌심장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뇌심장장애진단비(중증)로 지급합니다.

1-1. (“뇌심장장애”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심장장애”라 함은 뇌병변장애, 심장장애, 뇌전증장애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뇌병변장애인, 심장장애인, 뇌전증장애인(별표120) 장애인의 기준 분류표 참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별표12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류표 참조)으로 판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 발생 또는 진단확정되었으나,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따라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의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1.(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②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2종류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시 상향조정된 장애정도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주장애 및 장애정도'에 기재된 주장애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장애가 부장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인용
문구

중복장애의 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3장)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예시

중복장애 합산 예시

주장애유형/정도 + 부장애유형/정도
[뇌병변/심하지않은장애] [뇌전증/심하지않은장애]

→ 종합장애 정도 [심한장애]

- ③ 이 특별약관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1.(보험금의 지급사유) 해당하는 장애정도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의 선천적 기형, 선천적 질환 및 이에 근거한 상병
- ⑥ 피보험자의 출생과정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한 장애발생
- ⑦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장애인등록증
 - ③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③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위 ①.②의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에 의해 발급한 것으로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심장장애진단비(중증)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 X-ray 및 파노라마 치아촬영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촬영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X-ray 촬영비 또는 파노라마 촬영비로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위 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위 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의 “X-ray촬영 및 파노라마촬영 진료행위코드 분류표”(【별표65】X-ray촬영 및 파노라마촬영 진료행위코드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치아촬영을 말합니다.
- ⑤ 위 ④ 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 급여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 급여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⑥ 위 ② 및 ③ 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위 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최초계약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 ②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식)
 - 진료된 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또는 발거원인)
 - 진료내용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③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용어	정의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영구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유치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자연치를 말합니다.
X-ray 촬영, 파노라마 촬영	환자의 치열 상태, 상하악골, 상악동, 하치조신경 경로 등 개개의 치아보다는 전반적인 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식입니다.

17 | X-ray 및 파노라마 치아촬영비(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치과 병,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촬영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X-ray 촬영비 또는 파노라마 촬영비로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회 이상의 X-ray 촬영 또는 2회 이상의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위 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2개 이상의 치아에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한 때에는 하나의 X-ray 촬영 또는 하나의 파노라마 촬영으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위 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의 “X-ray촬영 및 파노라마촬영 진료행위코드 분류표”(별표65)X-ray촬영 및 파노라마촬영 진료행위코드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치아촬영을 말합니다.
- ⑤ 위 ④ 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 급여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 급여인정기준을 따릅니다.
- ⑥ 위 ② 및 ③ 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X-ray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았을 때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보아 위 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2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보장개시일 전에 해당 치과치료를 진단확정받은 경우
 - ② 라미네이트 등 미용 상의 치료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식)
 - 진료된 치아의 위치(또는 치아번호)
 - 직접적인 치아의 치료원인(또는 발거원인)
 - 진료내용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③ 진료비계산서(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항목이 포함된 치과 진료비 영수증 등)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영구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유치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자연치를 말합니다.
X-ray 촬영, 파노라마 촬영	환자의 치열 상태, 상악악골, 상악동, 하치조신경 경로 등 개개의 치아보다는 전반적인 검진을 하기 위한 촬영술식입니다.

18 | 신김스치료비(상해및질병)(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3. (신김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에서 정한 “신김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3. (신김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에서 정한 진료항위별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신김스치료비의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키는 치료법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두가지 이상의 “신김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신체 동일부위에 두가지 이상의 “신김스치료”를 받은 경우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1회에 한하여 신김스치료비의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신김스치료비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신김스치료의 정의 및 지급률표)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있어 “신김스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 해당하는 아래의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진료행위명칭	진료행위코드	지급률
손가락캐스트	T6090	5%
단상지[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T6030	10%
장상지[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8자형 석고	T6020 T6120	20%
단하지[하퇴로부터족부까지]-Without Walker 단하지[하퇴로부터족부까지]-With Walker 슬개건 부하캐스트 견수상[흉부로부터 수부까지] 벨포캐스트	T6060 T6061 T6063 T6010 T6110	30%
대퇴에서 족부에 미치는 캐스트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Without Walker 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With Walker	T6050 T6051 T6052	40%
Risser형 체간캐스트 Minerva형 체간캐스트 고수상[요부로부터 족부까지, 척추cast포함]	T6080 T6070 T6040	100%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신김스치료 급여인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신김스치료 급여인정기준」을 따릅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9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10종 연장전계약의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이 5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③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5.("11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11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 또는 보험나이 0세인 경우, 최초계약 또는 연장전계약에 한하여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6.("3대장애(선천성포함)" 및 "장애인" 정의)에서 정한 3대장애(선천성포함)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을 때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 ⑧ 피보험자에게 3대장애(선천성포함)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⑨ 회사는 피보험자의 상태 또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 발생 또는 진단확정되었으나,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따라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의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2.(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⑩ 이 특별약관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⑪ 위 ⑩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아래에 경우로 인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④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② 갱신계약 또는 연장계약에서 3대장애(선천성포함)로 진단확정된 경우

5. (“11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11대질병”이라 함은, “암(유사암제외)”,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 “5대난치성질환” 및 “특정3대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②에서 정한 “암”에서 ⑥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⑦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④ 위 ③의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위 ④에 따른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은 보통약관 25.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내지 ③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15세미만인 경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입니다.
- ⑦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⑨ 이 특별약관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기타 뇌혈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을 말합니다. 단, “신생아 뇌출혈”(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⑩ 위 ⑨의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⑪ 이 특별약관에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허혈심장질환 분류표」(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협심증, 급성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만성허혈심장병을 말합니다.
- ⑫ 위 ⑪의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⑬ 이 특별약관에서 “5대난치성질환”이라 함은 「5대난치성질환 분류표」(별표71) 5대난치성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재생불량성 빈혈”, “운동신경세포병”, “심근질환(42.4(심내막탄력섬유증) 제외)”, “전신홍반루프스”, “만성 콩팥병(5기)”을 말합니다.
- ⑭ 위 ⑬의 “5대난치성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임상적 증상과 함께 골수검사,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근전도검사 및 혈액검사 등 각 질환의 진단적 절차에 따라 시행한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⑮ 위 ⑬의 “만성 콩팥병(5기)”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N18.5(만성 콩팥병(5기))」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신대체요법(복막투석, 혈액투석 및 신장이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일시적 투석치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신대체요법

- 복막투석: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경우 뱃속으로 통하는 관을 삽입하여 투석액을 교환하는 시술
- 혈액투석: 인공 신장기를 이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 제거, 신체 내 전해질 균형 유지, 과잉 수분을 제거하는 시술
- 신장이식: 정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신장을 대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신장을 심어주는 수술

- ⑯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3대심장질환”이라 함은 「특정3대심장질환 분류표」(별표7) 특정3대심장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부정맥 및 심부전을 말합니다.
- ⑰ 위 ⑯의 “특정3대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 신경학적 검사, 심전도검사, 심도자검사, 심장 초음파검사, 혈액 중 심장 효소 검사, 핵의학 검사, 뇌척수액검사, 혈관 도플러검사, 경동맥초음파,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혈관조영술, 관상동맥조영술, 대동맥조영술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에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6. (“3대장애(선천성포함)” 및 “장애인”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3대장애(선천성포함)”라 함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별표120】 장애인의 기준 분류표 참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취소)

-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5. (“11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④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그 진단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유사암 제외)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른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②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유사암 제외)이 치료된 후 동일부위에 그 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암(유사암 제외)이 발생하여 진단확정된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그 암(유사암 제외)이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때에는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턴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⑤ 위 ④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②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8.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1.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0 | 장루(인공항문)조성수술비(급여)(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루(인공항문)조성술(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장루(인공항문)조성수술비(급여)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장루(인공항문)조성술(급여) 대상 수가코드」(【별표97】장루(인공항문)조성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장루(인공항문)조성수술비(급여)만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가코드를 받은 경우 :

용어 풀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가코드를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한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아 두 가지 이상의 수가코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장루(인공항문)조성술(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장루(인공항문)조성술(급여)”이라 함은 「장루(인공항문)조성술(급여) 대상 수가코드」(【별표97】장루(인공항문)조성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대하여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수술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의 “장루(인공항문)조성술(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용어 풀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1 | 기관절개수술비(급여)(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으로 기관절개술(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기관절개수술비(급여)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기관절개술(급여) 대상 수가코드」(별표98)기관절개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수가코드를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기관절개수술비(급여)만 지급합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가코드를 받은 경우 :

**용어
풀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가코드를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한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아 두 가지 이상의 수가코드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기관절개술(급여)"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기관절개술(급여)"이라 함은 「기관절개술(급여) 대상 수가코드」(별표98)기관절개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에 대하여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수술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수술의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의 “기관절개술(급여)”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기관절개술”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2 | 인공와우이식수술비(최초1회한)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와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인공와우이식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인공와우이식수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인공와우이식수술”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에서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인공와우를 내이에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	
1) 1세 미만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2) 1세 이상 19세 미만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3) 19세 이상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단음절어에 대한 어음변별력(Speech discrimination)이 50% 이하 또는 문장언어평가가 50% 이하인 경우. 다만, 시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함.
※ 위 1),2),3)의 난청환자 중 뇌막염의 합병증 등으로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②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는 사고인 경우, 위 ①의 ‘인공와우이식수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술도 포함합니다.
- ③ 위 ①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며,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는 경우 회사는 수술 시행시점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릅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인공와우의 요양급여 대상’을 따릅니다.

- ⑤ 위 ①의 “인공와우를 내이에 이식하는 수술”은 다음의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가코드	행위명
S5800	인공와우이식수술

- ⑥ 위 ⑤의 수가코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술기록지상 인공와우이식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인공와우이식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⑦ 위 ⑤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공와우이식수술”에 해당하는 수가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코드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인공와우이식수술비(1회한)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3 |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단,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응급실”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말한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인용
문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응급환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별표5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분류표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공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4 | 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연간 12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2회한도로 내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단,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응급실”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인용
문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4. (“응급환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별표5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분류표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 | 4대안과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4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4대안과진단비(특정눈염증)
2. 4대안과진단비(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
3. 4대안과진단비(질병 시력저하 및 실명)
4. 4대안과진단비(안구특정상해)

25-1 4대안과진단비(특정눈염증)(비갱신형/갱신형)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눈염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지급금액
특정눈염증(1회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4대안과진단비(특정눈염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눈염증"이라 함은 「특정눈염증 분류표」(별표138) 특정눈염증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특정눈염증을 말합니다.
- ② 특정눈염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시력검사, 안저검사, 안구단층촬영(OCT), 안저조영술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눈염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4대안과진단비(특정눈염증)를 지급한 경우에 이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2 4대안과진단비(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지급금액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1회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4대안과진단비(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 이라 함은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 분류표」(별표79)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특정백내장 및 수정체질환을 말합니다. 다만, 선천성 수정체기형, 안구내렌즈(인공수정체)의 기계적 합병증 및 인공수정체안은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② 특정백내장 및 수정체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시력검사, 검안경, 세극등검사, 안압검사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4대안과진단비(특정백내장및수정체질환)를 지급한 경우에 이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3 4대안과진단비(질병 시력저하 및 실명)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질병 시력저하 및 실명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지급금액
질병 시력저하 및 실명(1회한)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4대안과질환(질병 시력저하 및 실명)"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질병 시력저하 및 실명" 이라 함은 질병으로 인해 「더 좋은 눈」의 「비가역적인 영구적 시력상실」이 발생하고, 시력의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로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의한 「더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최소한 0.05이하인 경우(안전수동, 안전수지 상태 포함)에 해당되거나 완전실명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질병 시력저하 및 실명」의 진단확정 시점에 「더 좋은 눈」 이외의 눈도 교정시력이 0.05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상해로 인한 시력저하 또는 실명은 제외합니다.
- ② 위 ①의 「더 좋은 눈」이란 양쪽 눈 중 교정시력이 더 좋은 눈을 말합니다.

용어
풀이

안전수동(Hand Movement)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 앞에서의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를 말합니다.

안전수지(Finger Counting)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를 말합니다.

완전실명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영구적」이라 함은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육체적 훼손 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교정시력」이란 안경, 렌즈, 굴절교정수술(라식, 라섹 등), 인공수정체 삽입술, 기타 시력교정술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교정법을 이용하여 얻은 원거리 최대시력을 말합니다.
- ④ "질병 시력저하 및 실명"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질병 시력저하 및 실명"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충분히 치료한 후 상태가 고정되었을 때 내려져야 합니다. "질병 시력저하 및 실명"의 진단은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이상 측정(단, 시신경 절단, 안구(내용)제거술, 완벽한 각막혼탁, 각종 치료로 회복이 불가능한 백내장이나 망막질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회 측정결과로 가능)하여 최대 시력으로 적용하며, 회사가 "질병 시력저하 및 실명"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4대안과진단비(질병 시력저하 및 실명)를 지급한 경우에 이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5-4 4대안과진단비(안구특정상해)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안구특정상해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을 안구특정상해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4대안과진단비(안구특정상해)”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안구특정상해” 라 함은 「안구특정상해 분류표」(별표114) 안구특정상해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안구특정상해를 말합니다.
- ② 안구특정상해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증상과 함께 검안경, 세극등 검사, 초음파검사, 전산화단층촬영(CT)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에 근거하여 작성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안구특정상해”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병명 및 상병 분류번호 기입)), 진료기록부(검사결과지 포함), 안구특정상해의 경우 사고입증서류(상해사고일자 및 내용 확인서류(초진 진료기록지, 응급실기록지, 입통원치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수술기록지,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4대안과진단비(안구특정상해)를 지급한 경우에 이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6 |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3.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등록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보험금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으나, 허위 또는 부당 등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39)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해당여부는 판단하는 시점의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보험
지식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1.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청급여비 청구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2.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없이 자동등록이 되며, 등록시 최대 30일간 적용이 됩니다. 다만,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 동안 재수술시 재수술일로부터 최대30일 추가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늘어납니다.

4.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에 따른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보험
지식

예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제도의 변경으로 산정특례대상의 구분이 세분화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등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며, 해당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위 ②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된 위 ⑥ 및 ⑦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⑨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⑩ 위 ② 내지 ⑦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용 영수증)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7 |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진단비(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3.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 중에 등록된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진단 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보험금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③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함)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은 산정특례대상 등록일(해당 상병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하여 최초로 등록한 연, 월, 일을 말함)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되었으나, 허위 또는 부당 등록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별표140〕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해당 여부는 판단하는 시점의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공시)」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령개정으로 산정특례 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외래 또는 입원치료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보험
지식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1.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2. 중증질환자 심장질환의 산정특례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없이 자동등록이 되며, 등록시 최대 30일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심장질환 산정특례 기간 동안 재수술시 재수술 일로부터 최대30일 추가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늘어납니다.



보험
지식

예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제도의 변경으로 산정특례대상의 구분이 세분화하거나, 통폐합하는 경우 등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계약내용 변경일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알립니다.
- ④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며, 해당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⑦ 위 ②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계약체결시 계약자에게 위 ②에 따라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된 위 ⑥ 및 ⑦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⑨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보장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최신의 통계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 기초율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계약내용 변경일로부터 재산출된 보험료산출 기초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내용 변경으로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및 납입보험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⑩ 위 ② 내지 ⑦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4.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등록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계약내용에 상응하는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①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에 따른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③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따라 계약유지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
 - ④ 기타 금융위원회 등의 명령이 있는 경우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사본, 산정특례 등록 승인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록결과 통보방법에 따른 알림톡, 이메일 등),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산정특례 적용 영수증)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8 | 십자인대 수술비(급여,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십자인대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십자인대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십자인대 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함)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③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십자인대질환” 및 “급여 십자인대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십자인대질환”이라 함은 「십자인대질환 분류표」(별표52) 십자인대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십자인대수술”이라 함은 넙다리뼈와 정강뼈 사이의 무릎관절 안에 위치한 전방십자인대 또는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십자인대를 접합, 성형 또는 재건하는 수술로, 「급여 십자인대수술 대상 수가코드」(별표53)급여 십자인대수술 대상 수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환의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급여수술 판정이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수술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의 “급여 십자인대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 십자인대수술”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9 |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장애)
2. 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심한장애)

2. (보험금의 지급사유)

2-1. (보험금의 지급사유(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장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8대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 으로 등록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을 8대장애진단비(장애)로 지급합니다.

2-2. (보험금의 지급사유(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심한장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8대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등록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을 8대장애진단비(심한장애)로 지급합니다.

3. ("8대장애" 등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8대장애"라 함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정신장애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및 정신장애인【별표120】 장애인의 기준 분류표 참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 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별표12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류표 참조)으로 위 ②에 따라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 정도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재활·치료·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인용
문구

중복장애의 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제3장)

2종류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주된 장애(장애정도가 가장 높은 장애)와 차상위 장애를 합산할 수 있다.



예시

중복장애 합산 예시

주장애유형/정도 + 부장애유형/정도
[언어/심하지않은장애] [자폐/심하지않은장애]

→ 종합장애 정도 [심한장애]

- ④ 이 특별약관의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정도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2.(보험금의 지급사유) 해당하는 장애정도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⑥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에게 8대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 된 경우에도 하나의 장애로 인한 8대장애진단비만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이 보험기간 중 발생 또는 진단확정되었으나,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시기에 따라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의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2.(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③ 장애인 등록이 완료되었을 때, 8대장애 중 2종류 이상의 장애가 동시에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장애 합산시 상향조정된 장애정도가 2-2. (보험금의 지급사유(8대장애(선천성포함)진단비(심한장애))) 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장애인증명서의 '주장애 및 장애정도'에 기재된 주장애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장애가 부장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장애인등록증
 - ③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장애인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에 의해 발급한 것으로 합니다.
- ③ 위 ①, ③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의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0 |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 진단비(연간1회한) (비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이후에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에 해당하는 상태가 진단 확정일부터 계속하여 지속되었음”이 진단 확정된 경우(이하 “계속진단”이라 합니다.)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 진단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3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이라 함은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 분류표」, 【별표94】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을 말합니다.
- ②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의 진단확정 또는 계속진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에 의하여 병력 및 신경학적 검진 및 공인된 언어평가검사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 진단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결과지,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약관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
- ② 2.(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 진단비」로 진단확정 받은 경우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1 | 특정내시경 검사 및 치료비(급여, 연간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3.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비Ⅰ(급여, 연간1회한) 또는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비Ⅱ(급여, 연간1회한)를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지급한도
특정내시경검사및치료비Ⅰ (급여,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연간 1회한
특정내시경검사및치료비Ⅱ (급여,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연간 1회한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3.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받은 연, 월, 일로 합니다.
- ③ 3.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Ⅰ” 중 “질확대경 검사”는 여성인 피보험자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④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라 함은 아래의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 I” 과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 II”를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 I”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 I 대상 수가코드」(《별표 147》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 I 대상 수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후두경 검사 및 치료, 질확대경 검사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 II”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 II 대상 수가코드」(《별표 148》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 II 대상 수가코드 참조)에 해당하는 기관지경 검사 및 치료,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및 치료,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및 치료, 풍선 소장 내시경검사 및 치료, 대장 내시경검사 및 치료, 요관경 검사 및 치료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내시경 검사

장기에 내시경을 삽입하여 기체나 액체로 내강을 부풀리면서 장기의 구조와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④ 위 ①의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위 ①의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 대상 수가코드」(《별표146》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 대상 수가코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의료 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⑦ 위 ⑥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비계산서,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2 | 치아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유치,영구치)(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와 같이 치수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상해로 치수치료를 받는 경우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치수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한도없음

②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으로 치수치료를 받는 경우 가. 최초계약의 경우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치수치료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한도없음

나. 갱신계약의 경우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치수치료	치아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한도없음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최초계약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③ 위 ①의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질병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① 치아우식증(충치)(K02)
- ②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K04)
- ③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K05)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①에서 정한 치수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으로 봅니다.

⑤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이 계약에 있어서 “치수치료”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집한 연조직)가 상해로 인해 손상되었거나 위 ③에서 정의하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에 감염되는 경우, 치수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⑦ “치수치료”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거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치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의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의 치수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동) 장애(K00)
 - ② 매몰치 및 매복치(K01)
 - ③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 ④ 치은 및 무치성 치조 융선의 기타 장애(K06)
 - ⑤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K07)
 - ⑥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복구,대체하는 경우
 - ②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③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 ④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 ⑤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인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⑤ 치과치료관련 증명서(치과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가.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식)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나. 회사는 상기 “가”의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위 ①의 ②의 사고증명서 또는 ①의 ⑤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5.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3 | 치아치수치료비(상해및질병)(유치,영구치)(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치수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2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위 ①의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질병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① 치아우식증(충치)(K02)
 - ②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K04)
 - ③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K05)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치료로 보아 치아당 1회에 한하여 ①에서 정한 치수치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수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으로 봅니다.
- ⑤ 이미 치수치료를 받은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이 계약에 있어서 “치수치료”란 치아내부에 있는 치수(혈관이 밀집한 연조직)가 상해로 인해 손상되었거나 위 ③에서 정의하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에 감염되는 경우, 치수를 제거하여 통증이나 기타증상을 없애고 치아가 제자리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⑦ “치수치료”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치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의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진단과 관련된 직접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수치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수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동) 장애(K00)
 - ② 매몰치 및 매복치(K01)
 - ③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 ④ 치은 및 무치성 치조 융선의 기타 장애(K06)
 - ⑤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K07)
 - ⑥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복구,대체하는 경우
 - ②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③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 ④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 ⑤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⑤ 치과치료관련 증명서(치과치료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

- 가.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식)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나. 회사는 상기 “가”의 서류 이외에 보험금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위 ①의 ②의 사고증명서 또는 ①의 ⑤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4 | 치아보존치료비II(상해및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무제한)(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① 상해로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치아보존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충전 치료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한도 없음
	인레이 · 온레이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70%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및 인레이 · 온레이 이외(레진필링 등)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크라운치료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가. 최초계약의 경우

치아보존 치료항목		보험계약 일로부터 경과기간		지급금액		보장 한도	
충전 치료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1년미만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		한도 없음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인레이 · 온레이	1년미만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35%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70%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및 인레이 · 온레이 이외(레진필링 등)	1년미만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5%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크라운치료		1년미만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나. 갱신계약의 경우

치아보존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충전 치료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한도 없음
	인레이 · 온레이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70%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및 인레이 · 온레이 이외(레진필링 등)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크라운치료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최초계약	상해 보험계약일
	질병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③ 위 ①의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질병으로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① 치아우식증(충치)(K02)
- ②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K04)
- ③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K05)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으로 복합형태의 치아보존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보험
지식**

예시)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1개에 치아우식증(충치)이 발생하여 충전치료를 진단받고 충전치료가 종료되기 이전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진단받은 경우, 해당 치료 종료시 충전치료와 크라운치료 중 보험금이 더 큰 한가지의 치료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위 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⑥ 이미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새롭게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의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 이내의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를 보상하여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충전치료”, “크라운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충전치료”라 함은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는 직접충전과 구강 외에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하는 간접충전(인레이, 온레이)이 있습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크라운치료”라 함은 치관장착(Crown)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치아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③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동) 장애(K00)
 - ② 매몰치 및 매복치(K01)
 - ③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 ④ 치은 및 무치성 치조 융선의 기타 장애(K06)
 - ⑤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K07)
 - ⑥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②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③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 ④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 ⑤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5. (보험금의 청구)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 가.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식)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나.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다.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위 ①의 ②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영구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유치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자연치를 말합니다.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치아보철물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아말감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 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레진필링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를 말합니다.
인레이/온레이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 도재 등의 재료로 구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5 | 치아보존치료비II(상해및질병)(유치,영구치) (크라운 무제한)(갱신형)(예약가입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 또는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당 유치 및 영구치에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항목별로 아래와 같이 보장합니다.

치아보존 치료항목		지급금액	보장한도
충전 치료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	한도 없음
	인레이 · 온레이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70%	
	아말감,글래스아이노머 및 인레이 · 온레이 이외(레진필링 등)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크라운치료	치아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2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위 ①의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은 보장개시일 이후에 발병된 질병으로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① 치아우식증(충치)(K02)
 - ②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K04)
 - ③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K05)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치주질환)으로 복합형태의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 중 가장 높은 한 가지의 치료항목의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보험
지식**

예시)

피보험자가 상악 어금니 1개에 치아우식증(충치)이 발생하여 충전치료를 진단받고 충전치료가 종료되기 이전에, 의사의 진단에 의하여 동일한 치아에 크라운치료를 진단받은 경우, 해당 치료 종료시 충전치료와 크라운치료 중 보험금이 더 큰 한가지의 치료항목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으로 1개의 치아에 2회 이상의 치아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사고로 보아 1회에 한하여 위 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치료가 종료된 날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80일이 경과하여 치아치료를 개시한 경우에는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⑥ 이미 치아보존치료를 받은 유치 및 영구치에 대하여 새로운 상해 또는 질병(치아우식증, 치주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새롭게 치아보존치료를 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의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종료 후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 이내의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를 보상하여드립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입증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충전치료”, “크라운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충전치료”라 함은 치아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에 손상된 부위를 원상 회복시켜 형태학적, 기능적 복구를 도모하는 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재료를 직접 수복하는 직접충전과 구강 외에서 수복물을 제작하고 접착제를 사용하여 치아에 수복물을 접착하는 간접충전(인레이, 온레이)이 있습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크라운치료”라 함은 치관장착(Crown)치료를 말하며 치아에 손상이 생겨 삭제량이 많은 경우 또는 신경치료로 인해 치아의 강도가 약해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치아전체를 금속 등의 재료로 씌우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③ “충전치료” 및 “크라운치료”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4.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또는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분류코드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아의 발육 및 맹출(이동) 장애(K00)
 - ② 매몰치 및 매복치(K01)
 - ③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 ④ 치은 및 무치성 치조 융선의 기타 장애(K06)
 - ⑤ 치아안면이상(부정교합을 포함)(K07)
 - ⑥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 ③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치아수복물 또는 치아보철물을 수리, 복구, 대체하는 경우
 - ②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③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제3대구치(사랑니)에 대한 치아 치료
 - ④ 치열교정준비 등 다른 치과 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 치료를 한 경우
 - ⑤ 라미네이트 등 미용상의 치료

5. (보험금의 청구)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치과치료관련 증명서
 - 가. 치아 치료에 관한 진료기록사본 및 진료확인서(회사양식)
 -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상태
 - 직접적인 치아치료원인
 - 진단확정일, 진료시작일, 진료종료일, 진료일수
 - 나. 치료 전후의 X-ray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다. 구강 내 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독자료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위 ①의 ②의 치과치료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 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의 최초계약 보험기간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붙임> 용어의 정의

용 어	정 의
영구치	유치(젖니)가 빠진 후 나는 자연치를 말합니다. 단,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치 등 모양 이상치아)는 제외합니다.
유치	젖먹이 때 나서 아직 영구치가 나지 않은 자연치를 말합니다.
자연치	타고난 이를 인공치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자연적으로 난 치아를 말합니다. 단, 자연적으로 난 치아 중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및 치아보철물을 제외한 부분에 한합니다.

용 어	정 의
치아우식증(충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2(치아우식증(충치)), K04(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충치라고 합니다. 치아우식증(충치)은 치아의 석회 성분이 녹거나 파괴되었을 때 또는 이로 인한 치수염 등의 원인으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이 손상되어 치아를 잃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K05(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잇몸질환))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잇몸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질환(잇몸질환)은 크게 치은(잇몸)염과 치주염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염증 반응이 치은 조직에만 국한됐을 때는 치은염이라 하고, 치은염을 방치해 치주 인대와 치조골이 파괴되었을 때를 치주염이라 말합니다.
치아수복물(齒牙修復物)	레진필링, 인레이온레이, 크라운치료로 치아의 손상된 부위를 재생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치과용 충전물 또는 주조물을 말합니다.
치아보철물	치아의 손상된 기능과 구강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결손된 자연치나 치아의 치관부 및 그 주위조직을 대체하는 인공적 장치물로, 가철성의치(틀니, Denture),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Bridge), 임플란트(Implant)를 포함합니다.
아말감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구리, 주석, 은 등의 합금과 수은의 혼합체를 말합니다
글래스아이노머	치아를 보존하는 치료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산 부식처리가 필요없는 화학접착으로 수복하는 재료를 말합니다.
레진필링	치아 충전 또는 수복 재료 중 치과용 레진을 치아에 직접 수복하는 충전치료를 말합니다.
인레이/온레이	치아의 손상된 부위에 구강 외에서 본을 떠 금이나 도재 등의 재료로 구조물을 제작하고 시멘트를 사용하여 합착하는 간접적으로 충전 치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36 | 통합형 뇌관련진단비II(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통합형 뇌관련진단비II(뇌전증)
2. 통합형 뇌관련진단비II(주요상해뇌출혈)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1. (보장의 범위)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상해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1회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세부보장	지급사유	지급금액
통합형 뇌관련진단비II (뇌전증)	뇌전증 진단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통합형 뇌관련진단비II (주요상해뇌출혈)	주요상해뇌출혈 진단시	이 세부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4.("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뇌전증"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6.(특별약관의 소멸) ④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5.("주요상해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②에서 정한 사망 후 주요상해뇌출혈의 진단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일로 확정하여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6.(특별약관의 소멸) ④에서 정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4. ("뇌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전증" 이라 함은 「통합형 뇌관련질환II 분류표」(별표 125)통합형 뇌관련질환II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뇌전증, 뇌전증 지속상태를 말합니다.
- ② 뇌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전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전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5. (“주요상해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주요상해뇌출혈”이라 함은 통합형 뇌관련질환Ⅱ분류표(별표12 5)통합형 뇌관련질환Ⅱ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을 말합니다.
- ② 주요상해뇌출혈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컴퓨터단층촬영(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주요상해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주요상해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각의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각각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세부보장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세부보장에 대한 회사의 보장책임이 모두 소멸된 경우에는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③ 위 ②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보장책임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위 ②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7 |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및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3.(“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급여촬영을 받은 경우 연간 1회한도로 촬영 의료행위 당 다음과 같이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를 지급합니다.

①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구분	경과기간	지급금액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미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50%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이상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② 갱신형(갱신계약)의 경우

구분	지급금액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위 ①의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3.(“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에서 정한 촬영을 받은 연, 월, 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급여촬영”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급여촬영”이라 함은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생리화학적, 기능적 영상을 3차원으로 얻는 핵의학 영상법

의료행위

의료행위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급여촬영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합니다)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이하 ‘의료급여’라 합니다)의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로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급여촬영은 진료비세부내역서 상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 분류번호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 및 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의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⑤ 위 ④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을 사용하는 촬영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촬영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계산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8 | 전신마취수술비(4시간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4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전신마취수술비(4시간이상)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상해 또는 질병”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상해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급 감염병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신마취”는 수술1회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전신마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전신마취”라 함은 의사의 관리 하에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을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별표167)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순 정맥마취,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취 방법은 제외하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신마취는 제외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전신마취” 의료행위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전신마취”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시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2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20회 = 360분
 → 마취시간 4시간이상에 해당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1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10회 = 210분
 → 마취시간 4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1)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으로 인한 질병
 - ②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③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⑧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전신마취 종류/ 마취시간/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취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포함)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무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9 | 전신마취수술비(6시간이상)(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6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전신마취수술비(6시간이상)로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상해 또는 질병”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상해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급 감염병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신마취”는 수술1회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전신마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전신마취”라 함은 의사의 관리 하에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을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별표167】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순 정맥마취,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 마취 방법은 제외하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신마취는 제외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 체결시점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전신마취” 의료행위의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당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전신마취”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시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2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20회 = 360분

→ **마취시간 6시간 이상에 해당**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1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10회 = 210분

→ **마취시간 6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주1)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4.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①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으로 인한 질병
 - ②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③ 마약, 습관성 약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 ④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 ⑤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 ⑥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 ⑦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 ⑧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전신마취 종류/ 마취시간/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취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포함)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0 |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보험금(응급환자)(연간1회한)(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1대중대질환"으로 인해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도로 내원 1회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단,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연간"이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최초 보험기간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전일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3. ("11대중대질환"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11대중대질환"이라 함은 「11대중대질환 분류표」(별표168)11대중대질환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질환을 말합니다.
- ② "11대중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11대중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응급실”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종합병원에 설치된 응급실을 말합니다. 단,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인용
문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5. (“응급환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별표5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분류표 참조)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6.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41-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 4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41-1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던 중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정신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정신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5.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6.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단, 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위의 사고증명서는 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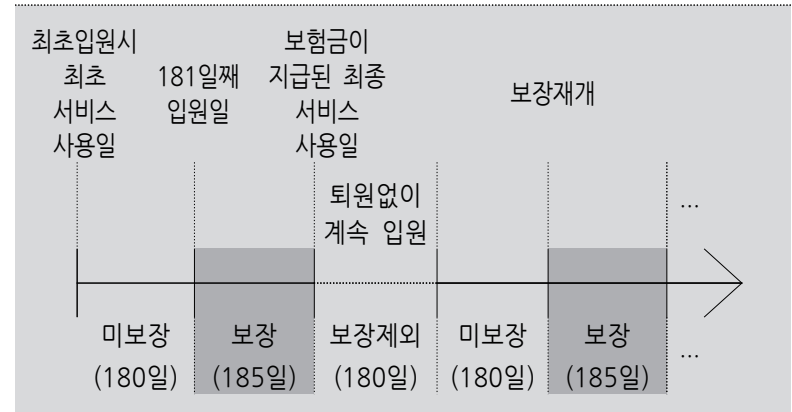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18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6.(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1일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으로 지급합니다.
- ② ①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 한도 내에서 산정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1.(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최종 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 서비스 사용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 서비스 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지급일수는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던 중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1.(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② 성병
 - ③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④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⑤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⑥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⑦ 정상분만, 치과질환

4.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정신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정신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정신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6.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인용
문구

의료법 제4조의 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향후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7.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 (회사 양식)
- ② 사고증명서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함)
단, 6.(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위의 사고증명서는 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8.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9.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0.(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2종, 4종, 8종,
9종, 10종, 11종)

제4장 비용손해
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49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1469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90세/100세 만기 또는 10/15/20년 만기

1 | 의료사고법률비용(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의료사고법률비용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 ②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공제계약

용어
풀이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 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의료사고”, “의료기관”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②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 ③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6. (보험금의 청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한 서류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 학교폭력피해위로금(사이버폭력포함)(비갱신형)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피보험자라 함은 4. (“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정한 ‘학생’에 한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이후 피보험자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에서 정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 합니다)의 심의결과에 따라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의 제1항에서 정한 다음 조치가 결정된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구분	지급금액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20%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피보험자에 대하여 2개의 조치(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가 동시에 부과될 경우, 2개의 조치에 대한 각 지급금액을 함께 지급합니다.



인용
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심의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고 학교장 및 관할 경찰서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및 교육지원청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교육장이 없는 경우 제12조 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한 기관의 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생략〉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결정된 이후에 동일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등으로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의 제1항에서 정한 “학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혹은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준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하나의 보험사고로 보고 이미 결정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기준으로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4.(“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정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어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기준으로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조치(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가 폐지 또는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사유의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④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이하“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어 보험금 지급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4. (“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며,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학생”이라 함은 위 ①에서 정한 학교에 입학, 등록하여 수학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④ 위 ③의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 ⑤ 위 ③의 “사이버폭력”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합니다)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 딥페이크 영상 등(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합니다)을 제작·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④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4. (“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정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점에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1.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학교장 확인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 등)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의 ② 사고증명서 중 학교장 확인서는 4. (“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규정한 학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통지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이 없는 경우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관으로 합니다.)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 그 외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7.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1. (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하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이라 합니다)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격상실”을 알린 경우 회사는 통보받은 날부터 이 특별약관은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상실” 시점 당시 적용한 계약자 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보통약관 21.(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계약을 체결할 때 1.(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2종, 4종, 8종,
9종, 10종, 11종)

제5장 배상책임
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49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1469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90세/100세 만기 또는 10/15/20년 만기

1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V(실손)(갱신형) 특별약관

1.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단, 이 특별약관의 보장대상 주택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또는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 한합니다.
- ②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 ③ 위 ① 및 ②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 ④ 피보험자의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위 ①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통보된 주택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⑫에도 불구하고, ④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통보하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거주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대인배상책임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일으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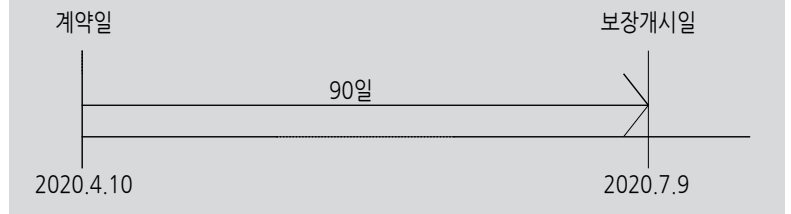
② 위 ①에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 (최초계약)	누수 이외의 사고 보험계약일 누수사고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이하 “누수사고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누수사고 보장개시일

-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갱신형 (최초계약)	누수 이외의 사고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
	누수사고	누수사고 보장개시일 (단, 피보험자가 누수사고 보장개시일 이후 출생한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2. (피보험자의 범위)

- ① 1.(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 ② 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 ③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 ④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인용
문구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② 위 ①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3. (누수사고의 정의)

이 특약에서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를 비롯한 주택 건물,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및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Sprinkler)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 피보험자가 14.(손해방지 의무) ①.①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14.(손해방지 의무) ①.②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제에 관한 비용
 -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가 15.(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② 및 ③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용어
풀이

유익하였던 비용

물건의 개량·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할 때, 잘못된 신청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신청인의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법원에 납부하는 공탁금을 대신하는 보험상품을 공탁보증보험이라 하며, 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공탁보증보험료라 말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⑤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⑥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⑦ 위 ⑥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⑧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⑪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⑫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⑬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애(신체의 상해, 질병,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 ⑭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⑮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⑯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⑰ 항공기, 선박, 차량 (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자전거 등)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을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⑱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⑲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용어
풀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차량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세그웨이류,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이동장치(시속25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제한 및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6. (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18.(보험금의 부담)을 따릅니다.
- ② 위 ①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위 ①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7.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은 대인배상책임은 없는 것으로 하고, 대물배상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① 4.(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대인, 대물(누수사고) 및 대물(누수 이외의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배상 및 대물(누수 이외의 사고)배상 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 ② 4.(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㉗, ㉘ 또는 ㉙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③ 4.(보험금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의 ㉚ 또는 ㉛의 비용 : 이 비용과 위 ①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8.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③ 위 ① 및 ②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특별약관의 해지)

-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보통약관 14.(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 ②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8.(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④ 위 ③.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① 회사가 최초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②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 ③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④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위 ③에 의한 특별약관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위 ③.① 및 ②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위 ④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이 여러차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10.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

용어
풀이

계약자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11. (특별약관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별약관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2. (양도)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를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13.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 ②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③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①의 ① 내지 ③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위 ①, ③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및 ②의 ㉔ 또는 ㉕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①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 ②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 ③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 ① 위 ①.①의 경우에는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 ② 위 ①.②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 ③ 위 ①.③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15.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시

회사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피보험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② 및 ③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6.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보험금청구서(회사양식)
- ②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③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④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17.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16.(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적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가지급보험금

보험금이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가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로 피보험자가 필요로 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하는 임시 교부금을 말합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77】(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18.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산식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용어
풀이**

공제계약

공제 사업을 실시하는 경영 주체와 공제 계약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공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위 ①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위 ①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시

보험금의 분담 예시

이 계약(A)의 가입금액 1억 원, 이 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B)의 가입금액 1억 원, 손해액 1.6억 원 가정하는 경우, 이 계약(A)의 보험금의 분담액은 다음과 같다.

$$1.6\text{억} \times \frac{1\text{억}}{1\text{억} + 1\text{억}} = 0.8\text{억 원}$$

19. (사기에 의한 계약)

-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취소된 경우에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0.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 ②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위 ①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① 및 ②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21. (조사)

-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위 ①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2.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위 ①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보험
지식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회사가 위 ①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위 ①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회사가 위 ①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23.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시 누수사고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입니다.

24. (특별약관의 소멸)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2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은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2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4종을 제외한 갱신형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용어
풀이

신체

신체라 함은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특별약관

(2종, 4종, 8종,
9종, 10종, 11종)

제6장 산모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49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1469

1 | 엄마 상해사망(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엄마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 ①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2.(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엄마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 모성사망(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신부인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별표27)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참조)에서 규정한 질환으로 인하여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42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모성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2.(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모성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 임신·출산질환치료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중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분만 후 42일 이내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신부인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임신·출산관련질환 분류표(별표30)임신·출산관련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임신·출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이하 “임신·출산질환수술”이라 합니다) 또는 4일이상 입원(이하 “임신·출산질환입원”이라 합니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장합니다.

- ① “임신·출산질환수술”의 경우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임신·출산질환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의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임산·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합니다.
- ②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임산·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은 피보험자가 임산·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임산·출산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임산·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산·출산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임산·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임산·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임산·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4일째 입원일	②“임산·출산질환입원일당 (4일이상12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	4일째 입원일부터 보장재개
	퇴원없이 계속 입원	...
보장 (120일)	보장제외 (180일)	보장 (120일)
		...

- ④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임산·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의 퇴원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①의 규정에 따라 임산·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임산·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 에 대해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임산·출산질환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임산·출산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임산·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임신·출산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 유산치료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유산 분류표(별표31)유산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유산”으로 진단확정되고 유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이하 “유산수술”이라 합니다)또는 4일이상 입원(이하 “유산입원”이라 합니다)한 경우 다음과 같이 보장합니다.

- ① “유산수술”의 경우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유산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유산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의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유산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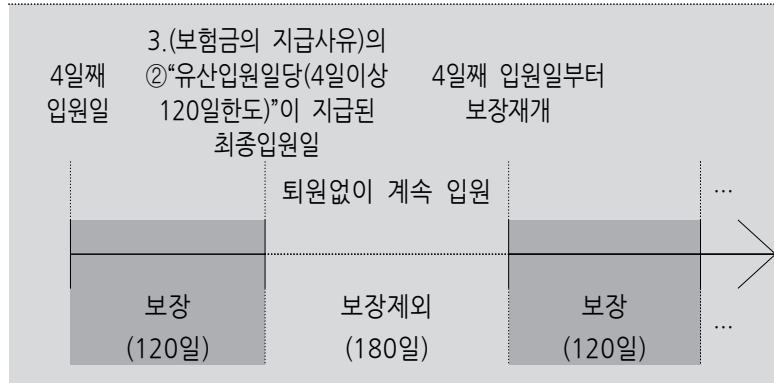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유산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합니다.
- ②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유산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은 피보험자가 유산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유산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유산에 대한 입원이라도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유산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유산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유산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보험
지식



- ④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유산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① 및 ②를 적용하여 유산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유산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에 대해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유산입원일당(4일이상12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유산”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유산”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 임신·출산질환치료비II(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분만 후 42일 이내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신부인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임신·출산관련질환 분류표(별표30)임신·출산관련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임신·출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이하 “임신·출산질환수술”이라 합니다) 또는 1일이상 입원(이하 “임신·출산질환입원”이라 합니다)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장합니다.

- ① “임신·출산질환수술”의 경우 수술 1회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임신·출산질환수술비”로 지급합니다.
- ②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의 경우 입원첫날부터 입원1일당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의 10%를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으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 한도로 합니다.
- ②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은 피보험자가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임신·출산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가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상기 ②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임신·출산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3.(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②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 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 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 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은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보험기간 만료 후 최초의 퇴원 전까지의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①의 규정에 따라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②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에 대해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임신·출산질환입원일당(1일이상120일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임신·출산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② 위 ①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③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6.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임신·출산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입니다.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 임신·출산질환(유산제외)통원비(10회한도) (일시납/전기납)특별약관

1. (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① 임신·출산질환(유산제외)통원비(상급종합병원)(10회한도)(일시납/전기납)
- ② 임신·출산질환(유산제외)통원비(상급종합병원제외)(10회한도)(일시납/전기납)

2.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3. (보장의 시기 및 중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분만 후 42일 이내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4.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신부인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임신·출산질환 분류표(별표30) 임신·출산관련질환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임신·출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임신·출산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다음과 같이 임신·출산질환(유산제외)통원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임신·출산질환(유산제외)통원비의 지급횟수는 각 세부보장의 통원당 1일 1회에 한합니다.

세부보장	지급사유	지급금액
임신·출산질환(유산제외)통원비(상급종합병원)(10회한도)	상급종합병원 통원시	통원 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10회한도)
임신·출산질환(유산제외)통원비(상급종합병원제외)(10회한도)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 통원시	통원 1회당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10회한도)

5.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4.(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6.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인용문구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법령 개정에 따른 특별약관 내용의 변경)

- ① 6.("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의료법 및 관련 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통원일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기존 특별약관내용에 상응하는 "상급종합병원 통원"과 관련된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리며,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의 변경사항을 ③에 따라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가 폐지되는 경우
 - ② 법령의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제도의 변경으로 6.("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 ③ ① 및 ② 이외의 법령의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②에 따라 안내할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특별약관 내용 변경 절차 등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 ④ ②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특별약관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약관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보장내용 및 보험가입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⑥ ②에 따라 특별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납입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내용 변경 시점 이후 잔여보험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여야 할(또는 반환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임신·출산·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임신·출산·질환으로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임신·출산·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임신·출산·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 임신·출산·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 이는 임신·출산·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통원으로 봅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 특정임신중당뇨병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임신 22주 이내에 한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임신중당뇨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임신중당뇨병진단비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특정임신중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임신중당뇨병’이라 함은 「특정임신중당뇨병 분류표」(별표 111) 특정임신중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임신중 생긴 당뇨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임신중당뇨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임신중당뇨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무효)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위 ①의 ‘당뇨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임신중 당뇨병(O24), 당뇨병(R81), 1형 당뇨병(E10), 2형 당뇨병(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E13), 상세불명의 당뇨병(E14)을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임신중당뇨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8 |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임신중독증(자간포함)」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임신중독증(자간포함)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임신중독증(자간포함)”이라 함은 「임신중독증(자간포함) 분류표(별표57)임신중독증(자간포함)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임신중독증(자간포함) 분류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에 정한 질병은 제외합니다.
 - ①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O10)
 - ②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증(O11)
 - ③ 고혈압을 동반하지 않은 임신성[임신-유발] 부종 및 단백뇨(O12)
 - ④ 임신[임신-유발] 고혈압(O13)
 - ⑤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O16)
- ② 임신중독증(자간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또한 이 진단은 유효한 각종 검사를 기초로 하여야하며, 회사가 「임신중독증(자간포함)」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의무기록지(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임신중독증(자간포함)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9 | 태반조기박리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임신 22주 이내에 한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태반조기박리」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태반조기박리진단비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태반조기박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태반조기박리」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태반조기박리」【별표58】태반조기박리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태반조기박리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태반조기박리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0 | 여성산과관련 자궁적출수술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분만 후 42일까지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분만 후 42일 이내에 6. (“자궁적출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의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27】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 관련 특정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유산된 임신,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 장애,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분만,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을 말합니다.
- ②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6. (“자궁적출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별약관의 「자궁적출수술」이라 함은 【별표59】자궁적출수술 분류표에서 정한 자궁을 적출하는 수술(외과적으로 제거함)로 의사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절제(切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자궁적출수술」은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위 ①의 「자궁적출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 ④ 위 ①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 ② 천자(穿刺) 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⑦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⑧ 자궁경부 원추형 절제술(Conization of cervix)

용어
풀이

절단 :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 :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흡인 :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 : 바늘 또는 관을 꽃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이란?

- 의료기구를 사용 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의 조작이 없는 의료행위
 (예 : 절개술, 배농술, 단순 봉합술 등)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여성산과관련 자궁적출수술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1 | 다운중후군양육자금(매년10년간지급)(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임신 22주 이내에 한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임신부인 피보험자로부터 태어난 자녀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운중후군」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운중후군양육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진단확정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영업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구분	지급금액(1회 지급액)	지급방법
다운중후군양육자금 (매년10년간지급)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10년동안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확정지급(총10회)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다운중후군진단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일시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과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4. (“다운증후군”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다운증후군」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운증후군」(【별표42】다운증후군 분류표 참조)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다운증후군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때 '임신과정 또는 산전검사에서 다운증후군에 대한 태아이상 가능성이 발견되거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다운증후군진단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2 | 분만전후출혈수혈치료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분만 후 42일 이내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분만전후출혈’로 진단 확정되고 그 ‘분만전후출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혈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분만전후출혈수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분만전후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분만전후출혈’이라 함은 「분만전후출혈 분류표」(【별표108】분만전후출혈 분류표)에서 정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분만 후 출혈을 말합니다.
- ② “분만전후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임상학적 기준을 근거로 혈청 요산 검사, 관절액 채취 및 평광현미경 검사, 기타 혈액 검사 등의 검사 소견 및 초음파, 이중에너지 컴퓨터 단층촬영, 방사선 검사 등의 영상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분만전후출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수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이 특별약관에서 '수혈'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분만전후출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사람의 혈액(피)나 그 일부 성분을 환자의 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분만전후출혈수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3 | 양수과다증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양수과다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양수과다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양수과다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양수과다증'이라 함은 「양수과다증 분류표」(별표109)양수과다증 분류표)에서 정한 양수과다증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양수과다증'이란 일반적으로 초음파검사서 '양수지수'가 24cm보다 큰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양수지수

산모의 배꼽을 중심으로 자궁강을 4등분하여 구역을 나누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각 구역마다 가장 깊은 양수강 내의 수직깊이를 합산한 수치를 말합니다.

- ③ '양수과다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양수과다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양수과다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4 | 양수과소증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양수과소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양수과소증진단비를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양수과소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양수과소증'이라 함은 「양수과소증 분류표」(별표110)양수과소증 분류표)에서 정한 양수과소증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의 '양수과소증'이란 일반적으로 초음파검사에서 '양수지수'가 5cm 보다 작은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양수지수

산모의 배꼽을 중심으로 자궁강을 4등분하여 구역을 나누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각 구역마다 가장 깊은 양수강 내의 수직깊이를 합산한 수치를 말합니다.

- ③ '양수과소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양수과소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양수과소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5 | 출산전선별검사이상소견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태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 “이상소견”으로 최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출산전선별검사이상소견진단비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동일한 임신에 한하여 6.(“이상소견”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이상소견”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③ 출산전선별검사 결과지
 - ④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⑤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 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6. (“이상소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 “이상소견”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출산전 선별검사에 따른 이상소견 분류표」(별표164)출산전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출산전 선별검사

용어 풀이 임신 중 태아의 선천기형 등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로써, 일반적으로 출산전 검사라 합니다.

- ② “이상소견”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7.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출산전선별검사이상소견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6 | 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임신부)관리진단비(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관리”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관리진단비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관리”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관리”이라 함은 「특정태아이상으로 인한 산모관리 분류표」(별표123)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관리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관리”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관리’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관리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 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7 | 연속혈당측정기 제공 특정임신중당노병진단비 (일시납/전기납)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될 자가 계약 체결시에 「출생전자녀」(이하 “태아”라 합니다)인 경우, 태아의 산모(임신 22주 이내에 한합니다.)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의 첫날에 시작하여 분만시까지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회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임신중당노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6.(“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의 정의)에서 정한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를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7.(“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의 구성 및 제공) ②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을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 대신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5. ('특정임신중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임신중당뇨병'이라 함은 「특정임신중당뇨병 분류표」(별표 111)특정임신중당뇨병 분류표에서 정한 임신중 생긴 당뇨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임신중당뇨병"의 진단확정은 의로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임신중당뇨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의 정의)

- ①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대신하여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 세부내용)」(별표 186)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 세부내용 참조)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제후회사가 직접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위 ①에서 제후회사라 함은 회사와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의 제공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7.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의 구성 및 제공)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를 제후회사를 통해 보험수익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4.(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②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고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① 회사 또는 제후회사의 책임 있는 원인으로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②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면서, 보험금 청구시점에 피보험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 ③ 보험수익자가 위 ①에서 정한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 이외의 추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제후회사가 제공하기로 한 프로그램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비용은 제후회사에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위 ①의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의 세부내용은 생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⑤ 위 ① 및 ③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를 이용할 수 없거나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의 일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중지를 신청한 경우 제후회사는 보험금에서 그 때까지 이용한 프로그램 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프로그램 비용은 회사와 제후회사간 업무협약을 맺은 환불가격에 따릅니다.

8. (특별약관의 무효)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 이전에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② 위 ①의 '당뇨병'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임신중 당뇨병(O24), 당뇨병(R81), 1형 당뇨병(E10), 2형 당뇨병(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E13), 상세불명의 당뇨병(E14)을 말합니다.

9.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임신중당뇨병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4.(계약의 소멸),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2종, 4종, 8종,
9종, 10종, 11종)

제7장 부양자관련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49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1469

용어	정의
갱신형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20년만기 자동갱신
비갱신형	만기까지 갱신되지 않고 보장이 지속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시) 80세/90세/100세 만기 또는 10/15/20년 만기

1 | 부양자 상해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양자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보통약관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②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2.(보험금의 지급사유)'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부양자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 부양자 상해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양자 상해 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보통약관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부양자 상해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 부양자 질병사망(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양자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보통약관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2.(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부양자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④ 위 ③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로 인해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32.(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의 규정을 따릅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4 | 부양자 질병80%이상후유장해(최초1회한) (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2.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부양자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계약체결시 보통약관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3.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해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4.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2.(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부양자 질병80%이상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5.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보통약관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 | 부양자 보험료납입지원II (3대질병진단, 80%이상후유장애)(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2.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부양자 보험료납입지원 II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②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③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④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⑤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 ② 위 ①,③에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 ③ 계약체결시 보통약관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에 장해판정 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③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이미 이 특별약관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위 ⑥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한 후유장애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는 위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로 봅니다.

5.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암”이라 함은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별표10-1)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암(유사암제외)”이라 함은 ①에서 정한 “암”에서 ③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④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별표10-2)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참조) 중 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험
지식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⑤ “암(유사암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위 ⑤에 따른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시

암(유사암 제외)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6.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뇌졸중”이라 함은 「뇌졸중 분류표」(별표21)뇌졸중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거미막하 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7.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 23)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후속 심근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①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8. (특별약관의 취소)

-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 ②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유사암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그 진단확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부양자 보험료납입지원Ⅱ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유사암 제외)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른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② 암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유사암 제외)이 치료된 후 동일부위에 그 암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암(유사암 제외)이 발생하여 진단확정된 경우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그 암(유사암 제외)이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때에는 보험계약 청약일 이후 5년(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⑤ 위 ④의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②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9.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계약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따릅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활(효력회복)시 15세이상인 경우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10.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부양자 보험료납입지원Ⅱ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합니다.

11.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1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 부양자 골다공증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2.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T-score가 -2.5 이하인 골다공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 금액을 부양자 골다공증진단비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골다공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골다공증"이라 함은 「골다공증 분류표」(별표165)골다공증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골다공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표준적인 의학적 골다공증진단방법(요추, 대퇴골 경부, 대퇴골 전체를 측정하고 가장 낮은 T-score로 진단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내려져야 하며, 문서화된 진료 기록 또는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DXA)으로 측정하는 골밀도 기기의 결과지를 기초로 내려져야 합니다. 이중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법이 더 이상 골다공증진단방법으로 사용되지 않고, 대한골대사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골다공증 진료지침 또는 그에 준하는 지침에서 권장하는 골다공증진단방법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지침을 따릅니다. 또한 회사가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특별약관의 소멸)

- ①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부양자 골다공증진단비를 지급한 경우에 그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위 ① 이외의 원인으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 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7.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 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8.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보통약관 5.(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② 및 15.(계약 후 알릴 의무)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7 | 부양자 골다공증성 골절진단비(비갱신형/갱신형)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부양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2.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료 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

3.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다공증성 골절분류표(별표166)골다공증성 골절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골다공증성골절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부양자 골다공증성 골절진단비로 지급합니다.

4.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부양자 골다공증성 골절진단비로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다공증성 골절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3.(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5.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그때까지 적립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6. (특별약관의 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제도성 특별약관 [10.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및 37.(중도인출금)의 중도인출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도성

특별약관

(2종, 4종, 8종,
9종, 10종, 11종)

어려운 용어는 프로미라이프 용어사전 참고	49
인용 법규는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참고	1469

1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1. (계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합니다),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보험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중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위 ①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서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를 포함합니다.

- ③ 위 ②의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 ①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②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 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③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④ 위 ②의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이 이후 변경될 경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⑤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고처리 확인원 등으로 결정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의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8.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다음 각 목의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한다.

- 1) 승용자동차
- 2) 승합자동차
- 3) 화물자동차
- 4) 특수자동차
- 5) 이륜자동차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시

퍼스널모빌리티(세그웨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3.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보통약관과 동시에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1. (보험료 납입)

-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 ② 위 ①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18.(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3. (보험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3 | 선지급 서비스 특별약관

1. (적용대상)

- ① 이 선지급서비스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을 부가하는 보통약관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이어야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통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2개월 이전까지로 합니다.
- ③ 보통약관에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특별약관(이하 “사망보장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2.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의료법 제3조에 정한 국내의 종합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실시한 진단결과 여명이 6개월 이내라고 판단한 경우에 회사의 신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망보험금의 50%를 「선지급 사망보험금」(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여명

용어
풀이

피보험자의 남은 예상 생존기간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이 지급일에 감액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감액부분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이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 사망보장 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아도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기 전에 사망보장 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가 있어도 이를 없었던 것으로 보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사망보장 특별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 지급된 때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명기간 상당분의 이자 및 보험료를, 또 보통약관에 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원리금 합계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⑥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액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의 사망보장 특별약관의 사망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 (보험금의 지정대리 청구인)

- ① 계약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가 미리 지정 한 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이 7.(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이 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인

인용
문구

4.(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의 규정에 따라 변경 지정한 다음의 자

- ①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② 보험금 청구시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계약자 또는 지정대리청구인의 고의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2.(지급사유)의 ①에 해당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6. (특별약관의 보험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없습니다.

7. (보험금의 청구)

- ①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 청구인은 위 1.(적용대상)에 정한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중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발급한 진단서)
 -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④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지정대리 청구인이 청구할 경우)
 - ⑤ 기타 피보험자 또는 지정대리 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 등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8. (보험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위 7.(보험금의 청구)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에 조사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위 ①의 규정에 따라 지급사유에 조사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가 회사로부터의 사실 조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회답 또는 동의를 거부한 때에는 그 회답 또는 동의를 얻어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의사에 의한 피보험자의 진단을 요구한 경우에도 진단을 받지 않은 때에는 진단을 받고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위 ①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9.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사망을 보장하는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4 | 특정 신체부위 ·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을 제한할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회사의 계약사정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정신체부위 또는 특정질병으로 제한하며, 보장제한 설정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④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 ① 2.(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①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 ② 2.(특별면책조건의 내용) ①.②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2. (특별면책조건의 내용)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장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를 보장하는 특별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① 「별표70」특정부위·질병분류표 ① 특정부위)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② 「별표70」특정부위·질병분류표 ② 특정질병)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 ② 위 ①의 부담보 기간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개월부터 5년” 또는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사정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당사의 보험계약(이하 “유사계약”이라 합니다)이 보험계약 청약일 현재 유지중이거나, 보험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 종료일 이내에서 보험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적용하고, 유사계약에서 정한 질병과 동일하거나 축소된 범위로 계약의 부담보 설정 범위를 정하며, 유사계약이 다수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적용합니다. 단, 유사계약 청약일 이후 위 ①.① 또는 ①.②에서 정한 질병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치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추가(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 보장 범위의 변경 또는 확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④ 위 ②에서 회사가 부담보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경우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 ①.①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및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①.②에서 정한 특정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 청약일 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 청약일 현재 부담보 기간을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유사계약이 유지중이거나, 보험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 청약일과 보험계약 청약일 사이에 위 ①.① 또는 ①.②에서 정한 질병으로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의 청약일은 유사계약의 청약일로 봅니다.

- ⑤ 위 ④의 “추가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① 검진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
 - ②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⑥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한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① 위 ①.①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위 ①.②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③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⑦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부담보 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가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제 사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 ⑨ 위 ①의 특정부위와 특정질병은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3. (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부활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29.(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5 | 출생 전 자녀가입 특별약관

1.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정의
태아	계약을 체결 할 때에 출생하지 않은 자(자녀)로 피보험자가 될 자를 말합니다.
임신부	위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여성을 말합니다.
출생일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출생일로서 주민등록번호 앞의 6자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생예정일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기재된 출생예정일 또는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출생예정일을 말합니다.
태아보장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출생시점(출산 또는 분만 과정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포함)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태아위험보장	태아보장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고 계약일로부터 출생시점까지 발생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태아보장기간 이후에도 태아보장기간 중에 발생한 위험을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계약의 체결 및 효력)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이 특별약관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에 시작하여 4.(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를 한 기간까지 적용됩니다.
- 회사는 보통약관 18.(보험계약의 성립)의 ②에도 불구하고, 태아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 승낙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임신부의 가입연령 및 건강상태, 직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위 ③에 따라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의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의 범위)

-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로 될 자가 태아인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 위 ①의 태아는 출생을 조건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소급하여 피보험자가 됩니다.

4. (출생통지)

- 계약자는 태아가 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 회사의 위 ①의 알림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합니다.
 - 피보험자의 성별
 - 출생일
 - 출생일 기준의 태아보장기간 및 출생일 이후의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
- 회사는 위 ①의 알림 및 위 ②의 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5. (유산 또는 사산 등)

- 태아가 유산 또는 사산 등에 의해 출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다만, 피보험자가 부양자인 "부양자 관련 특별약관"은 제외합니다)을 무효로 합니다.
- 계약자는 위 ①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통지서(회사양식)
 - 의사 또는 조산원의 유산, 사산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증권
 - 최종보험료 영수증
- 회사는 위 ②의 알림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다만, 피보험자가 부양자인 "부양자 관련 특별약관"은 제외합니다)

6. (복수출생의 경우)

- ① 태아가 복수로 출생한 경우 계약자는 출생아 각각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따릅니다. 다만, 하나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출생아 중 1명만을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의 피보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의 피보험자가 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하고 동시에 출생한 자가 생존하여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한하여 동시에 출생한 자 가운데 1인을 새로운 피보험자로 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가 위 ②의 변경을 청구한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새로 피보험자로 될 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③ 보험증권
- ④ 위 ②의 변경을 회사가 승인한 때에는 원래의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급하여 그 변경이 행해진 것으로 하여 회사는 그때부터 변경후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 ⑤ 위 ① 내지 위 ②의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⑥ 위 ②의 피보험자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변경전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⑦ 계약자가 원래의 피보험자를 고의로 사망케한 경우에는 위 ②의 피보험자 변경을 하지 않습니다.

7. (보험나이 등의 계산 및 특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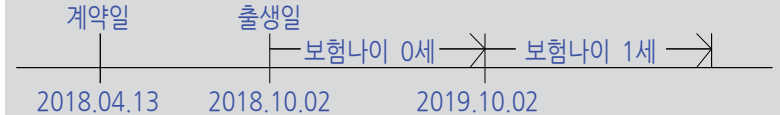
- ① 보통약관 23.(보험나이 등)에서 적용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출생예정일 이후에도 4.(출생통지)에서 정한 출생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출생예정일에 0세로 하고 그 출생통지에 따른 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출생일은 출생예정일로 합니다.
- ③ 이 계약의 계약해당일은 태아보장기간에는 최초계약일, 출생일 이후에는 출생일로 합니다.



예시

보험나이 계산

- 현재(계약일) : 2018년 4월 13일
- 출생예정일 : 2018년 10월 5일, 출생일 : 2018년 10월 2일



계약해당일 계산

출생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다만, 태아가 출생하기 전에는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적용합니다.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출생일: 2018년 10월 1일 => 계약해당일: 10월 1일
- 출생일: 2020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2월 말일

8. (보험료의 적용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일 경우 계약일부터 출생시점까지의 태아보장기간에 태아위험보장을 위한 보장보험료를 적용합니다. 또한 피보험자 남자 기준 보장보험료의 합계액과 피보험자 여자 기준 보장보험료의 합계액 중 높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② 출생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는 보험나이 0세 기준으로 변경하여 적용합니다. 그 보장보험료는 계약체결시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하며, 피보험자 남자 기준 보장보험료의 합계액과 피보험자 여자 기준 보장보험료의 합계액 중 높은 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③ 회사는 위 ②에 따라 변경되는 보장보험료에 대하여 출생예정일이 도래하기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위 ① 내지 ②에도 불구하고, 4.(출생통지) ②의 확정이 있는 경우 9.(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에 따라 보험료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보험료 정산에 관한 사항)

- ① 계약자가 4.(출생통지)의 ②에서 확정된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로 정산합니다.
 - ① 계약체결시 적용한 성별과 출생시 성별이 다른 경우
 - ② 계약체결시 출생예정일과 출생일이 다른 경우
- ② 위 ①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때는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부족한 금액이 있을 때는 계약자가 이를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위 ②의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 또는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할 금액은 위 ①에 따라 계산된 정산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정산보험료를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④ 위 ①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한 이후에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변경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정산예시

예시

- 출산예정일 : 계약일 + 6개월
- 태아등록(출생일확정)일 : 계약일 + 1년 (총 12회 납입)
- 보험료(월납) : 태아 100원 / 0세 10,000원
(태아보장 5,000원, 기타 5,000원)

구 분	예정일 1개월 전 출산	예정일 1개월 후 출산
납입 보험료	60,600원 (= 6회*100원 + 6회*10,000원)	
필요 보험료	70,500 (= 5회*100원 + 7회*10,000원)	50,700원(= 7회*100원 + 5회*10,000원)
정산 금액	9,900원 추징	9,900원 환급

10.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 태아 보장기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에 한하여 보통약관 26-1.(보험료 납입면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 피보험자추가 특별약관

1.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통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 이외에 추가되는 자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로 합니다.

2.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7 | 대리청구인 지정 서비스 특별약관

※ 해당 제도성 특별약관은 각 상품에 부가된 지정대리청구인 규정 또는 특약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1. (목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이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대리하여 청구하고 수령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2.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용어	정의
기명 대리청구인	계약자가 보통약관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7. (대리청구인의 지정)의 ①.①에 따라 기명으로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
무기명 대리청구인	계약자가 보통약관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7. (대리청구인의 지정)의 ①.②에 따라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을 말합니다.

3. (보험금의 청구)

- ① 7. (대리청구인의 지정)의 ①에서 지정된 대리청구인(이하, ‘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① 청구서(회사양식)
 - ② 사고증명서
 - ③ 대리청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 방법을 포함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 ④ 피보험자 및 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및 주민등록등본
 - ⑤ 기타 대리청구인이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위 ①.②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인용
문구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을 행하는 곳을 말합니다. 의료기관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정신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나누어집니다.

4.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7. (대리청구인의 지정)의 ①에서 지정된 대리청구인은 3.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5. (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의 ②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해당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인의 기명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대표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대표 대리인이 사망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가 아닌 대리청구인도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7. (대리청구인의 지정)의 ①.②에 따라 지정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2인 이상의 무기명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경우에는 그 중 한 명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위 ①에 따라 회사가 보험금을 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7. (대리청구인의 지정)의 ①에 따라 지정된 대리청구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였으나 보험금 청구 시점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배우자가 아닐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5. (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

-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 ② 이 특약의 적용대상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약으로 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질병이나 상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통약관 및 특약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6. (특약의 소멸)

위 5. (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의 ②에 따른 적용대상 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7. (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① ②에서 정한 대리청구인 지정 가능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인 지정)을 기명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무기명으로 3. (보험금의 청구)의 ①.④의 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지정된 무기명 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예시

【대리청구인 지정 예시】

- 기명 대리청구인
 - 계약자가 기명하여 지정 : (예시) **“김OO”**
- 무기명 대리청구인
 - 계약자가 특정인을 기명하지 않고 지정 : (예시)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

【무기명 대리청구인 판단 예시】

- 보험 가입 당시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당시 해당 서류상 배우자 A)로 지정한 후에 계약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어 대리청구하는 시점에 가족관계등록부 상 배우자가 B인 경우
→ 해당 시점 대리청구인은 3. (보험금의 청구)의 ①.④로 증명할 수 있는 배우자 B

- ② 위 ①에 따라 지정 가능한 대리청구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8. (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에 따른 변경 지정 또는 3. (보험금의 청구)에 따른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①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②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단, 위 ①.②에 따른 무기명 대리청구인 지정은 피보험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③ 위 ①에 따라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대리청구인 지정 신청서(회사양식)
 - ② 계약자의 신분증
 - ③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 계약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④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①.② 따라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③.③ 내지 ③.④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⑤ 위 ①에도 불구하고, 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5. (특약의 성립과 적용대상)의 ②에 따른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8. (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 ①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① 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② 계약자의 신분증
 - ③ 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 ④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7. (대리청구인의 지정)의 ①.②에 따라 계약자가 대리청구인을 무기명으로 변경 지정하는 경우에는 ①.③ 내지 ①.④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9.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8 | 전자서명 특별약관

1. (적용대상)

「이 전자서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보험계약에 적용됩니다.

2.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험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 ②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합니다)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인용
문구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약관교부 등의 특례)

-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부분)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권) 등(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령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약한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4.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 ① 계약자가 3.(약관교부 등의 특례)의 ①에서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령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위의 ①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위의 ① 또는 ②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교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9 | 특별조건부(표준하체 인수)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보험계약은 『해당계약』이라 합니다)



용어
풀이

표준체보험

건강상태에 따라 위험률을 할인, 할증하지 않은 일반 위험률을 적용하는 보험

표준하체

위험도가 높아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피보험자

- ② 이 특별약관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보통약관 25.(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보험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2. (특별약관의 내용)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3. (특별약관의 부가조건)

-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①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별약관보험료라 하며 계약체결시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할증위험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반위험률 보다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

②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내에 해당계약의 규정에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시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 기간 및 보험금지급비율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보험계약에 정한 지급보험금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100%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100%	100%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100%	100%	100%	80%	60%
4년이상 5년미만		100%	100%	100%	100%	80%
5년이상		100%	100%	100%	100%	100%

주) 위 보험금지급비율은 보험가입금액에 따른 표준체 지급액 대비 지급비율임

② 위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4.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는 해당계약의 납입기간 중에 해당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5. (특별약관의 변경)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감액완납보험

용어
풀이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가입금액을 감액하는 보험

연장보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정기보험(일정기간동안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변경하는 보험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0 | 갱신형 계약 자동갱신 특별약관

1. (적용대상)

- ① 이 특별약관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계약의 다른 특별약관 중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갱신형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적용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중 갱신형으로 보장되는 담보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통약관에서 별도로 규정된 내용을 따릅니다.



갱신형

용어
풀이

일정 기간을 주기로 보험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보장내용별로 갱신 주기를 기재하여 드립니다.

예시) 3년/10년/15년만기 자동갱신

2. (보험기간 및 자동갱신)

- ①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각각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② 갱신형 특별약관이 아래 ① 내지 ③의 조건을 충족하고 그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중전의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니다)과 동일한 내용으로 「그 갱신형 특별약관의 만기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에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① 「갱신될 갱신형 특별약관」(이하 “갱신계약”이라 합니다)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②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③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③ 위 ①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위 ①의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위 ③에도 불구하고 갱신시점에서 보통약관 보험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담보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미만일 경우 그 잔여기간을 보장기간으로 하여 갱신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회사는 위 ②, ③ 및 ④에 의하여 갱신형 특별약관이 갱신되는 경우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3. (자동갱신 적용)

- ①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에 대하여 가입시점의 약관을 적용하며(단,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또는 보험료를 개정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제도 또는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② 회사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해당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합니다.
- ③ ①의 법령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 제도적인 약관개정에 따라 약관이 변경되어 보장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③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통신수단)를 통해 확인하고,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형 특별약관은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자동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갱신일에 갱신형 특별약관은 만료됩니다.
- ⑤ 회사가 ③의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일에 갱신형 특별약관은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으로 갱신됩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갱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갱신형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갱신일 이후 납입한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4.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통약관 28.(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갱신계약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갱신계약은 해지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5.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11 |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1. (특약의 적용범위)

- ① 이 특약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인용
문구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세액공제)

-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로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로 중 기확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농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인용
문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1)부터 10)까지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희귀성난치질환등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시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2.(제출서류) ①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대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3.(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1.(특약의 적용범위) ①②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위 ①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①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①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위 ①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위 ①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19년 1월 15일~ 2019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19년6월1일~2019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③ 위 ②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4. (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2.(제출서류) ①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특약의 적용범위) ①②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1)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2020년 6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납입된 보험료만 2020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고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4.(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1.(특약의 적용범위) ①②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2.(제출서류) ①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1.(특약의 적용범위) ①②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준용규정)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12 | 장기보장성보험 적립부분 만기유지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

-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계약」(보통약관을 말합니다. 이하 “보험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별약관은 다음의 사항이 모두 충족된 보험계약에 대하여 만기유지환급금을 적용합니다.
 - ① 보험계약이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3호의 ‘순수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인 경우
 - ② 계약체결시점에 산출한 보험계약의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금”이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③ 보험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기간 종료시점까지 유지된 보험계약
- ③ 위②.②의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제1회 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에 이 보험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④ 위②.②의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라 함은 “제1회 적립보험료” 기준으로 적립보험료 납입기간과 납입주기를 곱한 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용어
풀이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 계산 예시

‘보험기간시작일’ 및 ‘납입주기에 따른 보험기간시작일과 동일한 일’을 말하며, 해당년월에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로 합니다.

예시) 납입주기 : 월납

보험기간시작일 : 2022년 1월 31일

⇒ 2회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 : 2022년 2월 28일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예시) 100세만기 20년납, 납입주기 월납, 적립보험료 10,000원

⇒ $20 \times 12 \times 10,000 = 2,400,000$ 원

- ⑤ 계약체결시 피보험자가 “태아”이고 “출생전자녀가입 특별약관”이 부가된 계약인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적립보험료”는 태아보장기간이 끝난 이후의 적립보험료를 말합니다.

2. (“만기유지환급금”의 정의 및 지급)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만기유지환급금”이라 함은 “총납입적립보험료”에 1원을 더한 금액에서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과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② 위①의 “총납입적립보험료”라 함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③ 위①의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에 보장부분 적용이율(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④ 위①의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이라 함은 이 보험계약의 적립부분 순보험료(적립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에 공시이율(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 ⑤ 만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만기유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만기유지환급금이 0원보다 큰 경우 일의 자리에서 올림하여 계산한 만기유지환급금을 이 보험계약의 만기환급금에 더하여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용어
풀이

만기유지환급금 지급 예시

예시1)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10,100원,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금” 10,110원
 - 만기환급금 금액과 관계 없이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아님
 : (총납입예상적립보험료 < “제1회 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예상만기환급금”)

※ 예시2)내지 예시4)는 만기유지환급금 적용계약 가정

예시2) “총납입적립보험료” 10,100원,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3원,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0원 가정할 때
 - 만기유지환급금 : $(10,100\text{원} + 1\text{원}) - \text{Max}(10,093\text{원}, 10,090\text{원}) = 8\text{원}$
 → 만기유지환급금 = 10원(일의자리 올림)

예시3) “총납입적립보험료” 10,100원,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3원,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5원 가정할 때
- 만기유지환급금 : $(10,100\text{원} + 1\text{원}) - \text{Max}(10,093\text{원}, 10,095\text{원}) = 6\text{원}$
→ 만기유지환급금 = 10원(일의자리 올림)

예시4) “총납입적립보험료” 10,100원, “적용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093원, “공시이율로 부리한 예상만기환급금” 10,105원 가정할 때
- 만기유지환급금 : $(10,100\text{원} + 1\text{원}) - \text{Max}(10,093\text{원}, 10,105\text{원}) = -4\text{원}$
→ 0원
→ 만기유지환급금 = 0

- ⑥ 위 ① 내지 ⑤에도 불구하고 만기유지환급금은 “총납입평균적립보험료”에 1원을 더한 금액에서 “적용이율로 부리한 평균적립 만기환급금”을 차감한 금액(0원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 0원으로 하며, 0원보다 큰 경우 일의 자리에서 올림)을 한도로 합니다.
- ⑦ 위⑥의 “총납입평균적립보험료”라 함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평균적립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⑧ 위⑦의 “평균적립보험료”라 함은 납입방법에 따른 보험가입 후 1년간 납입한 적립보험료의 평균보험료를 말합니다.
- ⑨ 위⑥의 “적용이율로 부리한 평균적립 만기환급금”이라 함은 평균적립보험료로 산출한 적립부분 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예상납입해당일에 이 계약의 보장부분 적용이율(단, 금리확정형인 경우 적립부분 적용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3. (만기유지환급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만기유지환급금은 보험계약 종료시점에 1.(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의 ②에 해당되는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험계약 종료시점까지 총납입적립보험료가 완납되지 않은 경우 만기유지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1.(특별약관의 체결 및 적용계약)의 ②에 해당되는 유효한 계약이 보험기간 중 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납입한 적립보험료에 한하여 2.(“만기유지환급금”의 정의 및 지급)을 따릅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장애분류표**① 총칙****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장애지급률로 한다.
- 5) 위 4)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개호(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애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 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장애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애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애'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애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凹沒) 등으로 의안마져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pm 10\text{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 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애

-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애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내용	점수
검사소견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치료병력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장애소견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 평형기능의 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 뇌영상검사(CT, MRI)
 -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의 지급률과 추상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장애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애(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 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애로 평가한다.
-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², 1/4 크기는 20cm²),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², 1/4 크기는 12cm²),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², 1/4 크기는 6cm²)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천골의 장애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 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3)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
금,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애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
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
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
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
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애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
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
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
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
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
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
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
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
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
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
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 1마디
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
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
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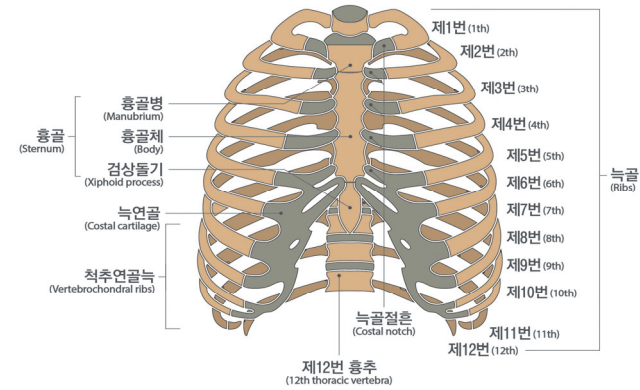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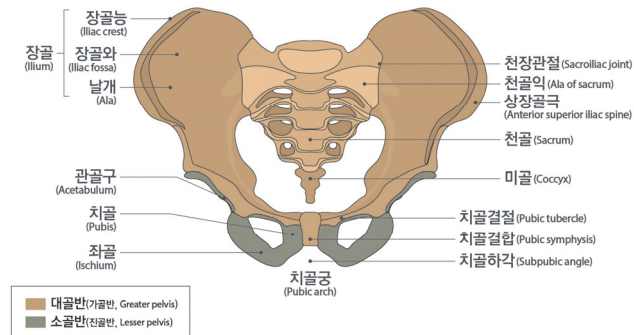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가슴뼈 >



< 골반뼈 >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팔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애를 표시할 경우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애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주)}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해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나. 장해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위 2)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애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1하지(다리과 발가락)의 후유장애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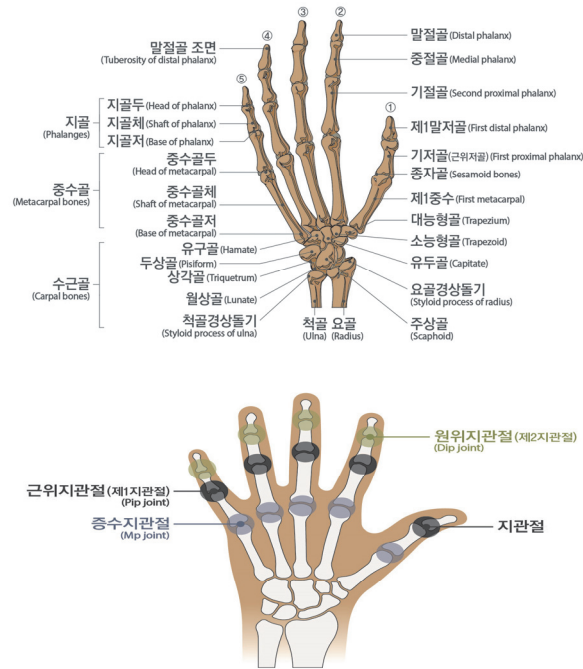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11. 발가락의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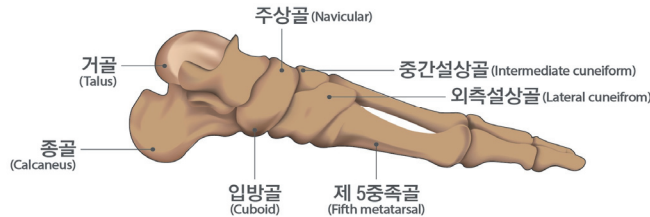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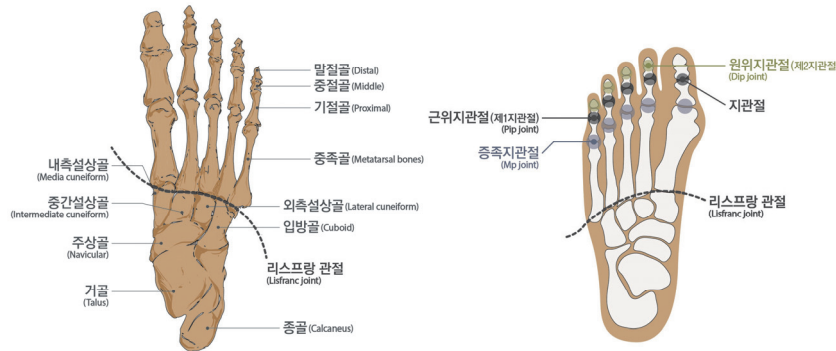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 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7)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5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나) 소장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 다)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홍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홍복부, 비뇨생식기계 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애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애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홍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애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애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때 ADLs 장애 지급률을 준용한다.
- 8) 상기 장애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8)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신경계

- 가)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나) 위 가)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마)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가) 정신행동장애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나) 정신행동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와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차) 정신행동장애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가) 정신행동장애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 가) "치매"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 나) 치매의 장애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 다)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

- 가) "뇌전증"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 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항경련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심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라)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마)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바)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사)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유형	제한정도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 동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 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 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 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 섭취	-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 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 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배변·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 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계속 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 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	10

유형	제한정도	지급률(%)
	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 요한 상태	5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 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목욕	-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 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 이 필요한 상태	3
옷입고 벗기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 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 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별표2】 골절(치아파절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치아파절제외)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S02 (S02.5는 제외)
2. 머리의 으깬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18. 척추 및 척수의 출산 손상	P11.5
19.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P13.0
20.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P13.1
21.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22.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P13.3
23.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의 골절	P13.4
24. 기타 골격 부분의 출산손상	P13.8
25. 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P13.9

【별표3】 화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29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12. 포함된 신체 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13. 포함된 신체 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14.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장애	L59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4】 5대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5대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머리의 으깬손상	S07
2. 목의 골절	S12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S22.0, S22.1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5. 대퇴골의 골절	S72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5】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머리의 으깬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 부위의 골절	T14.2
18. 척추 및 척수의 출산 손상	P11.5
19. 출산손상으로 인한 두개골 골절	P13.0
20. 두개골의 기타 출산손상	P13.1
21.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22.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P13.3
23.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의 골절	P13.4
24. 기타 골격 부분의 출산손상	P13.8
25. 상세불명의 골격의 출산손상	P13.9

【별표6】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대한 특정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상병	분류번호
뇌손상	두개내 손상	S06
내장손상	심장의 손상	S26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S27
	복강내 기관의 손상	S36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S37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7】 특정3대심장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3대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환		분류번호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
부정맥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심부전	심부전	I50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및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환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8】 자녀10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자녀10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장 · 감염	콜레라	A00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A01
	기타 살모넬라 감염	A02
	시겔라증	A03
	기타 세균성 장 감염	A0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A05
	아메바증	A06
	기타 원충성 장 질환	A07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 감염	A08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A09
2.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A15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A16
	신경계통의 결핵	A17
	기타 기관의 결핵	A18
	[M01.1* : 결핵관절염(A18.01+)]	M01.1*
	[M49.0* : 척추의 결핵(A18.00+)]	M49.0*
	[M90.0* : 뼈의 결핵(A18.02+)]	M90.0*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	N33.0*
	[N74.0*, N74.1*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A18.17+)]	N74.0*, N74.1*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	K67.3*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K93.0*

대상질병		분류번호
	준살 결핵	A19
	결핵의 후유증	B90
3. 수막염	바이러스수막염	A8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0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1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G0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3
4. 뇌전증	뇌전증	G40
	뇌전증지속상태	G41
5. 중이염	비화농성 중이염	H65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H6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	H67
6. 급성 상기도염 및 하기도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J00
	급성 부비동염	J01
	급성 인두염	J02
	급성 편도염	J03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J04
	급성 폐색성 후두염[크룹] 및 후두개염	J05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J06
	급성 기관지염	J20
	급성 세기관지염	J21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 감염	J22
7.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대상질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B01.2+ : 수두폐렴(J17.1*)] [B58.3+ : 폐톡소포자충증(J17.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7 B25.0+ B05.2+ B01.2+ B58.3+ J18
8. 천식	천식 천식지속 상태	J45 J46
9. 위, 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위공장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5 K26 K27 K28 K29
10. 탈장 및 장폐색	사타구니탈장 대퇴탈장 배꼽탈장 복벽탈장 횡격막탈장 기타 복부탈장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쇄	K40 K41 K42 K43 K44 K45 K46 K56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9】 자녀7대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자녀7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부위	대상질병	분류번호
공통	골 및 관절연골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C41
	뇌 및 중추신경계	수막의 악성신생물	C70
		뇌의 악성신생물	C71
		척수, 뇌신경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C72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호지킨림프종	C81
		소포성 림프종	C82
		비소포성 림프종	C83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림프성 백혈병	C91
		골수성 백혈병	C92
		단핵구성 백혈병	C9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96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부신	부신의 악성신생물	C74

구분	부위	대상질병	분류번호
남자	간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고환	고환의 악성신생물	C62
여자	신장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신생물	C64
	난소	난소의 악성신생물	C56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0-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암(유사암 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5.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0-2】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4
2.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0-3】소액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C53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C54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C61
5.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1】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1-1】 제자리신생물(피부및유방)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피부및유방)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피부의 제자리암중	D04
유방의 제자리암중	D05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1-2】 제자리신생물(자궁경부및생식기관)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자궁경부및생식기관)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중	D0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중	D07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1-3】 제자리신생물(기타)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암(기타)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제자리흑색종	D0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2】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경계성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3】 1형 당뇨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형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형 당뇨병	E10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4】 충수염(맹장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충수염(맹장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급성 충수염	K35
기타 충수염	K36
상세불명의 충수염	K37
충수의 기타 질환	K38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5】 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Ⅱ 분류표

약관에 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Ⅱ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보장 - 1〉 주요심장염증질환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급성 심장막염	I30
2. 심장막의 기타질환	I31
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4.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5.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6. 급성 심근염	I40
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세부보장 - 2〉 심근병증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심근병증	I42
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세부보장 - 3〉 특정3대심장질환

대상질병	분류번호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
부정맥	I47 I48 I49
심부전	I50

〈세부보장 - 4〉 심장판막질환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I34
2.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5
3.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I36
4. 폐쇄맥판장애	I37
5.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39

〈세부보장 - 5〉 류마티스심장질환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5
2.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I06
3.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7
4. 다발판막질환	I08
5.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09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6】 호흡기관련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호흡기관련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급성 상기도감염	J00 ~ J06
2. 상기도의 상세불명 질환	J39.9
3. 급성인진 만성인진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4.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5.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6. 천식, 천식지속 상태	J45, J46
7. 폐렴	J12 ~ J18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B25.0+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B05.2+
[B01.2+ : 수두폐렴(J17.1*)]	B01.2+
[B58.3+ : 폐독소포자충증(J17.3*)]	B58.3+
8. 재향군인병	A48.1
9. 폐렴이 합병된 홍역	B05.2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8】 법정감염병 중 대상이 되는 특정법정감염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3.22., 법률 제18603호, 2021.12.2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중 아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환
특정법정감염병	〈1급 중〉 디프테리아, 탄저, 페스트,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야토병, 〈2급 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백일해,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성홍열, 수막구균성수막염, 〈3급 중〉 파상풍, 일본뇌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황열, Dengue열, 큐열(Q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주1)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신규로 추가되는 법정감염병이 생기더라도 “대상이 되는 질환”에서 나열한 감염병만 보장되며, 신규로 추가되는 법정감염병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주2)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외되는 감염병이 생기더라도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특정 법정감염병”의 보장대상에서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별표18.1】 감염병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법정감염병”의 감염병환자 진단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3. 22.] [법률 제18603호, 2021. 12. 21., 일부개정]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에서 정한 기준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질병관리청
2. 국립검역소
3.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6.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7. 「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주1)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감염병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기관”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주2)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제외되는 감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그 해당 감염병은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의사의 진단에 따릅니다.

【별표18.2】 감염병환자 진단기준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법정감염병”의 감염병 환자 진단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3.22., 보건복지부령 제873호, 2022.3.22., 일부개정)」「[별표2] 감염병환자등의 진단 기준」에서 정한기준을 말하며 세부내용은 다음을 말합니다.

1. 제1급감염병의 경우

-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2. 제2급감염병의 경우

-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인두도말, 뇌척수액, 가래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3. 제3급감염병의 경우

-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소변, 뇌척수액, 가래, 기관지세척액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다만, 파상풍의 경우에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만으로도 감염병환자로 진단한다.
-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4. 제4급감염병의 경우

- 가. 감염병환자: 해당 감염병에 부합되는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면서 혈액, 대변, 소변, 인두도말, 귀양부위도말, 병변조직, 피하조직 등 검체에서 배양검사, 유전자 검출검사, 항체 검출검사, 항원 검출검사, 현미경검사 등의 검사방법으로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나. 의사환자: 임상적 특징 및 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할 때 해당 감염병이 의심되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
- 다. 병원체보유자: 임상증상을 나타내지 않으나 감염병병원체가 확인된 사람

- 주1) 향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감염병환자진단기준”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주2) “병원체보유자”는 “특정법정감염병 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표19】 급여 암주요통증완화치료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신경차단술 및 신경파괴술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지주막하신경차단술	LA210
경막외 신경차단술	
가. 일회성 차단(경추 및 흉추)	LA321
(1) 경추 및 흉추	LA321
나. 지속적 차단	
(1) 피하터널식 카테터 삽입에 의한 방법	LA222, LA223
(2)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LA224, LA225
(3) 기타(비터널식카테터)에 의한 방법	LA226, LA227
다. 경막외패치술 [혈액채취료 포함]	LA228
경막외 저장기펌프 제거술	LA330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가. 삼차신경절, 상악신경, 하악신경	LA340
나. 안와상, 안와하, 턱끝, 이개측두신경	LA341
다. 안면신경	LA232
라. 설인신경	LA233
마. 접구개신경절	LA23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가. 대소후두신경	LA241
나. 상후두신경	LA242
다. 후두신경	LA243
라. 횡경막신경	LA244
마. 척추부신경	LA245
바. 액와신경	LA346
사. 액와하부신경	LA347
아. 견갑신경	LA247
자. 늑간신경	LA248
차. 장골서혜신경	LA249
카. 장골하복신경	LA270
타. 음부신경	LA271

신경
차단술

내용		수가코드
	파. 좌골신경	LA272
	하. 폐쇄신경	LA273
	거. 대퇴신경	LA274
	너. 외측대퇴파신경	LA275
	더. 상박신경총	LA276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가. 경신경총	LA251
	나. 방척추신경	LA352
	다. 미골신경	LA353
	라. 선택적 신경근	LA354
	마. 척추후근신경절	LA355
	바. 척수회백신경교통지	LA356
	사. 요천골신경총	LA253
	아. 척수신경 후지	LA357
	자. 후지내측지	LA358
	차. 추간관절차단	LA359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가. 간단한 것	LA261
	나. 복잡한 것	
	(1) 흉부교감신경절	LA361
	(2) 요부교감신경절	LA362
	(3) 복강신경총	LA264
	(4) 하장간막신경총	LA265
	(5) 상하복신경총	LA366
	(6) 외톨이신경절	LA367
신경 파괴술	거미막하 신경파괴술	LB310
	경막외 편경파괴술	LB320
	뇌신경 및 뇌신경 말초지파괴술	
	가. 삼차신경절 파괴술	LB331
	나. 기타 뇌신경말초지파괴술	
	(1) 삼차신경 및 그 분지	LB333
	(2) 안면신경	LB334

내용		수가코드
	(3) 설인신경	LB335
	(4) 접구개신경절	LB336
	척수신경 및 말초지파괴술	
	가. 척추신경근	LB341
	나. 척추신경절	LB342
	다. 척추신경총	LB343
	라. 늑간신경	LB344
	마. 척추관절돌기신경	LB345
	바. 음부신경	LB346
	교감신경절 및 신경총 파괴술	
	가. 성상신경절	LB351
	나. 흉부 교감신경절	LB412
	다. 요부 교감신경절	LB413
	라. 복강신경총 및 내장신경	LB353
	마. 상하복신경총	LB354
	바. 하장간막신경총	LB355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20】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대상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Q00 - Q07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Q10 - Q18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Q20 - Q28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Q30 - Q34
구순열 및 구개열	Q35 - Q37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38 - Q45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Q50 - Q56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Q60 - Q64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Q65 - Q79
기타 선천기형	Q80 - Q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Q90 - Q99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21】 뇌졸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기호
뇌졸중	거미막하 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신생아 뇌출혈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P10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	P52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22】 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기호
뇌출혈	거미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신생아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P10
뇌출혈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	P52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2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급성심근경색증	I21
2. 후속 심근경색증	I22
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24】 11대특정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1대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2.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1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 수막의 악성신생물	C70
- 뇌의 악성신생물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2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호지킨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96

대상질병	분류번호
-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7. 담낭의 악성신생물	C23
8.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C24
9. 기관의 악성신생물	C33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4
11. 소장외의 악성신생물	C17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25】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2.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1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C70~C72
- 수막의 악성신생물	C70
- 뇌의 악성신생물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2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 호지킨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질환	C88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96
-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별표26】 주산기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산기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산모 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P00 - P04
2. 임신 기간 및 태아 성장과 관련된 장애	P05 - P08
3. 출산 외상	P10 - P15
4.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P20 - P29
5.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감염	P35 - P39
6.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P50 - P61
7. 태아 또는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장애	P70 - P74
8.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계통 장애	P75 - P78
9. 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된 병태	P80 - P83
10.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P90 - P96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27】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여성산과(임신, 출산 및 산후)관련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유산된 임신	O00~O08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O10~O16
주로 임신에 관련된 기타 산모장애	O20~O29
태아와 양막강 그리고 가능한 분만문제에 관련된 산모관리	O30~O48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O60~O75
분만	O80~O84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O85~O92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28】 장애의 대상 분류표

대상이 되는 기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이외의 기형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순환기계 기형

(1) 심실중격결손증

좌우 심실의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어 심장이 수축할 때 압력이 높은 좌심실로부터 압력이 낮은 우심실로 혈액이 역류하는 것. 따라서, 우심실에 부담이 생겨 나중에 심부전을 일으킨다.

(2) 심방중격결손증

좌우의 심방사이에 구멍이 있는 경우

2. 근골격계 기형

(1) 다지증 : 지(指, 趾)가 6개 이상 있는 경우

(2) 합지증 : 지(指, 趾)가 붙어 있는 경우

(3) 결지증 : 지(指, 趾)가 부족한 경우

(4) 열수(족) : 합지(趾)증이 심화되어 지(趾)가 붙어 있어야 할 곳보다 안쪽까지 찢어져 있는 경우

(5) 내반수(족) : 手(足)가 전체로서 안쪽으로 휘어져 手(足)의 뒤쪽이 안쪽의 방향으로 향하여 있는 경우

(6) 사경 : 목 한쪽이 휘어져 턱이 반대쪽에 올라간 상태의 경우

3. 소화기계 기형

(1) 토순 : 윗입술이 찢어진 경우(중양이 찢겨있는 경우, 혹은 우 또는 좌로 치우쳐진 곳에 찢겨져 있는 경우)

(2) 구개열 : 토순보다도 더욱 심한 것으로 입안 구개골에 파열이 생기는 경우

(3) 선천성식도폐색증 : 식도가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4) 선천성장폐색증 : 장이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5) 선천성담도폐색증 : 담도가 폐쇄 또는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십이지장에 담즙이 되지 않음)

(6) 선천성항문폐색증 : 항문이 폐쇄되어 있는 경우

4. 뇌신경계 기형

(1) 수두증 : 뇌척수액의 증가로 뇌실비대에 의해 머리가 커진 경우

(2) 척추파열 : 척추중앙에 깨진 선이 있어 그곳으로부터 척수나 척수막 등이 바깥으로 부풀어져 나온 경우

5. 비뇨생식기계 기형

(1) 요도상열 : 단순히 귀두 뒷면에 찢어진 선이 있는 경우나 때로는 음순하면 전장에 열구가 있는 경우

(2) 요도하열 : 요도가 음 선단에 미치지 못하고 음 하면에 개구가 있는 경우, 개구가 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선천성요도폐색증 : 요도가 폐쇄되어 있거나 협착상태에 있는 경우

(4) 반음양 : 남성이면서 외음부가 여성처럼 보이는 경우, 여성이면서 남성처럼 보이는 경우를 말한다. 전자의 경우가 많고 이것을 남성가성반음양이라 한다.

6. 감각기계 기형

외이도폐쇄 : 외이도가 태어나면서 폐쇄한 상태에 있는 경우

7. 헤닐케톤뇨증 : 선천성대사이상의 일종으로 방치해두면 정신박약으로 된다. 치료는 페니르알린을 제거한 특수우유와 특수한 식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에 의하지만 치료는 생후 2~3개월 이내에 치료하지 않으면 지능저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생후 1개월에 집단선별검사(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스크리닝 검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별표29】 심한 장애의 대상 분류표

대상이 되는 기형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이외의 기형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중증 기형

- (1) 심한 포코멜리아(단지증, Phocomelia) : 사지의 장골에 결손 또는 단축이 있어 수족이 직접 또는 단축한 장골을 가지고 체구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의 경우. 사지의 이상은 상지에서 잘 보이며 하지의 이상은 드문 경우이며, 이 기형은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계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 (2) 무지증 : 사지가 완전하게 결손한 경우로서 상당히 심한 기형인 것
- (3) 절단증 : 태아일 때 사지가 양막에 말려있는 상태로 있어서 사지가 절단된 경우

2. 뇌성마비

뇌성마비란 (ㄱ)임신중의 장애, (ㄴ)출생시의 장애, (ㄷ)출생후 영아기의 장애 등에 의해 뇌조직에 이상을 초래해 수족이나 발성이 자유롭지 않게 되는 병이다.
뇌성마비의 원인으로 (ㄱ)임신중의 장애, (ㄴ)출생시의 장애에 의한 것 이외에 교통사고에 의한 외상성 장애 등이 있으나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것은 임신중 또는 출산시의 장애에 인한 뇌성마비에 한한다.

3. 다운증후군의 염색체이상의 기형

21번째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 있어 얼굴이 넓적하고 코가 작고 안열이 위로 뺨뿔어져 사행하는 등 다운증후군의 특징적 얼굴형태를 가지는 경우로 근육긴장감퇴, 지능저하(장애) 등의 주요증상이 보인다.

【별표30】 임신·출산관련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임신·출산관련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환	분류번호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O10~O16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산모장애	O20~O29
태아와 양막강 그리고 가능한 분만 문제에 관련된 산모 관리	O30~O48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O60~O75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O85~O92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환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31】 유산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유산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자궁외 임신	000
2. 포상기태	001
3. 기타 비정상적 수태부산물	002
4. 자연유산	003
5. 의학적 유산	004
6. 기타 유산	005
7. 상세불명의 유산	006
8. 시도된 유산의 실패	007
9. 유산, 자궁외 임신 및 기태 임신에 따른 합병증	008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32】 뇌·내장손상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내장손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상병	분류번호
뇌손상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1. 두개원개의 골절 2. 두개저의 골절 3. 안와 바닥의 골절 4.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5.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6.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02.0 S02.1 S02.3 S02.7 S02.8 S02.9
	[두개내 손상] 1. 미만성 뇌 손상 2. 경막외출혈 3. 외상성 경막하 출혈 4.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5.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 손상 6. 기타 두개내 손상 7.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 [머리의 으깬손상] 1. 두개골의 으깬손상 2. 머리의 기타 부분의 으깬손상 [머리부분의 외상성 절단] 1. 머리의 기타 부분의 외상성 절단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머리의 혈관 손상 2. 머리의 다발손상	S06.2 S06.4 S06.5 S06.6 S06.7 S06.8 S06.9 S07.1 S07.8 S08.8 S09.0 S09.7

구분	대상상병	분류번호
내장손상	[심장의 손상]	
	1. 혈심낭을 동반한 심장손상	S26.0
	2. 심장의 기타 손상	S26.8
	3. 심장의 상세불명 손상	S26.9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1. 폐의 기타 손상	S27.3
	2. 기관지의 손상	S27.4
	3. 흉부기관의 손상	S27.5
	4. 흉막의 손상	S27.6
	5. 흉곽내 기관의 다발손상	S27.7
	6. 기타 명시된 흉곽내 기관의 손상	S27.8
	7.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S27.9
	[흉부의 으깬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9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의 손상]	S35
	[복강내 기관의 손상]	
	1. 비장의 손상	S36.0
	2. 간 또는 담낭의 손상	S36.1
	3. 췌장의 손상	S36.2
	4. 위의 손상	S36.3
	5. 소장외의 손상	S36.4
	6. 결장의 손상	S36.5
	7. 직장의 손상	S36.6
	8. 다발성 복강내 기관의 손상	S36.7
	9. 기타 복강내 기관의 손상	S36.8
	[비뇨 및 골반기관의 손상]	
	1. 신장의 손상	S37.0
	2. 요관의 손상	S37.1
	3. 방광의 손상	S37.2
	4. 요도의 손상	S37.3
	5. 난소의 손상	S37.4
	6. 난관의 손상	S37.5
	7. 자궁의 손상	S37.6
	8. 다발성 골반기관의 손상	S37.7
	9. 기타 골반기관의 손상	S37.8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깬손상 및 외상성 절단]	S38

구분	대상상병	분류번호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1. 골반기관을 동반한 복강내 기관의 손상	S39.6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의 분류표에서 3단위 항목표로 표시된 분류번호에 대해서는 3단위 항목표에 포함된 4단위 항목의 상병을 모두 보상하며, 4단위 항목표로 표시된 분류번호는 그 분류번호에 해당되는 상병만을 보상합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33】 당뇨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기호
당뇨병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1.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5.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34】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허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허유착증 및 모반증 제외) 대상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Q00 - Q07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Q10 - Q18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Q20 - Q28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Q30 - Q34
구순열 및 구개열	Q35 - Q37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허 유착증 제외)	Q38 - Q45 (Q38.1 제외)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Q50 - Q56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Q60 - Q64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Q65 - Q79
기타 선천기형	Q80 - Q89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제외)	(Q82.5 제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Q90 - Q99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35】추간판탈출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추간판탈출증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경추간판장애	M50
2. 기타 추간판장애	M51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36】특정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허혈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I20
2. 급성심근경색증	I21
3. 후속 심근경색증	I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5. 오래된 심근경색증	I25.2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37】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치아탈구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치아탈구제외)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대상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치아의 탈구 제외)	S03 (S03.2는 제외)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3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3
흉부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29.0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3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5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63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3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76.1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83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S86.0
발목 및 발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9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T03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09.2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3.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4.3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T14.6
외상성 근육허혈	T79.6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38】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 아래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5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표적항암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 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애플리버셉트 aflibercept	잘트랩주25mg/ml(애플리버셉트)
2	알렉티닙염산염 alectinib	알레센자캡슐150밀리그램(알렉티닙염산염)
3	아파티닙이말레산염 afatinib	지오텍립정2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지오텍립정3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지오텍립정4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4	엑시티닙 axitinib	인라이트정1밀리그램(엑시티닙) 인라이트정5밀리그램(엑시티닙)
5	보르테조미프삼합체 bortezomib	벨조미주1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벨조미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벨케이드주(보르테조미프삼합체) 벨키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벨키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보테벨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테조민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테조민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테조벨주(보르테조미프삼합체)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프로테조밍주(보르테조밍삼함체) 프로테조밍주 2.5밀리그램(보르테조밍삼함체) 화이자보르테조밍주 3.5mg(보르테조밍일수화물)
6	카보잔티닙 cabozantinib	카보메틱스정 20밀리그램(카보잔티닙) 카보메틱스정 40밀리그램(카보잔티닙) 카보메틱스정 60밀리그램(카보잔티닙)
7	카르필조밍 carfilzomib	키프롤리스주 30밀리그램(카르필조밍) 키프롤리스주 60밀리그램(카르필조밍)
8	세리티닙 ceritinib	자이카디아캡슐 150밀리그램(세리티닙)
9	크리조티닙 crizotinib	젤코리캡슐 200밀리그램(크리조티닙) 젤코리캡슐 250밀리그램(크리조티닙)
10	다브라페닙메실산염 dabrafenib	라핀나캡슐 50밀리그램(다브라페닙메실산염) 라핀나캡슐 75밀리그램(다브라페닙메실산염)
11	다사티닙 dasatinib	스프라이셀정 10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 2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 5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 7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 80밀리그램(다사티닙)
12	엘로티닙염산염 erlotinib	엘로씨타정 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로씨타정 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로티닙정 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수출용) 엘로티닙정 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티니정 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티니정 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씨바정 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씨바정 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씨바정 25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씨와정 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씨와정 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 100mg(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 150mg(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 25mg(엘로티닙염산염)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3	에베로리무스 everolimus	아피니토정 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아피니토정 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아피니토정 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에리니토정 10mg(에베로리무스) 에리니토정 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5mg/1정) 에베로즈정 10밀리그램 에베로즈정 2.5밀리그램 에베로즈정 5밀리그램
14	게피티니브 gefitinib	레피사정(게피티니브) 스펙사정 250밀리그램(게피티니브) 이레사정(게피티니브) 이레티닙정 250밀리그램(게피티니브) 이레피노정(게피티니브) 제피티닙정(게피티니브)
15	이브루티닙 ibrutinib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이브루티닙)
16	이매티닙메실산염 imatinib	글로틴정 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로틴정 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로틴정 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로틴정 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마정 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마정 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마정 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벡필름코팅정 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벡정 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벡정 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벡정 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티프필름코팅정 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티프필름코팅정 3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티프필름코팅정 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루키벡필름코팅정 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루키벡필름코팅정 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루키벡필름코팅정 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루코벡정 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루코벡정 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유니티정 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이매티닙정 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이매티닙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제이티닙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제이티닙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케어벡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케어벡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17	익사조립시트레이트 ixazomib	닌라로캡슐2.3밀리그램(익사조립시트레이트) 닌라로캡슐3밀리그램(익사조립시트레이트) 닌라로캡슐4밀리그램(익사조립시트레이트)
18	라파티닙티토실레이트 lapatinib	타이커브정250밀리그램(라파티닙티토실레이트)
19	렌바티닙메실산염 lenvatinib	렌비마캡슐10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 렌비마캡슐4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
20	닐로티닙 염산염일수화물 nilotinib	타시그나캡슐150밀리그램(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타시그나캡슐200밀리그램(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21	올라파립 olaparib	린파자캡슐50밀리그램(올라파립) 린파자정100밀리그램(올라파립) 린파자정150밀리그램(올라파립)
22	오시머티닙 osimertinib	타그리소정4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타그리소정8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23	팔보시클립 palbociclib	입랜스캡슐100mg(팔보시클립) 입랜스캡슐125mg(팔보시클립) 입랜스캡슐75mg(팔보시클립)
24	파조파닙염산염 pazopanib	보트리엔트정200밀리그램(파조파닙염산염) 보트리엔트정400밀리그램(파조파닙염산염)
25	포나티닙염산염 ponatinib	아이클루시그정15밀리그램(포나티닙염산염) 아이클루시그정45밀리그램(포나티닙염산염)
26	라도티닙염산염 radotinib	슈펙트캡슐100밀리그램(라도티닙염산염) 슈펙트캡슐200밀리그램(라도티닙염산염)
27	레고라페닙 regorafenib	스티바가정40밀리그램(레고라페닙)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28	룩소리티닙인산염 ruxolitinib	자카비정5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자카비정10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자카비정15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자카비정20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29	소라페닙토실레이트 (미분화) sorafenib	넥사바정200밀리그램(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
30	수니티닙말산염	수텐캡슐12.5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텐캡슐25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텐캡슐50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31	템시롤리무스 temsirrolimus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32	트라메티닙 디메틸설폭시드 trametinib	매큐셀정0.5밀리그램(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매큐셀정2밀리그램(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33	반데타닙 vandetanib	카프렐사정100밀리그램(반데타닙) 카프렐사정300밀리그램(반데타닙)
34	베무라페닙 vemurafenib	젤보라프정240밀리그램(베무라페닙)
35	레날리도마이드 lenalidomide	레날도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7.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10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1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20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7.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1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1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레날리드정(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1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1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2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36	보리노스타트 vorinostat	줄린자캡슐100밀리그램(보리노스타트)
37	브리가티닙 brigatinib	알루브릭정30밀리그램(브리가티닙) 알루브릭정90밀리그램(브리가티닙) 알루브릭정180밀리그램(브리가티닙)
38	미도스타우린 midostaurin	라이답연질캡슐25밀리그램(미도스타우린)
39	니라파립 토실산염일수화물 niraparib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40	퍼투주맙 pertuzumab	퍼제타주(퍼투주맙)
41	트라스투주맙엠탄신 trastuzumabemtansine	캐싸일라주1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엠탄신) 캐싸일라주16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엠탄신)
42	트라스투주맙 trastuzumab	삼페넛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허셉틴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허셉틴주44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허셉틴피하주사6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허주마주150mg(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허주마주440mg(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43	오비누투주맙 obinutuzumab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 유전자재조합)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44	실룩시맙 siltuximab	실반트주100밀리그램(실룩시맙, 유전자재조합) 실반트주400밀리그램(실룩시맙, 유전자재조합)
45	세룩시맙 cetuximab	얼비톡스주5mg/mL(세룩시맙)
46	블리나투모맙 blinatumomab	블린사이토주35마이크로그램 (블리나투모맙, 유전자재조합)
47	브렌톡시맙베도틴 brentuximab vedotin	애드세트리스주(브렌톡시맙베도틴)
48	베바시주맙 bevacizumab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49	리톡시맙 rituximab	맵테라주(리톡시맙)(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맵테라피하주사(리톡시맙)(유전자재조합) 트룩시마주(리톡시맙)(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50	라무시루맙 ramucirumab	사이람자주10밀리그램/밀리리터 (라무시루맙, 유전자재조합)
51	다라투무맙 daratumumab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52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티쎌트릭주(아테졸리주맙)
53	니볼루맙 nivolumab	옵디보주20mg(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240mg(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54	펌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키트루다주(펌브롤리주맙, 유전자재조합)
55	탈리도마이드 thalidomide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밀리그램 탈라이드캡슐100mg(탈리도마이드) 탈라이드캡슐50mg(탈리도마이드) 탈로다캡슐10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로다캡슐5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리그로브캡슐10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리그로브캡슐5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56	포말리도마이드 pomalidomide	포말리스트캡슐1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2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3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4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57	이필리무맙 ipilimumab	여보이주200밀리그램/40밀리리터 (이필리무맙, 유전자재조합) 여보이주50밀리그램/10밀리리터 (이필리무맙, 유전자재조합)
58	더발루맙 durvalumab	임핀지주(더발루맙)
59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inotuzumab ozogamicin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60	아벨루맙 avelumab	바벤시오주(아벨루맙)
61	아베마시클립 abemaciclib	버제니오정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10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1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20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62	베네토클락스 venetoclax	벤클렉스타정1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벤클렉스타정5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벤클렉스타정10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63	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 gilteritinib	조스파타정40밀리그램(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
64	다코미티닙 dacomitinib hydrate	비짐프로정15밀리그램(다코미티닙수화물) 비짐프로정45그램(다코미티닙수화물) 비짐프로정30밀리그램(다코미티닙수화물)
65	리보시클립 ribociclib	키스칼리정 200밀리그램(리보시클립속신산염)
66	엔트렉티닙	로줄리트렉캡슐100밀리그램(엔트렉티닙)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entrectinib	로줄리트렉캡슐200밀리그램(엔트렉티닙)
67	라로트렉티닙 larotrectinib	비트락비엑(라로트렉티닙황산염) 비트락비캡슐100밀리그램(라로트렉티닙황산염) 비트락비캡슐25밀리그램(라로트렉티닙황산염)
68	레이저티닙 Lazertinib	렉라자정80밀리그램(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
69	엔코라페닙 Encorafenib	비라토비캡슐75밀리그램(엔코라페닙)
70	이사툽시맙 Isatuximab	살클리사주(이사툽시맙)
71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김리아주(티사젠렉류셀)
72	탈라조파립 Talazoparib	탈제나캡슐1mg 탈제나캡슐0.25mg
73	로라티닙 Lorlatinib	로비큐아정25mg 로비큐아정100mg
74	젬투주맙오조가마이신 Gemtuzumab Ozogamicin	마일로탁주4.5mg
75	아미반타맙 Amivantamab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76	소토라십 Sotorasib	루마크라스정120mg
77	폴라투주맙베도틴 Polatuzumab Vedotin	플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
78	네라티닙말레산염 Neratinib Maleate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
79	자누브루티닙 Zanubrutinib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80	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 Tepotinib Hydrochloride Hydrate	텡메코정225밀리그램(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
81	프랄세티닙분무건조 분산체 Pralsetinib Spray Dried Dispersion	가브레토캡슐100밀리그램(프랄세티닙)
82	셀퍼카티닙 Selpercatinib	레테브모캡슐40밀리그램(셀퍼카티닙) 레테브모캡슐80밀리그램(셀퍼카티닙)
83	에시미닙염산염 Asciminib Hydrochloride	셈블릭스정20밀리그램(에시미닙염산염) 셈블릭스정40밀리그램(에시미닙염산염)
84	카프마티닙 염산염일수화물 Capmatinib Hydrochloride Monohydrate	타브렉타정150밀리그램(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타브렉타정200밀리그램(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85	퍼투주맙/ 트라스투주맙 Pertuzumab/ Trastuzumab	페스코피하주사1200/600밀리그램 (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 페스코피하주사600/600밀리그램 (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
86	티라브루티닙염산염 Tirabrutinib Hydrochloride	베렉스브루정80밀리그램(티라브루티닙염산염)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39】 어린이생활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어린이생활질환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항목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환		분류번호
1. 장·감염	콜레라	A00
	창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A01
	기타 살모넬라 감염	A02
	시겔라증	A03
	기타 세균성 장 감염	A04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세균성 음식매개중독	A05
	아메바증	A06
	기타 원충성 장 질환	A07
	바이러스성 및 기타 명시된 장 감염	A08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A09
2. 결핵 및 결핵의 후유증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A15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A16
	신경계통의 결핵	A17
	기타 기관의 결핵	A18
	[M01.1* : 결핵관절염(A18.01+)]	M01.1*
	[M49.0* : 척추의 결핵(A18.00+)]	M49.0*
	[M90.0* : 뼈의 결핵(A18.02+)]	M90.0*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	N33.0*
	[N74.0*, N74.1*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A18.17+)]	N74.0*, N74.1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	*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K67.3*
	준썬 결핵	K93.0*
	결핵의 후유증	A19
3. 당뇨병질환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

대상질병		분류번호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당뇨병성 당뇨병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관절염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E13 E14 G59.0 G63.2 H28.0 H36.0 M14.2 N08.3
4. 수막염	바이러스수막염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A87 G00~G09
5. 뇌전증	뇌전증 뇌전증지속상태	G40 G41
6. 중이염	비화농성 중이염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	H65 H66 H67
7. 급성 상기도염	급성 비인두염[감기]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급성 폐색성 후두염[크룹] 및 후두개염 다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상기도 감염	J00 J01 J02 J03 J04 J05 J06
8. 급성 기관지염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 감염	J20 J21 J22
9.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폐렴여쇄알균에 의한 폐렴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B01.2+ : 수두폐렴(J17.1*)] [B58.3+ : 폐독소포자충증(J17.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2 J13 J14 J15 J16 J17 B25.0+ B05.2+ B01.2+ B58.3+ J18

대상질병		분류번호
10. 알레르기성 비염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0
11. 만성 부비동염	만성 부비동염	J32
12. 천식	천식 천식지속 상태	J45 J46
13.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탄광부 진폐증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실리카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기타 무기물먼지에 의한 진폐증 상세불명의 진폐증 결핵과 연관된 진폐증 특정 유기물먼지에 의한 기도질환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김의 흡입에 의한 호흡기 병태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호흡기 병태	J60 J61 J62 J63 J64 J65 J66 J67 J68 J69 J70
14. 위 십이지장 궤양 및 염증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위공장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5 K26 K27 K28 K29
15. 탈장	사타구니탈장 대퇴탈장 배꼽탈장 복벽탈장 횡경막탈장 기타 복부탈장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K40 K41 K42 K43 K44 K45 K46
16. 장폐색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쇄	K56
17. 아토피	아토피성 피부염	L20
18.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노관-간질 및 세노관 병태	N14

대상질병		분류번호
중금속에 의한 질환	정상적으로는 혈액내에 없는 약물 및 기타물질의 소견 금속의 독성효과	R78 T56
19. VDT증후군 관련	손목터널증후군 기타 관절연골 장애 인대 장애 관절통 달리 분류되지 않은 관절의 경직 건조증후군[쉐그렌] 경추상완증후군 근육 장애 윤활막 및 힘줄 장애 기타 연조직 장애	G56.0 M24.1 M24.2 M25.5 M25.6 M35.0 M53.1 M53.1 M60 ~ M63 M65 ~ M68 M70 ~ M79
20. 성장장애관련 특정질환	부신 피질의 악성신생물 두개인두관의 악성신생물 두개인두관의 양성신생물 기타 갑상선기능저하증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제외) 기타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쿠싱증후군 단백질-에너지 영양실조로 인한 발육지연 비타민D결핍 만성 골판병 상세불명의 신부전 신장성 골다스트로피	C74.0 C75.2 D35.3 E03 (E03.0, E03.1 제외) E22.8 E24 E45 E55 N18 N19 N25.0

1.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5.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40】 희귀난치성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결핵 [M01.1* : 결핵관절염(A18.01+)] [M49.0* : 척추의 결핵(A18.00+)] [M90.0* : 뼈의 결핵(A18.02+)]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 [N74.0*, N74.1*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A18.17+ ^{주1)}] ^{주1)} A18.17+(여성생식기관의 결핵) 중 자궁경부의 결핵(N74.0*),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N74.1*)에 한함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중추신경계통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거대세포바이러스병 크립토코쿠스증 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G6PD] 결핍에 의한 빈혈 해당 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지중해빈혈 용혈-요독증후군 발작성 야간해모글로빈뇨 후천성 순수적혈구 무형성[적모구감소] 기타무형성빈혈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유전성 제8인자 결핍 유전성 제9인자 결핍 폰빌레브란트병	A15~A19 M01.1* M49.0* M90.0* N33.0* N74.0*, N74.1* K67.3* K93.0* A81 B20~B24 B25 B45 D35.2 D55.0 D55.2 D56 D59.3 D59.5 D60 D61 D64.4 D66 D67 D68.0

대상질병	분류번호	대상질병	분류번호
유전성 제11인자 결핍	D68.1	구리 대사장애	E83.0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D68.2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남성 섬유증	E84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D69.3 ^{주2)}	아밀로이드증	E85
^{주2)} D69.3(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중 에반스 증후군에 한함		헌팅톤병	G10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유전성 운동실조	G11
무과립구증	D70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G13
림프세망 및 세망조직구 조직의 참여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질환	D76	파킨슨병	G20
항체결손이 현저한 면역결핍	D80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복합 면역결핍	D81	리이병	G31.81
기타 주요 결손과 관련된 면역결핍	D82	다발경화증	G35
공통가변성 면역결핍	D83	기타 전신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4
기타 면역결핍	D84	뇌전증지속상태	G41
사르코이드증	D86	기면병 및 탈력발작	G47.4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멜커슨증후군	G51.2
고프로락틴혈증	E22.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90.6
뇌하수체 기능저하	E23.0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G60.0
쿠싱증후군	E24	염증성 다발신경병증	G61
부신생식기장애	E25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E27.1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G70
애디슨발증	E27.2	근육의 원발성장애	G71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신피질부전	E27.4	자율신경계통의 기타 장애	G90.8
기타 명시된 내분비장애	E34.8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활동성 구루병	E55.0	연령과 관련된 삼출성 황반변성	H35.31
방향족아미노산대사장애	E70	색소성 망막디스트로피	H35.51
축쇄아미노산 및 지방산 대사장애	E71	감각성 망막을 주로 침범한 기타 디스트로피	H35.58
아미노산대사의 기타 장애	E72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I27.0
적당 불내성	E73	확장성 심근병증	I42.0
탄수화물대사의 기타장애	E74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스핑고지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축적장애	E75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
글리코사미노글라이칸 대사 장애	E76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당단백질대사장애	E77	심내막탄력섬유증	I42.4
레쉬-니한 증후군	E79.1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기타 포르피린증	E80.2		

대상질병	분류번호
모야모야병	I67.5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I78.0
버드-키아리 증후군	I82.0
폐포 및 벽측폐포 병태	J84.0
섬유증을 동반한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4.1
크론병 [국소성 장염]	K50
궤양성 대장염	K51
원발성 담도 간경변증	K74.3
자가면역성 간염	K75.4
보통 천포창	L10.0
낙엽천포창	L10.2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홍터유사천포창	L12.1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
[J99.0* : 류마티스폐질환(M05.1+)]	J99.0*
절단성 관절염	M07.1
건선척추염	M07.2
기타 건선관절병증	M07.3
연소성 류마티스 관절염	M08.0
연소성 강직척추염	M08.1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M08.2
(혈청검사 음성인)연소성다발관절염	M08.3
결절성 다발동맥염	M30.0
폐 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M30.1
연소성 다발동맥염	M30.2
과민성 혈관염	M31.0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M31.1
림프절외 NK/T-세포림프종,비강형태	C86.0
베게너육아종증	M31.3
대동맥궁증후군[다카야시]	M31.4
현미경적 다발혈관염	M31.7
전신홍반루푸스	M32
피부다발근염	M33

대상질병	분류번호
전신경화증	M34
건조증후군[쉐그렌]	M35.0
기타 중복증후군	M35.1
베체트병	M35.2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M35.3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M35.4
다초점 섬유경화증	M35.5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M35.6
과가동성 증후군	M35.7
강직척추염	M45
진행성 골화근염	M61.1
뼈의 파절병[변형성 골염]	M88
통증신경디스트로피	M89.0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I 형	G90.5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만성 콩팥병	N18
신장성 요붕증	N25.1
신생아의 호흡곤란	P22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41】 소아백혈병 대상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소아백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림프성 백혈병	C91
골수성 백혈병	C92
단핵구성 백혈병	C9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42】 다운증후군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다운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다운증후군	Q90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43】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기호
뇌혈관 질환	거미막하 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 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신생아 뇌출혈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P10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	P52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4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허혈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I20
2. 급성심근경색증	I21
3. 후속 심근경색증	I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6. 만성 허혈심장병	I25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45】 특정급여치료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급여치료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분	내용	수가코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감마나이프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사이버나이프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선형가속기	HD115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심방세동-냉각풍선절제술	M065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심방세동-냉각풍선절제술 중격천자	M0652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상심실성 부정맥 중격천자	M0653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심방세동 중격천자	M0655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중격천자	M0656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상심실성 부정맥	M0657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심방세동	M0658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심방세동-하대정맥 삼첨판륜 협부 선형절제술	M0659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심실성 부정맥	M0661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066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 절제시 하대정맥 삼첨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	M0654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6540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심방세동	M6542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	M6543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M654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6545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6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심방세동	M6547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실성 부정맥)	M6548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M6549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50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중격천자	M6556
혈관색전술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맥류-보조물지지	M1661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맥류-기타의 경우	M1662

구분	내용	수가코드
관상동맥 확장술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뇌혈관	M1663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두경부	M1667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척추	M1668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척추경막	M1669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중앙-뇌에 화학요법제를 주입한 경우	M1671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중앙-두경부에 화학요법제를 주입한 경우	M1672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중앙-뇌	M1673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중앙-두경부	M1674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뇌경막동정맥루[내경동맥해면동루포함]-동맥경유	M1676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정맥기형[동정맥루포함]-뇌경막동정맥루[내경동맥해면동루포함]-동맥경유	M1677
	혈관색전술-기타혈관	M6644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단일혈관	M6551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추가혈관	M6552
관상동맥 스텐트삽입술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일차적중재술 등]	M6553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	M6554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단일혈관	M6561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추가혈관	M6562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중상반절제술과동시)-단일혈관	M6563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경피적관상동맥확장술및경피적관상동맥중상반절제술과동시)-추가혈관	M6564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급성심근경색증의 원인병변에 대한	M6565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일차적중재술 등]	M6566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M6567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M6567
관상동맥 중상반절제술	경피적관상동맥중상반절제술 단일혈관	M6571
	경피적관상동맥중상반절제술 추가혈관	M6572
혈관성형술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뇌혈관	M6593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경동맥[쿠를동맥포함]	M6594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대동맥	M6595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폐동맥	M6596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M6597

구분	내용	수가코드
혈관내스텐트삽입	경피적내혈관막성형술	M6599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경동맥(내막박리술 포함)[단순]	O0226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경동맥(내막박리술 포함)[복합]	O0227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복부동맥 또는 장골동맥	O2064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기타	O2065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경동맥(내막박리술 포함)-복합-제거후 팻치이용하여 봉합한 경우	O2066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복부동맥 또는 장골동맥 제거후 팻치이용하여 봉합한 경우	O2067
	혈관내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기타-제거후 팻치이용하여 봉합한 경우	O2068
	혈관성형술(직접봉합)-개흉에의한것	OA631
	혈관성형술(직접봉합)-개복에의한것	OA632
	혈관성형술(직접봉합)-기타	OA633
	혈관성형술(팻치이용한경우)-개흉에의한것(인조혈관이용)	OA634
	혈관성형술(팻치이용한경우)-개흉에의한것(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	OA635
	혈관성형술(팻치이용한경우)-개복에의한것(인조혈관이용)	OA636
	혈관성형술(팻치이용한경우)-개복에의한것(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	OA637
	혈관성형술(팻치이용한경우)-기타(인조혈관이용)	OA638
	혈관성형술(팻치이용한경우)-기타(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	OA639
	혈관성형술(개흉에의한직접봉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 실시	OB631
	혈관성형술(개복에의한직접봉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 실시	OB632
	혈관성형술(기타직접봉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실시	OB633
	혈관성형술(팻치이용-개흉에의함, 인조혈관이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실시	OB634
	혈관성형술(팻치이용-개흉에의함, 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실시	OB635
	혈관성형술(팻치이용-개복에의함, 인조혈관이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실시	OB636
	혈관성형술(팻치이용-개복에의함, 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실시	OB637
	혈관성형술(팻치이용-기타, 인조혈관이용)-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실시	OB638
	혈관성형술(팻치이용-기타, 자가혈관이용[채취료포함])-대동맥교차감자(Cross-Clamping)동시실시	OB639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뇌혈관	M6601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경동맥[추골동맥포함]	M6602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대동맥	

구분	내용	수가코드
술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폐동맥	M6603
	경피적혈관내금속스텐트삽입술-기타혈관	M6604
	경피적혈관내스텐트-이식설치술[대동맥]	M6605
	경피적혈관내스텐트-이식설치술[대동맥및장골동맥]	M6611
	경피적혈관내스텐트-이식설치술[기타혈관]	M6612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시 그래프트 고정	M6651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 후 그래프트 고정	M6652
	경피적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두개강내 혈관	M6630
	경피적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기타혈관]	M6632
	경피적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관상동맥]	M6634
혈전제거술	경피적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두개강외 경부혈관	M6635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내 혈관	M6636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외 경부혈관	M6637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관상동맥	M6638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기타혈관	M6639
	혈전제거술(심부정맥-하지)	O0218
	혈전제거술-심장	O0260
	폐동맥혈전제거술	O1950
	혈전제거술(동맥-흉부)	O2053
	혈전제거술(동맥-복부)	O2054
	혈전제거술(동맥-경부)	O2055
	혈전제거술(동맥-기타)	O2056
	혈전제거술(심부정맥-흉부)	O2057
	혈전제거술(심부정맥-복부)	O2058
	혈전제거술(심부정맥-기타)	O2059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46】 결핵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결핵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A15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결핵	A16
신경계통의 결핵	A17
기타 기관의 결핵	A18
[M01.1* : 결핵관절염(A18.01+)]	M01.1*
[M49.0* : 척추의 결핵(A18.00+)]	M49.0*
[M90.0* : 뼈의 결핵(A18.02+)]	M90.0*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	N33.0*
[N74.0*, N74.1*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A18.17+)]	N74.0*, N74.1*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	K67.3*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K93.0*
췌장 결핵	A19
결핵과 연관된 진폐증	J65
다약제내성결핵	U84.30
광범위약제내성결핵	U84.31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47】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약제내성결핵(슈퍼결핵 포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다약제내성결핵	U84.30
광범위약제내성결핵	U84.31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48】 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심·뇌·5대혈관및양성뇌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기호
심장질환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I00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1
	류마티스무도병	I02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5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I06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7
	다발판막질환	I08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09
	허혈심장질환	I20-I25
	급성 심장막염	I30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I34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5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I36
	폐동맥판장애	I37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39
	급성 심근염	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심근병증	I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4
	기타 전도장애	I45

대상질병		분류기호
5대혈관질환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
	급성 심장사로 기술된 것	I46.1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I46.9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심부전	I50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
	[A39.5+ : 수막구균성 심장병 등 ((I32.0*,I39.8*,I41.0*,I52.0*))]	A39.5+
	[B37.6+ : 칸디다심내막염]	B37.6+
	뇌혈관질환	I60-I69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축상경화증	I70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제외)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I71
	식도정맥류	I85, I98.2, I98.3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제외)	위정맥류	I86.4
	수막의 양성신생물	D32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D3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3
양성뇌종양 (경계성종양제외)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D35.4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49】 성조숙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성조숙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조발 사춘기	E30.1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50】 편마비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편마비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편마비	G81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5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분류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증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만염·장폐색증·급성체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리지 : 열골 부종을 동반한 알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 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예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관련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별표52】 십자인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십자인대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 및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 및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상병 및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 상병 및 질병	분류번호
무릎의 내부장애	M23
무릎의 (전)(후)십자인대를 침범한 염좌 및 긴장	S83.5
(측부)(십자)인대와 복합된 (외측)(내측) 반달연골의 손상	S83.7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 상병 및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및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 및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및 질병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 상병 및 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 상병 및 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53】 급여 십자인대수술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십자인대수술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십자인대성형술	N0880
십자인대성형술-복합	N0881
십자인대접합술	N0890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4】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ADHD(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F90.0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55】 아토피성 피부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아토피성피부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아토피성피부염	L20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56】 모야모야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모야모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모야모야병	I67.5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57】 임신중독증(자간포함)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임신중독증(자간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전자간증	O14
2. 자간증	O15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58】 태반조기박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태반조기박리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O45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59】 자궁적출수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자궁적출수술비의 자궁적출수술이란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에 의한 수술 및 처치 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궁적출수술(hysterectomy, ICD-9-CM 수술코드 기준)

대상이 되는 수술	ICD-9-CM Procedure
복식 부분자궁적출술(Subtotal abdominal hysterectomy)	68.3
복식 전자궁적출술(Total abdominal hysterectomy)	68.4
질식 전자궁적출술(Vaginal hysterectomy)	68.5
복식 근치자궁적출술(Radical abdominal hysterectomy)	68.6
질식 근치자궁적출술(Radical vaginal hysterectomy)	68.7
골반 장기적출술(Pelvic evisceration)	68.8
기타 및 상세불명 자궁적출술(Other and unspecified hysterectomy)	68.9

【별표60-1】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독감(인플루엔자)”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09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J11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60-2】 독감 항바이러스제 성분명

1. 아래 “독감 항바이러스제” 해당 성분명은 2020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효능·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분명
1.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2. 자나미비르(zanamivir)
3. 페라미비르(peramivir)
4. 발록사비르(baloxavir)

【별표61】 척추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척추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1. 목의 골절	S12
2. 흉추의 골절	S22.0
3. 흉추의 다발골절	S22.1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5.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62】 주요이비인후과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이비인후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대상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환	분류번호
1. 외이의 질환	H60 ~ H62
2. 중의 및 유도의 질환	H65 ~ H75
3. 내이의 질환	H80 ~ H83
4. 귀의 기타 장애	H90 ~ H95
5. 귀의 결핵	A18.6
6.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	B05.3
7. 상기도의 기타 질환	J30-J39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환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63】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주요재활치료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Therapeutic Exercise-Complex)	MM102
운동치료·등속성운동치료[1일당](Therapeutic Exercise-Isokinetic)	MM103
풀치료·보행풀치료[1일당](Pool Therapy-Walking Pool Therapy)	MM047
풀치료·전신풀치료[1일당](Pool Therapy-Whole Body Pool Therapy)	MM048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MM105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Simple)	MM111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Complex)	MM112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Special)	MM113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MM114
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Neurogenic Bladder Training)	MM120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MM151
호흡재활치료[1일당](Rehabilitative Breathing Therapy)	MM290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Mattress or Mobilization Training)	MM301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Gait Training) - 주 : 1.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302
2. '주1'의 보행훈련을 뇌졸중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365.55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MM304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or 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	MZ008
연하장애재활치료(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	MX141
신경인성 장훈련 치료[1일당](Neurogenic Bowel Training)	MM420
심장재활-심장재활치료(Cardiac Rehabilitation-Cardiac Rehabilitation Therapy)	MM453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Enhanced External Counterpulsation)	MZ011
항문직장및골반근의생체피드백이치료[1일당](Anorectal And Pelvic Muscle Biofeedback)	MX03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치료 당시
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
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64】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 진료행위코드 분류표

구 분	진료행위코드
1/3약당 스케일링	U2232
전약 스케일링	U2233

【별표65】 X-ray촬영 및 파노라마촬영 진료행위코드 분류표

구 분		진료행위코드
X-ray 촬영	1. 치근단 촬영	G9101~G9105
	2. 교익 촬영	G9501~G9505
	3. 교합 촬영	G9601
파노라마 촬영		G9701, G9761

【별표66】 사시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사시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
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
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마비성 사시	H49
2. 기타 사시	H50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
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67】 척추측만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척추측만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척추측만증	M41
2. 척추의 선천변형	Q67.5
3. 선천성 골기형으로 인한 선천성 척추측만증	Q76.3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68】 뇌심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심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뇌질환	[뇌혈관질환]	
	1. 거미막하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8. 기타 뇌혈관 질환	I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뇌질환	[두개내손상]	
	1. 두개내손상	S06
뇌질환	[뇌전증]	
	1. 뇌전증	G40
	2. 뇌전증지속상태	G41
뇌질환	[일과성허혈발작]	
	1.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G45
뇌질환	[파킨슨병]	
	1. 파킨슨병	G20
	2. 이차성 파킨슨	G21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뇌수막염] 1. 뇌염, 척수염 및 뇌척추염	G04
	[허혈심장질환] 1. 협심증 2. 급성심근경색증 3. 후속 심근경색증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6. 만성 허혈심장병	I20 I21 I22 I23 I24 I25
	[대동맥류 및 대동맥류 박리] 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홍부 혈관 및 심장의 손상] 1. 홍부 혈관의 손상 2. 심장의 손상	S25 S26
심장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급성 심낭염 심낭의 기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낭염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비류마티스성 승모판 장애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장애 비류마티스성 삼첨판 장애 폐동맥판 장애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급성 심근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심근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심방실 차단 및 좌각 차단	I30 I31 I32 I33 I34 I35 I36 I37 I38 I39 I40 I41 I42 I43 I44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기타 전도 장애 심장 정지 발작성 빈맥 심방세동 및 조동 기타 심장성 부정맥 심부전 심장 질환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 장애	I45 I46 I47 I48 I49 I50 I51 I52
	[류마티스 심장질환] 심장 침습이 있는 류마티스 열 류마티스성 승모판 질환 류마티스성 대동맥판 질환 류마티스성 삼첨판 질환 다발성 판막 질환 기타 류마티스성 심장 질환	I01 I05 I06 I07 I08 I09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69】 급여 뇌심질환 검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뇌심질환 검사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치료		수가코드
뇌CT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5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HA46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이중, 삼중, 삼차원CT, CT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뇌조CT	HA47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제한적 CT	HA44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851
뇌MR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일반-촬영료 등	HI1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일반-촬영료 등	HI1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일반-판	HJ101

대상치료		수가코드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일반-판독료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1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5
뇌척수액검사	요추천자[뇌척수압측정포함]	C8000
뇌파검사	각성뇌파검사-18채널미만	F6141
	각성뇌파검사-18채널미만(이동뇌파를 실시한 경우)	F6142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1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이동뇌파를 실시한 경우)	FA142
	수면뇌파검사-18채널미만	F6145
	수면뇌파검사-18채널미만(각성뇌파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F6144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5

대상치료		수가코드	대상치료		수가코드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각성뇌파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	FA144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중재적시술유도제 2회부터·촬영료 등	HI324
	특수뇌파검사-약물 또는 물리적 유발 뇌파검사-18채널미만	F6147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일반·판독료	HJ124
	특수뇌파검사-약물 또는 물리적 유발 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7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4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채널 미만	F6148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중재적시술유도제 2회부터·판독료	HJ324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채널 이상	FA148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4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채널 이상-나비뼈전극 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	F61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4
	보행뇌파검사-4시간이상8시간이하	F6143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일반·촬영료 등	HI140
	보행뇌파검사-8시간초과	F6146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40
	지속적 뇌파 감시[1일당]	F6149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40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외, 1일당]-64채널미만	F615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일반·판독료	HJ140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외, 1일당]-64채널이상	F6153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40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내, 1일당]-64채널미만	F6152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40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내, 1일당]-64채널이상	F615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40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고해상력	HA4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740
심장CT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기타의 경우	HA434	심장초음파 검사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흉부 심초음파	EB430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HA464		심장-경흉부 심초음파-단순	EB43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이중, 삼중, 삼차원CT, CT혈관조영, 관절강내조영촬영, Cine CT	HA474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EB432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제한적 CT	HA444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전문	EB433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	HA834			
심장MRI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일반·촬영료 등	HI1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조영제 주입	HI224			

대상치료	수가코드
심장-부하 심초음파-약물부하	EB434
심장-부하 심초음파-운동부하	EB435
심장-태아정밀 심초음파	EB436
심장-경식도 심초음파	EB611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심초음파	EB610
심장-심장내 초음파	EB612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검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0】 특정부위·질병 분류표

① 특정부위

특정부위
1. 위, 십이지장 2.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충수돌기 포함) 3. 대장(맹장, 직장 제외) 4. 직장 5. 항문 6. 간 7. 담낭(쓸개) 및 담관 8. 췌장 9. 비장 10.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 포함) 11.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굴) 포함] 12. 인두 및 후두(편도 포함) 13. 식도 14.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15.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돌기) 포함]

특정부위
16. 안구 및 안구부속기 [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17. 신장 18. 부신 19. 요관, 방광 및 요도 20. 음경 21. 질 및 외음부 22. 전립선 23. 유방(유선 포함) 24. 자궁[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25. 자궁체부(자궁몸통)(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26. 난소 및 난관 27.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28. 갑상선 29. 부갑상선 30.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31.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32. 경추부(해당신경 포함) 33. 흉추부(해당신경 포함) 34. 요추부(해당신경 포함) 35.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36. 왼쪽 어깨 37. 오른쪽 어깨 38. 왼팔(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39. 오른팔(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40.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41.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42. 왼쪽 고관절 43. 오른쪽 고관절 44. 왼쪽 다리(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45. 오른쪽 다리(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46.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47.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48.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49. 쇄골 50. 늑골(갈비뼈)

2 특정질병

특정질병	분류번호
51. 담석증	K80
52. 요로결석증	N20~N23
53. 연골증, 관절증, 관절염	M91~M94, M05~M06, M08, M13, M15~M19
54. 척추질환	M40~M41, M43, M45~47, M48.0, M50~M51, M53~54
55. 심장질환	I00~I02, I05~I09, I20~I28, I30~I52
56. 뇌혈관질환	G45~46, I60~I69
57. 고혈압	I10~I13, I15
58. 당뇨병	E10~E14, O24
59. 결핵	A15~A19, B90
60. 암	C00~C26, C30~C41, C43, C45~C58, C60~C72, C74~97, D45~D46, D47.1, D47.3~D47.5
61. 골반염	N73~N74
62. 자궁내막증	N80
63. 복막의 질환	K63, K65~K67
64. 하지의 정맥류	I83
65. 통풍	E79, M10
66. 골다공증	M80~M82
67. 지질단백질대사 장애 및 기타 지질증	E78

【별표71】 5대난치성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5대난치성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재생불량성빈혈	후천성 순수적혈구 무형성[적모구감소]	D60
	기타 무형성 빈혈	D61
운동신경세포병	운동신경세포병	G12.2
	확장성 심근병증	I42.0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심근질환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전신홍반루프스	전신홍반루프스	M32
만성 콩팥병	만성 콩팥병(5기)	N18.5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72】 급여 뇌혈관조영술 및 관상동맥조영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뇌심질환 검사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치료		수가코드
뇌혈관조영술	두경부동맥조영-추골동맥	HA601
	두경부동맥조영-총경동맥	HA602
	두경부동맥조영-외경동맥	HA603
	두경부동맥조영-내경동맥	HA604
	두경부동맥조영-내경동맥폐색검사(조영술로 포함)	HA606
	두경부동맥조영-전뇌동맥	HA605
관상동맥조영술	흉부동맥조영-우심방조영	HA610
	흉부동맥조영-우심실조영	HA611
	흉부동맥조영-좌심실조영	HA612
	흉부동맥조영-좌심방조영	HA613
	관상동맥조영	HA670
	이식된 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 관상동맥조영촬영포함]	HA680
	이식된 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 관상동맥조영촬영포함]-2개 혈관부터 최대 3개 혈관	HA681
	이식된 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 관상동맥조영촬영포함]과 동시촬영된 좌심실조영촬영	HA682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검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3】 아나필락시스쇼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아나필락시스쇼크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1.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78.0
2.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쇼크	T78.2
3. 혈청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0.5
4. 적절히 투여된 올바른 약물 또는 약제의 유해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8.6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74】 주요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7.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I67.0
8.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I67.1
9. 모야모야병	I67.5
10. 두개내정맥계통의 비화농성 혈전증	I67.6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대뇌동맥염	I67.7
12. 뇌아밀로이드혈관병증	I68.0
13.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대뇌동맥염	I68.1
14.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대뇌동맥염	I68.2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75】 주요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허혈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불안정협심증	I20.0
2. 연축의 기제가 있는 협심증	I20.1
3. 급성심근경색증	I21
4. 후속 심근경색증	I22
5.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6.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0
7. 드레슬러증후군	I24.1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76】 특정경증상해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경증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치아의 파절	S02.5
치아의 탈구	S03.2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77】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기간	지급이자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및 (계약의 소멸)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가산이율(8.0%)
보통약관 9.(만기환급금의 지급)의 만기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통약관 보장부분 보험기간 만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통약관 보장부분 보험기간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및 특별약관 만기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 ^{주6)} 의 50% 1년 초과기간 : 공시이율 ^{주6)} 의 40%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구분	기간		지급이자
태아기간 적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이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이전	공시이율
		이 보험의 보험기간 만료이후	1년이내 : 공시이율의 50%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1년초과기간 : 공시이율의 40%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만기환급금 및 적립환급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보통약관 8.(보험금의 지급절차)의 ②, ① 내지 ⑥ 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의 경우 평균공시이율로 적용합니다.
7.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별표78】 1~5종수술(동일) 분류표

1. 일반적인 상해 및 질병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이식수술(25cm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이식수술(25cm미만인 경우)	1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3
	4. 기타 유방수술[농양(고름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1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拔釘術)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 [치(齒)·치은·치근 (齒根)·치조골(齒 槽骨)의 처치, 임 플란트(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5. 골(骨) 이식수술	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 · 비중격(鼻中隔) · 상악골(上顎骨) · 하악골(下顎骨)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	3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1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수술	2
	11. 사지(四肢) 절단수술 [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	-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3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14. 근(筋), 건(腱), 인대(靱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수술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
	19. 폐장(肺臟) 이식수술[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25. 심장막(心臟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26. 심장내(心臟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
소화기계의 수술	30. 이하선 절제수술	3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胰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소화기계의 수술	37. 간장 이식수술	5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	5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고름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44. 치루(痔漏), 치열(痔裂),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	1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함]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4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	2
	47. 방광류 교정수술	1
	48. 요실금수술(급여)	1
	49.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
	50.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
	51. 고환(辜丸), 부고환(副辜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2
	52. 음낭관혈수술	1
	53.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단, 질병1~5종수술비ⅡQ(동일질병당1회지급)	1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내분비계의 수술	(비갱신형/갱신형) 담보에서만 보장)	
	55.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1
	56. 질탈(腔脫)근본수술	1
	57.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
	58.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3
신경계의 수술	59. 부신(副腎) 절제수술	4
	60.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
	61. 신경(神經) 관혈수술	2
	62.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
	63.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内外) 관혈수술	3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64.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 [안검내반증 제외]	1
	65. 눈물소관(淚小管, 눈물길)형성수술 [누관튜브삽입술 포함]	1
	66.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7.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
	68.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
	69. 각막, 공막 이식수술	2
	70.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
	71.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
	72.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
	73.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2
	74.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시력회복 및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1
	75.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2
	76.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填術)	3
	77. 안와내종양절제수술	3
	78.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1
	79. 안근(眼筋)관혈수술	1
청각기(聽覺器)의 수술	80.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2
	81.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82.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83.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1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4. 내이(內耳) 관혈수술	3
	85.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
	86.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87.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
	88.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2
	89.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
	89-1. 뇌, 심장	3
	89-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2
	89-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

- 주1) 상기 1~88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9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8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 주2) 상기 44항(치루(痔漏), 치열(痔裂), 치핵(痔核) 근본수술), 48항(요실금수술(급여)) 수술은 질병1~5종수술비Ⅱ 담보에만 적용되며, 상해1~5종수술비Ⅱ 담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48항(요실금수술(급여))는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주3) 상기 54항(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수술은 질병1~5종수술비Ⅱ Q(동일 질병당1회지급) (비갱신형/갱신형) 담보에만 적용됩니다.

2.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수술명	수술종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	5
1-1. 기타피부암(C44)	3
2. 내시경 수술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3

- 주)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1. 일반 상해 및 질병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3.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수술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

[1~5종 수술(동일) 분류표 사용 지침]

-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동일) 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遮斷, Nerve Block)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광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 '1~5종 수술(동일) 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
 '1~5종 수술(동일) 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1~5종 수술(동일) 분류표' 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 수술(동일) 분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인 경우에는 '1~5종 수술(동일) 분류표' 중 '1. 일반적인 상해 및 질병치료 목적의 수술' 89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2.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 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요실금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요실금수술(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요실금수술-개복에 의한 수술	R3562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자기근막을 이용한 경우 (근막채취료 포함)	R3564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기타의 경우	R3565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79】 특정백내장 및 수정체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백내장 및 수정체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모르가니형 노년백내장	H25.2
외상성 백내장	H26.1
합병백내장	H26.2
약물유발 백내장	H26.3
수정체의 탈구	H27.1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80】 뇌전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전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뇌전증	G40
2. 뇌전증지속상태	G41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81】 심근병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심근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심근병증	I42
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82】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위, 십이지장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위·십이지장	1. 위의 양성신생물	D13.1
	2. 십이지장의 양성신생물	D13.2
	3. 위 및 십이지장의 용종	K31.7
대장	4. 맹장의 양성신생물	D12.0
	5. 충수의 양성신생물	D12.1
	6. 상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2
	7. 횡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3
	8. 하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4
	9. 구불결장의 양성신생물	D12.5
	10.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	D12.6
	11.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양성신생물	D12.7
	12. 직장의 양성신생물	D12.8
	13. 직장용종	K62.1
	14. 결장의 용종	K63.5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83】 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5대기관의 양성신생물(용종포함)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간, 담관 및 췌장	1. 간의 양성신생물, 간내담관의 양성신생물	D13.4
	2. 간외담관의 양성신생물	D13.5
	3. 췌장의 양성신생물	D13.6
갑상선	4.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D34
남성생식기관	5. 남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D29
여성생식기관	6. 자궁의 평활근종	D25
	7. 자궁의 기타 양성신생물	D26
	8. 난소의 양성신생물	D27
	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D28
	10. 여성생식관의 용종	N84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84】 5대기관 양성신생물(용종포함) 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5대기관 양성신생물 수술(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분	대상수술	분류번호
간	내시경 종양제거 수술	Q7611 ~Q7789 QX706
	간농양(낭종) 수술 가. 개복에 의한 흡입 나. 배액을 위한 간절개술 다. 조대술 라. 낭종적출술	Q7211 Q7212 Q7213 Q7214
	담도낭종수술 가. 우회술 나. 절제술 담도종양수술 가. 양성	Q7331 Q7332 Q7341
	췌장가성낭종수술 가. 조대술 나. 외부배액법 다. 내부배액법 췌장양성종양(낭종, 선종) 절제	Q7541 Q7542 Q7543 Q7550
갑상선	갑상선수술 가. 갑상선염 전절제술 (1) 편측 (2) 양측 나. 갑상선염 아전절제술 (1) 편측 (2) 양측 갑상선설관낭종절제술	P4551 P4552 P4553 P4554 P4558

구분	대상수술	분류번호
남성생식기관	외성기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01
여성생식기관	외음부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66
	질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70
	자궁근종절제술 가. 복부접근 (1) 단순 (2) 복잡 나. 질부접근 다. 복강경술	R4124 R4127 R4123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가. 3cm 미만 나. 3cm 이상(다발성 포함)	R4128 R4129
	자궁경관점막폴립절제술	R4125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R4126
	부속기 종양 적출술 가. 양성	R4240 R4241
		R442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술 당시
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 해당 여부
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85】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6. 1. 1시행)"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 상	특정기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아래의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16대특정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2.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1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 수막의 악성신생물	C70
- 뇌의 악성신생물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2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호지킨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대상질병	분류번호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96
-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6.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7. 담낭의 악성신생물	C23
8.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C24
9. 기관의 악성신생물	C33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4
11. 소장악성신생물	C17
12. 횡선의 악성신생물	C37
13.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39
14. 중피종	C45
15. 카포시육종	C46
16.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C48

<암(16대특정암, 소액 및 유사암 제외)>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위의 악성 신생물	C16
-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8
-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19
-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0
-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1
-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	
-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0
-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1
-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2

대상질병	분류번호
-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8
4.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5.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C47
-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
6.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1
- 질의 악성 신생물	C52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5
-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7
- 태반의 악성 신생물	C58
7.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0
-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2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3
8. 요로의 악성신생물	
-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C64
- 신우의 악성 신생물	C65
- 요관의 악성 신생물	C6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C68
9.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69
10.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4
-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5
11.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2.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3.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14.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D46
15.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16. 골수섬유증	D47.4

<소액 및 유사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4
2.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3.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C53
4.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C54
5.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C61
6. 방광의 악성신생물	C67
7.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C73
8. 제자리암종	
-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 제자리흑색종	D03
-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9. 양성신생물	
-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10.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D47.7

대상질병	분류번호
미상의 신생물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4.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5.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6.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86】 대상포진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대상포진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대상포진	B02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87】 대상포진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대상포진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대상포진눈병	B02.3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88】 녹내장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녹내장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녹내장	H40
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2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89】 특정망막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망막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망막박리 및 망막열공	H33
2.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H35.3
3. 망막층의 분리	H35.7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90】 특정다빈도 9대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다빈도 9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백내장	노년백내장	H25
	기타 백내장	H26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7
항문질환	항문 및 직장부의 열창 및 누공	K60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K61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K62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포함 - 치질	K64
대장종양	맹장의 양성신생물	D12.0
	충수의 양성신생물	D12.1
	상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2
	횡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3
	하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4
	구불결장의 양성신생물	D12.5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	D12.6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양성신생물	D12.7
	직장의 양성신생물	D12.8
	직장용종	K62.1
후각특정질환	결장의 용종	K63.5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0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J31
	코용종	J33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J34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피부종양	양성 지방종성 신생물 피부의 기타 양성 신생물	D17 D23
특정피부질환	피부의 농양, 종기 및 큰농기 기타 피부염 *제외 : 접촉피부염(L23 - L25) 건조피부피부염(L85.3) 소판유사건선(L41.3) 정체피부염(I83.1 - I83.2) 손발톱장애 피부 및 피하조직의 모낭낭 티눈 및 굳은살	L02 L30 L60 L72 L84
생식기질환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A59.0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노생식기계 편모충증(N51.0*)] ^{주1)} A59.08+(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노생식기계 편모충증) 중 편모충성 전립선염에 한함 [B26.0+ : 불거리고환염(N51.1*)] 여성 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N74.0*, N74.1*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A18.17+ ^{주2)})] 제외 ^{주2)} A18.17+(여성생식기관의 결핵) 중 자궁경부의 결핵(N74.0*), 결핵성 여성골반염증질환(N74.1*)에 한함 여성 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유산자 제외) (여성 불임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노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N40~N45, N49~N51 A59.08+ ^{주1)} B26.0+ N70~N77 N74.0*제외 N74.1*제외 N80~N95 N99
하지정맥류	하지의 정맥류	I83
유방의장애	유방의 비대	N62

1. 아래에 해당하는 질병코드를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에는 “비노생식계통의 결핵(A18.1)”으로 간주하며, “특정다빈도 9대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① “전립선의 결핵(A18.13)”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전립선장애키(N51.0)”로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 ②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고환 및 부고환의 장애(N51.1)”로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 ③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남성생식기관의 기타 장애(N51.8)”로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5.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92】 골절철심제거술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골절철심제거술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 주 : 골에 삽입한 금속핀이나 금속정 등을 간단히 제거한 경우 근막절개 하에 실시한 경우8)에는 770.08점을 산정하고, 근막절개 없이 실시한 경우9)에는 501.67점을 산정한다.	N0978 N0979
가. 골반골, 대퇴골	N0972
나. 상완골, 견갑골	N0973
다. 전완골, 하퇴골 (1) 요골과 척골중하나, 경골과 비골중 하나 (2) 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N0977 N0974
라. 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N0975
마. 중수골, 중족골, 지골	N0976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3】 급성간염(A,B,C형)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간염(A,B,C형)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급성 A형간염	B15
2. 급성 B형간염	B16
3. 급성 C형간염	B17.1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94】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언어장애 및 말더듬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표현언어장애	F80.1
수용성 언어장애	F80.2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	F80.3
말하기와 언어의 기타 발달장애/혀짧은소리	F80.8
말하기와 언어의 상세불명의 발달장애	F80.9
말더듬(말더듬증)	F98.5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및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95】 120대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20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술비의 경우 세부보장 - 1〉 20대질병

20대질병		분류기호
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I00~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I05~I09
	허혈심장질환	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2
	[A39.5+ : 수막알균성 심장병(I32.0*,I39.8*,I41.0*,I52.0*)] [B37.6+ : 칸디다심내막염]	A39.5+ B37.6+
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I60~I69
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B15~B19
	간의 질환	K70~K77
	[B25.1+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B58.1+ : 독소포자충간염(K77.0*)]	B25.1+ B58.1+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I70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천식	J45
	천식지속 상태	J46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J1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20대질병		분류기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B01.2+ : 수두폐렴(J17.1*)] [B58.3+ : 폐독소포자충증(J17.3*)]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재향군인병 폐렴이 합병된 홍역	J17 B25.0+ B05.2+ B01.2+ B58.3+ J18 A48.1 B05.2
결핵	결핵 [M01.1* : 결핵관절염(A18.01+)] [M49.0* : 척추의 결핵(A18.00+)] [M90.0* : 뼈의 결핵(A18.02+)]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 [N74.0*, N74.1*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A18.17+)]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결핵의 후유증	A15~A19 M01.1* M49.0* M90.0* N33.0* N74.0*, N74.1* K67.3* K93.0* B90
신부전	신부전	N17~N19
패혈증	연쇄알균패혈증 기타 패혈증	A40 A41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 [A39.0+ : 수막알균수막염(G01*)] [A87.1+ :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A87.0+ :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B00.3+ :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B05.1+ :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 [B26.1+ : 볼거리수막염(G02.0*)] [B01.0+ : 수두수막염(G02.0*)] [B02.1+ : 대상포진수막염(G02.0*)] [B37.5+ : 칸디다수막염(G02.1*)] [B38.4+ :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A85.1+ : 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A85.0+ : 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B00.4+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G00~G09 A39.0+ A87.1+ A87.0+ B00.3+ B05.1+ B26.1+ B01.0+ B02.1+ B37.5+ B38.4+ A85.1+ A85.0+

20대질병		분류기호
	[B05.0+ : 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 [B26.2+ : 볼거리뇌염(G05.1*)] [B01.1+ : 수두뇌염(G05.1*)] [B02.0+ : 대상포진뇌염(G05.1*)]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G05.1*, G02.0*)] [A32.1+ : 리스테리아수막염 및 수막뇌염(G01*, G05.0*)] [A06.6+ : 아메바성 뇌종양(G07*)] 뇌의 특정염증성질환	B00.4+ B05.0+ B26.2+ B01.1+ B02.0+ B06.0+ A32.1+ A06.6+ A83~A86
파킨슨병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G20 G21
다발경화증	다발경화증	G35
자율신경계통 의 장애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G90.5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제외 [G90.6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제외 [G90.7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외	G90 G90.5 제외 G90.6 제외 G90.7 제외
대동맥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폐질환	폐기종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흉막의 기타 질환	J43 J44 J47 J85~J86 J90~J94
급성 췌장염	급성 췌장염	K85
췌장질환	췌장의 기타 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 [B25.2+ : 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K87.1*)] [B26.3+ : 볼거리췌장염(K87.1*)]	K86 K87 B25.2+ B26.3+

20대질병		분류기호
크로이츠펔트-야콥병	크로이츠펔트-야콥병	A81.0
조로증	조로증	E34.8
기타 동맥류 박리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2

〈수술비의 경우 세부보장 - 2〉 5대질병

5대질병		분류기호
위·십이지장궤양	위궤양	K25
	십이지장궤양	K26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궤양	K27
녹내장	녹내장	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2
뇌전증	뇌전증	G40
	뇌전증지속상태	G41
버거씨병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위공장궤양	위공장궤양	K28

〈수술비의 경우 세부보장 - 3〉 68대생활질환

68대생활질환		분류기호
담석증	담석증	K80
사타구니 탈장	사타구니탈장	K40
편도염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J35
축농증	만성 부비동염	J32
손목터널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G56.0
어깨병변	어깨병변	M75

68대생활질환		분류기호
골다공증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0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2
	골연속성의 장애	M84
황반변성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H35.3
급성상기도감염	급성상기도감염	J00-J06
담낭담도질환	담낭염(쓸개염)	K81
	담낭의 기타질환	K82
	담도의 기타질환	K83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편도주위 농양(고름집)	J36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J3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J38
	상기도의 기타 질환	J39
특정 부위의 탈장	대퇴탈장	K41
	배꼽탈장	K42
	복벽탈장	K43
	횡격막탈장	K44
	기타 복부탈장	K45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K46
후각특정질환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J30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J31
	코용종	J33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J34
중이의 진주종 및 용종	중이의 진주종	H71
	중이의 용종	H74.4
귀경화증	귀경화증	H80
인플루엔자	확인된 동물에게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09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J11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J20-J22

68대생활질환		분류기호
외부요인 폐질환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60-J70
기타 호흡기질환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J80-J84
근육장애	근육장애	M60~M63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M72.2
중이 및 유도의 질환	중이 및 유도의 질환 [H71 : 중이의 전주종] 제외 [H74.4 : 중이의 용종] 제외 [B05.3+:중이염이합병된 홍역(H67.1*)]	H65~H75 H71 제외 H74.4 제외 B05.3+
내이의 질환	전정기능의 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현기증후군 내이의 기타 질환	H81 H82 H83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B00.50+:홍채섬모체염(H22.0*)] [B00.51+:각막염(H19.1*)] [B30.0+: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H19.2*)] 맥락막 및 망막의 염증성, 구조적 및 혈관성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처치후 장애 H59.8(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 처치후 장애) 중 미만성 총판성 각막염에 한함	H15~H22 B00.50+ B00.51+ B30.0+ H30~H34 H46~H48 H59.8 ^{주2)}
사구체질환	사구체질환 [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N08.5*)] H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중 사구체질환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에 한함 [N08.3:당뇨병에서의사구체장애]제외	N00~N08 M32.1+ ^{주3)} (N08.5*) N08.3 제외
신세뇨관-간질 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M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N16.4*)] H32.1+(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중 세뇨관-간질신장병증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에 한함	N10~N16 M32.1+ ^{주4)} (N16.4*)

68대생활질환		분류기호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5~N29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방광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관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방광의 기타 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N33.0*:결핵성방광염(A18.11+)]제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장애 [B37.40+ : 칸디다 요도염(N37.0*)] 비뇨계통의 기타장애 [N39.3:스트레스요실금]제외 [N39.4:기타명시된요실금]제외	N30 N31 N32 N33 N33.0*제외 N37 B37.40+ N39 N39.3 제외 N39.4 제외
유방의 장애	유방의 장애	N60~N64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K50~K52
특정 장질환	장의 혈관장애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쇄 장의 게실병	K55 K56 K57
복막의 질환	복막의 질환 [K67.3*:결핵성복막염(A18.30+)]제외	K65~K67 K67.3*제외
척추변형	변형성 등병증	M40~M43
척추병증	강직척추염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증 기타척추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M49.0* : 척추의 결핵(A18.00+)]제외	M45 M46 M47 M48 M49 M49.0*제외
추가판장애(디스크질환)	경추간판장애 기타 추간판장애 [G55.1*: 추간판장애에서의 신경근및신경총압박(M50-M51+)]	M50 M51 G55.1*

68대생활질환		분류기호
안면신경장애	삼차신경의 장애	G50
	안면신경장애	G51
	기타 뇌신경의 장애	G52
단일신경병증	팔의 단일신경병증	G56
	[G56.0:손목터널증후군]제외	G56.0 제외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G57
	기타 단일신경병증	G5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	G59
	[G59.0*:당뇨병성단일신경병증]제외	G59.0*제외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M35
	경추상완증후군	M53.1
	기타 연조직장애	M70~M79
		M74 제외
		M78 제외
	[M72.2:발바닥근막성섬유증]제외	M72.2 제외
	[M75:어깨병변]제외	M75 제외
윤회막 및 힘줄장애	윤회막 및 힘줄장애	M65~M68
식도질환	식도염	K20
	위-식도역류병	K21
	식도의 기타 질환	K2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K23
위,십이지장 질환	위염 및 십이지장염	K29
	기능성 소화불량	K30
외이의 질환 및 귀의 기타장애	외이의 질환	H60~H62
	귀의 기타장애	H90~H95
장기의 특정기타질환	장의 농양	K63.0
	장의 천공(비외상성)	K63.1
	장의 누공	K63.2
	장의 궤양	K63.3
특정 요도질환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N34
	요도협착	N35
	요도의 기타 장애	N36

68대생활질환		분류기호
당뇨병질환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소-관련 당뇨병	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N08.3
고혈압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신장병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
	이차성 고혈압	I15
	고혈압성 뇌병증	I67.4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H35.0 ^{주5)}
	망막병증에 한함	
소 화 계 통 의 양성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계통의 양성신생물	D13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신생물	D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양성신생물	D15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D16
조직의 양성신생물	중피조직의 양성신생물	D19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신생물	D20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신생물	D21
유방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D24

68대생활질환		분류기호
생식기의 양성신생물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난소의 양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5 D26 D27 D28 D29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D30
수막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D3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	D33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D34 D35
주침샘의 양성신생물	주침샘의 양성신생물	D11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E20 E21
뇌하수체기능저하증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	E22 E23
특정소화기질환	위 및 십이지장의 기타질환	K31
장흡수장애	장흡수장애	K90
비장질환	비장의 질환	D73
전신결합조직장애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기타 괴사성 혈관병증	M30 M31

68대생활질환		분류기호
대사장애	쿠싱증후군 부신생식기장애 고알도스테론증 부신의 기타 장애	E24 E25 E26 E27
수면무호흡증	수면무호흡	G47.3
침샘질환	침샘의 질환	K11
갑상선질환	갑상선의 장애 [H06.2* :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00~E07 H06.2* E89.0
기타 등병증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M53.1 : 경추상완증후군] 제외 등통증	M53 M53.1 제외 M54
〈수술비의 경우 세부보장 - 4〉 특정다빈도5대질환		
특정다빈도5대질환		분류기호
관절염	감염성 관절병증 [M01.1* : 결핵관절염(A18.01+)] 제외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J99.0* : 류마티스페질환(M05.1+)]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 제외 관절증 기타 관절장애	M00~M03 M01.1* 제외 M05~M14 J99.0* M14.2* 제외 M15~M19 M20~M25
백내장	노년백내장 기타 백내장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5 H26 H27
결막장애	결막의 장애	H10~H13

특정다빈도5대질병		분류기호
생식기질환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A59.0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계 편모충증(N51.0*)] ^{주6)} A59.08+(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생식기계 편모충증) 중 편모충성 전립선염에 한함 [B26.0+ : 불거리고환염(N51.1*)] 여성 골반기관의 염증성 질환 [N74.0*,N74.1* : 여성생식기관의 결핵(A18.17+ ^{주8)}]) 제외 여성 생식관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 유산자 제외) (여성 불임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N40~N45, N49~N51 A59.08+ ^{주6)} B26.0+ N70~N77 N74.0*,N74.1*제외 N80~N95 N99
	기타 망막장애 [H35.3:황반및후극부의변성]제외 [H35.0:배경망막병증 망막혈관변화]제외 ^{주3)} H35.0(배경망막병증 망막혈관변화)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에 한함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망막장애 [H36.0:당뇨병성망막병증]제외	H35 H35.3 제외 H35.0 ^{주3)} 제외 H36 H36.0 제외

〈수술비의 경우 세부보장 - 5〉 22대질병		
22대질병		분류기호
치핵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포함 - 치질 제외 - 합병증: 출산 및 산후기(O87.2), 임신(O22.4)	K64
치열 및 치루	항문 및 직장부의 열창 및 누공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K60 K61 K62
중증근무력증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G70
전신결합조직 장애II	전신홍반루푸스 피부다발근염 전신경화증	M32 M33 M34
안와장애	안와의 장애	H05
유리체의 장애	유리체의 장애	H43
골수염	골수염	M86
골괴사증	골괴사	M87
뼈의 파절병	뼈의 파절병[변형성 골염]	M88
연골병증	연골병증	M91~M94
눈및부속기양 성신생물	눈 및 부속기의 양성 신생물	D31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4
하지정맥류	하지의 정맥류 임신중 하지의 정맥류성 정맥 산후기중 기타 정맥합병증	I83 O22.0 O87.8

22대질병		분류기호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0
충수질환	충수의 질환	K35~K38
요도결석증	요도결석	N21.1
	기타 하부요로결석	N21.8
	상세불명의 하부요로결석	N21.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N22*
방광의결석	방광의 결석	N21.0
다낭성 난소증후군	다낭성 난소증후군	E28.2
대상포진	대상포진	B02
	[B02.0 : 대상포진뇌염(G05.1*)] 제외	B02.0 제외
	[B02.1 : 대상포진수막염(G02.0*)] 제외	B02.1 제외
식도정맥류	식도정맥류	I85
안구의 장애	안구의 장애	H44
음낭 정맥류	음낭 정맥류	I86.1

1.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5.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96】 7대기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7대기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환구분	대상질병	분류기호
뇌질환	거미막하 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 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심장질환	급성 루마티스열	I00~I02
	만성 루마티스 심장질환	I05~I09
	허혈심장질환	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2
	[A39.5+ : 수막알균성 심장병(I32.0*,I39.8*,I41.0*,I52.0*)] [B37.6+ : 칸디다심내막염]	A39.5+ B37.6+
간질환	바이러스 간염	B15~B19
	간의 질환 [B25.1+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B58.1+ : 톡소포자충간염(K77.0*)]	K70~K77 B25.1+ B58.1+
폐질환	폐렴	J12~J18
	[B01.2+ : 수두폐렴(J17.1*)]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B58.3+ : 폐톡소포자충증(J17.3*)]	B01.2+ B05.2+ B25.0+ B58.3+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질환구분	대상질병	분류기호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폐기종	J43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4
	천식	J45
	천식지속 상태	J46
	기관지확장증	J47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85~J86
신장질환	급성 신부전	N17
	만성 콩팥병	N18
	상세불명의 신부전	N19
소화기관질환	위궤양	K25
	십이지장궤양	K26
	상세불명부위의 소화성궤양	K27
	장의 혈관장애	K55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쇄	K56
	장의 게실병	K57
	식도의 기타 질환	K22.0-K22.7
담낭·담도 및 췌장질환	담석증	K80
	담낭염(쓸개염)	K81
	담낭의 기타질환	K82
	담도의 기타질환	K83
	급성 췌장염	K85
	췌장의 기타 질환	K8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췌장의 장애	K87
	[B25.2+:거대세포바이러스췌장염(K87.1*)]	B25.2+
	[B26.3+:불거리췌장염(K87.1*)]	B26.3+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97】 장루(인공항문)조성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장루(인공항문)조성술(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 - 튜브형	Q2791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 - 루프형	Q2792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 - 말단형	Q2793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 - 이중말단형	Q2794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 - 장루교정술(루프형 회장루 교정술)	Q2796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 - 장루교정술(루프형 결장루 교정술)	Q2797
장루조성술[인공항문조성술] - 장루교정술 (말단 회장루 또는 말단 결장루 교정술)	Q2798
결장절제술 - 결장절제술 및 결장루, 원위장 폐쇄 [하트만 수술]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A679
결장절제술 - 결장절제술 및 결장루, 원위장 폐쇄 [하트만 수술]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2679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 회장루 동시 실시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것)	QA925
결장 및 직장 전 절제술 - 회장루 동시 실시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지 않는 것)	Q2925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8】 기관절개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기관절개술(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기관절개술 - 관혈적 기관절개술	01300
기관절개술 - 경피적 확장 기관절개술	01301
윤상갑상막절개술 - 투관침에 의한 경우	01303
윤상갑상막절개술 - 피부절개에 의한 경우	01306
종격동 기관절개술	01305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99】 정신질환 1~5군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질환	분류번호
1군	조현병	F20
	지속성 망상장애	F22
	조현정동장애	F25
	조증에피소드	F30
	양극성 정동장애	F31
2군	조현형장애	F21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
	유도망상장애	F24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8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F32.1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F32.2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F32.3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	F33.1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F33.2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F33.3
3군	알코올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F04
	알코올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F05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F06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F07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F09
	경도 우울에피소드	F32.0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기타 우울에피소드	F32.8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F32.9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도	F33.0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관해 상태	F33.4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	F33.8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	F33.9
	광장공포증	F40.0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F41.0
	범불안장애	F41.1
	강박장애	F42
	외상후스트레스장애	F43.1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F90.0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F95.1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틱장애[데라투렛증후군]	F95.2
	말더듬[말더듬증]	F98.5
4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후기의 정신 및 행동 장애	F5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34
	기타 기분[정동]장애	F38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F39
	사회공포증	F40.1
	특정 (고립된) 공포증	F40.2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	F40.8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	F40.9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F41.2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	F41.3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F41.8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F41.9
	급성 스트레스반응	F43.0
	적응장애	F43.2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F43.8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F43.9
	해리[전환]장애	F44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5군	신체형장애	F45
	기타 신경성 장애	F48
	식사장애	F50
	비기질성 수면장애	F51
	운동과다성 행동장애	F90.1
	기타 운동과다장애	F90.8
	상세불명의 운동과다장애	F90.9
	행동장애	F91
	행동 및 정서의 혼합 장애	F92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F93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만 발병하는 사회적 기능수행장애	F94
	일과성 틱장애	F95.0
	기타 틱장애	F95.8
	상세불명의 틱장애	F95.9
	비기질성 유뇨증	F98.0
	비기질성 유분증	F98.1
	영아기 또는 소아기의 급식장애	F98.2
	영아기 또는 소아기의 이식증(異食症)	F98.3
	상동적(常同的) 운동장애	F98.4
	속화증(速話症)	F98.6
	기타 명시된 소아기와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F98.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상세불명의 행동 및 정서 장애	F98.9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00】 급여 암 주요재활치료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암 주요재활치료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풀치료-보행풀[1일당](Walking Pool Therapy)	MM047
풀치료-전신풀[1일당](Whole Body Pool Therapy)	MM048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Therapeutic Exercise-Complex)	MM102
운동치료-등속성운동치료[1일당](Therapeutic Exercise-Isokinetic)	MM103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	MM105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Simple)	MM111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Complex)	MM112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Occupational Therapy-Special)	MM113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	MM114
신경인성방광훈련치료(Neurogenic Bladder Training)	MM120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MM131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치료[1일당]-2부위이상각각 실시(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	MM132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MM151
압박치료[1일당](Pneumatic Compression)	MM190
복합림프물리치료[1일당](Complex Decongestive Physical Therapy)	MM200
호흡재활치료[1일당](Rehabilitative Breathing Therapy)	MM290
재활기능치료-매트및이동치료(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Mattress or Mobilization Training)	MM301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Gait Training)	MM302
항문직장및골반근의생체피드백이치료[1일당](Anorectal And Pelvic Muscle Biofeedback)	MX031
연하장애재활치료(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	MX14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or 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	MZ008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01】 주요바이러스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바이러스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급성 C형간염	B17.1
2. 델타-병원체가 있는 만성 바이러스B형간염	B18.0
3.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B형간염	B18.1
4. 만성 바이러스C형간염	B18.2
5.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
6.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
7. 기타 명시된 질환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02】 성장판부위골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성장판부위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아래팔의 골절	S5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대퇴골의 골절	S7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대퇴골의 출산손상	P13.2
기타 긴뼈의 출산손상	P13.3
출산손상으로 인한 쇄골의 골절	P13.4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03】 천식지속상태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천식지속상태」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천식지속상태	J46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04】 기흉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기흉 및 신생아 기흉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기호
기흉	J93
기흉 외상성 기흉	S27.0
신생아 기흉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흉	P25.1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05】수두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수두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기호
수두	B01
기타 선천성 바이러스 질환 (선천수두)	P35.8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06】수족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수족구로 분류되는 상병 및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해당하는 상병 및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및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 상병 및 질병	분류번호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구내염(수족구병)	B08.4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및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및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 및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및 질병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및 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07】 특정정신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우울에피소드	F32
재발성 우울장애	F33
공황장애 (간헐 발작성 불안)	F41.0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F43.1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및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08】 분만전후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분만전후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전 출혈	O46
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O67
3. 분만 후 출혈	O72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09】양수과다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양수과다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양수과다증	O40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10】양수과소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양수과소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양수과소증	O41.0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11】 특정임신중당뇨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임신중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임신중 생긴 당뇨병	O24.4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12】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 아래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5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 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작용 기전 분류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면역 관문 억제제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티센트릭주(아테졸리주맙)
	니볼루맙 nivolumab	옵디보주2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24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
	펌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키트루다주(펌브롤리주맙,유전자재조합)
	이필리무맙 ipilimumab	여보이주200밀리그램/40밀리리터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여보이주50밀리그램/10밀리리터 (이필리무맙,유전자재조합)
	더발루맙 durvalumab	임핀지주(2.4mL)(더발루맙) 임핀지주(10mL)(더발루맙)
	아벨루맙 avelumab	바벤시오주(아벨루맙)

작용 기전 분류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항체 약물 중합체 항암 치료제	트라스투주맙엠탄신 trastuzumab emtansine	캐싸일라주10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캐싸일라주160밀리그램 (트라스투주맙엠탄신)
	브렌투시맙베도틴 brentuximab vedotin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투시맙베도틴)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inotuzumab ozogamicin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 gemtuzumab ozogamicin	마일로탁주4.5mg
	폴라투주맙베도틴 Polatuzumab Vedotin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
카티 항암 치료제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김리아주(티사젠렉류셀)

1.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2.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3.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면역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13】 주요상해뇌출혈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상해뇌출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경막외출혈	S06.4
2.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3.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S06.6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14】안구특정상해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안구특정상해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상병	분류번호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안구열상 및 파열	S05.2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이 없는 안구열상	S05.3
이물이 있거나 없는 안와의 관통창	S05.4
이물이 있는 안구의 관통창	S05.5
이물이 없는 안구의 관통창	S05.6
안구의 박리	S05.7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15】부목치료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부목(Splint Cast)치료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부목-장상지[상완으로부터 수부까지]	T6151
부목-단상지[전완으로부터 수부까지]	T6152
부목-장하지[대퇴로부터 족부까지]	T6153
부목-단상지[하퇴로부터 족부까지]	T6154
부목-수지부	T6155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예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16】 정신질환 1~3그룹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질환	분류번호
1그룹	조현병	F20
	지속성 망상장애	F22
	조현정동장애	F25
	조증에피소드	F30
	양극성 정동장애	F31
	조현형장애	F21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
	유도망상장애	F24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8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F32.1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F32.2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F32.3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	F33.1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F33.2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F33.3
2그룹	알코올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F04
	알코올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F05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F06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F07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F09
	경도 우울에피소드	F32.0
	기타 우울에피소드	F32.8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F32.9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경도	F33.0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관해 상태	F33.4
	기타 재발성 우울장애	F33.8

구분	대상질환	분류번호
2그룹	상세불명의 재발성 우울장애	F33.9
	광장공포증	F40.0
	공황장애[간헐 발작성 불안]	F41.0
	범불안장애	F41.1
	강박장애	F42
	외상후스트레스장애	F4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후기의 정신 및 행동 장애	F53
3그룹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F34
	기타 기분[정동]장애	F38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F39
	사회공포증	F40.1
	특정 (고립된) 공포증	F40.2
	기타 공포성 불안장애	F40.8
	상세불명의 공포성 불안장애	F40.9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F41.2
	기타 혼합형 불안장애	F41.3
	기타 명시된 불안장애	F41.8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F41.9
	급성 스트레스반응	F43.0
	적응장애	F43.2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F43.8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F43.9
	해리[전환]장애	F44
	신체형장애	F45
	기타 신경성 장애	F48
	식사장애	F50
	비기질성 수면장애	F51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F90.0
	운동과다성 행동장애	F90.1
	기타 운동과다장애	F90.8
	상세불명의 운동과다장애	F90.9
	행동장애	F91
	행동 및 정서의 혼합 장애	F92
	소아기에만 발병하는 정서장애	F93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3그룹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만 발병하는 사회적 기능수행장애	F94
	일과성 틱장애	F95.0
	만성 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F95.1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틱장애[데라투렛 증후군]	F95.2
	기타 틱장애	F95.8
	상세불명의 틱장애	F95.9
	비기질성 유노증	F98.0
	비기질성 유분증	F98.1
	영아기 또는 소아기의 급식장애	F98.2
	영아기 또는 소아기의 이식증(異食症)	F98.3
	상동적(常同的) 운동장애	F98.4
	말더듬[말더듬증]	F98.5
	속화증(速話症)	F98.6
	기타 명시된 소아기와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F98.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상세불명의 행동 및 정서 장애	F98.9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17】 뇌동맥류(비파열성)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동맥류(비파열성)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I67.1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18】 주요심장염증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심장염증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급성 심장막염	I30
2. 심장막의 기타질환	I31
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4.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5.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6. 급성 심근염	I40
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19】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심장판막협착증(대동맥판막)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류마티스성 대동맥협착	I06.0
폐쇄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협착	I06.2
대동맥판협착	I35.0
폐쇄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협착	I35.2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20】 장애인의 기준 분류표

아래의 분류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분류	기준
지체장애인	1.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2.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7.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뇌병변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시각장애인	1.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4.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청각장애인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3.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4.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분류	기준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신장애인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 및 재발성 우울장애 2.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분류	기준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장루·요루 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管)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뇌전증장애인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별표12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분류표

아래의 분류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분류	기준
지체장애인	-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분류	기준
	4)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6)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7)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뇌병변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시각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청각장애인	1. 청력을 잃은 사람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언어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지적장애인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할이 가능한 사람
자폐성장애인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분류	기준
정신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신장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심장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탈출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주(mmHg) 이하인 사람

분류	기준
간장애인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 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안면장애인	-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장루·요루 장애인	-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뇌전증장애인	- 성인 뇌전증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소아청소년 뇌전증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별표122】 주요 장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 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크론병	K50
궤양성 대장염	K51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23】 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관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태아이상으로인한산모관리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태아의 (의심되는) 중추신경계통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5.0
태아의 (의심되는) 유전성 질환에 대한 산모관리	O35.2
모체의 바이러스병으로 인한 (의심되는) 태아손상에 대한 산모관리	O35.3
방사선으로 인한 (의심되는) 태아손상에 대한 산모관리	O35.6
기타 의학적 처치로 인한 (의심되는) 태아손상에 대한 산모관리	O35.7
태아저산소증의 징후에 대한 산모관리	O36.3
자궁내태아사망에 대한 산모관리	O36.4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24】 통합형 뇌관련질환 I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형 뇌관련질환 I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보장 - 1〉 뇌졸중

대상질병		분류기호
뇌졸중	1. 거미막하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신생아 뇌출혈	1. 출산 손상으로 인한 두개내 열상 및 출혈	P10
	2. 태아 및 신생아의 두 개내 비외상성 출혈	P52

〈세부보장 - 2〉 뇌혈관질환(뇌졸중제외)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2. 기타 뇌혈관 질환 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4.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4 I67 I68 I69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25】통합형 뇌관련질환Ⅱ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형 뇌관련질환Ⅱ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보장 - 1〉 뇌전증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뇌전증	G40
2. 뇌전증지속상태	G41

〈세부보장 - 2〉 주요상해뇌출혈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경막외출혈	S06.4
2.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3.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S06.6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26】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Ⅰ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형 심장관련질환Ⅰ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보장 - 1〉 급성심근경색증

대상질병	분류번호
1. 급성심근경색증	I21
2. 후속 심근경색증	I22
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	I23

〈세부보장 - 2〉 허혈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제외)

대상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I20
2.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3. 만성 허혈심장병	I25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27】 급여 안면부창상봉합술(3cm이상 또는 근육에 달하는 것)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창상봉합술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창상봉합술	
가. 안면 또는 경부	
(1) 단순봉합	
(가) 표재성인 것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002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002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002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S0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 길이 1.5cm 미만	S0031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S0032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003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003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0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S0040

내용	수가코드
(2) 변연절제를 포함	
(가) 표재성인 것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A02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A02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A02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SA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 길이 1.5cm 미만	SA031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SA032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A03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A03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A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SA040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28】 급여 창상붕합술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창상붕합술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창상붕합술	
가. 안면 또는 경부	
(1) 단순붕합	
(가) 표재성인 것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002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002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002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붕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붕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S0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 길이 1.5cm 미만	S0031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S0032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003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003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0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붕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52.00점을 가산하며, 창상붕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52.00점을 추가 가산한다.	S0040
(2) 변연절제를 포함	
(가) 표재성인 것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A02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A028

내용	수가코드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A02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붕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붕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SA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 길이 1.5cm 미만	SA031
2) 길이 1.5cm 이상~3.0cm 미만	SA032
3) 길이 3.0cm 이상~5.0cm 미만	SA037
4) 길이 5.0cm 이상~7.5cm 미만	SA038
5) 길이 7.5cm 이상~10.0cm 미만	SA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붕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63.81점을 가산하며, 창상붕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63.81점을 추가 가산한다.	SA040
가. 안면과 경부 이외	
(1) 단순붕합	
(가) 표재성인 것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SB02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붕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8.50점을 가산하며, 창상붕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78.50점을 추가 가산한다.	SB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 길이 2.5cm 미만	SB031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SB032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SB039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붕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78.50점을 가산하며, 창상붕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78.50점을 추가 가산한다.	SB040

내용	수가코드
(2) 변연절제를 포함 (가) 표재성인 것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103.14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103.14점을 추가 가산한다.	SC029 SC030
(나) 근육에 달하는 것 1) 길이 2.5cm 미만 2) 길이 2.5cm 이상~5.0cm 미만 3) 길이 5.0cm 이상~10.0cm 미만 주: 길이 10cm이상 창상봉합술을 시행할 경우 소정점수에 103.14점을 가산하며, 창상봉합길이가 5cm 증가될때마다 103.14점을 추가 가산한다.	SC031 SC032 SC039 SC040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29】 백내장/대장종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백내장및대장종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
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백내장	노년백내장	H25
	기타 백내장	H26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7
대장종양	맹장의 양성신생물	D12.0
	충수의 양성신생물	D12.1
	상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2
	횡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3
	하행결장의 양성신생물	D12.4
	구불결장의 양성신생물	D12.5
	상세불명의 결장의 양성신생물	D12.6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양성신생물	D12.7
	직장의 양성신생물	D12.8
	결장의 용종	K63.5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
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
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
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30】 10대소화계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0대소화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보장 - 1〉 특정6대소화계질환

대상질환		분류번호
특정 식도궤양	출혈을 동반한 식도의 궤양	K22.11
특정 위궤양	출혈이 있는 급성 위궤양	K25.0
	천공이 있는 급성 위궤양	K25.1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위궤양	K25.2
특정 십이지장궤양	출혈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K26.0
	천공이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K26.1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십이지장궤양	K26.2
특정 소화성궤양	출혈이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0
	천공이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1
	출혈 및 천공이 모두 있는 급성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2
위공장궤양	위공장궤양	K28
특정 위장염 및 결장염	방사선에 의한 위장염 및 결장염	K52.0
	독성 위장염 및 결장염	K52.1

〈세부보장 - 2〉 특정4대소화계질환

대상질환		분류번호
특정 게실염	천공 및 농양이 있는 소장의 게실병, 게실염	K57.04
	천공 및 농양이 있는 대장의 게실병, 게실염	K57.24
	천공 및 농양이 있는 소장·대장 모두의 게실병, 게실염	K57.44
	천공 및 농양이 있는 상세불명 부분의 장의 게실병, 게실염	K57.84
충수질환	급성 충수염	K35
	기타 충수염	K36
	상세불명의 충수염	K37
	충수의 기타 질환	K38
복막질환	복막염	K65
	복막의 기타 장애	K66
기타장질환	장의 혈관장애	K55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환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31】 4대신경계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4대신경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보장 - 1〉 특정2대중추신경계질환

대상질환		분류번호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	기타 및 상세포염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3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G08
두개·척추내 농양및육아종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6

〈세부보장 - 2〉 특정안면마비

대상질환	분류번호
벨마비	G51.0
술신경절염	G51.1
멜커슨증후군	G51.2

〈세부보장 - 3〉 수면무호흡증

대상질환	분류번호
수면무호흡증	G47.3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및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환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32】 4대순환계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4대순환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보장 - 1〉 특정하지정맥류질환

대상질환	분류번호
궤양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I83.0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I83.2

〈세부보장 - 2〉 특정3대심장질환

대상질환		분류번호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
	발작성 빈맥	I47
부정맥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심부전	심부전	I50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및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환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33】 주요2대호흡계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2대호흡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간질영향 호흡기질환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0
	폐부종	J81
	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증가	J82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4
하기도 화농· 괴사성 질환	폐 및 종격의 농양	J85
	농흉	J86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34】 2대양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2대양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보장 - 1〉 골, 관절연골 양성신생물

대상질병	분류번호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D16

〈세부보장 - 2〉 중이, 호흡계통, 흉곽내기관 양성신생물

대상질병	분류번호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D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D15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35】 급성신우신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성신우신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급성신우신염 급성세뇨관-간질신장염	N10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36】 갑상선기능저하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무증상 요오드결핍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2
의약품 및 기타 외인성 물질에 의한 갑상선기능저하증	E03.2
감염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03.3
갑상선의 위축(후천성)	E03.4
점액부종혼수	E03.5
기타 명시된 갑상선기능저하증	E03.8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E03.9
자가면역성 갑상선염	E06.3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37】 특정귀어지림증 및 돌발성난청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귀어지림증 및 돌발성난청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특정 귀어지림증	메니에르병	H81.0
	양성 발작성 현기증	H81.1
	전정신경세포염	H81.2
	기타 말초성 현기증	H81.3
돌발성난청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H91.2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38】 특정눈염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눈염증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공막염	공막염	H15.0
	상공막염	H15.1
홍채섬모체염	급성 및 아급성 홍채섬모체염	H20.0
	만성 홍채섬모체염	H20.1
	수정체유발 홍채섬모체염	H20.2
	기타 홍채섬모체염	H20.8
	상세불명의 홍채섬모체염	H20.9
맥락망막염증	초점성 맥락망막염증	H30.0
	파종성 맥락망막염증	H30.1
	후섬모체염	H30.2
	기타 맥락망막염증	H30.8
	상세불명의 맥락망막염증	H30.9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39】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6.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 상	특정기호
【별표139-1】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표139-2】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별표139-1】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에서 160~1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표139-2】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별표139-1】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에서 1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표139-2】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명)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1. NIHSS 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의 약자로 의료 제공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39-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명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6.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1]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을 말합니다.

상병명	상병코드
거미막하 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 질환	I67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I72.0
후천성 동정맥루	I77.0
뇌전혈관의 동정맥기형	Q28.0
뇌전혈관의 기타기형	Q28.1
대뇌혈관의 동정맥기형	Q28.2
대뇌혈관의 기타기형	Q28.3
두개내손상	S06

1.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 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139-2】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명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6.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1]에 해당하는 아래의 수술을 말합니다.

수술명	수술코드
혈중제거를위한개두술 - 경막하혹은경막외	S4621
혈중제거를위한개두술 - 뇌실질내	S4622
뇌동맥류수술-단순[경부 Clipping]	S4641
뇌동맥류수술-복잡[경부 Clipping]	S4642
뇌동정맥기형적출술-뇌실질내[단순]	S4653
뇌동정맥기형적출술-뇌실질내[복잡]	S4654
뇌동정맥기형적출술-뇌경막[단순]	S4655
뇌동정맥기형적출술-뇌경막[복잡]	S4656
뇌동정맥기형적출술-해면성혈관기형[단순]	S4657
뇌동정맥기형적출술-해면성혈관기형[복잡]	S4658
두개강내 혈관문합술-직접법	S4661
두개강내 혈관문합술-간접법[EDAS, EMAS 등]	S4662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경막하 또는 지주막하와 타부위간	S4711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뇌실과 타부위간	S4712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삽입술-척수내낭종 또는 척수공동과 타부위간	S4713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교환술	S4714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제거술	S4715
뇌엽절제술[반구절제포함]	S4780
뇌기저부수술[경막을 이용한 이식포함]-전두개와	S4801
뇌기저부수술[경막을 이용한 이식포함]-중두개와	S4802
뇌기저부수술[경막을 이용한 이식포함]-후두개와	S4803
중추신경계정위수술-생검, 흡인, 병소절제, 혈중제거	S4756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뇌혈관	M6593

수술명	수술코드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경동맥	M6594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기타혈관	M6597
경피적 뇌혈관약물성형술	M6599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뇌혈관	M6601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경동맥[추골동맥 포함]	M6602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	M6605
경피적 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두개강내 혈관	M6630
경피적 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기타혈관	M6632
경피적 혈전제거술-혈전용해술-두개강외 경부혈관	M6635
경피적 혈전제거술-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내 혈관	M6636
경피적 혈전제거술-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외 경부혈관	M6637
경피적 혈전제거술-기계적 혈전제거술[카테터법]-기타혈관	M6639
혈관색전술-뇌혈관[동맥류]-보조물지지	M1661
혈관색전술-뇌혈관[동맥류]-기타의 경우	M1662
혈관색전술-뇌혈관[동정맥기형]-뇌혈관	M1663
혈관색전술-뇌혈관[동정맥기형]-두경부	M1667
혈관색전술-뇌혈관[동정맥기형]-뇌경막동정맥루-동맥경유	M1676
혈관색전술-뇌혈관[동정맥기형]-뇌경막동정맥루-정맥경유	M1677
혈관색전술-기타혈관	M6644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의 제거 및 배액)-경막하 혹은 경막외	N0322
천두술(낭종, 혈종, 농양의 제거 및 배액)-뇌실질내	N0323
천두술-기타의 것[도관, reservoir, ICPmonitor삽입등]	N0324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	N0333
혈관내 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경동맥(내막박리술 포함)[단순]	O0226
혈관내 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경동맥(내막박리술 포함)[복잡]	O0227
혈관내 죽종제거술(혈관성형술 포함)및 팻취 이용하여 봉합-경동맥(내막박리술 포함)	O2066

수술명	수술코드
경동맥결찰술	S4670
뇌내시경수술-기타[혈종, 농양, 배액 등]	S4744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HD113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	HD114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	HD115

1.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 4조에 해당하는 수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140】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6.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 상	특정기호
【별표140-1】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표140-2】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명)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별표140-3】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명)에 해당하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표140-1】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표140-2】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명)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40-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6.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을 말합니다.

상병명	상병코드
심장의 양성 신생물	D15.1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1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5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I06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7
다발판막질환	I08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09
협심증	I20
급성심근경색증	I21
후속 심근경색증	I22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만성 허혈심장병	I25
폐색전증	I26
폐혈관의 기타 질환	I28
급성 심장막염	I30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I34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I35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I36
폐동맥판장애	I37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I39*
급성 심근염	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상병명	상병코드
심근병증	I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I44
기타 전도장애	I45
심장정지	I46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심부전	I50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I51
대동맥의 죽상경화증	I70.0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동맥류	I79.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대동맥염	I79.1*
대동맥궁증후군[다카야스]	M31.4
심장 방실 및 연결의 선천기형	Q20
심장중격의 선천기형	Q21
폐동맥판 및 삼첨판의 선천기형	Q22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기형	Q23
심장의 기타 선천기형	Q24
대동맥혈관의 선천기형	Q25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좌상대정맥존속	Q26.1
전폐정맥결합이상	Q26.2
부분폐정맥결합이상	Q26.3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Q26.4
대정맥혈관의 기타 선천기형	Q26.8
대정맥혈관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26.9
흉부 혈관의 손상	S25
심장의 손상	S26

1.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 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140-2】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명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6.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수술을 말합니다.

수술명	수술코드
무이식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2개소]	OA640
무이식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1개소]	OA641
무이식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복합]	OA647
(관상동맥우회로술)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무이식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3개소]	OA648
무이식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4개소이상]	OA649
무이식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2개소]	O1640
무이식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1개소]	O1641
자가혈관이용(채취료 포함)동맥가우회로조성술	O1643
(대동맥-시동맥, 흉대이복대동맥-대퇴동맥, 대동맥-내장동맥)	
이식심장재건술(관상동맥가우회로조성술(대동맥-신동맥간, 흉대동맥 또는	O1644
대동맥-대퇴동맥간, 대동맥-내장동맥간)	
무이식심장재건술(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기타의 것-	O1645
자가혈관이용(채취료 포함)-기타의 것-	O1646
무이식심장재건술(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기타의 것-	O1647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대동맥-	O1648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관상동맥우회로술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대동맥-	O1649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자가혈관이용시 채취료 포함)-대동맥-	O1660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다순-3개소]	O1671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다순-4개소이상]	O1672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다순-5개소이상]	O1680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다순-6개소이상]	O1690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다순-7개소이상]	O1701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다순-8개소이상]	O1702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다순-9개소이상]	O1703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다순-10개소이상]	O1704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다순-11개소이상]	O1705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다순-12개소이상]	O1710
관상동맥우회로조성술(다순-13개소이상]	O1711

수술명	수술코드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2개소]	O1721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1개소]	O1722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복합]	O1723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3개소]	O1730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4개소이상]	O1740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5개소이상]	O1750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6개소이상]	O1760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7개소이상]	O1770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8개소이상]	O1781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9개소이상]	O1782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10개소이상]	O1783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11개소이상]	O1784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12개소이상]	O1791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13개소이상]	O1792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14개소이상]	O1793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15개소이상]	O1797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16개소이상]	O1799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17개소이상]	O1795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18개소이상]	O1796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19개소이상]	O1798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20개소이상]	O1799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21개소이상]	O1800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22개소이상]	O1810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23개소이상]	O1821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24개소이상]	O1822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25개소이상]	O1823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26개소이상]	O1824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27개소이상]	O1825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28개소이상]	O1826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29개소이상]	O1830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30개소이상]	O1840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31개소이상]	O1841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32개소이상]	O1851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33개소이상]	O1852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34개소이상]	O1861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35개소이상]	O1873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36개소이상]	O1874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37개소이상]	O1875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38개소이상]	O1878
심장재건술(관상동맥우회로술-대동맥-관동맥가[다순-39개소이상]	O1879

수술명	수술코드
수술	01881
수술	01882
수술	01883
수술	00881
수술	00882
수술	00883
수술	00886
수술	00887
수술	00888
수술	00889
수술	01890
수술	01891
수술	01895
수술	01901
수술	01902
수술	01903
수술	01904
수술	01907
수술	01910
수술	01921
수술	01922
수술	01931
수술	01932
수술	01935
수술	01940
수술	01950
수술	01960
수술	01970
수술	01981
수술	01982
수술	02001
수술	02004
수술	02005
수술	02009
수술	00203
수술	00204
수술	00205
수술	00206

수술명	수술코드
기증(기증)항상(기증)	O0207
기증(기증)항상(기증)	O0236
기증(기증)항상(기증)	O0237
기증(기증)항상(기증)	O0208
기증(기증)항상(기증)	O0209
기증(기증)항상(기증)	O0210
기증(기증)항상(기증)	O0241
기증(기증)항상(기증)	O0242
기증(기증)항상(기증)	O0243
기증(기증)항상(기증)	O2006
기증(기증)항상(기증)	O2007
기증(기증)항상(기증)	O0211
기증(기증)항상(기증)	O0212
기증(기증)항상(기증)	O0211
기증(기증)항상(기증)	O0212
기증(기증)항상(기증)	O0231
기증(기증)항상(기증)	O0201
기증(기증)항상(기증)	O0202
기증(기증)항상(기증)	O0203
기증(기증)항상(기증)	O0260
기증(기증)항상(기증)	M6510
기증(기증)항상(기증)	OZ751
기증(기증)항상(기증)	M6513
기증(기증)항상(기증)	M6521
기증(기증)항상(기증)	M6522
기증(기증)항상(기증)	M6531
기증(기증)항상(기증)	M6532
기증(기증)항상(기증)	M6533
기증(기증)항상(기증)	M6541
기증(기증)항상(기증)	M6542
기증(기증)항상(기증)	M6543
기증(기증)항상(기증)	M6546
기증(기증)항상(기증)	M6547

수술명	수술코드
3-D) 빈백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	M6548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50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57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58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51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61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62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51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52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53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54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56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62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63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64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65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66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67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71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72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80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81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82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85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95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96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97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603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604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605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611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612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613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651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652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620
심방세동 -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632

수술명	수술코드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M6634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M6638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M6639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M6644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Q8080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Q8103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O1853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O1854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O0232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O0233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O0234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O0235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O2221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O2222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O2223
경피적 혈전 제거술 - 혈전 용해술, 과상동맥	O2224

1.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 4조에 해당하는 수술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140-3】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명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6.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약제성분을 말합니다.

약제성분명	주사제
Alteplase	주사제
Tenecteplase	주사제
Urokinase	주사제

1.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 4조에 해당하는 약제성분명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141】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6.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 상	특정기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별표141-1】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V306은 제외)	
(【별표141-1】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47
(【별표141-1】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48
(【별표141-1】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V305
(【별표141-1】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受傷)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별표141-1】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수술을 받는 경우	V306
(【별표141-1】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50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41-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명 및 수술명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6.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3]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명 및 수술명을 말합니다.

〈중증도 기준〉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1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T20.2
	몸통의 2도 화상	T21.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T22.2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T23.2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T24.2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T25.2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	T30.2
2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T20.3
	몸통의 3도 화상	T21.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T22.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3.3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T24.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25.3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	T30.3
3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중 안면부에 수상한 경우	T20.3
	몸통의 3도 화상 중 성기 또는 회음부에 수상한 경우	T21.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3.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25.3
	눈 및 부속기의 화상	T26.0~T26.4
4	호흡기도의 화상	T27.0~T27.3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T28.0~T28.3

〈체표면적 기준〉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1	신체표면적의 20-29%를 침범한 화상	T31.2
	신체표면적의 30-39%를 침범한 화상	T31.3
	신체표면적의 40-49%를 침범한 화상	T31.4
	신체표면적의 50-59%를 침범한 화상	T31.5
	신체표면적의 60-69%를 침범한 화상	T31.6
	신체표면적의 70-79%를 침범한 화상	T31.7
	신체표면적의 80-89%를 침범한 화상	T31.8
	신체표면적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	T31.9
2	신체표면적의 10-19%를 침범한 화상	T31.1
	신체표면적의 20-29%를 침범한 화상	T31.2
	신체표면적의 30-39%를 침범한 화상	T31.3
	신체표면적의 40-49%를 침범한 화상	T31.4
	신체표면적의 50-59%를 침범한 화상	T31.5
	신체표면적의 60-69%를 침범한 화상	T31.6
	신체표면적의 70-79%를 침범한 화상	T31.7
	신체표면적의 80-89%를 침범한 화상	T31.8
	신체표면적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	T31.9

〈수술명 및 수술코드〉

구분	수술명	수술코드
1	반흔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1
2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2 N0243 N0244 N0245 N0246 N0247 NA241 NA242 NA243
3	반흔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9

1. 향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 4조에 해당하는 상병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별표142】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6. 1. 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	특정기호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43】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별표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6. 1. 1시행)" 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I.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유전성 제8인자결핍	D66	V009
제8인자결핍(기능적 결핍을 동반)	D66	V009
혈우병 NOS	D66	V009
A형혈우병	D66	V009
고전적 혈우병	D66	V009
유전성 제9인자결핍	D67	V009
크리스마스병	D67	V009
제9인자결핍(기능적 결핍을 동반)	D67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D67	V009
B형혈우병	D67	V009
폰빌레브란트병	D68.0	V009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D68.0	V009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D68.0	V009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D68.0	V009
유전성 제11인자결핍	D68.1	V009
C형혈우병	D68.1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D68.1	V009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D68.2	V009
선천성 무피브리노제혈증	D68.2	V009
AC글로불린결핍	D68.2	V009
프로악셀레린결핍	D68.2	V009
제1인자[피브리노제]의 결핍	D68.2	V009
제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D68.2	V009
제5인자[불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7인자[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10인자[스튜어트-프라우]의 결핍	D68.2	V009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제12인자[하계만]의 결핍	D68.2	V009
제13인자[피브리노제]의 결핍	D68.2	V009
이상피브리노제혈증(선천성)	D68.2	V009
저프로콘버틴혈증	D68.2	V009
오우렌병	D68.2	V009

II.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크로이츠펬트-야콥병	A81.0	V102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A81.0	V102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D12.6	V281
	(M8220/0)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잠두중독	D55.0	V163
G6PD결핍빈혈	D55.0	V163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II 형 빈혈	D55.2	V164
헥스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D55.2	V164
알파지중해빈혈	D56.0	V232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쿠울리빈혈	D56.1	V232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중간형 지중해빈혈	D56.1	V232
중증 지중해빈혈	D56.1	V232
델타-베타지중해빈혈	D56.2	V232
지중해빈혈 소질	D56.3	V232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D56.4	V232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D60.0	V023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가족성 저형성빈혈	D61.0	V023
판코니빈혈	D61.0	V023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D61.0	V023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D61.0	V023
체질성 무형성빈혈	D61.0	V023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특발성 무형성빈혈	D61.3	V023
골수형성저하	D61.9	V023
범골수확폐	D61.9	V023
저형성빈혈 NOS	D61.9	V023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D64.4	V220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정상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베르나르-슬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D69.1	V106
글란즈만병	D69.1	V106
그레이혈소판증후군	D69.1	V106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D69.1	V106
혈소판병증	D69.1	V106
에반스증후군	D69.3	V188
선천성 무과립구증	D70	V108
선천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성 안지나	D70	V108
호중구감소 NOS	D70	V108
주기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코스트만병	D70	V108
순환성 호중구감소	D70	V108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D70	V108
베르너-술츠병	D70	V108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D71	V109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D71	V109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D71	V109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D71	V109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D76.1	V110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D76.1	V110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D76.1	V110
세망조직구증(거대세포)	D76.3	V110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D76.3	V110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튼](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D80.0	V111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D80.0	V111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D80.1	V111
비가족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D80.2	V111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D80.3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D80.4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D80.5	V111
거의 정상인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D80.6	V111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D80.8	V111
카파경쇄결핍	D80.8	V111
세망세포발생 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0	V111
T- 및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1	V111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2	V111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D81.3	V111
네젤로프증후군	D81.4	V111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D81.5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 형결핍	D81.6	V111
노출림프구증후군	D81.6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I 형결핍	D81.7	V111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D81.8	V111
오멘증후군	D81.8	V111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D81.9	V111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D82.0	V111
비스코트-올드리치증후군	D82.0	V111
디조지증후군	D82.1	V111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홍선성 림프조직무형성	D82.1	V111
면역결핍을 동반한 홍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D82.1	V111
인두낭종후군	D82.1	V111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D82.2	V111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D82.3	V111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D82.3	V111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D82.4	V111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0	V111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1	V111
B-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2	V111
상세불명의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9	V111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D84.0	V111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D84.1	V111
보체계통의 결손	D84.1	V111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0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D86.1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2	V111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D86.3	V111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D86.8	V111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D86.8	V111
사르코이드근염(M63.3*)	D86.8	V111
포도막귀밑샘염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1*)	D86.8	V111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D86.8	V111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D89.1	V294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E22.0	V112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E22.0	V112
취한증후군	E23.0	V165
콜만증후군	E23.0	V165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E24.0	V114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뇌하수체-이준 쿠싱병	E24.0	V114
뇌하수체-이준 부신피질기능항진증	E24.0	V114
넬슨증후군	E24.1	V114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E24.3	V114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E25.0	V115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21-수산화효소결핍	E25.0	V115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E25.9	V115
바터증후군	E26.8	V254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E27.1	V116
애디슨병	E27.1	V116
자가면역성 부신염	E27.1	V116
가족성 부신코티코이드결핍	E27.1	V116
애디슨발증	E27.2	V116
부신피질발증	E27.2	V116
부신발증	E27.2	V116
부신출혈	E27.4	V116
부신경색증	E27.4	V116
저알도스테론증	E27.4	V116
부신피질부전 NOS	E27.4	V116
안드로젠저항증후군	E34.5	V166
송과선 기능이상	E34.8	V166
조로증	E34.8	V166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영아골연화증	E55.0	V207
연소성 골연화증	E55.0	V207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E70.0	V117
기타 고펜닐알라닌혈증	E70.1	V117
타이로신대사장애	E70.2	V117
타이로신혈증	E70.2	V117
타이로신증	E70.2	V117
조직흑갈병	E70.2	V117
알카톤뇨증	E70.2	V117
눈피부백색증	E70.3	V117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눈백색증	E70.3	V117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E72.3	V117
교차증후군	E70.3	V117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E72.3	V117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E70.3	V117	글루타르산노	E72.3	V117
헤르만스키-푸들라크증후군	E70.3	V117	고라이신혈증	E72.3	V117
바르덴브르그 증후군(백색증을동반한)	E70.3	V117	오르니틴대사장애	E72.4	V117
히스티딘대사장애	E70.8	V117	오르니틴혈증(I, II형)	E72.4	V117
트리토판대사장애	E70.8	V117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E72.4	V117
단풍시럽노병	E71.0	V117	글라이신대사장애	E72.5	V117
프로피온산혈증	E71.1	V117	사르코신혈증	E72.5	V117
메틸말론산혈증	E71.1	V117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E72.5	V117
아이소발레린산혈증	E71.1	V117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E72.5	V117
고발린혈증	E71.1	V117	고프롤린혈증(I, II형)	E72.5	V117
고류신-이소류신혈증	E71.1	V117	감마글루타밀회로의 장애	E72.8	V117
지방산대사장애	E71.3	V117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E72.8	V117
부신백질형성장애[애디슨-실더]	E71.3	V117	선천성 것당분해효소결핍	E73.0	V117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랜스퍼레이스결핍	E71.3	V117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E74.0	V117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E71.3	V117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E74.0	V117
아미노산운반장애	E72.0	V117	코리병	E74.0	V117
로베증후군	E72.0	V117	타루이병	E74.0	V117
시스틴증	E72.0	V117	폼페병	E74.0	V117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E72.0	V117	맥아들병	E74.0	V117
시스틴뇨증	E72.0	V117	글리코젠축적병	E74.0	V117
하트넵병	E72.0	V117	포르브스병	E74.0	V117
시스틴축적병(N29.8*)	E72.0	V117	폰기에르케병	E74.0	V117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E72.1	V117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V117
호모시스틴노	E72.1	V117	허스병	E74.0	V117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E72.1	V117	심장글리코젠증	E74.0	V117
시스타타이오닌뇨증	E72.1	V117	안데르센병	E74.0	V117
메타이오닌혈증	E72.1	V117	갈락토스혈증	E74.2	V117
고호모시스테인혈증	E72.1	V117	갈락토스대사장애	E74.2	V117
요소회로대사장애	E72.2	V117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E74.2	V117
아르지닌숙신산노	E72.2	V117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E74.4	V117
시트룰린혈증	E72.2	V117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E74.4	V117
아르지닌혈증	E72.2	V117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고암모니아혈증	E72.2	V117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옥살산뇨	E74.8	V117
샌드호프병	E75.0	V117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연소형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테이-삭스병	E75.0	V117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0	V117
성인형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1	V117
뮤코지질증 IV	E75.1	V117
GM ₁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GM ₃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파브리(-앤더슨)병	E75.2	V117
니만-피크병	E75.2	V117
화버증후군	E75.2	V117
크라베병	E75.2	V117
설파테이스결핍	E75.2	V117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E75.2	V117
고웨병	E75.2	V117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E75.4	V117
스필라이어-보그트병	E75.4	V117
쿠프스병	E75.4	V117
바텐병	E75.4	V117
얀스키-빌쇼스키병	E75.4	V117
월만병	E75.5	V117
대뇌간의 콜레스테롤증[벤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E75.5	V117
I 형 점액다당류증	E76.0	V117
혈러증후군	E76.0	V117
혈러-샤이에증후군	E76.0	V117
샤이에증후군	E76.0	V117
II 형 점액다당류증	E76.1	V117
헌터증후군	E76.1	V117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E76.2	V117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E76.2	V117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E76.2	V117
III, IV, VI, VII형 점액다당류증	E76.2	V117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필립포 (B형)(C형)(D형) 증후군	E76.2	V117
뮤코지질증III[거짓혈러다발이상증]	E77.0	V117
뮤코지질증II [I -세포병]	E77.0	V117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E77.0	V117
푸고스축적증	E77.1	V117
시알산증[뮤코지질증 I]	E77.1	V117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E77.1	V117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뇨	E77.1	V117
마노스축적증	E77.1	V117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E80.2	V118
포르피린증 NOS	E80.2	V118
급성 간혈성 (간성)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	E83.0	V119
멘케스(고인모발)(강모)병	E83.0	V119
월슨병	E83.0	V119
혈색소증	E83.1	V255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E83.3	V189
가족성 저인산혈증	E83.3	V189
저인산효소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구루병	E83.3	V189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폐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0	V120
장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1	V120
남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E84.1	V120
원위장폐쇄증후군	E84.1	V120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E85.0	V121
비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0	V121
가족성 지중해열	E85.0	V121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E85.1	V121
신경병성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1	V121
상세불명의 유전가족성 아밀로이드증	E85.2	V121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E85.4	V121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E85.4	V121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카다실	F01.1	V122	케네디 병	G12.28	V123
레트증후군	F84.2	V122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V123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V123
헌팅톤병	G10	V123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헌팅톤무도병	G10	V123	색소성 담창구변성	G23.0	V257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V123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울스제위스키]	G23.1	V190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G11.1	V123	아급성 과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다발경화증	G35	V022
보류된 힘줄반사율(률)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뇌간(~의) 다발경화증	G35	V022
근간대경련[헌트운동실조]율(률)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척수(~의) 다발경화증	G35	V022
본태성 떨림율(률)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다발경화증 NOS	G35	V022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G11.1	V123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G11.2	V123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G11.3	V123	재발 완화형 다발경화증	G35.0	V022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아-바]	G11.3	V123	원발 진행형 다발경화증	G35.1	V022
유전성 강직성 허반신마비	G11.4	V123	이차 진행형 다발경화증	G35.2	V022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V123	기타 명시된 다발경화증	G35.8	V022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G11.9	V123	상세불명의 다발경화증	G35.9	V022
유전성 소뇌의 변성	G11.9	V123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V276
유전성 소뇌의 병	G11.9	V123	레녹스-가스토증후군	G40.4	V233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V123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G11.9	V123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	V123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G41.1	V125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G12.1	V123	뇌전증 소발작지속상태	G41.1	V125
원위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G41.2	V125
어깨종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G41.8	V125
소아형, II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G41.9	V125
연소형, III형[쿠겔베르그-벨란데]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기면병 및 탈력발작	G47.4	V234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멜커슨증후군	G51.2	V167
운동신경세포병(단, 기타 및 상세불명의	G12.2	V123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G51.2	V167
운동신경세포병(G12.28)은 제외)			데제린-소타스병	G60.0	V169
가족성 운동신경세포병	G12.20	V123	루시-레비증후군	G60.0	V169
산발형 근위축축삭경화증	G12.21	V123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형	G60.0	V169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G60.0	V169	근디스트로피(G71.2)		
샤르코-마리-투스질환	G60.0	V169	미세심 병	G71.2	V012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V169	네말린근육병증	G71.2	V012
길랭-바레증후군	G61.0	V126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G71.2	V012
밀러휘셔증후군	G61.0	V126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육병증	G71.2	V012
다초점 운동신경병증	G61.8	V126	중심핵 병	G71.2	V012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G61.8	V126	근섬유형 불균형	G71.2	V012
중증근무력증	G70.0	V0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립체 근육병증	G71.3	V012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G70.2	V012	멜라스증후군	G71.3	V012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G71.0	V012	유전성 근육병증 NOS	G71.9	V012
근디스트로피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뒤센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G71.0	V012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G73.1*	V259
근디스트로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G90.5	V177
눈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90.6	V168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폭스디스트로피	H18.5	V307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원추각막	H18.6	V307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맥락막결손	H31.2	V295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코츠망막병증	H35.0	V260
지대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색소망막염	H35.51	V209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레버 선천성 흑암시	H35.59	V209
근긴장장애	G71.1	V012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H35.59	V209
거짓근긴장증	G71.1	V012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G71.1	V012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증상성 근긴장증	G71.1	V012	아이젠멘저복합	I27.8	V226
선천성 근긴장증 NOS	G71.1	V012	아이젠멘저증후군	I27.8	V226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I42.0	V127
우성[툼스]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V127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G71.1	V012	비대성 대동맥판하협착	I42.1	V127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G71.1	V012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20	V127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G71.1	V012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V127
다발심 병	G71.2	V012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I42.3	V127
선천성 근육병증	G71.2	V012	외플러심내막염	I42.3	V127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G71.2	V012	심내막탄력섬유증	I42.4	V127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선천성 심근병증	I42.4	V127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M30.1	V134
긴 QT증후군	I49.82	V296	연소성 다발동맥염	M30.2	V134
모야모야병	I67.5	V128	굿패스처증후군	M31.0	V135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M31.1	V135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I78.0	V297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M31.1	V135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베게너육아종증	M31.3	V135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괴사성 호흡기육아종증	M31.3	V135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대동맥궁증후군[다카야시]	M31.4	V135
특발성 폐섬유증	J84.11	V236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불완전상아질형성	K00.51	V310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M32.1	V136
이완불능증	K22.0	V315	심내막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I39.8*)	M32.1	V136
소장의 크론병	K50.0	V130	리브만-삭스병(I39.0*)	M32.1	V136
대장의 크론병	K50.1	V130	루푸스 심장낭염(I32.8*)	M32.1	V136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K50.8	V130	폐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J99.1+)	M32.1	V136
가성 장 폐쇄	K56.0	V312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M32.1	V136
원발성 담도 간경변증	K74.3	V174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16.4*)	M32.1	V136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신장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N16.4*)	M32.1	V136
원발성 경화성 담관염	K83.00	V262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뇌염(G05.8*)	M32.1	V136
보통천포창	L10.0	V132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G73.7*)	M32.1	V136
낙엽천포창	L10.2	V210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대뇌동맥염(I68.2*)	M32.1	V136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연소성 피부근염	M33.0	V137
홍터유사천포창	L12.1	V212	기타 피부근염	M33.1	V137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L12.1	V212	다발근염	M33.2	V137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진행성 전신경화증	M34.0	V138
전신농포건선	L40.1	V313	크레스트증후군	M34.1	V138
손발바닥농포증	L40.3	V313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M34.1	V138
중증 화농성 한선염	L73.22	V309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성인발병 스틸병	M06.1	V298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M34.8	V138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M34.8	V138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근병증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G73.7*)	M35.0	V139
연소성 강직척추염	M08.1	V133	폐침범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J99.1*)	M35.0	V139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M08.2	V133	건조증후군[췌그렌]	M35.0	V139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각막결막염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H19.3*)	M35.0	V139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신세뇨관-간질성 장애을(를) 동반한 췌그렌증후군(N16.4*)	M35.0	V139
결절성 다발동맥염	M30.0	V134	혼합결합조직병	M35.1	V139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베체트병	M35.2	V139	수두증상을 동반한 이분경추	Q04.6	V240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M35.3	V139	수두증상을 동반한 이분흉추	Q05.0	V179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M35.4	V139	수두증상을 동반한 이분요추	Q05.1	V179
다초점 섬유경화증	M35.5	V139	수두증상을 동반한 이분척추	Q05.1	V179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M35.6	V139	수두증상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Q05.2	V179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수두증상을 동반한 이분천추	Q05.2	V179
두개골의 파제트병	M88.0	V213	수두증상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3	V179
기타 뼈의 파제트병	M88.8	V213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Q05.4	V179
상세불명의 뼈의 파제트병	M88.9	V213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Q05.5	V179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킨빅)	M92.2	V299	이분요추 NOS	Q05.6	V179
성인의 킨빅병	M93.1	V299	이분척추 NOS	Q05.6	V179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이분요천추 NOS	Q05.6	V179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Q05.7	V179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Q05.7	V179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8	V179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척수이개증	Q05.9	V179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6.2	V180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Q07.0	V143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2	V263	소이증(小耳症)	Q16.1	V291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3	V263	총동맥간	Q17.2	V291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4	V263	동맥간존속	Q20.0	V144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타우시그-빙증후군	Q20.0	V144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이중출구우심실	Q20.1	V144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이중출구좌심실	Q20.1	V144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대혈관의 (완전)전위	Q20.2	V144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Q20.3	V144
모세혈관외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대동맥의 우측전위	Q20.3	V144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단일심실	Q20.3	V144
덴디-워커증후군	Q03.1	V239	수정혈관전위	Q20.4	V225
무뇌이랑증	Q04.3	V214	방실연결불일치	Q20.5	V144
큰뇌이랑증	Q04.3	V214	좌측전위	Q20.5	V144
분열뇌증	Q04.3	V214	심실내번	Q20.5	V144
			방실중격 결손	Q20.5	V144
			총방실관	Q21.2	V269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심내막융기결손	Q21.2	V269	대동맥의 폐쇄	Q25.1	V272
제1공심방중격결손(Ⅰ형)	Q21.2	V269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Q25.2	V272
팔로네징후	Q21.2	V269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측위치 및	Q21.3	V269	폐동맥의 폐쇄	Q25.3	V272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Q21.3	V269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5.5	V149
대동맥폐동맥창			(하)(상)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Q21.4	V269	좌상대정맥존속	Q26.0	V150
대동맥중격결손	Q21.4	V269	전폐정맥결합이상	Q26.1	V150
아이젠멘거결손	Q21.4	V269	부분폐정맥결합이상	Q26.2	V150
폐동맥판폐쇄	Q21.8	V226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Q26.3	V150
삼첨판폐쇄	Q22.0	V145	문맥결합이상	Q26.4	V150
에브스타인이상	Q22.4	V146	문맥-간동맥루	Q26.5	V150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Q22.5	V146	무설증(無舌症)	Q26.6	V150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Q22.6	V146	담관의 폐쇄	Q38.3	V241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Q23.0	V147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44.2	V181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3.0	V147	다낭성 신장, 영아형	Q61.1	V264
이첨대동맥판막	Q23.0	V147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Q61.1	V264
선천성 대동맥판기능부전	Q23.1	V147	방광외반	Q61.2	V264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Q23.1	V147	방광이소증	Q64.1	V227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Q23.1	V147	방광외번	Q64.1	V227
선천성 승모판협착	Q23.1	V147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Q64.1	V227
선천성 승모판폐쇄	Q23.2	V147	두개골유합	Q74.3	V292
선천성 승모판기능부전	Q23.2	V147	뽀족머리증(Acrocephaly)	Q75.0	V265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Q23.3	V147	두개골의 불완전유합	Q75.0	V265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Q23.4	V147	뽀족머리증(Oxycephaly)	Q75.0	V265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삼각머리증	Q75.0	V265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크루존병	Q75.0	V265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Q23.4	V147	두개안면골이골증	Q75.1	V151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23.8	V147	하악안면골이골증	Q75.1	V151
선천성 대동맥판하협착	Q23.9	V147	프란체스케티 증후군	Q75.4	V182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4	V270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Q75.4	V182
선천성 관상동맥류	Q24.5	V148	연골무발생증	Q75.4	V182
선천성 심장차단	Q24.5	V148	연골발생저하증	Q77.0	V228
대동맥의 축착	Q24.6	V271	치사성 단신	Q77.0	V228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Q25.1	V272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느]	Q77.1	V228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짧은늑골증후군	Q77.2	V228	배꼽내장탈장	Q79.1	V155
점상 연골형성이상	Q77.2	V228	선천복벽탈장	Q79.1	V155
어깨고관절 점상 연골형성이상(1형-3형)	Q77.3	V228	복벽파열증	Q79.2	V155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말린자두배증후군	Q79.2	V155
연골무형성증	Q77.3	V228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3	V155
연골형성저하증	Q77.4	V228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4	V155
선천성 골경화증	Q77.4	V228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5	V155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Q77.4	V228	부근	Q79.6	V155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Q77.5	V228	선천성 짧은힘줄	Q79.8	V155
연골외배엽형성이상	Q77.6	V228	근육의 결여	Q79.8	V155
척추골단형성이상	Q77.6	V228	폴란드증후군	Q79.8	V155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힘줄의 결여	Q79.8	V155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Q77.7	V228	선천성 근위축	Q79.8	V155
말단왜소 형성이상	Q77.8	V228	선천성 협착피	Q79.8	V155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Q77.8	V228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79.8	V155
골연골형성이상	Q77.9	V228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Q79.8	V155
불완전골형성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Q79.9	V155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Q78.0	V183	X-연관비늘증	Q79.9	V155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Q78.0	V183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Q79.9	V155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0	V183	할리퀀태아	Q80.1	V300
얼브라이트(-맥쿨)(-스턴버그)증후군	Q78.1	V154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0.1	V300
골화석증	Q78.1	V154	헤를리츠증후군	Q80.4	V300
알베르스-윈베르그증후군	Q78.2	V229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V184
카무라타-엔겔만증후군	Q78.2	V229	탄력섬유성거짓황색증	Q81.1	V184
내연골종증	Q78.3	V266	신경섬유종증(비악성)	Q81.2	V184
마푸치증후군	Q78.4	V230	폰렉클링하우젠병	Q82.8	V314
올리에르병	Q78.4	V230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형, 2형	Q85.0	V156
필레증후군	Q78.4	V230	결절성 경화증	Q85.0	V156
다발선천외골증	Q78.5	V215	에펠로이아	Q85.0	V156
골간병적조직연결	Q78.6	V242	부르느부병	Q85.1	V204
유전성 다발외골증	Q78.6	V242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1	V204
선천성 횡격막탈장	Q78.6	V242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Q85.1	V204
횡격막 결여	Q79.0	V155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횡격막 탈출	Q79.1	V155	(이상형태성) 태아알코올증후군	Q85.8	V216
횡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Q79.1	V155	고린-사우드리아-모스 증후군	Q85.8	V216
횡격막의 선천기형 NOS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Q86.0	V157	착지 증후군	Q87.8	V267
잠복안구증후군	Q87.0	V185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87.8	V267
골덴하 증후군	Q87.0	V185	21삼염색체증, 석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87.8	V267
로빈 증후군	Q87.0	V185	21삼염색체증, 전위	Q90.0	V159
첨두다지유합증	Q87.0	V185	21삼염색체증 NOS	Q90.1	V159
첨두유합지증	Q87.0	V185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0.2	V159
단안증	Q87.0	V185	18삼염색체증, 석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0.9	V159
외비우스 증후군	Q87.0	V185	18삼염색체증, 전위	Q91.0	V160
입-얼굴-손발 증후군	Q87.0	V185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1	V160
휘파람부는 얼굴	Q87.0	V185	13삼염색체증, 석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2	V160
카펜터 증후군	Q87.0	V185	13삼염색체증, 전위	Q91.4	V160
안치지의 형성이상	Q87.0	V185	13삼염색체증, 전위	Q91.5	V160
드 랑즈 증후군	Q87.0	V185	13삼염색체증후군	Q91.6	V160
두보위츠 증후군	Q87.0	V185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1.7	V160
프라더-윌리 증후군	Q87.1	V158	고양이울음증후군	Q93.4	V205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Q87.1	V158	캐치22(22염색체 미세결실)증후군	Q93.4	V205
시클 증후군	Q87.1	V158	엔젤만증후군	Q93.5	V217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Q87.1	V158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Q93.5	V217
아르스코그 증후군	Q87.1	V158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코케인 증후군	Q87.1	V158	핵형45, X	Q93.5	V217
누난 증후군	Q87.1	V158	핵형46, X동인자(Xq)	Q96.0	V021
러셀-실버 증후군	Q87.1	V158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Q96.1	V021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Q87.1	V158	석임증, 45, X/46, XX 또는 XY	Q96.2	V021
쉐그렌-라손 증후군	Q87.1	V158	석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Q96.3	V021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1	V158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Q96.4	V021
바터증후군	Q87.1	V158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Q98.0	V218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Q87.2	V243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Q98.1	V218
홀트-오람 증후군	Q87.2	V243	취약X증후군	Q98.2	V218
손발톱무릎증 증후군	Q87.2	V243		Q99.2	V245
소토스 증후군	Q87.2	V243	III.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위버 증후군	Q87.2	V243	IV.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1
마르팡증후군	Q87.3	V244			
알포트 증후군	Q87.3	V244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Q87.4	V186			
젤웨거 증후군	Q87.8	V267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V.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44】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별표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6. 1. 1시행)" 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증난치질환〉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I.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V001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II.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후천성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III.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IV.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편집조현병	F20.0	V161
편집분열성 조현병	F20.0	V161
파과형조현병	F20.1	V161
해체성 조현병	F20.1	V161
파과증	F20.1	V161
긴장성 조현병	F20.2	V161
긴장성 혼미	F20.2	V161
조현병성 카탈렙시	F20.2	V161
조현병성 긴장증	F20.2	V161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조현병성 납금증	F20.2	V161
미분화조현병	F20.3	V161
비정형조현병	F20.3	V161
조현병 후유증	F20.4	V161
잔류조현병	F20.5	V161
만성 미분화조현병	F20.5	V161
레스트추스탄트(조현병성)	F20.5	V161
조현병성 잔류상태	F20.5	V161
단순형조현병	F20.6	V161
기타 조현병	F20.8	V161
체감장애조현병	F20.8	V161
조현양상장애 NOS	F20.8	V161
조현양상정신병 NOS	F20.8	V161
상세불명의 조현병	F20.9	V161
조현형장애	F21	V161
잠재 조현병성 반응	F21	V161
경계성 조현병	F21	V161
잠재성 조현병	F21	V161
전정신병적 조현병	F21	V161
전구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신경증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정신병증성 조현병	F21	V161
조현형 인격장애	F21	V161
망상장애	F22.0	V161
편집증	F22.0	V161
편집증 정신병	F22.0	V161
편집증 상태	F22.0	V161
망상분열증(만기의)	F22.0	V161
민감망상	F22.0	V161
기타 지속성 망상장애	F22.8	V161
망상성 이상태공포증	F22.8	V161
퇴행성 편집상태	F22.8	V161
불평편집증	F22.8	V161
상세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F22.9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0	V161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형 정신병	F23.0	V161
조현병 증상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부폐 델리랑드	F23.0	V161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1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순환형 정신병	F23.1	V161
조현병 증상이 있는 부폐 델리랑드	F23.1	V161
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F23.2	V161
급성 (미분화형) 조현병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장애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정신병	F23.2	V161
몽환정신병	F23.2	V161
조현병성 반응	F23.2	V161
기타 급성 주로 망상우세성 정신병장애	F23.3	V161
편집반응	F23.3	V161
심인성 편집정신병	F23.3	V161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8	V161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9	V161
단기 반응성 정신병 NOS	F23.9	V161
반응성 정신병	F23.9	V161
유도망상장애	F24	V161
가응성 정신병	F24	V161
유도편집장애	F24	V161
유도정신병장애	F24	V161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양상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양상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장애, 혼합형	F25.2	V161
순환성 조현병	F25.2	V161
혼합형 조현병성 및 정동성 정신병	F25.2	V161
기타 조현정동장애	F25.8	V161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F25.9	V161
조현정동정신병 NOS	F25.9	V161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8	V161
만성 환각성 정신병	F28	V161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V161
정신병 NOS	F29	V161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V.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도슨 봉입체뇌염	A81.1	V282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A81.1	V282
백모게르트 경화성 백질뇌병증	A81.1	V282
진행성 다초점백질뇌병증	A81.2	V282
다초점백질뇌병증 NOS	A81.2	V282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8	V282
쿠루	A81.8	V282
중추신경계통의 상세포염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9	V282
중추신경계통의 프리온질환 NOS	A81.9	V282
마이코박테리아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결핵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기타 세균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1	V103
거대세포바이러스병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2	V103
기타 바이러스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3	V103
칸디다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4	V103
기타 진균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5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6	V103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6	V103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다발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7	V103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8	V103
상세포염의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9	V103
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NOS	B20.9	V103
카포시육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0	V103
버킷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1	V103
기타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2	V103
림프성, 조혈성 및 관련 조직의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3	V103
다발성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7	V103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8	V103
상세포염의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9	V103
뇌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0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치매	B22.0	V103
림프성 간질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1	V103
소모증후군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슬림병	B22.2	V103
성장장애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달리 분류된 다발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7	V103
급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후군	B23.0	V103
(지속성) 전신림프선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1	V1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액학적 및 면역학적 이상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2	V103
기타 명시된 병태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8	V103
상세포염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4	V103
후천면역결핍증후군 NOS	B24	V103
에이즈-관련복합 NOS	B24	V103
뇌하수체의 악성 신생물	D35.2	V162
약물유발 무형성빈혈	D61.1	V283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D68.4	V311
약물유발 호중구감소	D70	V285
과당대사장애	E74.1	V286
유전성 과당불내성	E74.1	V286
과당-1, 6-이인산분해효소결핍	E74.1	V286
수크레이스결핍	E74.3	V286
장성 탄수화물흡수의 기타 장애	E74.3	V286
포도당-갈락토스흡수장애	E74.3	V286
신생물떨림 신경근육병증 및 신경병증	G13.0	V287
신생물떨림 변연부뇌병증(C00-D48+)	G13.1	V287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적 위축	G13.8	V287
파킨슨병	G20	V124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원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편측파킨슨증	G20	V124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떨림마비	G20	V124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NOS	G20	V124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V279
결핵(~에서의) 다발신경병증(A17.82+)	G63.0	V170
디프테리아(~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6.8+)	G63.0	V170
감염성 단핵구증(~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7.+)	G63.0	V170
나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0.+)	G63.0	V170
라임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69.2+)	G63.0	V170
볼거리(~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6.8+)	G63.0	V170
포진후(~에서의) 다발신경병증(B02.2+)	G63.0	V170
만기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2.1+)	G63.0	V170
만기선천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0.4+)	G63.0	V17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독성근신경장애	G70.1	V288
노년성 황반변성 (삼출성)	H35.31	V201
울혈성 심근병증	I42.0	V289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8	V289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V289
궤양성 (만성) 범결장염	K51.0	V131
궤양성 (만성) 직장염	K51.2	V131
좌측 결장염	K51.5	V131
기타 궤양성 대장염	K51.8	V131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K51.9	V131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L20.85	V308
중증 보통건선	L40.00	V280
비장림프절비대 및 백혈구감소가 동반된 류마티스관절염	M05.0	V223
펠티증후군	M05.0	V223
류마티스폐질환(J99.0*)	M05.1	V223
류마티스혈관염	M05.2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관절염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막염 (I32.8*)	M05.3	V223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다발신경병증(G63.6*)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근염 (I41.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근육병증 (G73.7*)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내막염 (I39.-*)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염 (I52.8*)	M05.3	V223
기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8	V223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9	V223
절단성 관절염(L40.5+)	M07.1	V237
건선척추염(L40.5+)	M07.2	V237
기타 건선관절병증(L40.5+)	M07.3	V237
과민성 혈관염	M31.0	V290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M45.0	V140
강직척추염, 후두환추부	M45.1	V140
강직척추염, 경부	M45.2	V140
강직척추염, 경흉추부	M45.3	V140
강직척추염, 흉추부	M45.4	V140
강직척추염, 흉요추부	M45.5	V140
강직척추염, 요추부	M45.6	V140
강직척추염, 요천부	M45.7	V140
강직척추염, 천추 및 천미추부	M45.8	V140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P22.0	V142
유리질막병	P22.0	V142
신생아의 기타 호흡곤란	P22.8	V142
신생아의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P22.9	V142
VI.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병 2형(G30.0+)	F00.0	V800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G30.0+)	F00.0	V800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F02.0	V800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0	V800

구분	상병코드	특정기호
피크병	G31.00	V800
전두측두치매	G31.00	V800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G31.01	V800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	G31.02	V800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	G31.03	V8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G31.04	V800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G31.04	V800
루이소체치매(F02.8*)	G31.82	V800
Ⅶ.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병 1형(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G30.1+)	F00.1	V810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F00.2	V810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G30.8+)	F00.2	V8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F01.0	V810
다발-경색치매	F01.1	V810
주로 피질성 치매	F01.1	V810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2	V810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3	V810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1	V810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45】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2026. 1. 1시행)" 제5조의2 별표5(결핵질환의 적용범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결핵질환	가.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 질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 (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 나.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 -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 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한다.	V000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46】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의 【별표147】과 【별표148】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별표147】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 I 대상 수가코드

내용		수가코드
후두경 검사 및 치료	후두경 검사	E7581
	후두미세진동검사법	E7582
	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E7583
	후두직달경검사	E7586
	후두 양성종양적출술·내시경하·현수후두경하	O1221
	후두 양성종양적출술·내시경하·연성내시경하	O1222
	단순후두협착증수술(내시경하킬, 스텐트삽입등)	OA272
질확대경 검사	질확대경검사(단순)	E7721
	질확대경검사(자궁내구경사용)	E7722

【별표148】 급여 특정 내시경 검사 및 치료 II 대상 수가코드

내용		수가코드
기관지경 검사 및 치료	기관지경 검사(기본)	E7590
	기관지경 검사(기관지폐포세척술)	E7591
	기관지경 검사(경기관지침흡인술)	E7592
	기관지경 검사(경기관지폐생검)	E7593
	기관지경 검사·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E7594
	기관지경 검사(경기관지위치표식술)	E7595
	기관지경 검사(경기관지폐냉동생검)	E7596
	기관지경 이용 폐엽축부환기 검사	EZ942
	내시경적기관또는기관지종양제거술[육아조직포함]-연성	O1315
	기관지경	
	내시경적기관또는기관지종양제거술[육아조직포함]-경성	O1316
	기관지경	
	내시경적냉동치료[기관(지)및폐종양]	O1318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O1319
	내시경적기관또는기관지이물제거술(연성기관지경)	O1332
	내시경적기관또는기관지이물제거술(경성기관지경)	O1333
	내시경적기관또는기관지협착확장술 풍선카테터에의한것	O1346
	내시경적기관또는기관지협착확장술 스텐트삽입술에의한것	O1347
	내시경적기관또는기관지협착확장술-기타레이저치료등	O1348
	기관지경 이용 폐용적축소-일방향기관지밸브삽입	OZ201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 및 치료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식도, 위, 십이지장)	E7611
	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	E7612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로 포함]-식도내강-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E7060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로 포함]-식도내강-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E7061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로 포함]-유문부-단독으로 실시한 경우	E7062
	실시간 풍선팽창성 검사[내시경로 포함]-유문부-내시경적 시술(수술)과 동시 실시한 경우	E7063
	위루술(경피적[내시경유도포함])	Q2612
	위식도역류질환의 내시경적 고주파치료술	Q7600

	내용	수가코드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단순	Q761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복잡	Q761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출혈지혈법	Q7620
	내시경적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치료-경화요법	Q7631
	내시경적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치료-결찰요법	Q7633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부지법	Q764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풍선확장법	Q764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확장술-스텐트삽입	Q7643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종양절제	Q765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652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Q7653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식도	Q7654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천공치료술	Q7660
	경구 내시경 근절개술	Q7790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 및 치료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E7621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모자내시경형 담(췌)관경검사	E7622
	경유두적담(췌)관경검사-도관 기반의 담(췌)관경검사	E7623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유두괄약근절개술	Q7761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	Q7762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내시경적 담(췌)관 협착확장술	Q7763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수술-담(췌)석제거술 (바스켓또는풍선카테터이용,기계적쇄석술시)	Q7764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석제거술(전기수 압쇄석술시)	Q7765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용종 및 종양제거술	Q7766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이물질제거술	Q7767
풍선 소장 내시경 검사 및 치료	풍선소장내시경검사[방사선로 포함]-경구	E7651
	풍선소장내시경검사[방사선로 포함]-경항문	E7652
	풍선소장내시경하 이물제거술-경구	Q7780
	풍선소장내시경하 이물제거술-경항문	Q7781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경구	Q7782
	풍선소장내시경하 출혈지혈법-경항문	Q7783

	내용	수가코드
	풍선소장내시경하 풍선확장술-경구	Q7784
	풍선소장내시경하 풍선확장술-경항문	Q7785
	풍선소장내시경하 스텐트삽입술-경구	Q7786
	풍선소장내시경하 스텐트삽입술-경항문	Q7787
	풍선소장내시경하 용종절제술-경구	Q7788
	풍선소장내시경하 용종절제술-경항문	Q7789
대장 내시경 검사 및 치료	결장경검사	E7660
	직장경검사	E7670
	S상결장경검사	E7680
	직장종양절제술(경항문내시경적미세수술)	Q2893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Q7670
	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Q7680
	결장경하 협착 확장술-풍선확장법	Q7691
	결장경하 협착 확장술-내시경적 결장 스텐트삽입술	Q7692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Q7701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폴립 1개당)	Q7702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703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X706
	내시경적 하루 소화관 천공 치료술	Q7700
	내시경적 S상 결장 염전 감압술	Q7710
	에스상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Q7720
	에스상결장경하 출혈 지혈법	Q7730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풍선확장법	Q7741
	에스상결장경하 협착 확장술-스텐트삽입	Q7742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 절제술	Q7751
	에스상결장경하 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절제술	Q7752
요관경 검사 및 치료	경성요관경검사[요관점막하 주입 포함]	E7740
	연성요관경검사[요관점막하 주입 포함]	E7741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R3195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상부요관이상 부위의 병변에 경성신요관경으로 접근이 곤란한 경우	R3196
	요관경하 요관절석술(상부)	R3216
	요관경하 요관절석술(중부)	R3217

내용	수가코드
요관경하 요관절석술(하부)	R3218
요관경하 요관절석술(레이저이용)	R3219
요관스텐트설치술(요관경하)	R3261
요관스텐트제거술(요관경하)	R326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신장	R3424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요관(상부)	R3425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요관(중부)	R342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요관(하부)	R3427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레이저 이용	R3428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상부요관이상 부위의 병변에	R3429
경성신요관경으로 접근이 곤란한 경우	
요관경하 요관이물제거술	R3441
요관경하 요관중앙절제술	R345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49】 특정경증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경증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환	분류번호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B30
	결막염	H10
다래끼	맥립종 및 콩다래끼	H00
외이의 질환	외이염	H60
	외이의 기타 장애	H61
티눈	티눈 및 굳은살	L84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환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50】 특정경증질환 II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경증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결막염	바이러스결막염	B30
	결막염	H10
다래끼	맥립종 및 콩다래끼	H00
외이의 질환	외이염	H60
	외이의 기타 장애	H61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51-1】 전립선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전립선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C61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51-2】 유방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유방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52】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중복암 산정특례대상질환"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을 제외한 특정 부위의, 원발성이라고 정해졌거나 또는 추정되는 악성 신생물	C00~C75
2.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76
3.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80
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81~C96
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6. 제자리신생물	D00~D09
7.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8.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9.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D48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53】 1~5종수술(매회) 분류표

1. 일반적인 상해 및 질병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이식수술(25cm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이식수술(25cm미만인 경우)	1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3
	4. 기타 유방수술(농양(고름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단, 치료목적의 유방절제술(Mammotomy)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拔釘術)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 [치(齒)·치은·치근 (齒根)·치조골(齒 槽骨)의 처치, 임 플란트(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5. 골(骨) 이식수술	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 · 비중격(鼻中隔) · 상악골(上顎骨) · 하 악골(下顎骨)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	3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1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 혈수술	2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 骨) 관혈수술	2
	11. 사지(四肢) 절단수술 [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	-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3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14. 근(筋), 건(腱), 인대(靱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
	19. 폐장(肺臟) 이식수술[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 외)	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 동맥(冠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26. 심장내(心藏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
소화기계의 수술	30. 이하선 절제수술	3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소화기계의 수술	35. 간장(肝臟), 췌장(脾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	5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고름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44. 치루(痔漏), 치열(痔裂),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	1
비뇨기계, 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함]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4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	2
	47. 방광류 요실금 교정수술	1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
	50. 고환(睪丸), 부고환(副睪丸), 정관(精管), 정삭(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2
	51. 음낭관혈수술	1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내분비계의 수술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53.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術) (단, 질병1~5종수술비 II Q(매회지급)(비갱신형) 담보에서만 보장)	1
	54.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55. 질탈(腔脫)근본수술	1
내분비계의 수술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3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4
신경계의 수술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2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内外) 관혈수술	3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63.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 [안검내반증 제외]	1
	64. 눈물소관(淚小管, 눈물길)형성수술 [누관튜브삽입술 포함]	1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2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시력회복 및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1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填術)	
	76. 안와내중양절제수술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78. 안근(眼筋)관혈수술	
청각기(聽覺器)의 수술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2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81.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1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2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질병1~5종수술비 II Q(매회지급)(비갱신형) 담보에서만 보장)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88-1. 뇌, 심장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2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

주1)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주2) 상기 53항(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은 질병1~5종수술비 II Q(매회지급)(비갱신형) 담보에만 적용됩니다.

주3) 상기 87항(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은 질병1~5종수술비 II Q(매회지급)(비갱신형) 담보에만 적용됩니다.

2.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수술명	수술종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	5
1-1. 기타피부암(C44)	3
2.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 주)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1. 일반적인 상해 및 질병 치료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중심정맥삽관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5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수술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의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

주)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5종 수술(매회) 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매회) 분류표>에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광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1~5종 수술(매회) 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
 '1~5종 수술(매회) 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1~5종 수술(매회) 분류표' 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 수술(매회) 분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인 경우에는 '1~5종 수술(매회) 분류표' 중 '1. 일반적인 상해 및 질병치료 목적의 수술' 88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2.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 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별표154】통합암(유사암제외)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암(유사암제외)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보장 - 1〉 두경부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입술의 악성 신생물	C00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	C01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2
잇몸의 악성 신생물	C03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C04
구개의 악성 신생물	C05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6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C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C08
편도의 악성 신생물	C09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C10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C11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C12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C13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14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0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1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69

〈세부보장 - 2〉 위·식도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5
위의 악성 신생물	C16

〈세부보장 - 3〉 소장·대장·항문 및 기타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소장의 악성 신생물	C17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8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0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1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26

〈세부보장 - 4〉 간·담낭·담도 및 췌장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2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3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4
췌장의 악성 신생물	C25

〈세부보장 - 5〉 흉곽내기관·중피성 및 연조직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2
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C33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4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7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8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39
중피종	C45
카포시육종	C46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C47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C48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

〈세부보장 - 6〉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1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76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7~80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세부보장 - 7〉 유방·비뇨기관·부신 및 내분비선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0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C64
신우의 악성 신생물	C65
요관의 악성 신생물	C66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7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C68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4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5

〈세부보장 - 8〉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0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1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2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3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1
질외의 악성 신생물	C52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5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7
태반의 악성 신생물	C58

〈세부보장 - 9〉 뇌 및 중추신경계통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0
뇌의 악성 신생물	C71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2

〈세부보장 - 10〉 혈액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호지킨림프종	C81
소포성 림프종	C82
비소포성 림프종	C83
성숙T/NK-세포림프종	C84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C85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0
림프성 백혈병	C91
골수성 백혈병	C92
단핵구성 백혈병	C9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대상질병	분류번호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9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섬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 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 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4.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5.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55】 통합전이암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전이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보장 - 1〉 위암 및 식도암의 전이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0

〈세부보장 - 2〉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의 전이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4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5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2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8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9

〈세부보장 - 3〉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의 전이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7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1

〈세부보장 - 4〉 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의 전이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0
중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1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2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3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6

〈세부보장 - 5〉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의 전이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80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2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5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8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9

〈세부보장 - 6〉 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의 전이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0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1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0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7

〈세부보장 - 7〉 (남성의 경우) 남성생식기암의 전이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1

(여성의 경우) 여성생식기암의 전이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6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1

〈세부보장 - 8〉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의 전이암

대상질병	분류번호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3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4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56】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 아래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3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레보티록신 Levothyroxine	씬지로이드정0.02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037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0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07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112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15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1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로이드정0.2밀리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25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50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75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88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100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125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씬지록신정150마이크로그램(레보티록신나트륨수화물)

【별표157】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 ① 아래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3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아비라테론아세트레이트 (미분화) Abiraterone Acetate Micronized	자이티가정500밀리그램 (아비라테론아세트레이트(미분화)) 아비테론정500밀리그램 (아비라테론아세트레이트(미분화))
2	아나스트로졸 Anastrozole	아리미덱스정(아나스트로졸) 아나스토정(아나스트로졸) 테바아나스트로졸정1밀리그램 에이덱스정(아나스트로졸)
3	아팔루타마이드 Apalutamide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4	비칼루타미드	카소덱스정(비칼루타미드)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Bicalutamide	비카소정(비칼루타미드) 카소비트정(비칼루타미드) 프로카덱스정(비칼루타미드) 비카루드정(비칼루타미드) 프로칼린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프로세이드정(비칼루타미드) 칼루타미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칼루타미정1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테바비칼루타마이드정50밀리그램 카덱스정(비칼루타미드)
5	비칼루타미드(미분화) Bicalutamide micronized	피엠에스비칼루타미드정50밀리그램 (비칼루타미드(미분화))
6	시프로테론아세테이트 Cyproterone Acetate	안드로쿨정(시프로테론아세테이트)
7	다로루타마이드 Darolutamide	뉴베카정300밀리그램(다로루타마이드)
8	데가렐릭스 Degarelix	퍼마곤주80밀리그램(데가렐릭스) 퍼마곤주120밀리그램(데가렐릭스)
9	엔잘루타마이드 Enzalutamide	엑스탄디엔질캡슐40mg(엔잘루타마이드)
10	에스트라머스틴인산나트 륨수화물 Estramustine Sodium Phosphate Hydrate	에스트라시트캡슐140밀리그램 (에스트라머스틴인산나트륨수화물)
11	엑스메스탄 Exemestane	아로마신정25mg(엑스메스탄)
12	플베스트란트 Fulvestrant	파슬로덱스주(플베스트란트) 플베트주(플베스트란트)
13	고세렐린아세트산염 Goserelin Acetate	졸라덱스데포주사(고세렐린아세트산염)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고세렐린아세트산염)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4	레트로졸 Letrozole	페마라정(레트로졸) 브레트라정(레트로졸) 레나라정(레트로졸) 파누엘정2.5밀리그램(레트로졸) 테바레트로졸정2.5밀리그램
15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Leuproreltin Acetate	로렐린주사액(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로렐린데포주사(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피어데포주3.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4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22.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주3.75mg(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16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Leuproreltin Acetate/Needle	루프린디피에스주11.2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3.7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22.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17	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 아세테이트 Medroxyprogesterone Acetate	파루탈정(메드록시프로게스테론아세테이트)
18	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Megestrol Acetate	메게시아정40mg(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시아정160mg(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19	타목시펜시트르산염 Tamoxifen Citrate	타목센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수출명:Tamooex Tabs.20mg,XifenTabs.20mg, GyraxenTabs.20mg) 타모프렉스정1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광동타목시펜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타모프렉스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광동타목시펜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놀바덱스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놀바덱스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20	트립토헤린아세트산염 Triptorelin Acetate	데카펩틸-데포(트립토헤린아세트산염) 데카펩틸주0.1밀리그램(트립토헤린아세트산염) 디페렐린피알3.75밀리그램주(트립토헤린아세트산염)
21	트립토헤린파모산염 Triptorelin Pamoate	디페렐린피알주11.25밀리그램(파모산트립토헤린) 디페렐린에스알주22.5밀리그램(트립토헤린파모산염)

【별표158】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

아래의 부상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되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부상 등급	상해내용
1급	-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외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텐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 척추(등골뼈)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 척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 척수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상 등급	상해내용
	14. 화상·좌창·괴사상처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완전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목뼈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넓적다리뼈 윗목부 분쇄 골절, 돌기 아랫부분 분쇄 골절, 관절융기 분쇄 골절, 정강이뼈(경골) 관절융기 분쇄 골절 또는 정강이뼈 먼쪽 관절 내 분쇄 골절 12.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팔다리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부상 등급	상해내용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어깨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위팔 부위 완전 절단(팔꿈치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손목 부위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 골절(넓적다리뼈머리 골절은 제외한다) 14. 넓적다리 부위 완전 절단(무릎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무릎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발목관절의 손상으로 발목뼈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위팔뼈목 골절 9. 위팔뼈 몸통 분쇄성 골절

부상 등급	상해내용
	10. 위팔뼈 위관절염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노뼈 먼쪽 부위 골절과 자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자뼈 몸쪽 부위 골절과 노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아래팔 완전 절단(손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 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손목뼈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종아리 완전 절단(발목관절 부위 분리절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목말뼈 또는 발꿈치뼈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팔다리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상처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 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겹보임[복시(複視)]으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부상 등급	상해내용
	5. 상완 신경총 상부 몸통 또는 하부 몸통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위팔뼈 몸통 골절 7.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노뼈 붓돌기 골절 10. 노뼈 먼쪽부위 관절 내 골절 11. 손목 손배뼈 골절 12. 손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엉덩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넓적다리뼈머리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넓적다리뼈 또는 몸쪽 정강이뼈의 견열골절 18. 무릎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무릎뼈 골절 21. 발목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발목뼈 골절(목말뼈 및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24. 발목발허리(리스프랑)관절 손상 25.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6개 이상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팔다리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부상 등급	상해내용
6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타박상(한쪽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혈액가슴증) 또는 기흉(공기가슴증)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어깨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손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어깨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위팔뼈 대결절 견열 골절 13. 위팔뼈 먼쪽 부위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노뼈 몸통 또는 먼쪽 부위 관절외 골절 18. 노뼈목 골절 19. 자뼈 팔꿈치머리 부위 골절 20. 자뼈 몸통 골절(몸쪽 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손목손허리뼈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무릎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무릎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반달모양)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발목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발목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먼쪽 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리

부상 등급	상해내용
7급	28.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2. 겹보임을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빗장뼈) 골절 6. 어깨뼈(어깨뼈가시, 어깨뼈몸통, 가슴우리 탈구, 어깨뼈목, 봉우리돌기 및 부리돌기 포함) 골절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뼈머리 또는 자뼈 갈고리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자뼈 붓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노손목관절 골절 및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손배뼈 외 손목뼈 골절 15. 손목 부위 손배뼈 · 반달뼈 사이 인대 파열 16. 손목손허리뼈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손허리뼈 골절 18. 손허리손가락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손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뼈 관절의 분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엉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종아리뼈 몸통 골절 또는 뼈머리 골절 23. 발목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발목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부상 등급	상해내용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발가락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등의 얼굴 머리뼈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성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갈비뼈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가로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어깨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위팔뼈 위관절염기 또는 위팔뼈 먼쪽 부위 관절 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작은 머리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팔꿈치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손허리뼈 골절 13. 손가락뼈의 몸쪽 손가락뼈 사이 또는 먼쪽 손가락뼈 사이 골절 탈구 14. 다발성 손가락뼈 골절 15. 무지 손허리손가락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 골절(엉치뼈 골절 및 꼬리뼈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무릎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손발가락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팔다리의 근육 또는 힘줄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육 또는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팔다리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팔다리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팔다리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팔다리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부상 등급	상해내용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갈비뼈 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장뼈(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홍채관절 탈구 8. 팔꿈치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노손목관절 탈구(손목뼈간관절 탈구,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손가락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손가락관절 탈구 12. 무릎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발허리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무릎인대, 넓적다리 사두건 또는 넓적다리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손가락·발가락 펴근힘줄 1개의 파열로 힘줄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팔다리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상처(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찢김상처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어깨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손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손발가락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다리 3대 관절의 혈관절증

부상 등급	상해내용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 뇌진탕 2. 얼굴 부위의 코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 손가락뼈 골절 또는 손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발가락뼈 골절 또는 발가락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1. 결막의 찢김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얼굴 부위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손 부위, 발 부위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머리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머리뼈안의 출혈(경막상·하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혈액낭종, 거미막 낭종, 머리뼈 골절(머리뼈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 타박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타박상, 찢김상처(열창)는 14급으로 본다.

영역	내용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부상 및 질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장막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팔·다리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팔다리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판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영역	내용
	아. 관절 분리절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팔다리 근육 또는 힘줄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팔다리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팔다리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팔다리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선모양)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손발가락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더. "근육(근), 힘줄(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러. 팔다리뼈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팔다리뼈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머. 팔다리뼈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팔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6급의 어깨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동시 확인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영역	내용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다 리	가. 양측 두덩뼈가지(치골지) 골절, 두덩뼈(치골) 위아래 가지 골절 등에서 병급하지 않는다. 나. 엉치뼈 골절, 꼬리뼈 골절은 골반뼈 골절로 본다. 다. 무릎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발목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넓적다리뼈 또는 정강이뼈·종아리뼈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정강이뼈 후과의 단독 골절 시 발목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엉덩관절이란 넓적다리뼈머리와 골반뼈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고리를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다리의 3대 관절"이란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을 말한다. 차. 무릎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고리가 안정적인 골반뼈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두덩뼈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별표159】 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1대특정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기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A04.3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로타바이러스장염	A08.0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위장병증	A08.1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장염	A08.2
백일해	백일해	A37
성홍열	성홍열	A38
수두	수두	B01
수족구병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구내염	B08.4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B26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페렴	J12.1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B97.4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J20.5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J21.0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페렴	J12.3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기타 바이러스감염체	B97.8

구분	대상질병	분류기호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J21.1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60】 중증정신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정신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조현병	F20
지속성 망상장애	F22
조현정동장애	F25
조증에피소드	F30
양극성 정동장애	F31
조현형장애	F21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
유도망상장애	F24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8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F32.1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F32.2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F32.3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중등도	F33.1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	F33.2
재발성 우울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	F33.3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61】 특정선천성 대사이상 및 특수식이 필요질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특정선천성 대사이상 및 특수식이 필요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E70.0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E70.1
타이로신대사장애	E70.2
단풍시럽노병	E71.0
축쇄아미노산대사의 기타장애	E71.1
지방산대사장애	E71.3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E72.1
요소회로대사장애	E72.2
라이신및하이드록시라이신대사장애	E72.3
글라이신대사장애	E72.5
갈락토스대사장애	E74.2
칼슘대사장애	E83.5
소장의 크론병	K50.0
대장의 크론병	K50.1
기타 크론병	K50.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수술후 흡수장애	K91.2
담관의 폐쇄	Q4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림프부종	I89.0
미만성 고이터를 동반한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0
고이터를 동반하지 않은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E03.1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E25.0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62】 중증틱장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증틱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복합된 음성 및 다발성 운동 틱장애[데라투렛 증후군]	F95.2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63】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2장(검사료)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베일리영아발달측정	FZ695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64】 출산전 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이상소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이상소견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산모의 출산전 선별검사의 이상소견	O28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65】 골다공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다공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0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2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66】 골다공증성 골절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다공증성 골절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류항목	분류기호
고관절 부위	대퇴골 경부의 골절 S72.0
	대퇴골전자부골절 S72.1
척추 부위	요골 하단의 골절 S52.5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S52.6
원위 요골 부위	홍추의 골절 S22.0
	홍추의 다발골절 S22.1
	요추의 골절 S32.0
상완골 부위	상완골 상단의 골절 S42.2
	상완골 몸통의 골절 S42.3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67】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전신마취 의료행위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치료		수가코드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마취관리기본 [1시간기준]	L1211
	마취 유지	L1221
	마취 유지(상급종합병원)	L1231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마취관리기본 [1시간기준]	L1212
	마취 유지	L1222
	마취 유지(상급종합병원)	L1232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검사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검사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68】 11대중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11대중대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 및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 및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상병 및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 상병 및 질병	분류번호
뇌혈관질환	I60-I69
두개내 손상(미만성 뇌손상 제외)	S06(S06.2 제외)
머리의 으깬손상	S07
허혈심장질환	I20-I25
심장정지	I46
심장의 손상	S26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비골의 골절, 치아의 파절 제외)	S02(S02.2, S02.5 제외)
목의 골절	S12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S22.0~1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대퇴골의 골절	S72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 상병 및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및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 및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및 질병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 상병 및 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 상병 및 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69】 순환계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순환계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 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 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3종	급성 류마티스열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I00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1
		류마티스무도병 I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5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I06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7
		다발판막질환 I08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09
		급성 심장막염 I30
	심장염증질환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급성 심근염 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중증 방실차단	방실차단 2도 I44.1
		완전방실차단 I44.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I44.3
	부정맥	발작성 빈맥 I47
		심방세동 및 조동 I48
		기타 심장부정맥 I49
	특정 동맥혈관 질환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2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4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7
	문맥혈전증	I81
4종	협심증 경증 허혈성심장질환	협심증 I20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만성 허혈심장병 I25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폐색전증 I26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7
		폐혈관의 기타 질환 I28
	심근병증	심근병증 I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3*
	심부전	심부전 I50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경증 뇌혈관질환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기타 뇌혈관질환 I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식도정맥류 I85
	식도정맥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I9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I98.3*
5종	급성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I21
		후속심근경색증 I22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6.0
뇌출혈	거미막하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2
뇌경색증	뇌경색증	I63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70】 천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천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1. 천식	J45
2. 천식지속상태	J46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71】 폐렴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폐렴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J12
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 거대세포바이러스 폐렴(J17.1*)	B25.0+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B05.2+
- 수두 폐렴(J17.1*)	B01.2+
- 폐톡소포자충증(J17.3*)	B58.3+
7.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72】 패혈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패혈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연쇄알균 패혈증	A40
2. 기타 패혈증	A41
3. 패혈성 쇼크	R57.2
4. 살모넬라 패혈증	A02.1
5. 패혈증형 페스트	A20.7
6. 탄저병 패혈증	A22.7
7. 에리시펠로트릭스 패혈증	A26.7
8. 리스테리아 패혈증	A32.7
9. 방선균 패혈증	A42.7
10. 파종성 헤르페스바이러스병	B00.7
11. 칸디다 패혈증	B37.7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73】 주요폐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주요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1. 폐기종	J43
2.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4
3. 기관지확장증	J47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흉막삼출액	J90
5. 달리 분류된 병태에서의 흉막삼출액	J91
6. 흉막판	J92
7. 기흉	J93
8. 기타 흉막의 병태	J94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74】 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외부요인으로인한폐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코드
1. 탄광부 진폐증	J60
2.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J61
3. 실리카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J62
4. 기타 무기물먼지에 의한 진폐증	J63
5. 상세불명의 진폐증	J64
6. 결핵과 연관된 진폐증	J65
7. 특정 유기물먼지에 의한 기도질환	J66
8.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	J67
9.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감의 흡입에 의한 호흡기병태	J68
10.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	J69
11.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호흡기병태	J70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75】백반증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백반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류항목	분류번호
백반증	L80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76-1】순환계질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순환계질환(3-5종) 중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4종	경증 뇌혈관질환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기타 뇌혈관질환	1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5종	뇌출혈	거미막하출혈	160
		뇌내출혈	1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162
	뇌경색증	뇌경색증	163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76-2】 순환계질환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순환계질환(3·5종) 중 심혈관 및 기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대상질환	분류번호
3종	급성 류마티스열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100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101 류마티스무도병 1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105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106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107 다발판막질환 108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109
	심장염증질환	급성 심장막염 130 심장막의 기타 질환 1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1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133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138 급성 심근염 1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141*
중증	방실차단 2도	144.1
	완전방실차단	144.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144.3
부정맥	발작성 빈맥	147
	심방세동 및 조동	148
	기타 심장부정맥	149
특정 동맥혈관 질환	기타 동맥류 및 박리	172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174

구분	대상질환	분류번호
문맥혈전증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177
	문맥혈전증	181
4종	협심증 경증	협심증 120
	허혈성심장질환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124
	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만성 허혈심장병 125 폐색전증 126 기타 폐성 심장질환 127 폐혈관의 기타 질환 128
	심근병증	심근병증 1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143*
	심부전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심부전 150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171
	식도정맥류	식도정맥류 18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19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198.3*
5종	급성심근경색증	급성 심근경색증 121 후속심근경색증 12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46.0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77】 상해특정시술치료(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해특정시술치료(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진료행위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상해 특정급여 시술치료 (흡인 , 천자 , 절개 , 배액 , 배농)	요추천자[뇌척수압측정포함]	C8000
	경막하천자	C8005
	후두하대조천자, 경지주막하천자	C8010
	관절천자[간단한검사또는관절액이동술포함][편측]	C8020
	골수천자	C8031
	흉막천자	C8040
	복수천자, 복막천자	C8050
	심낭천자	C8060
	뇌실천자	C8070
	상악동천자[간단한액검사포함][편측]	C8080
	고실천자[편측]	C8090
	고실천자[편측]-내시경하에서실시한 경우	C8091
	더글라스와천자[간단한액검사포함]	C8100
	방광천자	C8120
	음낭수종천자	C8130
	기타부위천자[림프절, 피부등]	C8140
	골수천자생검[편측]	C8520
	개봉선원치료-기타방법[복막천자, 흉강천자, 관절천자등]	HD073
	부정맥의냉각절제술-심방세동-냉각풍선절제술-중격천자	M0652
	부정맥의냉각절제술-상심실성부정맥-중격천자	M0653
	부정맥의냉각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0655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절제술-중격천자	M0656
	경피적경화술-단순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낭종]	M1771
	경피적경화술-단순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혈관기형]	M1772
	경피적경화술-단순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이외-낭종]	M1773
	경피적경화술-단순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이외-혈관기형]	M1774

구분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경피적경화술-카테터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낭종]	M1775
	경피적경화술-카테터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혈관기형]	M1776
	경피적경화술-카테터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이외-낭종]	M1777
	경피적경화술-카테터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이외-혈관기형]	M1778
	경피적기관카테터삽입및인공호흡[윤상갑상막천자를통한것]	M5830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6540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부정맥)-중격천자	M6544
	부정맥의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6545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부정맥)-중격천자	M6549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절제술)-중격천자	M6556
	경피적간담즙배액술[유도료별도산정]	M6670
	경피적배액관교환술	M6750
	난중흡인요법[유도료별도산정]	M6850
	유주농양천자술	N0100
	근농양배농술(요장근농양)	N0841
	근농양배농술(둔근농양)	N0842
	근농양배농술(대퇴근농양)	N0843
	근농양배농술(기타근농양)	N0844
	추간판제거술-척추수핵용해술[방사선료포함]	N1495
	척추수핵흡인술[뉴크레오톤이용수핵제거등][방사선료포함]	N1496
	범발성폴립양성대절개및흡인술	O1233
	경피적확장기관절개술	O1301
	농흉세척[흉강내주입포함]	O1502
	흉강삽관술(폐쇄식)	O1510
	중격동염배농술(비개흉식)	O1581
	타석절개술(단순적출)	Q2241
	인후농양절개술(경구강)	Q2251
	편도주위농양절개술또는흡인술	Q2320
	간농양(낭종)수술-개복에의한흡인또는주입술	Q7211
	역행성담체관내시경수술-담(췌)관배액술	Q7762

구분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경피적담관[낭] 경이용시술[PTBDRoute또는T-Tube이용]-담관확장술(단순[카테터등이용확장만하는경우])	Q7771
	경피적담관[낭] 경이용시술[PTBD또는T-Tube이용]-담석 제거술(바스켓또는풍선카테터이용,기계적쇄석술시)	Q7773
	경피적담관[낭] 경이용시술[PTBDRoute또는T-Tube이용]-담석제거술(전기수압식쇄석술시)	Q7774
	요도주위농양절개술	R3750
	포상기태제거술-흡인소파술에의한것	R4481
	자궁내태아흡수배액술[유도료별도산정]-홍강천자	R4536
	절개술(안면또는경부,제1범위,1cm미만)	S0011
	절개술(안면또는경부,제1범위,1cm이상~2cm미만)	S0012
	절개술(안면또는경부,제1범위,2cm이상)	S0013
	중추신경계정위수술-생검,흡인,병소절제,혈중제거	S4756
	경피적척수낭중혹은공동흡인술	S4811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단순천자에 의한 시험적 약물주입술	S4841
	유리체흡인술	S5050
	전방천자	S5080
	안검농양절개술	S5240
	맥립종절개술	S5400
	각막전부기질천자술[편측]	S5542
	골막하농양절개배액술	S5761
상해 특정급여 시술치료 (신경 차단술)	지주막하신경차단술	LA210
	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피하터널식카테터삽입 에의한방법-삽입당일[삽입료포함]	LA222
	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피하터널식카테터삽입 에의한방법-삽입익일이후(1일당)	LA223
	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피하매몰저장기펌프삽 입술에의한방법-삽입당일[삽입료포함]	LA224
	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피하매몰저장기펌프삽 입술에의한방법-삽입익일이후(1일당)	LA225
	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비터널식카테터)에 의한방법-삽입당일[삽입료포함]	LA226
	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비터널식카테터)에 의한방법-삽입익일이후(1일당)	LA227

구분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경막외신경차단술(경막외패치술[혈액채취료포함])	LA228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면신경	LA232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설인신경	LA233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접구개신경절	LA234
	내시경하접구개신경절차단술	LA235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소후두신경	LA241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상후두신경	LA242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후두신경	LA243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흉격막신경	LA24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척추부신경	LA245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	LA247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LA248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장골서혜신경	LA249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경신경총	LA251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요천골신경총	LA253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간단한것	LA261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복잡한것(복강신경총)	LA264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복잡한것(하장간막신경총)	LA265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장골하복신경	LA270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LA271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LA272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폐쇄신경	LA273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LA27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외측대퇴피신경	LA275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상박신경총	LA276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경추및흉추)	LA321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요추및천추)	LA323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미추)	LA324
	경막외신경차단술-경추간공차단(경추및흉추)	LA325
	경막외신경차단술-경추간공차단(요추및천추)	LA326
	경막외저장기펌프제거술	LA330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삼차신경절,상악신경,하악 신경	LA340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 측두신경	LA341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신경	LA346

구분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척수신경말초치차단술-액와하부신경	LA347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방척추신경	LA352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미골신경	LA353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	LA354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추후근신경절	LA355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추회백신경교통지	LA356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LA357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LA358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	LA359
	척수신경총,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천장관절차단	LA360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복잡한것(흉부교감신경절)	LA361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복잡한것(요부교감신경절)	LA362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복잡한것(상하복신경총)	LA366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복잡한것(외톨이신경절)	LA367
	전척추블록(기본[1시간기준])	LY051
	전척추블록(유지[1시간초과시15분당])	LY052
상해 특정급여 시술치료 (화상 치치)	화상처치-9%이하의범위[수족지,안면,경부,성기를포함 하는경우]	N0011
	화상처치-9%이하의범위[수족지,안면,경부,성기를 포함 하지아니한 경우]	N0012
	화상처치-열탕,화염,동상,화학화상등의경우-하지의1지, 복부또는배부에준하는범위[10%~18%의범위]	N0053
	화상처치-열탕,화염,동상,화학화상등의경우-양하지또는 동체(복부및배부)에준하는범위[19%~36%의범위]	N0054
	화상처치-전기화상의 경우(근육,골격,인대의 손상이 포 함된경우)	N0057
	화상처치-전기화상의경우(기타)	N0058
	화상처치-열탕,화염,동상,화학화상등의경우-상,하지또는 양하지와복부또는배부에준하는범위[37~54%]	NA055
	화상처치-열탕,화염,동상,화학화상등의경우-전신대부분 의범위[55%이상]	NA056
	화상처치-전기화상의 경우(근육,골격,인대의 손상이 포 함된경우)-섬광또는화염동반	NA057
	화상처치-전기화상의경우(기타)-섬광또는화염동반	NA058
	화상처치-전기화상의경우(기타)-섬광또는화염동반	NA058
상해	늑골골절비관혈적정복술	N0531

구분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특정급여 시술치료 (도수 정복술)	척추골절및탈구의도수정복술	N0630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골반골,대퇴골]	N0641
	사지골절도수정복술[상완골,하퇴골]	N0642
	사지골절도수정복술[전완골]	N0643
	사지골절도수정복술[수근골,족근골]	N0644
	사지골절도수정복술[중수골,중족골,지골]	N0645
	관절탈구도수정복술(고관절)	N0761
	관절탈구도수정복술(어깨관절(견관절))	N0762
	관절탈구도수정복술(주관절,슬관절)	N0763
	관절탈구도수정복술(완관절,족관절,지관절)	N0764
	척추골절및탈구의도수정복술	N0765
상해 특정급여 시술치료 (기타 시술)	이식형사건기록기삽입술	E6551
	박피술[종양치료에한함]-25cm미만	N0111
	티눈제거술(전기소작,냉동응고술또는약물밀봉대)	N0143
	조갑거터술	N0215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대퇴골]	N0972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상완골,견갑골]	N0973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하퇴골]-요척골동시, 경비골동시	N0974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쇄골,슬개골,수근골,족근골]	N0975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중수골,중족골,지골]	N0976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하퇴골]-요골과척골 중 하나,경골과비골중 하나	N0977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에삽입한금속핀이나금속 정등을근막절개하에간단히제거한경우	N0978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에삽입한금속핀이나금속 정등을근막절개없이간단히제거한경우	N0979
	인공심폐순환[1회당]	O1890
	요관스텐트제거술(요관경하)	R3266
	요관스텐트제거술(방광경하)	R3267
	요관스텐트제거술(경피적)[경피적신루설치술,방사선료 포함]	R3268
	인공요도괄약근제거술	R3566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 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두개강내신경전극제거	S0475

구분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현미경하각막통합사제거술	S5390
	척수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영구자극기설치술[경피적]-자극분석및재조정	SY634
	척수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시험적거치술[경피적]-자극분석	SY638
	투시하이물제거술	MY762
	투시하물제거술(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의경우)[유도료 별도산정]	MY763
	비내이물제거술-간단한것[비내접근]	O0971
	비내이물제거술-복잡한것[전신마취하실시또는비외접근시]	O0972
	후두이물제거술(성문상부)	O1291
	후두이물제거술(성문,성문하부)	O1292
	내시경적기관또는기관지이물제거술(연성기관지경)	O1332
	개흉적기관또는기관지이물제거술	O1336
	식도이물제거술(흉부접근)	Q2382
	식도이물제거술(경부접근)	Q2383
	내시경적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단순	Q7611
	내시경적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복잡	Q7612
	결장경하이물제거술	Q7670
	एस상결장경하이물제거술	Q7720
	역행성담체관내시경수술-이물질제거술	Q7767
	안구내이물제거술-자석이용	S4891
	안구내이물제거술-기타의것	S4892
	안와내이물제거술	S4895
	결막이물제거술	S4930
	각막이물제거술-단순[filament제거포함]	S4971
	각막이물제거술-복잡[심층,녹제거를하는경우]	S4972
	공막이물제거술	S4990
	외이도이물또는이구전색제거[간단한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복잡한것	S5571
	외이도이물또는이구전색제거[간단한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극히 복잡한것[진주종제거 포함]	S5572
	급성복막투석-도관삽입술	O7061
	체외복수투석[복막천자포함]	O7080
	혈액투석[1회당]	O7020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치료 당시
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78】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상해특정마취치료(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
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정맥마취	전신마취		L0101
	부위(국소)마취		L0102
	감시하 전신마취	마취관리기본[30분기준]	L0103
마취	척추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L1213
	경막외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L1214
	상박신경총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L1215
	척추경막외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L1216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
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치료 당시
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79】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지속적신대체요법(CRRT)(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명	수가코드
지속적정맥혈액투석여과-카테터삽입당일[카테터삽입료포함]	O7001
지속적정맥혈액투석여과-익일부터[1일당]	O7002
지속적동정맥혈액투석여과-카테터삽입당일[카테터삽입료포함]	O7003
지속적동정맥혈액투석여과-익일부터[1일당]	O7004
지속적정맥혈액투석-카테터삽입당일[카테터삽입료포함]	O7031
지속적정맥혈액투석-카테터삽입익일부터[1일당]	O7032
지속적동정맥혈액투석-카테터삽입당일[카테터삽입료포함]	O7033
지속적동정맥혈액투석-카테터삽입익일부터[1일당]	O7034
지속적정맥혈액여과-카테터삽입당일[카테터삽입료포함]	O7051
지속적정맥혈액여과-카테터삽입익일부터[1일당]	O7052
지속적동정맥혈액여과-카테터삽입당일[카테터삽입료포함]	O7053
지속적동정맥혈액여과-카테터삽입익일부터[1일당]	O7054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예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80】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 초과)(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 초과)(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명	수가코드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별도]-12시간초과1일당	M5860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별도]-12시간초과1일당(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 이용)	M0860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예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81】 저체온요법치료(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저체온요법치료(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명	수가코드
치료적저체온요법[1일당]	M5970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	M5990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처치일다음날부터 1일당	M5991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예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82】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부분체외순환치료(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명	수가코드
부분체외순환	O1901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	O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	O1903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익일 이후 [1일당]-10시간 초과 계속 사용	O1904
부분체외순환-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	O1905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	O1906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치료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83】급여 상해 CT검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상해 CT검사”로 분류되는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일반 전산화단층촬영진단 주 :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CT 유도 비용은 각 항목의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흉부 및 복부는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기타의 경우)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한 CT 유도 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HA851 HA801 HA805 HA809 HA813 HA853 HA834 HA835 HA856 HA857 HA858 HA859
가. 두부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3) 특수검사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나) 삼차원 CT (다) CT 혈관조영 (라) Cine CT (마) 뇌조 CT (4) 제한적 CT	HA451 HA461 HA511 HA521 HA531 HA551 HA561 HA441
나. 안면 및 두개기저 (1) 안와 (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01 HA402

내용	수가코드
(다) 특수검사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01
2) 삼차원 CT	HA502
3) CT 혈관조영	HA503
(라) 제한적 CT	HA404
(2) 부비동	
(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05
(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06
(다) 특수검사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04
2) 삼차원 CT	HA505
3) CT 혈관조영	HA506
(라) 제한적 CT	HA408
(3) 측두골	
(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09
(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10
(다) 특수검사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07
2) 삼차원 CT	HA508
3) CT 혈관조영	HA509
(라) 제한적 CT	HA412
(4) 기타	
(가)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13
(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14
(다) 특수검사	
1)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91
2) 삼차원 CT	HA592
3) CT 혈관조영	HA593
4) 뇌조 CT	HA594
(라) 제한적 CT	HA416
다. 경부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53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63
(3) 특수검사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3
(나) 삼차원 CT	HA523

내용	수가코드
(다) CT 혈관조영	HA533
(4) 제한적 CT	HA443
라. 흉부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 고해상력	HA424
(나) 기타의 경우	HA434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64
(3) 특수검사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4
(나) 삼차원 CT	HA524
(다) CT 혈관조영	HA534
(라) Cine CT	HA554
(4) 제한적 CT	HA444
마. 복부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 요로결석 의심	HA425
(나) 기타의 경우	HA435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65
(3) 특수검사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5
(나) 삼차원 CT	HA525
(다) CT 혈관조영	HA535
(4) 제한적 CT	HA445
바. 척추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56
주: “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1,117.99점을 산정한다.	HA459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66
주: “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1,614.14점을 산정한다.	HA469
(3) 특수검사	
주: “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1,790.76점을 산정한다.	HA519
	HA529
	HA539

내용	수가코드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49
(나) 삼차원 CT	HA516
(다) CT 혈관조영	HA526
(라) 관절 관 또는 강내조영촬영	HA536
(4) 제한적 CT	HA546
주: “경추, 흉추, 요추 부위”를 동시 촬영하거나 “경추, 요추”를 동시 촬영한 경우에는	HA446
사. 상지	HA449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57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67
(3) 특수검사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7
(나) 삼차원 CT	HA527
(다) CT 혈관조영	HA537
(라) 관절강내조영촬영	HA547
(마) Cine CT	HA557
(4) 제한적 CT	HA447
아. 하지	
(1) 조영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HA458
(2) 조영제를 사용하는 경우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포함]	HA468
(3) 특수검사	
(가) 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8
(나) 삼차원 CT	HA528
(다) CT 혈관조영	HA538
(라) 관절강내조영촬영	HA548
(마) Cine CT	HA558
(4) 제한적 CT	HA448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가. 일반	HA496
나. 3차원 CT, 관절강내조영촬영	HA497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의료행위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84】골밀도검사(급여)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골밀도검사(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
 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
 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명	수가코드
골밀도검사[재료대포함]	
가. 양방사선(광자) 골밀도검사	
(1) 1부위	HC341
(2) 2부위이상	HC342
나. 정량적 전산화단층골밀도검사	
(1) QCT	HC343
(2) PQCT	HC346
다. 방사선흡수측정기방식	HC345
라. 기타 방법에 의한 것	HC344
[단광자 골밀도측정(SPA), 양방사선 말단골밀도측정(PDEXA), 단에너지 골밀도측정(SXA), 초음파 골밀도측정(QUS)]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
 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치료 당시
 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
 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치료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85】 통합상해사고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상해사고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상 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분	부위	대상상병	분류번호
경증	머리 및 목	1. 머리의 표재성 손상	S00
		2. 머리의 열린상처	S01
		3.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03
		4.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09
		5. 목의 표재성 손상	S10
		6. 목의 열린상처	S11
		7.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3
		8.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9
	복부 및 등	9. 흉부의 표재성 손상	S20
		10. 흉부의 열린상처	S21
		11. 흉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3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S27
		13.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9
		14.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S30
		15.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상처	S31
		16.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3
		17.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39
	어깨 및 팔	18.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S40
		19. 어깨 및 위팔의 열린상처	S41
		20.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3
		21. 어깨 및 위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49
		22.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S50
		23. 아래팔의 열린상처	S51
		24.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53
		25.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59

구분	부위	대상상병	분류번호
	손목 및 손	26.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S60
		27. 손목 및 손의 열린상처	S61
		28.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63
		29.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69
	엉덩이 및 다리	30. 엉덩이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S70
		31. 엉덩이 및 대퇴의 열린상처	S71
		32.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3
		33.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79
		34.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S80
		35. 아래다리의 열린상처	S81
		36.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83
	발목 및 발	37.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89
		38.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S90
		39. 발목 및 발의 열린상처	S91
		40.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93
		41. 발목 및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99
	기타	4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T00
		4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열린상처	T01
		44.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T03
		4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기타 손상	T06
		46.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T07
		47. 척추 및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09
		48.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1
		49.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3
		50.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손상	T14
		5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5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5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5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5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5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5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5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5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구분	부위	대상상병	분류번호
		6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6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6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6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64. 표재성 동상 65. 조직괴사를 동반한 동상 66.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동상 및 상세불명의 동상	T29 T30 T31 T32 T33 T34 T35
	머리 및 목	67.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68. 뇌신경의 손상 69. 눈 및 안와의 손상 70. 두개내손상 71. 목의 골절 72.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73. 목부위의 혈관이 손상 74.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02 S04 S05 S06 S12 S14 S15 S16
중등증	복부 및 등	75.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76.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77. 흉부 혈관의 손상 78. 심장의 손상 79. 요추 및 골반의 골절 80. 복부, 아래등의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81.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의 손상 82. 복강내기관의 손상 83.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S22 S24 S25 S26 S32 S34 S35 S36 S37
	어깨 및 팔	84. 어깨 및 위팔의 골절 85.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86. 어깨 및 위팔 부위의 혈관의 손상 87.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88. 아래팔의 골절 89. 아래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90. 아래팔 부위의 혈관의 손상 91.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42 S44 S45 S46 S52 S54 S55 S56

구분	부위	대상상병	분류번호
	손목 및 손	9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93.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경성 손상 94. 손목 및 손 부위의 혈관의 손상 95.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62 S64 S65 S66
	엉덩이 및 다리	96. 대퇴골의 골절 97.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신경의 손상 98.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혈관의 손상 99.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100.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101.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손상 102. 아래다리 부위의 혈관의 손상 103.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72 S74 S75 S76 S82 S84 S85 S86
	발목 및 발	104.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105. 발목 및 발 부위의 신경의 손상 106. 발목 및 발 부위의 혈관의 손상 107.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92 S94 S95 S96
	기타	108.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109.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111.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2 T08 T10 T12
중증	머리 및 목	112. 머리의 으깬손상 113.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114. 목의 으깬손상 115. 목부위의 외상성 절단	S07 S08 S17 S18
	복부 및 등	116. 흉부의 으깬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117. 복부, 아래등 골반의 으깬손상 및 외상성절단	S28 S38
	어깨 및 팔	118. 어깨 및 위팔의 으깬손상 119. 어깨 및 위팔 외상성 절단 120. 아래팔의 으깬손상 121. 아래팔의 외상성 절단	S47 S48 S57 S58
	손목 및 손	122. 손목 및 손의 으깬현상 123. 손목 및 손의 외상성 절단	S67 S68

구분	부위	대상상병	분류번호
	엉덩이 및 다리	124. 엉덩이 및 대퇴의 으깬현상	S77
		125.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S78
		126. 아래다리의 으깬손상	S87
		127. 아래다리의 외상성 절단	S88
	발목 및 발	128. 발목 및 발의 으깬현상	S97
		129.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S98
	기타	13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으깬손상	T04
		131.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외상성 절단	T05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상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상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상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상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86】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 세부내용

현물급부 내용	지원횟수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는 아래 ‘연속혈당측정센서’와 ‘혈당관리결과상담’으로 구성됩니다. - 연속혈당측정센서(CGM, Dexcom G7) : 덱스콤 G7은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를 측정하고 모니터링하여 당뇨 관리에 도움을 주는 기기 - 혈당관리결과상담 : 카카오톡스케어 파스타 앱을 통해 CGM 착용을 진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된 결과 리포트를 의료진(간호사)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서비스	6개 연속혈당측정센서 제공 후 3회
- 연속혈당측정기(현물급부) 세부내용은 생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현물급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변경 내용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별표187】 중이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중이염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 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비화농성 중이염	H65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H6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	H67

1.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4.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88】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1. 아래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5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 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소분자 항암 치료제	애플리버셉트 afibercept	잘트랩주25mg/ml(애플리버셉트)
	알렉티닙염산염 alectinib	알레센자캡슐150밀리그램(알렉티닙염산염)
	아파티닙이말레산염 afatinib	지오텍립정2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지오텍립정3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지오텍립정40밀리그램(아파티닙이말레산염)
	엑시티닙 axitinib	인라이트정1밀리그램(엑시티닙)
		인라이트정5밀리그램(엑시티닙)
	보르테조미프삼합체 bortezomib	벨조미프주1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벨조미프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벨케이드주(보르테조미프삼합체)
		벨킨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벨킨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보테벨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테조민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테조민주3.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테조벨주(보르테조미프삼합체)
		프로테조미프주(보르테조미프삼합체)
		프로테조미프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미프삼합체)
		화이자보르테조미프주3.5mg(보르테조미프일수화물)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카보잔티닙 cabozantinib	카보메텍스정20밀리그램(카보잔티닙) 카보메텍스정40밀리그램(카보잔티닙) 카보메텍스정60밀리그램(카보잔티닙)
	카르필조밍 carfilzomib	키프롤리스주30밀리그램(카르필조밍) 키프롤리스주60밀리그램(카르필조밍)
	세리티닙 ceritinib	자이카디아캡슐150밀리그램(세리티닙)
	크리조티닙 crizotinib	젤코리캡슐200밀리그램(크리조티닙) 젤코리캡슐250밀리그램(크리조티닙)
	다브라페닙메실산염 dabrafenib	라핀나캡슐50밀리그램(다브라페닙메실산염) 라핀나캡슐75밀리그램(다브라페닙메실산염)
	다사티닙 dasatinib	스프라이셀정10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2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5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70밀리그램(다사티닙) 스프라이셀정80밀리그램(다사티닙)
	엘로티닙염산염 erlotinib	엘로세타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로세타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로티닙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수출용) 엘로티닙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티닙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엘티닙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쎌바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쎌바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쎌바정25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쎌원정10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타쎌원정150밀리그램(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100mg(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150mg(엘로티닙염산염) 테바엘로티닙정25mg(엘로티닙염산염)
	에베로리무스 everolimus	아피니토정10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아피니토정2.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아피니토정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에리니토정10mg(에베로리무스) 에리니토정5밀리그램(에베로리무스)(5mg/1정) 에베로즈정 10밀리그램 에베로즈정 2.5밀리그램 에베로즈정 5밀리그램
	게피티니브 gefitinib	레피사정(게피티니브) 스팩사정250밀리그램(게피티니브) 이레사정(게피티니브) 이레티닙정250밀리그램(게피티니브) 이레피논정(게피티니브) 제피티닙정(게피티니브)
	이브루티닙 ibrutinib	임브루비캡슐140밀리그램(이브루티닙)
	이매티닙메실산염 imatinib	글로팁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닙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닙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닙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마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마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마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부렌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부렌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부렌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티브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티브필름코팅정3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글리티브필름코팅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루키벡필름코팅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루키벡필름코팅정2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루키벡필름코팅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류코벡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류코벡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유니팁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이매팁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이매티닙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제이티닙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제이티닙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케어벡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케어벡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익사조립 시트레이트 ixazomib	닌라로캡슐2.3밀리그램(익사조립시트레이트)
	라파티닙 티토실레이트 lapatinib	닌라로캡슐3밀리그램(익사조립시트레이트)
		닌라로캡슐4밀리그램(익사조립시트레이트)
	렌바티닙메실산염 lenvatinib	타이커브정250밀리그램(라파티닙디토실레이트)
	닐로티닙 염산염일수화물 nilotinib	렌비마캡슐10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
		렌비마캡슐4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
	올라파립 olaparib	타시그나캡슐150밀리그램(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타시그나캡슐200밀리그램(닐로티닙염산염일수화물)
	오시머티닙 osimertinib	린파자캡슐50밀리그램(올라파립)
		린파자정 100밀리그램(올라파립)
		린파자정 150밀리그램(올라파립)
	팔보시클립 palbociclib	타그리소정4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타그리소정80밀리그램(오시머티닙메실산염)
		입랜스캡슐100mg(팔보시클립)
	파조파닙염산염 pazopanib	입랜스캡슐125mg(팔보시클립)
		입랜스캡슐75mg(팔보시클립)
	포나티닙염산염 ponatinib	보트리엔트정200밀리그램(파조파닙염산염)
	라도티닙염산염 radotinib	보트리엔트정400밀리그램(파조파닙염산염)
		아이클루시그정15밀리그램(포나티닙염산염)
	레고라페닙 regorafenib	아이클루시그정45밀리그램(포나티닙염산염)
		슈펙트캡슐100밀리그램(라도티닙염산염)
	룩소리티닙 인산염 ruxolitinib	슈펙트캡슐200밀리그램(라도티닙염산염)
		스티바가정40밀리그램(레고라페닙)
		자카비정5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자카비정10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자카비정15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자카비정20밀리그램(룩소리티닙인산염)
	소라페닙토실레이트 (미분화) sorafenib	넥사바정200밀리그램 (소라페닙토실레이트(미분화))
	수니티닙말산염 sunitinib	수텐캡슐12.5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텐캡슐25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수텐캡슐50밀리그램(수니티닙말산염)
	템시롤리무스 temsirolimus	토리셀주(템시롤리무스)
	트라메티닙 디메틸설폭시드 trametinib	매큐셀정0.5밀리그램(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매큐셀정2밀리그램(트라메티닙디메틸설폭시드)
	반데타닙 vandetanib	카프렐사정100밀리그램(반데타닙)
		카프렐사정300밀리그램(반데타닙)
	베무라페닙 vemurafenib	젤보라프정240밀리그램(베무라페닙)
	레날리도마이드 lenalidomide	레날도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7.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10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1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20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도캡슐25mg(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7.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1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1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로마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날리드정(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레블리미드캡슐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1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1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20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레블리미드캡슐25밀리그램(레날리도마이드)
	보리노스타트 vorinostat	줄린자캡슐100밀리그램(보리노스타트)
	브리가티닙 brigatinib	알론브릭정30밀리그램(브리가티닙)
		알론브릭정90밀리그램(브리가티닙)
		알론브릭정180밀리그램(브리가티닙)
	미도스타우린 midostaurin	라이답연질캡슐25밀리그램(미도스타우린)
	니라파립 토실산염일수화물 niraparib	제줄라캡슐100밀리그램(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
	탈리도마이드 thalidomide	세엘진탈리도마이드캡슐50밀리그램
		탈라이드캡슐100mg(탈리도마이드)
		탈라이드캡슐50mg(탈리도마이드)
		탈로다캡슐10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로다캡슐5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리그로브캡슐10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탈리그로브캡슐50밀리그램(탈리도마이드)
	포말리도마이드 pomalidomide	포말리스트캡슐1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2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3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포말리스트캡슐4밀리그램(포말리도마이드)
	아베마시클립 abemaciclib	버제니오정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10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15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버제니오정200밀리그램(아베마시클립)
	베네토클락스 venetoclax	벤클렉스타정1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벤클렉스타정5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벤클렉스타정100밀리그램(베네토클락스)
	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 gilteritinib	조스파타정40밀리그램(길테리티닙푸마르산염)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다코미티닙 dacomitinibhydrate	비짐프로정15밀리그램(다코미티닙수화물)
		비짐프로정45그램(다코미티닙수화물)
		비짐프로정30밀리그램(다코미티닙수화물)
	리보시클립 ribociclib	키스칼리정200밀리그램(리보시클립속산산염)
	엔트렉티닙 entrectinib	로즐리트렉캡슐100밀리그램(엔트렉티닙)
		로즐리트렉캡슐200밀리그램(엔트렉티닙)
	라로트렉티닙 larotrectinib	비트락비액(라로트렉티닙황산염)
		비트락비캡슐100밀리그램(라로트렉티닙황산염)
		비트락비캡슐25밀리그램(라로트렉티닙황산염)
	레이저티닙 Lazertinib	렉라자정80밀리그램 (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
	엔코라페닙 Encorafenib	비라토비캡슐75밀리그램(엔코라페닙)
	탈라조파립 Talazoparib	탈제나캡슐1mg
		탈제나캡슐0.25mg
	로라티닙 Lorlatinib	로비큐아정25mg
		로비큐아정100mg
	소토라시브 Sotorasib	루마크라스정120mg
	네라티닙말레산염 NeratinibMaleate	너링스정(네라티닙말레산염)
	자누브루티닙 Zanubrutinib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 TepotinibHydrochlorideHydrate	템메코정225밀리그램(테포티닙염산염수화물)
	프랄세티닙분무건조분산체 PralsetinibSprayDriedDispersion	가브레토캡슐100밀리그램(프랄세티닙)
	셀퍼카티닙 Selpercatinib	레테브모캡슐40밀리그램(셀퍼카티닙)
		레테브모캡슐80밀리그램(셀퍼카티닙)
	애시미닙염산염 AsciminibHydrochloride	셈블릭스정20밀리그램(애시미닙염산염)
		셈블릭스정40밀리그램(애시미닙염산염)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타브렉타정150밀리그램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CapmatinibHydrochlorideMonohydrate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타브렉타정200밀리그램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티라브루티닙염산염 TirabrutinibHydrochloride	베렉스브루정80밀리그램(티라브루티닙염산염)
단일 클론 항체 항암 치료제	퍼투주맙 pertuzumab	퍼제타주(퍼투주맙)
	트라스투주맙 trastuzumab	삼페넛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허셉틴주15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허셉틴주44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허셉틴피하주사6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허쥬마주150mg(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허쥬마주440mg(트라스투주맙) (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오비누투주맙 obinutuzumab	가싸이바주(오비누투주맙, 유전자재조합)
	실톡시맙 siltuximab	실반트주100밀리그램(실톡시맙, 유전자재조합)
	세톡시맙 cetuximab	실반트주400밀리그램(실톡시맙, 유전자재조합)
	세톡시맙 cetuximab	얼비투스주5mg/mL(세톡시맙)
	블리나투모맙 blinatumomab	블린사이토주35마이크로그램 (블리나투모맙, 유전자재조합)
	베바시주맙 bevacizumab	아바스틴주(베바시주맙)
	리톡시맙 rituximab	맵테라주(리톡시맙)(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맵테라피하주사(리톡시맙)(유전자재조합) 트록시마주(리톡시맙)(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
	라무시루맙 ramucirumab	사이람자주10밀리그램/밀리리터 (라무시루맙, 유전자재조합)
	다라투무맙 daratumumab	다잘렉스주(다라투무맙)
	이사톡시맙 Isatuximab	살클리사주(이사톡시맙)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아미반타맙 Amivantamab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 Pertuzumab/Trastuzumab	페스코피하주사1200/600밀리그램 (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 페스코피하주사600/600밀리그램 (퍼투주맙/트라스투주맙)
면역 관문 억제제	아테졸리주맙 atezolizumab	티센트릭주(아테졸리주맙)
	니볼루맙 nivolumab	옵디보주20mg(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옵디보주240mg(니볼루맙, 유전자재조합)
	펄브롤리주맙 pembrolizumab	키트루다주(펄브롤리주맙, 유전자재조합)
	이필리무맙 ipilimumab	여보이주200밀리그램/40밀리리터 (이필리무맙, 유전자재조합)
		여보이주50밀리그램/10밀리리터 (이필리무맙, 유전자재조합)
항체 약물 중합체 항암 치료제	더발루맙 durvalumab	임핀지주(더발루맙)
	아벨루맙 avelumab	바벤시오주(아벨루맙)
	트라스투주맙엠탄신 trastuzumabemtansine	캐싸일라주1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엠탄신) 캐싸일라주16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엠탄신)
	브렌톡시맙베도틴 brentuximabvedotin	애드세트리스주(브렌톡시맙베도틴)
	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inotuzumab ozogamicin	베스폰사주(이노투주맙오조가마이신)
	젬투주맙오조가마이신 Gemtuzumab Ozogamicin	마일로탁주4.5mg
	폴라투주맙베도틴 Polatuzumab Vedotin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
	카티 항암 치료제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1.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2.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3.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약물종류별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표189】 1-5종수술Ⅳ 분류표

1. 일반적인 상해 및 질병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이식수술(25cm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이식수술(25cm미만인 경우)	1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3-1. 유방의 비대 (N62)	2
	3-2. 그 외 유방절단수술	3
	4. 기타 유방수술[농양(고름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1
근골(筋骨)의 수술	5. 골(骨) 이식수술	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鼻骨) · 비중격(鼻中隔) · 상악골(上顎骨) · 하악골(下顎骨) · 악관절(顎關節)은 제외]	3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	7. 비골(鼻骨)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1
	8. 상악골(上顎骨), 하악골(下顎骨),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
[치(齒)·치은·치근 (齒根)·치조골(齒槽骨)의 치치, 임플란트(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
	10. 쇄골(鎖骨), 견갑골(肩胛骨), 늑골(肋骨), 흉골(胸骨) 관혈수술	2
	11. 사지(四肢) 절단수술	-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3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14. 근(筋), 건(腱), 인대(靱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
	19. 폐장(肺臟) 이식수술[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25. 심장막(心臟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26. 심장내(心臟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소화기계의 수술	30. 이하선 절제수술	3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	5
소화기계의 수술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41. 충수(蟲垂)절제술(충수염관련 충수주위 농양(고름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44. 치루(痔漏), 치열(痔裂),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	1
비뇨기계,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4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제외함]	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	2
	47. 방광류 교정수술	1
	48. 요실금수술(급여)	1
	49.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
	50.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
	51. 고환(辜丸), 부고환(副辜丸), 정관(精管), 정색(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2
	52. 음낭관혈수술	1
	53.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단,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질병당1회지급) 세부보장에서만 보장)	1
	55.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1
	56. 질탈(腔脫)근본수술	1
내분비계의 수술	57.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
	58.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3
	59. 부신(副腎) 절제수술	4
신경계의 수술	60.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
	61. 신경(神經) 관혈수술	2
	62.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
	63.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内外) 관혈수술	3
시각기의 수술	64. 안검하수증(眼檢下垂症)수술 [안검내반증 제외]	1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약물주입술은 제외]	65. 눈물소관(淚小管, 눈물길)형성수술 [누관튜브삽입술 포함]	1
	66.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7.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
	68.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
	69. 각막, 공막 이식수술	2
	70.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
	71.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
	72.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
	73.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2
	74.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시력회복 및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1
	75.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2
	76.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填術)	3
	77. 안와내종양절제수술	3
	78.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1
	79. 안근(眼筋)관혈수술	1
청각기(聽覺器)의 수술	80.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2
	81.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82.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83.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1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4. 내이(內耳) 관혈수술	3
	85.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
	86.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87.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
	88.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2
	89.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 (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

구분	수술명	수술 종류
	89-1. 뇌, 심장	3
	89-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2
	89-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

- 주1) 상기 1~88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9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8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 주2) 상기 44항(치루(痔漏), 치열(痔裂), 치핵(痔核) 근본수술), 48항(요실금수술(급여)) 수술은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질병당1회지급) 세부보장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48항(요실금수술(급여))는 피보험자가 남성인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 주3) 상기 54항(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수술은 질병통합치료비(실속형)(1-5종수술Q)(동일질병당1회지급) 세부보장에만 적용됩니다.

2.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수술명	수술종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 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적 수술 등은 제외]	5
1-1. 기타피부암(C44)	3
2. 내시경 수술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3

- 주)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1. 일반 질병 및 재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교형암에 대한 비교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3.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방사선 조사 분류항목	수술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

[1-5종 수술Ⅳ 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1-5종 수술Ⅳ 분류표'에서 정한 행위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합니다. 다만,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神經遮斷, Nerve Block)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2.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광형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1-5종 수술Ⅳ 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
'1-5종 수술Ⅳ 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1) '1-5종 수술Ⅳ 분류표' 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 수술Ⅳ 분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인 경우에는 '1-5종 수술Ⅳ 분류표' 중 '1. 일반적인 상해 및 질병치료 목적의 수술' 89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2.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 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요실금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요실금수술(급여)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요실금수술-개복에 의한 수술	R3562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자기근막을 이용한 경우 (근막채취료 포함)	R3564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기타의 경우	R3565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190】 통합11대특정감염병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11대특정감염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의 보장 대상질병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아래의 질병 이외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코드 P코드(P00~PXX)로 분류되는 질병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부보장 구분	대상질병	분류기호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장출혈성 대장균감염	A04.3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로타바이러스장염	A08.0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위장병증	A08.1
장내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아데노바이러스 장염	A08.2
백일해	백일해	A37
성홍열	성홍열	A38
수두	수두	B01
신생아 수두	기타 선천성 바이러스 질환 (선천수두)	P35.8
수족구병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소수포구내염	B08.4
유행성이하선염	볼거리	B26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폐렴	J12.1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B97.4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기관지염	J20.5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J21.0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폐렴	J12.3

세부보장 구분	대상질병	분류기호
감염증	다른 장에서 분류된 질환의 원인으로서의 기타 바이러스감염체	B97.8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세기관지염	J21.1

- 제10차 개정 이후 이 약관의 대상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다르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를 따릅니다.

【별표191】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

약관에 규정하는 급여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9장(처치 및 수술료 등)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수가코드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내 혈관	M6636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외 경부혈관	M6637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관상동맥	M6638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기타혈관	M6639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술 당시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수가코드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수술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약관에서
인용한
법규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1471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1473
【법규3】 국민건강보험법	1473
【법규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474
【법규5】 도로교통법	1474
【법규6】 민법	1475
【법규7】 상법	1475
【법규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75
【법규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78
【법규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81
【법규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482
【법규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483
【법규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483
【법규14】 의료급여법 시행령	1484
【법규15】 의료법	1484
【법규16】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1487
【법규17】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1488
【법규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488
【법규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1490

【법규2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491
【법규2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493
【법규22】 전자서명법	1496
【법규23】 지역보건법	1497
【법규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1497
【법규25】 형법	1498
【법규2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1501
【법규2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2
【법규2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07
【법규29】 한의약육성법	1507
【법규30】 약사법	1507
【법규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08
【법규32】 소비자기본법	1508
【법규33】 공직선거법	1508
【법규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1509
【법규35】 보험업감독규정	1509
【법규36】 보험업법	1510
【법규37】 보험업법 시행령	1510
【법규3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511
【법규3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1512
【법규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12
【법규41】 산업안전보건법	1512
【법규42】 도로법	1513
【법규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513

【법규4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1514
【법규4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514
【법규4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14
【법규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15
【법규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517
【법규4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1519
【법규5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20
【법규5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1521
【법규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522

※ 위의 법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을 따릅니다.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삭제<2023. 3. 14.>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2.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3.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4. 제19조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5.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6.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7.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8. 그 밖에 정보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④ 삭제<2023. 3. 14.>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삭제<2023. 3. 14.>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개되는 정보에 정보주체의 민감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 전에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게 알려야 한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2013. 8. 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위 ②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정보주체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2. 동의를 받으려는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그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것
 4.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할 것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③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민감정보
 -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 ⑤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이하 “서면등의 방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법규3】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2항 및 위 ②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법규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법규5】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은 제외한다)
-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규6】 민법**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법규7】 상법**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법규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규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서면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 절차를 거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러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5조(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신용정보주체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때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의 내용, 행사방법 등을 거래 상대방인 개인에게 고지하고, 거래 상대방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이 때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추가적인 사후 고지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 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 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항 및 위 ②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⑧ 신용정보회사등이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무료 열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법규1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2015. 9. 11.>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意的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 ⑤ 위 ②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意的 효력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⑧ 법 제32조위 ②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⑨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意的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사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삭제<2020. 8. 4.>
- ⑪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2. 「상법」 제719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3. 「상법」 제726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조 제6항 제7호 가목부터 허목까지의 자를 말한다.
-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법규1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규1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나.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군·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1) 삭제 <2024. 12. 31.>

2) 삭제 <2024. 12. 31.>

3) 삭제 <2024. 12. 31.>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수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래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법규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6. “구급차등”이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등의 이송수단을 말한다.
7. “응급의료기관등”이란 응급의료기관, 구급차등의 운전자 및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말한다.
8. “응급환자이송업”이란 구급차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을 말한다.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 ①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법규14】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삭제 <2005.7.5.>
 2. 삭제 <2005.7.5.>
- ② 삭제 <2005.7.5.>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법규15】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 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비율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최근 3년간 해당 의료기관 또는 그 개설자가 제64조제1항에 따른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 및 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전문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전문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3.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5. 전문병원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가 제27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전문병원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전문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관련감염(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감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 ③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의료기본법」 제6조·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방법, 게시 장소 등 게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삭제<2020. 3. 4.>
- ⑤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학생,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조무사”라 한다)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의료상황, 수술실 내인 경우, 의료행위를 하지 아니할 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명찰을 달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 ⑥ 의료인은 일회용 의료기기(한 번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한 번의 의료행위에서 한 환자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의료기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규16】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3

【별표 3】 <개정 2023.9.22.>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4조관련)

시설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1.~11.	(생략)						
11의2 탕전실	1(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11.~19.	(생략)						
20. 그 밖의 시설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화장실,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만 해당하고,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라.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규17】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별표 4】 <개정 2023.9.22.>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

2.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 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법규1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별표 1】 <개정 2024. 1. 31.>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 이상 2,000cc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자동차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미만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 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전기 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 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전기 자동차의 경우 최고출력이 80킬로와트)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최고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25cc(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25cc 초과 260cc 이하(최고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최고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 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 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 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작업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작업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 화물자동차 및 특수용도형인 경형 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 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 중 최고출력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 다. 최고출력(maximum net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법규1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덤프트럭
2. 타이어식 기중기
3. 콘크리트믹서트럭
4.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5.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6. 타이어식 굴착기
7.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법규2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礙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礙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礙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礙人)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礙人)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 및 재발성 우울장애
-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礙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礙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礙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礙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礙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礙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礙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법규2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재활·치료·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별표 1】 <개정 2022.9.6.>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삭제 <2022.09.06.>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삭제 <2022.09.06.>

라. 척추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목뼈 또는 등, 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목뼈 또는 등, 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마.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정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 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두 개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7. 장애 정도 구분의 하한 기준

제 1호부터 제 15호까지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의 기준은 각각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의 하한 기준으로 한다.

【법규22】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3. "전자서명생성정보"란 전자서명을 생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4. "전자서명수단"이란 전자서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적 수단을 말한다.
5. "전자서명인증"이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인증서"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 정보를 말한다.
7. "전자서명인증업무"란 전자서명인증, 전자서명인증 관련 기록의 관리 등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8. "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인증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가입자"란 전자서명생성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전자서명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10. "이용자"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법규23】 지역보건법

제10조(보건소의 설치)

-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다만,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 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규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 ① 삭제 <2016.1.6.>
-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집단적 폭행 등)

- ① 삭제 <2016.1.6.>
- ② 삭제 <2006.3.24.>
- ③ 삭제 <2016.1.6.>
- ④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또는 제369조제1항(특수손괴)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84조(특수협박)(제283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24조제2항(강요)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 「형법」 제258조의2제1항(특수상해),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제276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죄: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3. 수괴·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
 - 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
 - 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
 - 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
 - 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
- 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규25】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삭제 <2023. 8. 8.>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제25장 손해와 폭행의 죄**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9조(상해치사)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제266조(과실치상)**

-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장 협박의 죄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 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2장 손괴의 죄**제369조(특수손괴)**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26】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해보험회사"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화재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2. "특약부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건물의 손해와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을 말한다.
3. "특수건물"이란 국유건물·공유건물·교육시설·백화점·시장·의료시설·홍행장·숙박업소·다중이용업소·운수시설·공장·공동주택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출입 또는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건물로서 화재의 위험이나 건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을 말한다.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8조(보험금액)

- ① 제5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화재보험: 특수건물의 시가(時價)에 해당하는 금액
 2.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5천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사망자에 대한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다.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화재 1건마다 1억원 이상으로서 국민의 안전 및 특수건물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의 결정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법규27】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건물)

-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대통령 관저(官邸)와 특수용도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건물을 제외한다.
 - 1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 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6.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7. 「방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 마.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 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 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
- 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9호에 따른 공유주방 운영업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건물을 제외한다.
1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6층 이상의 아파트 및 부속건물.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4.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물. 다만, 아파트(제12호에 따른 아파트는 제외한다)·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을 제외한다.
1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17.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驛舍) 및 역 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및 역 시설. 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공제 중 특약부화재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역사 및 역 시설은 제외한다.
1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실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 ② 제1항제12호 및 제14호에 따른 건물의 층수 계산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제9호에 따르되,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용도가 명백한 계단실 또는 물탱크실인 경우에는 층수로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하층은 이를 층수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보험금액)

-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물의 소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1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에 생긴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의 경우: 피해자 1명마다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고 1건마다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②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당한 피해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2. 부상당한 피해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마다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손해액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 ① 손해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손해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험금의 지급청구자와 수령자의 주소 및 성명
 2. 청구액과 지급액
 3. 피해자의 주소 및 성명

[별표 1] <개정 2021. 1. 5.>

부상등급 및 보험금액(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등급	보험금액	부상 내용
1급	3천만원	1. 엉덩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 척추체 분쇄성 골절 3. 척추체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각종 신경증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4. 외상성 머리뼈안 출혈로 머리뼈 절개수술을 시행한 부상 5. 머리뼈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 또는 경막밑 수종, 수혈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머리뼈 절개수술을 시행한 부상 6. 고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생명이 위독한 부상(48시간 이상 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넓적다리뼈 몸통의 분쇄성 골절 8. 정강이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9. 화상·좌상·괴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심한 부상(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의 부상을 말한다) 10. 팔다리와 몸통의 연부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식피술(피부의 혈행을 보존한 채로 이식하는 수술을 말한다)을 시행한 부상 11. 위팔뼈목 골절과 몸통 분쇄 골절이 중복된 경우 또는 위팔뼈 삼각골절 12.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2급	1,500만원	1. 위팔뼈 분쇄성 골절 2.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으나 각종 신경증상이 없는 부상 또는 목뼈 탈구(불완전탈구를 포함한다), 골절 등으로 목뼈고정기(할로베스트) 등 고정술을 시행한 부상 3.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뼈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골반뼈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부상 5. 무릎관절 탈구 6. 발목관절 부위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부상 7. 자뼈 몸통 골절과 노뼈 뼈머리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엉치엉덩관절 탈구 9. 무릎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가 전부 파열된 부상 10.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3급	1,200만원	1. 위팔뼈목 골절 2. 위팔뼈 관절염 골절과 팔꿈치관절 탈구가 동반된 부상 3. 노뼈와 자뼈의 몸통 골절이 동반된 부상 4. 손목 손배뼈 골절 5. 노뼈 신경손상을 동반한 위팔뼈 몸통 골절 6. 넓적다리뼈 몸통 골절(소아의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외의 사람의 경우에는 수술의 시행 여부를 불문한다) 7. 무릎골(슬개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분쇄 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무릎골 완전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8. 정강이뼈 관절염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로 개방정복(피부와 근육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바로잡는 시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9. 발목뼈 척골 간 관절 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부상 또는 발목발허리(Lisfranc: 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골절 및 탈구 10. 전·후십자인대 또는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파열과 정강이뼈 융기사이결절 골절 등이 복합된 속무릎장애(슬내장) 11. 복부 내장 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복강 내 출혈로 수술한 부상 12. 뇌손상으로 뇌신경 마비를 동반한 부상 13. 중증도의 뇌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부상(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14.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열창)로 양쪽 안구가 파열되어 두 눈 적출술을 시행한 부상 15. 목뼈고리(목뼈의 추골 뒷부분인 추궁을 말한다)의 선상 골절 16. 항문 파열로 인공항문 조성술 또는 요도 파열로 요도성형술을 시행한 부상 17. 넓적다리뼈 관절염기 분쇄 골절로 인하여 관절면이 손상되는 부상 18.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4급	1천만원	1. 넓적다리뼈 관절염기(면쪽부위, 과상부 및 대퇴과간을 포함한다) 골절 2. 정강이뼈 몸통 골절, 관절면 침범이 없는 정강이뼈 관절염기 골절 3. 목말뼈목 골절 4. 슬개 인대 파열 5. 어깨관절 부위의 돌림근띠(회전근개라고도 하며, 어깨관절을 감싸면서 어깨관절을 돌리는 네 근육을 말한다) 골절 6. 위팔뼈 가쪽위관절염기가 어긋나는 골절 7. 팔꿈치관절 부위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8. 화상, 좌창, 과사상처 등으로 연부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부상 9. 안구 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부상 또는 개방성 공막 찢김상처로 안구 적출술,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부상 10. 넓적다리 네갈래근, 두갈래근 파열로 개방정복을 시행한 부상 11. 무릎관절부위의 내외측부 인대, 전·후십자인대, 내외측 반달모양 물렁뼈 완전 파열(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2.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종아리뼈 아래 3분의 1 이상의 분쇄성 골절 13.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5급	900만원	1. 골반뼈의 중복 골절(말개누 골절 등을 포함한다) 2. 발목관절부위의 안쪽·바깥쪽 복사 골절이 동반된 부상 3. 발뒤꿈치뼈 골절 4. 위팔뼈 몸통 골절 5. 노뼈 면쪽부위[콜리스골절(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손바닥이 등쪽이나 바깥쪽으로 돌아간 상태를 말한다), 스미스골절(콜리스골절의 반대로서 팔목 바로 위 노뼈가 부러져 뺏조각이 손바닥쪽으로 어긋난 상태를 말한다), 손목 관절면, 노뼈 면쪽 뼈골 골절을 포함한다] 골절 6. 자뼈 몸쪽부위 골절 7.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된 부상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8. 발등 근육힘줄 파열창 9. 손바닥 근육힘줄 파열창[위팔의 깊게 찢긴 상처(심부 열창)로 인한 삼각근, 이두근 근육힘줄 파열을 포함한다]

		10. 아킬레스힘줄 파열 11. 소아의 위팔뼈 몸통 골절(분쇄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한 부상 12. 결막, 공막, 망막 등의 자체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부상 13. 목말뼈 골절(목부위는 제외한다) 14. 개방정복을 시행하지 않은 소아의 정강이뼈 · 종아리뼈 아래의 3분의 1 이상의 분쇄 골절 15. 개방정복을 시행한 소아의 정강이뼈 분쇄 골절 16. 23개 이상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6급	700만원	1. 소아의 다리 장관골 골절(분쇄 골절 또는 성장판 손상을 포함한다) 2. 넓적다리뼈 대전자부 절편 골절 3. 넓적다리뼈 소전자부 절편 골절 4. 다발성 발바닥뼈(중족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5. 두덩뼈 · 궁둥뼈 · 엉덩뼈 · 엉치뼈의 단일 골절 또는 꼬리뼈 골절로 수술한 부상 6. 두덩뼈 상 · 하지 골절 또는 양측 두덩뼈 골절 7. 단순 손목뼈 골절 8. 노뼈 몸통 골절(먼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9. 자뼈 몸통 골절(몸쪽부위 골절은 제외한다) 10. 자뼈 팔꿈치 머리 부위 골절 11. 다발성 손바닥뼈 골절 12. 머리뼈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3. 외상성 경막밑 수종, 수혈액 낭종, 거미막밑 출혈 등으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천공술(원형절제술)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한다] 14. 갈비뼈 골절이 없이 혈액가슴증 또는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흉관 삽관술을 시행한 부상 15. 위팔뼈 대결절 견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부상 16. 넓적다리뼈 또는 넓적다리뼈 관절용기 찢김 골절 17. 19개 이상 2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8.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7급	500만원	1. 소아의 팔 장관골 골절 2. 발목관절 안쪽 복사뼈 또는 바깥쪽 복사뼈 골절 3. 위팔뼈 위관절용기 굽힘골절 4. 엉덩관절 탈구

		5. 어깨 관절 탈구 6. 봉우리빗장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봉우리빗장 인대 파열 7. 발목관절 탈구 8. 천장관절 분리 또는 두덩뼈 결합부 분리 9. 다발성 얼굴 머리뼈 골절 또는 신경손상과 동반된 얼굴 머리뼈 골절 10. 16개 이상 1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1.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8급	300만원	1. 위팔뼈 결절부위 평골절 또는 위팔뼈 대결절 찢김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2. 쇄골(빗장뼈)을 말한다. 이하 같다) 골절 3. 팔꿈치관절 탈구 4. 어깨뼈(어깨뼈가시 또는 체부, 흉곽 내 탈구, 어깨뼈목, 복사, 견봉돌기 및 어깨뼈부리돌기를 포함한다) 골절 5. 봉우리빗장 인대 또는 오구쇄골 인대 완전 파열 6. 팔꿈치관절 안 위팔뼈 작은 머리 골절 7. 종아리뼈 골절, 종아리뼈 몸쪽부위 골절(신경손상 또는 관절면 손상을 포함한다) 8. 발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9. 다발성 갈비뼈 골절 10. 뇌 타박상(소량의 출혈이 뇌 전체에 퍼져 있는 손상을 포함한다)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미한 부상 11. 얼굴부위 찢김상처, 두개부 타박 등에 의한 뇌손상이 없는 뇌신경손상 12. 위턱뼈, 아래턱뼈, 이틀뼈, 얼굴 머리뼈 골절 13. 안구 적출술 없이 시신경의 손상으로 실명된 부상 14. 족부 인대 파열(부분 파열은 제외한다) 15. 13개 이상 1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9급	240만원	1. 척추골의 가시돌기, 가로돌기 골절 또는 하관절 돌기 골절(다발성 골절을 포함한다) 2. 노뼈 뼈머리 골절 3. 손목관절 내 반달뼈(월상골) 앞쪽 이탈 등 손목뼈 탈구 4. 손가락뼈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부상 5. 손바닥뼈 골절

		6. 손목 골절(손배뼈는 제외한다) 7. 발목뼈 골절(목말뼈 · 발꿈치뼈는 제외한다) 8. 발바닥뼈 골절 9. 발목관절부위 뽀, 정강이뼈 · 종아리뼈 분리, 족부 인대 또는 아킬레스힘줄의 부분 파열 10. 갈비뼈, 복장뼈(흉골), 갈비연골(늑연골) 골절 또는 단순 갈비뼈 골절과 혈액가슴증, 공기가슴증이 동반되어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1. 척추체간 관절부위가 빠져 그 부근의 연부조직(인대, 근육 등을 포함한다) 손상이 동반된 부상 12. 척수 손상으로 마비증상이 없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3. 손목관절 탈구(노뼈, 손목뼈 관절 탈구, 손목뼈사이 관절 탈구 및 먼쪽 노자관절 탈구를 포함한다) 14. 꼬리뼈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부상 15. 무릎관절부위 인대의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16. 11개 이상 12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7.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0급	200만원	1. 외상성 무릎관절 안 혈종(활액막염을 포함한다) 2. 손허리손가락관절 탈구 3. 손목뼈, 손바닥뼈 간 관절 탈구 4. 팔부위 각 관절부(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뽀 5. 자뼈 · 노뼈 붓돌기 골절, 제불완전골절(코뼈 골절, 손가락뼈 골절 및 발가락뼈 골절은 제외한다) 6. 손가락 평근힘줄 파열 7. 9개 이상 10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8.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1급	160만원	1. 발가락뼈 관절 탈구 및 뽀 2. 손가락 골절 · 탈구 및 뽀 3. 코뼈 골절 4. 손가락뼈 골절 5. 발가락뼈 골절 6. 뇌진탕 7. 고막 파열 8. 6개 이상 8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9.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부상

12급	120만원	1. 8일 이상 14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15일 이상 26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4개 이상 5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3급	80만원	1. 4일 이상 7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8일 이상 14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2개 이상 3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14급	5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 2. 7일 이하의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3. 1개 이하의 치아에 보철이 필요한 부상

비고

-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내용 중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하여 골편의 뼈가 어긋난 경우가 아닌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등급 낮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2급부터 11급까지의 부상 중 2가지 이상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부상으로부터 하위 3등급(예: 부상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부상이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부상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일반 외상과 치아 보철이 필요한 부상이 중복된 경우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 등급별로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법규28】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손해액)

- 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사망한 때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 기간을 곱한 금액
 2. 남자 평균임금의 10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
- ②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액은 화재로 인하여 신체에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을 치료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 ③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해액은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④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

【법규29】 한의약육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 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가공·제조·조제·수입·판매·감정·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한약제제,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제조·유통·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법규30】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4. (생략)
5. "한약"이란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6.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이하 생략)

【법규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1.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营业을 말한다.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再開)
 2. 영업 내용의 변경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4. 다중이용업소 상호 또는 주소의 변경

【법규32】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법규33】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제223조(당선소송)

-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の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검사를 피고로 한다.

【법규3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 ① 비장애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
- ②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1. 강직, 오그라들,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2. 운동기능장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의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

【법규35】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영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7-49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2. 기업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7. 제7-49조제2호가목1)에 해당하는 단체

【법규36】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8. (생략)

19. "전문보험계약자"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보험계약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보험계약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계약자는 일반보험계약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라. 주권상장법인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0. "일반보험계약자"란 전문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한다.

【법규37】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주권상장법인
3. 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 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 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 보험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 「은행법」에 따른 은행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 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 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 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 삭제<2014. 12. 30.>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
16.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 정부
 - 나.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라. 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법규3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검사장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2.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3.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 설치업자 또는 유통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3의2.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를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그 소속 임직원이 안전점검 또는 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설치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법규39】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2

- 어린이놀이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시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법규4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안전성 평가 등)

-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들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관청에 제출하거나 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향상계획에는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규41】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규42】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도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법규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범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법규44】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이식의료기관)

- ① 장기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의료기관(이하 "이식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 ② 이식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 ③ 이식의료기관이 아니면 장기 등의 이식을 위하여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할 수 없다. 다만, 이식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다.

제47조(벌칙)

-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사 또는 진료담당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뇌사조사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뇌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뇌사판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4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써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아니할 것
 -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법규4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규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행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나. 마버그열
- 다. 라싸열
-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 바. 리프트밸리열

- 사. 두창
- 아. 페스트
- 자. 탄저
- 차. 보툴리눔독소증
- 카. 야토병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하.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너. 신종인플루엔자
- 더. 디프테리아

3. “제2급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행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결핵(結核)
- 나. 수두(水痘)
- 다. 홍역(紅疫)
- 라. 콜레라
- 마. 장티푸스
- 바. 파라티푸스
- 사. 세균성이질
-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자. A형간염
- 차. 백일해(百日咳)
- 카. 유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
- 타. 풍진(風疹)
- 파. 폴리오
- 하. 수막구균 감염증
-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 너. 폐렴구균 감염증

- 더. 한센병
- 러. 성홍열
-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CRE) 감염증
- 서. E형간염
- 4. “제3급감염병”이란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파상풍(破傷風)
 - 나. B형간염
 - 다. 일본뇌염
 - 라. C형간염
 - 마. 말라리아
 - 바. 레지오넬라증
 - 사. 비브리오패혈증
 - 아. 발진티푸스
 - 자. 발진열(發疹熱)
 - 차. 찻찻가무시증
 - 카. 렘토스피라증
 - 타. 브루셀라증
 - 파. 공수병(恐水病)
 - 하. 신증후군출혈열(腎症候群出血熱)
 - 거.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 너.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 더. 황열
 - 러. Dengue열
 - 머. 큐열(Q熱)
 - 버. 웨스트나일열
 - 서. 라임병
 - 어. 진드기매개뇌염
 - 저. 유비저(類鼻疽)
 - 쳐. 치쿤구니아열
 - 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 퍼. 매독(梅毒)

-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 가. 인플루엔자
 - 나. 삭제
 - 다. 회충증
 - 라. 편충증
 - 마. 요충증
 - 바. 간흡충증
 - 사. 폐흡충증
 - 아. 장흡충증
 - 자. 수족구병
 - 차. 임질
 - 카. 클라미디아감염증
 - 타. 연성하감
 - 파. 성기단순포진
 - 하. 첨규콘딜롬
 - 거.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너.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 더.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 러.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 머. 장관감염증
 - 버. 급성호흡기감염증
 - 서.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어.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6.~20. (생략)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 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들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3. 감염병환자들이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 ②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소속 직원은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환자들을 발견한 경우 그 사실을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및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4급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육군, 해군, 공군 또는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으면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소속 부대장은 제1급감염병의 경우에는 즉시, 제2급감염병 및 제3급감염병의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16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제16조제6항에 따라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제4급감염병으로 인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염병환자들의 진단 기준,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규4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상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연불판매, 할부금융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상품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금융상품판매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다만,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 자신이 직접 계약의 상대방으로서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영업으로 하는 것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
 -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
3. “금융상품판매업자”란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률(이하 “금융관계법률”이라 한다)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그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 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직접판매업을 영위하는 자
 - 나.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상품판매업자 중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4.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자문(이하 “금융상품자문”이라 한다)에 응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개별 금융소비자를 상정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언을 하는 것. 다만, 본문의 조언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에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 고객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그 밖에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가 해당 법률에 따라 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해당 행위의 성격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금융상품자문업자”란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자문업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에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6.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중소기업은행법」 제3조제3항, 「한국산업은행법」 제3조제1항, 「신용협동조합법」 제6조제3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제8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제2항, 「상호저축은행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 농협은행, 수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신탁업자 또는 같은 법 제336조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2제1항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금융회사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1조제9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 다. 「보험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라. 「보험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험대리점
 - 마. 「보험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보험중개사
 -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경영여신업자
 - 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모집인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와 유사한 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의 받는 것(이하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라 한다)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거래상대방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자문업무의 상대방인 전문금융소비자 또는 일반금융소비자를 말한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 가. 국가
 -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0. “일반금융소비자”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를 말한다.

제46조(청약의 철회)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의 철회를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3. 대출성 상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보다 계약에 따른 금전·재화·용역(이하 이 조에서 “금전·재화등”이라 한다)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부터 14일
 - 가.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나.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 계약체결일

- ②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대출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 각 목의 금전·재화등(이미 제공된 용역은 제외하며,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환한 때
 - 가.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등
 - 나.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 다.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③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2.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인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대출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전·재화등, 이자 및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 ④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규49】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1. 시설 및 장비

가. 공통 기준

다음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수술실: 심전도 모니터, 혈압 모니터 및 산소포화도 측정기
- 2) 회복실: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 3)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및 감시장비
- 4) 진단검사의학검사시설
- 5) 영상의학검사시설
- 6) 삭제 <2013.12.17>
- 7) 해부병리검사시설

비고: 2) 및 3)에 따른 인공호흡기는 회복실과 중환자실 중 하나의 시설에만 갖추두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장기별 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둘 이상의 장기를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시설 및 장비는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 1) 신장 및 췌장: 투석실 및 혈액투석기
- 2) 간장: 인공심폐기,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치

- 3) 심장 및 폐: 인공심폐기
- 4) 골수 및 말초혈: 무균입원실
- 5) 안구: 안구 처리·보관시설, 경면현미경, 진단검사의학시설 및 수술실
- 6) 채도: 무균분리시설
- 7) 소장: 내시경, 내시경적 생검시설(生檢施設), 고속주입기 및 자가수혈장치
- 8) 손·팔 또는 발·다리: 재활치료실 또는 물리치료실, 미세현미경
- ※ 비고: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5)에 따른 진단검사의학시설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

2. 인력

가. 공통 기준

- 1)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및 내과(감염 전문 및 호흡기 전문)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2) 1)에도 불구하고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만을 각각 1명만 둘 수 있고, 골수 또는 말초혈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내과(감염 전문) 및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만을 각각 1명만 둘 수 있다. 다만,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검사의학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3) 장기등의 추출·이식을 위한 상담·연락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안구만을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장기별 기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문과목의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둘 이상의 장기를 이식하려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인력은 중복하여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및 내과(골수, 말초혈, 손·팔 또는 발·다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의는 국내 또는 국외의 이식의료기관에서 장기이식훈련과정을 6개월 이상 수료한 사람이어야 한다.

- 1) 신장: 외과 또는 비뇨의학과, 내과(신장 전문)
- 2) 간장: 외과, 내과(소화기 전문)
- 3) 췌장 및 췌도: 외과, 내과(내분비 전문)
- 4) 심장: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순환기 전문)
- 5) 폐: 심장혈관흉부외과, 내과(호흡기 전문)
- 6) 골수 및 말초혈: 내과(혈액종양 전문)

- 7) 안구: 안과
- 8) 소장: 외과, 내과(소화기 전문)
- 9) 손·팔 또는 발·다리: 정형외과 또는 성형외과, 외과 또는 내과

【법규50】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중증질환심의위원회)

- ①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중증질환심의위원회를 둔다.
(이하 생략)

제9조(비급여대상)

-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이하 생략)

[별표 2] <개정 2024. 8. 1.>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탈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각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치과교정. 다만, 선천성 기형으로 저하된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과교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
 -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들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불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 또는 배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적 검사
 -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가입자들이 다음 표에 따른 요양기관으로서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1인(「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 3인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 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생략)

【법규5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가. 암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라. 만성 간경화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등”이라 한다)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7조(보험 등의 불이익 금지)

이 법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과 보험금수령인 또는 연금수급자를 보험금 또는 연금급여 지급 시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규5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